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067호

2025. 5. 29.(목)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등

[시의회규칙]

제55호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6

제56호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 9

[입법예고]

제2025-1651호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3

제2025-1670호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28

제2025-1678호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30

제2025-1679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36

제2025-1697호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9

[행정예고]

제2025-1652호 서울특별시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 47

◈ 고 시

제2025-283호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길13구역) (경미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49

제2025-286호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존치관리9구역) 경미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97

제2025-287호 종암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07

제2025-288호 도시관리계획(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청년안심주택 사업 해제 - ····· 133

제2025-289호 병무청역세권(신길동 459-5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41

제2025-290호 도시관리계획(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52

제2025-291호 도시관리계획(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85
제2025-293호 도시관리계획(용두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89
제2025-294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3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308
제2025-296호 남대문로5가 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 346
제2025-297호 구로구 오류동 108-105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 360
제2025-298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고시 ····· 364

◈ 공 고

제2025-1545호 제23회 서울특별시 복지상 수상후보자 추천공고 ····· 365
제2025-1594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 368
제2025-1608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 369
제2025-1609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370
제2025-1610호 용산구 교육청 신청사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 심의 결과 공고 ····· 371
제2025-1612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 372
제2025-1624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 390
제2025-1630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392
제2025-1632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393
제2025-1633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395
제2025-1634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 396
제2025-1635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 398
제2025-1636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399
제2025-1637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400
제2025-1638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401
제2025-1639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402
제2025-1644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 403
제2025-1663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406
제2025-1664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407
제2025-1667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411
제2025-1668호 서울특별시 박물관 신규등록 공고 ····· 425
제2025-166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를 위한 열람공고 ····· 426

제2025-1671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 공시송달(공고) ····· 441
제2025-1672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업무정지) 재개 공고 ····· 464
제2025-1685호 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개 ····· 465
제2025-1686호 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개 ····· 468

◈ 서울특별시의회공고

제2025-274호 주식매각신고사항 공고 ····· 469

◈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25-6호 2025년 수시 재산변동사항 공고 ····· 472

◈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제2025-193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76

◈ 구 고 시

제2025-8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성동구) ····· 488
제2025-87호 도시관리계획[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동대문구) ····· 491
제2025-88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동대문구) ····· 495
제2025-80호 도시관리계획(성북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성북구) ····· 498
제2025-4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노원구) ····· 499
제2025-4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은평구) ····· 502
제2025-975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은평구) ···· 505
제2025-50호 도시관리계획(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도면 고시(강서구) ····· 511
제2025-51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강서도서관)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강서구) ····· 535
제2025-96호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영등포구) ····· 537
제2025-9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실효 고시(영등포구) ····· 553
제2025-9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실효 고시(영등포구) ····· 559

제2025-10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실효 고시(영등포구) ····· 565
제2025-10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실효 고시(영등포구) ····· 570
제2025-6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관악구) ····· 577
제2025-8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서초구) ····· 580

◈ 구 공 고

제2025-747호 도시공원(오동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사용계약 체결 공고(강북구) ····· 582
제2025-780호 도시관리계획[수유 · 번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강북구) ····· 583
제2025-833호 도시관리계획(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도봉구) ····· 595
제2025-89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마포구) ····· 596
제2025-93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마포구) ····· 604
제2025-1044호 도시관리계획[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양천구) ····· 612
제2025-1045호 도시관리계획[신월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양천구) ····· 613
제2025-1044호 도시관리계획(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강서구) ····· 614

◈ 사업소고시

제2025-22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15
제2025-22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15
제2025-22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16
제2025-22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16
제2025-22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17
제2025-23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17
제2025-23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18
제2025-23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18
제2025-23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19
제2025-23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19
제2025-23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20
제2025-23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20
제2025-23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21
제2025-23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21

◈ 기 타

제2025-191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622
제2025-194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623
제2025-196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624
제2025-197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625
제2025-200호 하천점용(일시) 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626
제2025-201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627

자치법규 등

[규 칙]

◈ 서울특별시의회규칙 제55호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 호 정 인

2025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정책지원담당관”을 각각 “의정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관리) ① (생 략) ② 토론회 등에 대한 주관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신청 의원의 소속 교섭단체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정책지원담당관 5. 교섭단체가 제안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정책지원담당관 ③ (생 략)	제5조(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 의정담당관 5. ---------- 의정담당관 ③ (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조직개편(’ 25.1.1.字)으로 정책지원담당관이 폐지되고 교섭단체 지원업무가 의정담당관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청 의원의 소속 교섭단체 현안사항 및 교섭단체가 제안하는 토론회에 대한 주관지원부서를 의정담당관으로 함(안 제5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의회규칙 제56호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 호 정 인
2025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제7조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인 이상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를 “18세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응시자의 친인척이거나 응시자와 사제지간인 자
2. 응시자와 근무 경험이 있는 자
3. 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 해당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

제17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인사관리 우대) 영 제27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교류 시 전출 제한기간 내에도 전출될 수 있다.

별표 2 사회복지 직렬란 다음에 전산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다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데 이 터		

별표 3 중 전산 직렬란을 삭제한다.

별표 6 중 제1호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 중 전산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별표 10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
(제17조제7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한시임기제	가급·5호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나급·6호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다급·7호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라급·8호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마급·9호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 시 임 기 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마급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한시임기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자등

※ 비고

1. <삭제>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응시원서 작성요령 제6호 하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0]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응시수수료) ① (생 략)	제7조(응시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환급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신 설>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 설>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신 설>	4. 2인 이상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9조(응시연령) ---------- ---------- ---------- 18세 이상이어야 ---------- --------.
1. 7급 이상: 20세 이상	<삭 제>
2. 8급 이하: 18세 이상	<삭 제>
제13조(시험위원) ① ~ ③ (생략)	제13조(시험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시험위원과 응시자와의 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의 관계로 인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응시자의 친인척이거나 응시자와 사제지간인 자
	2. 응시자와 근무 경험이 있는 자

	3. 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 해당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 ⑦ (생 략)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⑧ (생 략)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인사관리 우대) 영 제27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교류 시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될 수 있다.

[별표 2]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6조제1항 관련)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 신 설 〉			

[별표 2]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6조제1항 관련)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전 산	전 산	기 술 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산 업 기 사 자 격 증
	데 이 터	기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정보기기운용, 정 보 처 리 , 전자계산기	

[별표 3]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6조제1항 관련)

직렬 / 계급 /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 보 처 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 보 처 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별표 3]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6조제1항 관련)

직렬 / 계급 /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별표 6]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17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별표 6]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17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능사: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별표 10]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임기제	6호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

[별표 10]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임기제	6호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에는 법인 또는

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한시임기제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응시원서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응시분야):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3.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한시임기제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 비고

1. <삭 제>

[별지 제1호서식] 응시원서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응시분야):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3.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6. 수입증지 - 5급 이상: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규정 개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시험 응시 의사 철회자에 대한 추가 환급절차 근거 마련 및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2인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자 추가(안 제7조)

○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안 제9조)

○ 시험실시와 직접 관계가 있는 공무원 등의 시험위원 위촉 제한(안 제13조)

○ 경력경쟁임용시험 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한 경력 인정범위 완화(안 제17조)

○ 육아·모성보호 공무원의 전출제한 예외 근거 신설(안 제26조의2)

○ 필수자격증이 요구되는 특수직급에서 전산직렬 제외 및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 기준에 전산직렬 신설 등 응시자격증 정비 등(안 별표 2, 별표 3, 별표 6)

○ 일부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응시자격 정비(안 별표 1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음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651호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사유
한옥 수선 등 보조금 지원에 따른 완료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불편을 개선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한옥건축자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옥건축자산과(전화: 02-2133-5573, FAX: 02-2133-0828, E-mail: happymino@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6층 한옥건축자산과
2) 이메일 : happymino@seoul.go.kr
3)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위탁 받”을 “위탁받”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구청장”을 각각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전단 중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을 “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상정”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옥전문가”를 “한옥전문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은 시장”을 “시장”으로,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지원대상자 및 자치구에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옥 수선 등 완료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완료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제15조 개정규정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0호서식] 한옥 수선 등 완료신고서(제15조제1항 관련)

한옥 수선 등 완료신고서

한 옥 등록번호				등 록 일		
건 축 주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대지면적	㎡	
착 수 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 무 소 주 소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				
수선 등 구분	□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건축물현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용 도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한옥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우수건축자산의 보조 · 융자대상 및 융자지원조건) ① · ② (생략)	제2조(우수건축자산의 보조 · 융자대상 및 융자지원조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융자금의 지급 및 상환 등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9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른다.	③ ----------위탁받----------.
제15조(한옥 수선 등의 완료신고 등) ① 한옥 지원대상자는 한옥 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한옥 수선 등 완료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한옥 수선 등의 완료신고 등) ① ----------시장----------.
②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구청장은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제10조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옥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상정----------. ----------한옥전문가----------.
③ 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서 및 검	③ 시장----------

토의견서를 받은 시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지원금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한옥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한옥 수선 등 완료신고서(제15조제1항 관련)

한옥 수선 등 완료신고서

한옥 등록번호				등록일		
건축주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대지면적	㎡	
착수일			공사기간			
설계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주 소	(전화번호 :)				
수선 등 구분	□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건축물현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용 도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한옥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지원대상자 및 자치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한옥 수선 등 완료신고서(제15조제1항 관련)

한옥 수선 등 완료신고서

한옥 등록번호				등록일		
건축주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대지면적	㎡	
착수일			공사기간			
설계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주 소	(전화번호 :)				
수선 등 구분	□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건축물현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용 도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한옥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670호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서울건강총괄관 수당 및 여비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서울건강총괄관의 근무형태 및 수당 지급 기준(안 제2조, 제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133-7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02-768-8834
1) 이메일: syon0211@seoul.go.kr
2)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보건의료정책과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건강총괄관의 근무 형태) 서울건강총괄관은 비상근으로 하며, 주당 2일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서울건강총괄관의 수당) ① 서울건강총괄관의 수당은 총 근무일수 및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서울건강총괄관의 수당 단가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6조에 따른 기준단가를 말한다)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678호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타당성 심사 대상을 정비하고, 제안요청서 기술검토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화사업에 따라 규칙의 적용 범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안 제3조제4호)
나. 심사제도 간 중복을 해소하고, 예산타당성 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사 대상을 정비함. (안 제6조제1항)
다. 제안요청서 검토 절차의 내용 중복과 조기 발주 지연 등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술검토 절차를 의무 준수에서 ‘필요시 준수’로 변경함. (안 제10조제2·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고: 정보시스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정보시스템과(전화: 02-2133-29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이 메 일: celina567@seoul.go.kr
(2) 등기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층 정보시스템과
(3) 온 라 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침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제1항제2호 중 “정보시스템간”을 “정보시스템 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달성하고자하는”을 “달성하고자 하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예산이 소요되는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로 한다.

1. 신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다만, 하드웨어 등 단순 구매·설치 사업은 제외)
2.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재개발을 포함하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예산타당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사업”을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으로, “요청하여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주된사업”이란 주관부서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정보화사업이 아닌 사업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보화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적용범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정보화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침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정보화전략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화전략계획 수립)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간의 연계가 필요한 사업	2. ---------- ---- 정보시스템 간-------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정보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제5조(정보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보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성과목표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명시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 ---------- ----------. ---------- 달성하고자 하는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예산타당성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 등(이하 “심사요청자료”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예산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제6조(예산타당성 심사) ① -- ---------- 예산이 소요되는 다음 ---------- ---------- ---------- ---------- ---------- ---------- ---------- ----------

한다. 다만, 기존 정보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화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제2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단서 삭제>
1.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1. 신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다만, 하드웨어 등 단순 구매·설치 사업은 제외)
2.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재개발을 포함하는 사업
3.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예산타당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예비비 사용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삭 제>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요청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이하 “조례”라	5.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

한다)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제안요청서 작성) ① (생략)	제10조(제안요청서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기술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 ------ 요청할 수 있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검토 요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2. 감리 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사업 3. 과업지시서 4.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삭 제>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679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시립체육시설의 전용사용 시 현실과 맞지 않은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개선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립체육시설의 전용사용자는 관람권 발행 시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지만 전산 발행한 관람권에 대해서는 관람권 검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 신설(안 제6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 · 이메일 · 등기우편
(1) FAX : 02-2133-1064
(2) E-mail : heness@seoul.go.kr
(3)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5층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체육정책과(☎02-2133-2683)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하며, 소장은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 소지자를 해당 체육시설에 입장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관람권의 검인)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관람권은 소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소장은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 소지자를 해당 체육시설에 입장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제6조(관람권의 검인) ① ---------- ---------- ---------- ---- 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697호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사유

가. 노후화된 '시민청'을 서울의 미래 비전 홍보, 시민 소통, 문화 향유를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개편하고, 명칭을 '서울갤러리'로 변경함

나. 서울갤러리 개관('26.1.)에 앞서, 시설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행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의 체계적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시설 명칭 변경을 조례 제명과 전체 조문에 일괄 반영

-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나. 제2조 : 시설 명칭 변경 및 기능 확대 반영 / 복수 장소 조항 삭제

- 시민참여·소통 · 문화체험 공간 → 도시홍보·시민참여·소통·문화체험 공간
  ⇨ 제8조 및 제14조에서도 서울갤러리 정의와 용어 통일
- 서울시청사 단일 공간 운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복수 위치 전체를 둔 제2항 삭제
  ※ 기존 시민청은 시청·삼각산 복수 운영

다. 제5조 : 무료이용 대상 조항 현행화(대상자 범위 : 11개 그룹 추가)

- 서울시 문화시설 간의 기준 일관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제정·개정된 관련 조례[1]의 무료 이용 대상 범위를 반영하여 조정

라. 제10조 : 대관료 감면조항 정비

- 운영자문위원회가 비상설로 운영됨에 따라 대관료 감면 자문 절차 실효성 저하
  ※ 기존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에서도 대관료 감면 자문 사례 없었음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면 유효기간(2020년 12월 31일까지) 만료에 따른 정비

마. 제14~16조 : 운영자문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에 따른 개정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비상설 운영 원칙을 반영하여 위원 임기, 부위원장 직무, 회의 소집 절차 등 불필요한 조항 삭제
- 제15조 제1항(위원장 직무 조항)은 제14조제4항으로 통합

1)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홍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전화: 02-2133-6419, FAX: 02-2133-0787, E-mail: srseo@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홍보담당관

2) 이메일 : srseo@seoul.go.kr

3)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갤러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일반인이 서울갤러리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갤러리”란 도시홍보, 시민 참여와 소통, 문화체험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청사에 설치한 복합문화시설을 말한다.
2. “대관”이란 서울갤러리 내 각 공간의 사용을 허가받아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대관자”란 제8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서울갤러리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
3. 추석
4.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제4조(이용료) ① 서울갤러리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거나 대관자가 개최하는 특정 전시, 공연, 행사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의 성격·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서울갤러리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5조(무료이용)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7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8.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
9.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8.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19.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20.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2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22. 그 밖에 시장이 서울갤러리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무료이용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금지한다.

1.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그 밖에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서울갤러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고성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8조(대관허가) ① 시장은 서울갤러리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홍보, 시민 참여와 소통, 문화체험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위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대관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대관료) ① 대관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 전날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시설 사용료와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경우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도시가스요금 또는 전기요금에 따라서 산출한다.
③ 대관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대관료 감면)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후원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대관자의 준수사항)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서울갤러리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이용자가 서울갤러리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의 경우에는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 대관자가 책임을 진다.
② 대관자는 대관기간에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서울갤러리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서울갤러리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서울갤러리 정책의 방향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서울갤러리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울갤러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홍보, 시민 참여와 소통, 문화체험 등을 위한 전시, 공연, 행사 등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3. 서울갤러리 소관 담당 국장
4. 그 밖에 시장이 서울갤러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울갤러리 업무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

⑦ 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운영·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서울갤러리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울갤러리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용시간, 휴관일, 대관, 이용료 및 편의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서울갤러리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 이 조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8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서울갤러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갤러리 내부에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652호

서울특별시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지정(변경)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변경된 자전거도로 노선 지정 고시를 실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창경궁로(서측)' 자전거도로 유형변경
- 청계천로 182~퇴계로 235: 자전거 우선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 퇴계로 235~퇴계로 235(퇴계로4가 교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비분리)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보행자전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행자전거과(전화:02-2133-2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1) 팩 스: 02-2133-1052
(2) 이메일: kim751515@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 호

서울특별시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변경)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노선명	노선 번호	자전거 도로의 종류	도로관리청	도로구간		총길이 (㎞)	자전거 도로 너비(m)	주요 경유지	지정 (변경·폐지) 사유
				기점	종점				
창경궁로 (서측)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청계천로 182 (청계4가 사거리)	퇴계로 235	0.64	1.2		유형변경 (우선도로 → 전용차로)
창경궁로 (서측)		겸용도로 (비분리)	서울특별시	퇴계로 235	퇴계로 235 (퇴계로4가 교차로)	0.06	5.6~5.9		유형변경 (우선도로 → 겸용도로 (비분리)

□ 노선도

노선명 : 창경궁로(서측)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83호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길13구역) (경미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 (2007.11.29.)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13호(2009.8.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47호(2009.9.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56호(2010.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25호(2010.4.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69호(2010.7.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93호(2011.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58호 (2011.9.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77호(2011.9.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2호(2011.10.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53호(2011.1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6호(2012.1.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14호(2012.5.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7호(2013.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호(2013.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15호 (2013.4.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43호(2013.5.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6호(2013.5.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7호(2013.6.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97호(2013.9.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37호(2013.10.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74호(2013.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1호(2013.11.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47호(2013.12.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2(2014.8.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13호.(2014.9.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51호(2014.10.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55호.(2015.2.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4호 (2015.8.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29호(2016.08.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9호(2017.0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7호(2017.07.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61호(2017.12.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69호(2018.08.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8호(2019.04.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54호(2019.05.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38호 (2019.07.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79호(2019.11.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90호(2019.1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98호(2019.1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62호(2020.04.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90호(2020.07.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43호(2021.03.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35호(2021.05.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22호(2023.06.0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68호(2023.12.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69호(2024.10.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30호(2024.12.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5호(2025.01.16.)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신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변경)을 고시하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하여 신길13재정비촉진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길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구분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개발기간	
					기준연도	목표연도
기정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영등포구 신길동 236번지일대	736,044.4	2006	2030

2. 신길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 율(%)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736,044.4	-	736,044.4	100.0
계획기반시설	소 계	252,091.7	감) 0.7	252,091.0	34.3
	공공청사	157.2	-	157.2	0.1
	문화/복지	6,217.9	-	6,217.9	0.8
	학교시설	64,485.2	-	64,485.2	8.8
	공원·녹지	82,028.6	증) 0.5	82,029.1	11.1
	공공공지	2,339.9	-	2,339.9	0.3
	도 로	96,829.9	감) 1.2	96,828.7	13.1
	철 도	33.0	-	33.0	0.1
주거용지	소 계	450,664.9	증) 0.7	450,665.6	61.2
	공동주택	450,664.9	증) 0.7	450,665.6	61.2
기타 종교시설 등		33,287.8	-	33,287.8	4.5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변경) 사유
토지이용계획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공공재건축사업)의 분할측량 면적을 반영한 변경사항

나. 인구 · 주택 수용계획(변경)

구 분		계획 세대			계획 인구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존치지역	개별주택	-	-	-	-	-	-	-
	공동주택	482	-	482	1,301	-	1,301	존치지역 등
촉진구역 (공동주택)	소 계*	11,634	-	11,634	31,413	-	31,413	-
	40㎡ 이하	805	-	805	2,174	-	2,174	-
	40㎡~60㎡	5,020	-	5,020	13,554	-	13,554	-
	60㎡~85㎡	5,286	감) 10	5,276	14,272	감) 27	14,245	-
	85㎡ 초과	523	증) 10	533	1,413	증) 27	1,440	-
계		12,116	-	12,116	32,714	-	32,714	-

* 세대당 인구수 2.7인 (최초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시 기준,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변경) 사유
주택 규모별 세대수 변경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공공재건축사업)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규모별 주택계획 변경

다.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라. 공원 · 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계획(변경)

구 분	명 칭	개 소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 녹지 시설	소 계	36	82,028.6	증) 0.5	82,029.1	-
	근린공원	3	37,459.7	증) 0.5	37,460.2	기 설치 2개소, 1개소 신설(조성 완료)
	어린이공원	2	3,614.0	-	3,614.0	기 설치 1개소, 1개소 신설(조성 완료)
	소공원	11	21,868.6	-	21,868.6	11개소 신설 (8개소 조성 완료)
	녹 지	20	19,086.3	-	19,086.3	20개소 신설 (20개소 조성 완료)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변경) 사유
공원 · 녹지계획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공공재건축사업)의 분할측량 면적을 반영한 공원면적 변경

마. 교통계획(변경없음)

바. 경관계획(변경없음)

사.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사업의 종류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1개 구역)		553,579.6	증) 3.9	553,583.5	-	-
신길1재정비촉진구역	신길동 147-80일대	60,334.0	-	60,334.0	주택재개발사업 (공공재개발사업)	-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신길동 145-40일대	38,502.9	-	38,502.9	주택재개발사업	-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신길동 1583-1일대	76,629.9	-	76,629.9	주택재개발사업	-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신길동 2039일대	93,728.6	-	93,728.6	주택재개발사업	-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신길동 3163일대	32,287.7	-	32,287.7	주택재개발사업	-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신길동 240-16일대	74,091.1	-	74,091.1	주택재개발사업	-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신길동 3590일대	32,123.0	-	32,123.0	주택재건축사업	-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신길동 329-94일대	50,759.3	-	50,759.3	주택재개발사업	-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신길동 337-246일대	52,159.0	-	52,159.0	주택재개발사업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신길동 340-1일대	15,120.0	증) 3.9	15,123.9	주택재건축사업 (공공재건축사업)	-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신길동 347-50일대	27,844.1	-	27,844.1	주택재개발사업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변경) 사유
재정비촉진구역 면적 변경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공공재건축사업)의 분할측량 면적 반영으로 인한 구역면적 변경

아.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

1) 촉진구역 전체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구 역 명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촉진구역)	합 계	553,579.6	증) 3.9	553,583.5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17,154.6	-	17,154.6	3.1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2,534.3	-	12,534.3	2.3	-

구 역 명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제2종일반주거지역	428,591.7	증) 3.4	428,595.1	77.4	-
	제3종일반주거지역	77,740.0	감) 0.2	77,739.8	14.0	-
	준주거지역	14,271.0	증) 0.7	14,271.7	2.6	-
	근린상업지역	3,288.0		3,288.0	0.6	-

2) 촉진구역별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구 역 명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길1 재정비촉진구역	소 계	60,334.0	-	60,334.0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8,755.0	-	8,755.0	14.5	-
	제3종일반주거지역	51,579.0	-	51,579.0	85.5	-
신길3 재정비촉진구역	소 계	38,502.9	-	38,502.9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4,029.6	-	4,029.6	10.5	-
	제2종일반주거지역	34,473.3	-	34,473.3	89.5	-
신길5 재정비촉진구역	소 계	76,629.9	-	76,629.9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765.0	-	2,765.0	3.6	-
	제2종일반주거지역	73,864.9	-	73,864.9	96.4	-
신길7 재정비촉진구역	소 계	93,728.6	-	93,728.6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93,728.6	-	93,728.6	100.0	-

구 역 명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길8 재정비촉진구역	소 계	32,287.7	-	32,287.7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1,127.6	-	1,127.6	3.5	-
	제2종일반주거지역	31,160.1	-	31,160.1	96.5	-
신길9 재정비촉진구역	소 계	74,091.1	-	74,091.1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11,997.4	-	11,997.4	16.2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448.3	-	448.3	0.6	-
	제2종일반주거지역	61,645.4	-	61,645.4	83.2	-
신길10 재정비촉진구역	소 계	32,123.0	-	32,123.0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6,111.0	-	6,111.0	19.0	-
	제3종일반주거지역	26,012.0	-	26,012.0	81.0	-
신길11 재정비촉진구역	소 계	50,759.3	-	50,759.3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47,471.3	-	47,471.3	93.5	-
	근린상업지역	3,288.0	-	3,288.0	6.5	-
신길12 재정비촉진구역	소 계	52,159.0	-	52,159.0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516.0	-	516.0	1.0	-
	제2종일반주거지역	51,643.0	-	51,643.0	99.0	-
신길13 재정비촉진구역	소 계	15,120.0	증) 3.9	15,123.9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50.0	-	50.0	0.3	-
	제2종일반주거지역	650.0	증) 3.4	653.4	4.3	-
	제3종일반주거지역	149.0	감) 0.2	148.8	1.0	-
	준주거지역	14,271.0	증) 0.7	14,271.7	94.4	-
신길14 재정비촉진구역	소 계	27,844.1	-	27,844.1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27,844.1	-	27,844.1	100.0	-

※ 용도지역 변경은 사업시행을 전제로 수립된 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효력 발생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변경) 사유
면적 변경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공공재건축사업)의 분할측량 면적을 반영한 단순 면적 변경

자.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 건폐율 및 높이등에 관한 건축계획(변경없음)

구 역 명	주용도	상한용적률 (%)	건폐율 (%)	높이계획		비고
				공동주택 (평균/최고)	최고높이 (m)	
신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50%이하	-/45	150	공공재개발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1/32	112	-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2/29	94	-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2/27	97	-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2/27	91	-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2/29	103	-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50%이하	- /29	103	-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232%이하	60%이하	19/25	91	-

구 역 명	주용도	상한용적률 (%)	건폐율 (%)	높이계획		비고
				공동주택 (평균/최고)	최고높이 (m)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0/29	103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공동주택**	**450%이하**	**60%이하**	**- /49**	**170**	**공공재건축**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2/28	94	-

※ 신길3,5,6,7,8,9,12,14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의 기준용적률 및 상한용적률은 소형주택을 추가로 건립하는 경우임 (서울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 라인' (2010.6)에 따름)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의 상한용적률은 공공재건축 정비사업의 공공주택을 확보하여 완화받는 법적상한용적률임

차.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구 분	구역면적 (㎡)	기반시설면적(㎡)					비고
		계획기반 시설등면적 ①	계획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③	유상매입 시설 ④	순부담면적(㎡) (①-②-③-④)	
신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60,334.00	14,655.80	2,148.00	5,264.00	-	7,243.80 (12.0%)	-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38,502.90	7,723.00	1,070.40	1,313.04	-	5,339.56 (13.9%)	-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76,629.90	17,164.30	207.90	1,576.00	-	15,380.40 (20.1%)	-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93,728.60	21,524.00	-	3,830.00	4,199.70	13,494.30 (14.4%)	-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32,287.70	6,652.90	44.00	909.60	-	5,699.30 (17.7%)	-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74,091.10	20,308.20	4,348.90	7,110.10	-	8,849.20 (11.9%)	-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32,123.00	6,317.50	13.00	3,299.00	-	3,005.50 (9.4%)	-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50,759.30	10,996.70	1,493.00	2,564.00	-	6,939.70 (13.7%)	-

구 분		구역면적(㎡)	기반시설면적(㎡) 계획기반 시설등면적 ①	계획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③	유상매입 시설 ④	순부담면적(㎡) (①-②-③-④)	비고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52,159.00	14,656.40	644.20	4,273.40	-	9,738.80 (18.7%)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기정	15,120.00	2,694.90	56.00	359.60	-	2,279.30 (15.1%)	-
	변경	15,123.90	*2,698.40	62.90	359.60	-	2,275.90 (15.1%)	-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27,844.10	5,002.30	52.00	1,071.00	-	3,879.30 (13.9%)	-
계	기정	553,579.60	127,696.00	10,077.40	31,569.74	4,199.70	81,849.16 (14.8%)	-
	변경	553,583.50	127,699.50	10,084.30	31,569.74	4,199.70	81,845.76 (14.8%)	-

※ 유상매입 시설 : 계획 기반시설 중 유상매입 시설 면적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내 계획 기반시설 면적은 토지(도로, 공원) 외 공공청사 복합화(입체적결정)에 따른 부속토지 및 건축물 환산 면적(277.2㎡), 재가노인복지시설 부속토지 및 건축물 환산 면적(490.4㎡), 공영주차장 부속토지 및 건축물 환산 면적(211.3㎡)포함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공공시설' (공공임대주택(정비계획 용적률 완화를 위한 공공기여)) 부속토지 및 건축물 환산면적(867.3㎡)도 포함함

카.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구분	구 분	계획세대수(세대)	분양주택(세대)	임대주택(세대)	비고
기정	합 계	11,634	9,451	2,183	-
변경		11,634	9,454	2,180	-
기정	신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483	1,042	441	-
기정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799	649	150	-
기정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546	1,260	286	-
기정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722	1,533	189	-
기정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641	522	119	-
기정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476	1,210	266	-
기정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812	734	78	-
기정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949	777	172	-
기정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008	824	184	-
기정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586	399	*187	-

구분	구 분	계획세대수(세대)	분양주택(세대)	임대주택(세대)	비고
변경		586	402	*184	-
기정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612	501	111	-

* 공공재건축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 완화를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중 공공에서 인수하여 분양하는 '공공분양' 도 공공에서 활용하는 주택(예:첫 집 주택등)으로 임대주택 항목으로 분류함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 경 사 유
분양 및 임대 세대수 변경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공공재건축사업) 공공기여 계획 및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분양 및 임대 세대수 변경

타.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변경없음)

파.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하.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거.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변경없음)

너.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1) 신길1재정비촉진계획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2) 신길3재정비촉진계획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3) 신길5재정비촉진계획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4) 신길7재정비촉진계획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5) 신길8재정비촉진계획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6) 신길9재정비촉진계획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7) 신길10재정비촉진계획 정비계획(주택재건축사업) (변경없음)
8) 신길11재정비촉진계획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9) 신길12재정비촉진계획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10) 신길13재정비촉진계획 정비계획(주택재건축사업) (변경)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구 분	촉진사업 명칭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공공재건축사업)	신길동 340-1일대	15,120	증) 3.9	15,123.9	서고445 (07.11.29.)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변경) 사유
재정비촉진구역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공공재건축사업) 분할측량 면적 반영에 따른 구역 면적 변경

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변경)

▌기정

<table>
<tr><td>추정비례율</td><td>•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종후자산 추정금액 - 추정사업비) / 종전자산 총액 X 100%
• 추정비례율 : 92.84% ⇒ (4,034억 - 2,557억) / 1,590억 X 100% = 92.84%
- 종후자산 추정금액 : 4,034억
- 추정 사업비 : 2,557억
- 종전자산 추정금액 : 1,590억</td></tr>
<tr><td>개별종전자산
추정액</td><td>• 개별 공시가격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 공시가격 확인
• 개별 공시지가 : 서울시 일사편리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에서 개별 공시지가 확인
- 공동주택 소유자 : 공동주택 공시가격 ÷ 현실화율(0.59)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토지평가액 포함)
- 단독주택 및 토지소유자 : 개별공시지가 ÷ 현실화율(0.58)
- 상가소유자 : 개략단가(약 330 ~ 1,100만원/㎡) X 연면적
(※상가 개략단가의 경우 인근 거래시세를 반영하여 추정하였으며, 토지평가액 포함)</td></tr>
<tr><td>추정분담금
산출</td><td>•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table>
<tr><th colspan="2">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th><th>추정 권리가액(b)</th><th>추정 분담금(a-b)</th></tr>
<tr><td>전용59㎡</td><td>6.24억</td><td rowspan="3">개별 종전자산 추정액X
추정비례율(92.84%)</td><td rowspan="3">권리자 분양가 추정액-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td></tr>
<tr><td>전용84㎡</td><td>8.76억</td></tr>
<tr><td>전용104㎡</td><td>10.54억</td></tr>
</table></td></tr>
</table>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table>
<tr><td>추정비례율</td><td>•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종후자산 추정금액 - 추정사업비) / 종전자산 총액 X 100%
• 추정비례율 : 100.75% ⇒ (5,123억 - 3,224억) / 1,885억 X 100% = 100.75%
- 종후자산 추정금액 : 5,123억
- 추정 사업비 : 3,224억
- 종전자산 추정금액 : 1,885억</td></tr>
<tr><td>개별종전자산
추정액</td><td>• 개별 공시가격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 공시가격 확인
• 개별 공시지가 : 서울시 일사편리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에서 개별 공시지가 확인
- 공동주택 소유자 :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X 보정률(2.01)
(※변경 전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실거래가와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배율을 종합 참작)
- 단독주택 : 이용상황, 구조별 건물의 재조달원가 산정 후, 경과년도 및 잔존내용년수를 감안하고 감가수정하여 건물가격 추정
- 토지소유자 : 2007년 개별공시지가 X 보정률(4.59)
(※용도지역 변경 전인 2007년 개별공시지가에 일정 보정률을 곱하여 추정)
- 상가소유자 : 인근 유사 상가의 실거래가를 참고하여 층별·호별 효용차이를 반영하여 가격 추정</td></tr>
<tr><td>추정분담금
산출</td><td>•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table>
<tr><th colspan="2">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th><th>추정 권리가액(b)</th><th>추정 분담금(a-b)</th></tr>
<tr><td>전용45㎡</td><td>5.78억</td><td rowspan="24">개별 종전자산 추정액X
추정비례율(100.75%)</td><td rowspan="24">권리자 분양가 추정액-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td></tr>
<tr><td>전용59㎡A</td><td>8.27억</td></tr>
<tr><td>전용59㎡B</td><td>8.43억</td></tr>
<tr><td>전용59㎡C</td><td>8.30억</td></tr>
<tr><td>전용59㎡D</td><td>8.21억</td></tr>
<tr><td>전용84㎡A</td><td>10.44억</td></tr>
<tr><td>전용84㎡A-1</td><td>9.58억</td></tr>
<tr><td>전용84㎡B</td><td>10.25억</td></tr>
<tr><td>전용84㎡B-1</td><td>10.44억</td></tr>
<tr><td>전용84㎡C</td><td>10.01억</td></tr>
<tr><td>전용84㎡C-1</td><td>10.07억</td></tr>
<tr><td>전용84㎡D</td><td>10.32억</td></tr>
<tr><td>전용84㎡D-1</td><td>9.66억</td></tr>
<tr><td>전용84㎡E</td><td>10.48억</td></tr>
<tr><td>전용84㎡F</td><td>10.42억</td></tr>
<tr><td>전용84㎡F-1</td><td>9.72억</td></tr>
<tr><td>전용84㎡G</td><td>10.33억</td></tr>
<tr><td>전용84㎡G-1</td><td>9.66억</td></tr>
<tr><td>전용94㎡</td><td>10.95억</td></tr>
<tr><td>전용104㎡</td><td>12.44억</td></tr>
</table>
</td></tr>
</table>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변경) 사유
분담금 추산액 변경	• 분양 및 임대주택 세대수 변경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변경

다)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5,120.0	증) 3.9	15,123.9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849.0	증) 3.2	852.2	5.6	-
	도 로	792.0	증) 2.7	794.7	5.2	기부채납
	공 원	57.0	증) 0.5	57.5	0.4	
택 지 (획 지)	소 계	14,271.0	증) 0.7	14,271.7	94.4	-
	획 지	14,271.0	증) 0.7	14,271.7	94.4	공동주택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변경) 사유
면적 변경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공공재건축사업) 분할측량 면적을 반영한 면적 변경

라)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3	71	12	집산도로	472 (145)	신길동 426-3 (신길동 340-1)	신길동 336-2 (신길동 340-4)	일반도로	-	서고105 (83.2.24)	-
기정	소로	2	8	8	집산도로	155 (40)	신길동 424-3 (신길동253-259)	신길동 340-1 (신길동253-254)	일반도로	-	서고445 (07.11.29)	-

※ 연장 및 위치 내( )는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내 수치임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주차장	공영주차장	신길동 340-13일대	800.0 (수평투영면적)	감) 64.35	735.65 (수평투영면적)	서고568 (23.12.28)	*입체적결정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따름

▌주차장①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입체적 결정 범위(규모)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주차장	신길동 340-13일대	수평투영면적(㎡)	800.0	감) 64.35	735.65	서고568 (23.12.28)	건축물 복합화 (아파트 지하부 지하2층 주차장 복합화)
				높이(층)	지하2층	-	지하2층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 경 내 용	결정(변경) 사유
주차장1 (공영주차장)	• 공영주차장 면적 및 시설 선형 변경	• 건축물(복합화) 기부채납 시설로 지하층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및 시설 선형 변경

(2) 공간시설(변경)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	신길 공원	근린공원	신길동 426-3 (신길동 425-31)	19,604.9 (57)	증) 0.5	19,605.4 (57.5)	건고258 (82.7.12)	촉진지구 내:12,245.6㎡ 촉진지구 외:7,359.8㎡

※ ( )는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내 면적임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 경 내 용	결정(변경) 사유
근린공원2 (신길공원)	• 근린공원 면적 변경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공공재건축사업) 분할측량 면적 반영에 따른 공원 면적 변경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6	공공청사	-	신길동 253-259일대	420.0 (수평투영 면적)	감) 1.46	418.54 (수평투영 면적)	서고568 (23.12.28)	*입체적 결정 (치안센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따름

▌공공청사⑥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입체적 결정 범위(규모)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6	공공청사	신길동 253-259일대	수평투영 면적(㎡)	420.0	감) 1.46	418.54	서고568 (23.12.28)	건축물 복합화 (아파트 저층부 지상1층 공공청사 복합화)
				높이(층)	지상1층	-	지상1층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 경 내 용	결정(변경) 사유
공공청사6	• 공공청사 면적 및 시설 선형 변경	• 건축물(복합화) 기부채납 시설로 지상층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및 시설 선형 변경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관리사무소		영등포구 신길동 340-1번지일대	105.47	증) 54.37	159.84	지상
주민 공동 시설	소계		2,784.00	증) 347.47	3,131.47	-
	주민공동시설		610.00	증) 67.52	677.52	지하
	지역문화센터		95.00	증) 33.28	128.28	지하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105.00	증) 37.54	142.54	지하
	작은도서관		160.00	감) 1.68	158.32	지하
	보육시설(어린이집)		405.00	증) 127.21	532.21	지상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실내형 어린이놀이터		217.00	증) 0.97	217.97	지하
	경로당		330.00	증) 83.60	413.60	지상
	주민운동시설		252.00	-	252.00	옥외
	어린이놀이터		610.00	감) 0.97	609.03	옥외

※ 변경사유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공공재건축사업)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 따라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경우 주민공동시설을 세대당 2.5㎡ 더한 면적의 1.25배 이상 확보 = 586세대 × 2.5 × 1.25 = 1,831.25㎡ 이상 < 3,131.47㎡ 계획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

바)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1)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변경없음)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기정	신길13 재정비 촉진구역	15,120.0	획지 (공동주택)	14,271.0	영등포구 신길동 340-1번지 일대	9	-	-	9	-	-
변경		15,123.9		14,271.7							

※ 정비구역 및 획지의 면적 변경으로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은 변경 없음

(2) 건축시설계획(변경)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층수)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기준	정비계획	법적상한	
기정	신길13 재정비 촉진구역	15,120.0	획지	14,271.0	신길동 340-1번지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등	60	210	247.1	450.0	170 (49층)
변경		15,123.9		14,271.7				210	247.7	450.0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구 역 구 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 치</th><th rowspan="2">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colspan="3">용적률(%)</th><th rowspan="2">높이(m)
(층수)</th></tr>
<tr><th>명 칭</th><th>면적(㎡)</th><th>명 칭</th><th>면적(㎡)</th><th>기준</th><th>정비계획</th><th>법적상한</th></tr>
<tr><td rowspan="2">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기정</td><td colspan="10">
• 주택공급계획 총 586세대
<table>
<tr><th colspan="2">구분(전용면적)</th><th>세대수</th><th>비율(%)</th><th>비고</th></tr>
<tr><td colspan="2">계</td><td>586</td><td>100.0</td><td>(공공주택 187세대)</td></tr>
<tr><td rowspan="2">85㎡이하</td><td>60㎡이하</td><td>247</td><td>42.2</td><td>(공공주택 130세대)</td></tr>
<tr><td>60~85㎡이하</td><td>306</td><td>52.2</td><td>(공공주택 57세대)</td></tr>
<tr><td colspan="2">85㎡초과</td><td>33</td><td>5.6</td><td></td></tr>
</table>
• 85㎡이하(국민주택규모) 주택 전체세대수의 60%이상 건립(계획 94.4%)
• 주택규모 계획에서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말함
공공주택(촉진사업 의무)건설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름
공공주택(공공기여)건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1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19조에 따름
공공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건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6에 따름
</td></tr>
<tr><td>변경</td><td colspan="10">
• 주택공급계획 총 586세대
<table>
<tr><th colspan="2">구분(전용면적)</th><th>세대수</th><th>비율(%)</th><th>비고</th></tr>
<tr><td colspan="2">계</td><td>586</td><td>100.0</td><td>(공공주택 184세대)</td></tr>
<tr><td rowspan="2">85㎡이하</td><td>60㎡이하</td><td>247</td><td>42.2</td><td>(공공주택 126세대)</td></tr>
<tr><td>60~85㎡이하</td><td>296</td><td>50.5</td><td>(공공주택 58세대)</td></tr>
<tr><td colspan="2">85㎡초과</td><td>43</td><td>7.3</td><td></td></tr>
</table>
• 85㎡이하(국민주택규모) 주택 전체세대수의 60%이상 건립(계획 92.7%)
• 주택규모 계획에서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말함
공공주택(촉진사업 의무)건설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름
공공주택(공공기여)건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1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19조에 따름
공공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건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6에 따름
</td></tr>
<tr><td>심의완화사항</td><td colspan="10">•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6) : 법적상한용적률 450.0%</td></tr>
<tr><td>건축물의 건축선등에
관한 계획</td><td colspan="10">• 남서측변 5m, 북측변 3m
(※자세한 위치는 도면 참조)</td></tr>
<tr><td>기타사항에
관한 계획</td><td colspan="10">• 공공보행통로:남서측(12m도로)~북측(8m도로) 연계의 공공보행통로 폭원10m 계획
• 차량출입구: 남측 교차부 및 북서측 교차부의 중앙에 차량출입구 계획
(※자세한 위치는 도면 참조)</td></tr>
</table>

▌ 용적률 계획

▷ 기정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7">산정내용</th></tr>
<tr><td rowspan="2">토지이용계획</td><td rowspan="2">합 계
(구역면적)</td><td rowspan="2">획지
(공동주택)</td><td colspan="3">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등</td><td rowspan="2">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td><td rowspan="2">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td></tr>
<tr><td>소계</td><td>토지
(부속토지포함)</td><td>건축물
(환산부지)</td></tr>
<tr><td>15,120.0</td><td>14,271.0</td><td>2,694.9</td><td>1,922.0</td><td>772.9</td><td>56.0</td><td>359.6</td></tr>
<tr><td>공공시설등
제공 면적
(순부담)</td><td colspan="7">•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등 면적 -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 2,694.9㎡ - 56.0㎡ - 359.6㎡ = 2,279.3㎡ (15.1%)</td></tr>
<tr><td>공공시설 등
토지 면적
(부속토지포함)</td><td colspan="7">• 토지 : 도로 792.0㎡ / 공원 57.0㎡
• 건축물 기부채납(공공청사) 부속토지 : 116.3㎡
• 건축물 기부채납(공공임대업무시설) 부속토지 : 247.7㎡
• 건축물 기부채납(공영주차장) 부속토지 : 235.9㎡
• 건축물 기부채납(공공기여 공공주택) 부속토지 : 473.1㎡</td></tr>
<tr><td>공공시설등
건축물 면적
(환산부지)</td><td colspan="7">• 건축물 기부채납(공공청사) 환산부지 면적 : 162.6㎡ (※공급연면적 420.0㎡)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 ÷ ㉯용적률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 = 건축연면적* × 설치비용 기준주1)
= 420.0㎡ × 3,753,636원/㎡ = 1,576,527,273원
: ㉯ = 공시지가주5) × 2
= 4,848,664 × 2 = 9,697,328원/㎡
• 건축물 기부채납(공공임대업무시설) 환산부지 면적 : 182.6㎡ (※공급연면적 840.0㎡)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 ÷ ㉯용적률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 = 건축연면적* × 설치비용 기준주2)
= 840.0㎡ × 2,108,182원/㎡ = 1,770,872,727원
: ㉯ = 공시지가주5) × 2
= 4,848,664 × 2 = 9,697,328원/㎡
• 건축물 기부채납(공영주차장) 환산부지 면적 : 73.2㎡ (※공급연면적 800.0㎡)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 ÷ ㉯용적률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 = 건축연면적* × 설치비용 기준주3)
= 800.0㎡ × 887,273원/㎡ = 709,818,182원
: ㉯ = 공시지가주5) × 2
= 4,848,664 × 2 = 9,697,328원/㎡
• 건축물 기부채납(공공기여 공공주택) 환산부지 면적 : 354.5㎡ (※공급연면적 2,130.36㎡)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 ÷ ㉯용적률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 = 건축연면적* × 설치비용 기준주4)
= (전용59㎡ 12세대) 1,527.03㎡ × 1,035,636원/㎡ = 1,581,444,801원</td></tr>
</table>

구 분	산정내용
	= (전용84㎡ 10세대) 1,792.60㎡ X 1,034,909원/㎡ = 1,855,177,323원 : ㉯ = 공시지가주5) X 2 = 4,848,664 X 2 = 9,697,328원/㎡
공공시설등 건축물 면적 (환산부지)	*설치비용 산정 건축연면적 = 계약연면적 주1) 2022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 : 4,129,000원/㎡ (공공업무사무소 연면적 500㎡ 미만)의 부가세 제외 후 산정 주2) 2024년 과밀부담금 부과 표준건축비(국토부고시 제2023-794호) : 2,319,000원/㎡ (지하층 건축비)의 부가세 제외 후 산정 주3) 2024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국토부고시 제2024-118호) : 976,000원/㎡ (지하층 건축비)의 부가세 제외 후 산정 주4)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부고시 제2023-64호)의 부가세 제외 후 산정 : (전용59㎡) 1,139,200원/㎡, (전용84㎡) 1,138,400원/㎡ 주5) 건축허가시점 직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2023.01. 기준) (대상지 내 평균공시지가)
기준용적률	• 210%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 (정비계획 용적률)	• 공공시설등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도시계획국, '2021.11.)」 적용
	• 상한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1+1.3×가중치[주6])×α(토지)+0.7×α(건축물)) = 210% X (1+1.3×0.9159×0.1141 + 0.7×0.0586) = 247.15% **⇒ 정비계획 용적률 = 247.1% 이하**
	α (토지): α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면적[주7]/공공시설등 부지(토지)제공 후 부지면적 = 1,506.4㎡ / 13,198.0㎡ = 0.1141 α (건축물): α =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환산부지)/공공시설등 부지(토지)제공 후 부지면적 = 772.9㎡ / 13,198.0㎡ = 0.0586
	주6) 가중치 = 192% / 210% = 0.9159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등 부지의 해당용적률) 주7)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면적 = '기부채납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부속토지' 포함
법적상한용적률 (촉진계획 상한용적률)	• 450.0%이하

▷ 변경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7">산정내용</th></tr>
<tr><td rowspan="2">토지이용계획</td><td rowspan="2">합 계
(구역면적)</td><td rowspan="2">획지
(공동주택)</td><td colspan="3">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등</td><td rowspan="2">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td><td rowspan="2">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td></tr>
<tr><td>소계</td><td>토지
(부속토지포함)</td><td>건축물
(환산부지)</td></tr>
<tr><td>15,123.9</td><td>14,271.7</td><td>2,698.4</td><td>1,629.8</td><td>1,068.6</td><td>62.9</td><td>359.6</td></tr>
<tr><td>공공시설등
제공 면적
(순부담)</td><td colspan="7">•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등 면적 -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 2,698.4㎡ - 62.9㎡ - 359.6㎡ = 2,275.9㎡ (15.1%)</td></tr>
<tr><td>공공시설 등
토지 면적
(부속토지포함)</td><td colspan="7">• 토지 : 도로 794.7㎡ / 공원 57.5㎡
• 건축물 기부채납(공공청사) 부속토지 : 80.5㎡
• 건축물 기부채납(재가노인복지시설) 부속토지 : 161.3㎡
• 건축물 기부채납(공영주차장) 부속토지 : 141.6㎡
• 건축물 기부채납(공공기여 공공주택) 부속토지 : 394.2㎡</td></tr>
<tr><td>공공시설등
건축물 면적
(환산부지)</td><td colspan="7">• 건축물 기부채납(공공청사) 환산부지 면적 : 196.7㎡ (※연면적 467.98㎡)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 ÷ ㉯용적률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 = 건축연면적* × 설치비용 기준[주1)]
= 467.98㎡ × 4,128,181원/㎡ = 1,931,906,144원
: ㉯ = 공시지가[주5)] × 2
= 4,910,983 × 2 = 9,821,966원/㎡
• 건축물 기부채납(재가노인복지시설) 환산부지 면적 : 329.1㎡ (※연면적 838.35㎡)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 ÷ ㉯용적률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 = 건축연면적* × 설치비용 기준[주2)]
= 838.35㎡ × 3,855,454원/㎡ = 3,232,219,861원
: ㉯ = 공시지가[주5)] × 2
= 4,910,983 × 2 = 9,821,966원/㎡
• 건축물 기부채납(공영주차장) 환산부지 면적 : 69.7㎡ (※연면적 735.65㎡)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 ÷ ㉯용적률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 = 건축연면적* × 설치비용 기준[주3)]
= 735.65㎡ × 930,909원/㎡ = 684,823,273원
: ㉯ = 공시지가[주5)] × 2
= 4,910,983 × 2 = 9,821,966원/㎡
• 건축물 기부채납(공공기여 공공주택) 환산부지 면적 : 473.1㎡ (※연면적 2,761.59㎡)
1) 지상층 : 385.8㎡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 ÷ ㉯용적률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 = 건축연면적* × 설치비용 기준[주4)]
= (전용59㎡ 12세대) 1,012.16㎡ × 2,100,000원/㎡ = 2,125,540,706원</td></tr>
</table>

구 분	산정내용
	= (전용84㎡ 7세대) 828.68㎡ × 2,007,273원/㎡ = 1,663,378,386원 : ㉯ = 공시지가[주5] × 2 = 4,910,983 × 2 = 9,821,966원/㎡
공공시설등 건축물 면적 (환산부지)	2) 지하층 : 87.3㎡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 ÷ ㉯용적률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 = 건축연면적* × 설치비용 기준[주3] = 920.75㎡ × 930,909원/㎡ = 857,137,698원 : ㉯ = 공시지가[주5] × 2 = 4,910,983 × 2 = 9,821,966원/㎡ *설치비용 산정 건축연면적 = 계약연면적 주1) 2024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 : 4,541,000원/㎡ (공공업무사무소 연면적 500㎡ 미만)의 부가세 제외 후 산정 주2) 2024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 : 4,241,000원/㎡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2,000㎡ 미만)의 부가세 제외 후 산정 주3) 2025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지하층)(국토부고시 제2025-93호) : 1,024,000원/㎡의 부가세 제외 후 산정 주4) 2025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지상층)(국토부고시 제2025-93호) : (전용59㎡) 50㎡초과 60㎡ 이하(31~35층이하) 2,310,000원/㎡의 부가세 제외 후 산정 : (전용84㎡) 60㎡초과 85㎡ 이하(31~35층이하) 2,208,000원/㎡의 부가세 제외 후 산정 주5) 건축허가시점 직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2024.01. 기준) (대상지 내 평균공시지가)
기준용적률	• 210% (2010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 (정비계획 용적률)	• 공공시설등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도시계획국, '2025.03.)」 적용**
	• 상한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1+1.3×가중치[주6]×α(토지)+0.7~1.0×α(건축물)) = 210% × (1+1.3×0.9158×0.0895 + 0.7×0.0197 + 1.0×0.0594)= 247.75% ⇒ **정비계획 용적률 = 247.7% 이하** (※공공청사,공영주차장:0.7 / 재가노인복지시설,임대주택:1.0)
	α (토지): α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면적[주7]/공공시설등 부지(토지)제공 후 부지면적 = 1,207.3㎡ / 13,494.1㎡ = 0.0895
	α (건축물): α =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환산부지)/공공시설등 부지(토지)제공 후 부지면적 = 1,068.6㎡ / 13,494.1㎡ = 0.0792

	주6) 가중치 = 192% / 210% = 0.9158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등 부지의 해당용적률) 주7)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면적 = '기부채납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부속토지' 포함
법적상한용적률 (촉진계획 상한용적률)	• 450.0%이하

(3) 공공시설 기부채납 계획 및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변경) 조서

구분	구분	시설명	위치	기부채납 면적(㎡)		세부용도	관리청	비고
				대지지분	건축물연면적			
기정	1	공공청사	신길동 253-259 일대	116.3	420.0 (환산 162.6)	치안센터	서울특별시	'25.2.11. 소유권 변동 (국유지 일괄교환)
변경				80.5	467.98 (환산 196.7)		경찰청	
기정	2	공공임대 업무시설	신길동 253-259 일대	247.7	840.0 (환산 182.6)	-	서울특별시	-
변경		**재가노인 복지시설**		161.3	838.35 (환산 329.1)	**데이케어센터**		
기정	3	주차장	신길동 340-136 일대	235.9	800.0 (환산 73.2)	공용주차장	영등포구	-
변경				141.6	735.65 (환산 69.7)			

※ 향후 토지평가 및 건축계획등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층고, 형태는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용도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됨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변경) 사유
기부채납 시설 용도 및 면적 변경 등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공공재건축사업) 기부채납 시설 일부 용도 변경, 건축계획 변경으로 인한 기부채납 시설 면적 및 선형 변경 -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제공 연면적 및 대지지분 변경, 부지가액 및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현실화 등에 따른 건축물 환산면적 변경

사)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아)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고
기정	주택재건축사업 (공공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변경)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이내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동시행]	현황) 167세대 증) 419세대 변경) 586세대	-	-

자)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차)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가구	면적(㎡)	획지			비고
			구분	위치	면적(㎡)	
기정	-	14,271.0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40-1번지 일대	14,271.0	공동주택
변경		14,271.7			14,271.7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변경) 사유
면적 변경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공공재건축사업) 분할측량 면적을 반영한 가구 및 획지의 면적 변경

카) 공공주택(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1) 공공주택(임대주택) 공급계획

구분			총 세대수	촉진사업 의무 공공주택					기부채납 공공주택					국민주택규모 주택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공공주택 중 임대주택)				
				소계	40㎡ 이하	40~50㎡	50~60㎡	60~85㎡	소계	40㎡ 이하	40~50㎡	50~60㎡	60~85㎡	소계	40㎡ 이하	40~50㎡	50~60㎡	60~85㎡
주택 공급 계획	기정	세대수	107	6	-	-	4	2	22	-	-	12	10	79	-	-	53	26
		비율(%)	100.0	5.6	-	-	3.7	1.9	20.6	-	-	11.2	9.4	73.8	-	-	49.5	24.3
	변경	세대수	110	6	-	-	4	2	19	-	-	12	7	85	-	-	59	26
		비율(%)	100.0	5.4	-	-	3.6	1.8	17.3	-	-	10.9	6.4	77.3	-	-	53.7	23.6
		공급유형		장기전세주택등 6세대					장기전세주택등 19세대					장기전세주택등 85세대				

※ 공공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은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공주택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은 동일(유사)한 규모와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특정 동층 라인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도록 건설하고, 임대주택의 선정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함

※ 공공기여 및 용적률 완화로 공급되는 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40㎡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은 장기전세주택등으로 공급하여, 장기전세주택의 50%는 미리내집으로 활용

(2) 재정비촉진사업 증가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변경)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세대수	세대규모			비 고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공급연면적	계약연면적
기정	획 지	14,271.0	-	소 계	6세대			556.96㎡	867.53㎡
				4세대	59.98㎡	81.81㎡	127.25㎡	327.22㎡	509.01㎡
				2세대	84.98㎡	114.87㎡	179.26㎡	229.74㎡	358.52㎡
변경	획 지	14,271.7	-	소 계	6세대			551.55㎡	861.22㎡
				4세대	59.85㎡	81.04㎡	126.34㎡	324.16㎡	505.35㎡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세대수	세대규모			비 고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공급연면적	계약연면적
				2세대	84.88㎡	113.69㎡	177.93㎡	227.39㎡	355.87㎡
기정	의무면적	• 재정비촉진사업(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3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 = [촉진계획 용적률(정비계획 247.1%) - 기반시설 완화로 인한 용적률(37.1%) - 촉진지구 지정 당시 용적률 199%(가중평균)] X 30% = 3.3% (연면적 470.94㎡) **≦ 계획 3.9% (연면적 556.96㎡)**							
변경		• 재정비촉진사업(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3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 = [촉진계획 용적률(정비계획 247.7%) - 기반시설 완화로 인한 용적률(37.7%) - 촉진지구 지정 당시 용적률 199%(가중평균)] X 30% = 3.3% (연면적 470.97㎡) **≦ 계획 3.9% (연면적 551.55㎡)**							

(3) 공공기여 임대주택 (정비계획 용적률 완화를 위한 기부채납) (변경)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세대수	세대규모			비 고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공급연면적	계약연면적
기정	획지	14,271.0	-	소 계	**22세대**			2,130.36㎡	3,319.63㎡
				12세대	59.98㎡	81.81㎡	127.25㎡	981.66㎡	1,527.03㎡
				10세대	84.98㎡	114.87㎡	179.26㎡	1,148.70㎡	1,792.60㎡
변경	획지	14,271.7	-	소 계	**19세대**			1,768.34㎡	2,761.59㎡
				12세대	59.85㎡	81.04㎡	126.34㎡	972.49㎡	1,516.05㎡
				7세대	84.88㎡	113.69㎡	177.93㎡	795.85㎡	1,245.54㎡

(4) 공공재건축사업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도시정비법 101조의6 공공분양, 공공임대) (변경)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세대수		세대규모			비 고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공급연면적	계약연면적
기정	획지	14,271.0	-	소계		159세대			14,494.93㎡	22,573.46㎡
				공공분양	계	80세대			7,172.64㎡	11,168.33㎡
					61세대	59.98㎡	81.81㎡	127.25㎡	4,990.11㎡	7,762.39㎡
					19세대	84.98㎡	114.87㎡	179.26㎡	2,182.53㎡	3,405.94㎡
				공공임대	계	79세대			7,322.29㎡	11,405.13㎡
					53세대	59.98㎡	81.81㎡	127.25㎡	4,335.67㎡	6,744.37㎡
					26세대	84.98㎡	114.87㎡	179.26㎡	2,986.62㎡	4,660.76㎡
변경	획지	14,271.7	-	소계		**159세대**			14,508.98㎡	22,643.80㎡
				공공분양	계	74세대			6,760.07㎡	10,549.99㎡
					30세대	59.85㎡	81.04㎡	126.34㎡	2,431.22㎡	3,790.13㎡
					21세대	59.99㎡	81.61㎡	127.02㎡	1,713.91㎡	2,667.37㎡
					23세대	84.88㎡	113.69㎡	177.93㎡	2,614.94㎡	4,092.49㎡
				공공임대	계	85세대			7,748.91㎡	12,093.81㎡
					39세대	59.85㎡	81.04㎡	126.34㎡	3.160.59㎡	4,927.17㎡
					20세대	59.99㎡	81.61㎡	127.02㎡	1.632.29㎡	2,540.35㎡
					26세대	84.88㎡	113.69㎡	177.93㎡	2.956.03㎡	4,626.29㎡

▌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의무면적

▷ 기정

구분		주요내용	비고
정비계획용적률		• 247.1%	상한 250%
법적상한용적률		• 450.0%	-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의무기준	용적률 증가분	• 450.0% - 247.1% = 202.9%	-
	의무용적률 (증가된 용적률의 50%)	• 202.9% × 0.5 = 101.45%	-
	의무 연면적	• 101.45% × 14,271.0㎡ = 14,477.93㎡이상	-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확보 계획		• 159세대 (14,494.93㎡) = 의무면적 14,477.93㎡ < 확보면적 14,494.93㎡	의무이상 확보

구분	주요내용	비고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제공 방법	• 의무 용적률(101.45%) 중 50% 이상 공공임대 확보 • 공공임대 50.5%, 연면적 7,238.96㎡ 이상 공공분양 : 80세대(용적률 50.26%, 연면적 7,172.64㎡) 공공임대 : 79세대(용적률 51.31%, 연면적 7,322.29㎡)	공공분양:공공임대=5: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6에 따른 공공재건축사업 시 적용

▷ 변경

구분		주요내용	비고
정비계획용적률		• 247.7%	-
법적상한용적률		• 450.0%	-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의무기준	용적률 증가분	• 450.0% - 247.7% = 202.3%	-
	의무용적률 (증가된 용적률의 50%)	• 202.3% × 0.5 = 101.15%	-
	의무 연면적	• 101.15% × 14,271.7㎡ = 14,435.82㎡이상	-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확보 계획		• 159세대 (14,508.98㎡) ⇒ 의무면적 14,435.82㎡ < 확보면적 14,508.98㎡	의무이상 확보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제공 방법		• 의무용적률(101.15%) 중 50% 이상 공공임대 확보 • 공공임대 53.4%, 연면적 7,217.91㎡이상 공공분양 : 74세대 (용적률 47.36%, 6,760.07㎡) 공공임대 : 85세대 (용적률 54.30%, 7,748.91㎡)	공공분양:공공임대 = 5: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6에 따른 공공재건축사업 시 적용

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36,044.4	-	736,044.4	100.0	-
주거 지역	소 계	732,529.6	-	732,529.6	99.5	-
	제1종일반주거지역	41,255.9	-	41,255.9	5.6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04,780.4	-	104,780.4	14.2	-
	제2종일반주거지역	452,788.0	감) 0.7	452,787.3	61.5	-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제3종일반주거지역	119,019.6	-	119,019.6	16.2	-
	준주거지역	14,685.7	증) 0.7	14,686.4	2.0	-
근린상업지역		3,514.8	-	3,514.8	0.5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변경) 사유
면적 변경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공공재건축사업)의 분할측량 면적을 반영한 단순 면적 변경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1	53	35	간선 도로	1,550 (459)	문래동 광장 (신길동 397-2)	신길동 광장 (신길동 426)	일반 도로	-	건고393 (78.12.7)	도림로
기정	대로	2	54	30	간선 도로	3,050 (710)	신길동 대로3-28	구로공단 (신길동 347-65)	일반 도로	-	건고393 (78.12.7)	가마산로
기정	대로	3	28	25~30	주간 선로	2,780 (786)	영등포동 (신길동 233-71)	신도림동 (신길동 3599-3)	일반 도로	-	건고177 (62.12.8)	신길로
기정	대로	3	134	25~30	간선 도로	1,000 (591)	신길동382 (신길동 740)	신길동 235-2	일반 도로	-	서고378 (78.7.31)	가마산로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314	신길동 337-390	신길동 335-17	일반 도로	-	영등포구고시 제2005-22호 (05.4.7)	존치지역 (신길5주택 건설사업)
기정	중로	2	2	9~22	집산 도로	180 (173)	신길동 1190	신길동 2093	일반 도로	-	서고445 (07.11.29)	5구역
기정	중로	2	4	15~18	집산 도로	110	신길동 335-23	신길동 325-49	일반 도로	-	서고445 (07.11.29)	11구역
기정	중로	2	34	13.5~15	보조간선	1,650 (390)	신길동 115-1	신길동 2363	일반 도로	-	건고2493 (66.6.21)	존치지역
기정	중로	2	151	15~17	집산 도로	571 (63)	신길동 2099 (신길동 3002)	신길동 3517	일반 도로	-	서고156 (91.5.31)	7,8,9,10구역
기정	중로	2	5	15	집산 도로	263	신길동 518	신길동 1673	일반 도로	-	서고445 (07.11.29)	5구역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3	3	12~16	집산도로	280 (257)	신길동 2857 (신길동 2862)	신길동 3187	일반 도로	-	서고445 (07.11.29)	7,10구역
기정	중로	3	63	12~20	집산도로	268	신길동 335-17	신길동 342-88	일반 도로	-	서고683 (87.9.24)	11,14구역
기정	**중로**	**3**	**71**	**12**	**집산도로**	**472**	**신길동 426-3**	**신길동 336-2**	**일반 도로**	**-**	**서고105 (83.2.24)**	**12,13구역**
기정	중로	3	152	12	집산도로	299	신길동 3183-28	신길동 242-14	일반 도로	-	서고156 (91.5.31)	8,9구역
기정	중로	3	A	12 ~20	집산도로	58	신길동 155-34	신길동 162-19	일반 도로	-	서고7 (72.1.7)	1구역
기정	중로	3	B	8~12	집산도로	670 (261)	신길동 209-102	신길동 135	일반 도로	-	건고768 (64.1.24)	1구역
기정	소로	1	4	10	집산도로	269	신길동 329-57	신길동 263-5	일반 도로	-	서고105 (83.2.24)	11구역
기정	소로	1	65	10	집산도로	28	신길동 252-9	신길동 252-11	일반 도로	-	서고105 (83.2.24)	11구역
기정	소로	2	2	8	집산도로	321	신길동 253-318	신길동 337-255	일반 도로	-	영등포구고시 제2005-22호 (05.4.7)	존치지역 (신길5주택 건설사업)
기정	소로	2	6	8~10	집산도로	128	신길동 2372	신길동 2340	일반 도로	-	서고445 (07.11.29)	7구역
기정	소로	2	7	8~10	집산도로	243	신길동 337-209	신길동 253-330	일반 도로	-	서고445 (07.11.29)	12구역
기정	**소로**	**2**	**8**	**8**	**집산도로**	**155**	**신길동 424-3**	**신길동 340-1**	**일반 도로**	**-**	**서고445 (07.11.29)**	**13구역**
기정	소로	2	12	8	집산도로	180	신길동 237	신길동 242	일반 도로	-	서고51 (82.2.4)	9구역
기정	소로	2	69	8~9.5	집산도로	114	신길동 253-69	신길동 329-57	일반 도로	-	서고105 (83.2.24)	11구역
기정	소로	2	106	8	집산도로	125 (7)	신길동 117-1	신길동 114-45	일반 도로	-	건고768 (64.1.24)	1구역
기정	소로	2	153	8	집산도로	162	신길동 341-1	신길동 400-16	일반 도로	-	서고331 (90.9.28)	존치지역
기정	소로	2	A	8	국지도로	128	신길동 114-45	신길동 155-9	일반 도로	-	서고630 (24.12.26)	1구역
기정	소로	2	B	8	집산도로	272 (169)	신길동 157-64	신길동 159-38	일반 도로	-	건고768 (64.1.24)	1구역
기정	소로	2	C	8	국지도로	193	신길동 158-118	신길동 205-67	일반 도로	-	서고630 (24.12.26)	1구역
기정	소로	3	5	4	특수도로	165	신길동 541	신길동 1637	보행자 전용도로	-	서고445 (07.11.29)	보행자 전용도로

※ 연장 및 위치 내 ( )는 촉진지구 내 수치임

▌철도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철도	고속철도 (신풍역)	신길동 3599 일대	6,623.5	-	6,623.5	서고77 (93.3.18)	신풍역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주차장	공영주차장	신길동 340-13일대	800.0 (수평투영면적)	감) 64.35	735.65 (수평투영면적)	서고568 (23.12.28)	*입체적결정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따름

▌주차장①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입체적 결정 범위(규모)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주차장	신길동 340-13일대	수평투영면적(㎡)	800.0	감) 64.35	735.65	서고568 (23.12.28)	건축물 복합화 (아파트 지하부 지하2층 주차장 복합화)
				높이(층)	지하2층	-	지하2층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 경 내 용	결정(변경) 사유
주차장1 (공영주차장)	• 공영주차장 면적 및 시설 선형 변경	• 건축물(복합화) 기부채납 시설로 지하층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및 시설 선형 변경

나) 공간시설(변경)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메낙골	근린공원	신길동 893 일대	17,229.7 (11,050.6)	-	17,229.7 (11,050.6)	총독부고시208 (40.03.12.)	3구역(4,029.6㎡) 존치지역(7,021.0㎡)
변경	**2**	**신길공원**	**근린공원**	**신길동 426-3**	**19,604.9 (12,245.1)**	**증)0.5**	**19,605.4 (12,245.6)**	**건고258 (82.7.12)**	**13구역(57.5㎡)**
기정	4	-	근린공원	신길동 243-58 일대	14,164.0	-	14,164.0	서고445 (07.11.29)	8구역(1,127.6㎡) 9구역(12,166.4㎡) 존치지역(870.0㎡)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제1호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신길동 337-88	1,633.0	-	1,633.0	영등포구고시 제2005-22호 (05.4.7)	존치지역 (신길5주택건설사업)
기정	2	-	어린이 공원	신길동 541 일대	1,981.0	-	1,981.0	서고445 (07.11.29)	5구역
기정	5	-	소공원	신길동 2296 일대	1,498.1	-	1,498.1	서고445 (07.11.29)	5구역
기정	6	-	소공원	신길동 2306 일대	140.4	-	140.4	서고445 (07.11.29)	5구역
기정	7	-	소공원	신길동 2135 일대	1,024.1	-	1,024.1	서고445 (07.11.29)	7구역
기정	8	-	소공원	신길동 3584 일대	3,969.7	-	3,969.7	서고445 (07.11.29)	7구역(199.3㎡) 10구역(3,770.4㎡)
기정	9	-	소공원	신길동 3126 일대	2,348.6	-	2,348.6	서고445 (07.11.29)	8구역
기정	10	-	소공원	신길동 3403 일대	2,133.8	-	2,133.8	서고445 (07.11.29)	9구역
기정	12	-	소공원	신길동 336-317 일대	2,523.2	-	2,523.2	서고445 (07.11.29)	12구역
기정	13	-	소공원	신길동 335-10 일대	1,661.4	-	1,661.4	서고445 (07.11.29)	11구역
기정	14	-	소공원	신길동 335-34 일대	2,001.3	-	2,001.3	서고445 (07.11.29)	14구역
기정	A	-	소공원	신길동 154-13 일대	2,113.0	-	2,113.0	서고630 (24.12.26)	1구역
기정	B	-	소공원	신길동 202-212 일대	2,455.0	-	2,455.0	서고630 (24.12.26)	1구역

※( )는 촉진지구 내 면적임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 경 내 용	결정(변경) 사유
근린공원2 (신길공원)	• 근린공원 면적 변경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공공재건축사업) 분할측량 면적 반영에 따른 공원 면적 변경

▌녹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7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02-109 일대	726.3	-	726.3	서고445 (07.11.29)	3구역
기정	8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46-18 일대	709.8	-	709.8	서고445 (07.11.29)	3구역
기정	9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40-6 일대	1,274.3	-	1,274.3	서고445 (07.11.29)	3구역
기정	10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42-9 일대	735.3	-	735.3	서고445 (07.11.29)	3구역
기정	12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964 일대	2,551.8	-	2,551.8	서고445 (07.11.29)	5구역
기정	14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577 일대	29.0	-	29.0	서고445 (07.11.29)	5구역
기정	15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560 일대	182.5	-	182.5	서고445 (07.11.29)	5구역
기정	17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121 일대	1,226.6	-	1,226.6	서고445 (07.11.29)	7구역
기정	18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241 일대	1,620.0	-	1,620.0	서고445 (07.11.29)	7구역(962.3㎡) 8구역(657.7㎡)
기정	19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888 일대	1,215.7	-	1,215.7	서고445 (07.11.29)	7구역(1,100.7㎡) 10구역(115㎡)
기정	20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835 일대	314.5	-	314.5	서고445 (07.11.29)	7구역
기정	21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183-156 일대	811.2	-	811.2	서고445 (07.11.29)	8구역
기정	22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516 일대	1,288.4	-	1,288.4	서고445 (07.11.29)	9구역
기정	26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37-6 일대	298.1	-	298.1	서고445 (07.11.29)	12구역
기정	27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36-204 일대	1,425.9	-	1,425.9	서고445 (07.11.29)	12구역
기정	28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36-257 일대	811.7	-	811.7	서고445 (07.11.29)	12구역
기정	29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37-400 일대	582.1	-	582.1	서고445 (07.11.29)	12구역
기정	30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26-6 일대	170.7	-	170.7	서고445 (07.11.29)	11구역
기정	31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25-43 일대	250.0	-	250.0	서고445 (07.11.29)	11구역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2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26-9 일대	1,250.4	-	1,250.4	서고445 (07.11.29)	14구역
기정	-	녹지1	경관녹지	신길동 142-41 일대	483.0	-	483.0	서고135 (01.5.4)	존치지역
기정	-	녹지2	연결녹지	신길동 1795-29 일대	1,129.0	-	1,129.0	서고29 (06.1.19)	존치지역

▌공공공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공공공지	신길동 253-312 일대	153.0	-	153.0	영등포구고시 제2005-22호 (05.4.7)	존치지역 (신길5주택 건설사업)
기정	17	공공공지	신길동 425-28	62.9	-	62.9	서고445 (07.11.29)	존치지역
기정	18	공공공지	신길동 3569 일대	624.0	-	624.0	서고154 (19.5.23)	9구역
기정	A	공공공지	신길동 137-31 일대	1,500.0	-	1,500.0	서고630 (24.12.26)	채납행정청(관리청) : 서울특별시 (1구역)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5	공공청사	-	신길동 349-3 일대	157.2	-	157.2	서고445 (07.11.29)	파출소
변경	**6**	**공공청사**	**-**	**신길동 253-259일대**	**420.0 (수평투영 면적)**	**감) 1.46**	**418.54 (수평투영 면적)**	**서고568 (23.12.28)**	**치안센터 (입체적 결정*)**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따름

▌공공청사⑥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입체적 결정 범위(규모)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6	공공청사	신길동 253-259일대	수평투영 면적(㎡)	420.0	감) 1.46	418.54	서고568 (23.12.28)	건축물 복합화 (아파트 저층부 지상1층 공공청사 복합화)
				높이(층)	지상1층	-	지상1층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 경 내 용	결정(변경) 사유
공공청사6	• 공공청사 면적 및 시설 선형 변경	• 건축물(복합화) 기부채납 시설로 지상층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및 시설 선형 변경

▌학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	학교	초등학교	신길7동 550 일대	21,598.0	-	21,598.0	서교위76 (88.12.21)	대방
기정	3	학교	초등학교	신길5동 341-1	32,888.0	-	32,888.0	서고683 (87.7.10)	대영
	4	학교	중학교	신길5동 342-29	대영초에 포함	-	대영초에 포함	서고4546 (85.7.10)	대영
	5	학교	고등학교	신길5동 342	대영초에 포함	-	대영초에 포함	서고4546 (85.7.10)	대영
기정	7	학교	중학교	신길동 2064 일대	9,999.2	-	9,999.2	서고445 (07.11.29)	-
기정	8	학교	유치원	신길동 339-34 일대	2,890.0	-	2,890.0	서고445 (07.11.29)	사회복지시설②과 중복결정

▌문화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	문화시설	-	신길동 549 일대	1,027.6	-	1,027.6	서고445 (07.11.29)	-

▌도서관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도서관	신길동 252-11 일대	2,300.3	-	2,300.3	서고445 (07.11.29)	구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	사회복지시설	신길동 339-34 일대	2,890.0	-	2,890.0	서고445 (07.11.29)	학교⑧(유치원)과 중복결정

러. 광고물 관리계획(변경없음)

머.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버. 방재계획(변경없음)

서. 정보화계획(변경없음)

어. 에너지순환계획(변경없음)

저. 특성화계획(변경없음)

처. 기타(변경없음)

3. 신길13재정비촉진사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구분	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신길13재정비촉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길동 339-34 일대	15,120	증) 3.9	15,123.9	서고469 (24.10.04.)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변경) 사유
지구단위계획구역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공공재건축사업) 분할측량 면적 반영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5,120	증) 3.9	15,123.9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50	-	50	0.3	-
	제2종일반주거지역	650	증) 3.4	653.4	4.3	-
	제3종일반주거지역	149	감) 0.2	148.8	1.0	-
	준주거지역	14,271	증) 0.7	14,271.7	94.4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변경) 사유
면적 변경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공공재건축사업)의 분할측량 면적을 반영한 단순 면적 변경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위 치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3	71	12	집산도로	472 (145)	신길동 426-3 (신길동 340-1)	신길동 336-2 (신길동 340-4)	일반도로	-	서고105 (83.2.24)	-
기정	소로	2	8	8	집산도로	155 (40)	신길동 424-3 (신길동253-259)	신길동 340-1 (신길동253-254)	일반도로	-	서고445 (07.11.29)	-

※ 연장 및 위치 내( )는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내 수치임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주차장	공영주차장	신길동 340-13일대	800.0 (수평투영면적)	감) 64.35	735.65 (수평투영면적)	서고568 (23.12.28)	*입체적결정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따름

▌주차장①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입체적 결정 범위(규모)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주차장	신길동 340-13일대	수평투영면적(㎡)	800.0	감) 64.35	735.65	서고568 (23.12.28)	건축물 복합화 (아파트 지하부 지하2층 주차장 복합화)
				높이(층)	지하2층	-	지하2층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 경 내 용	결정(변경) 사유
주차장1 (공영주차장)	• 공영주차장 면적 및 시설 선형 변경	• 건축물(복합화) 기부채납 시설로 지하층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및 시설 선형 변경

2) 공간시설(변경)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	신길 공원	근린공원	신길동 426-3 (신길동 425-31)	19,604.9 **(57)**	증) 0.5	19,605.4 **(57.5)**	건고258 (82.7.12)	촉진지구 내:12,245.6㎡ 촉진지구 외:7,359.8㎡

※ ( )는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내 면적임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 경 내 용	결정(변경) 사유
근린공원2 (신길공원)	• 근린공원 면적 변경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공공재건축사업) 분할측량 면적 반영에 따른 공원 면적 변경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6	공공청사	-	신길동 253-259일대	420.0 (수평투영 면적)	감) 1.46	418.54 (수평투영 면적)	서고568 (23.12.28)	*입체적 결정 (치안센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따름

▌공공청사⑥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입체적 결정 범위(규모)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6	공공청사	신길동 253-259일대	수평투영 면적(㎡)	420.0	감) 1.46	418.54	서고568 (23.12.28)	건축물 복합화 (아파트 저층부 지상1층 공공청사 복합화)
				높이(층)	지상1층	-	지상1층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 경 내 용	결정(변경) 사유
공공청사6	• 공공청사 면적 및 시설 선형 변경	• 건축물(복합화) 기부채납 시설로 지상층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및 시설 선형 변경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1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40-1번지 일대	14,271.0	공동주택
변경				14,271.7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변경) 사유
획지면적 변경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공공재건축사업) 분할측량 면적 반영에 따른 획지 면적 변경

2)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3)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건폐율 계획(변경없음)

(2) 용적률 계획(변경)

구분	용적률			비 고
	기준	상한	법적상한	
기정	210% 이하	247.1% 이하	450.0% 이하	법정 500% 이하 (준주거지역)
변경	210% 이하	**247.7% 이하**	450.0% 이하	법정 500% 이하 (준주거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변경) 사유
상한용적률 변경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공공재건축사업) 분할측량 면적 반영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른 계획기반시설 (대지지분 및 건축물 환산면적 등) 면적 변경으로 인한 상한용적률 변경

(3) 높이 계획(변경없음)

마.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바.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사.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아.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환경관리계획(변경없음)

2)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모든 공공주택(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 공공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미각(처분) 하여야 한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라)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동시에 공개추첨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 시 서울특별시가 필히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것

마) 공공주택 혼합계획(변경)

구분			총 세대수	전체 비율(%)	조합원 및 일반분양	소계	공공주택					공공주택 비율(%)
							촉진 사업 의무	공공 기여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계	공공 분양	공공 임대	
기정	합계		586	100.0	399	187	6	22	159	80	79	31.9
	85㎡ 이하	60㎡ 이하	247	42.2	117	130	4	12	114	61	53	22.2
		60 ~ 85㎡ 이하	306	52.2	249	57	2	10	45	19	26	9.7
	85㎡ 초과		33	5.6	33	-	-	-	-	-	-	-
변경	합계		586	100.0	402	184	6	19	159	74	85	31.4
	85㎡ 이하	60㎡ 이하	247	42.2	121	126	4	12	110	51	59	21.5
		60 ~ 85㎡ 이하	296	50.5	238	58	2	7	49	23	26	9.9
	85㎡ 초과		43	7.3	43	-	-	-	-	-	-	-

▷결정(변경)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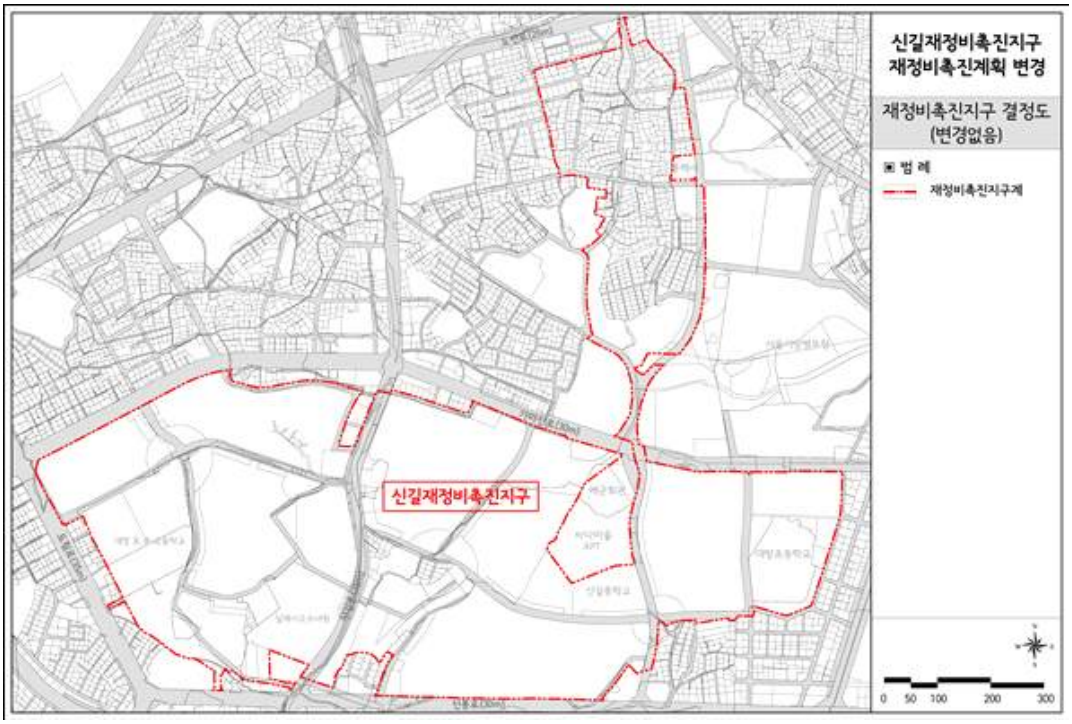
구분	결정(변경) 사유
분양 및 임대 세대수 변경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공공재건축사업) 공공기여 계획 및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분양 및 임대주택 세대수 변경

4. 관계 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지형도면(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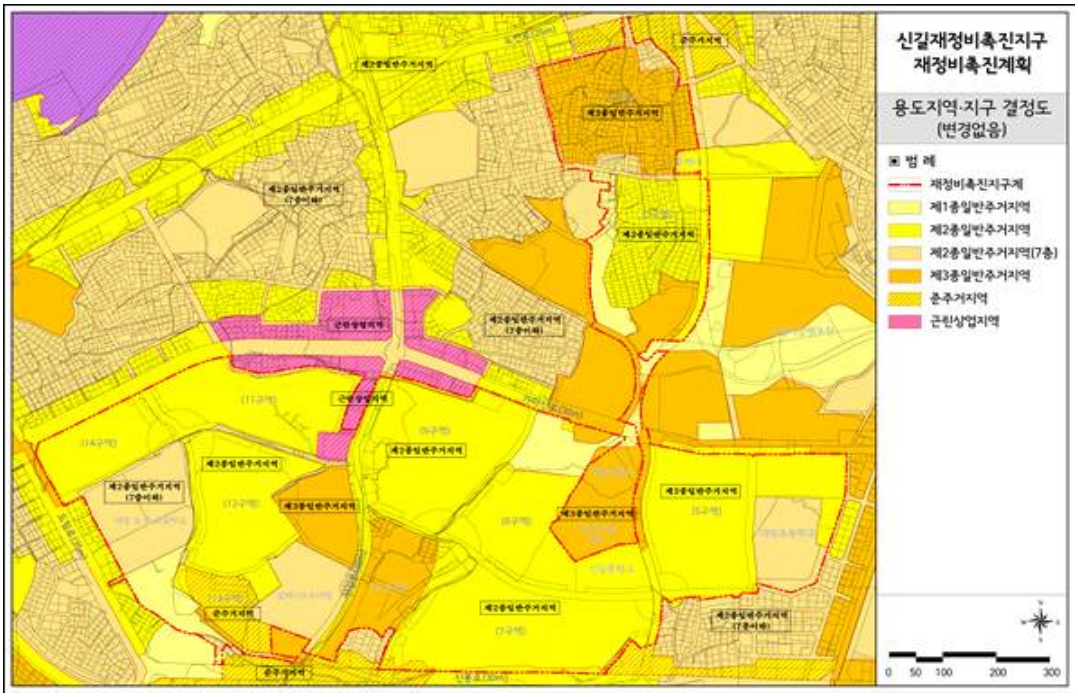
5. 열람 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과(☎02)2133-7219) 및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02)2670-3582)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 (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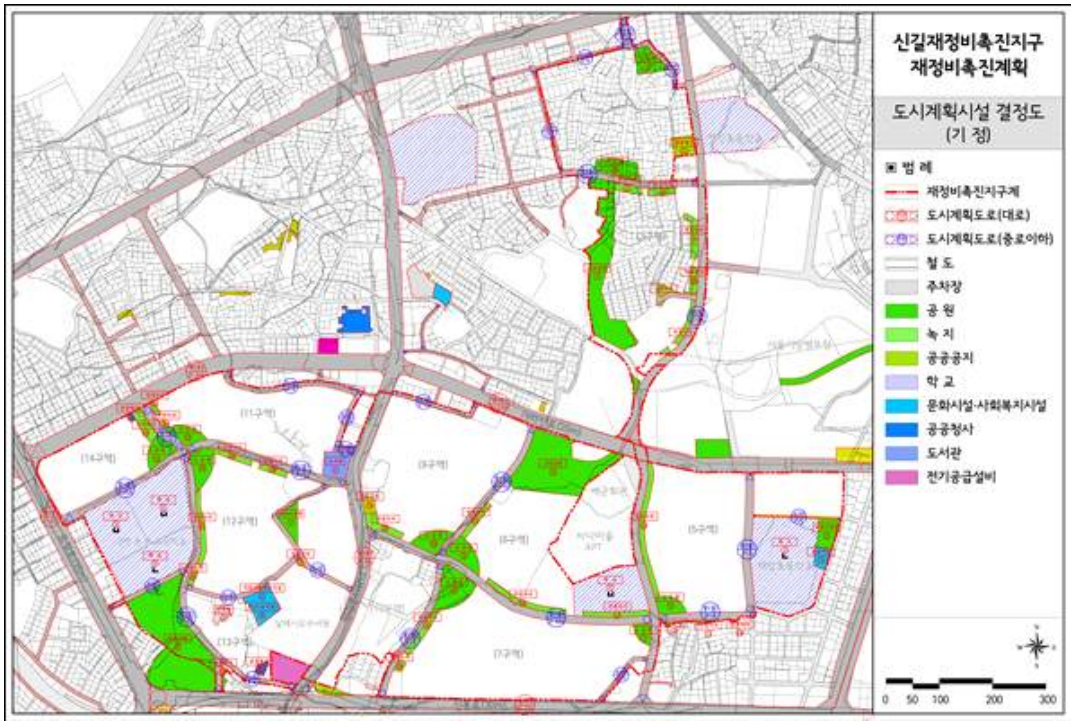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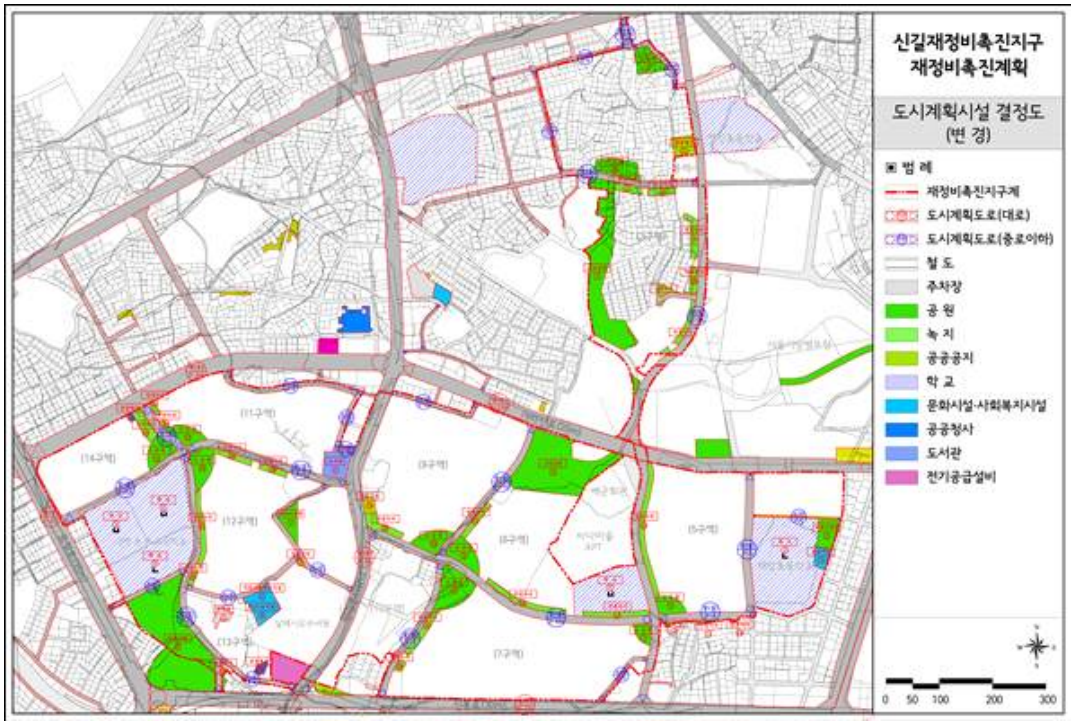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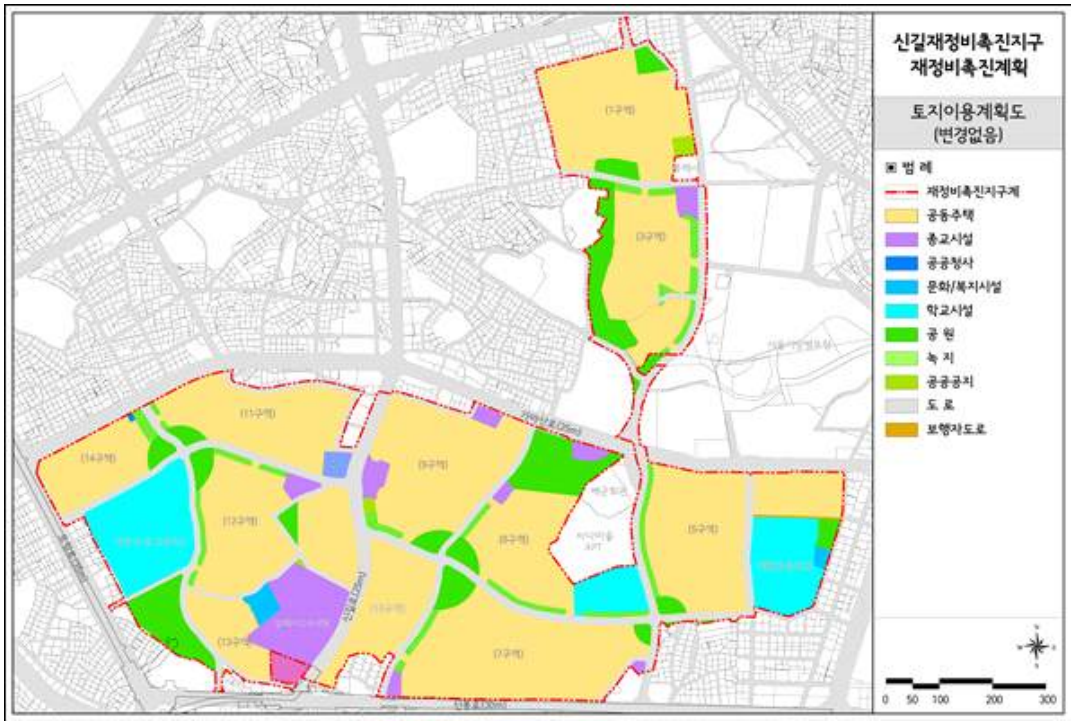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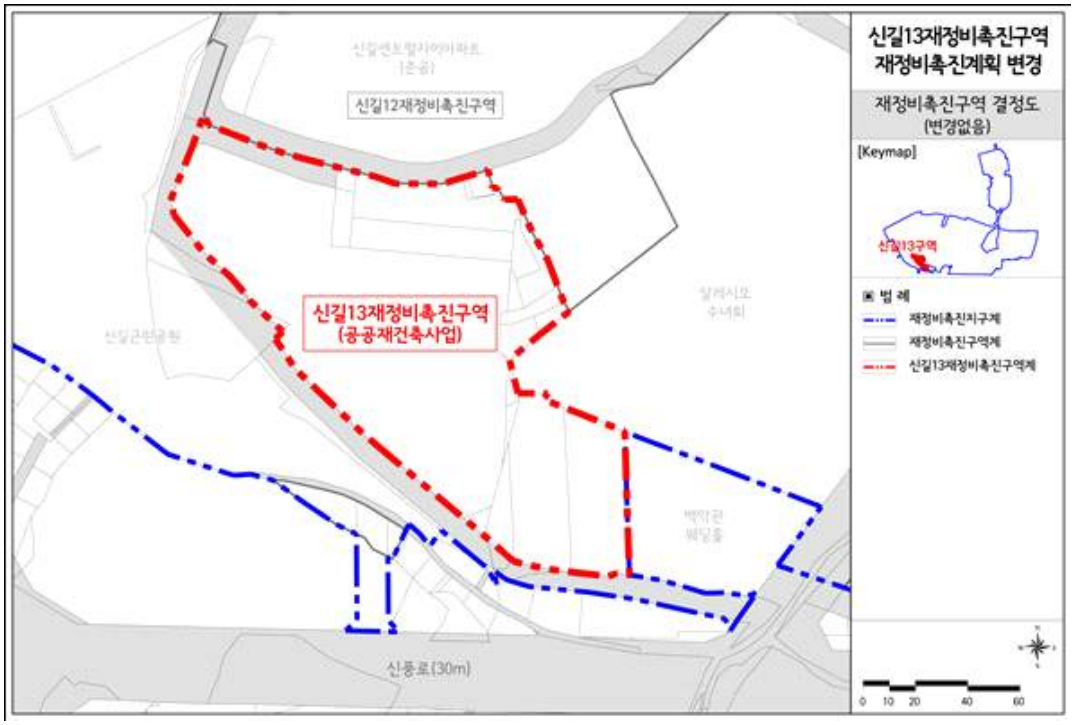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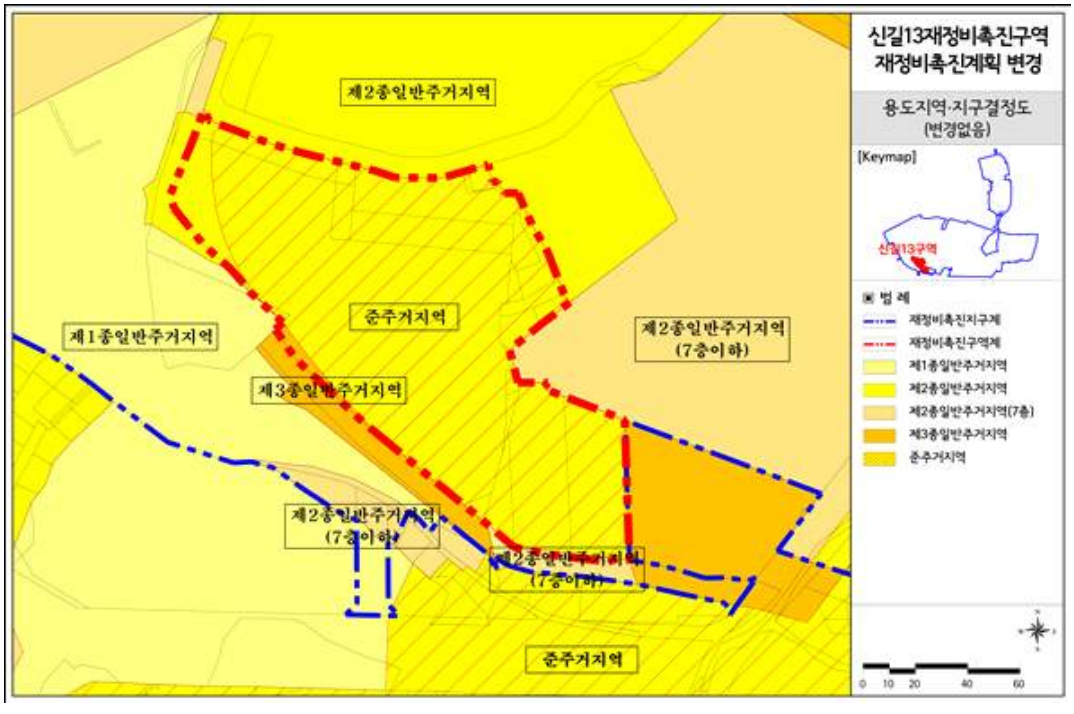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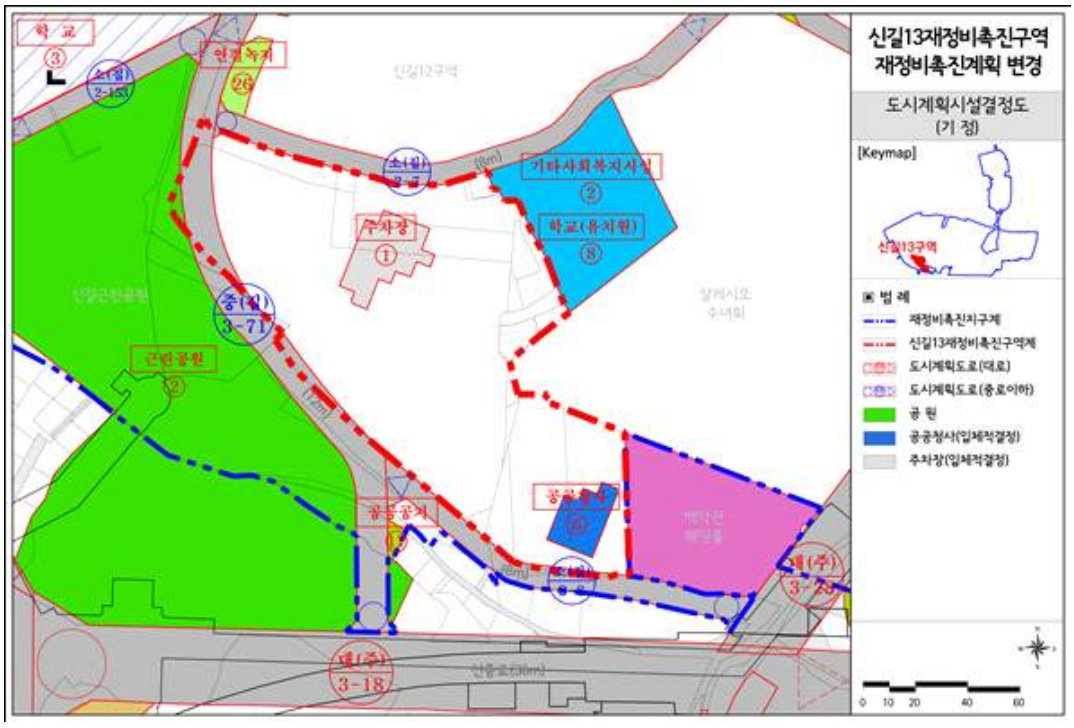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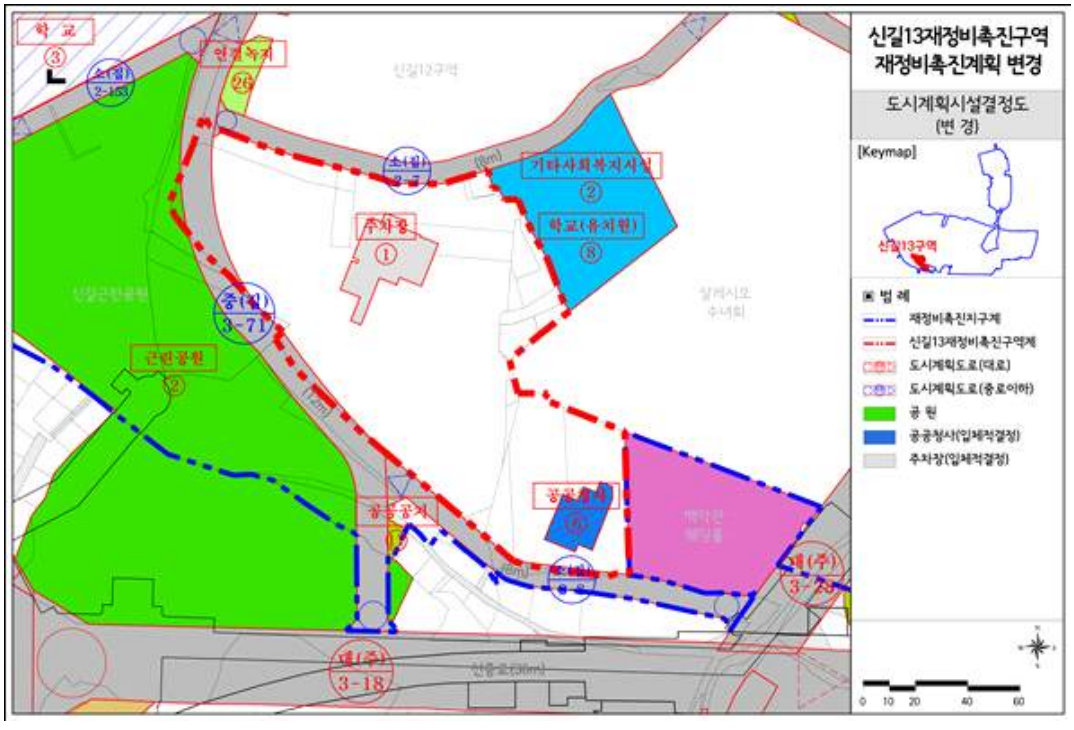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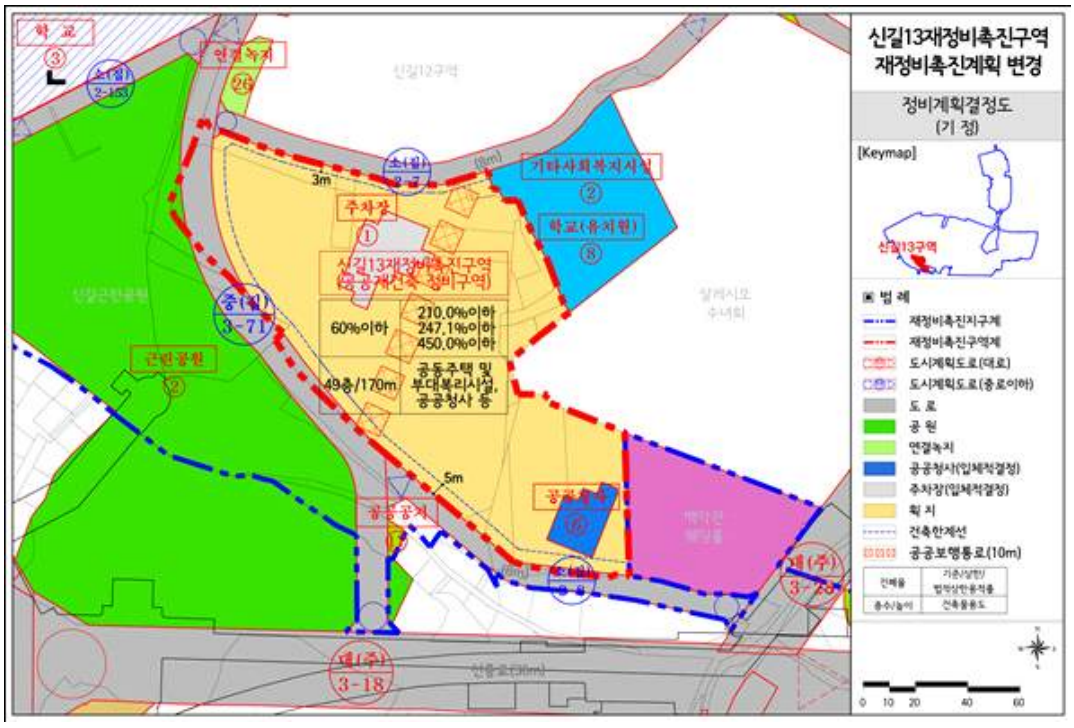
<신길1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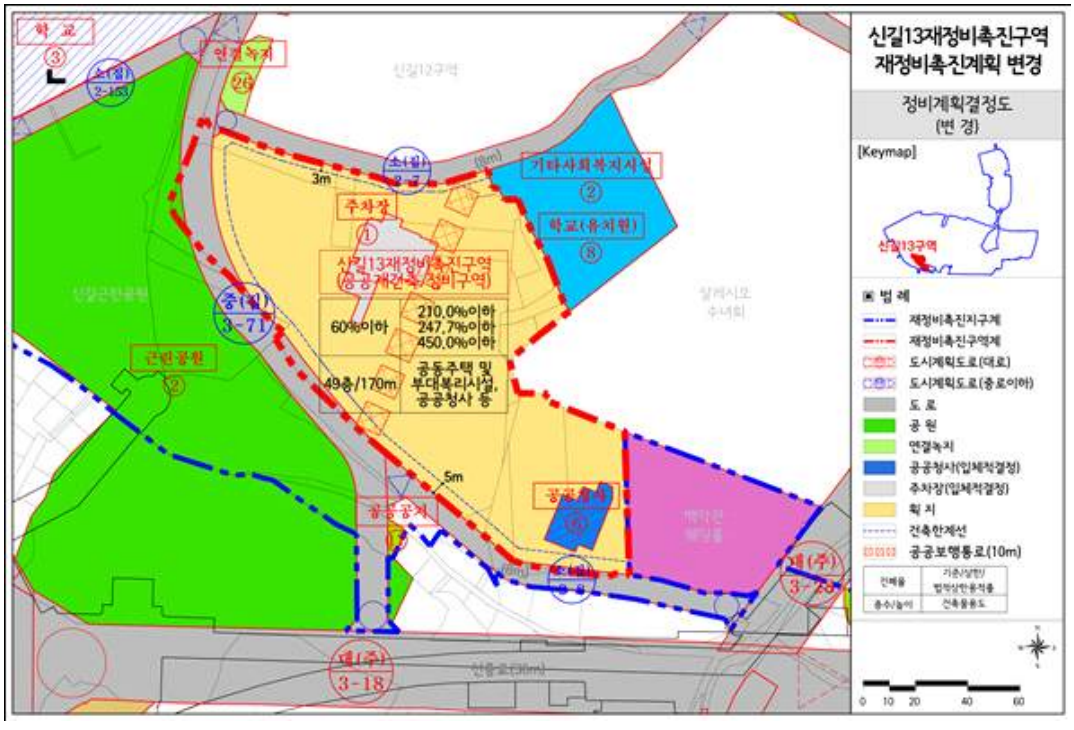
<신길1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신길13 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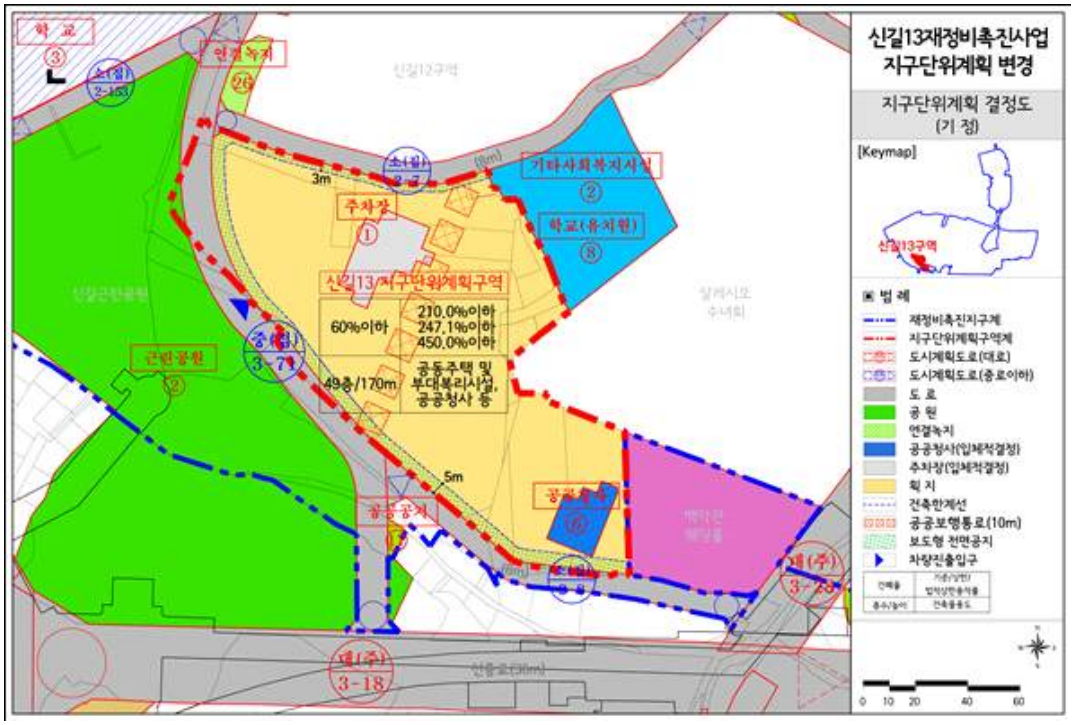


<신길13 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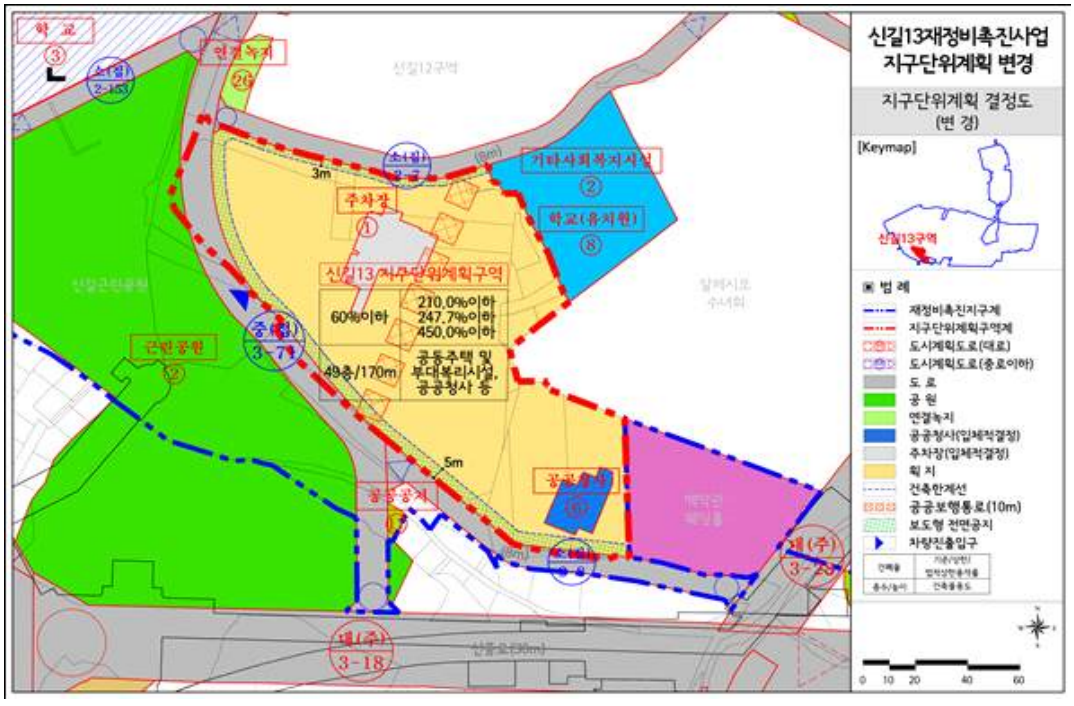


▌신길13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86호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존치관리9구역) 경미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12호(2009.8.13.)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25호(2011.1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78호(2013.3.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59호(2013.5.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67호(2013.10.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43호(2014.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28호(2014.4.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41호(2014.6.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75호(2014.1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99호(2015.4.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05호(2015.7.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5-298호(2015.9.2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74호(2017.5.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02호(2017.11.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58호(2019.5.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404호(2019.12.1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1호(2020.1.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152호(2020.4.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00호(2020.7.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62호(2020.11.1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98호(2020.12.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24호(2021.3.1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58호(2021.6.1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421호(2021.7.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08호(2021.11.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39호(2022.3.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80호(2022.4.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15호(2022.7.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463호(2022.1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45호(2023.6.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64호(2023.6.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90호(2023.12.2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68호(2024.7.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81호(2025.2.13.) 등으로 변경 결정된 상봉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 고시합니다
2.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 · 감	변경		
상봉 재정비 촉진지구	중심지형	중랑구 망우동, 상봉동 일대	505,604.2	-	505,604.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 (2006.10.19.)	-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변경없음)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라.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2) 인구 · 주택수용계획(변경없음)
3)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4) 공원 · 녹지 및 환경보존계획(변경없음)
5) 교통계획(변경없음)
6) 경관계획(변경없음)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9) 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없음)
10) 촉진사업별 용도지구 변경계획(변경없음)
11) 촉진사업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없음)
12)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변경없음)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없음)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5) 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없음)
16)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변경)

가)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 획지 결정 조서(변경)

- 기정

가구번호	지번	계획내용	비고
I	망우동 506-1 일원	506-1,-2,-24,-25,-26 획지선 지정	기정 (존치관리 9구역)
J	망우동 506-3 일원	506-6,-7 / 506-14 각각 획지선 지정	

가구번호	지번	계획내용	비고
		506-11,-12,-21,-22,-30 공동개발 지정	
		506-4,-5 / 506-13,-19 / 506-15,-16 각각 공동개발 권장	

– 변경

가구번호	지번	계획내용	비고
I	망우동 506-1 일원	506-1,-2,-24,-25,-26 획지선(변경) 지정	변경 (존치관리 9구역)
J	망우동 506-3 일원	506-6 / 506-14 각각 획지선 지정	
		506-11,-12,-21,-22,-30 공동개발 지정	
		506-4,-5 / 506-13,-19 / 506-15,-16 각각 공동개발 권장	

–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지번	변경내용	변경사유
I,J	망우동 506-1, 506-5, 506-6	• 토지 합병 (506-7 지번 삭제) - 506-6,-7 → 506-6 • 획지선 변경 - 506-1, 506-6 ※ 면적 변경	• 토지 합병 반영 •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한 획지선 변경 ※실제 토지 경계 확인 결과,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506-5,-6) 담장이 506-1번지 경계를 침범해 각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상호교환(506-1↔506-5) 및 토지 소유권 이전 (506-1→506-6)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음

구분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506-1	7,246.30	감) 6.7	7,239.6	면적 감소
506-5	256.40	증) 0.9	257.3	면적 증가
506-6	240.70	증) 5.8	246.5	면적 증가
합 계	7,743.40	0	7,743.40	변경 없음

※ 획지선 변경에 따른 면적 결정은 없음

□ 대지운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17) 기타(광고물 관리계획,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방재계획, 정보화계획, 에너지순환계획,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신재생에너지 적용계획, 특성화 계획, 여성친화적 건설계획, 친환경 건축물계획)(변경없음)

18)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나)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다)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2) 가구 결정 조서(변경)

□ 가구 계획(변경없음)

□ 획지 결정 조서(변경)

– 기정

가구번호	지번	계획내용	비고
I	망우동 506-1 일원	506-1,-2,-24,-25,-26 획지선 지정	기정 (존치관리 9구역)
J	망우동 506-3 일원	506-6,-7 / 506-14 각각 획지선 지정	
		506-11,-12,-21,-22,-30 공동개발 지정	
		506-4,-5 / 506-13,-19 / 506-15,-16 각각 공동개발 권장	

– 변경

가구번호	지번	계획내용	비고
I	망우동 506-1 일원	506-1,-2,-24,-25,-26 획지선(변경) 지정	변경 (존치관리 9구역)
J	망우동 506-3 일원	506-6 / 506-14 각각 획지선 지정	
		506-11,-12,-21,-22,-30 공동개발 지정	
		506-4,-5 / 506-13,-19 / 506-15,-16 각각 공동개발 권장	

- 결정(변경) 사유서

<table>
<tr><th>가구번호</th><th>지번</th><th>변경내용</th><th>변경사유</th></tr>
<tr><td>I,J</td><td>망우동
506-1, 506-5,
506-6</td><td>• 토지 합병 (506-7 지번 삭제)
- 506-6,-7 → 506-6
• 획지선 변경
- 506-1, 506-6

※ 면적 변경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면적</th><th rowspan="2">비고</th></tr>
<tr><th>기정</th><th>증감</th><th>변경</th></tr>
<tr><td>506-1</td><td>7,246.30</td><td>감) 6.7</td><td>7,239.6</td><td>면적 감소</td></tr>
<tr><td>506-5</td><td>256.40</td><td>증) 0.9</td><td>257.3</td><td>면적 증가</td></tr>
<tr><td>506-6</td><td>240.70</td><td>증) 5.8</td><td>246.5</td><td>면적 증가</td></tr>
<tr><td>합 계</td><td>7,743.40</td><td>0</td><td>7,743.40</td><td>변경 없음</td></tr>
</table>
※ 획지선 변경에 따른 면적 결정은 없음</td><td>• 토지 합병 반영

•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한
획지선 변경

※실제 토지 경계 확인 결과,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506-5,-6)
담장이 506-1번지 경계를 침범해
각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상호교환(506-1↔506-5) 및
토지 소유권 이전 (506-1→506-6)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음</td></tr>
</table>

(3)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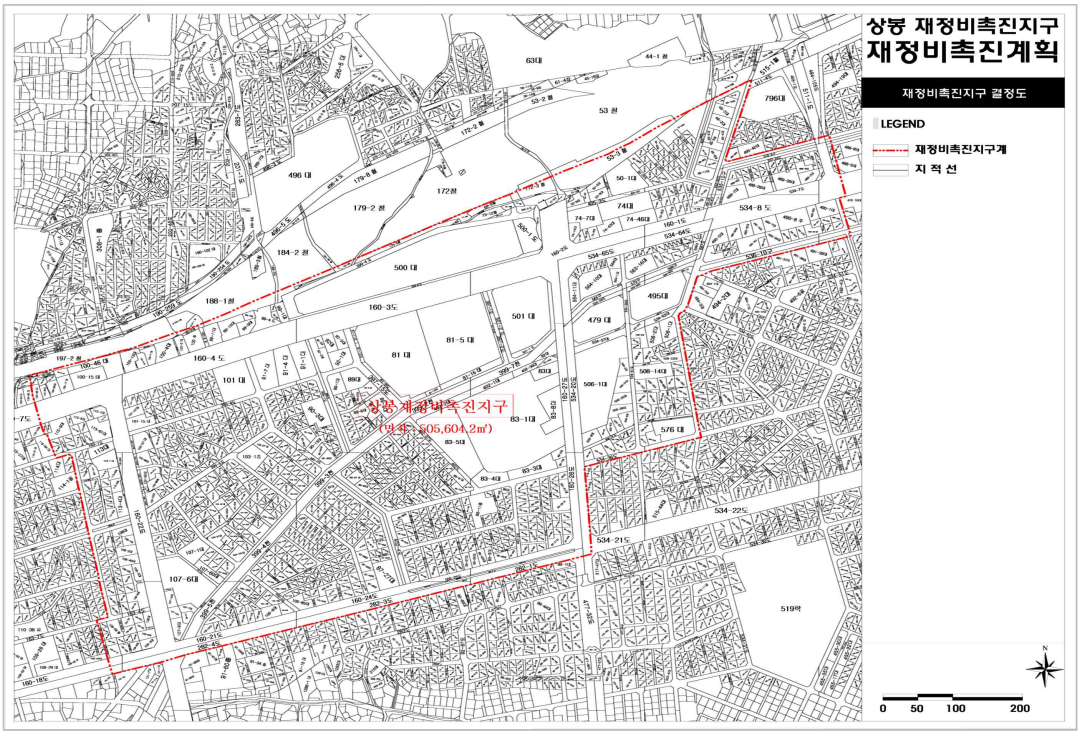
마)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Ⅱ. 기타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은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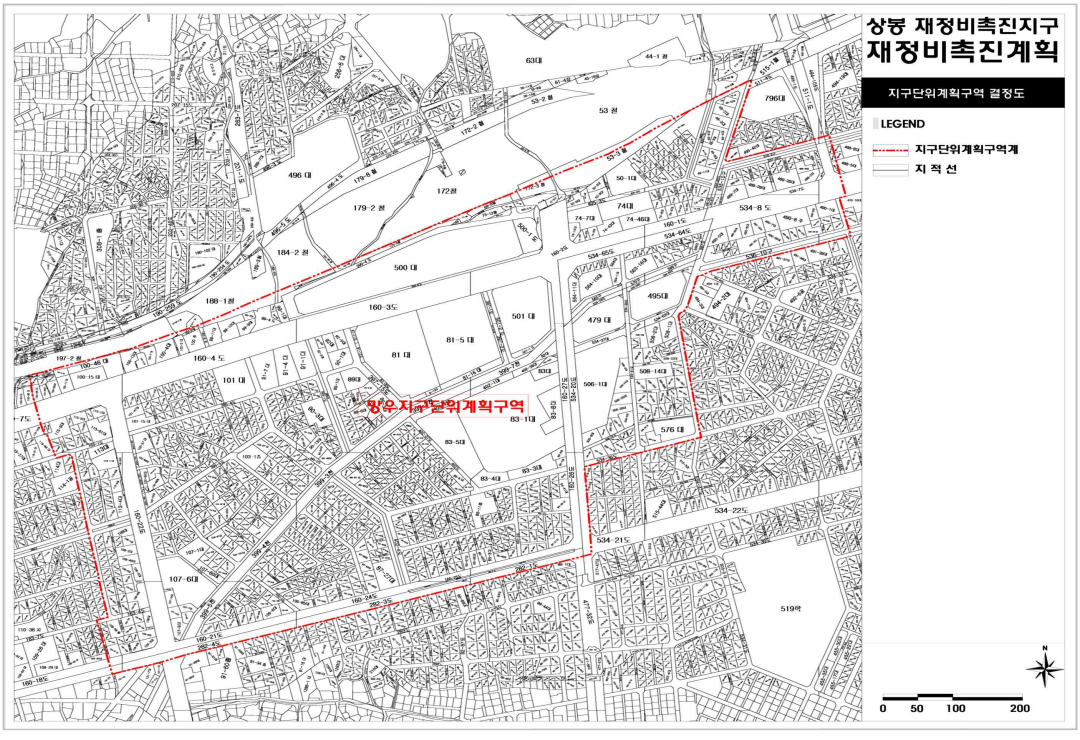
Ⅲ. 관련도면 :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실 재정비촉진과(☎02-2133-7220), 중랑구청 도시계획과(☎02-2094-219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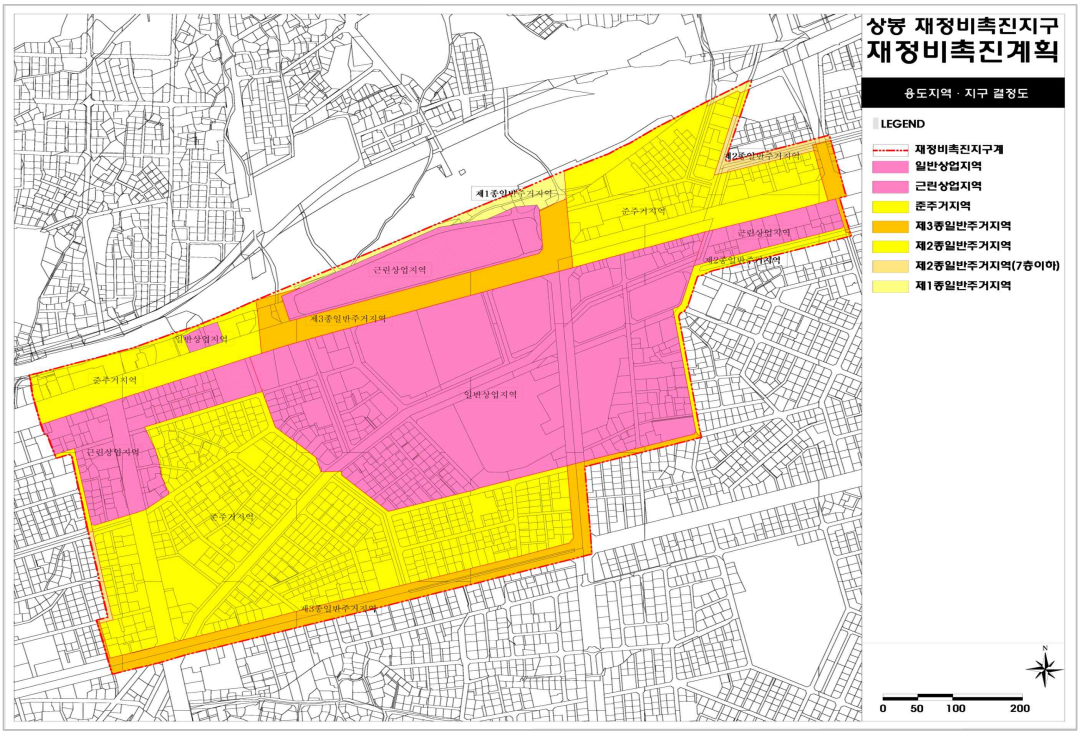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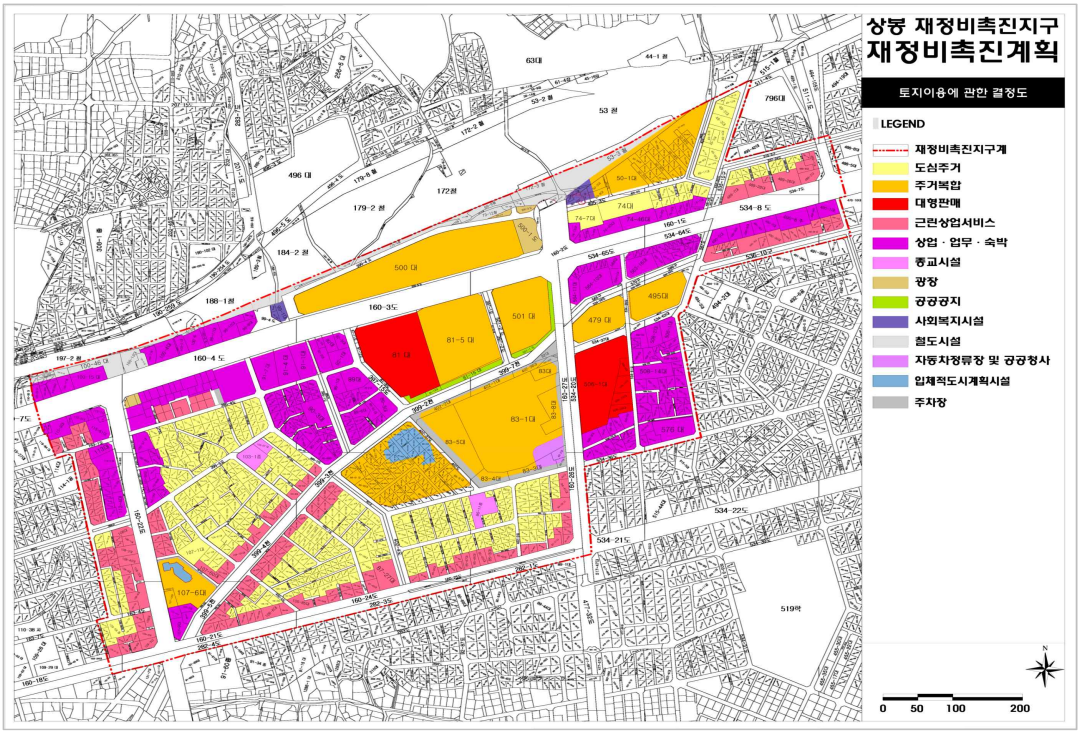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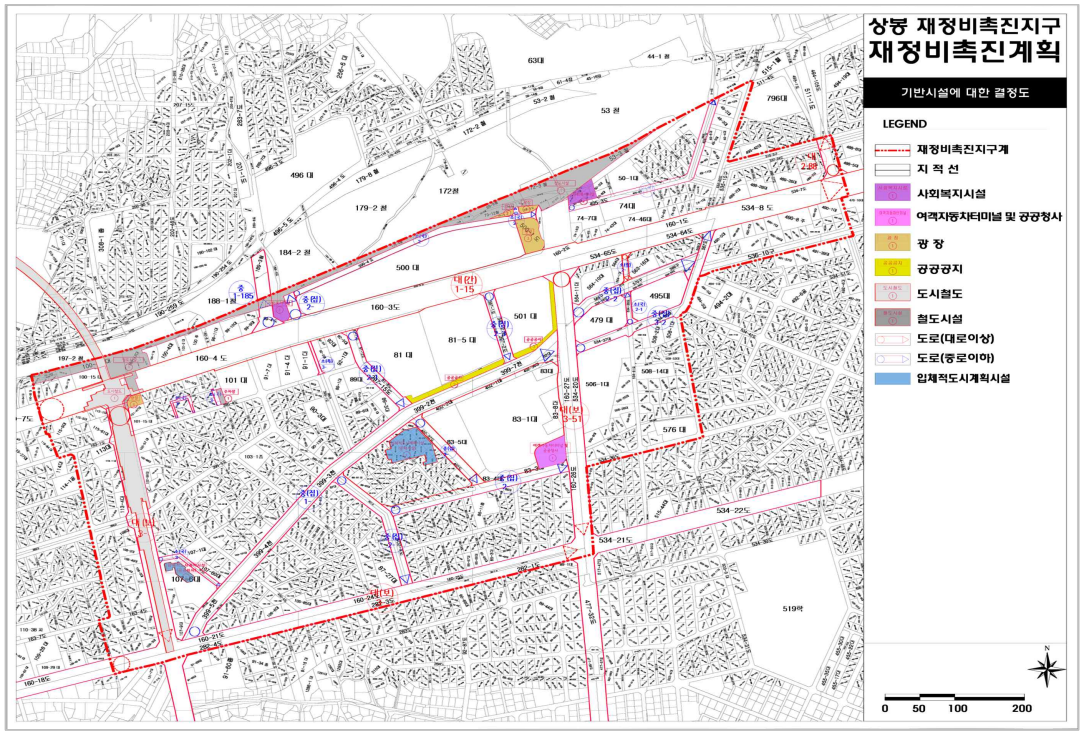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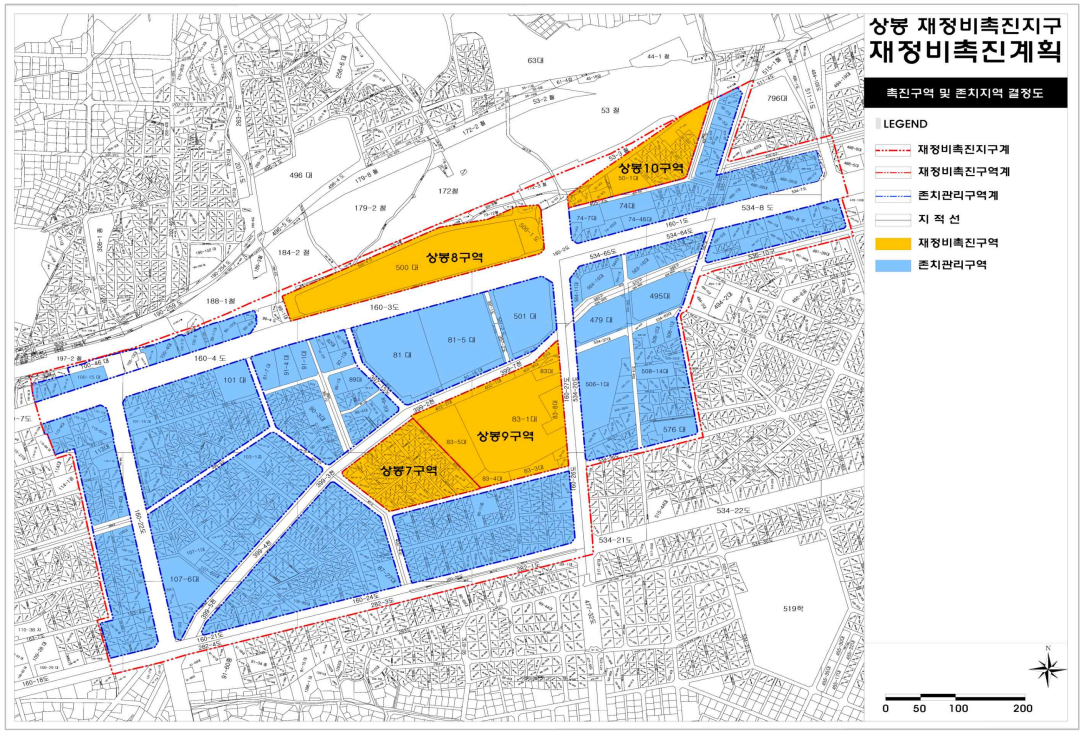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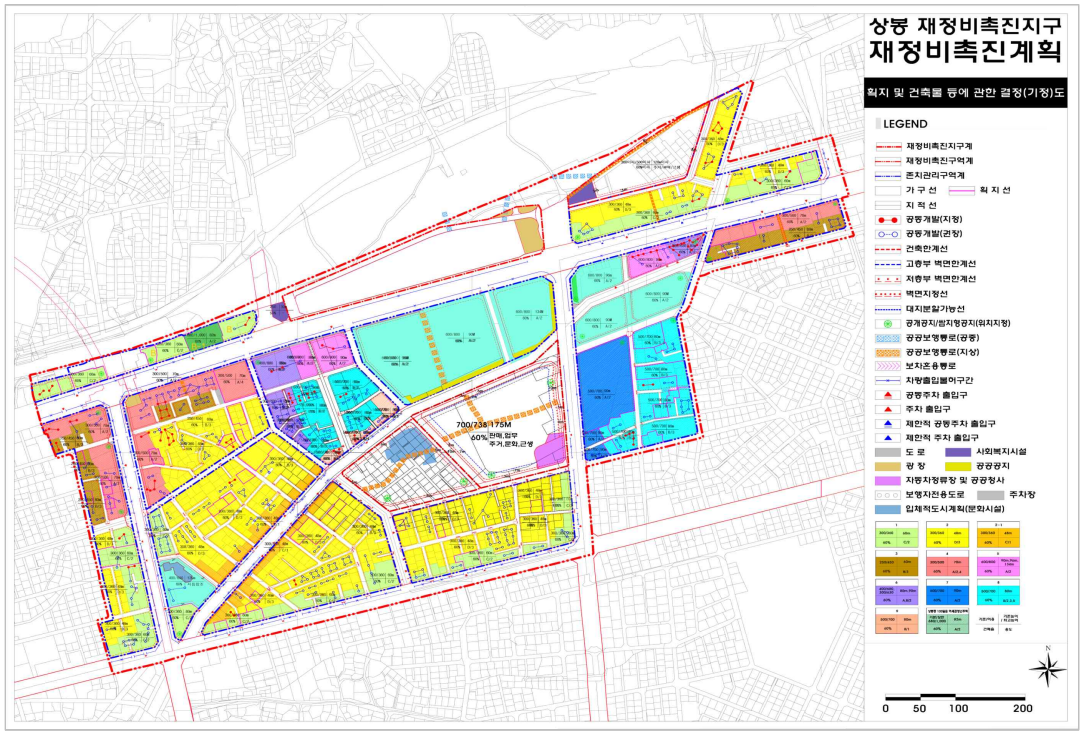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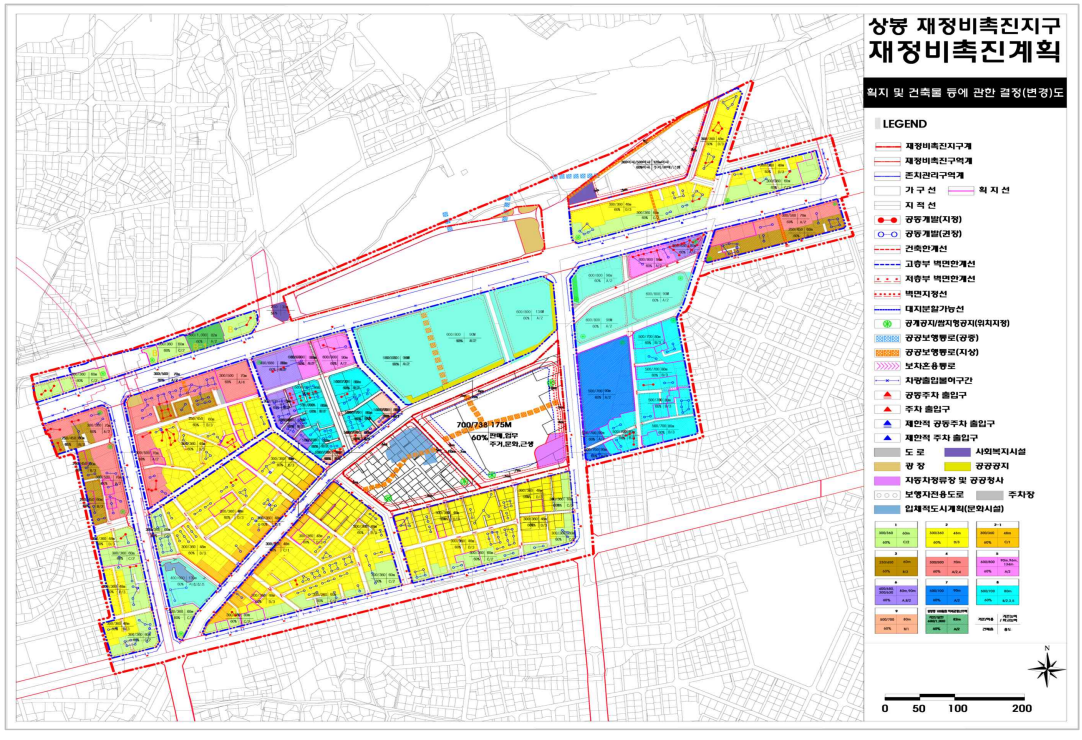
▌촉진구역 및 존치지역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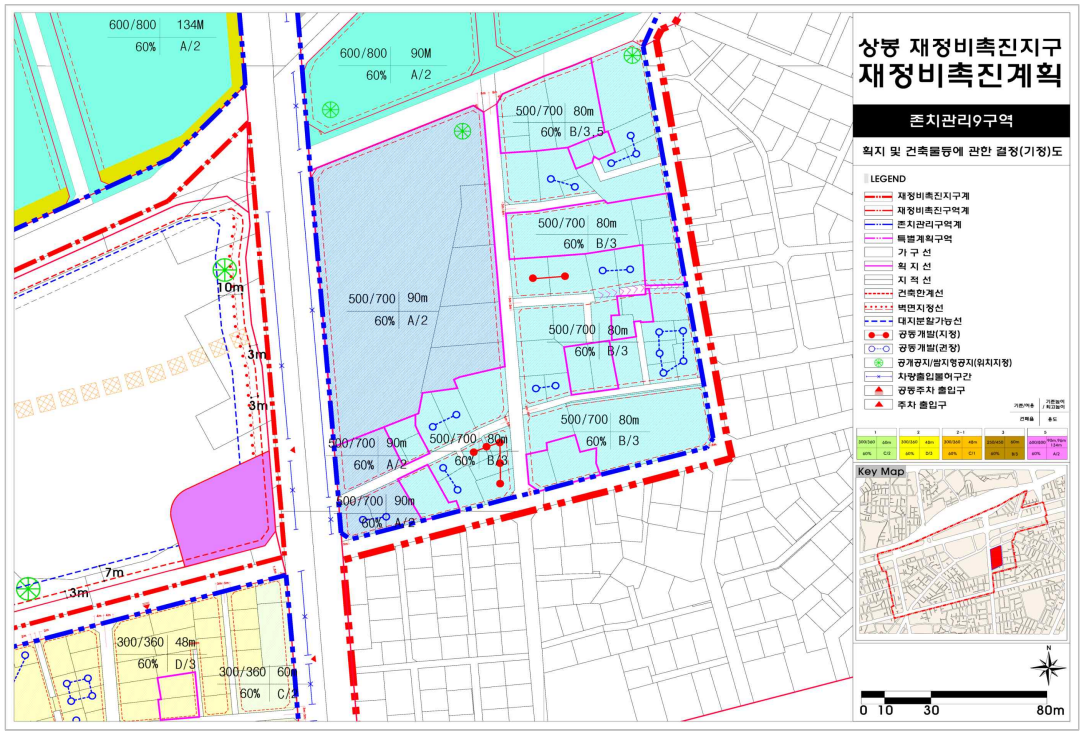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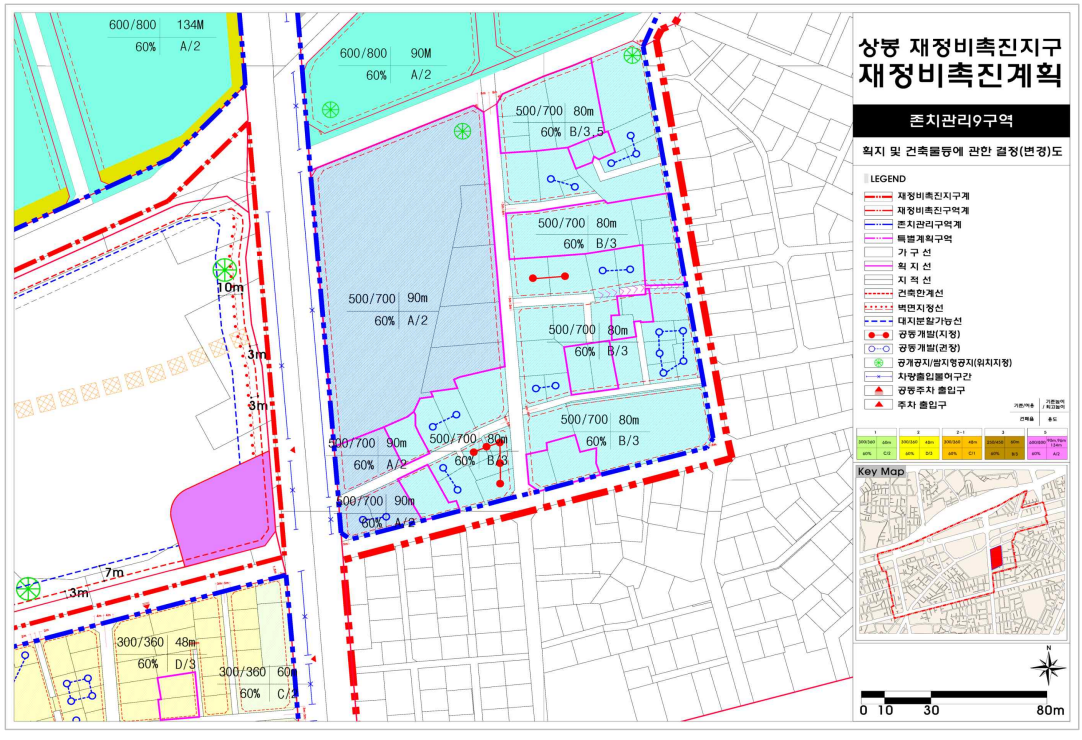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존치관리9구역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존치관리9구역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87호

종암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3-10번지 일대(이하 '종암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5.03.14.)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종암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3-10번지 일대	-	증) 26,712	26,712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율 (%)	비 고
합 계		26,712.00	10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610.00	9.77	-
	도 로	2,610.00	9.77	-
획지	소 계	24,102.00	90.23	-
	획 지1	22,202.00	83.1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 지2	1,900.00	7.11	공공기숙사

3.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계획(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율(%)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26,712.0	-	26,712.0	10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6,712.0	감) 22,202.0	4,510.0	16.88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22,202.0	22,202.0	83.12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종암동 3-10번지 일대	제2종일반(7층)	제3종일반	22,202.0	•낙후된 주거환경 향상 및 주변 여건변화를 고려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4.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추정 비례율 산출근거

구 분	항 목		금 액(천원)
수 입	소 계		522,548,657
	분양주택	조합원분양	180,242,000
		일반분양	306,034,000
		보류지	-
	임대주택	법적 용적률	19,742,975
		상한 용적률	11,669,681
		도정법 관련	-
	근린생활시설	조합원분양	5,400,000
		일반분양	-
		보류지	-
	매출부가세		-540,000
지 출	소 계		393,658,806
	공사비		267,054,056
	보상비		62,806,922
	관리비		2,366,999
	설계비		3,779,635
	감리비		5,055,541
	부대경비		35,772,329
	예비비		16,823,324
종전자산 추정액			119,888,389
※ 추정비례율 107.5% (총 수입(522,548.6억원) - 총지출(393,658.8억원)) ÷ 종전자산(119,888.3억원)			

※해당 분담금은 추산액으로 향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시 개별물건에 대한 종전·종후 자산 감정 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공사비 및 분양가 변동표

비례율 변화표		정비사업비				
		-10.0%	-5.0%	0.0%	+5.0%	+10.0%
분양가 (일반분양 기준)	+10.0%	171.08%	159.57%	148.06%	136.56%	125.05%
	+5.0%	150.80%	139.29%	127.78%	116.28%	104.77%
	0.0%	130.52%	119.01%	107.50%	96.00%	84.49%
	-5.0%	110.24%	98.73%	87.22%	75.72%	64.21%
	-10.0%	89.95%	78.45%	66.94%	55.44%	43.93%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127	15~20	집산 도로	850 (160)	종암동 12-62	종암동 1-114	일반 도로	-	71.04.07.	월곡로
변경	중로	2	127	15~20	집산 도로	850 (160)	종암동 12-62	종암동 1-114	일반 도로	-	-	월곡로 일부구간 확폭
신설	중로	3	가	13	국지 도로	78 (78)	소로 1-A	중로 2-127	일반 도로	-	-	월곡로 4길

※()는 구역 내 도로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127	중로2-127	•좌회전 차로 설치 B=15m→18m L=160m	•사업시행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일부구간 확폭
-	중로3-가	•도로 신설 B=13m, L=78m	•사업시행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고려 도로 신설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계획면적(㎡)
			법정		
			기 준	면적(㎡)	
합계		-	-	-	3,740.00
주민공동시설	소계	-	세대당 2.5㎡를 더한 면적 X 1.25	2,168.75 이상	3,150.00
	경로당	획지	500~1,000세대 미만	330.00 이상	350.00
	어린이놀이터	획지	500㎡에 세대당 0.7㎡를 더한 면적	958.80 이상	1,000.00
	어린이집	획지	500~1,000세대 미만	330.00 이상	350.00
	주민운동시설	획지	300㎡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 마다 150㎡를 더한 면적	445.50 이상	1,000.00
	다함께 돌봄센터	획지	전용면적 최소 66㎡ 이상	90.00 이상	100.00
	작은도서관	획지	500~1,000세대 미만	158.00 이상	200.00
	커뮤니티	획지	-	-	150.00
근린생활시설		획지	-	-	500.00
관리사무소		획지	10㎡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0.05㎡를 더한 면적	42.20 이상	50.00
경비실		획지	-	-	40.0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및 서울특별시 조례 제8조의4(주민공동시설) 및 별표1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영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주민공동시설 설치계획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7.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종암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26,712	종암동 3-10번지 일대	130	-	-	130	-	-

8.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최고층수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법적상한	
신설	종암8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26,712	획지 1	22,202	종암동 3-10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50.00 이하	282.63 이하	300.00 이하	115m이하 /37층이하
			획지 2	1,900	종암동 3-160	공공 기숙사	관련법규에 의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주택공급계획 : 694세대

구분	세대수	
	세대수(세대)	비율(%)
계	694	100.00
60㎡이하	415	59.80
60~85㎡이하	279	40.20
85㎡초과	0	0.00

구분	건립규모	임대주택		
		소계	40㎡ 이하	40㎡ 이상
초과용적률 전 세대수	653	80	24	56
구성비 (%)	100.00	12.25	3.68	8.57
임대주택 구성비(%)	-	100.00	30.00	70.00

•85㎡이하 규모의 주택 비율 [기준 : 전체 세대수의 80%이상]▶계획 100.00%
•임대주택 건설 비율※ [기준 : 전체 세대수의 15%이상 또는 연면적의 10%]▶계획 연면적의 10.09%
•전용면적 40㎡이하 비율※ [기준 : 임대30%이상 또는 전체5%이상]▶계획 임대30%
※초과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41세대) 제외
•국민주택규모(85㎡이하) 건설 [기준 : 초과용적률의 50%이상]▶계획 52.35%

정비계획용적률	예정법적 상한용적률	초과용적률	초과용적률의 50%	임대주택공급계획 (의무공급면적)
282.63%	300.00%	17.37%	8.68%	2,019.12㎡

심의완화 사항

•기준용적률 완화 14.6% (소형주택 40㎡이하 4.6%, 50~60㎡이하 10%)
•허용용적률(38.2%) : 공공보행통로5.4%, 열린단지5.0%, BF인증5.0%, 층간소음해소5.0%
사업성 보정계수 1.91(18.2%)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인동거리 완화 (건축심의에서 최종 확정)
•임대주택 건설(도정법 제54조)에 따른 용적률 완화(상한용적률, 건축심의에서 최종확정)

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공동주택 : 월곡로변 5m / 월곡로4길변 5m / 기타 3m
•공공보행통로 : 대상지 동-서방향의 공공보행통로 조성 (폭 6m)

기타 사항

-

나. 용적률 계획

1)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table>
<tr><td colspan="2">구 분</td><td colspan="6">산 정 내 용</td></tr>
<tr><td colspan="2" rowspan="2">토지이용계획</td><td>사업면적
(㎡)</td><td>대지면적
(㎡)</td><td>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등
(㎡)</td><td>건축물 기부채납
토지지분 환산
(㎡)</td><td>새로 설치하는 기반
시설 내 국·공유지
(㎡)</td><td>획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td></tr>
<tr><td>26,712.00</td><td>22.202.00</td><td>4.510.00</td><td>1,672.72</td><td>1,301.91</td><td>950.09</td></tr>
<tr><td rowspan="6">공동주택</td><td>공공시설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6">•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등+ 건축물 기부채납 토지지분 -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2,610.0㎡ + 1,900.0㎡ + 1,672.72㎡ - 1,301.91㎡ - 950.09㎡ = 3,930.72㎡(17.7%)</td></tr>
<tr><td rowspan="2">신설정비
기반시설
+ 공공시설 등</td><td>토지면적</td><td colspan="5">• 4,510.0㎡
-도로: 2,610.0㎡, 공공기숙사 부지: 1,900.0㎡</td></tr>
<tr><td>건축물
환산부지
면적</td><td colspan="5">•공공기숙사 환산부지면적
= (표준건축비(원/㎡) X 시설 연면적(㎡)) / 부지가액(원/㎡)
= 2,319,000 x 10/11 x 3,900 / 4,915,305 = 1,672.72㎡
<table><tr><td>표준
건축비</td><td>2,319,000원/㎡</td><td>▷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에 따른 '표준건축비'</td></tr><tr><td>시설
연면적</td><td>3,900㎡</td><td>-</td></tr><tr><td>부지가액</td><td>4,915,305원/㎡</td><td>▷구역 내 평균공시지가(2,457,652.58원/㎡X2)</td></tr></table>※환산부지면적 산정 시 표준건축비는 부가세 제외하여 산정</td></tr>
<tr><td>기준용적률</td><td colspan="6">•204.60% : 190% + 14.6% (기준용적률 완화)</td></tr>
<tr><td>허용용적률</td><td colspan="6">•242.80% : 공공보행통로 5.4%, 열린단지 5%, BF인증 5%, 층간소음 해소 5%,
사업성 보정계수 1.91(18.2%)</td></tr>
<tr><td rowspan="2">정비계획
(상한)
용적률</td><td colspan="6">•282.63% =(기준용적률+기준용적률 상향+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사업성보정계수)
+(허용용적률x1.3x가중치×α토지) + (허용용적률x1.0×α건축물)
=(190%+14.6%+(20%×1.91)) + (210%x1.3x0.8647x0.1017)
+(210%x1x0.0753)</td></tr>
<tr><td colspan="6">•가중치
=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 허용(기준)용적률/사업부지 허용(기준)용적률
= 공공시설 허용용적률(가중평균) 181.58% / 3종일반주거 허용용적률210%
= 0.8647
•α토지
= 공공시설등부지면적 / 공공시설등부지제공 후 대지면적
= 2,258㎡ / 22,202㎡ = 0.1017
•α' 건축물
= 공공시설등환산부지면적 / 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 1,672.72㎡ / 22,202㎡ = 0.0753</td></tr>
<tr><td>법적상한
용적률</td><td colspan="6">•300.00% 이하</td></tr>
</table>

2) 가중치 산출근거

구분			용도지역별 면적(㎡)	
			제2종(7층이하)	제3종
정비기반시설	① 토지	도로	2,610.00	-
	② 건축물(환산면적)	-	-	-
	③ 국공유지		1,301.90	950.10
	A 합계(①+②-③)		ⓐ 1,308.10	ⓑ -950.10
기반시설 등	④토지(지분)	공공기숙사	ⓒ 1,900.00	-
	⑤ 건축물(환산면적)	공공기숙사	1,672.72	-
	B 합계(④+⑤)		3,572.72	
합계(A+B)			4,880.82	-950.10
공공시설 제공부지 허용용적률(가중평균) = ((ⓐ X 190%) + (ⓑ X 210%) + (ⓒ X 190%)) / (ⓐ + ⓑ + ⓒ) = 181.58%				
가중치 = 181.58/210% = 0.8647				

3) 기준용적률 완화

구 분	인센티브(용적률)	
40㎡ 이하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 전용 40㎡ 이하 주택으로 건설 -56.30㎡(39㎡공급면적)×18세대/22,202㎡(대지면적)=4.6%(임대주택 미포함)	최대 10%
50~60㎡ 이하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 전용 50~60㎡ 이하 주택으로 건설 -82.88㎡(59㎡ 공급면적)×27세대/22,202㎡(대지면적)=10.0%(임대주택 미포함)	최대 10%

4) 허용용적률 산출근거

구 분	인센티브(용적률)	
공공보행 통로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 (지역권 등기 설정) -기준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대지면적) X α ※α= 1이하 -적용 : 190.00% X (632.09 / 22,202.0) X 1 = 5.4%	10%p 이내
열린단지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단지 조성(지형도면 고시) -기준 : 개방공간, 열린단지 조성기준 준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적용 :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 5%	5%p 이내
BF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 최우수등급 5%, 우수등급 4%, 일반등급 3% -적용 : 최우수등급 5%	5%p 이내
층간소음 해소	▸바닥(중량)충격음 차단성능 2등급 이상 -기준 : 1등급 5%, 2등급 3% -적용 : 1등급 5%	5%p 이내
사업성 보정계수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지가등을 고려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보정하기 위한 계수 ※정비계획(안) 주민공람의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기준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 대상구역 평균 공시지가 -적용 : 5,861,129 / 3,076,302 = 1.9053 ≒ 1.91	1.0~ 2.0

5) 기부채납 계획

구분	시설명	시 설 규 모	산출 근거	비 고
도로	중로 2-127	•B=18m, L=160m (기존 15m 도로 3m 확폭)	-	일부 도로 확폭
	중로 3-가	•B=13m, L=78m	-	차로 신설
획지2	공공기숙사	•공공기숙사 부지면적: 1,900㎡ •공공기숙사 건축물 환산부지면적: 1,672.72㎡	-	신설

※ 공공기숙사 부지 및 건축물의 채납행정청(관리청) : 서울시

다.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도시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 · 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 · 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 · 동시에 공개추첨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건설 계획

계획 기준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법적상한 증가분 제외) 세대수의 15% 또는 연면적의 10% 이상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전용면적 40㎡ 이하 •정비기반시설 순부담 비율 확보를 위한 기부채납 임대주택은 공적임대주택 물량에서 제외(도시정비법 제97조)

구 분	세대수 (세대)	비율 (%)	비 고
총 세대수	653	-	전체 세대수(694세대)에서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세대수(41세대) 제외
의무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80	12.25	전체 세대수(법제54조적용제외)의 15% 이상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 (법제54조의1항적용제외)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22,202.0 X 282.63% X 10.0% = 6,274.95㎡ 〈 6,332.48㎡
40㎡ 이하	24	3.67	임대주택의 30% 이상 (80세대×30%= 24 ≤ 24세대)
50㎡~ 60㎡ 이하	45	6.89	-
60㎡ 초과	11	1.69	-

※공공주택 및 소형 · 국민주택 규모 · 세대수 등은 추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table>
<tr><td colspan="2">계획 기준</td><td colspan="4">•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td></tr>
<tr><td colspan="2">법적상한용적률(건축계획)</td><td colspan="4">300.00% (건축심의에서 최종 결정)</td></tr>
<tr><td colspan="2">상한용적률</td><td colspan="4">282.63% 이하</td></tr>
<tr><td rowspan="3">국민주
규모 주택
의무면적</td><td>용적률 증가분</td><td colspan="4">300.00% - 282.63% = 17.37%</td></tr>
<tr><td>증가된 용적률의
50%</td><td colspan="4">17.37% × 0.5 = 8.68%
22,202㎡ × 8.68% = 1,927.13㎡</td></tr>
<tr><td>의무 연면적</td><td colspan="4">1,927.13㎡ 이상</td></tr>
<tr><td colspan="2" rowspan="5">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td><td>전용면적</td><td>공급면적</td><td>세대수</td><td>연면적(㎡)</td></tr>
<tr><td>39.60㎡</td><td>56.30㎡</td><td>3세대</td><td>168.90</td></tr>
<tr><td>59.95㎡</td><td>82.98㎡</td><td>10세대</td><td>829.80</td></tr>
<tr><td>84.98㎡</td><td>113.38㎡</td><td>9세대</td><td>1,020.42</td></tr>
<tr><td colspan="2">계</td><td>22세대</td><td>2,019.12</td></tr>
</table>

※공공주택 및 소형 · 국민주택 규모 · 세대수 등은 추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 보전	자연환경	• 절 · 성토 균형 고려, 지형변화를 최소화하도록 유도 • 기존 구역 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biotop) 공간 확장	-
	생활환경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 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시행 시 환경영향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 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요령 등에 의거 저감 대책 마련	
재난 방지	수재해	• 구역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내부로 유입을 최소화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 계획 수립	-
	산사태	• 해당없음	
	화재	•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나. 환경성 검토 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자연생태환경		가.비오톱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	◦비오톱유형평가 4~5등급 ◦개별비오톱 평가제외 지역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및 생물서식공간 확보	-
		나.생태 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녹지면적Ⅲ, 녹지모양Ⅰ, 내부연결성Ⅰ, 외부연결성 Ⅲ으로 녹지평가지표Ⅰ	◦자연 및 인공지반녹지 등 조성을 통한 녹지공간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구축	-
생활환경	토지환경	다.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 계획	○	◦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계획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
		라.토양	토양오염 현황 확인	○	◦폐유 발생 등 토양오염발생 우려	◦폐기물처리계획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처리	-
		마.지형·지질	지형변동 비율 최소화	○	◦절성토를 최소화토록 할 것임 ◦지형변동율은 미미할 것임	◦절성토 및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고, 지하수위 보전계획 수립	-
	물환경	바.물순환 (수리·수문)	생태면적률 30%	○	◦생태면적률 30.17%로 계획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투수포장 등 적용	-
	기후대기환경	사.바람, 열	바람길 확보	○	◦건축물입지로 인한 바람길 및 미기상의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배치계획 수립	-
		아.대기질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대기오염 최소화	○	◦공사중 장비가동 및 토사이동,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확산 ◦에너지사용량 증가	◦세륜세차시설, 방진망 설치 ◦청정연료 사용 및 녹지조성 ◦친환경보일러 설치방안 검토 ◦LNG사용, 온실가스배출 최소화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
	기타	자.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	◦공사시 생활폐기물, 폐유, 건설폐기물 발생 ◦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폐기물처리계획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처리	-
		차.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공사장비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발생	◦가설방음판넬 설치 및 저소음 장비 사용	-
		카.경관	SKYLINE보전, 녹지공간 확보 등	○	◦시설물 배치로 인한 스카이라인의 변화 예상 ◦주변 주거지역의 조망권 확보 필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건물배치, 형태, 높이계획에 반영 ◦주변 토지이용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을 구성 ◦조경녹지 등에 대한 다양한 경관연출을 도모	-
		타.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 확보	○	◦계획구역 및 주변 휴식·여가 공간 검토	◦계획구역 내 녹지 및 휴게공간 등 확보	-
		파.보행 친화공간	보행통로 개선	○	◦도로 및 공공보행통로 조성 검토	◦도로 및 공공보행통로 조성으로 통행여건 개선	-
		하.일조장해	일조침해 최소화	○	◦계획구역 주변 일조장해 영향 검토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하도록 건축물 계획 수립	-

10.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 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신 설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종암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가칭)	297세대 (현황:397세대, 계획:694세대)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일신초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대상사업으로 교육환경평가 협의 시 아래 사항을 검토 협의하겠음 - 사업시행 시 교육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저감 대책을 수립해 학습권을 보호하겠음 - 학교의 일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계획 - 사업시행 시 인근 지역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위한 통학안전 대책을 수립하겠음	200m 이내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사업시기 및 예방시설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비고
조합 설립 ~ 착공 전	• 펜스 설치 및 유지·관리 • 1일 오전·오후 1회 우범 지역 순찰 •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
착공 ~ 공사 완료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규정 준수 안전 시공 •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공사비 계상	-
범죄예방시설	• 방범용 CCTV는 사각지대 1개소 이상 설치 • 무인택배함 동당 1개소 설치 • 내부가 보이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설치 • 식재로 인해 밀폐된 공간이 발생되지 않는 식재 계획 수립	-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종암8구역 주택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북구 종암동 3-10번지 일대	-	증) 26,712	26,712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율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26,712	-	26,712	100.0	-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6,712	감) 22,202	4,510	16.88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22,202	22,202	83.12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종암동 3-10번지 일대	제2종일반 (7층)	제3종일반	22,202	•낙후된 주거환경 향상 및 주변 여건변화를 고려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

2) 용도지구 : 해당없음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127	15~20	집산 도로	850 (160)	종암동 12-62	종암동 1-114	일반 도로	-	71.04.07	월곡로
변경	중로	2	127	15~20	집산 도로	850 (160)	종암동 12-62	종암동 1-114	일반 도로	-	-	월곡로 일부구간 확폭
신설	중로	3	가	13	국지 도로	78 (78)	소로 1-A	중로 2-127	일반 도로	-	-	월곡로 4길

※()는 구역 내 도로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127	중로 2-127	•좌회전차로 설치 - B=15m→18m - L=160m	•사업시행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일부구간 확폭
-	중로 3-가	•도로신설 - B=13m, L=78m	•사업시행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고려 도로 신설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구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획지	획지1	22,202.0	종암동 3-10 일대	22,202.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1,900.0	종암동 3-160 일대	1,900.0	공공기숙사

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획 지	면적(㎡)	주용도	비 고
신 설	획지1	22,202.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제13호 부대시설, 제14호 복리시설	-
신 설	획지2	1,900.0	• 공공기숙사	-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 분	획 지	용도지역	건폐율	비 고
신 설	획지1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신 설	획지2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관련법규에 의함	-

나) 용적률 계획

구 분	획 지	용도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 용적률	비고
신 설	획지1	제3종일반	204.60%	242.80%	282.63%	300.00%	-
신 설	획지2	제2종(7층)일반	관련법규에 의함				-

■ 기준용적률 완화

구 분	인센티브(용적률)	
40㎡ 이하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 전용 40㎡ 이하 주택으로 건설 -56.30㎡(39㎡공급면적)×18세대/22,202㎡(대지면적)=4.6%(임대주택 미포함)	최대 10%
50~60㎡ 이하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 전용 50~60㎡ 이하 주택으로 건설 -82.88㎡(59㎡ 공급면적)×27세대/22,202㎡(대지면적)=10.0%(임대주택 미포함)	최대 10%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 분	인센티브(용적률)	
공공보행 통로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 (지역권 등기 설정) -기준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대지면적) X α ※α= 1이하 -적용 : 190.00% X (632.09 / 22,202.0) X 1 = 5.4%	10%p 이내
열린단지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단지 조성(지형도면 고시) -기준 : 개방공간, 열린단지 조성기준 준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적용 :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 5%	5%p 이내
BF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 최우수등급 5%, 우수등급 4%, 일반등급 3% -적용 : 최우수등급 5%	5%p 이내
층간소음 해소	▸바닥(중량)충격음 차단성능 2등급 이상 -기준 : 1등급 5%, 2등급 3% -적용 : 1등급 5%	5%p 이내
사업성 보정계수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지가등을 고려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보정하기 위한 계수 ※정비계획(안) 주민공람의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기준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 대상구역 평균 공시지가 -적용 : 5,861,129 / 3,076,302 = 1.9053 ≒ 1.91	1.0~ 2.0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구분		용적률 완화		합계
		공공시설 기부채납	국민주택규모주택건설	
신설	획지1	39.83%	17.37%	57.20%

다) 높이계획

구 분	획 지	용도지역	높 이	비 고
신 설	획지1	제3종일반주거지역	115m 이하 (37층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 설	획지2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관련법규에 의함	-

다. 건축물의 배치계획

1)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신 설	건축한계선	획지1	•공동주택 : 월곡로변 5m / 월곡로4길변 5m / 기타 3m

※구체적인 위치는 관련 도면 참조

2) 대지내 공지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전면공지	공동주택 도로변 등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은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보도+녹지 가능)
공공 보행통로	공동주택 내	•폭원 6m 이상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동-서 방향으로 조성[지역권설정(등기)]

※구체적인 위치는 관련 도면 참조

라. 경관계획

1)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물의 배치	공동주택 사업부지	•주변 지역과의 연계 및 주민 간 소통·교류의 활성화, 주변으로 열린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영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주동 배치 계획 - 북측 일신초등학교 연접부 : 북측 일신초등학교 일조권 수인한도 및 단지내 채광 확보를 고려하여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저층(12층 이내) 주동 배치 - 남측 월곡로4길변 : 남측 서울대사범대 부설중학교 및 주변을 고려하여 중저층 주동 배치 - 동측 내부순환로변 : 동측 내부순환로 소음에 대응하는 측벽배치 및 하부 정릉천과 연계한 저층 연도형 주동 배치 - 단지 중앙 : 단지 중앙은 단지 개방감 확보 및 입체적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 고층 타워형(최고37층) 주동 배치
근린생활 시설 및 주민공동 시설	공동주택 사업부지	•주민공동시설 - 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 내 주요 보행동선 및 공공보행 통로와 연계하여 우선 배치(권장) •근린생활시설 - 월곡로변(서측) : 기존 상권 위치(월곡로) 및 주변 저층 주거지에 대응하고, 활력있는 생활가로의 가로활성화를 고려하여 월곡로를 따라 연도형으로 우선 배치(권장)
외부공간	공동주택 사업부지	•단지 전체를 아우르는 동-서방향의 공공보행통로와 남북 방향의 주보행동선과 연계하고, 주민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광장 등 열린 공간 계획

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물 외부형태	공동주택	•단지내 일조 및 개방감 확보, 보행 연계, 건축적 요소의 다양화 등 입체적 변화를 통한 건축물의 디자인 특화 계획(권장)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저층부 외관	근린 생활시설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질서 있는 입면 계획 권장 •쇼윈도 설치 및 야간조명 설치
재료/색채	공동주택	•저채도 위주의 색채계획으로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려
진입구 처리	공동주택	•주거 세대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차진출입구는 건축물과 함께 디자인하여 계획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보도와 단차를 지양 •불필요한 시각 차폐를 지양하고 진입광장 등 열린 공간으로 활용

3) 경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개방감	공동주택	•통경축 구간은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하여 설정 ※통경축 구간은 공공보행통로 방향으로 시각통로를 확보하고 개방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상 건축물의 배치를 억제하는 구간으로 통경축 내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 다만, 자연지형에 의한 처리부분 및 램프, 건축물 간의 연결 브릿지와 보행자의 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벤치 및 수목 식재 가능
조명계획	공동주택	•주변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야간 조명 설치 계획
스카이라인	공동주택	•도시에 순응하며 상징적인 도시경관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인접 학교, 주변 저층 주거지, 공동주택 단지, 가로 등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계획 •지역 일대의 개방감 확보 및 열린 경관 창출을 위해 동서 방향으로 열린 통경축 계획 •생활가로(월곡로)변 보행자 시각의 개방감 및 리듬감 있는 경관 창출을 위해 판상형과 타워형 혼합 주동의 이격 배치 및 주동 간 층수 차를 활용한 가로변 중첩경관 형성 유도

마.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1) 환경관리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자연생태환경		가.비오톱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	◦비오톱유형평가 4~5등급 ◦개별비오톱 평가제외 지역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및 생물서식공간 확보	-
		나.생태 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녹지면적Ⅲ, 녹지모양Ⅰ, 내부연결성Ⅰ, 외부연결성 Ⅲ으로 녹지평가지표Ⅰ	◦자연 및 인공지반녹지 등 조성을 통한 녹지공간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구축	-
생활환경	토지환경	다.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 계획	○	◦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계획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
		라.토양	토양오염 현황 확인	○	◦폐유 발생 등 토양오염발생 우려	◦폐기물처리계획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처리	-
		마.지형·지질	지형변동 비율 최소화	○	◦절성토를 최소화토록 할 것임 ◦지형변동율은 미미할 것임	◦절성토 및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고, 지하수위 보전계획 수립	-
	물환경	바.물순환 (수리·수문)	생태면적률 30%	○	◦생태면적률 30.17%로 계획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투수포장 등 적용	-
	기후대기환경	사.바람, 열	바람길 확보	○	◦건축물입지로 인한 바람길 및 미기상의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배치계획 수립	-
		아.대기질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대기오염 최소화	○	◦공사중 장비가동 및 토사이동,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확산 ◦에너지사용량 증가	◦세륜세차시설, 방진망 설치 ◦청정연료 사용 및 녹지조성 ◦친환경보일러 설치방안 검토 ◦LNG사용, 온실가스배출 최소화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
	기타	자.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	◦공사시 생활폐기물, 폐유, 건설폐기물 발생 ◦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폐기물처리계획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처리	-
		차.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공사장비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발생	◦가설방음판넬 설치 및 저소음 장비 사용	-
		카.경관	-	○	◦시설물 배치로 인한 스카이라인의 변화 예상 ◦주변 주거지역의 조망권 확보 필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건물배치, 형태, 높이계획에 반영 ◦주변 토지이용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을 구성 ◦조경녹지 등에 대한 다양한 경관연출을 도모	-
		타.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 확보	○	◦계획구역 및 주변 휴식·여가 공간 검토	◦계획구역 내 녹지 및 휴게공간 등 확보	-
		파.보행 친화공간	보행통로 개선	○	◦도로 및 공공보행통로 조성 검토	◦도로 및 공공보행통로 조성으로 통행여건 개선	-
		하.일조장해	일조침해 최소화	○	◦계획구역 주변 일조장해 영향 검토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하도록 건축물 계획 수립	-

2)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 조서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도시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 · 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 · 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 · 동시에 공개추첨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분	공급면적	전체 세대수	분양세대수	임대주택 세대수 (법 제10조)	완화용적률 관련 세대수 (법 제54조)	
					분양 세대수	임대 세대수
합계		694	573	80	19	22
39타입	56.30	45	16	24	2	3
59타입	82.98	370	308	45	7	10
84타입	113.38	279	249	11	10	9

3)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지점	개 선 방 안
주변 가로 및 교차로	Ⓐ Ⓑ	• 월곡로(중로2-127호선) 확폭 - B=15.0m → 18.0m, L=147.5m • 월곡로4길(중로3-가호선) 선형 변경 및 확폭 - B=9.0m → 13.0m, L=158.0m
	Ⓒ Ⓓ Ⓔ Ⓕ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좌회전 및 완화차로 설치 - 월곡로(중로2-127호선) 좌회전차로 : B=3.0m, L=37.5m(테이퍼 포함) - 월곡로4길(중로 3-가호선) 좌회전차로 : B=3.0m, L=50.0m(테이퍼 포함) - 월곡로10길(소로 1-A호선) 진출 완화차로 : B=3.0m, L=55.0m(테이퍼 포함) - 월곡로10길(소로 1-A호선) 진입 완화차로 : B=3.0m, L=45.0m(테이퍼 포함)
	Ⓖ	• 사업지 서측도로(월곡로)상 신호교차로 운영
진출입 동선	Ⓗ	• 사업지 진출입구 운영방안 수립(1개소) - 사업지 남측도로(월곡로4길)상 진출입교차로(비신호) 신설
	-	• 진출입구 가각 회전반경 확보(R=6.0m)
대중교통 자전거 및 보행	-	• 사업지 단지내 전면공지를 활용한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확보 - 사업지 동측(월곡로10길) : B=3.0m - 사업지 서측(월곡로) : B=5.0m - 사업지 남측(월곡로4길) : B=5.0m

구분	지점	개 선 방 안
	-	·사업지내 공공보행통로 설치(B=6.0m)
	-	·보행동선 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8개소)
	-	·자전거 이용자 편의를 위한 자전거보관소 설치 (법정주차의 20% 이상 설치)

구분	지점	개 선 방 안
주차 시설	-	·적정 규모의 주차대수 확보 - 법정주차대수 : 653대 - 주차수요대수 : 754대(2033년 원단위법) - 계획주차대수 : 1,045대(법정대비 160.0%, 수요대비 138.6%, 1.50대/세대당)
교통안전 및 기타	- - -	·차량 진출입구 차량경고등 설치(1개소) ·교통안전시설물 및 노면표시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4개소)

Ⅲ. 2025년 제2차(’ 25. 03. 14.)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 분	심의결과	심 의 의 견	조 치 계 획
제9차 도시계획 수권분과 위원회	수정 가결	○획지계획, 용적률계획 및 허용인센티브 항목, 공공기여계획 및 순부담 면적, 주택공급계획은 주관부서 수정가결 요청(안) 반영	○용적률 관련하여 허용용적률 242.80%, 상한용적률 282.63%, 법적상한용적률 300%로 수정반영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보정계수 1.91 적용하여, 허용용적률은 242.8%로 수정반영 ○세대수는 용적률계획에 따라 694세대(분양592, 임대 102)로 수정반영 ○순부담면적은 3,930.72㎡(17.7%)로 수정반영
		○조건사항 - 대상지 진출입을 위한 월곡로10길변 완화차로 확보 방안 검토 - 향후 건축심의(정비사업통합심의 등) 시 월곡로10길변 저층 주호형태 및 기숙사에 대한 건축계획 제고 방안 검토	 ○월곡로10길은 관계기관 협의 시 성북구 교통행정과 의견을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를 진행한 결과, 월곡로10길에서 사업대상지 진출입을 위한 완화차로 확보로 최종 협의를 완료하여 금회 수권분과위원회 수정가결요청에 기반영함 ○향후 건축심의(정비사업통합심의 등)시 월곡로10길변 저층 주호형태 및 기숙사에 대한 건축계획 제고 방안 검토 하겠음

Ⅳ.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2. 정비계획 결정도(신설)
3. 용도지역 결정도(기정/변경)
4.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변경)
5.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신설)
6.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설)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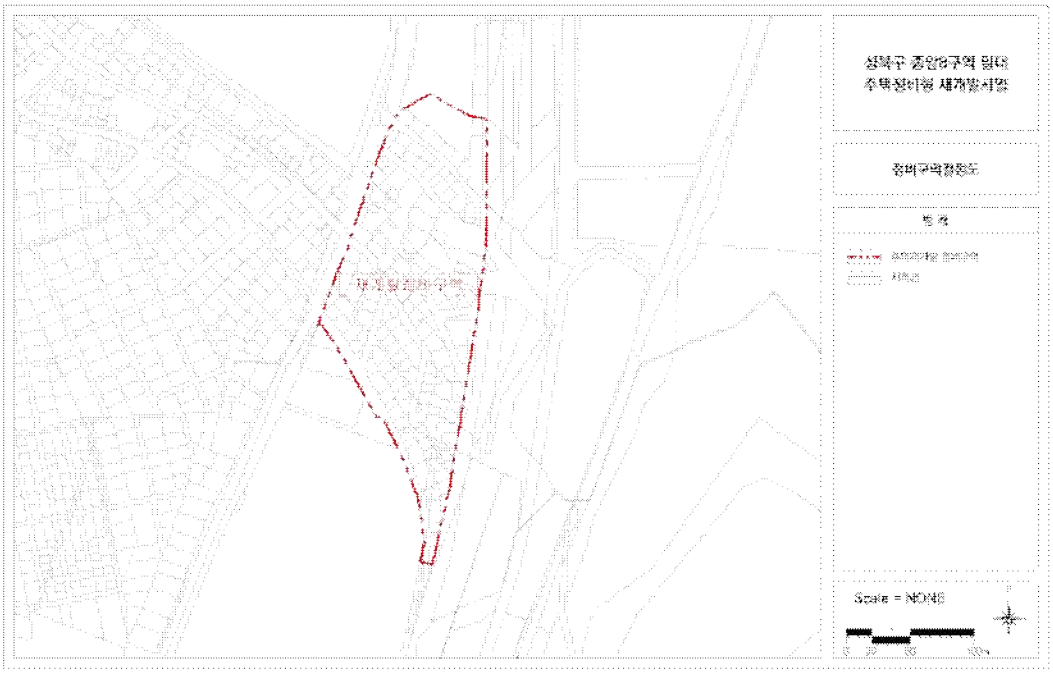
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서 : 생략

Ⅵ.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32), 성북구 도시정비신속추진단(☎02-2241-2843)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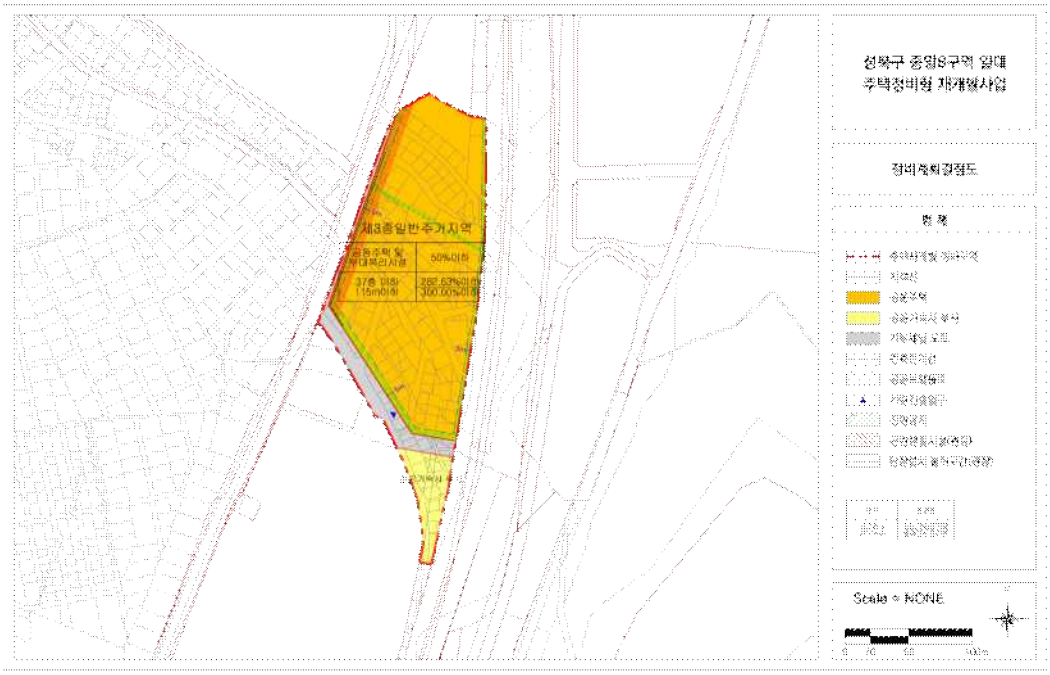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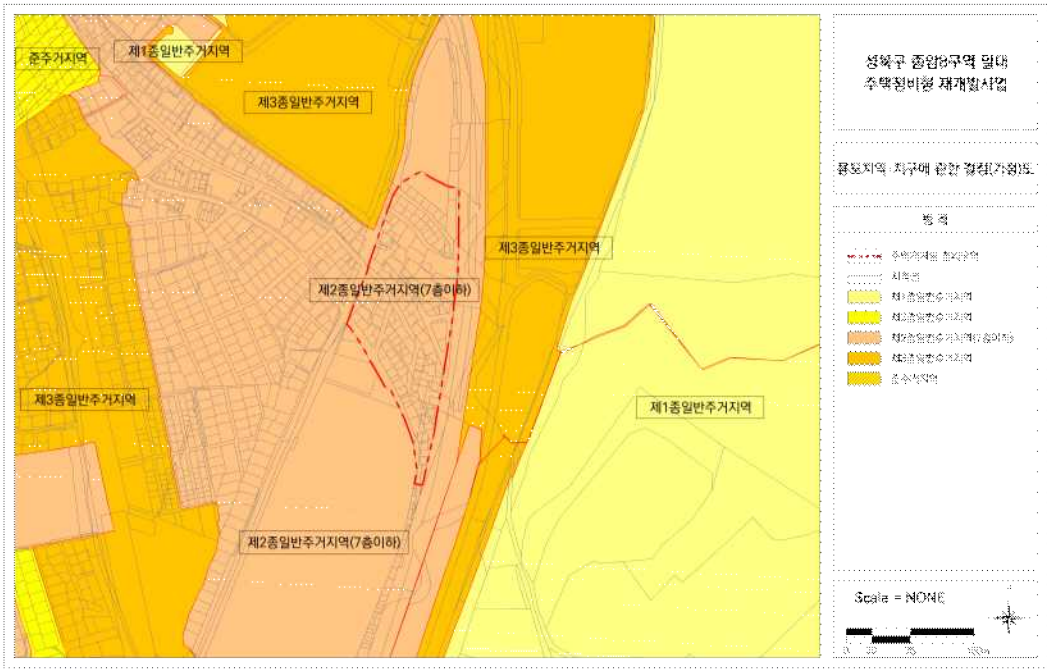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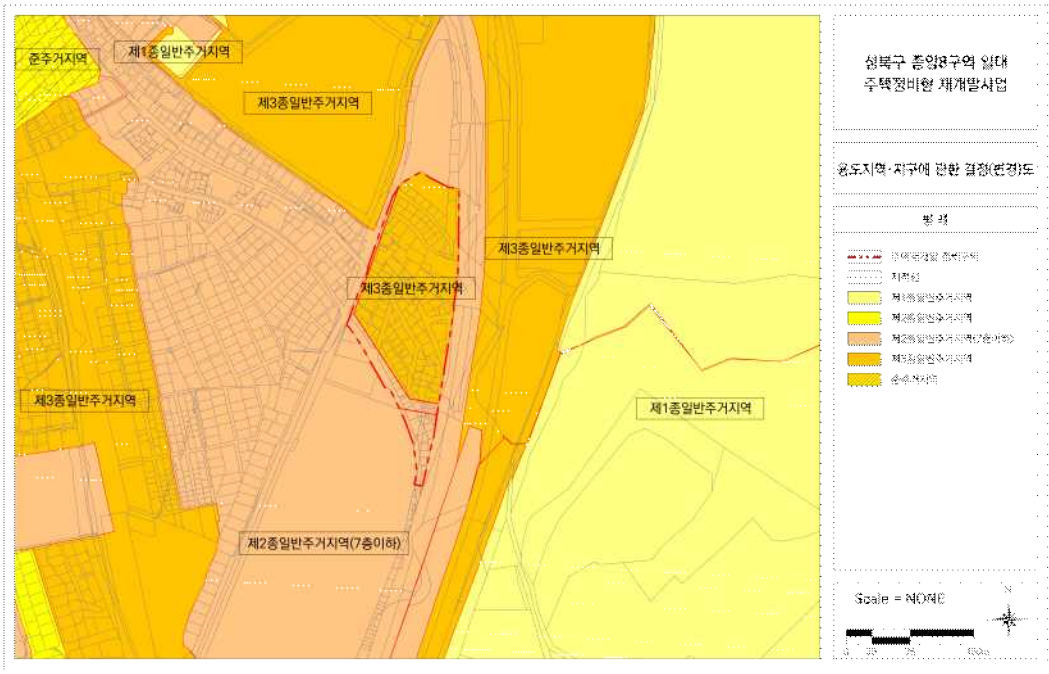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도(신설)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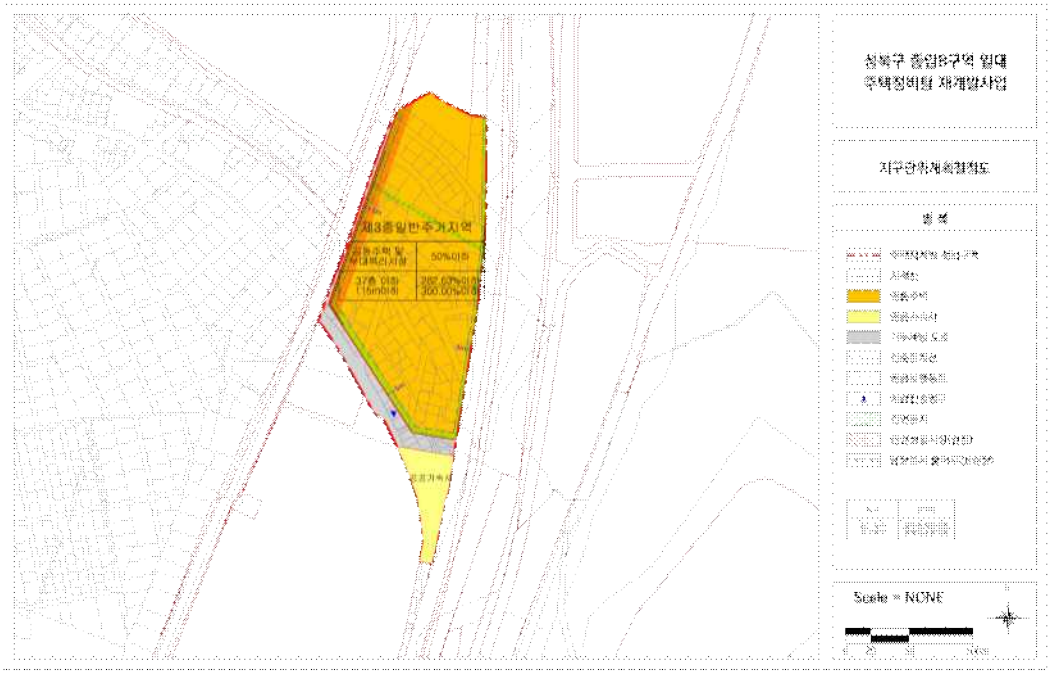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신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88호

도시관리계획(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청년안심주택 사업 해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5호(2021.02.15.)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청년안심주택 사업취소로 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위 치 :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 면 적 : 920.5㎡
○ 결정취지 :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결정된 [거여동 26-1번지 청년안심주택] 사업취소로 인한 지구단위계획을 환원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송파구 거여동 22번지 일대	50,853 (920.5)	-	50,853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46호 ('96.3.11)	-

※ ( )는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청년안심주택사업 면적임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계	50,853 (920.5)	-	50.853	100.0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8,464 (920.5)	-	38,464	75.6	

※ ( )는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청년안심주택사업 면적임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지정용도(폐지)

구 분		도면표시	지정용도	비 고
폐지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1	• 공동주택(주거복합)주1)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청년안심주택에 한함

주1)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안심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 지정용도 폐지	•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청년안심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지정용도를 폐지

2) 불허용도(변경)

구 분		전층	비 고
기정	간선변 준주거지역 (F)	• 단독 및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 수리업,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 판매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장례시설 • 야영장 시설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청년안심 주택에 한함

구 분		전층	비 고
변경	간선변 준주거지역 (A)	• 단독 및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 수리업,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공장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	-

※ 상기 계획내용 외 변경 없음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 불허용도 변경	•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청년안심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당초 결정된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서고 제2012-7호)으로 불허용도를 환원

3) 권장용도(변경)

구 분	도면표시	전층	비 고
기정	간선변 (c)	•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 교육 및 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청년안심주택에 한함
변경	간선변 (a)	•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 판매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 교육 및 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 상기 계획내용 외 변경 없음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 권장용도 변경	•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청년안심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당초 결정된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서고 제2012-7호)으로 권장용도를 환원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결정(변경)조서

1) 건폐율 : 변경없음

2) 용적률(변경)

■ 용적률 결정조서(기정)

구 분	기본용적률	상한용적률1)	비 고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500% 이하	법적용적률 (575%) 이하	•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청년안심주택에 한함 • 청년안심주택 건립에 따라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주1)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 완화용적률(상한용적률-기본용적률)의 절반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
※ 상기 계획내용 외 변경 없음

■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2)	비고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준주거지역1) 간선변	300%	360%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주1)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주2) 상한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이내 또는 「기준용적률×(1+1.3×가중치×α)」 이내 적용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비율
- α :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내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 용적률계획 변경	•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청년안심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당초 결정된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서고 제2012-7호)으로 용적률 계획을 환원

3) 건축물 높이 : 변경없음

다. 건축물 건축선 · 배치 · 형태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공공기여계획(폐지)

구 분	용적률	공공기여기준	계획내용	비 고
준주거지역	기본용적률 500% 이하	대지면적의 6%(55.23㎡) 이상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6.2%(57.24㎡,7세대) ※ 기본용적률 500% 이하 적용시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에 한함
	상한용적률 575% 이하	증가용적률의 1/2 (37.5%) 이상	공공임대주택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361.43㎡ → 부속토지 7.1% (65.40㎡, 11세대)	

※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매입하고, 그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함

※ 상기 계획내용은 관련법 및 지침 적용기준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 공공기여계획 폐지	•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청년안심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공공기여계획 폐지

4. 인센티브 항목

가.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 기 결정내용 기재 생략

■ (폐지) 상기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에도 불구하고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청년안심주택은 별도의 용적률 완화항목 및 적용기준을 따름

나.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용적률 완화항목 및 적용기준(의무사항)(폐지)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적용기준</th><th>비 고</th></tr>
<tr><td rowspan="2">공공기여율</td><td rowspan="2">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td><td>• 기본 공공기여율
- 대지면적의 6%(55.23㎡)이상</td><td>• 기본 공공기여율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57.24㎡(6.2%)(7세대)
※ 기본용적률 500% 이하 적용시</td><td rowspan="6">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청년안심주택에 한함

모든 항목 충족시 기본용적률 500% 부여</td></tr>
<tr><td>• 추가 공공기여율
- 기본용적률(500%)에서 증가되는 용적률(575%)의 1/2(37.5%)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추가 제공</td><td>• 추가 공공기여율
- 공공임대주택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361.43㎡(용적률 39.26%)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65.40㎡(7.1%)(11세대)</td></tr>
<tr><td>건축물
용도구분</td><td>비주거비율
(용적률 기준)</td><td>• 15%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td><td>• 비주거비율 10.46%</td></tr>
<tr><td>주택건설
기준</td><td>주택규모</td><td>• 전용면적 18㎡ ~ 60㎡ 내외</td><td>• 전용 18.04㎡, 18.28㎡, 18.83㎡, 37.77㎡ 계획</td></tr>
<tr><td>건축물
형태</td><td>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td><td>•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 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공공시설물 설치 중 2가지 사항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행</td><td>•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건축물 이행적용</td></tr>
<tr><td>주민
공동시설</td><td>주민 커뮤니티시설</td><td>• 입주자들의 사용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td><td>• 기준 :150㎡ 이상
• 커뮤니티시설 159.83㎡ 계획
- 피트니스센터, 북카페, 코인세탁실</td></tr>
</table>

※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향후 기준 변경 시 변경된 내용에 따름)

※ 상기 계획내용은 관련법 및 지침 적용기준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 청년안심주택의 용적률 적용기준 폐지	•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청년안심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용적률 적용기준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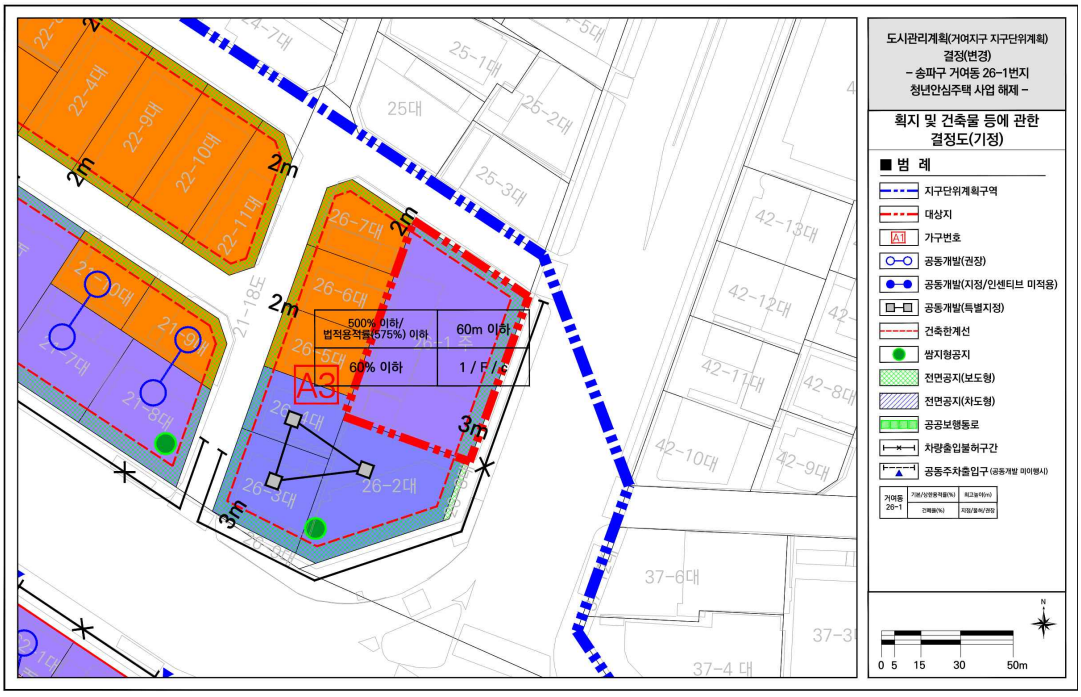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권한 : 구청장) : 변경없음

Ⅲ.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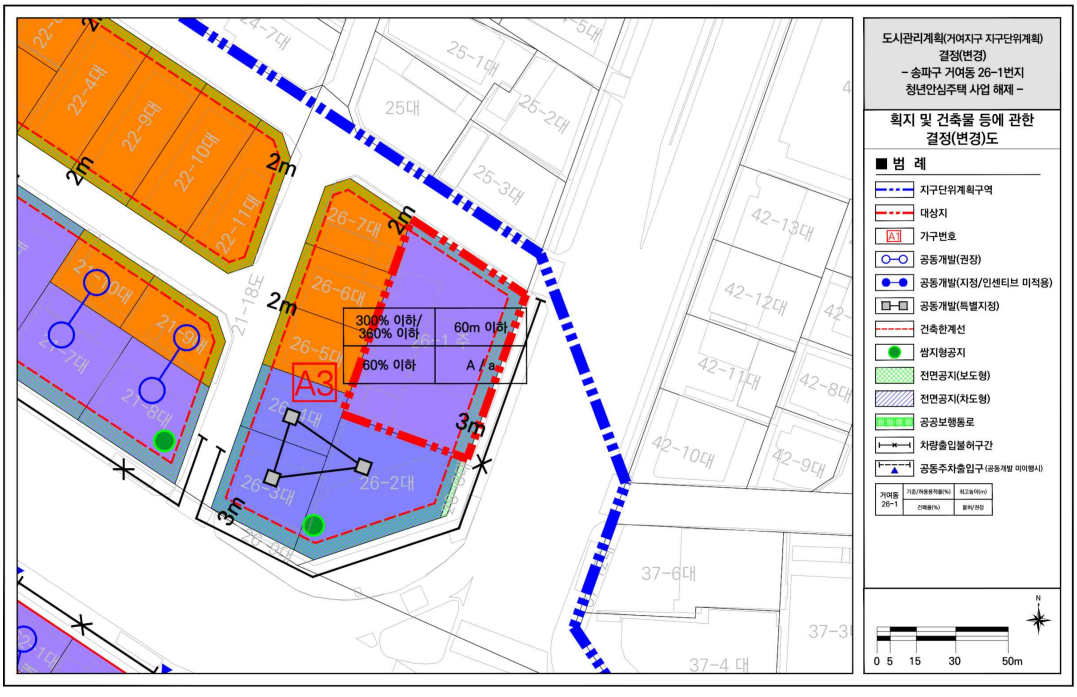
Ⅳ.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전략주택공급과(☎02-2133-6298)와 송파구청 도시계획과(☎02-2147-3002)에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및 서울도시공간포털(http://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시관리계획(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89호

병무청역세권(신길동 459-5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59-5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4-1051호(2024.06.06.)로 열람공고하고, 2025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5.3.12.)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862호(2025.04.24.)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 서울지방병무청역세권(신길동 459-5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병무청역세권(신길동 459-5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신설)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병무청역세권(신길동 459-5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459-5번지 일원	-	증) 34,056.8	34,056.8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결정사유
변경	①	병무청역세권(신길동 459-5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지방병무청역 역세권(350m) 일대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포함한 역세권 중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4,056.8	-	34,056.8	100.0	
일반주거지역	34,056.8	감) 27,389.9	6,666.9	19.6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5,216.5	감) 18,549.6	6,666.9	19.6	도로, 공원
제3종일반주거지역	8,840.3	감) 8,840.3	-	-	
준주거지역	-	증) 27,389.9	27,389.9	80.4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영등포구 신길동 459-5번지 일원	제2종(7층이하) /제3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27,389.9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3	-	4	국지 도로	100 (100)	신길동 994	신길동 1079	일반도로	-	영등포구 1998-53호 (98.9.30)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140 (94)	신길동 994	신길동 1002	일반도로	-	영등포구 1998-53호 (98.9.30)	
변경	소로	3	-	6	국지 도로	46	신길동 1027	신길동 1002	일반도로	-		
신설	소로	1	-	11	국지 도로	235 (235)	신길동 935	신길동 457-1	일반도로	-		

※( )안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연장임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폐지	소로3-	-	•대상지내 도로 폐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로 폐지
변경	소로3-	소로3-	•도로 연장 축소 -L : 140m→46m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로 연장 축소
신설	-	소로1-	•도로 신설 -B : 11m -L : 235m	•지역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도로 신설

나.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	영등포구 신길동 457-4 일원	-	증) 3,850.5	3,850.5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어린이 공원	•대상지내 공원 신설 : 3,850.5㎡	•지역내 부족한 공원녹지 해소 및 지역주민 및 어린이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공원 신설

3. 친환경 및 방재안전에 관한 결정(신설)

가. 친환경

1) 환경성검토 총괄표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자연 생태 환경	1.비오톱	비오톱 보전 등급 향상	○	•비오톱유형평가도 3등급, 4등급 •개별비오톱평가도 평가제외등급	•사업시행후 녹지면적 확보 계획 •조경계획시 도시생태계의 복원, 광역적 녹지축 연계성 확보 등을 종합적 검토, 다양한 수종 선정
	2.생태 네트워크	녹지평가지표 목표달성	○	•지구내 자연식생녹지 없음 •주거지내 소규모 화단이 있으나 규모나 환경은 열악한 편임	•"녹지평가지표1" 달성 가능 •공동주택 조성시 녹지공간 조성 및 생태기능 강화 계획수립
생활 환경	3.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대상지 주변에 고층아파트와 접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곳임	•토지이용계획 -공동주택(80.4%) -도로(8.3%), 공원(11.3%)
	4.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사업부지 대부분 포장면이 90%이상 이고, 골프연습장 부지는 포장면이 10%이상 ~ 30%미만임	•토양오염 발견시 토양오염 전문조사 기관에 오염도 분석을 의뢰한 후, 토양오염우려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절히 처리
	5.지형 · 지질	지형 · 지질 변동 최소화	○	•사업대상지는 표고차가 약 15m이고, 동고서저 지형 •사업대상지는 선캠브리아기 호상 흑운모 편마암, 신생대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됨	•기존 지형에 순응, 지형변동 최소화를 위한 단지고 계획 •지하굴착시 지하수 유출저감 및 지반안정성 확보를 위해 흙막이 공법 및 차수공법 등을 선정
	6.물순환	생태면적률 30% 확보	○	•사업대상지는 대부분 지표가 건축물과 도로로 포장되어 강우시 우수의 토양내 흡수 불량한 지역임	•투수성 포장재 및 침투시설을 설치하여 우수의 자연환원을 유도 •생태면적률 30.95% 확보
	7.수질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사업대상지내 발생 강우는 공공하수 관거로 배수되고 있음 •사업대상지가 속한 신길동 일원은 서울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유역중 "한강01" 에 속함	•공사구역 경계로 우천시 가배수로와 침사지 설치(토사유출 최소화) •빗물머금기(녹지확보), 가두기(빗물저장시설), 침투시키기(투수성포장, 침투시설) 등을 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생활 환경 (계속)	8.대기질 및 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사업대상지 동측에 여의대방로, 남측에 신풍로, 북측에 노량진로와 국철, 경부 선 철도가 지나고 있어 도로교통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큰 편임	•공사시 대기질 관리방안 수립(살수, 방진망, 세륜세치시설 등) •운영시 청정연료 및 저녹스버너 사용, 에너지 소비절약계획 수립 •운영시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기법 도입, 녹지 조성계획수립
	9.에너지 및 온실가스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4년과 2015년은 2010~2020년 평균 냉난방 도일에 비해 각각 6.3%, 6.9%가 적어 온실가스 배출량감소에 큰 영향을 미침	•운영시 청정연료,,저녹스버너 사용 •녹색건축 인증 계획수립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계획 •신·재생에너지 사용계획 •친환경전기자 충전시설 설치계획
	10.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	•공사시 공사인부에 의한 분뇨 및 생활·건설폐기물 발생 •운영시 상주, 상근 및 이용인구에 의해 생활폐기물 및 분뇨가 발생	•공사시 건설폐기물 성상별 분리 및 성상별 처리대책 마련 •운영시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분뇨 처리방안 강구
	11.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북측 창의나라어린이집은 공사시 주의가 필요 •토공사시 건설장비에 대한 합성소음도 (78.8dB(A)), 합성진동도(63.4dB(V))로 예측	•공사시 부지경계부에 가설방음판넬, 장비주변 이동식 방음벽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나 적정용량의 건설 기계를 사용 •운반차량의 주행속도를 20㎞/hr 이내로 제한, 경적사용금지 등
	12.경관	스카이라인 조화	-	-경관성검토 참조-	
	13.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사업대상지 주변은 (가칭)신길구역 재개발정비사업구역과 역세권사업이 추진예정임 •사업대상지 주변지역은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 관련법 준수 •일조 수인한도 불만족세대 대책 -공동협의체 구성과 주기적인 소통관리

2) 친환경 건축물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적용
-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따른 적용항목 및 내용은 심의 및 인허가과정에서 변경 가능

■ 환경성능 부문

구분	규모	등급분류기준		적용등급	녹색건축인증
주거부문	1,228세대	등급	1,000세대 이상	가등급	그린2(우수)등급 → 그린1(최우수)등급/상향

■ 에너지 성능 부문

구분	규모	등급분류기준		적용등급	녹색건축인증
주거부문	1,228세대	등급	1,000세대 이상	가등급	1++등급 → ZEB5등급/상향

■ 에너지 관리 부문

구분	규모	등급분류기준		적용등급	녹색건축인증
주거부문	1,228세대	가등급	1,000세대 이상	가등급	①세대별에너지원별 모니터링 ②공용부분에너지원별 모니터링기능 ③데이터분석기능

■ 신·재생에너지 부문

구분	규모	등급분류기준		적용등급	녹색건축인증
주거부문	1,228세대	가등급	1,000세대 이상	가등급	2024년 10.5%

나. 방재안전

1) 재해 취약 지역 해당여부

① 재해지도 등 현황

• 산사태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침수취약지역에도 포함되지 않으나, 2022년 대상지 내부 소로를 따라 0.5m 이내의 침수 흔적 확인. 그러나, 그 이전에는 침수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2022년 중부권 집중호우로 인한 일시적 상황으로 판단

② 방재관련 지역·지구 지정 없음

2) 방재안전계획

① 기반시설 조성계획

• 보도 등은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고 나무와 화초를 심는 경우 그 식재면의 높이를 보도의 바닥 높이와 같거나 낮게 조성

② 대지조성계획

• 지형순응형 대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 자연환경 인자에 대한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 부지 조성은 가능한 소량의 토공이 발생 되도록 하고 과도한 옹벽 설치 방지

③ 기타 방재안전계획

• 화재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피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화재에 안전한 건축자재 사용 및 소방차 활동이 가능하도록 건축설계 및 시공계획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및 친환경 건축물의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준수하여 환경친화적 건축물 건립

4. 공공기여계획 결정(신설)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계획기준</th><th>계획내용</th></tr>
<tr><td>공공기여율</td><td colspan="2">•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완화된 용적률의 1/2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부지면적 기준으로 환산 적용
- 완화된 용적률 =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은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준수 시 부여)</td><td>• 완화용적률(263.9%)의 1/2이상
-131.95% 이상
-부지면적 기준 7,529.4㎡이상</td></tr>
<tr><td rowspan="3">공공기여
시설 종류</td><td colspan="2">•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성이
확보된 공공시설등의 설치·제공 가능</td><td>• 장기전세주택 : 총 322세대
• 공공시설 : 공원, 도로</td></tr>
<tr><td>공공주택</td><td>- 공공주택은 전용 85㎡이하 주택으로 계획
- 공공주택 입주자에게 차별 또는 이용상 불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혼합(Socialmixing)하여 계획</td><td>• 전용 84㎡, 59㎡, 52㎡ 계획
• 사회혼합 적용
-동일 배치 및 평면 적용 등</td></tr>
<tr><td>공공시설</td><td>- 공공시설등을 설치·제공은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성이 없이 상한용적률 적용만을 위한 기부채납은 지양</td><td>• 지역내 필요시설 해당</td></tr>
</table>

주1)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2022.6.20.) 적용

주2) 순부담 기준으로 공공시설등을 제공하여야 함

(순부담이란 사유토지(국공유지가 매각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무상 양여된 경우는 제외)를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획지에 관한 결정(신설)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획지	①	•영등포구 신길동 459-5번지 일원	27,389.9	

2. 건축물 용도 결정(신설)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허용용도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음 각 항목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포함)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3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7호의 판매시설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13호의 운동시설 -제14호의 업무시설	
불허용도 (A)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 건축물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신설)

가.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216.1%이하	
	상한용적률	• 480%이하	
높이		• 130m 이하	

4.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신설)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선	건축한계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여의대방로47길, 여의대방로43라길, 여의대방로43나길, 신설도로 변	결정도 참조
대지 안의 공지	전면공지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보도부속형 : 접하는 보도와 단차를 없애고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공공보행통로	•여의대방로47길~여의대방로43나길로 이어지는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보행공간으로 조성 -1개소, 폭 8m 이상 -지역권설정 ‣위치 및 범위 : 영등포구 신길동 470-5~영등포구 신길동 897-4간 목적통행을 위한 폭 8m 범위(결정도 참조) ‣설정기간 : 건축물 존속기간으로 한정	
건축물형태		•가로변 통경축(시각통로) 확보	
외관	색채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유채색 계통으로 주변과의 조화 유도	
	재료	•주변 경관과 조화된 재료 선택 유도	

5. 인센티브계획 관한 결정(신설)

가.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공공기여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기여 기준	기준용적률		• 216.1%이하	
	상한용적률		• 480%	
	완화용적률의 1/2		• 완화용적률(263.9%)의 1/2이상 -131.95% 이상	부지면적 환산 7,529.4㎡
공공기여 제공계획	총 공공기여 제공량		• 131.96% -장기전세주택 117.33% -공공시설 : 14.63%	부지면적 환산 7,529.8㎡
	공공기여 시설	장기전세주택	• 전용 84㎡이하 주택 - 총 322세대(84㎡, 59㎡, 52㎡) 계획	계획기준: 전용 85㎡ 이하
		공공시설	• 공원(어린이공원) : 3,850.5㎡ 계획 • 도로(소로, 폭11m) : 2,816.4㎡ 계획	토지면적 기준

주1)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연면적 등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건축심의 등 사업추진 시 조정될 수 있음

▌비주거시설의 건축

구분	계획기준	계획내용
비주거 비율	•준주거지역 계획시, 지상층 연면적의 5% 이상 지상층 건축 -오피스텔 등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 -지형 여건, 지하철 연결통로 및 지하상가 활성화 등이 가능할 경우 위치 변경 가능	•가로변 보행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등 지상 연면적의 5% 계획 (여의대방로43라길, 여의대방로43나길변 대면상가 조성)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구분	계획기준	계획내용
필수	①지속가능형 공동주택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공동주택 또는 「주택법」 제38조에 의한 “장수명 주택”으로 계획 -적합여부 건축위원회에서 결정	•장수명주택 계획
	②친환경 건축물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서울특별시 고시)」에 의한 해당 적용대상의 구분을 적용하여 ㉠ 환경성능부문 ㉡ 에너지성능부문 ㉢ 에너지관리부문 ㉣ 신·재생에너지부문 중 2가지 이상을 적용대상의 구분에서 상향단계 적용	•적용대상 부문별 ㉮등급 기준 적용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 5등급 추가 적용
	③역사문화 보전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 및 등록문화재 또는 역사·생활 문화유산이 포함된 경우 보전계획을 준수하여 사업계획 및 건축계획에 반영	•해당없음 (*건축계획 반영 문화재 없음)

구분	주 거	비 주 거
㉮	1,000세대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	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1만㎡ 이상 ~ 10만㎡ 미만
㉰	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 1만㎡ 미만
㉱	3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3천㎡ 미만

-단,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적용대상의 구분이 최상일 경우(㉮)는 해당 적용대상의 구분과 동일 고시의 녹색건축물 인센티브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 5등급 추가 적용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계획내용을 제출·확인하고 착공 전까지 예비인증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 시 인증

<table>
<tr><th>구분</th><th>계획기준</th><th>계획내용</th></tr>
<tr><td>권장</td><td>④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
<table>
<tr><th>공동주택 세대수</th><th>설 치 규 모</th><th>비고</th></tr>
<tr><td>300세대 미만</td><td>공공임대주택 포함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3%(최소 300㎡) 이상</td><td rowspan="2">공급면적 기준</td></tr>
<tr><td>300세대 이상</td><td>공공임대주택 포함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2%(최소 450㎡) 이상</td></tr>
</table></td><td>-</td></tr>
</table>

※대상지내 시유형문화재 '조선 이흠례묘지(유물/기타종교조각/유교조각)' 는 개인이 집(신길동 458-6)에서 관리중으로 확인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신설)

구분	계획내용
차량출입불허구간	•여의대방로47길 및 도로가각부 주차출입구 설치 불허(3개소)
주차출입구	•주차출입구 위치 지정(2개소) -서측 : 여의대방로43라길(삼환아파트 출입구측) -남측 : 여의대방로43나길

Ⅲ. 관계도면 : 붙임 참조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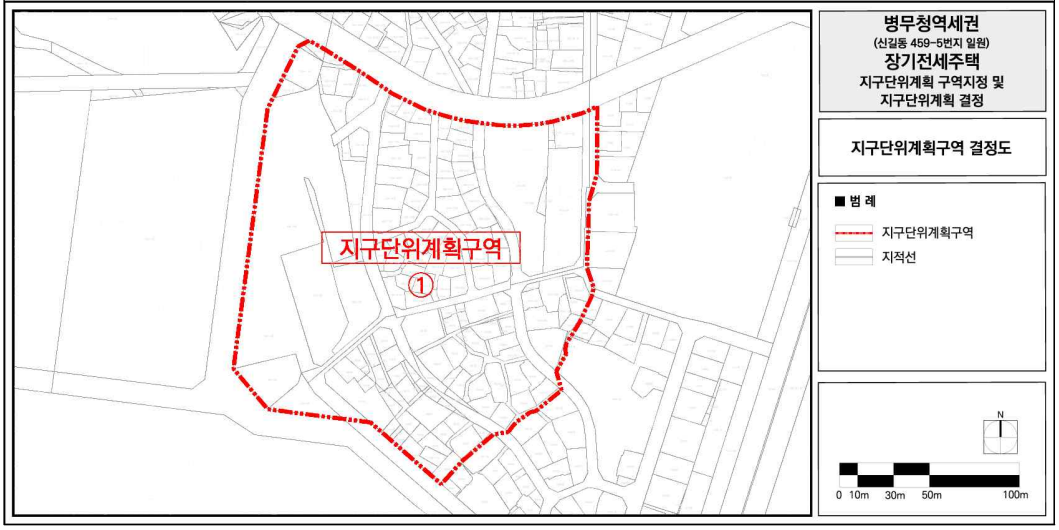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시청 공공주택과(☎02-2133-7059) 및 영등포구 도시계획과(☎02-2670-3541)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및 영등포구청 홈페이지(https://www.ydp.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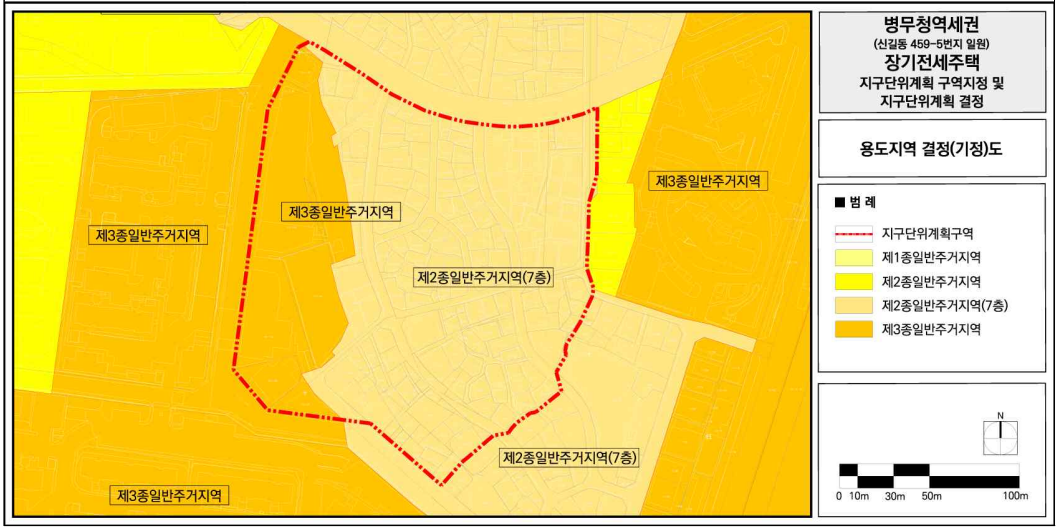
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금회 상향 결정(변경) 된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및 기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 지정 당시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됨을 고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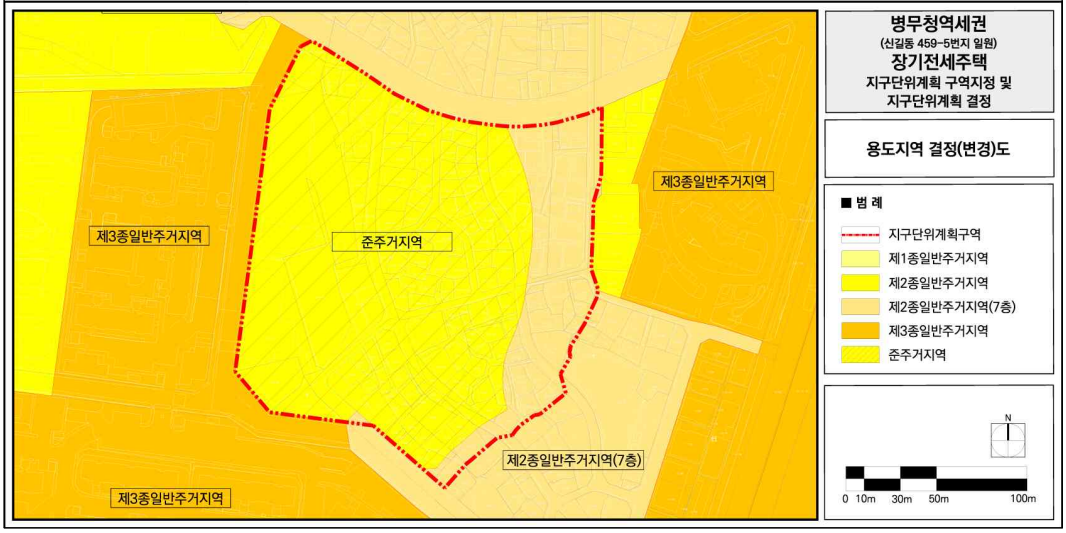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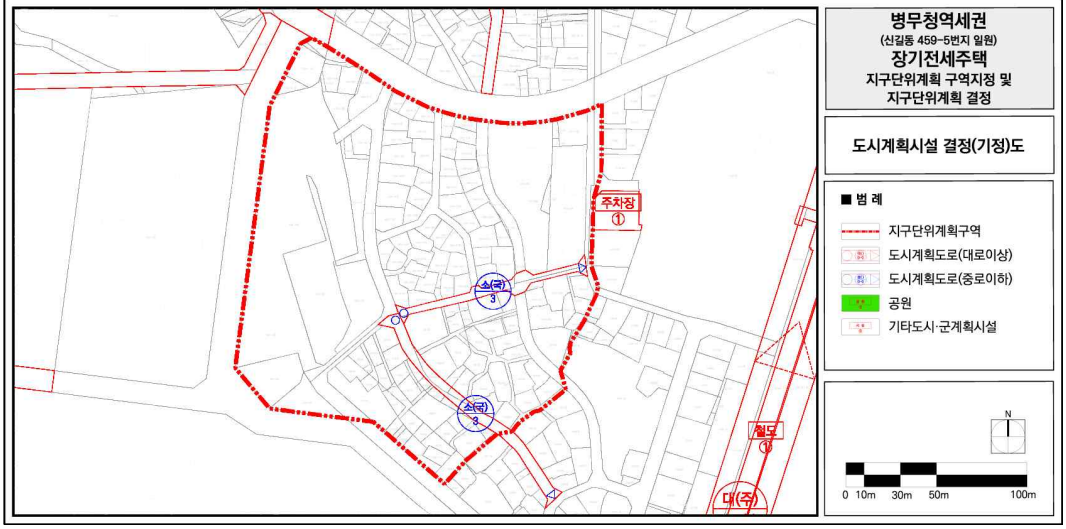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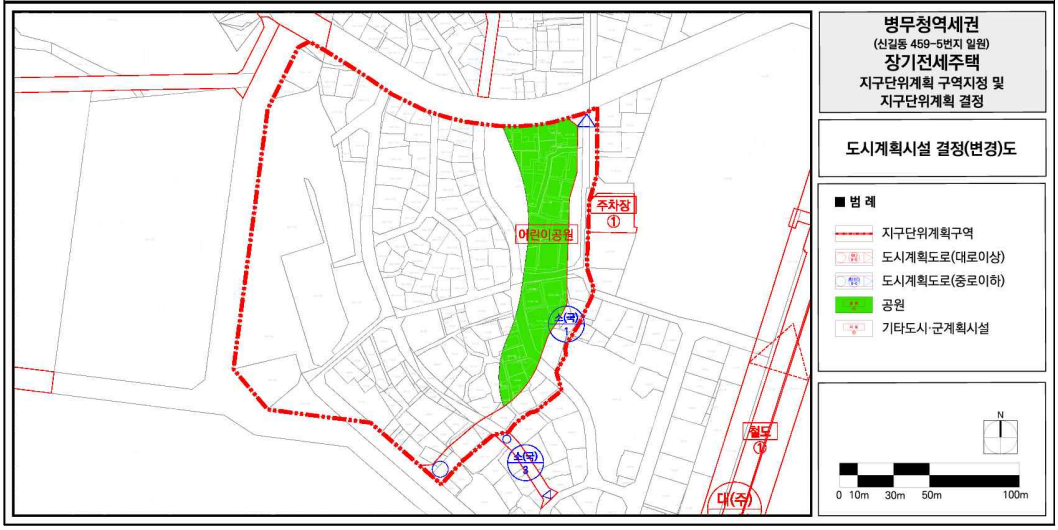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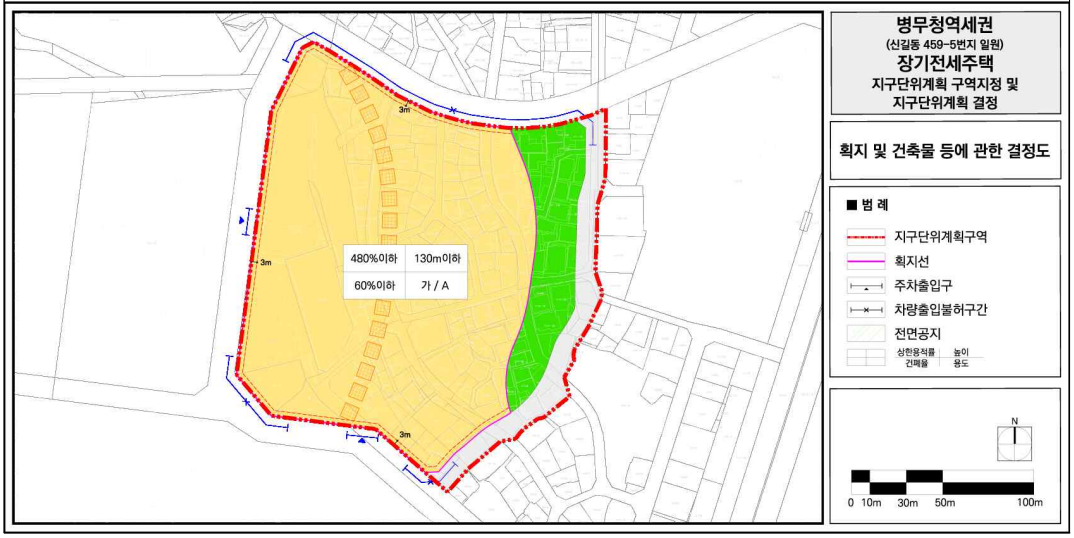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신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90호

도시관리계획(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공고 제1988-596호(1988.8.26.)로 도시설계지구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 419호(2008.11.20.)로 결정(변경)된 「율곡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5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5.4.9.) 심의결과(수정가결)을 반영하여 종로구 공고 제2025-648호(2025.5.1.)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율곡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2008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이후 서울도심 지역의 정책환경과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낙후된 도심 지역의 환경을 정비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율곡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종로구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효제동, 충신동, 종로 5 · 6가동 일대	446,340	-	446,340	-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446,340	-	446,340	100.00	-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585	-	2,585	0.58	-
	제2종일반주거지역	108	-	108	0.02	-
	제3종일반주거지역	6,129	-	6,129	1.38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37,518	-	437,518	98.02	-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21	13,378 (6,566)	296,211 (123,440)	4	3,864 (1,599)	73,645 (28,652)	4	4,260 (1,967)	117,829 (61,418)	13	5,254 (3,000)	104,737 (33,370)
광로	1	1,500 (536)	51,901 (12,742)	-	- (-)	- (-)	-	- (-)	- (-)	1	1,500 (536)	51,901 (12,742)
대로	3	5,400 (1,884)	154,192 (67,302)	-	- (-)	- (-)	2	3,800 (1,507)	114,192 (57,781)	1	1,600 (377)	40,000 (9,521)
중로	2	3,400 (1,135)	68,436 (23,443)	2	3,400 (1,135)	68,436 (23,443)	-	- (-)	- (-)	-	- (-)	- (-)
소로	15	3,078 (93,011)	21,682 (19,930)	2	464 (464)	5,209 (5,209)	2	460 (460)	3,637 (3,637)	11	2,154 (2,087)	12,836 (11,084)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로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66	22~40	주간선 도로	1,500 (536)	종로5가	혜화동 로타리	일반도로	건고제145호 (78.5.15)	-
기정	대로	2	6	27~30	주간선 도로	2,600 (1,403)	안국동광장	동대문광장	일반도로	서고제26호 (78.1.28)	-
기정	대로	2	59	30	주간선 도로	1,200 (104)	원남동 네거리	혜화동광장	일반도로	건고제244호 (78.10.2)	-
기정	대로	3	2	25	주간선 도로	1,600 (377)	원남동광장	충무로5가	일반도로	층고시-722 (36.12.26)	-
기정	중로	1	4	20	집산 도로	600 (189)	종로6가 청계천변	충신동	일반도로	층고시-722 (36.12.26)	-
기정	중로	1	175	20~23	집산 도로	2,800 (946)	세종로동 82-14	충신동 27-64	일반도로	서고제39호 (78.2.10)	-
기정	소로	1	5	10	집산 도로	163 (163)	충신동 136-11	충신동 179-4	일반도로	건고제432호 (63.7.1)	-
기정	소로	1	-	10~12	국지 도로	301 (301)	연건동 187-1	효제동 126-2	일반도로	서고제2008-419호 (08.11.20)	-
기정	소로	2	-	8~16	국지 도로	272 (272)	효제동 133-7	효제동 175-1	일반도로	서고제2008-419호 (08.11.20)	-
기정	소로	2	16	6~8	국지 도로	188 (188)	이화동 107-1	충신동 120	일반도로	건고제432호 (63.7.1)	-
기정	소로	3	2	5~10	국지 도로	281 (214)	연지동 168	종로5가 124-4	일반도로	건고제432호 (63.7.1)	-
기정	소로	3	114	6	국지 도로	87 (87)	인의동 59-5	인의동 49-1	일반도로	건고제432호 (63.7.1)	-
기정	소로	3	118	6	국지 도로	390 (390)	인의동 8	효제동 22-3	일반도로	건고제432호 (63.7.1)	-
기정	소로	3	120	6	국지 도로	67 (67)	연지동 246	연지동 270	일반도로	건고제432호 (63.7.1)	-
기정	소로	3	124	4~6	국지 도로	160 (160)	효제동 27-1	효제동 107	일반도로	건고제432호 (63.7.1)	-
기정	소로	3	125	6	국지 도로	130 (130)	충신동 63	충신동 136-11	일반도로	건고제432호 (63.7.1)	-
기정	소로	3	126	6	국지 도로	150 (150)	충신동 120	충신동 171	일반도로	건고제432호 (63.7.1)	-
기정	소로	3	130	6	국지 도로	122 (122)	종로6가 16-1	종로6가 130-1	일반도로	건고제432호 (63.7.1)	-
기정	소로	3	139	6	국지 도로	500 (500)	원남동 151-6	인의동 117-1	일반도로	건고제432호 (63.7.1)	-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	6~8	국지 도로	60 (60)	효제동 122	효제동 117-1	일반도로	서고제2008-419호 (08.11.20)	-
기정	소로	3	-	6~8	국지 도로	207 (207)	효제동 273	효제동 233-2	일반도로	서고제2008-419호 (08.11.20)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로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창경공원	근린공원	와룡동 2-1일대	188,667 (5,208.6)	-	188,667 (5,208.6)	건고 제187호 (62.12.20)	-
기정	-	창덕공원	근린공원	와룡동 2-1일대	496,997 (2,192.5)	-	496,997 (2,192.5)	건고 제187호 (62.12.20)	-
기정	-	종묘공원	근린공원	훈정동 1-2 일대	182,206 (1,389.6)	-	182,206 (1,389.6)	건고 제187호 (62.12.20)	-
기정	2	연지1	근린공원	연지동 1-38	2,827.6 (2,827.6)	-	2,827.6 (2,827.6)	서고시 제726호 (85.10.31)	-
기정	3	어린이 공원	어린이공원	연지동 136-92	474.2 (474.2)	-	474.2 (474.2)	서고시 제1998-353호 (98.10.15)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면적

2)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공공공지	인의동 28-28 일대	414.9	-	414.9	서고제2008-419호 (08.11.20)	-
기정	2	공공공지	인의동 28-6 일대	196.5	-	196.5	서고제2008-419호 (08.11.20)	-
기정	3	공공공지	효제동 295 일대	385.5	-	385.5	서고제2008-419호 (08.11.20)	-

다. 공공 · 문화체육시설

1) 학교

□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학교	초등학교	효제동 225-4	20,616.2	-	20,616.2	서교5 (87.2.17)	효제 초교

2)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사회복지 시설	효제동 107 일대	351	-	351	종로구고시 제2023-126호 (23.10.26)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최대개발규모(변경)

1) 최대개발규모 결정(기정)조서

블록구분		면적(㎡)	비 고	블록구분		면적(㎡)	비 고
A (종묘 인근 블록)	A-1	2,075		C (충신 시장 블록)	C-1	2,421	
	A-2	1,426			C-2	4,547	
	A-3	1,814			C-3	3,734	
	A-4	1,811			C-4	6,489	동일소유(동륭실업)
	A-5	772			C-5	3,537	
	A-6	1,713			C-6	2,025	
	A-7	1,236			C-7	2,028	
	A-8	1,660			C-8	3,972	
	A-9	1,365			C-9	3,316	
	A-10	1,314			C-10	3,614	기개발 - 예일빌딩
	A-11	1,288			C-11	4,090	
	A-12	993			C-12	4,180	
	A-13	1,769			C-13	987	
	A-14	1,358			C-14	4,054	
	A-15	1,570			C-15	3,566	
	A-16	1,342			C-16	4,428	
	A-17	1,660					
	A-18	1,766					
B (서울	B-1	4,957					
	B-2	2,379					

블록구분		면적(㎡)	비 고
보증보험 블록)	B-3	3,457	
	B-4	3,406	기개발 - 보령제약
	B-5	747	
	B-6	4,153	기개발 - 여전도회관
	B-7	2,700	
	B-8	4,319	
	B-9	3,403	
	B-10	11,148	기개발 - 은석빌딩,동일소유
	B-11	2,897	
	B-12	3,302	
	B-13	1,835	
	B-14	2,242	
	B-15	2,261	
	B-16	4,955	
	B-17	2,988	
	B-18	7,419	기개발 - 업무시설
	B-19	5.279	기개발-기독교 100주년기념관
	B-20	9,504	기개발 - 서울보증보험
	B-21	2,509.5	
	B-22	3,247.5	효제동21-3번지 특별계획구역
	B-23	3,245	
	B-24	2,315	기개발 - 영동교회

블록구분		면적(㎡)	비 고
	C-17	854	
	C-18	1,851	
	C-19	1,808	
D (기독교 회관 블록)	D-1	1,025	
	D-2	2,830	
	D-3	4,320	
	D-4	3,595	
	D-5	3,358	
	D-6	3,642	
	D-7	4,479	
	D-8	3,676	
	D-9	4,118	기개발 - 한국기독교회관
	D-10	5,055	기개발 - 삼양사
	D-11	2,321	기개발 - 기독교 회관
	D-12	1,832	

블록구분		면적(㎡)	비 고
E (효제 초등 학교 인근 블록)	E-1	3,131	
	E-2	689	
	E-3	465	
	E-4	1,056	
	E-5	1,052	
	E-6	3,369	
	E-7	2,527	
	E-8	3,403	
	E-9	2,411	
	E-10	2,785	
	E-11	3,895	
	E-12	3,597	
	E-13	2,857	
	E-14	1,821	
	E-15	2,633	
	E-16	2,932	
	E-17	3,761	
	E-18	3,265	
	E-19	4,885	
	E-20	1,004	
	E-21	1,644	

블록구분		면적(㎡)	비 고
F (율곡로 북측 블록)	F-1	2,409	
	F-2	2,323	
	F-3	1,648	
	F-4	920	
	F-5	896	
	F-6	727	
	F-7	922	
	F-8	483	
	F-9	2,485	
	F-10	1,285	
	F-11	1,570	
	F-12	709	
	F-13	2,676	
	F-14	827	

※ 구적면적으로 실제 면적과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음.
- 블록별 최대개발규모 범위 초과 개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이행하며 특별계획구역으로 관리함

- 블록별 최대개발규모 범위안 기준면적(2,000㎡) 이상의 공동개발의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기존대지 및 공동개발(지정·권장) 대지가 기준면적(2,000㎡)을 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함)

2) 최대개발규모 결정(변경)조서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일대(변경)

구 분	최대개발규모(㎡)	비 고
지구단위구역내	-	개발규모 3,000㎡ 초과 개발 시 특별계획구역으로 관리

※ 2,000㎡이상 개발 시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능
※ 효제동, 종로5·6가동 일대 적용 제외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 효제동, 종로5·6가동 일대(변경없음)

블록구분		면적(㎡)	비 고
E (효제초등학교 인근 블록)	E-1	3,131	
	E-2	689	
	E-3	465	
	E-4	1,056	
	E-5	1,052	
	E-6	3,369	
	E-7	2,527	
	E-8	3,403	
	E-9	2,411	
	E-10	2,785	
	E-11	3,895	
	E-12	3,597	
	E-13	2,857	
	E-14	1,821	
	E-15	2,633	
	E-16	2,932	
	E-17	3,761	
	E-18	3,265	
	E-19	4,885	
	E-20	1,004	
	E-21	1,644	

※ 구적면적으로 실제 면적과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음.
- 블록별 최대개발규모 범위 초과 개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이행하며 특별계획구역으로 관리함.
- 블록별 최대개발규모 범위안 기준면적(2,000㎡) 이상의 공동개발의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기존대지 및 공동개발(지정·권장) 대지가 기준면적(2,000㎡)을 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 최대개발규모 변경사유서

블록구분	변경사유
-	○ 효제초등학교 블록을 제외한 블록별 최대개발규모 일괄 삭제

나. 최소개발규모(변경)

1) 최소개발규모 결정(기정)조서

구 분	최소개발규모(㎡)	비 고
A-1	150㎡ 이상	간선부
A-2	100㎡ 이상	이면부

※ 최소개발규모에 미달하는 대지는 최소개발규모의 50% 범위까지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규모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서 개발 가능

2) 최소개발규모 결정(변경)조서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일대(변경)

구 분	최소개발규모(㎡)	비 고
A-1	150㎡ 이상	간선부
A-2	100㎡ 이상	이면부

※ 최소개발규모 미만 필지의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 가능
※ 효제동, 종로5·6가동 일대 적용 제외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 효제동, 종로5·6가동 일대(변경없음)

구 분	최소개발규모(㎡)	비 고
A-1	150㎡ 이상	간선부
A-2	100㎡ 이상	이면부

※ 최소개발규모에 미달하는 대지는 최소개발규모의 50% 범위까지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규모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서 개발 가능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 최소개발규모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사유
-	○ 소규모 필지가 다수 입지한 현황을 고려하여 단서 조항 변경

다. 가구 및 획지(변경)

1) 가구 및 획지 결정(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A-1	1	1,607.5	와룡동 2-3	327.3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150-2	1,280.2	
	2	467.9	원남동 151-2	205.1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151-6	262.8	
A-2	1	288.3	원남동 209	288.3	
	2	100.3	원남동 208-1	70.5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07	29.8	
	3	218.9	원남동 199	218.9	
	4	338.7	원남동 197-1	244.6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198	94.1	
	5	109.6	원남동 210-2	109.6	
	6	181.8	원남동 206-1	181.8	
	7	105.7	원남동 194	105.7	
A-3	1	1,123.5	원남동 194	1,123.5	
	2	129.1	원남동 212-1	7.3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12-7	88.7	
			원남동 211	33.1	
	3	139.0	원남동 212-2	139.0	
	4	200.8	원남동 212-3	79.3	공도개발 지정
			원남동 212-4	100.7	
			원남동 212-6	20.8	
	5	131.5	원남동 214-10	0.7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13	56.2	
			원남동 214-1	38.3	
			원남동 214-12	1.3	
			원남동 214-6	35.0	
A-4	1	185.1	원남동 171-2	185.1	
	2	1,027.1	원남동 177-1	1,027.1	
	3	599.0	원남동 189-1	599.0	
A-5	1	399.3	원남동 166-2	26.1	166-2, 179-2, 179-3 공동개발 지정 179-3, 180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179-2	54.2	
			원남동 179-3	79.3	
			원남동 180	239.7	
	2	195.4	원남동 181	68.1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183-3	65.8	
			원남동 182	61.5	
	3	151.7	원남동 183-8	60.8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184	26.4	
			원남동 184-1	9.9	
			원남동 185	49.6	
			원남동 183-1	1.7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원남동 183-13	3.3	
A-6	1	327.2	원남동 189-12	205.3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189-2	52.2	
			원남동 189-3	35.7	
			원남동 183-12	13.2	
			원남동 183-11	16.5	
			원남동 183-10	4.3	
	2	212.6	원남동 192-2	212.6	
	3	269.7	원남동 189-7	130.9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189-6	53.2	
			원남동 189-4	41.0	
			원남동 189-5	15.5	
			원남동 189-8	29.1	
	4	128.9	원남동 191-1	73.7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191-3	47.3	
			원남동 191-2	7.9	
	5	197.3	원남동 189-10	1.7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189-9	91.9	
			원남동 190-1	32.7	
			원남동 190-3	6.9	
			원남동 190-2	59.5	
			원남동 95-9	4.6	
	6	534.4	원남동 187	389.5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188-2	144.9	
A-7	1	109.1	원남동 217-3	107.4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17-2	1.7	
	2	52.9	원남동 218	52.9	
	3	158.7	원남동 219-1	158.7	
	4	218.2	원남동 222	62.8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221	69.4	
			원남동 220	86.0	
	5	109.1	원남동 223	109.1	
	6	184.9	원남동 229	102.2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30-2	46.3	
			원남동 230-1	36.4	
	7	102.5	원남동 232	39.7	공동개발 지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원남동 231-2	62.8	
	8	49.6	원남동 231-1	49.6	
A-8	1	101.0	원남동 214-8	49.6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14-5	40.7	
			원남동 214-18	10.7	
	2	66.4	원남동 215-2	66.4	
	3	125.6	원남동 215-1	62.8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216	62.8	
	4	50.5	원남동 214-4	4.1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25-4	22.0	
			원남동 225-5	24.4	
	5	109.9	원남동 225-3	50.6	225-2, 215-3, 214-2 공동개발 지정 214-3, 225-3 공동개발 지정 225-3, 225-2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214-2	3.0	
			원남동 225-2	49.3	
			원남동 215-3	4.0	
			원남동 214-3	6.0	
	6	142.8	원남동 225-1	37.0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224	105.8	
	7	50.8	원남동 225-6	27.3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25-7	23.5	
	8	236.2	원남동 226-2	68.5	226-1, 239-3 공동개발 지정 226-1, 226-2, 227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226-1	99.2	
			원남동 239-3	3.3	
			원남동 227	65.2	
	9	140.0	원남동 228-5	38.3	228-2, 228-3, 228-4, 228-5 공동개발 지정 228-1, 228 공동개발 지정 228, 228-3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228-3	40.3	
			원남동 228-2	2.0	
			원남동 228-4	4.6	
			원남동 228-1	14.5	
			원남동 228	40.3	
	10	88.8	원남동 239-2	45.8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39-1	43.0	
	11	138.3	원남동 237	98.6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38	39.7	
	12	92.6	원남동 240	92.6	
	13	96.2	원남동 241	96.2	
	14	97.9	원남동 225-10	44.0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25-9	53.9	
A-9	1	251.9	원남동 242-2	251.9	
	2	94.2	원남동 242-1	94.2	
	3	205.1	원남동 236	33.1	234, 235 공동개발 권장 235, 236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35	86.0	
			원남동 234	86.0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4	56.2	원남동 233	56.2	
	5	396.7	원남동 244-7	396.7	
	6	142.1	원남동 243-3	72.7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243-2	69.4	
	7	79.3	원남동 243-4	79.3	
	8	115.7	원남동 243-5	115.7	
A-10	1	145.5	원남동 244-1	109.1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45-6	36.4	
	2	86.0	원남동 245-1	86.0	
	3	683.9	원남동 249-7	658.8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49-1	1.3	
			원남동 248-2	4.0	
			원남동 248-3	19.8	
	4	165.2	원남동 246	67.1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46-1	7.3	
			원남동 246-2	90.8	
	5	204.4	원남동 247-2	132.3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248	72.1	
A-11	1	155.4	원남동 256-2	56.2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56-1	59.5	
			원남동 255-2	39.7	
	2	217.9	원남동 257-1	217.9	
	3	152.1	원남동 255-1	39.7	254-1, 255-1 공동개발 지정 254-1, 254-2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254-1	39.7	
			원남동 254-2	72.7	
	4	484.6	원남동 250	281.0	249-4, 250, 252 공동개발 권장 250-1, 251 공동개발 권장 250, 250-1 공동개발 지정 249-4, 249-5 공동개발 지정 251-2, 252, 251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50-1	19.8	
			원남동 249-4	66.1	
			원남동 249-5	8.6	
			원남동 252	66.1	
			원남동 251	30.4	
			원남동 251-2	12.6	
	5	122.3	원남동 253	122.3	
A-12	1	164.9	원남동 243-6	164.9	
	2	174.3	원남동 243-7	87.2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243-23	87.1	
	3	231.4	원남동 243-10	115.7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243-11	115.7	
	4	228.1	원남동 243-9	112.4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243-12	115.7	
A-13	1	82.6	원남동 259	82.6	
	2	86.0	원남동 260	86.0	
	3	119.0	원남동 261	119.0	
	4	123.7	원남동 262-4	26.8	공동개발 지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원남동 262-1	96.9	
	5	155.9	원남동 263	150.6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62-3	5.3	
	6	140.6	원남동 264	140.6	
	7	155.4	원남동 266-1	155.4	
	8	441.2	원남동 273	441.2	
	9	124.7	원남동 265	124.7	
	10	70.9	원남동 267	70.9	
	11	108.0	원남동 270-2	51.0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71	57.0	
A-14	1	79.3	원남동 258	79.3	
	2	135.5	원남동 278	135.5	
	3	101.7	원남동 279-2	100.5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79-3	1.2	
	4	128.9	원남동 277	128.9	
	5	191.8	원남동 276-2	107.8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76-1	84.0	
	6	299.0	원남동 279	299.0	
	7	174.1	원남동 282	174.1	
	8	247.9	원남동 275	86.0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80	82.6	
			원남동 281	79.3	
A-15	1	216.1	인의동 59-5	216.1	
	2	479.3	인의동 59-8	479.3	
	3	411.9	인의동 59-6	379.8	공동개발 지정
			인의동 59-7	32.1	
	4	254.5	인의동 59	254.5	
	5	92.1	인의동 57-6	92.1	
	6	111.7	인의동 57-4	111.7	
A-16	1	544.3	인의동 57-2	188.4	57-1, 57-3 공동개발 지정 57-2, 56 공동개발 지정 57-3, 56 공동개발 권장
			인의동 56	46.3	
			인의동 57-1	66.0	
			인의동 57-3	243.6	
	2	677.8	인의동 49-1	51.0	공동개발 지정
			인의동 50-2	626.8	
A-17	1	204.9	인의동 61-1	139.8	공동개발 지정
			인의동 61-2	65.1	
	2	138.5	인의동 89-9	5.6	공동개발 지정
			인의동 89-8	7.3	
			인의동 89-11	125.6	
	3	151.8	인의동 89-13	97.9	89-17, 89-12 공동개발 지정 89-17, 89-13 공동개발 권장
			인의동 89-17	10.9	
			인의동 89-12	43.0	
	4	211.5	인의동 89-15	211.5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5	151.2	인의동 89-25	6.4	공동개발 지정
			인의동 89-14	74.8	
			인의동 89-6	70.0	
	6	396.0	인의동 89-16	6.6	89-16, 89-5 공동개발 지정 89-5, 90-5, 90-3, 89-3 공동개발 권장
			인의동 89-5	88.1	
			인의동 90-5	67.9	
			인의동 89-3	162.0	
			인의동 90-3	71.4	
	7	236.3	인의동 90-1	236.3	
A-18	1	453.0	인의동 78-1	29.9	78-1, 77 공동개발 지정 77, 76-1, 79-1, 75-4 공동개발 권장 75-4, 80-1 공동개발 지정
			인의동 77	82.6	
			인의동 76-1	99.2	
			인의동 79-1	109.8	
			인의동 75-4	44.9	
			인의동 80-1	86.6	
	2	437.1	인의동 74-1	148.7	72, 73, 74-1 공동개발 권장 74-1, 81-1 공동개발 지정
			인의동 81-1	26.4	
			인의동 72	69.4	
			인의동 73	192.5	
	3	339.2	인의동 63	33.1	63, 62-1 공동개발 지정
			인의동 62-1	306.1	
	4	267.8	인의동 101-12	4.2	85-4, 85-3 공동개발 지정 101-12, 86 공동개발 지정 86, 85-3, 85-1 공동개발 권장
			인의동 86	89.9	
			인의동 85-3	108.4	
			인의동 85-1	62.2	
			인의동 85-4	3.1	
B-1	1	188.4	원남동 96-7	63.8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96-8	63.1	
			원남동 96-9	61.5	
	2	588.8	원남동 94-3	35.7	공동개발 지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원남동 94-4	36.7	
			원남동 95	494.8	
			원남동 95-13	21.6	
	3	214.9	원남동 89-1	213.6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89-4	1.3	
	4	190.7	원남동 89-3	187.1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95-12	3.6	
B-1	5	505.2	원남동 86-1	100.5	86-1, 86-15 공동개발 지정 86-5, 86-6, 86-8 공동개발 지정 86-1, 86-8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86-15	52.1	
			원남동 86-5	3.3	
			원남동 86-6	332.8	
			원남동 86-8	16.5	
	6	152.0	원남동 88-1	152.0	
	7	86.0	원남동 85-2	86.0	
	8	534.8	원남동 27-1	0.7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7-5	70.5	
			원남동 27-13	52.7	
			원남동 27-10	16.2	
			원남동 28-7	240.3	
			원남동 28-8	154.4	
	9	577.3	원남동 28-23	15.9	36, 28-33, 37-1 공동개발 지정 35, 36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36	431.8	
			원남동 35	86.0	
			원남동 37-1	43.6	
	10	324.2	원남동 28-11	150.7	28-11, 28-9 공동개발 권장 28-9, 28-12, 28-6, 28-13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8-9	150.7	
			원남동 28-12	6.3	
			원남동 28-6	13.2	
			원남동 28-13	3.3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11	153.1	원남동 28-15	153.1	
	12	89.3	원남동 34-1	89.3	
	13	59.5	원남동 34-2	59.2	
	14	148.8	원남동 33	59.5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32	89.3	
	15	228.1	원남동 29-1	228.1	
	16	89.3	원남동 28-18	89.3	
	17	76.0	원남동 28-17	76.0	
	18	241.3	원남동 29-3	128.9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29-2	112.4	
	19	129.0	원남동 30	39.7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8-19	89.3	
B-2	1	164.7	원남동 26-6	72.1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38	92.6	
	2	160.0	원남동 49-10	108.8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49-20	51.2	
	3	135.5	원남동 39	135.5	
	4	168.7	원남동 42-2	89.3	40, 42-3 공동개발 지정 42-2, 42-3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40	43.0	
			원남동 42-3	36.4	
	5	301.1	원남동 49-11	131.2	49-11, 49-12, 49-13 공동개발 지정 49-14, 41 공동개발 지정 41, 49-13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49-14	3.6	
			원남동 49-12	10.2	
			원남동 49-13	70.1	
			원남동 41	86.0	
	6	206.3	원남동 49-9	114.4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49-17	40.0	
			원남동 47-2	3.0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원남동 49-19	48.9	
	7	357.4	원남동 47-3	93.9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47-4	109.4	
			원남동 47-5	0.7	
			원남동 48-5	9.9	
			원남동 49-4	143.5	
	8	199.1	원남동 43	199.1	
	9	310.3	원남동 49-18	79.7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60-1	230.6	
	10	339.6	원남동 49-16	59.5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56-3	47.3	
			원남동 59	19.8	
			원남동 57	213.0	
B-3	1	305.1	원남동 84-2	94.2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82-2	210.9	
	2	221.5	원남동 72-2	221.5	
	3	269.5	원남동 80-2	110.8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66-26	158.7	
	4	235.8	원남동 72-1	235.8	
	5	208.3	원남동 66-13	208.3	
	6	228.1	원남동 66-12	228.1	
	7	89.3	원남동 66-51	89.3	
	8	281.0	원남동 66-10	281.0	
	9	200.6	원남동 70	200.6	
	10	161.9	원남동 69	82.6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68	79.3	
	11	277.7	원남동 67	155.4	67, 66-2, 66-8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66-2	109.1	
			원남동 66-8	13.2	
	12	284.3	원남동 66-9	284.3	
	13	277.6	원남동 66-69	72.0	66-6, 66-24 공동개발 지정 66-69, 66-6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66-6	63.5	
			원남동 66-24	142.1	
	14	181.8	원남동 66-66	181.8	
	15	234.7	원남동 66-7	234.7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B-4	1	2,663.0	원남동 66-21	1,983.6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47-1	679.4	
	2	158.1	연지동 49	89.3	공동개발 권장
			연지동 50	68.8	
	3	145.5	연지동 55-1	145.5	
	4	337.7	연지동 53-3	172.1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51-1	109.5	
			연지동 51-2	56.1	
	5	139.1	연지동 56	74.6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57-3	28.1	
			연지동 57-1	36.4	
B-5	1	343.8	인의동 1-6	22.8	2, 3-1 공동개발 권장 1-6, 1-7, 2-5, 2 공동개발 지정
			인의동 1-7	18.8	
			인의동 2-5	44.3	
			인의동 2	168.6	
			인의동 3-1	89.3	
	2	403.6	인의동 4-1	13.2	4, 5-2 공동개발 권장 4, 4-1 공동개발 지정 5-2, 7-5, 6 공동개발 지정
			인의동 4	260.5	
			인의동 5-2	70.4	
			인의동 7-5	15.2	
			인의동 6	44.3	
B-6	1	142.1	원남동 66-19	142.1	
	2	263.4	원남동 66-18	263.4	
	3	262.1	원남동 66-75	262.1	
	4	148.0	원남동 66-44	148.0	
	5	122.8	연지동 46-1	122.8	
	6	198.3	원남동 46-1	122.8	공동개발 권장
			연지동 43	76.0	
	7	62.2	연지동 45	62.2	
	8	96.9	연지동 44-1	96.9	
	9	63.6	연지동 44-2	63.6	
	10	254.8	연지동 42	254.8	
	11	376.9	원남동 66-17	376.9	
	12	112.4	연지동 37	112.4	
	13	144.5	연지동 41-1	80.7	공동개발 권장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연지동 41-2	63.8	
	14	110.4	연지동 40	110.4	
	15	115.6	연지동 38-2	59.5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39	56.1	
	16	238.0	연지동 36-1	84.3	35, 36-2 공동개발 지정 36-1, 36-2 공동개발 권장
			연지동 35	135.5	
			연지동 36-2	18.2	
	17	208.4	연지동 33	208.4	
	18	198.3	연지동 5-5	198.3	
	19	205.0	연지동 5-3	205.0	
	20	168.6	연지동 5-6	168.6	
	21	346.4	연지동 30	346.4	
	22	135.5	연지동 28	135.5	
	23	60.7	연지동 27	60.7	
B-7	1	217.2	원남동 65-2	217.2	
	2	189.3	원남동 65-3	189.3	
	3	112.2	원남동 66-34	59.2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66-50	53.0	
	4	77.7	원남동 66-46	77.7	
	5	134.3	원남동 66-32	126.0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66-45	8.3	
	6	187.8	원남동 64-2	187.8	
	7	154.4	원남동 63-3	2.0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64-1	149.4	
			원남동 63-5	3.0	
	8	220.5	원남동 63-2	126.0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63-4	94.5	
	9	376.9	원남동 66-31	205.0	공동개발 지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원남동 66-1	171.9	
	10	116.6	원남동 66-38	53.9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66-49	62.7	
	11	145.5	원남동 66-58	50.6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66-39	46.3	
			원남동 66-56	48.6	
	12	115.7	원남동 66-60	59.5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66-57	56.2	
	13	211.5	원남동 66-37	62.8	66-54, 66-55 공동개발 지정 66-37, 66-55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66-55	79.3	
			원남동 66-54	69.4	
	14	142.1	원남동 66-67	142.1	
	15	105.8	연지동 5-1	105.8	
	16	66.1	연지동 5-2	66.1	
B-8	1	110.1	원남동 62	110.1	
	2	870.3	원남동 61	89.3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1-24	781.0	
	3	175.3	연지동 3-1	32.1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3-2	46.3	
			연지동 3-3	56.2	
			연지동 3-4	40.7	
	4	304.1	연지동 4-6	65.1	공동개발 권장
			연지동 4-1	162.3	
			연지동 4-5	76.7	
	5	228.4	연지동 4-11	56.2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4-3	168.6	
			연지동 4-2	3.6	
	6	98.8	연지동 4-7	56.2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4-14	42.6	
	7	89.3	연지동 4-10	89.3	
	8	66.1	연지동 4-8	66.1	
	9	169.9	연지동 6-1	169.9	
	10	200.4	연지동 8	95.9	7, 8 공동개발권장 7, 6-2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7	92.6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연지동 6-2	11.9	
	11	117.0	연지동 9	117.0	
	12	79.3	연지동 10	79.3	
	13	148.7	연지동 1-17	64.8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11	69.4	
			연지동 1-19	14.5	
	14	156.4	연지동 1-16	61.5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1-20	94.9	
	15	66.1	연지동 16	66.1	
	16	82.6	연지동 17	82.6	
	17	74.6	연지동 25	74.6	
	18	57.6	연지동 24	57.6	
	19	86.0	연지동 15	86.0	
	20	109.1	연지동 14	109.1	
	21	72.7	연지동 13	72.7	
	22	89.3	연지동 18	89.3	
	23	210.3	연지동 19	164.0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12	46.3	
	24	137.2	연지동 22	137.2	
B-9	1	3,403.2	연지동 2-1	36.4	1-1, 2-1, 2-3 공동개발 지정 1-32, 327-3 공동개발 지정 1-1, 1-32 공동개발 권장
			연지동 2-3	113.2	
			연지동 1-1	974.4	
			연건동 327-3	8.6	
			연지동 1-32	2,370.6	
B-10	1	10,503.8	연지동 1-15	41.3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1-11	1,555.9	
			연지동 1-21	26.8	
			연지동 1-22	15.9	
			연지동 1-23	5.0	
			연지동 1-8	1,094.4	
			연지동 1-7	596.1	
			연지동 1-33	1,368.8	
			효제동 73-4	10.2	
			연지동 127-3	19.2	
			효제동 47-4	31.5	
			연지동 1-30	5,738.7	
B-11	1	290.4	연건동 199-2	178.2	공동개발 지정
			연건동 198-6	112.2	
	2	468.5	연건동 198-7	320.9	공동개발 지정
			연건동 198-11	147.6	
	3	243.6	연건동 198-2	243.6	
	4	1,135.2	연건동 195-12	1,135.2	
	5	416.5	연건동 195-38	60.8	195-40, 197-4 공동개발 지정 195-38, 195-3 공동개발 지정
			연건동 195-40	58.5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연건동 195-3	214.9	195-3, 197-4 공동개발 권장
			연건동 195-4	82.3	
	6	261.2	연건동 197-5	172.9	공동개발 지정
			연건동 197-6	42.0	
			연건동 197-7	46.3	
B-12	1	165.1	연건동 195-23	165.1	
	2	155.4	연건동 195-24	155.4	
	3	185.1	연건동 195-25	185.1	
	4	307.4	연건동 195-16	307.4	
	5	117.5	연건동 195-17	117.5	
	6	105.8	연건동 195-13	105.8	
	7	99.2	연건동 195-19	99.2	
	8	82.6	연건동 195-20	82.6	
	9	82.6	연건동 195-21	82.6	
	10	270.8	연건동 195-14	151.7	공동개발 지정
			연건동 195-15	119.1	
	11	467.9	연건동 195-31	155.1	195-31, 195-30 공동개발 지정 195-30, 195-11 공동개발 권장
			연건동 195-30	55.0	
			연건동 195-11	257.8	
	12	867.1	연건동 195-10	867.1	
	13	169.2	연건동 195-32	169.2	
B-13	1	253.5	인의동 8-2	35.0	8-2, 9 공동개발 지정 8-2, 13-2 공동개발 권장
			인의동 9	78.7	
			인의동 13-2	139.8	
	2	119.0	인의동 10	119.0	
	3	248.0	인의동 12	248.0	
	4	103.4	인의동 14	46.9	공동개발 지정
			인의동 14-2	36.7	
			인의동 14-6	19.8	
	5	178.5	인의동 16	82.6	공동개발 권장
			인의동 17	95.9	
	6	447.8	인의동 15-2	140.5	공동개발 권장
			인의동 18	307.3	
	7	252.4	인의동 20	12.1	20, 19, 21 공동개발 지정 19, 22-1 공동개발 권장
			인의동 19	106.0	
			인의동 21	5.2	
			인의동 22-1	129.1	
	8	214.7	인의동 25	214.7	
B-14	1	326.8	연지동 58	113.2	공동개발 권장
			연지동 65-2	213.6	
	2	501.6	연지동 59	501.6	
	3	277.9	연지동 70	277.9	
	4	348.7	연지동 62-2	348.7	
	5	112.4	연지동 74-2	112.4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6	234.7	연지동 73	234.7	
	7	69.4	연지동 74-3	69.4	
	8	331.4	연지동 75	181.6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74-5	66.1	
			연지동 76	83.7	
B-15	1	62.7	연지동 83	16.5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84	16.5	
			연지동 85	29.7	
	2	128.9	연지동 87	19.8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88	16.5	
			연지동 89	59.5	
			연지동 89-1	33.1	
	3	181.9	연지동 82	95.9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90	86.0	
	4	208.3	연지동 80	208.3	
	5	115.7	연지동 91	115.7	
	6	316.4	연지동 110-2	316.4	
	7	470.4	연지동 110-1	470.4	
	8	148.8	연지동 108-1	148.8	
	9	234.7	연지동 107	168.6	공동개발 권장
			연지동 106	66.1	
	10	36.4	연지동 103	36.4	102, 103 공동개발 지정
B-16	1	60.5	연지동 102	60.5	102, 103 공동개발 지정
	2	99.2	연지동 93-1	99.2	
	3	238.0	연지동 74-1	49.6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74-6	56.2	
			연지동 93-2	132.2	
	4	62.8	연지동 74-8	62.8	
	5	95.9	연지동 74-9	95.9	
	6	55.2	연지동 74-10	55.2	
	7	866.3	연지동 74-12	782.4	74-12, 100-11 공동개발 지정 95-1, 74-12 공동개발 권장
			연지동 100-11	7.9	
			연지동 95-1	76.0	
	8	191.4	연지동 96-2	191.4	
	9	122.3	연지동 101-1	122.3	
	10	51.9	연지동 102-2	51.9	
	11	102.5	연지동 100-13	102.5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12	105.8	연지동 100-12	105.8	
	13	350.4	연지동 100-5	350.4	
	14	169.0	연지동 97	155.4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96-1	13.6	
	15	109.1	연지동 98-1	66.1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98-2	43.0	
	16	371.2	연지동 157-3	15.8	157, 155-1, 199-1 공동개발 권장 155-1, 187-1 공동개발 지정 157, 157-3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157	107.2	
			연지동 155-1	192.0	
			연지동 187-1	2.2	
			연지동 199-1	54.0	
	17	380.5	연지동 105	380.5	
	18	244.0	연지동 100-14	244.0	
	19	172.6	연지동 100-1	172.6	
	20	112.4	연지동 100-3	112.4	
	21	148.8	연지동 100-2	148.8	
	22	191.8	연지동 100-4	105.8	공동개발 권장
			연지동 99	86.0	
B-17	1	228.2	연지동 133	191.7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134-1	28.3	
			연지동 134-3	8.2	
	2	370.2	연지동 111	138.8	111, 112-1, 112-2 공동개발 지정 111, 113 공동개발 권장
			연지동 112-1	74.7	
			연지동 112-2	60.8	
			연지동 113	95.9	
	3	125.6	연지동 114-1	125.6	
	4	214.9	연지동 115	214.9	
	5	86.0	연지동 126	86.0	
	6	257.8	연지동 125	132.2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127	125.6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7	297.5	연지동 123-1	19.8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123	191.7	
			연지동 124	86.0	
	8	148.8	연지동 122	148.8	
	9	353.7	연지동 119	353.7	
	10	456.0	연지동 130	128.9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129	82.6	
			연지동 128	76.0	
			연지동 128-1	23.1	
			연지동 130	26.4	
			연지동 136-11	119.0	
	11	155.3	연지동 131	155.3	
	12	115.7	연지동 132-1	115.7	
B-18	1	7,419.2	연지동 199-3	27.7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136-5	7,358.2	
			연지동 136-61	13.0	
			연지동 136-62	20.3	
B-19	1	5,250.9	연지동 135	5,150.4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51-5	95.3	
			효제동 49-5	5.2	
B-20	1	8,840.5	연지동 136-74	8,840.5	
	2	663.4	연지동 136-25	251.5	136-25, 136-26 공동개발 권장 136-26, 136-35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136-26	383.9	
			연지동 136-35	28.0	
B-21	1	110.5	효제동 49-1	110.5	
	2	235.1	효제동 50-8	212.0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51-11	19.8	
			효제동 51-10	3.3	
	3	143.1	효제동 48	143.1	
	4	189.1	효제동 50-1	189.1	
	5	113.4	효제동 51-3	113.4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6	109.0	효제동 52	102.4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50-7	6.6	
	7	1,391.7	효제동 46	67.4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45	1,324.3	
B-22	1	3,247.5	효제동 21-3	8.3	효제동 21-3번지 특별계획구역
			효제동 21-8	43.6	
			효제동 21-9	86.7	
			효제동 21-10	146.4	
			효제동 21-11	6.6	
			효제동 21-12	373.6	
			효제동 21-13	135.5	
			효제동 21-14	3.3	
			효제동 21-15	29.8	
			효제동 22-3	683.4	
			효제동 23-2	91.6	
			효제동 24-1	62.8	
			효제동 24-2	93.7	
			효제동 24-3	46.3	
			효제동 24-4	52.9	
			효제동 24-8	102.5	
			효제동 24-9	52.9	
			효제동 24-12	25.3	
			효제동 25-2	252.6	
			효제동 36	88.3	
			효제동 36-1	136.5	
			효제동 36-2	111.4	
			효제동 37	80.0	
			효제동 39-7	125.6	
			효제동 40	402.9	
			효제동 73-9	1.9	
			효제동 73-10	3.1	
B-23	1	571.2	효제동 54-2	559.9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54-3	1.4	
			효제동 54-1	9.9	
	2	69.4	효제동 59	69.4	
	3	78.0	효제동 61-1	78.0	
	4	105.8	효제동 61-3	105.8	
	5	113.4	효제동 61	113.4	
	6	160.4	효제동 64-1	160.4	
	7	113.4	효제동 62-3	113.4	
	8	75.3	효제동 62-4	72.7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62-5	2.6	
	9	89.6	효제동 64-9	3.3	공동개발 지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효제동 64-4	16.5	
			효제동 64-5	69.8	
	10	96.1	효제동 64-6	96.1	
	11	313.9	효제동 64-8	214.7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64-2	99.2	
	12	514.7	효제동 65-3	3.3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65-2	418.8	
			효제동 65-4	92.6	
	13	502.6	효제동 67-4	502.6	
B-24	1	2,314.9	연지동 136-12	2,175.8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136-67	73.5	
			연지동 136-93	20.4	
			연지동 136-95	45.2	
C-1	1	716.7	연건동 187-1	712.7	공동개발 지정
			연건동 187-8	4.0	
	2	153.0	연건동 190-10	121.7	공동개발 지정
			연건동 190-9	13.3	
			연건동 190-17	18.0	
	3	209.3	연건동 190-16	150.4	공동개발 지정
			연건동 190-21	58.9	
	4	680.6	연건동 190-22	200.0	192-1, 192-2 공동개발 지정 192-2, 190-22 공동개발 권장
			연건동 192-1	385.2	
			연건동 192-2	95.4	
	5	194.8	연건동 190-24	29.8	190-24, 190-25 공동개발 지정 190-25, 193-1 공동개발 권장 190-26, 190-27, 193-1, 193-2 공동개발 지정
			연건동 190-25	33.1	
			연건동 190-26	1.7	
			연건동 190-27	0.3	
			연건동 193-1	105.8	
			연건동 193-2	24.1	
	6	178.3	연건동 194-3	29.2	공동개발 지정
			연건동 193-4	149.1	
C-2	1	593.9	효제동 20	593.9	
	2	1,157.9	효제동 20-3	1,129.1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0-6	28.8	
	3	135.2	효제동 1	135.2	
	4	1,111.0	효제동 3-1	55.5	3-1, 2 공동개발 권장 3-6, 4-1, 5-1 공동개발 권장 5-3, 6, 7, 10 공동개발 권장 2, 3-3, 3-5, 3-6 공동개발 지정 4, 4-1, 4-2 공동개발 지정 5, 5-1, 5-2, 5-3 공동개발 지정 6, 6-2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	147.8	
			효제동 3-3	50.2	
			효제동 3-5	1.3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효제동 3-6	9.9	
			효제동 4	79.3	
			효제동 4-1	29.8	
			효제동 4-2	8.6	
			효제동 5	49.6	
			효제동 5-1	19.8	
			효제동 5-2	49.6	
			효제동 5-3	16.5	
			효제동 6-2	89.3	
			효제동 6	80.1	
			효제동 7	237.7	
			효제동 10	186.0	
	5	155.4	효제동 13	155.4	
	6	148.8	효제동 14	112.4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8	36.4	
	7	154.3	효제동 15-1	154.3	
	8	66.1	효제동 16-1	66.1	
	9	86.0	효제동 16-2	86.0	
	10	189.7	효제동 19-4	94.2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9-5	95.5	
	11	343.8	효제동 19-1	343.8	
	12	99.2	효제동 19-3	99.2	
C-3	1	168.6	효제동 73	102.5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74	66.1	
	2	135.5	효제동 100-11	135.5	
	3	208.3	효제동 101	208.3	
	4	165.3	효제동 76-2	165.3	
	5	158.7	효제동 75	158.7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6	142.1	효제동 100-17	142.1	
	7	92.6	효제동 100-10	92.6	
	8	230.6	효제동 105-1	45.5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05-2	66.1	
			효제동 105-3	99.2	
			효제동 100-1	19.8	
	9	168.9	효제동 103	168.9	
	10	221.5	효제동 77	205.0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77-1	16.5	
	11	446.3	효제동 80-1	436.4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80-3	9.9	
	12	228.0	효제동 100-13	82.6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100-14	79.3	
			효제동 100-15	66.1	
	13	79.3	효제동 105-9	79.3	
	14	79.3	효제동 105-10	79.3	
	15	86.0	효제동 105-7	86.0	
	16	379.2	효제동 105-5	132.1	105-6, 105-13 공동개발 지정 105-5, 105-6, 107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105-6	89.3	
			효제동 105-13	9.9	
			효제동 107	147.9	
	17	122.3	효제동 107-2	122.3	
	18	89.2	효제동 72	82.6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72-1	6.6	
C-4	1	7,612.0	효제동 67-2	544.4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94-2	16.5	
			효제동 95-1	69.4	
			효제동 95-2	6.6	
			효제동 98	5,888.8	
			효제동 84-1	252.2	
			효제동 91	10.5	
			효제동 255-17	424.8	
			효제동 291-8	0.1	
			효제동 85-1	28.6	
			효제동 291-7	3.9	
			효제동 291-9	10.4	
			효제동 291-11	17.6	
			효제동 86-4	116.7	
			효제동 86-3	133.3	
			효제동 89-1	85.7	
			효제동 90-5	2.5	
	2	94.2	효제동 113	59.9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115-1	34.3	
	3		연지동 136-49	133.3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26.4			
C-5	1	552.9	이화동 204-3	93.2	공동개발 지정
			이화동 205-2	79.3	
			이화동 205-4	17.5	
			이화동 206-2	32.4	
			이화동 209-1	330.5	
	2	156.5	이화동 207-2	156.5	
	3	252.6	이화동 215	252.6	
	4	141.8	이화동 214-2	46.3	공동개발 지정
			이화동 217	95.5	
	5	498.9	이화동 212	234.4	211, 211-1, 214-4 공동개발 지정 212, 211-1 공동개발 권장
			이화동 211-1	23.1	
			이화동 211	148.8	
			이화동 214-4	92.6	
	6	148.5	이화동 214-3	46.3	공동개발 지정
			이화동 217-3	3.3	
			이화동 218-1	80.3	
			이화동 218-3	18.6	
	7	162.0	이화동 222-1	162.0	
	8	167.6	이화동 220	167.6	
	9	69.4	이화동 219	62.8	공동개발 지정
			이화동 219-1	6.6	
	10	149.8	충신동 77-1	149.8	
	11	69.4	충신동 81	69.4	
	12	257.6	충신동 83	178.2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82-1	39.7	
			충신동 82-2	29.8	
			충신동 82-3	9.9	
	13	86.0	충신동 80	86.0	
	14	86.0	충신동 79	86.0	
	15	141.5	충신동 78-1	47.7	78-1, 78-2 공동개발 지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충신동 78-2	78.5	78-2, 78-3 공동개발 권장
			충신동 78-3	15.3	
C-6	1	1,157.3	충신동 91-7	102.1	91-1, 97-2 공동개발 지정 89, 89-1, 89-2 공동개발 지정 85-3, 90, 90-1, 90-2 공동개발 지정 85, 86, 85-3, 89-1 공동개발 권장 90-1, 91-7, 91-6, 91-1 공동개발 권장
			충신동 91-6	89.3	
			충신동 91-1	99.5	
			충신동 97-2	52.9	
			충신동 85	132.2	
			충신동 86	269.8	
			충신동 89	76.0	
			충신동 89-1	71.7	
			충신동 89-2	79.3	
			충신동 85-3	12.6	
			충신동 90-1	43.0	
			충신동 90-2	16.5	
			충신동 90	112.4	
	2	132.9	충신동 92	132.9	
	3	250.1	충신동 91-4	139.6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94-3	14.5	
			충신동 91-5	96.0	
	4	129.0	충신동 88-1	129.0	
	5	204.4	충신동 95	79.4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96	120.8	
			충신동 91-8	4.2	
C-7	1	322.3	충신동 100	322.3	
	2	135.5	충신동 101-1	135.5	
	3	188.4	충신동 110	188.4	
	4	201.7	충신동 108	201.7	
	5	99.2	충신동 107	99.2	
	6	998.3	충신동 100-2	97.5	101-2, 102-1, 102-2 공동개발 지정 100-2, 101-2 공동개발 권장 104-2, 106 공동개발 지정 102-2, 103-1, 104-1, 104-2, 105-1 공동개발 권장
			충신동 101-2	185.1	
			충신동 102-2	58.5	
			충신동 102-1	76.0	
			충신동 104-2	92.9	
			충신동 106	95.9	
			충신동 105-1	77.7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충신동 103-1	237.0	
			충신동 104-1	77.7	
C-8	1	268.8	이화동 107-2	249.3	공동개발 지정
			이화동 115-2	19.5	
	2	86.6	이화동 106-2	86.6	
	3	306.8	이화동 105-2	306.8	
	4	82.7	이화동 100-1	57.9	공동개발 지정
			이화동 101-2	24.8	
	5	87.8	이화동 113	87.8	
	6	204.9	이화동 108-1	119.0	공동개발 지정
			이화동 108-4	75.0	
			이화동 108-5	10.2	
			이화동 108-8	0.7	
	7	82.6	이화동 112	82.6	
	8	82.6	이화동 109-2	19.8	공동개발 지정
			이화동 110	13.2	
			이화동 111	49.6	
	9	142.4	이화동 108-2	74.0	공동개발 지정
			이화동 108-7	2.0	
			이화동 109-1	66.4	
	10	261.2	충신동 75	211.2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72-1	36.4	
			충신동 72-3	13.6	
	11	438.7	충신동 73-7	324.0	73-7, 73-6 공동개발 지정 73-6, 74 공동개발 권장
			충신동 73-6	38.7	
			충신동 74	76.0	
	12	113.7	충신동 73-5	113.7	
	13	154.7	충신동 73-3	154.7	
	14	276.4	충신동 73-4	276.4	
	15	289.6	충신동 57-4	289.6	
	16	213.5	충신동 75-5	213.5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17	97.2	충신동 73-1	97.2	
	18	217.5	충신동 57-6	217.5	
C-9	1	254.5	충신동 70	254.5	
	2	148.2	충신동 68	148.2	
	3	109.2	충신동 67-1	109.2	
	4	326.9	충신동 69-3	323.3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73-18	3.6	
	5	142.8	충신동 69-4	142.8	
	6	137.9	충신동 69-2	137.9	
	7	200.8	충신동 73-15	5.0	62-1, 62-9 공동개발 권장 73-15, 62-1, 61-2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62-1	105.8	
			충신동 62-9	86.0	
			충신동 61-2	4.0	
	8	217.2	충신동 61-3	8.3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61-4	9.6	
			충신동 61-5	14.2	
			충신동 62-4	62.8	
			충신동 62-5	59.5	
			충신동 62-6	62.8	
	9	80.8	충신동 62-7	80.8	
	10	165.2	충신동 62-10	82.6	공동개발 권장
			충신동 62-11	82.6	
	11	113.2	충신동 62-12	113.2	
	12	698.2	충신동 62-2	583.4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62-14	58.2	
			충신동 62-15	56.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13	146.8	충신동 66	146.8	
	14	438.0	충신동 65	438.0	
	15	70.7	충신동 62-13	70.7	
C-10	1	3,613.5	충신동 60	3,382.4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56-7	197.7	
			충신동 56-6	33.4	
C-11	1	191.4	충신동 115-1	90.3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15-2	101.0	
	2	143.8	충신동 123-8	143.8	
	3	91.9	충신동 123-9	91.9	
	4	112.7	충신동 123-10	112.7	
	5	186.0	충신동 116	186.0	
	6	279.3	충신동 117	93.2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17-1	93.5	
			충신동 118	92.6	
	7	97.5	충신동 123-11	97.5	
	8	95.5	충신동 123-12	95.5	
	9	90.6	충신동 123-13	81.3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53-7	9.3	
	10	198.9	충신동 122	46.3	122, 121, 120 공동개발 지정 119, 120 공동개발 권장
			충신동 121	31.8	
			충신동 120	31.5	
			충신동 119	89.3	
	11	145.9	충신동 126-1	48.6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27	97.3	
	12	92.7	충신동 129	92.7	
	13	76.0	충신동 128	76.0	
	14	118.3	충신동 123-7	118.3	
	15	179.5	충신동 123-6	92.9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23-5	86.6	
	16	129.5	충신동 123-2	114.0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23-3	9.9	
			충신동 123-17	5.6	
	17	118.3	충신동 123-1	60.5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23-16	52.2	
			충신동 123-18	5.6	
	18	152.1	충신동 130	152.1	
	19	187.4	충신동 153-2	187.4	
	20	139.8	충신동 153-5	139.8	
	21	118.2	충신동 153-3	118.2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22	85.8	충신동 155-2	85.8	
	23	264.1	충신동 155-1	263.1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23-19	1.0	
	24	79.3	충신동 131	79.3	
	25	59.5	충신동 134	59.5	
	26	59.5	충신동 133-2	59.5	
	27	74.7	충신동 135	74.7	
	28	86.9	충신동 123-14	86.9	
	29	62.8	충신동 133-1	62.8	
C-12	1	191.7	충신동 156	191.7	
	2	86.0	충신동 152	86.0	
	3	185.2	충신동 151	99.2	공동개발 권장
			충신동 150	86.0	
	4	256.9	충신동 136-9	189.1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36-8	67.8	
	5	95.9	충신동 132-1	52.9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32-2	43.0	
	6	92.6	충신동 149	92.6	
	7	135.5	충신동 148	135.5	
	8	157.7	충신동 136-7	157.7	
	9	117.6	충신동 136-2	117.6	
	10	229.9	충신동 136-1	229.9	
	11	247.9	충신동 136-5	195.0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42-2	52.9	
	12	155.4	충신동 147	155.4	
	13	158.7	충신동 144	89.3	
			충신동 145-2	9.9	
			충신동 145-1	59.5	
	14	105.8	충신동 143	105.8	
	15	132.8	충신동 141-1	132.8	
	16	177.2	충신동 140-2	177.2	
	17	115.4	충신동 136-12	115.4	
	18	127.6	충신동 136-16	125.6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36-13	2.0	
	19	128.9	충신동 160	128.9	
	20	101.4	충신동 159	101.4	
	21	79.4	충신동 163	79.4	공동개발 지정
	22	71.1	충신동 174	71.1	
	23	136.3	충신동 173-2	34.0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65	39.7	
			충신동 166	56.2	
			충신동 120-7	6.4	
	24	103.0	충신동 167	79.3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73-1	23.7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25	446.7	충신동 170	372.9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72	48.5	
			충신동 173-3	25.3	
C-13	1	176.8	효제동 123	23.1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24-2	71.7	
			효제동 125-2	82.0	
	2	729.2	효제동 126-2	729.2	
C-14	1	120.0	충신동 195	56.0	공동개발 권장
			충신동 196	64.0	
	2	92.6	충신동 194	39.7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97	52.9	
	3	370.4	충신동 198-1	155.2	193, 200-1 공동개발 지정 198-1, 200-1 공동개발 권장
			충신동 200-1	112.7	
			충신동 193	102.5	
	4	102.1	충신동 201-1	85.6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201-3	16.5	
	5	148.4	충신동 191-1	65.8	공동개발 권장
			충신동 191-2	82.6	
	6	126.5	충신동 189-5	126.5	
	7	252.6	충신동 189-4	133.0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89-1	119.6	
	8	211.7	충신동 191-3	89.3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91-4	86.0	
			충신동 192	36.4	
	9	148.8	충신동 189-6	148.8	
	10	138.8	충신동 189-3	138.8	
	11	112.4	충신동 189-8	112.4	
	12	145.5	충신동 189-7	145.5	
	13	244.3	충신동 191-5	62.8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91-6	99.2	
			충신동 206-18	82.3	
	14	627.1	충신동 202	46.3	202, 203, 204-2, 205-5 공동개발 지정 205-3, 205-5, 206-12 공동개발 권장 206-12, 206-13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203	135.5	
			충신동 204-2	39.7	
			충신동 205-5	10.0	
			충신동 205-3	180.8	
			충신동 206-12	125.6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충신동 206-13	89.2	
	15	76.0	충신동 206-15	76.0	
	16	142.8	충신동 206-11	142.8	
	17	327.3	충신동 189-20	327.3	
	18	171.9	충신동 189-11	171.9	
	19	129.9	충신동 206-1	129.9	
	20	80.3	충신동 206-14	80.3	
C-15	1	149.8	충신동 175-24	149.8	
	2	187.4	충신동 175-16	187.4	
	3	165.3	충신동 175-18	165.3	
	4	158.7	충신동 175-15	158.7	
	5	204.9	충신동 175-19	204.9	
	6	195.0	충신동 175-14	195.0	
	7	178.8	충신동 175-10	178.8	
	8	186.1	충신동 175-11	186.1	
	9	197.4	충신동 175-9	197.4	
	10	190.7	충신동 175-8	190.7	
	11	188.4	충신동 175-12	188.4	
	12	182.8	충신동 175-7	182.8	
	13	167.8	충신동 175-1	167.8	
	14	84.7	충신동 31-9	84.7	
	15	195.0	충신동 175-2	195.0	
	16	69.8	충신동 31-10	12.2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31-11	21.2	
			충신동 31-24	36.4	
	17	185.1	충신동 175-3	185.1	
	18	72.4	충신동 31-12	72.4	
	19	214.8	충신동 31-14	40.0	31-14, 31-25 공동개발 지정 31-32, 179-1 공동개발 지정 31-14, 31-15 공동개발 권장 31-25, 31-32 공동개발 권장
			충신동 31-25	60.5	
			충신동 31-15	59.8	
			충신동 179-1	36.4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충신동 31-32	18.1	
	20	185.1	충신동 175-5	185.1	
C-16	1	66.1	충신동 189-2	66.1	
	2	62.8	충신동 189-13	62.8	
	3	69.4	충신동 188-6	69.4	
	4	166.3	충신동 175-21	51.6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75-23	114.7	
	5	155.4	충신동 188-7	155.4	
	6	253.6	충신동 188-8	162.8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88-9	90.8	
	7	56.2	충신동 188-1	56.2	
	8	95.9	충신동 188-2	95.9	
	9	204.1	충신동 188-3	43.0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88-5	161.1	
	10	110.6	충신동 175-13	110.6	
	11	119.6	충신동 187-28	119.6	
	12	327.6	충신동 187-30	63.1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87-22	112.4	
			충신동 187-19	152.1	
	13	82.6	충신동 187-23	82.6	
	14	145.5	충신동 187-20	145.5	
	15	76.0	충신동 187-24	76.0	
	16	132.2	충신동 187-21	132.2	
	17	87.5	충신동 187-18	87.5	
	18	106.1	충신동 186-1	106.1	
	19	126.6	충신동 187-25	126.6	
	20	2.3	충신동 179-13	2.3	
	21	718.7	충신동 177	462.9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76	150.0	
			충신동 187-26	105.8	공동개발 권장
	22	189.1	충신동 188-10	56.9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89-14	42.0	
			충신동 189-15	90.2	
	23	291.1	충신동 179-10	264.3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79-8	26.8	
	24	65.2	충신동 31-38	15.6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79-24	49.6	
	25	448.9	충신동 178-2	17.2	178-2, 187-27 공동개발 지정 184, 187-27 공동개발 권장
			충신동 184	306.1	
			충신동 187-27	125.6	
	26	125.0	충신동 179-12	91.6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79-15	33.4	
C-17	1	206.6	충신동 35-12	23.5	공동개발 지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충신동 35-27	15.5	
			충신동 35-7	6.9	
			충신동 35-17	18.2	
			충신동 35-16	38.3	
			충신동 35-8	74.8	
			충신동 35-10	29.4	
	2	217.5	충신동 33-11	29.8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33-2	122.3	
			충신동 33-3	3.3	
			충신동 33-13	38.3	
			충신동 33-18	10.6	
			충신동 33-14	13.2	
	3	278.7	충신동 27-88	71.7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27-89	33.1	
			충신동 27-42	152.1	
			충신동 32-1	5.3	
			충신동 33-12	16.5	
C-18	1	293.3	충신동 27-82	49.6	27-82, 27-43, 27-84, 24-44 공동개발 지정 27-46, 27-47, 27-69, 27-48 공동개발 지정 27-44, 27-46 공동개발 권장
			충신동 27-43	6.6	
			충신동 27-84	46.3	
			충신동 27-44	57.9	
			충신동 27-46	17.2	
			충신동 27-47	59.5	
			충신동 27-69	33.1	
			충신동 27-48	23.1	
	2	186.1	충신동 27-83	186.1	
	3	90.8	충신동 31-19	44.7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31-20	46.1	
	4	95.9	충신동 27-85	95.9	
	5	109.1	충신동 27-72	109.1	
	6	79.8	충신동 31-5	79.8	
	7	294.8	충신동 27-86	56.2	27-86, 27-50 공동개발 권장 27-51, 27-52 공동개발 권장 27-53, 27-54, 27-52 공동개발 지정 27-50, 27-51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27-50	59.5	
			충신동 27-51	31.7	
			충신동 27-52	38.3	
			충신동 27-53	56.2	
			충신동 27-54	52.9	
	8	162.6	충신동 30-1	162.6	
	9	99.2	충신동 27-73	99.2	
	10	318.3	충신동 27-56	318.3	
C-19	1	88.6	충신동 29-9	88.6	
	2	121.0	충신동 29-7	121.0	
	3	114.0	충신동 29-1	114.0	
	4	380.1	충신동 27-59	69.4	27-59, 27-60 공동개발 지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충신동 27-60	53.9	27-60, 27-61 공동개발 권장 27-61, 27-62, 29-3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27-61	71.4	
			충신동 27-62	79.3	
			충신동 29-3	106.1	
	5	115.1	충신동 29-2	86.0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29-17	24.1	
			충신동 179-18	5.0	
	6	93.2	충신동 179-17	93.2	
	7	184.7	충신동 27-133	2.2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29-4	56.2	
			충신동 29-18	2.3	
			충신동 179-19	91.2	
			충신동 179-41	31.2	
			충신동 29-22	1.6	
	8	111.8	충신동 29-19	4.4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29-5	52.9	
			충신동 29-6	54.5	
	9	269.2	충신동 27-64	269.2	
	10	123.2	충신동 27-66	123.2	
D-1	1	218.2	인의동 95-1	9.9	95, 95-1 공동개발 지정 94, 95 공동개발 권장
			인의동 95	122.3	
			인의동 94	86	
	2	400.7	인의동 103	26.4	102, 103 공동개발 지정 101-1, 101-3, 110-1 공동개발 지정 101-1, 102 공동개발 권장
			인의동 102	33.1	
			인의동 101-1	171.9	
			인의동 101-3	158.7	
			인의동 110-1	10.6	
	3	148.2	인의동 90-2	8.1	90-2, 97 공동개발 지정 98-2, 98-1, 100-1 공동개발 지정 97, 98-2 공동개발 권장
			인의동 97	51	
			인의동 98-2	64.9	
			인의동 98-1	22.1	
			인의동 100-1	2.1	
D-2	1	2,829.9	인의동 112-1	2,767.1	공동개발 지정
			인의동 111-7	62.8	
D-3	1	4,286.5	인의동 28-28	303.3	공동개발 지정
			인의동 28-8	1,516.8	
			인의동 28-2	697.1	
			인의동 28-21	429.8	
			인의동 28-15	466.1	
			인의동 28-19	10.6	
			인의동 28-4	201	
			인의동 28-11	199	
			인의동 28-7	462.8	
D-4	1	1,980.8	인의동 28-36	518.5	28-36, 25-25, 28-26, 28-6 공동개발 권장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인의동 28-25	357.2	28-6, 48-1, 48-5 공동개발 지정
			인의동 28-26	845.5	
			인의동 28-6	212.6	
			인의동 48-1	44.2	
			인의동 48-5	2.8	
	2	1,644.5	인의동 28-9	1,644.5	
D-5	1	155.4	연지동 167-2	2.5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168	71.2	
			연지동 164-2	22.8	
			연지동 163-3	12.3	
			연지동 169	89.3	
			연지동 170	142.8	
	2	663.7	연지동 163-1	17.4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184	40.4	
			연지동 183	179.7	
			연지동 181	264.2	
			연지동 186-1	162.0	
	3	171.9	연지동 173	171.9	
	4	135.5	연지동 174	72.7	공동개발 권장
			연지동 175-1	62.8	
	5	185.1	연지동 177-3	185.1	
	6	122.3	연지동 179	122.3	
	7	122.1	연지동 187-6	2.1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188-6	120.0	
	8	114.9	연지동 188-2	48.2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188-3	37.9	
			연지동 188-5	22.8	
			연지동 188	6.0	
	9	147.8	연지동 178	135.2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178-1	12.6	
	10	62.5	연지동 188-11	62.5	
	11	195.0	연지동 188-12	59.5	188-4, 188-13 공동개발 지정 188-4, 188-12 공동개발 권장
			연지동 188-4	59.8	
			연지동 188-13	75.7	
	12	257.9	연지동 177-1	257.9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13	297.5	연지동 189	221.5	공동개발 권장
			연지동 191	76.0	
	14	95.9	연지동 192-1	95.9	
	15	242.7	연지동 136-70	242.7	
D-6	1	155.4	연지동 199	82.6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198-1	72.8	
	2	142.2	연지동 197-1	49.6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196	92.6	
	3	277.7	연지동 200	277.7	
	4	430.0	연지동 193-9	243.6	공동개발 권장
			연지동 193-10	186.4	
	5	144.5	연지동 193-6	144.5	
	6	99.2	연지동 203	99.2	
	7	338.5	연지동 204	338.5	
	8	296.5	연지동 193-8	296.5	
	9	405.5	연지동 206	369.6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209	35.9	
	10	325.0	연지동 193-7	319.0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216-8	6.0	
	11	263.8	연지동 216-3	158.4	216-3, 216-4 공동개발 지정 216-4, 218 공동개발 권장
			연지동 216-4	36.0	
			연지동 218	69.4	
	12	82.6	연지동 216-2	79.3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216-6	3.3	
	13	94.6	연지동 211	94.6	
	14	110.8	연지동 214	109.1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214-1	1.7	
	15	97.6	연지동 212	68.2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213	29.4	
	16	66.1	연지동 219	66.1	
D-7	1	533.4	연지동 231-1	16.5	공동개발 지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연지동 193-1	516.9	
	2	315.4	연지동 231	135.6	231, 232-1 공동개발 권장 232-1, 232-2, 230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232-1	37.6	
			연지동 232-2	49.6	
			연지동 230	92.6	
	3	109.1	연지동 229-1	41.0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229-2	68.1	
	4	247.9	연지동 228-1	56.2	공동개발 권장
			연지동 228-2	191.7	
	5	244.7	연지동 233-2	18.2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234-3	61.8	
			연지동 234-1	164.7	
	6	171.9	연지동 236	69.4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237	102.5	
	7	290.5	연지동 224-2	16.4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222	274.0	
	8	86.0	연지동 226	86.0	
	9	523.6	연지동 216-1	508.1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216-9	15.5	
	10	135.7	연지동 239-3	9.9	239-3, 239-2 공동개발 지정 239-2, 240 공동개발 권장
			연지동 239-2	56.2	
			연지동 240	69.6	
	11	189.9	연지동 239-1	19.8	239-1, 238-2 공동개발 지정 238-2, 238-8 공동개발 권장 238-8, 238-3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238-2	82.6	
			연지동 238-3	30.3	
			연지동 238-8	57.2	
	12	95.8	연지동 238-9	95.8	
	13	329.7	연지동 238-5	329.7	
	14	95.9	연지동 238-17	95.9	
	15	204.0	연지동 238-1	204.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16	468.9	연지동 193-2	468.9	
D-8	1	245.0	연지동 245	49.1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246	146.3	
			연지동 247	49.6	
	2	201.6	연지동 244	69.4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248	49.6	
			연지동 243-4	82.6	
	3	122.3	연지동 251-2	122.3	
	4	112.4	연지동 252	52.9	
			연지동 253	59.5	
	5	278.6	연지동 254-1	278.6	
	6	227.8	연지동 255	227.8	
	7	625.1	연지동 250	625.1	
	8	201.6	연지동 243-1	201.6	
	9	122.6	연지동 242	122.6	
	10	148.4	연지동 258-14	148.4	
	11	100.2	연지동 258-15	100.2	
	12	99.2	연지동 258-16	99.2	
	13	153.1	연지동 258-4	153.1	
	14	76.0	연지동 258-11	76.0	
	15	109.1	연지동 258-5	109.1	
	16	150.7	연지동 258-10	72.7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258-9	78.0	
	17	104.4	연지동 258-6	104.4	
	18	99.2	연지동 258-7	99.2	
	19	116.7	연지동 258-18	116.7	
	20	79.3	연지동 258-8	79.3	
D-9	1	4,117.5	연지동 136-56	3,560.0	136-56, 136-86 공동개발 지정 136-73, 136-56 공동개발 권장
			연지동 136-73	435.5	
			연지동 136-86	122.0	
D-10	1	5,054.6	연지동 263	5,054.6	
D-11	1	2,297.6	연지동 136-46	2,024.5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136-53	53.8	
			연지동 136-57	14.5	
			연지동 136-97	204.8	
D-12	1	348.3	효제동 308	296.9	공동개발 지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효제동 306-3	33.1	
			효제동 306-2	18.3	
	2	1,148.8	효제동 315-6	725.3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315-1	423.5	
E-1	1	305.2	효제동 251-1	12.1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53-1	219.9	
			효제동 255-5	3.8	
			효제동 255-6	18.2	
			효제동 255-23	51.2	
	2	194.8	효제동 254	194.8	
	3	224.1	효제동 247-3	162.0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48-1	45.4	
			효제동 249-1	16.7	
	4	145.4	효제동 247-1	82.6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47-2	62.8	
	5	213.5	효제동 245-1	124.3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45-8	9.9	
			효제동 246-1	72.7	
			효제동 246-2	6.6	
	6	183.7	효제동 245-4	92.6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45-5	69.4	
			효제동 245-10	9.9	
			효제동 255-9	11.8	
	7	186.2	효제동 245-6	62.8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45-12	106.4	
			효제동 255-10	14.9	
			효제동 255-21	2.1	
	8	207.9	효제동 245-11	207.9	
	9	177.8	효제동 245-2	177.8	
	10	45.3	효제동 245-13	43.3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45-22	2.0	
	11	146.1	효제동 245-20	146.1	
	12	77.0	효제동 245-21	77.0	
	13	130.9	효제동 245-3	130.9	
	14	94.5	효제동 245-15	94.5	
	15	70.4	효제동 245-17	70.4	
	16	128.9	효제동 244	112.4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45-16	16.5	
	17	228.1	효제동 243	228.1	
	18	93.3	효제동 240-2	93.3	
	19	225.1	효제동 233-3	92.9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36	132.2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E-2	1	191.5	효제동 273	191.5	
	2	132.2	효제동 272	132.2	
	3	109.1	효제동 271-1	69.4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271-2	39.7	
	4	92.6	효제동 270	92.6	
	5	163.6	효제동 285	2.3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69	89.3	
			효제동 268-2	72.0	
E-3	1	134.2	효제동 286	1.0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68-1	133.2	
	2	194.7	효제동 267	194.7	
	3	135.9	효제동 267-2	7.6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19-1	128.3	
E-4	1	132.8	효제동 219-4	0.3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65-7	1.3	
			효제동 220	131.2	
	2	435.4	효제동 264	0.3	221, 222-4, 264 공동개발 지정 221, 222-1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222-4	13.6	
			효제동 224	329.6	
			효제동 222-1	91.6	
	3	138.8	효제동 223	79.3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24	59.5	
	4	67.1	효제동 261-2	14.2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26-2	52.9	
	5	98.2	효제동 225	98.2	
	6	227.1	효제동 226-1	90.9	226-1, 260 공동개발 지정 226-1, 227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260	0.7	
			효제동 227	135.5	
	7	480.7	효제동 227-1	152.1	229, 256-1, 227-1 공동개발 지정 228, 229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256-1	156.7	
			효제동 229	92.6	
			효제동 228	76.3	
E-5	1	868.0	효제동 231	211.6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232	99.2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효제동 233-1	557.2	
	2	188.4	효제동 233-2	188.4	
E-6	1	153.9	효제동 155-10	13.0	155-10, 133-2 공동개발 지정 133-2, 134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133-2	63.9	
			효제동 134	77.0	
	2	1,928.2	효제동 133-3	139.7	133-3, 133-7 공동개발 지정 136, 133-7 공동개발 권장 136, 138 공동개발 권장 136, 137, 143, 160-1, 164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133-7	13.0	
			효제동 136	157.7	
			효제동 138	82.6	
			효제동 137	256.5	
			효제동 143	181.8	
			효제동 160-1	487.8	
			효제동 164	609.1	
	3	115.7	효제동 139	115.7	
	4	109.1	효제동 140	72.7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41	36.4	
	5	128.9	효제동 144	128.9	
	6	231.4	효제동 145	231.4	
	7	317.2	효제동 151	317.2	
	8	211.7	효제동 155	211.7	
E-7	1	911.3	효제동 166-1	89.3	165, 166-1 공동개발 지정 166-1, 167, 171-5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165	62.8	
			효제동 167	544.3	
			효제동 171-5	214.9	
	2	69.4	효제동 215-1	69.4	
	3	89.3	효제동 216	89.3	
	4	52.9	효제동 217	52.9	
	5	191.7	효제동 218	191.7	
	6	99.2	효제동 209	99.2	
	7	370.2	효제동 211	175.2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12-1	195.0	
	8	92.6	효제동 214	92.6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9	165.3	효제동 208	165.3	
	10	128.9	효제동 171-20	128.9	
	11	72.7	효제동 171-7	72.7	
E-8	1	62.8	효제동 206	62.8	
	2	158.7	효제동 207-1	158.7	
	3	184.5	효제동 197-5	146.8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97-15	37.7	
	4	218.2	효제동 204	218.2	
	5	324.6	효제동 197-6	110.1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97-7	135.2	
			효제동 203	79.3	
	6	102.5	효제동 202	102.5	
	7	130.4	효제동 201	99.2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01-1	31.2	
	8	124.6	효제동 200	124.6	
	9	92.9	효제동 199	92.9	
	10	167.9	효제동 198	167.9	
	11	77.7	효제동 197-1	77.7	
	12	67.1	효제동 171-19	67.1	
	13	198.0	효제동 171-30	135.2	171-18, 171-28 공동개발 지정 171-28, 171-30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171-18	10.9	
			효제동 171-28	51.9	
	14	125.7	효제동 171-17	33.1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71-15	92.6	
	15	142.1	효제동 171-16	142.1	
	16	182.2	효제동 197-2	72.1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97-3	110.1	
	17	212.6	효제동 173-11	212.6	
	18	101.2	효제동 173-8	101.2	
	19	120.0	효제동 197-8	120.0	
	20	114.3	효제동 173-12	114.3	
	21	161.6	효제동 173-9	161.6	
E-9	1	254.8	효제동 171-13	254.8	
	2	233.4	효제동 173-7	233.4	
	3	128.9	효제동 174-3	128.9	
	4	1,834.0	효제동 171-10	114.1	171-10, 171-21 공동개발 권장 171-21, 171-22 공동개발 지정 171-22, 171-23 공동개발 권장 171-23, 171-25, 171-12 공동개발 지정 171-12, 173-1, 173-2, 174-6 공동개발 권장 174-6, 174-14 공동개발 지정 174-6, 174-5 공동개발 권장 174-4, 174-5, 174-7, 174-2, 174-4, 175-10
			효제동 171-22	65.5	
			효제동 171-21	2.6	
			효제동 171-12	69.4	
			효제동 171-25	95.5	
			효제동 171-23	26.1	
			효제동 173-2	581.6	
			효제동 173-1	188.2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효제동 174-6	73.7	공동개발 권장 174-10, 175-11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74-14	8.9	
			효제동 174-4	73.7	
			효제동 174-5	45.3	
			효제동 174-7	152.1	
			효제동 174-8	149.8	
			효제동 174-2	61.8	
			효제동 175-10	92.6	
			효제동 175-11	33.1	
E-10	1	131.7	효제동 194-1	131.7	
	2	92.6	효제동 191	92.6	
	3	418.4	효제동 193-1	198.1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95	137.7	
			효제동 188-1	82.6	
	4	304.1	효제동 193-2	6.6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92	277.7	
			효제동 188-2	19.8	
	5	132.2	효제동 189	69.4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90	62.8	
	6	109.1	효제동 186	109.1	
	7	231.4	효제동 196-4	1.3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97-13	91.9	
			효제동 197-14	91.9	
			효제동 187	46.3	
	8	87.6	효제동 197-10	87.6	
	9	112.1	효제동 197-11	112.1	
	10	145.4	효제동 184	69.4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85	76.0	
	11	205.0	효제동 173-13	205.0	
	12	243.3	효제동 173-14	90.2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73-15	67.1	
			효제동 176-11	86.0	
	13	86.0	효제동 482	86.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14	168.6	효제동 176-10	109.1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81	59.5	
	15	198.3	효제동 176-12	198.3	
E-11	1	544.7	효제동 176-5	66.1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76-6	112.4	
			효제동 176-3	99.2	
			효제동 176-15	20.1	
			효제동 176-2	66.1	
			효제동 176-4	76.0	
			효제동 176-1	86.0	
			효제동 176-12	18.8	
	2	333.9	효제동 179-1	46.3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79-2	287.6	
	3	207.3	효제동 175-21	207.3	
	4	112.4	효제동 175-19	112.4	
	5	105.8	효제동 175-20	105.8	
	6	208.3	효제동 175-27	112.4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175-26	95.9	
	7	219.1	효제동 174-13	90.2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75-18	128.9	
	8	155.4	효제동 175-25	155.4	
	9	67.4	효제동 174-10	4.6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75-22	62.8	
	10	72.7	효제동 175-12	72.7	
	11	66.1	효제동 175-23	66.1	
	12	76.0	효제동 175-13	76.0	
	13	86.0	효제동 175-24	86.0	
	14	99.2	효제동 175-14	99.2	
	15	123.5	효제동 175-16	110.1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75-15	13.4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16	533.1	효제동 175-9	213.9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175-3	95.9	
			효제동 175-1	223.3	
	17	99.2	효제동 175-7	99.2	
	18	170.9	효제동 175-5	170.9	
	19	110.1	효제동 175-4	110.1	
E-12	1	1,014.3	충신동 206-7	156.8	207-12, 188-15, 206-3 공동개발 지정 206-3, 206-7, 206-8, 206-9, 260-10, 214-2 공동개발 권장 206-8, 207-14, 공동개발 지정 213-3, 214-2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206-3	54.3	
			충신동 188-15	55.5	
			충신동 207-12	6.6	
			충신동 206-8	155.4	
			충신동 207-14	23.1	
			충신동 213-3	5.7	
			충신동 214-2	120.7	
			충신동 206-9	148.7	
			충신동 206-10	287.5	
	2	115.7	충신동 206-4	26.4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207-13	89.3	
	3	115.7	충신동 206-5	115.7	
	4	108.7	충신동 214-1	108.7	
	5	245.4	충신동 188-13	169.1	188-13, 188-14 공동개발 권장 188-14, 207-7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88-14	63.1	
			충신동 207-7	13.2	
	6	294.2	충신동 207-8	89.3	공동개발 권장
			충신동 207-9	82.6	
			충신동 207-6	122.3	
	7	95.3	충신동 207-1	95.3	
	8	155.4	충신동 207-2	155.4	
	9	316.7	충신동 186-7	81.4	186-5, 186-6 공동개발 지정 186-7, 186-8 공동개발 지정 186-6, 186-8 공동개발 권장
			충신동 186-5	30.3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충신동 186-6	102.5	
			충신동 186-8	102.5	
	10	170.5	충신동 186-3	86.5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81-5	58.2	
			충신동 181-3	25.8	
	11	91.5	충신동 211-2	91.5	
	12	128.9	충신동 211-1	128.9	
	13	120.5	충신동 210	68.6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209	51.9	
	14	78.8	충신동 208	78.8	
	15	104.7	충신동 211-3	104.7	
E-13	1	141.7	종로6가동 238-29	141.7	
	2	48.8	종로6가동 238-31	48.8	
	3	107.9	종로6가동 238-2	38.2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38-3	24.1	
			종로6가동 238-7	12.9	
			종로6가동 238-4	12.2	
			종로6가동 238-5	13.2	
			종로6가동 238-35	7.3	
	4	84.0	종로6가동 238-32	84.0	
	5	121.7	종로6가동 238-30	121.7	
	6	404.6	종로6가동 238-6	404.6	
	7	122.3	종로6가동 239-13	122.3	
	8	122.3	종로6가동 239-12	122.3	
	9	132.2	종로6가동 239-11	132.2	
	10	108.7	종로6가동 238-16	108.7	
	11	128.6	종로6가동 236-4	128.6	
	12	96.4	종로6가동 236-1	96.4	
	13	103.8	종로6가동 238-17	103.8	
	14	137.9	종로6가동 238-18	137.9	
	15	50.9	종로6가동 238-13	50.9	
	16	89.6	종로6가동 238-11	53.2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38-12	36.4	
	17	130.2	종로6가동 236-2	66.1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38-1	64.1	
	18	85.0	종로6가동 238-25	85.0	
	19	66.4	종로6가동 238-24	66.4	
	20	158.3	종로6가동 238-22	58.5	235-7, 238-20, 239-9, 239-10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38-21	51.9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종로6가동 238-20	35.0	238-22, 238-21 공동개발 권장
			종로6가동 239-9	9.9	
			종로6가동 239-10	2.3	
			종로6가동 235-7	0.7	
E-14	1	181.9	종로6가동 239-20	95.9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39-19	86.0	
	2	119.0	종로6가동 239-21	119.0	
	3	106.8	종로6가동 239-22	106.8	
	4	310.4	종로6가동 239-24	110.1	239-16, 239-17 공동개발 지정 239-17, 239-18 공동개발 권장 239-16, 239-24 공동개발 권장
			종로6가동 239-18	83.6	
			종로6가동 239-17	77.0	
			종로6가동 239-16	39.7	
	5	106.8	종로6가동 239-23	106.8	
	6	314.5	종로6가동 239-25	80.3	공동개발 권장
			종로6가동 239-30	234.2	
	7	81.7	종로6가동 239-26	81.7	
	8	86.0	종로6가동 239-27	86.0	
	9	98.2	종로6가동 239-28	98.2	
	10	132.3	종로6가동 239-29	93.6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40-4	38.7	
E-15	1	66.7	종로6가동 234-4	23.1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34-2	43.6	
	2	134.2	종로6가동 234-3	134.2	
	3	119.2	종로6가동 233-2	119.2	
	4	150.8	종로6가동 232-1	150.8	
	5	297.2	종로6가동 231-2	66.4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33-3	58.9	
			종로6가동 230	171.9	
	6	92.6	종로6가동 235-3	39.7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35-2	52.9	
	7	74.4	종로6가동 215-18	74.4	
	8	50.7	종로6가동 215-48	50.7	
	9	163.8	종로6가동 215-19	160.5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15-46	3.3	
	10	83.3	종로6가동 215-17	83.3	
	11	156.7	종로6가동 215-16	155.0	공동개발 지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종로6가동 215-31	1.7	
	12	235.1	종로6가동 215-23	235.1	
	13	163.1	종로6가동 215-56	163.1	
	14	296.8	종로6가동 215-34	3.6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15-59	17.9	
			종로6가동 215-24	164.3	
			종로6가동 215-25	67.1	
			종로6가동 215-37	9.9	
			종로6가동 215-55	64.0	
	15	176.9	종로6가동 215-22	176.9	
	16	95.9	종로6가동 229	95.9	
E-16	1	82.6	종로6가동 228-14	82.6	
	2	158.6	종로6가동 228-10	158.6	
	3	69.4	종로6가동 228-11	69.4	
	4	69.4	종로6가동 228-9	69.4	
	5	142.1	종로6가동 228-8	142.1	
	6	198.3	종로6가동 228-5	76.0	228-5, 228-6 공동개발 권장 227, 228-5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27	46.3	
			종로6가동 228-6	76.0	
	7	109.1	종로6가동 228-7	109.1	
	8	223.1	종로6가동 226	223.1	
	9	81.6	종로6가동 225	81.6	
	10	84.0	종로6가동 241-1	84.0	
	11	180.5	종로6가동 241-2	180.5	
	12	89.3	종로6가동 241-4	89.3	
	13	87.6	종로6가동 240-1	13.9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41-5	73.7	
	14	396.5	종로6가동 239-6	46.3	239-6, 228-18 공동개발 지정 228-18, 240-3 공동개발 권장
			종로6가동 240-3	254.3	
			종로6가동 228-18	95.9	
	15	393.0	종로6가동 228-15	79.3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28-16	69.4	
			종로6가동 228-17	72.7	
			종로6가동 239-5	57.2	
			종로6가동 239-4	53.9	
			종로6가동 239-3	60.5	
	16	174.5	종로6가동 235-5	59.5	239-1, 235-6 공동개발 지정 235-5, 235-6 공동개발 권장 239-1, 239-2 공동개발 권장
			종로6가동 235-6	32.4	
			종로6가동 239-1	16.5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종로6가동 239-2	66.1	
	17	82.6	종로6가동 228-13	82.6	
E-17	1	1,262.2	종로6가동 239-34	207.3	239-41, 239-43, 239-44 공동개발 지정 239-34, 239-36, 239-39, 239-41, 239-42 공동개발 권장
			종로6가동 239-36	465.5	
			종로6가동 239-39	289.6	
			종로6가동 239-41	128.9	
			종로6가동 239-44	46.3	
			종로6가동 239-42	71.7	
			종로6가동 239-43	52.9	
	2	200.7	종로6가동 240-8	200.7	
	3	176.3	종로6가동 241-9	49.6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41-8	80.3	
			종로6가동 241-7	44.7	
			종로6가동 219-1	1.7	
	4	123.0	종로6가동 240-7	86.0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40-6	34.0	
			종로6가동 241-10	3.0	
	5	2,105.7	종로6가동 242-1	2,092.5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42-2	13.2	
E-18	1	381.3	종로6가동 210-39	8.8	210-39, 201-10 공동개발 지정 210-10, 210-11 공동개발 권장 210-11, 212-1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10-10	98.5	
			종로6가동 210-11	132.2	
			종로6가동 212-1	141.8	
	2	1,255.8	종로6가동 210-1	1,255.8	
	3	300.5	종로6가동 213-2	300.5	
	4	115.7	종로6가동 193-2	115.7	
	5	136.4	종로6가동 214-2	136.4	
	6	59.8	종로6가동 214-3	59.8	
	7	65.5	종로6가동 215-52	65.5	
	8	920.0	종로6가동 193-5	82.6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193-4	56.2	
			종로6가동 194-6	89.3	
			종로6가동 194-10	99.2	
			종로6가동 189	549.7	
			종로6가동 187	43.0	
	9	52.9	종로6가동 194-5	52.9	
	10	62.8	종로6가동 194-4	62.8	
	11	367.6	종로6가동 210-24	2.6	210-24, 210-2, 197, 197-7 공동개발 지정 197-7, 197-6 공동개발 권장 197-6, 197-5, 197-22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10-2	24.1	
			종로6가동 197	54.8	
			종로6가동 197-7	131.6	
			종로6가동 197-6	99.2	
			종로6가동 197-5	53.6	
			종로6가동 197-22	1.7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12	153.1	종로6가동 197-8	153.1	
E-19	1	146.5	종로6가동 197-10	146.5	
	2	1,059.8	종로6가동 197-9	106.1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197-30	187.4	
			종로6가동 195-2	766.3	
	3	102.5	종로6가동 194-7	102.5	
	4	119.0	종로6가동 194-8	119.0	
	5	79.3	종로6가동 195-5	79.3	
	6	241.0	종로6가동 196	241.0	
	7	436.4	종로6가동 185	436.4	
	8	228.1	종로6가동 182-1	228.1	
	9	185.1	종로6가동 179-1	185.1	
	10	177.6	종로6가동 178-1	29.8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172-2	147.8	
	11	148.4	종로6가동 173	148.4	
	12	128.9	종로6가동 171	128.9	
	13	82.6	종로6가동 184	76.0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185-1	6.6	
	14	351.6	종로6가동 185-2	2.3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168-3	83.3	
			종로6가동 168-2	62.1	
			종로6가동 169-2	203.9	
	15	49.6	종로6가동 170	49.6	
	16	92.6	종로6가동 185-3	92.6	
	17	132.9	종로6가동 166-2	132.9	
E-20	1	91.0	종로6가동 163	52.9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164	38.1	
	2	60.4	종로6가동 161	60.4	
	3	128.9	종로6가동 162	59.5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159-1	52.9	
			종로6가동 159-2	16.5	
	4	50.6	종로6가동 160-1	50.6	
	5	233.7	종로6가동 157	233.7	
	6	274.5	종로6가동 155-1	274.5	
	7	134.6	종로6가동 148-1	14.2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146-1	119.4	
			종로6가동 145-2	1.0	
F-1	1	375.3	원남동 152-11	24.8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128-1	350.5	
	2	262.0	원남동 135-1	81.0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133-1	111.2	
			원남동 130-3	69.8	
	3	131.0	원남동 127-5	131.0	
	4	161.7	원남동 130-6	7.3	공동개발 지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원남동 130-4	16.5	
			원남동 130-5	6.9	
			원남동 127-3	131.0	
	5	71.3	원남동 125-3	28.0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125-2	36.0	
			원남동 125-9	7.3	
	6	101.8	원남동 125-7	27.1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125-6	23.8	
			원남동 125-5	50.9	
	7	1,192.4	원남동 118-1	804.9	118-1, 117-1 공동개발 지정 122-2, 122-3 공동개발 지정 122-1, 122-2 공동개발 권장 122-2, 118-1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117-1	238.7	
			원남동 122-3	1.7	
			원남동 122-2	77.0	
			원남동 122-1	70.1	
	8	59.5	원남동 121-1	59.5	
	9	56.2	원남동 121-2	56.2	
F-2	1	278.5	원남동 105-3	35.8	105-3, 106-1 공동개발 지정 106-1, 105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106-1	185.2	
			원남동 105	57.5	
	2	527.3	원남동 97-13	1.7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104-2	39.3	
			원남동 103-1	486.3	
	3	967.3	원남동 103	967.3	
	4	89.3	원남동 102	89.3	
	5	95.9	원남동 101	95.9	
	6	224.8	원남동 100	128.9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99	95.9	
	7	134.9	원남동 98	134.9	
F-3	1	142.1	원남동 25	142.1	
	2	570.4	원남동 25-2	570.4	
	3	283.1	원남동 24-1	78.3	23-3, 24-7 공동개발 지정 24-16, 24-6 공동개발 지정 24-3, 24 공동개발 지정 24-1, 24-7, 24-6, 24-17, 24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23-3	3.3	
			원남동 24-7	75.0	
			원남동 24-16	1.3	
			원남동 24-6	34.0	
			원남동 24-17	31.7	
			원남동 24-3	0.3	
			원남동 24	59.2	
	4	651.7	원남동 24-11	2.6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4-10	465.2	
			원남동 50-8	131.6	
			연건동 0-2가	1.1	
			연건동 302-31	20.5	
			연건동 302-15	30.7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F-4	1	140.8	연건동 302-30	140.8	
	2	684.8	연건동 302-28	108.1	302-28, 302-29, 302-8, 302-18 공동개발 지정 51-1, 302-29 공동개발 권장 51-1, 51-3 공동개발 지정 52-2, 51-1 공동개발 권장
			연건동 302-29	13.2	
			연건동 302-8	229.1	
			연건동 302-18	65.8	
			원남동 51-3	10.6	
			원남동 51-1	154.7	
			원남동 52-2	103.3	
	3	99.2	연건동 302-17	99.2	
F-5	1	166.3	연건동 318	116.7	공동개발 지정
			연건동 319	49.6	
	2	252.2	연건동 317	252.2	
	3	481.7	연건동 315	253.6	315, 323-1, 322 공동개발 지정 323-1, 323-3 공동개발 권장
			연건동 323-1	72.1	
			연건동 322	82.6	
			연건동 323-3	73.4	
F-6	1	484.5	연건동 206	484.5	
	2	136.2	연건동 207-1	6.6	공동개발 지정
			연건동 208	129.6	
	3	123.6	연건동 209	117.0	공동개발 지정
			연건동 203-4	5.3	
			연건동 203-11	1.3	
F-7	1	284.3	연건동 233-2	261.2	공동개발 지정
			연건동 128-4	23.1	
	2	264.5	연건동 233	264.5	
	3	109.1	연건동 263	109.1	
	4	263.2	연건동 264-3	6.6	264-3, 264-2, 264-1, 264 공동개발 지정 273-8, 273-1 공동개발 지정 273-8, 264 공동개발 권장
			연건동 264-2	66.1	
			연건동 264-1	17.9	
			연건동 264	92.6	
			연건동 273-1	20.5	
			연건동 273-8	59.5	

2)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조서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일대(변경)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A-1	1,548.3	와룡동	2-113	28.9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원남동	150-2	1,199.9		
			151-2	49.8	공동개발 권장	맹지
			151-13	48.7		-
			151-6	221.0	-	-
A-2	3,047.2	원남동	197-1	224.6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98	94.1		
			212-3	79.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12-4	100.7		
			212-6	20.8	공동개발 권장	30㎡미만 필지
			199	218.9	-	-
			208-1	100.3	-	-
			209	288.3	-	-
			210-2	109.6	-	-
			206-1	181.8	-	-
			194	105.7	-	-
			211	40.4	-	-
			212-7	88.7	-	-
			212-2	139.0	-	-
			194	1,123.5	-	-
			213	56.2	-	-
			214-1	75.3	-	-
A-3	4,174.9	원남동	171-2	151.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77-1	1,003.4		
			166-2	26.1	공동개발 권장	30㎡미만 필지
			179-2	54.2		-
			181	68.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82	61.5		
			183-3	65.8		
			183-1	1.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83-13	3.3		
			183-14	5.0		
			183-15	4.3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183-8	56.5		
A-3	4,174.9	원남동	183-10	4.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83-11	16.5		
			183-12	13.2		
			189-2	52.2		
			189-3	35.7		
			189-5	15.5		
			189-12	205.3		
			189-4	41.0(18.7)		인접국공유지 (대지분할)
			189-4	41.0(22.3)	공동개발 지정	인접국공유지 (대지분할)
			189-6	53.2		동일소유자
			189-7	130.9		
			189-8	29.1		
			191-2	7.9		
			191-3	47.3		
			189-9	91.9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90-1	32.7		
			187	389.5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88-2	144.9		
			179-3	79.3	-	-
			180	239.7	-	-
			184	36.3	-	-
			185	49.6	-	-
			189-1	599.0	-	-
			192-2	212.6	-	-
			191-1	73.7	-	-
			95-9	72.7	-	-
A-4	4,661.9	원남동	220	86.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21	69.4		
			222	62.8		
			231-2	62.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32	39.7		
			219-1	158.7	-	-
			218	52.9	-	-
			223	109.1	-	-
			217-2	1.7	공동개발 권장	30㎡미만 필지
			217-3	107.4		-
			229	102.2	-	-
			230-1	36.4	-	-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230-2	46.3	-	-
			231-1	49.6	-	-
A-4	4,661.9	원남동	214-5	40.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14-8	49.6		
			214-18	10.7		
			214-2	3.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25-2	46.3		
			215-3	4.0	공동개발 권장	30㎡미만 필지
			214-3	6.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25-3	50.6		
			214-4	4.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25-4	22.0		
			225-5	24.4	공동개발 권장	30㎡미만 필지
			225-6	27.3	공동개발 권장	30㎡미만 필지
			225-7	23.5		
			226-1	99.2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26-2	68.5		
			227	65.2		
			239-2	45.8	공동개발 권장	-
			239-3	3.3		30㎡미만 필지
			234	86.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35	86.0		
			216	62.8	-	-
			215-1	62.8	-	-
			215-2	66.4	-	-
			224	105.8	-	-
			225-1	37.0	-	-
			225-9	53.9	-	-
			225-10	44.0	-	-
			228-1	140.0	-	-
			237	98.6	-	-
			238	39.7	-	-
			239-1	43.0	-	-
			240	92.6	-	-
			241	96.2	-	-
			244-7	396.7	-	-
			233	56.2	-	-
			236	33.1	-	-
			242-1	94.2	-	-
			242-2	251.9	-	-
			243-2	69.4	-	-
			243-3	72.7	-	-
			243-4	79.3	-	-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243-5	115.7	-		-
			243-9	112.4	-		-
			243-12	115.7	-		-
			243-10	115.7	-		-
			243-11	115.7	-		-
			243-6	164.9	-		-
			243-7	87.2	-		-
			243-23	87.1	-		-
A-5	5,383.5	원남동	246	67.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46-1	7.3			
			244-1	109.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45-6	36.4			
			248-2	25.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49-7	658.8			
			247-2	132.3	-		-
			248	72.1	-		-
			245-1	86.0	-		-
			246-2	90.8	-		-
			249-4	66.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49-5	8.6			
			250	281.0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동일소유자
			250-1	19.8			
			252	66.1			
			251	30.4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51-2	12.6			
			254-1	39.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55-1	39.7			
			255-2	39.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56-1	59.5			
			256-2	56.2			
			253	122.3	-		-
			254-2	72.7	-		-
			257-1	217.9	-		-
			262-1	96.9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62-4	26.8			
			262-3	5.3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263	150.6			-
			259	82.6	-		-
			260	86.0	-		-
			261	119	-		-
			266-1	155.4	-		-
			264	140.6	-		-
			265	124.7	-		-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267	70.9	-	-
			273	441.2	-	-
			270-2	51.0	-	-
			271	57.0	-	-
			276-1	84.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76-2	107.8		
			279-2	100.5	공동개발 권장	-
			279-3	1.2		30㎡ 미만 필지
			278	135.5	-	-
			277	128.9	-	-
			258	79.3	-	-
			282	174.1	-	-
			279	299.0	-	-
			280	247.9	-	-
A-6	5,865.1	인의동	7-7	6.6	공동개발 지정	인접국공유지
			7-6	28.0		동일소유자
			56	46.3		
			57-2	188.4		
			59-5	216.1		
			59-6	379.8		
			59-7	32.1		
			59-8	479.3		
			101-13	44.8		
			101-14	10.7		인접국공유지
			59	254.5		동일소유자
			63	33.1		
			57-6	92.1	-	-
			57-4	111.7	-	-
			49-1	51.0	-	-
			50-2	626.8	-	-
			57-1	66.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57-3	243.6		
			61-1	139.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61-2	65.1		
			62-1	306.1		
			89-8	7.3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89-9	5.6		
			89-11	125.6		-
			89-12	43.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89-17	10.9		
			89-14	74.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89-25	6.4		
			89-3	162.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89-5	88.1		
			89-16	6.6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90-5	67.9			
			89-13	97.9	-		-
			89-15	211.5	-		-
			89-6	70.0	-		-
			90-3	71.4	-		-
			90-1	236.3	-		-
			77	82.6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78-1	29.9			
			75-4	44.9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80-1	86.6			
			74-1	148.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81-1	26.4			
			85-1	62.2	공동개발 권장		-
			85-9	0.2			30㎡ 미만 필지
			86	89.9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01-12	4.2			
			76-1	99.2	-		-
			79-1	109.8	-		-
			73	192.5	-		-
			72	69.4	-		-
			85-3	111.3	-		-
B-1	4,551.5	원남동	28-23	15.9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36	431.8			
			37-1	43.6			
			32	89.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33	59.5			
			27-1	0.7	공동개발 권장		맹지
			28-7	534.1			-
			28-6	13.2	공동개발 권장	공동개발 권장	맹지
			28-9	150.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8-11	150.7			
			28-12	6.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맹지
			28-13	3.3			
			96-7	63.8	-		-
			96-8	63.1	-		-
			96-9	61.5	-		-
			94-3	35.7	-		-
			94-4	36.7	-		-
			95	494.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95-13	21.6			
			89-3	187.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95-12	3.6		
			89-1	213.6		
			89-4	1.3		
			86-1	100.5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86-15	52.1		
			86-5	3.3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86-6	332.8		-
			86-8	16.5		30㎡ 미만 필지
			85-2	86.0	공동개발 권장	-
			86-7	1.3		30㎡ 미만 필지
			33	59.5	-	-
			34-1	89.3	-	-
			34-2	59.5	-	-
			28-15	153.1	-	-
			28-18	89.3	-	-
			28-17	76.0	-	-
			28-19	89.3	-	-
			30	39.7	-	-
			29-1	228.1	-	-
			29-2	112.4	-	-
			29-3	128.9	-	-
			88-1	152.0	-	-
B-2	2,372.4	원남동	49-16	59.5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56-3	47.3		
			57	213.0		
			59	19.8		
			26-6	72.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38	92.6		
			39	135.5		
			40	43.0		
			41	86.0		
			42-2	89.3		
			42-3	36.4		
			43	199.1		
			47-2	3.0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47-3	93.9		
			47-4	109.4		
			47-5	0.7		
			48-5	9.9		
			49-4	143.5		
			49-9	114.4		
			49-10	108.8		
			49-11	131.2		
			49-12	10.2		
			49-13	70.1		
			49-14	3.6		
			49-15	3.0		
			49-17	40.0		
			49-19	48.9		
			49-20	51.2		
			49-21	10.4		
			61-4	16.3		
			49-18	79.7	-	-
			60-1	230.6	-	-
B-3	3,454.2	원남동	66-6	63.5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66-24	142.1		
			66-69	72.0		
			66-2	109.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66-8	7.0		
			66-9	284.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66-83	6.2		
			66-66	181.8	-	-
			66-7	234.7	-	-
			67	155.4	-	-
			69	82.6	-	-
			68	79.3	-	-
			66-10	281.0	-	-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66-51	86.3	-	-
			66-12	228.1	-	-
			66-13	208.3	-	-
			66-26	158.7	-	-
			80-2	110.8	-	-
			82-2	210.9	-	-
			84-2	94.2	-	-
			72-2	221.5	-	-
			72-1	235.8	-	-
			70	200.6	-	-
B-4	3,443.4	원남동	66-21	1,983.6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연지동	47-1	679.4		
		연지동	56	622.3	-	-
			49	89.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50	68.8		
B-5	747.4	인의동	1-6	22.8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1-7	18.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	168.6		
			4	260.5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4-1	13.2		
			6	44.3	공동개발 권장	-
			7-5	15.2		30㎡ 미만 필지
			2-5	44.3	-	-
			5-2	70.4	-	-
			3-1	89.3	-	-
B-6	4,022.1	연지동	35	135.5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36-2	18.2		
			27	60.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8	135.5		
			5-3	205.0	-	-
			5-5	198.3	-	-
			5-6	168.6	-	-
			30	346.4	-	-
			36-1	84.3	-	-
			33	208.4	-	-
			37	112.4	-	-
			39	115.6	-	-
			42	254.8	-	-
			40	262.5	-	-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43	76.0	-	-
			44-1	96.9	-	-
			44-2	63.6	-	-
			46-1	122.8	-	-
			45	62.2	-	-
		원남동	66-17	376.9	-	-
			66-18	263.4	-	-
			66-19	142.1	-	-
			66-75	262.1	-	-
			66-48	101.9	-	-
			66-44	148.0	-	-
B-7	26,850.3	원남동	63-2	126.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63-4	94.5		
			63-3	2.0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맹지
			63-5	3.0		
			64-1	149.4		-
			66-1	171.9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66-31	205.0		
			66-45	8.3		
			66-37	62.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66-38	116.6		
			66-39	46.3		
			66-54	69.4		
			66-55	79.3		
			66-56	48.6		
			66-57	56.2		
			66-58	50.6		
			66-60	59.5		
			66-67	142.1		
			66-71	2.3		
			64-2	187.8	-	-
			65-3	189.3	-	-
			65-2	217.2	-	-
			66-32	126.0	-	-
			66-46	77.7	-	-
			66-34	112.2	-	-
		연지동	5-1	105.8	-	-
			5-2	66.1	-	-
B-7	26,850.3	원남동	61	89.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연지동	1-24	781.0		
		연지동	3-1	32.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3-2	46.3		
			3-4	40.7		
			4-1	162.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4-5	76.7		
			4-6	65.1		
			4-2	3.6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4-3	168.6		-
			1-17	64.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19	14.5		
			11	69.4		
			12	46.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9	164.0		
			13	72.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4	109.1		
			15	86.0		
			17	82.6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8	89.3		
			4-10	89.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4-7	56.2		
			1-20	94.9	-	-
			3-3	56.2	-	-
			4-11	56.2	-	-
			4-14	42.6	-	-
			4-8	66.1	-	-
			6-1	169.9	-	-
			8	200.4	-	-
			9	117.0	-	-
			10	79.3	-	-
			16	66.1	-	-
			22	137.2	-	-
			24	57.6	-	-
			25	74.6	-	-
		원남동	62	110.1	-	-
		연지동	1-1	974.4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32	2,370.6		
			2-1	36.4		
			2-3	13.2		
		연건동	327-3	8.6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B-7	26,850.3	연지동	1-7	596.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1-8	1,094.4			
			1-11	1,555.9			
			1-15	41.3			
			1-16	61.5			
			1-21	26.8			
			1-22	15.9			
			1-23	5.0			
			1-30	6,382.5			
			1-33	1,368.8			
			127-3	19.2			인접국공유지
		효제동	47-4	31.5			동일소유자
			73-4	10.2			인접국공유지
		연건동	195-3	214.9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동일소유자
			195-40	58.5			
			197-4	82.3			
			197-5	172.9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97-6	42.0			
			195-12	1,135.2	공동개발 권장		-
			198-18	19.9			30㎡ 미만 필지
			198-6	112.2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98-7	320.9			
			198-11	147.6			
			199-2	178.2			
			198-2	256.6	-		-
			195-30	55.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95-31	155.1			
			195-14	151.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95-15	119.1			
			195-10	867.1	-		-
			195-11	257.8	-		-
			195-32	169.2	-		-
			195-38	60.8	-		-
			197-7	46.3	-		-
			195-13	105.8	-		-
			195-19	99.2	-		-
			195-20	82.6	-		-
			195-21	82.6	-		-
			195-23	165.1	-		-
			195-24	155.4	-		-
			195-25	185.1	-		-
			195-16	307.4	-		-
			195-17	117.5	-		-
B-8	1,817.3	인의동	14-2	36.7	공동개발 권장		-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14-6	19.8		30㎡ 미만 필지
			16	82.6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7	95.9		
			15-2	140.5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8	307.3		
			19	106.0	공동개발 권장	부정형 필지
			20	12.1		30㎡ 미만 필지
			21	5.2		
			22-1	129.1		-
			8-2	35.0	-	-
			9	78.7	-	-
			10	119.0	-	-
			13-2	139.8	-	-
			14	46.9	-	-
			12	248.0	-	-
			25	214.7	-	-
B-9	35,734.8	연지동	74-5	66.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75	181.6		
			76	83.7		
			59	501.6	-	-
			58	113.2	-	-
			65-2	213.6	-	-
			62-2	348.7	-	-
			70	277.9	-	-
			74-2	112.4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74-3	69.4		
			73	234.7	-	-
			83	16.5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84	16.5		
			85	29.7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106	66.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07	168.6		
			110-1	470.4	-	-
			108-1	148.8	-	-
			110-2	316.4	-	-
			87	128.9	-	-
			90	86.0	-	-
			91	115.7	-	-
			82	95.9	-	-
			81	86.0	-	-
			80	208.3	-	-
			103	36.4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02	60.5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93-2	132.2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74-6	56.2		
			74-1	49.6		기 공동개발
B-9	35,734.8	연지동	74-12	782.4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00-11	7.9		
			157	107.2	공동개발 권장	-
			157-3	15.8		30㎡ 미만 필지
			157-7	0.7		
			74-10	55.2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74-9	95.9		
			105	380.5	-	-
			100-1	172.6	-	-
			100-14	244.0	-	-
			100-2	148.8	-	-
			100-3	112.4	-	-
			99	86.0	-	-
			100-4	105.8	-	-
			102-2	51.9	-	-
			101-1	122.3	-	-
			100-13	102.5	-	-
			100-12	105.8	-	-
			100-5	350.4	-	-
			98-1	109.1	-	-
			97	169.0	-	-
			96-2	191.4	-	-
			95-1	76.0	-	-
			74-8	62.8	-	-
			93-1	99.2	-	-
			155-1	194.2	-	-
			133	191.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34-1	28.3		
			134-3	8.2		
			125	132.2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27	125.6		
			123	191.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23-1	19.8		
			124	86.0		
			111	138.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12-1	74.7		
			112-2	60.8		
			113	95.9		
			132-1	115.7	-	-
			131	155.3	-	-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128	456.0	-	-
			126	86.0	-	-
			122	148.8	-	-
			119	353.7	-	-
			114-1	125.6	-	-
			115	214.9	-	-
			136-5	7,419.2	-	-
		연지동	135	5,150.4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효제동	51-5	95.3		
B-9	35,734.8	연지동	136-25	251.5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36-26	383.9		
			136-35	28.0		
			136-12	2,175.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36-67	73.5		
			136-93	20.4		
			136-95	45.2		
			136-74	8,840.5	-	-
B-10	8,373.2	효제동	49-1	110.5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50-1	189.1		
			50-8	212.0		
			51-10	3.0		
			51-11	19.8		
			51-21	0.3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45	1,324.3	-	-
			46	67.4	-	-
			48	143.1	-	-
			52	109.0	-	-
			51-3	113.4	-	-
			21-3	8.3	-	효제동21-3번지 특별계획구역
			21-8	43.6		
			21-9	86.7		
			21-10	146.4		
			21-11	6.6		
			21-12	373.6		
			21-13	135.5		
			21-14	3.3		
			21-15	29.8		
			22-3	683.4		
			23-2	91.6		
			24-1	62.8		
			24-2	93.7		
			24-3	46.3		
			24-4	52.9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24-8	102.5		
			24-9	52.9		
			24-12	25.3		
			25-2	252.6		
			36	88.3		
			36-1	136.5		
			36-2	111.4		
			37	80.0		
			39-7	125.6		
			40	402.9		
			73-9	1.9		
			73-10	3.1		
B-10	8,373.2	효제동	54-1	9.9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54-2	559.9		-
			54-3	1.4		30㎡ 미만 필지
			61	113.4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62-3	113.4		
			62-4	76.5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64-4	88.4		
			65-2	418.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65-3	3.3		
			65-4	92.6		
			67-4	532.6		
			64-2	99.2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64-8	214.7		
			64-6	96.1	-	-
			64-1	160.4	-	-
			61-3	105.8	-	-
			61-1	78.0	-	-
			59	69.4	-	-
C-1	2,175	연건동	187-1	712.7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187-4	15.5		동일소유자
			187-22	60.8		
			187-8	108.7	공동개발 권장	부정형 필지
			190-10	121.7	공동개발 권장	-
			190-17	46.6		맹지
			190-9	272.1	공동개발 권장	-
			190-40	31.6		30㎡ 미만 필지
			190-18	97.2	-	-
			190-19	173.6	-	-
			190-20	103.8	-	-
			190-21	122.6	-	-
			190-16	150.4	-	-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188-3	45.3	-	-
			188-4	106.8	공동개발 권장	-
			190-34	5.6		30㎡ 미만 필지
C-2	1,437.6	연건동	190-27	0.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93-2	45.6		
			194-1	4.3		
			194-2	44.0		
			190-28	13.2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192-1	385.2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92-2	95.4		
			190-24	29.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90-25	33.1		
			190-26	1.7		
			193-1	105.8		
			193-4	149.1	-	-
			194-3	106.5	-	-
			190-22	200.0	-	-
			190-29	123.0		
			190-30	100.2	-	-
C-3	5,636.6	효제동	2	147.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3-3	60.1		
			3-5	1.3		
			20	918.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0-1	66.1		
			20-2	1.0		
			20-3	2,013.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0-4	23.1		
			20-5	167.6		
			21-1	13.2		
			19-4	94.2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9-5	101.8		
			27-1	45.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7-4	46.3		
			27-5	79.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7-6	19.8		
			28	98.2	공동개발 권장	-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30-4	6.6		30㎡ 미만 필지
			28-2	34.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8-5	5.0		
			14	112.4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8	36.4		
			3-1	55.5	-	-
			1	135.2	-	-
			10	186.0	-	-
			13	155.4	-	-
			19-1	343.8	-	-
			15-1	154.3	-	-
			19-3	99.2	-	-
			16-1	66.1	-	-
			16-2	86.0	-	-
			28-4	72.4	-	-
			30-1	86.0	-	-
			30-3	62.8	-	-
			31-1	43.0	-	-
C-4	11,856.4	효제동	71-1	303.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71-3	36.4		
			69-1	138.2	공동개발 권장	부정형필지
			69-3	10.6		30㎡ 미만 필지
			69-4	321.7		-
			69-7	94.9		-
			77	205.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77-1	16.5		
			80-1	436.4		
			80-3	9.9		
			105-5	132.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05-12	13.4		
			105-6	89.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05-13	9.9		
			107	270.2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07-4	4.2		
			105-1	45.5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05-11	7.4		
			103	168.9	-	-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101	208.3	-	-
			100-11	135.5	-	-
			105-2	185.1	-	-
			100-10	92.6	-	-
			100-17	142.1	-	-
			100-13	228.0	-	-
			105-9	79.3	-	-
			105-10	79.3	-	-
			105-7	86.0	-	-
			73	168.6	-	-
			72	89.2	-	-
			75	158.7	-	-
			76-2	165.3	-	-
			67-2	544.4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94-2	16.5		
			95-1	69.4		
			95-2	6.6		
			98	5,888.8		
			84-1	252.2		
			91	10.5		
			255-17	424.8		
			291-8	0.1		
			85-1	28.6		
			291-7	3.9		
			291-9	10.4		
			291-11	17.6		
			86-4	116.7		
			86-3	133.3		
			89-1	85.7		
			90-5	2.5		
			255-33	17.9		
			113	59.9	-	-
			115-1	34.3	-	-
C-5	7,021.1	이화동	205-2	79.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05-4	17.5		
			206-2	32.4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209-1	330.5	-	-
			214-2	46.3	공동개발 권장	맹지
			215	254.6		-
			214-3	46.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17-3	3.3		
			218-1	80.3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218-3	23.1		
			219	62.8		
			219-1	13.2		
			211	148.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11-1	23.1		
			214-4	92.6		
			220	167.6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22-1	162.0		
		충신동	78-1	66.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78-2	95.9		
			78-3	165.3		
			80	86.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81	69.4		
			82-1	39.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82-2	29.8		
			82-3	9.9		
			83	178.2		
			77-1	162.0	-	-
			79	86.0	-	-
		이화동	207-2	156.5	-	-
			204-3	93.2	-	-
			217	95.5	-	-
			212	234.4	-	-
C-5	7,021.1	충신동	85-3	12.6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89	76.0		
			89-1	71.7		
			89-2	79.3		
			90	112.4		
			90-1	43.0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90-2	16.5			
			91-4	155.0	공동개발 권장		-
			91-5	96.0			맹지
			91-8	4.2	공동개발 권장	공동개발 권장	맹지, 30㎡ 미만 필지
			95	79.4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96	120.8			
			96-1	8.4	공동개발 권장		동일소유자(91-8), 30㎡ 미만 필지
			96-2	3			
			95-1	5.2			30㎡ 미만 필지
			91-1	99.5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91-6	89.3			
			97-2	52.9			
			88-1	143.5	-		-
			86	269.8	-		-
			85	132.2	-		-
			92	135.5	-		-
			91-7	102.1	-		-
			101-2	185.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02-1	76.0			
			102-2	58.5			
			109-3	5.1			
			104-1	76.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07	99.2			
			104-2	104.5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06	95.9			
			100	322.3	-		-
			100-2	97.5	-		-
			101-1	135.5	-		-
			110	188.4	-		-
			103-1	237.0	-		-
			108	201.7	-		-
			105-1	77.7	-		-
C-6	10,292.2	이화동	107-2	249.3	공동개발 권장		-
			115-2	19.5			30㎡ 미만 필지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100-1	57.9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01-2	24.8			
			108-1	119.0	공동개발 권장		맹지
			108-4	85.9			-
			108-2	74.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08-7	2.0			
			109-1	66.4			
			105-2	306.8	-		-
			106-2	86.6	-		-
			113	89.3	-		-
			112	82.6	-		-
			110	33.0	-		-
			111	49.6	-		-
		충신동	73-6	38.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73-7	324.0			
			72-3	13.6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인접국공유지
			74	76.0			기 공동개발
			75	211.2			
			72-1	36.4	공동개발 권장		맹지
			57-6	217.5	-		-
			57-4	289.6	-		-
			57-5	213.5	-		-
			73-1	97.2	-		-
			73-3	154.7	-		-
			73-4	276.4	-		-
			73-5	113.7	-		-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C-6	10,292.2	충신동	69-3	323.3	공동개발 권장	맹지
			73-18	3.6		30㎡ 미만 필지
			62-1	109.8	공동개발 권장	-
			73-14	1.7		30㎡ 미만 필지, 맹지
			73-15	5.0		
			67-1	119.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68	148.8		
			65	443.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66	148.8		
			62-2	583.4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62-14	58.2		
			62-15	56.6		
			61-4	9.6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62-5	59.5		
			61-5	14.2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62-6	62.8		
			69-2	137.9	-	-
			69-4	142.8	-	-
			70	254.5	-	-
			62-4	71.1	-	-
			62-7	80.8	-	-
			62-9	86.0	-	-
			62-10	82.6	-	-
			62-11	82.6	-	-
			62-12	113.2	-	-
			62-13	70.7	-	-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충신동	56-6	33.4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기공동개발
			56-7	197.7		
			60	3,382.4		
C-7	7,592.8	충신동	123-1	60.5	공동개발 권장	-
			123-18	5.6		30㎡ 미만 필지
			123-2	114.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23-5	86.6		
			123-6	92.9		
			123-17	5.6		
			123-3	9.9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123-19	1.0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155-1	263.1		-
			120	31.5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부정형필지
			121	31.8		
			122	46.3		
			119	89.3	-	-
			123-7	118.3	-	-
			128	76.0	-	-
			135	74.7	-	-
			133-1	62.8	-	-
			133-2	59.5	-	-
			134	59.5	-	-
			129	92.7	-	-
			127	97.3	-	-
			126-1	48.6	-	-
			131	79.3	-	-
			130	152.1	-	-
			123-16	52.2	-	-
			155-2	85.8	-	-
			153-2	187.4	-	-
			153-3	118.2	-	-
			153-5	139.8	-	-
			123-8	143.8	-	-
			123-9	91.9	-	-
			123-10	112.7	-	-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123-11	97.5	-	-
			123-12	95.5	-	-
			123-13	90.6	-	-
			123-14	86.9	-	-
			115-1	192.8	-	-
			116	198.3	-	-
			117	294.2	-	-
C-7	7,592.8	충신동	136-12	115.4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36-16	125.6		
			136-13	2.0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136-5	195.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42-2	52.9		
			144	156.7		
			120-8	9.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47	155.4		
			132-1	52.9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32-2	43.0		
			136-8	67.8		
			136-9	189.1		
			150	86.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51	99.2		
			172	48.5	공동개발 권장	-
			173-3	25.3		30㎡ 미만 필지
			170	372.9		부정형 필지
			167	79.3	공동개발 권장	-
			173-1	23.7		30㎡ 미만 필지
			120-7	6.4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65	39.7		
			166	56.2		
			173-2	34.0		
			136-1	229.9	-	-
			136-2	117.6	-	-
			136-7	157.7	-	-
			148	135.5	-	-
			149	92.6	-	-
			152	86.0	-	-
			156	191.7	-	-
			141-1	132.8	-	-
			140-2	177.2	-	-
			143	107.8	-	-
			163	79.4	-	-
			160	128.9	-	-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159	101.4	-	-
			174	71.1	-	-
C-8	930.9	효제동	73-8	1.5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24-2	71.7		
			73-11	8.2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123	23.1		
			73-12	4.8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155-13	10.4		
			125-2	82.0		-
			126-2	729.2	-	-
C-9	3,779.4	충신동	189-1	119.6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89-4	133.0		
			191-1	65.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91-2	82.6		
			191-3	89.3	공동개발 권장	맹지
			191-4	86.0		
			192	36.4		-
			191-5	62.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91-6	99.2		
			206-18	82.3		
			202	46.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03	135.5		
			201-1	85.6	공동개발 권장	-
			201-3	16.5		30㎡ 미만 필지
			205-3	180.8	공동개발 권장	-
			205-5	10.0		30㎡ 미만 필지
			189-5	126.5	-	-
			189-3	138.8	-	-
			189-6	148.8	-	-
			189-8	122.4	-	-
			189-7	145.5	-	-
			189-11	171.9	-	-
			189-20	327.3	-	-
			206-1	129.9	-	-
			206-14	80.3	-	-
			206-15	76.0	-	-
			206-11	142.8	-	-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195	56.0	-		-
			196	64.0	-		-
			194	39.7	-		-
			197	52.9	-		-
			198-1	155.2	-		-
			200-1	112.7	-		-
			193	102.5	-		-
			204-2	39.7	-		-
			206-12	125.6	-		-
			206-13	89.2	-		-
C-10	3,360	충신동	31-14	40.0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동일소유자
			31-15	59.8			
			31-25	60.5			
			31-32	18.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부정형 필지
			179-1	36.4			
			31-9	84.7	-		-
			31-10	69.8	-		-
			31-12	72.4	-		-
			175-1	167.8	-		-
			175-2	195.0	-		-
			175-3	185.1	-		-
			175-5	185.1	-		-
			175-9	197.4	-		-
			175-8	190.7	-		-
			175-7	182.8	-		-
			175-10	178.8	-		-
			175-11	186.1	-		-
			175-12	188.4	-		-
			175-16	187.4	-		-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175-15	158.7	-	-
			175-14	195.0	-	-
			175-24	149.8	-	-
			175-18	165.3	-	-
			175-19	204.9	-	-
C-11	4,290.4	충신동	31-38	15.6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79-24	49.6		
			189-14	42.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89-15	90.2		
			188-3	43.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88-5	161.1		
			187-19	152.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87-22	112.4		
			187-23	82.6		
			187-30	63.1		
			179-8	26.8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179-10	264.3		-
			179-12	91.6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79-15	33.4		
			187-26	105.8	공동개발 권장	맹지
			176	153.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77	462.9		
			178-2	17.2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175-21	51.6	-	-
			175-23	114.7	-	-
			179-13	2.3	-	-
			184	306.1	-	-
			187-27	125.6	-	-
			187-25	126.6	-	-
			187-28	119.6	-	-
			175-13	110.6	-	-
			187-20	145.5	-	-
			187-21	132.2	-	-
			186-1	106.1	-	-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187-24	76.0	-	-
			187-18	87.5	-	-
			188-1	56.2	-	-
			188-2	98.9	-	-
			188-6	69.4	-	-
			188-7	155.4	-	-
			188-8	162.8	-	-
			188-9	90.8	-	-
			189-2	66.1	-	-
			189-13	62.8	-	-
			188-10	56.9	-	-
C-12	4,031.3	충신동	27-42	152.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7-88	71.7		
			27-89	33.1		
			33-2	122.3		
			33-3	3.3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32-1	5.3		
			33-11	29.8		
			33-12	16.5		
			33-13	38.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33-14	13.2		
			33-18	10.6		
			35-7	30.4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35-27	15.5		
			35-16	38.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35-17	18.2		
			35-8	74.8	공동개발 권장	-
			35-10	29.4		30㎡ 미만 필지
			27-48	23.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7-69	33.1		
			27-43	6.6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7-82	49.6		
			27-84	46.3		
			27-46	17.2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27-47	59.5		-
			27-50	59.5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27-51	31.7		
			27-86	56.2		
			27-53	56.2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7-54	52.9		
			31-19	44.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31-20	46.1		
			27-73	99.2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30-1	162.6		
			27-44	57.9	-	-
			27-52	38.3	-	-
			27-83	186.1	-	-
			27-85	95.9	-	-
			27-72	109.1	-	-
			27-56	318.3	-	-
			31-5	79.8	-	-
C-12	4,031.3	충신동	29-5	52.9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9-6	54.5		
			29-19	4.4		
			29-2	86.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9-17	24.1		
			179-18	5.0		
			27-59	69.4	-	-
			27-60	53.9	-	-
			27-61	71.4	-	-
			27-62	79.3	-	-
			29-1	114.0	-	-
			29-7	121.0	-	-
			29-9	88.6	-	-
			29-3	106.1	-	-
			27-64	269.2	-	-
			27-66	123.2	-	-
			179-17	93.2	-	-
			27-133	182.4	-	-
D-1	3,597	인의동	97	59.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98-2	64.9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98-1	22.1		동일소유자, 기 공동개발(98-1,-2)
			100-1	2.1		
			95	122.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95-1	9.9		
			94	86.0	공동개발 권장	부정형 필지
			101-1	171.9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기 공동개발
			101-3	158.7		
			110-1	10.6		
			102	33.1	공동개발 권장	-
			103	26.4		30㎡ 미만 필지
			112-1	2,767.1	-	-
			111-7	62.8	-	-
D-2	7,535.6	인의동	28-2	532.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기 공동개발
			28-4	39.4		
			28-7	454.4		
			28-8	1,271.0		
			28-11	147.1		
			28-15	383.6		
			28-21	429.8		
			28-28	170.2		
D-2	7,535.6	인의동	48-1	44.2	공동개발 권장	-
			48-5	2.8		30㎡ 미만 필지
			28-6	212.6		부정형 필지
			28-26	845.5	-	-
			28-25	357.2	-	-
			28-36	581.5	-	-
			28-9	1,644.5	-	-
			28-44	245.8	-	-
			28-45	43.7	-	-
			28-48	130.0	-	-
D-3	3,168.3	연지동	163-3	12.3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164-2	22.8		
			167-2	2.5		
			168	71.2		
			169	89.3		
			170	145.5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199-4	5.3			
			163-1	17.4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동일소유자
			184	40.4			
			171-2	4.6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81	264.2			
			183	179.7			
			186-1	162.0	공동개발 권장		맹지
			187-6	2.1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188-6	120.0			-
			188	6.0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188-2	48.2			
			188-3	37.9			
			188-5	22.8			
			189	221.5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91	76.0			
			136-70	242.7	-		-
			188-12	195.0	-		-
			192-1	95.9	-		-
			178	210.3	-		-
			177-1	257.9	-		-
			179	122.3	-		-
			177-3	185.1	-		-
			173	171.9	-		-
			174	135.5	-		-
D-4	18,554.2	연지동	203	99.2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04	338.5			
			204-1	8.6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205-1	2.2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06	369.6			
			208-1	2.4			
			193-6	144.5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93-10	186.4			
			193-7	319.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216-8	6.0		
			211	94.6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14	109.1		
			212	68.2		
			214-1	1.7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213	29.4		
			216-3	158.4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16-4	36.0		
			218	69.4		
			216-2	79.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16-6	3.3		
			198-1	72.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99	82.6		
			193-8	296.5	-	-
			193-9	243.6	-	-
			196	92.6	-	-
			197-1	49.6	-	-
			200	277.7	-	-
			209	35.9	-	-
			219	66.1	-	-
D-4	18,554.2	연지동	216-1	508.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16-9	15.5		
			226	86.0		
			239-2	56.2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39-3	9.9		
			238-5	329.7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238-9	95.8		
			238-17	95.9		
			238-2	82.6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38-3	30.3		
			239-1	19.8		
			193-1	516.9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193-2	468.9		
			231-1	16.5		
			230	180.4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231	135.6		
			229-1	109.1		
			228-1	56.2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28-2	191.7		
			233-2	18.2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234-1	164.7		부정형필지
			234-3	61.8		
			236	69.4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37	102.5		
			222	274.0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건축
			224-2	16.5		
			238-1	204.0	-	-
			240	69.6	-	-
			238-8	57.2	-	-
			136-56	3,560.0	-	-
			136-73	435.5	-	-
			263	5,054.6	-	-
			136-46	2,047.5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136-53	53.8		
			136-57	14.5		
			136-66	2.1		
D-5	3,373.3	연지동	246	146.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47	49.6		
			243-4	82.6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44	69.4		
			248	49.6		
			251-2	122.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52	52.9		
			253	59.5		
			258-9	78.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58-10	72.7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258-4	153.1	-	-
			258-5	109.1	-	-
			258-6	104.4	-	-
			258-7	99.2	-	-
			258-8	79.3	-	-
			258-11	76.0	-	-
			258-18	116.7	-	-
			258-14	148.4	-	-
			258-15	100.2	-	-
			258-16	99.2	-	-
			242	122.6	-	-
			243-1	201.6	-	-
			250	625.1	-	-
			255	227.8	-	-
			254-1	278.6	-	-
			245	49.1	-	-
D-6	1,832.3	효제동	306-2	18.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306-3	33.1		
			315-1	758.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315-6	725.3		
			308	296.9	-	-
F-1	2,757.5	원남동	117-1	238.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18-1	804.9		
			121-1	59.5		
			122-2	77.0		
			122-3	1.7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132-7	1.1		
			126	633.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32-6	0.6		
			130-4	16.5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130-5	6.9		
			130-6	7.3		
			152-1	27.4		
			130-3	69.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135-1	81.0		
			128-1	469.1	공동개발 권장	-
			152-11	24.8		30㎡ 미만 필지
			133-1	111.2	-	-
			122-1	70.1	-	-
			121-2	56.2	-	-
F-2	2,321	원남동	99	95.9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00	128.9		
			97-13	1.7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103	817.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03-1	486.3		
			104-2	39.3		
			105	57.5	공동개발 권장	-
			105-3	35.8		-
			106-1	185.2		부정형토지
			103-3	150.0	-	-
			102	89.3	-	-
			101	98.9	-	-
			98	134.9	-	-
F-3	1,647.6	연건동	302-16	0.7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302-15	30.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302-31	20.5		
		원남동	24-10	465.2		
			24-11	2.6		
			50-8	131.6		
		원남동	24	59.2	공동개발 권장	-
			24-3	0.3		30㎡ 미만 필지
			23-3	3.3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24-7	75.7		-
			24-6	1.3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24-16	34.0		-
			24-17	31.7	-	-
			24-1	78.3	-	-
			25	712.5	-	-
F-4	924.8	연건동	302-8	229.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302-18	65.8		
			302-28	108.1		
			302-29	13.2		
		원남동	51-1	154.7		
			51-3	10.6		
			52-2	103.3	-	-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연건동	302-30	140.8	-	-
			302-17	99.2	-	-
F-5	900.2	연건동	318	116.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319	49.6		
			315	481.7	-	-
			317	252.2	-	-
F-6	744.3	연건동	207-1	6.6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08	129.6		
			203-11	1.3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203-4	5.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09	117.0		
			206	484.5	-	-
F-7	924.1	연건동	264	92.6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64-1	17.9		
			264-2	66.1		
			264-3	6.6		
			273-1	80.0	-	-
			263	109.1	-	-
			233	267.5	-	-
			233-2	284.3	-	-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 효제동, 종로5 · 6가동 일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E-1	1	305.2	효제동 251-1	12.1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53-1	219.9	
			효제동 255-5	3.8	
			효제동 255-6	18.2	
			효제동 255-23	51.2	
	2	194.8	효제동 254	194.8	
	3	224.1	효제동 247-3	162.0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48-1	45.4	
			효제동 249-1	16.7	
	4	145.4	효제동 247-1	82.6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47-2	62.8	
	5	213.5	효제동 245-1	124.3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45-8	9.9	
			효제동 246-1	72.7	
			효제동 246-2	6.6	
	6	183.7	효제동 245-4	92.6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45-5	69.4	
			효제동 245-10	9.9	
			효제동 255-9	11.8	
	7	186.2	효제동 245-6	62.8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45-12	106.4	
			효제동 255-10	14.9	
			효제동 255-21	2.1	
	8	207.9	효제동 245-11	207.9	
	9	177.8	효제동 245-2	177.8	
	10	45.3	효제동 245-13	43.3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45-22	2.0	
	11	146.1	효제동 245-20	146.1	
	12	77.0	효제동 245-21	77.0	
	13	130.9	효제동 245-3	130.9	
	14	94.5	효제동 245-15	94.5	
	15	70.4	효제동 245-17	70.4	
	16	128.9	효제동 244	112.4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45-16	16.5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17	228.1	효제동 243	228.1	
	18	93.3	효제동 240-2	93.3	
	19	225.1	효제동 233-3	92.9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36	132.2	
E-2	1	191.5	효제동 273	191.5	
	2	132.2	효제동 272	132.2	
	3	109.1	효제동 271-1	69.4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271-2	39.7	
	4	92.6	효제동 270	92.6	
	5	163.6	효제동 285	2.3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69	89.3	
			효제동 268-2	72.0	
E-3	1	134.2	효제동 286	1.0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68-1	133.2	
	2	194.7	효제동 267	194.7	
	3	135.9	효제동 267-2	7.6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19-1	128.3	
E-4	1	132.8	효제동 219-4	0.3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65-7	1.3	
			효제동 220	131.2	
	2	435.4	효제동 264	0.3	221, 222-4, 264 공동개발 지정 221, 222-1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222-4	13.6	
			효제동 224	329.6	
			효제동 222-1	91.6	
	3	138.8	효제동 223	79.3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24	59.5	
	4	67.1	효제동 261-2	14.2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26-2	52.9	
	5	98.2	효제동 225	98.2	
	6	227.1	효제동 226-1	90.9	226-1, 260 공동개발 지정 226-1, 227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260	0.7	
			효제동 227	135.5	
	7	480.7	효제동 227-1	152.1	229, 256-1, 227-1 공동개발 지정 228, 229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256-1	156.7	
			효제동 229	92.6	
			효제동 228	76.3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E-5	1	868.0	효제동 231	211.6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232	99.2	
			효제동 233-1	557.2	
	2	188.4	효제동 233-2	188.4	
E-6	1	153.9	효제동 155-10	13.0	155-10, 133-2 공동개발 지정 133-2, 134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133-2	63.9	
			효제동 134	77.0	
	2	1,928.2	효제동 133-3	139.7	133-3, 133-7 공동개발 지정 136, 133-7 공동개발 권장 136, 138 공동개발 권장 136, 137, 143, 160-1, 164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133-7	13.0	
			효제동 136	157.7	
			효제동 138	82.6	
			효제동 137	256.5	
			효제동 143	181.8	
			효제동 160-1	487.8	
			효제동 164	609.1	
	3	115.7	효제동 139	115.7	
	4	109.1	효제동 140	72.7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41	36.4	
	5	128.9	효제동 144	128.9	
	6	231.4	효제동 145	231.4	
	7	317.2	효제동 151	317.2	
	8	211.7	효제동 155	211.7	
E-7	1	911.3	효제동 166-1	89.3	165, 166-1 공동개발 지정 166-1, 167, 171-5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165	62.8	
			효제동 167	544.3	
			효제동 171-5	214.9	
	2	69.4	효제동 215-1	69.4	
	3	89.3	효제동 216	89.3	
	4	52.9	효제동 217	52.9	
	5	191.7	효제동 218	191.7	
	6	99.2	효제동 209	99.2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7	370.2	효제동 211	175.2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12-1	195.0	
	8	92.6	효제동 214	92.6	
	9	165.3	효제동 208	165.3	
	10	128.9	효제동 171-20	128.9	
	11	72.7	효제동 171-7	72.7	
E-8	1	62.8	효제동 206	62.8	
	2	158.7	효제동 207-1	158.7	
	3	184.5	효제동 197-5	146.8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97-15	37.7	
	4	218.2	효제동 204	218.2	
	5	324.6	효제동 197-6	110.1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97-7	135.2	
			효제동 203	79.3	
	6	102.5	효제동 202	102.5	
	7	130.4	효제동 201	99.2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01-1	31.2	
	8	124.6	효제동 200	124.6	
	9	92.9	효제동 199	92.9	
	10	167.9	효제동 198	167.9	
	11	77.7	효제동 197-1	77.7	
	12	67.1	효제동 171-19	67.1	
	13	198.0	효제동 171-30	135.2	171-18, 171-28 공동개발 지정 171-28, 171-30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171-18	10.9	
			효제동 171-28	51.9	
	14	125.7	효제동 171-17	33.1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71-15	92.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15	142.1	효제동 171-16	142.1	
	16	182.2	효제동 197-2	72.1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97-3	110.1	
	17	212.6	효제동 173-11	212.6	
	18	101.2	효제동 173-8	101.2	
	19	120.0	효제동 197-8	120.0	
	20	114.3	효제동 173-12	114.3	
	21	161.6	효제동 173-9	161.6	
E-9	1	254.8	효제동 171-13	254.8	
	2	233.4	효제동 173-7	233.4	
	3	128.9	효제동 174-3	128.9	
	4	1,834.0	효제동 171-10	114.1	171-10, 171-21 공동개발 권장 171-21, 171-22 공동개발 지정 171-22, 171-23 공동개발 권장 171-23, 171-25, 171-12 공동개발 지정 171-12, 173-1, 173-2, 174-6 공동개발 권장 174-6, 174-14 공동개발 지정 174-6, 174-5 공동개발 권장 174-4, 174-5, 174-7, 174-2, 174-4, 175-10 공동개발 권장 174-10, 175-11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71-22	65.5	
			효제동 171-21	2.6	
			효제동 171-12	69.4	
			효제동 171-25	95.5	
			효제동 171-23	26.1	
			효제동 173-2	581.6	
			효제동 173-1	188.2	
			효제동 174-6	73.7	
			효제동 174-14	8.9	
			효제동 174-4	73.7	
			효제동 174-5	45.3	
			효제동 174-7	152.1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효제동 174-8	149.8	
			효제동 174-2	61.8	
			효제동 175-10	92.6	
			효제동 175-11	33.1	
E-10	1	131.7	효제동 194-1	131.7	
	2	92.6	효제동 191	92.6	
	3	418.4	효제동 193-1	198.1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95	137.7	
			효제동 188-1	82.6	
	4	304.1	효제동 193-2	6.6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92	277.7	
			효제동 188-2	19.8	
	5	132.2	효제동 189	69.4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90	62.8	
	6	109.1	효제동 186	109.1	
	7	231.4	효제동 196-4	1.3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97-13	91.9	
			효제동 197-14	91.9	
			효제동 187	46.3	
	8	87.6	효제동 197-10	87.6	
	9	112.1	효제동 197-11	112.1	
	10	145.4	효제동 184	69.4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85	76.0	
	11	205.0	효제동 173-13	205.0	
	12	243.3	효제동 173-14	90.2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73-15	67.1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효제동 176-11	86.0	
	13	86.0	효제동 482	86.0	
	14	168.6	효제동 176-10	109.1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81	59.5	
	15	198.3	효제동 176-12	198.3	
E-11	1	544.7	효제동 176-5	66.1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76-6	112.4	
			효제동 176-3	99.2	
			효제동 176-15	20.1	
			효제동 176-2	66.1	
			효제동 176-4	76.0	
			효제동 176-1	86.0	
			효제동 176-12	18.8	
	2	333.9	효제동 179-1	46.3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79-2	287.6	
	3	207.3	효제동 175-21	207.3	
	4	112.4	효제동 175-19	112.4	
	5	105.8	효제동 175-20	105.8	
	6	208.3	효제동 175-27	112.4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175-26	95.9	
	7	219.1	효제동 174-13	90.2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75-18	128.9	
	8	155.4	효제동 175-25	155.4	
	9	67.4	효제동 174-10	4.6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75-22	62.8	
	10	72.7	효제동 175-12	72.7	
	11	66.1	효제동 175-23	66.1	
	12	76.0	효제동 175-13	76.0	
	13	86.0	효제동 175-24	86.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14	99.2	효제동 175-14	99.2	
	15	123.5	효제동 175-16	110.1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75-15	13.4	
	16	533.1	효제동 175-9	213.9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175-3	95.9	
			효제동 175-1	223.3	
	17	99.2	효제동 175-7	99.2	
	18	170.9	효제동 175-5	170.9	
	19	110.1	효제동 175-4	110.1	
E-12	1	1,014.3	충신동 206-7	156.8	207-12, 188-15, 206-3 공동개발 지정 206-3, 206-7, 206-8, 206-9, 260-10, 214-2 공동개발 권장 206-8, 207-14, 공동개발 지정 213-3, 214-2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206-3	54.3	
			충신동 188-15	55.5	
			충신동 207-12	6.6	
			충신동 206-8	155.4	
			충신동 207-14	23.1	
			충신동 213-3	5.7	
			충신동 214-2	120.7	
			충신동 206-9	148.7	
			충신동 206-10	287.5	
	2	115.7	충신동 206-4	26.4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207-13	89.3	
	3	115.7	충신동 206-5	115.7	
	4	108.7	충신동 214-1	108.7	
	5	245.4	충신동 188-13	169.1	188-13, 188-14 공동개발 권장 188-14, 207-7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88-14	63.1	
			충신동 207-7	13.2	
	6	294.2	충신동 207-8	89.3	공동개발 권장
			충신동 207-9	82.6	
			충신동 207-6	122.3	
	7	95.3	충신동 207-1	95.3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8	155.4	충신동 207-2	155.4	
	9	316.7	충신동 186-7	81.4	186-5, 186-6 공동개발 지정 186-7, 186-8 공동개발 지정 186-6, 186-8 공동개발 권장
			충신동 186-5	30.3	
			충신동 186-6	102.5	
			충신동 186-8	102.5	
	10	170.5	충신동 186-3	86.5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81-5	58.2	
			충신동 181-3	25.8	
	11	91.5	충신동 211-2	91.5	
	12	128.9	충신동 211-1	128.9	
	13	120.5	충신동 210	68.6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209	51.9	
	14	78.8	충신동 208	78.8	
	15	104.7	충신동 211-3	104.7	
E-13	1	141.7	종로6가동 238-29	141.7	
	2	48.8	종로6가동 238-31	48.8	
	3	107.9	종로6가동 238-2	38.2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38-3	24.1	
			종로6가동 238-7	12.9	
			종로6가동 238-4	12.2	
			종로6가동 238-5	13.2	
			종로6가동 238-35	7.3	
	4	84.0	종로6가동 238-32	84.0	
	5	121.7	종로6가동 238-30	121.7	
	6	404.6	종로6가동 238-6	404.6	
	7	122.3	종로6가동 239-13	122.3	
	8	122.3	종로6가동 239-12	122.3	
	9	132.2	종로6가동 239-11	132.2	
	10	108.7	종로6가동 238-16	108.7	
	11	128.6	종로6가동 236-4	128.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12	96.4	종로6가동 236-1	96.4	
	13	103.8	종로6가동 238-17	103.8	
	14	137.9	종로6가동 238-18	137.9	
	15	50.9	종로6가동 238-13	50.9	
	16	89.6	종로6가동 238-11	53.2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38-12	36.4	
	17	130.2	종로6가동 236-2	66.1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38-1	64.1	
	18	85.0	종로6가동 238-25	85.0	
	19	66.4	종로6가동 238-24	66.4	
	20	158.3	종로6가동 238-22	58.5	235-7, 238-20, 239-9, 239-10 공동개발 지정 238-22, 238-21 공동개발 권장
			종로6가동 238-21	51.9	
			종로6가동 238-20	35.0	
			종로6가동 239-9	9.9	
			종로6가동 239-10	2.3	
			종로6가동 235-7	0.7	
E-14	1	181.9	종로6가동 239-20	95.9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39-19	86.0	
	2	119.0	종로6가동 239-21	119.0	
	3	106.8	종로6가동 239-22	106.8	
	4	310.4	종로6가동 239-24	110.1	239-16, 239-17 공동개발 지정 239-17, 239-18 공동개발 권장 239-16, 239-24 공동개발 권장
			종로6가동 239-18	83.6	
			종로6가동 239-17	77.0	
			종로6가동 239-16	39.7	
	5	106.8	종로6가동 239-23	106.8	
	6	314.5	종로6가동 239-25	80.3	공동개발 권장
			종로6가동 239-30	234.2	
	7	81.7	종로6가동 239-26	81.7	
	8	86.0	종로6가동 239-27	86.0	
	9	98.2	종로6가동 239-28	98.2	
	10	132.3	종로6가동 239-29	93.6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40-4	38.7	
E-15	1	66.7	종로6가동 234-4	23.1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34-2	43.6	
	2	134.2	종로6가동 234-3	134.2	
	3	119.2	종로6가동 233-2	119.2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4	150.8	종로6가동 232-1	150.8	
	5	297.2	종로6가동 231-2	66.4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33-3	58.9	
			종로6가동 230	171.9	
	6	92.6	종로6가동 235-3	39.7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35-2	52.9	
	7	74.4	종로6가동 215-18	74.4	
	8	50.7	종로6가동 215-48	50.7	
	9	163.8	종로6가동 215-19	160.5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15-46	3.3	
	10	83.3	종로6가동 215-17	83.3	
	11	156.7	종로6가동 215-16	155.0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15-31	1.7	
	12	235.1	종로6가동 215-23	235.1	
	13	163.1	종로6가동 215-56	163.1	
	14	296.8	종로6가동 215-34	3.6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15-59	17.9	
			종로6가동 215-24	164.3	
			종로6가동 215-25	67.1	
			종로6가동 215-37	9.9	
			종로6가동 215-55	64.0	
	15	176.9	종로6가동 215-22	176.9	
	16	95.9	종로6가동 229	95.9	
E-16	1	82.6	종로6가동 228-14	82.6	
	2	158.6	종로6가동 228-10	158.6	
	3	69.4	종로6가동 228-11	69.4	
	4	69.4	종로6가동 228-9	69.4	
	5	142.1	종로6가동 228-8	142.1	
	6	198.3	종로6가동 228-5	76.0	228-5, 228-6 공동개발 권장 227, 228-5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27	46.3	
			종로6가동 228-6	76.0	
	7	109.1	종로6가동 228-7	109.1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8	223.1	종로6가동 226	223.1	
	9	81.6	종로6가동 225	81.6	
	10	84.0	종로6가동 241-1	84.0	
	11	180.5	종로6가동 241-2	180.5	
	12	89.3	종로6가동 241-4	89.3	
	13	87.6	종로6가동 240-1	13.9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41-5	73.7	
	14	396.5	종로6가동 239-6	46.3	239-6, 228-18 공동개발 지정 228-18, 240-3 공동개발 권장
			종로6가동 240-3	254.3	
			종로6가동 228-18	95.9	
	15	393.0	종로6가동 228-15	79.3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28-16	69.4	
			종로6가동 228-17	72.7	
			종로6가동 239-5	57.2	
			종로6가동 239-4	53.9	
			종로6가동 239-3	60.5	
	16	174.5	종로6가동 235-5	59.5	239-1, 235-6 공동개발 지정 235-5, 235-6 공동개발 권장 239-1, 239-2 공동개발 권장
			종로6가동 235-6	32.4	
			종로6가동 239-1	16.5	
			종로6가동 239-2	66.1	
	17	82.6	종로6가동 228-13	82.6	
E-17	1	1,262.2	종로6가동 239-34	207.3	239-41, 239-43, 239-44 공동개발 지정 239-34, 239-36, 239-39, 239-41, 239-42 공동개발 권장
			종로6가동 239-36	465.5	
			종로6가동 239-39	289.6	
			종로6가동 239-41	128.9	
			종로6가동 239-44	46.3	
			종로6가동 239-42	71.7	
			종로6가동 239-43	52.9	
	2	200.7	종로6가동 240-8	200.7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3	176.3	종로6가동 241-9	49.6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41-8	80.3	
			종로6가동 241-7	44.7	
			종로6가동 219-1	1.7	
	4	123.0	종로6가동 240-7	86.0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40-6	34.0	
			종로6가동 241-10	3.0	
	5	2,105.7	종로6가동 242-1	2,092.5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42-2	13.2	
E-18	1	381.3	종로6가동 210-39	8.8	210-39, 201-10 공동개발 지정 210-10, 210-11 공동개발 권장 210-11, 212-1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10-10	98.5	
			종로6가동 210-11	132.2	
			종로6가동 212-1	141.8	
	2	1,255.8	종로6가동 210-1	1,255.8	
	3	300.5	종로6가동 213-2	300.5	
	4	115.7	종로6가동 193-2	115.7	
	5	136.4	종로6가동 214-2	136.4	
	6	59.8	종로6가동 214-3	59.8	
	7	65.5	종로6가동 215-52	65.5	
	8	920.0	종로6가동 193-5	82.6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193-4	56.2	
			종로6가동 194-6	89.3	
			종로6가동 194-10	99.2	
			종로6가동 189	549.7	
			종로6가동 187	43.0	
	9	52.9	종로6가동 194-5	52.9	
	10	62.8	종로6가동 194-4	62.8	
	11	367.6	종로6가동 210-24	2.6	210-24, 210-2, 197, 197-7 공동개발 지정 197-7, 197-6 공동개발 권장 197-6, 197-5, 197-22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10-2	24.1	
			종로6가동 197	54.8	
			종로6가동 197-7	131.6	
			종로6가동 197-6	99.2	
			종로6가동 197-5	53.6	
			종로6가동 197-22	1.7	
	12	153.1	종로6가동 197-8	153.1	
E-19	1	146.5	종로6가동 197-10	146.5	
	2	1,059.8	종로6가동 197-9	106.1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197-30	187.4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종로6가동 195-2	766.3	
	3	102.5	종로6가동 194-7	102.5	
	4	119.0	종로6가동 194-8	119.0	
	5	79.3	종로6가동 195-5	79.3	
	6	241.0	종로6가동 196	241.0	
	7	436.4	종로6가동 185	436.4	
	8	228.1	종로6가동 182-1	228.1	
	9	185.1	종로6가동 179-1	185.1	
	10	177.6	종로6가동 178-1	29.8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172-2	147.8	
	11	148.4	종로6가동 173	148.4	
	12	128.9	종로6가동 171	128.9	
	13	82.6	종로6가동 184	76.0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185-1	6.6	
	14	351.6	종로6가동 185-2	2.3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168-3	83.3	
			종로6가동 168-2	62.1	
			종로6가동 169-2	203.9	
	15	49.6	종로6가동 170	49.6	
	16	92.6	종로6가동 185-3	92.6	
	17	132.9	종로6가동 166-2	132.9	
E-20	1	91.0	종로6가동 163	52.9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164	38.1	
	2	60.4	종로6가동 161	60.4	
	3	128.9	종로6가동 162	59.5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159-1	52.9	
			종로6가동 159-2	16.5	
	4	50.6	종로6가동 160-1	50.6	
	5	233.7	종로6가동 157	233.7	
	6	274.5	종로6가동 155-1	274.5	
	7	134.6	종로6가동 148-1	14.2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146-1	119.4	
			종로6가동 145-2	1.0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 가구 및 획지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사유
-	○공동개발 지정에 따른 제약을 최소화하고 자율적 공동개발 등 유연한 개발 유도를 위하여 공동개발 계획 변경

2. 건축물 용도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변경)

1) 불허용도 결정(기정)조서

구 분	불허용도	비 고
전구간 (간선부 ·이면부)	•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과 무도학원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미관지구내 불허용도(해당구역) • 교육환경보호구역 준용(해당구역)	-

2)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구 분	불허용도	비 고
전구간 (간선부 ·이면부)	•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과 무도학원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교육환경보호구역 준용(해당구역)	-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3) 불허용도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사유
-	○ 미관지구 해제에 따른 불허용도 변경

나. 건축물의 권장용도 결정(변경)

1) 권장용도 결정(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권장용도(전층)
간선부	종묘블록	UA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창경궁로 새터길 충효길	UB	•공동주택(주거복합)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사무소, 오피스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
	대학로 율곡로	UC	•공동주택(주거복합)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사무소, 오피스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
이면부	종묘블록	UD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서울보증보험 충신시장 기독교회관 효제초교	UE	•공장 중 아파트형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
	대학천 복개로변	UF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
	율곡로 북측	UG	-

2) 권장용도 결정(변경)조서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일대(변경)

구 분	권장용도
간선부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연구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이면부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특화가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1층에 한함)
종묘블록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율곡로 북측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중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관련업종

※ 효제동, 종로5·6가동 일대 적용 제외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 효제동, 종로5 · 6가동 일대(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권장용도(전층)
간선부	충효길	UB	•공동주택(주거복합)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사무소, 오피스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
	대학로 율곡로	UC	•공동주택(주거복합)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사무소, 오피스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
이면부	충신시장 효제초교	UE	•공장 중 아파트형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
	대학천 복개로변	UF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3) 권장용도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사유
-	○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주거용도에 대한 권장용도 계획 삭제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계획 변경

3. 건축물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건폐율 결정(변경없음)

1) 건축물의 건폐율 결정조서

구 분	건폐율	비 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4조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일반상업지역	60%	

※ 2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4조의 규정을 우선 적용함.

나. 건축물의 용적률 결정(변경)

1) 건축물의 용적률 결정(기정)조서

구 분	용적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간선부	400% 이하	600% 이하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1.0 × α현금,건축물)} 이내	-
이면부	400% 이하	500% 이하		
종묘인근 블록	300% 이하	400% 이하		
율곡로 북측 이면부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250% 이하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합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1.0 × α현금,건축물)} 이내
[α :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
※ 공동주택(주거복합)을 건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의 비율에 의해 산출된 용적률을 적용함.
※ 2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규정을 우선 적용함.

2) 건축물의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일대(변경)

구 분		용적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600% 이하	66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이면부	500% 이하	5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275% 이하		

※ 효제동, 종로5·6가동 일대 적용 제외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 효제동, 종로5 · 6가동 일대(변경없음)

구 분	용적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간선부	400% 이하	600% 이하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1.0 × α현금,건축물)} 이내	-
이면부	400% 이하	500% 이하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합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1.0 × α현금,건축물)} 이내
[α :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
※ 공동주택(주거복합)을 건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의 비율에 의해 산출된 용적률을 적용함.
※ 2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규정을 우선 적용함.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3) 용적률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사유
-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24.4.)에 따라 정합성 유지를 위해 변경

다.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

1) 건축물의 높이 결정(기정)조서

구 분	적용지역	높이계획	비 고
최고높이	H-1 (충효길 및 새터길 남측 블록)	최고높이 70m 이하	•문화재 앙각규제 적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적용
	H-2 (충효길 및 새터길 남측 블록)	최고높이 50m 이하	
	H-3 (종묘인근 및 율곡로 북측 블록)	최고높이 30m 이하	

2)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조서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일대(변경)

구 분	적용지역	높이계획	비 고
최고높이	H-1 (김상옥로 남측)	기준높이 70m + α	•문화재 앙각규제 적용 •α는 높이완화 인센티브 계획에 따라 산정 - α : 최대20m
	H-2 (김상옥로 및 율곡로 북측, 창경궁로 블록, 종묘인근 블록)	기준높이 50m + α	
	H-3 (종묘인근 블록)	기준높이 30m	

※ 서울도심기본계획의 높이기준을 따름
※ 높이완화의 경우 종묘에서 건축물이 조망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심의를 통해 결정
※ 효제동, 종로5·6가동 일대 적용 제외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 효제동, 종로5 · 6가동 일대(변경없음)

구 분	적용지역	높이계획	비 고
최고높이	H-1 (충효길 남측 블록)	최고높이 70m 이하	•문화재 앙각규제 적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적용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3) 높이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사유
-	○ 서울도심기본계획(2023) 수립에 따라 정합성 유지를 위해 최고높이를 기준높이로 변경

4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배치 결정(변경)

1) 건축물의 배치 결정(기정)조서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 고
건축한계선	대학로, 율곡로, 창경궁로변	• 도로경계선에서 3m	-
	새터길, 충효길변	• 도로경계선에서 2m	-
	지구내 이면도로변	• 도로중심선에서 2~3m 후퇴	-
	효제동 21-3 특별계획구역	• 대학로변 3m	-
		• 남측 이면도로변 5~6m	-
벽면한계선	효제동 21-3 특별계획구역	• 남측 이면도로변, 대학로변 일부 지정	2층이하 적용

2) 건축물의 배치 결정(변경)조서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일대(변경)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 고
건축한계선	대학로, 율곡로, 창경궁로변	• 도로경계선에서 3m	-
	김상옥로변	• 도로경계선에서 2m	-
	지구내 이면도로변	• 도로중심선에서 2~3m	-
	효제동 21-3 특별계획구역	• 대학로변 3m	-
		• 남측 이면도로변 5~6m	-
	옛길, 물길	• 옛길 : 도로중심선에서 4m • 물길 : 도로중심선에서 6m	-
벽면한계선	효제동 21-3 특별계획구역	• 남측 이면도로변, 대학로변 일부 지정	2층이하 적용

※ 효제동, 종로5·6가동 일대 적용 제외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 효제동, 종로5 · 6가동 일대(변경없음)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 고
건축 한계선	대학로, 율곡로	• 도로경계선에서 3m	-
	충효길변	• 도로경계선에서 2m	-
	지구내 이면도로변	• 도로중심선에서 2~3m 후퇴	-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3) 배치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사유
-	○ 옛길, 물길변 역사적 도시조직 보전 및 관리를 위해 건축한계선 설정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①	효제동 21-3번지 특별계획구역	효제동 21-3번지 일대	3,247.5	-	3,247.5	-

나. 효제동 21-3번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 분				내 용	비 고
위치				• 효제동 21-3번지 일대	
면적				• 3,247.5㎡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일반상업지역	
가구 및 획지계획				• B-22(A1)	
건축물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 용도	전층	• 일반상업지역 내 불허용도 •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과 무도학원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상대보호구역 내 불허용도	-
		권장 용도	전층	• 공동주택(주거복합)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사무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	기존 지침 준수, 오피스텔 제외, 재정비(안)에 따름
	밀도	건폐율		• 60%	-
		용적률		•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400% / 600% 이하 • 상한용적률: 허용용적률×(1+1.3×가중치× α토지+ 0.7 × α건축물) ※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 부지 용적률/사업부지 용적률 ※ α토지 : 공공시설 제공 토지면적/공공시설(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α건축물 : 공공시설 제공 건축물 환산부지면적 / 공공시설(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주거복합 신축시 도시계획조례 제48조 주거비율 준수	-
		높이		• 최고높이 50m 이하(옥탑 등 부속시설 제외 50m 이하)	2015 역사도심

구 분			내 용	비 고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준수, 앙각규제 준수	기본계획 높이 준수
	배치	건축선	• 대학로변 : 건축한계선 3m • 남측 이면도로변 : 건축한계선 5~6m	-
		벽면한계선	• 이면부 및 간선부 일부 지정	지침도 참조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대지 내공지	보도형공지	• 대학로 건축한계선 및 벽면한계선 후퇴부 보도형 공지 조성 • 이면부 건축한계선 후퇴부 일부 보도형 공지 조성	지침도 참조
		차도형공지	• 이면부 건축한계선 일부 및 벽면한계선 후퇴부 차도형 공지 조성	
	차량진출입금지구간		• 대학로변 차량 진출입금지구간 지정	-

다. 효제동 21-3번지 특별계획구역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항 목	내 용			완화기준	비 고
공동 개발	공동 개발 (지정/권장)	간선부	준수시	기준용적률×0.5α	• 2필지 : α=0.1 • 3,4필지 : α=0.15 • 5필지이상 : α=0.2
		이면부	준수시	기준용적률×0.5α	• 2필지 : α=0.1 • 3,4필지 : α=0.15 • 5필지이상 : α=0.2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1	• 전층권장용도는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에 50%이상시 인정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위치준수	기준용적률×0.1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 피로티구조: α=0.5 / 개방형구조: α=1.0
	쌈지형, 침상형 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α	• 피로티구조: α=0.5 / 침상형공지: α=0.8 / 개방형 구조: α=1.0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	• 건축선 후퇴부분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선보다 추가하여 건축한계선을 후퇴한 경우 제공
	벽면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x0.8	

항 목	내 용		완화기준		비 고
대지내 통로	보행통로	공공보행 통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α		• 피로티구조: α=0.5 / 개방형구조: α=1.0
건축물 형태	개방형 입면	준수시	기준용적률×0.1		• 1층 전면부 투시형 처리 70% 이상 계획 시
친환경 인센티브	녹색건축인증		최우수(그린1등급) :기준용적률×0.12 우수(그린2등급) :기준용적률×0.08 우량(그린3등급) :기준용적률×0.04	세기준 모두 1등급 만족시 :기준용적률×0.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준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의무 대상 준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에너지 효율 1등급 :기준용적률×0.08 에너지 효율 2등급 :기준용적률×0.06 에너지 효율 3등급 :기준용적률×0.04		

항 목	내 용	완화기준	비 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신재생에너지 1등급 :기준용적률×0.12 신재생에너지 2등급 :기준용적률×0.10 신재생에너지 3등급 :기준용적률×0.08 신재생에너지 4등급 :기준용적률×0.06 신재생에너지 5등급 :기준용적률×0.04	•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준용
	중수도 시설설치	기준용적률×0.04	• 총 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 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 시설설치	기준용적률×0.04	• 빗물 저류 · 이용시설 용량(ton)및 빗물침투시설 •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 ×0.05또는 대지면적 ×0.02이상이 되도록 설치
	옥상녹화	기준용적률×(녹화면적 /대지면적)×0.1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자연지반 보존	기준용적률×(보존면적 /대지면적)×0.2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 주차장	기준용적률×(설치면적 /대지면적)×0.2	• 기준용적률×0.05이내
	저공해자동차	기준용적률x0.08	• [비주거 : 연면적 1만㎡이상] :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전체 주차면수의 1%이상 전기차충전기 설치시
건물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제공시	기준용적률×0.2	• 구분 지상권 제공시 공공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2. 동일사유로 인하여 용적률 완화, 건폐율 완화, 높이 완화는 중복적용 할 수 없다.
3. 건축법 제 46조1항 소요너비 미달도로의 건축선 후퇴부분 및 같은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지정 고시한 건축선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시 제외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선보다 추가하여 건축선을 후퇴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한다.
4. 그 밖의 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지침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을 따른다.

6. 인센티브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건폐율 완화계획 결정(변경)

1)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기정)조서

구 분	적용기준	지침내용	비 고
구역 전체	•20m(5층)이하 건축물 신축시	•20m(5층)이하 건축물 신축 시 - 공공시설 제공 및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제공 시 → 완화건폐율= 당해용도지역건폐율 ×(1+제공하는면적/당초 대지면적)	• 80% 이내

2)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변경)조서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일대(변경)

구 분	적용기준	지침내용	비 고
종묘블럭, 율곡로 북측(일반상업지역), 옛길, 물길변	•20m(5층)이하 건축물 신축시	• 80% 이하(20p% 범위 내 완화)	•최소개발규모 미달필지 제외 •250㎡미만 개발에 한함
구역 전체	•공공시설부지 제공시	• 80% 이하(20p% 범위 내 완화) • 완화건폐율 = 당해 용도지역 건폐율(높이관련 완화 건폐율 적용×(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 대지면적)	•간선부 70% 이하

※ 공공시설 부지 제공시 용적률 완화 및 높이 완화와 중복 적용 하지 않음.
※ 효제동, 종로5·6가동 일대 적용 제외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 효제동, 종로5 · 6가동 일대(변경없음)

구 분	적용기준	지침내용	비 고
구역 전체	•20m(5층)이하 건축물 신축시	•20m(5층)이하 건축물 신축시 - 공공시설 제공 및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제공시 → 완화건폐율= 당해용도지역건폐율 ×(1+제공하는면적/당초 대지면적)	• 80%이내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3) 건폐율 완화 변경사유서

구분	변 경 사 유
-	○ 저층 개발 유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개발효율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와 연계한 완화 기준 마련 ○ 구역 전체의 효율적 개발 유도를 위하여 공공시설 기부채납과 연계한 완화 기준 마련

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계획 결정(변경)

1)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계획 결정(기정)조서

항 목				완화기준	비 고
용적률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권장)	간선부 준수시	기준용적률×0.5α	•2필지 : α=0.1 •3,4필지 : α=0.15 •5필지이상 : α=0.2
			이면부 준수시	기준용적률×0.5α	•2필지 : α=0.2 •3,4필지 : α=0.3 •5필지이상 : α=0.4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1	•전층권장용도는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에 50% 이상시 인정
			1층 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해당층바닥면적)×0.1	•1층권장 용도는 1층 바닥연면적의 70%이상시 인정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위치준수	기준용적률×0.1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피로티구조 : α=0.5 •개방형구조 : α=1.0
		쌈지형, 침상형 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α	•피로티구조 : α=0.5 •침상형공지 : α=0.8 •개방형구조 : α=1.0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α	•피로티구조 : α=0.5 •개방형구조 : α=1.2
	대지내통로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피로티구조 : α=0.5 •개방형구조 : α=1.0
	환경친화적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2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1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하고 법정 조경면적 제외
		중수도 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 제외
		빗물이용 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 설치
		녹색주차장/투수성포장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0.05	
		신재생 에너지 사용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 이상을 부담
		에너지 절약 계획	준수시	기준용적률×α	•1등급 : α=0.08 •2등급 : α=0.05 ※ 서울시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너지저감율,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건물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제공시	기준용적률×0.2	•구분지상권 제공시 공공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2. 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3.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및 건축법 제 46조 소요너비 미달도로의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시 제외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선보다 추가하여 건축선을 후퇴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한다.
4. 동일사유로 인하여 용적률 완화, 건폐율 완화, 높이 완화는 중복적용 할 수 없다.
5. 용적률 완화 범위의 최소 20%는 환경친화적 건축물 계획요소의 사용시에만 제공된다.
6. 에너지 절약계획 등급은 다음표와 같다.
7.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1조 권장용도 지침준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건축물 대장에 해당용도를 표시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구 분	에너지 절감율 1)	에너지 성능지표 2)	친환경 건축물 인증 3)
1등급	33.5% 이상	81점 이상	85점 이상
2등급	23.5~33.5% 미만	74~81점 미만	75~85점 미만

주) 1. '건축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 에 의함
2. '건축물에너지 설계기준' 에 의함
3.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 에 의함

2)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계획 결정(변경)조서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일대(변경)

구 분	항 목	세부기준	비 고
공통사항	역사문화건축 활성화	건축물 전체 또는 5층 이하 건축물의 구조를 목조로 적용하거나 목재를 사용하여 입면을 특화한 경우	20%
	저영향개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 건축물:빗물분담량 기준의 1.2배 이상 설치 /그 외: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빗물분담량 기준 준수	20%

구 분	항 목	세부기준	비 고
간선부	지역특화용도	권장용도를 건축연면적의 50% 이상 설치하는 경우	20%
	개방형공간 조성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대지면적의 20% 이상 조성하는 경우	20%
	실내형 공지 조성	건축물 내부에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대지면적의 30% 이상 조성하는 경우	10%
	입체녹지 조성	입체녹지 공간 대지면적의 50% 이상 조성하는 경우	10%
	전선지중화	지상 전주, 전선 등을 지중화 또는 가로지장물을 대지 내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20%
	역사문화증진	자연재료사용 및 역사문화 경관 권장색채를 적용하는 경우(「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2008) 참조」	10%
	소계 (허용용적률 인센트브량의 1.5배 적용)		90%
이면부	지역특화용도	권장용도를 건축연면적의 20% 이상 설치하는 경우	20%
	개방형공간 조성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대지면적의 20% 이상 조성	10%
	실내형 공지 조성	건축물 내부에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대지면적의 30% 이상 조성하는 경우	10%
	입체녹지 조성	입체녹지 공간 대지면적의 50% 이상 조성하는 경우	10%
	역사문화증진	자연재료사용 및 역사문화 경관 권장색채를 적용하는 경우(「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2008) 참조」	10%
	건축협정(공동개발)	인접한 30㎡ 미만 필지와 건축협정 또는 공동개발을 통해 통합개발하는 경우	10%
	소계 (허용용적률 인센트브량의 1.4배 적용)		70%
특화거리	지역특화용도	1층부 전체를 권장용도로 설치하는 경우	20%
	역사문화증진	자연재료사용 및 역사문화 경관 권장색채를 적용하는 경우(「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2008) 참조」	20%
	가로특화	가로환경개선(안)에서 제시하는 바닥포장 특성화 및 투수성 포장 조성하는 경우	10%
	개방형공간 조성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대지면적의 20% 이상 조성	10%
	건축협정(공동개발)	인접한 30㎡ 미만 필지와 건축협정 또는 공동개발을 통해 통합개발하는 경우	10%

구 분	항 목	세부기준	비 고
	소계 (허용용적률 인센트브량의 1.4배 적용)		70%
율곡로 북측	지역특화용도	권장용도를 건축연면적의 20% 이상 설치하는 경우	20%
	개방형공간 조성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대지면적의 20% 이상 조성하는 경우	20%
	실내형 공지 조성	건축물 내부에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대지면적의 30% 이상 조성하는 경우	10%
	가로특화	가로환경개선(안)에서 제시하는 바닥포장 특성화 및 투수성 포장 조성하는 경우	10%
	소계 (허용용적률 인센트브량의 1~2배 적용)		60%

※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상한용적률 인센티브와 중복 적용 불가능
※ 공공공간 확보 및 지역특화용도 도입의 경우 높이 인센티브와 중복 적용 불가능
※ 건축협정(공동개발)의 경우 재정비 결정고시 이후 분할된 필지에 대하여는 적용 제외
※ 효제동, 종로5·6가동 일대 적용 제외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 효제동, 종로5·6가동 일대(변경없음)

항 목					완화기준	비 고
용적률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권장)	간선부	준수시	기준용적률×0.5α	•2필지 : α=0.1 •3,4필지 : α=0.15 •5필지이상 : α=0.2
			이면부	준수시	기준용적률×0.5α	•2필지 : α=0.2 •3,4필지 : α=0.3 •5필지이상 : α=0.4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1	•전층권장용도는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에 50%이상 시 인정
				1층 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해당층바닥면적)×0.1	•1층권장 용도는 1층 바닥연면적의 70%이상시 인정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위치준수	기준용적률×0.1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피로티구조 : α=0.5 •개방형구조 : α=1.0
		쌈지형, 침상형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α	•피로티구조 : α=0.5 •침상형공지 : α=0.8 •개방형구조 : α=1.0
		건축 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α	•피로티구조 : α=0.5 •개방형구조 : α=1.2
	대지내 통로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피로티구조 : α=0.5 •개방형구조 : α=1.0
	환경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2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1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하고 법정 조경면적 제외
		중수도 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 제외
		빗물이용 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 설치
		녹색주차장/투수성포장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0.05	
		신재생에너지 사용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 이상을 부담
		에너지		준수시	기준용적률×α	•1등급 : α=0.08

항 목			완화기준	비 고
	절약 계획			•2등급 : α=0.05 ※ 서울시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너지저감율,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건물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제공시	기준용적률×0.2	•구분지상권 제공시 공공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2. 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3.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및 건축법 제 46조 소요너비 미달도로의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시 제외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선보다 추가하여 건축선을 후퇴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한다.
4. 동일사유로 인하여 용적률 완화, 건폐율 완화, 높이 완화는 중복적용 할 수 없다.
5. 용적률 완화 범위의 최소 20%는 환경친화적 건축물 계획요소의 사용시에만 제공된다.
6. 에너지 절약계획 등급은 다음표와 같다.
7.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1조 권장용도 지침준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건축물 대장에 해당용도를 표시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구 분	에너지 절감율 1)	에너지 성능지표 2)	친환경 건축물 인증 3)
1등급	33.5% 이상	81점 이상	85점 이상
2등급	23.5~33.5% 미만	74~81점 미만	75~85점 미만

주) 1. '건축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 에 의함
2. '건축물에너지 설계기준' 에 의함
3.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 에 의함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3)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사유
-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24.4)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변경

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계획 결정(변경)

1) 상한용적률 인센티브계획 결정(기정)조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 상한용적률 산축식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 이내
※ 가중치란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용적률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 비율
※ α란 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2) 상한용적률 인센티브계획 결정(변경)조서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일대(변경)

계획요소	완화조건	완화내용	비 고
공공시설 등 제공	기부채납시	허용용적률 + 조례용적률 × (1.3×가중치×α토지+1.0×α건축물) 이내	•건축물(공공주차장 등) 기부채납 시 1개층 이상 설치 의무
건물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지하철출입구등 건물 또는 대지내 설치시	- 대지에 설치할 경우 허용용적률 + 조례용적률 ×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 건폐면적 / 대지면적) 이내 - 건물에 설치할 경우 허용용적률 + 조례용적률 ×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 연면적 / 건물연면적) 이내	-
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면적 초과 설치 시	허용용적률 + 조례용적률 × {(공개공지등 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조례용적률의 1.2배 이내 ※허용용적률인센티브와 중복적용 불가
친환경 건축물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 인증시	허용용적률 + 조례용적률 × Σ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ß)	• 정비사업, 역세권사업 등 별도의 용적률 상향 및 공공기여 방안(기준)을 갖고 있는 사업은 해당 계획기준 준용
관광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허용용적률 + 조례용적률 × 완화비율	• 조례용적률의 1.2배 이내 •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비율 결정

주1)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경우 상한용적률로 적용 가능
주2)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와 중복 적용 불가능
※ 효제동, 종로5·6가동 일대 적용 제외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 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ß)

※ ①~③ 항목 중복 적용시 완화비율은 최대 15% 적용 ((Σ①~③) ≥ 15% -> 15% 적용)

①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

구분	ZEB1	ZEB2	ZEB3	ZEB4	ZEB5	에너지효율1++	에너지효율1+
완화비율	15%	14%	13%	12%	11%	6%	3%

② 녹색건축 인증

녹색건축인증	최대완화비율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6%
녹색건축 우수 등급	3%

③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15%이상	20%이상	25%이상
완화비율	5%	10%	15%

④ 장수명주택인증(조례 개정 후 시행)

장수명주택 인증등급	최우수	우수
완화비율	15%	10%

□ 효제동, 종로5·6가동 일대(변경없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 상한용적률 산축식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 이내
※ 가중치란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용적률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 비율
※ α란 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3)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사유
-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24.4)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변경

라. 높이 완화 인센티브계획 결정(변경)

1) 높이 완화 인센티브(기정)조서

구분	완화기준	비고
기준높이 완화	• 건축한계선 후퇴를 통한 전면공지 조성시에는 건축물의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산정식 적용시 전면도로의 넓이는 반대쪽 건축한계선 후퇴선까지의 거리로 완화 적용	

2) 높이 완화 인센티브(변경)조서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일대(변경)

계획요소	완화조건	완화내용	비 고
녹지 등 공공공간 확보	대지면적의 15%초과 확보시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기준높이 × [(설치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α	개방형 α : 1.0 침상형 α : 0.8 필로티형 α : 0.5
경제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용도 도입	지역특화용도 도입시	기준높이 × (권장용도면적/주차장제외 건축연면적) × 0.3	블록별 권장용도계획 참조
주차장 개방	부설주차장 개방시	기준높이 × (개방주차장 대수/부설주차장 대수) × 1.0 ※제공 후 구에서 관리(주차관리과)	인근 거주민들에 개방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요금 기준을 따름)
가로활성화	공공보행통로 설치시	기준높이 × (설치면적/대지면적) × 1.0	구분지상권 설정 필요
유니버셜 디자인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BF인증)을 인증하는 경우	기준높이 × 0.1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인증
범죄예방디자인 (CEPTED)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시	기준높이 × 0.1	구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 의무면적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름
※ 높이완화는 최대 20m 범위내에서 가능(종묘에서 건축물이 조망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심의를 통해 결정)
※ 공공공간 확보 및 지역특화용도 도입의 경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와 중복 적용 불가능
※ 효제동, 종로5·6가동 일대 적용 제외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 효제동, 종로5·6가동 일대(변경없음)

구분	완화기준	비고
기준높이 완화	• 건축한계선 후퇴를 통한 전면공지 조성시에는 건축물의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산정식 적용시 전면도로의 넓이는 반대쪽 건축한계선 후퇴선까지의 거리로 완화 적용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3) 높이 완화 인센티브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사유
-	○ 서울도심기본계획(2023) 수립에 따라 정합성 유지를 위해 개발사업시 지역 내 필요시설 등을 유도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등(변경없음)

제어요소	적용구간	제어내용
전면공지	간선변 건축한계선	전면공지로 조성
	이면부 건축한계선	전면공지로 조성
공개공지	간선도로 가각부	공개공지 조성시 위치를 지정
공공보행통로	보행연결필요구간	폭4m 이상으로 조성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결정(변경)

1)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결정(기정)조서

제어요소	계획내용
차량출입금지구간	• 주요 간선부 차량출입 원칙적 불허
제한적 차량출입금지구간	• 주요간선부 중 이면도로 차량접근이 불가한 필지
공공보행통로	• 대규모 블록에 공공보행통로 지정
보행자 우선도로	• 보행중심의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2)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결정(변경)조서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일대(변경)

제어요소	계획내용
차량출입금지구간	• 주요 간선부 차량출입 원칙적 불허
제한적 차량출입금지구간	• 주요간선부 중 이면도로 차량접근이 불가한 필지
공공주차장	• 2,000㎡이상 규모있는 개발 시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차장 설치 ※ 주차장 제공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공공보행통로	• 대규모 블록에 공공보행통로 지정
보행자 우선도로	• 보행중심의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 효제동, 종로5·6가동 일대 적용 제외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 효제동, 종로5·6가동 일대(변경없음)

제어요소	계획내용
차량출입금지구간	• 주요 간선부 차량출입 원칙적 불허
제한적 차량출입금지구간	• 주요간선부 중 이면도로 차량접근이 불가한 필지
공공보행통로	• 대규모 블록에 공공보행통로 지정
보행자 우선도로	• 보행중심의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3)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사유
공공주차장	○ 주차장이 부족한 도심(상업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주차장 설치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준 마련

다. 특화가로 색채 및 가로환경개선계획 결정(신설)

1) 특화가로 색채 및 가로환경개선계획 결정조서

제어요소	계획내용
재료 색채	•자연재료사용(벽돌, 전돌, 목재 등) 및 “서울색정립 및 체계화(2008)” 역사문화 경관 권장 색재 적용
개방형 입면	•옛길, 물길 변으로 1층 점포의 주출입구조성(반사유리등 반사성재료 사용금지)
가로 환경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옥류천물길 등) •흥덕동천은 단계적 복원 추진(단기적으로 지상부실개천 조성) •흔적 또는 바닥포장특성화 및 투수성포장
가로 시설물	•안내판 설치 및 탐방로 조성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통합주차장설치지원

※ 효제동, 종로5·6가동 일대 적용 제외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2) 특화가로 색채 및 가로환경개선계획 결정사유서

구 분	결정사유
-	○ 종묘주변, 옛길, 물길 등 역사문화자산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기준마련

2.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구 분	경미한 사항	구청장권한 구도시계획위원회
법률에서 정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용도지구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
	2. 가구(영 제42조의3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이내의 변경인 경우	○
	3. 획지면적의 변경(신설, 폐지를 포함한다.)	○
	4.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층수변경은 제외한다)	○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
	6. 건축선(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 등을 포함한다)의 변경 또는 신설, 폐지의 경우	○
	7.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권자를 시장으로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9.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의 세분 또는 변경은 제외한다)	○
	10.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친환경 에너지 상한용적률에 한정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
	11.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신설, 폐지를 포함한다)과 그 위치변경에 따른 차량출입 불허구간의 변경	○
	12.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
	13.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
	14.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
	15.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
	16.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
	17.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
	18.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19. 공개공지, 보행전용통로, 보차혼용로등 대지내공지 위치 변경(신설, 폐지를 포함한다.)	○
	20. 건축물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의 변경(다만,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허용용도 및 불허용도는 제외한다)	○
	21.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9 제2호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계획시설, 시장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하여 입안하는 도시계획시설,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도시계획시설은 제외하며, 시장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내 자치구로 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경우와 제2호에 따라 사전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	1. 대지의 분할, 교환에 관한 사항, 공개공지 등 대지 내 공지의 조성방법에 관한 사항, 수종, 조경시설물의 설치계획의 변경	○
	2.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에 관한 사항	○
	3. 최대개발규모 범위내에서 2,000㎡ 이상 개발	○
	4. 최소개발규모 미만의 개발	○
	5.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계획의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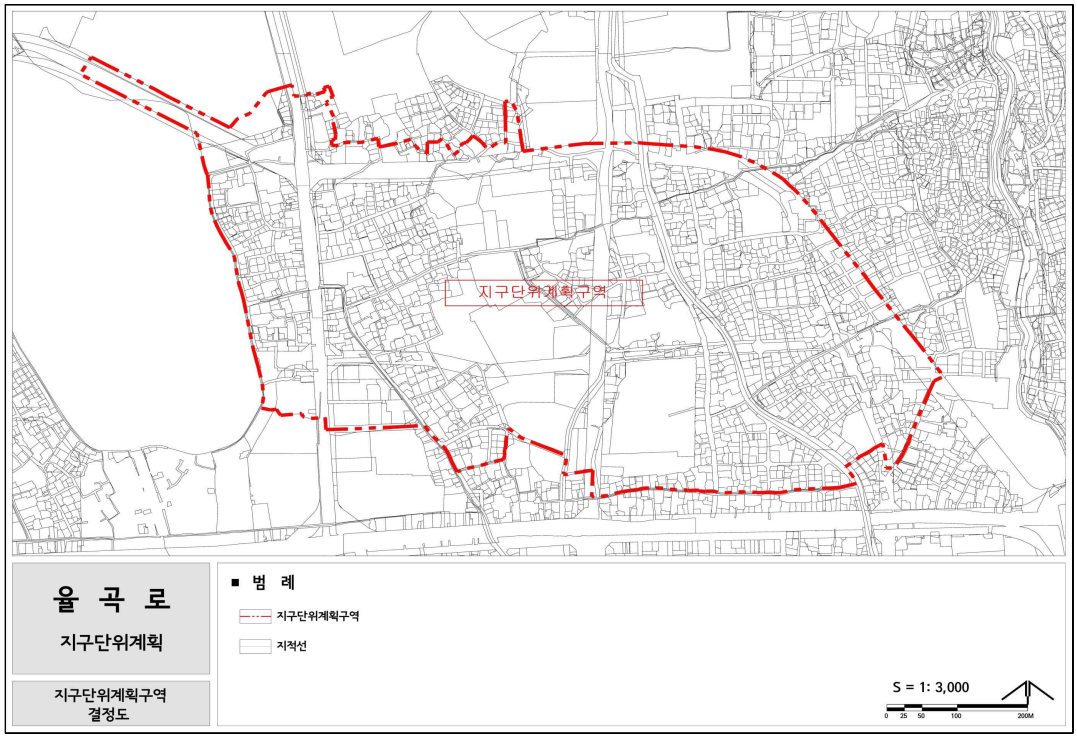
구 분	경미한 사항	구청장권한 구도시계획위원회
	6. 구역외 필지와의 공동개발시 지침완화 여부	○
	7. 기존건축물 연면적의 50%이내로서 500㎡이내의 기존건축물 철거 및 증축시 지침적용 완화	○
	8. 대수선 및 리모델링시 지침적용완화	○

※ 상기 표의 '법률에서 정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한 사무를 말하며, 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등의 규정에 따른다.
※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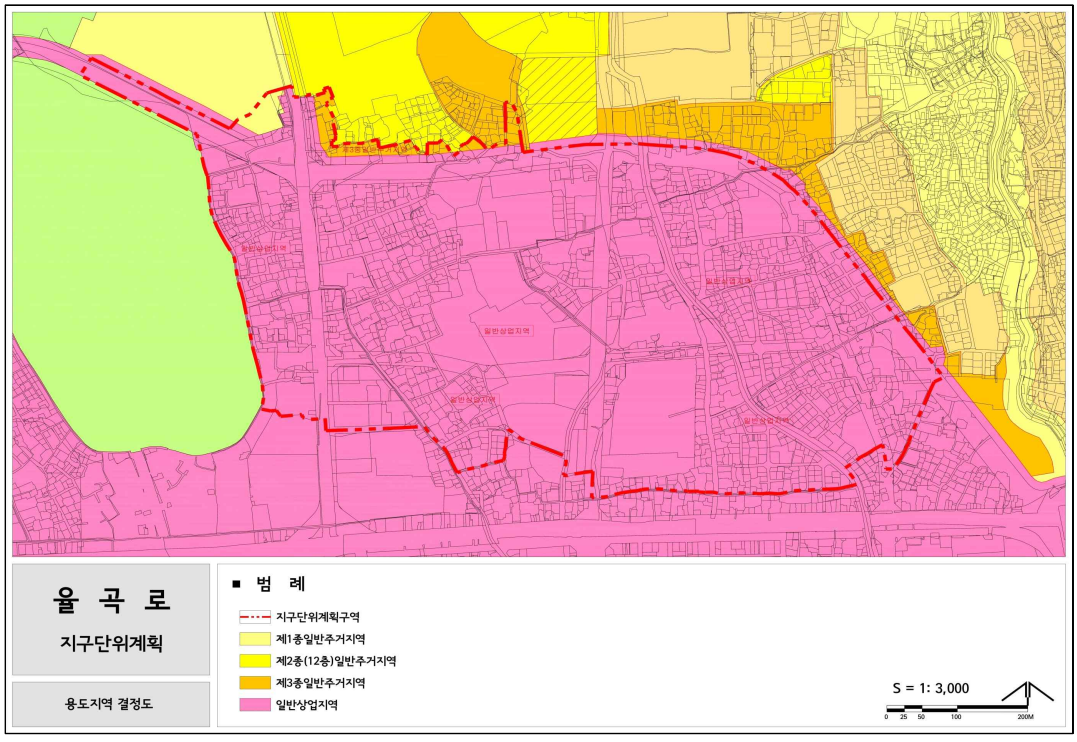
Ⅲ.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1) 및 종로구 건축과(☎02-2148-2813)에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및 서울도시공간포털(http://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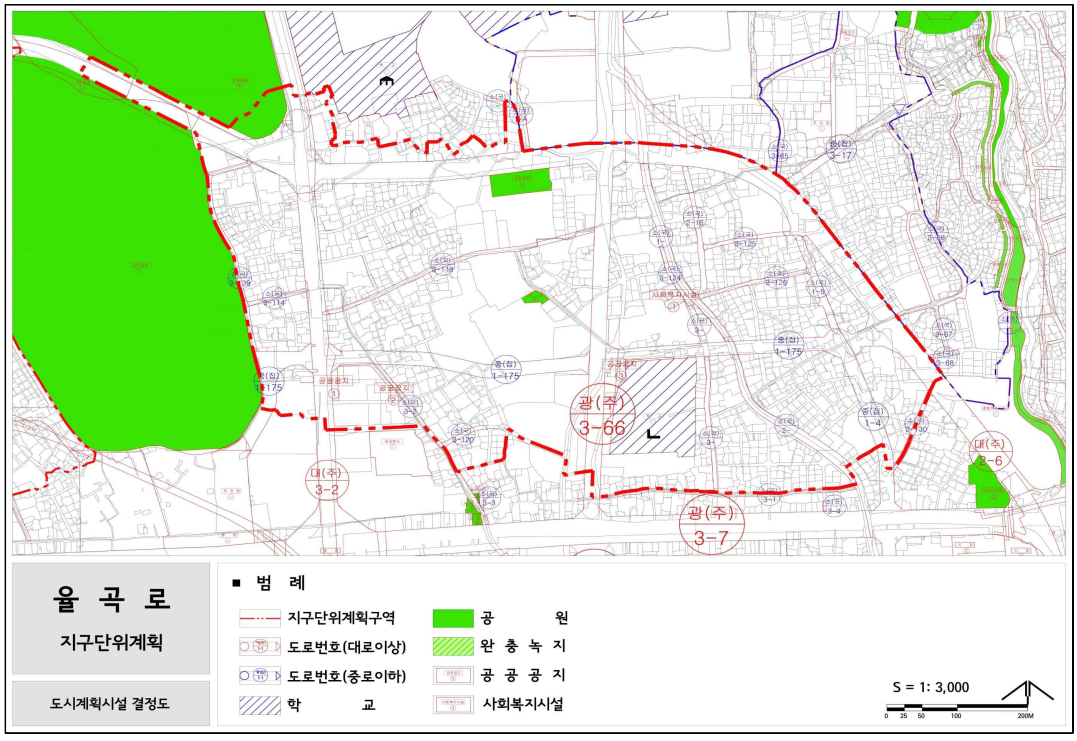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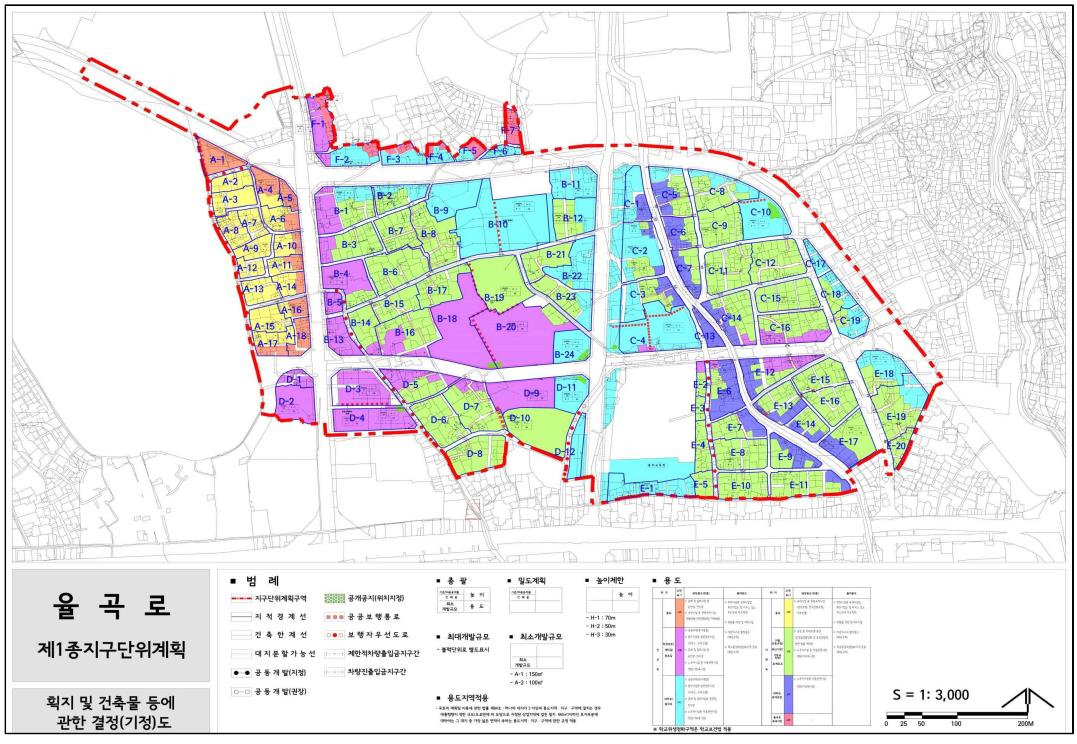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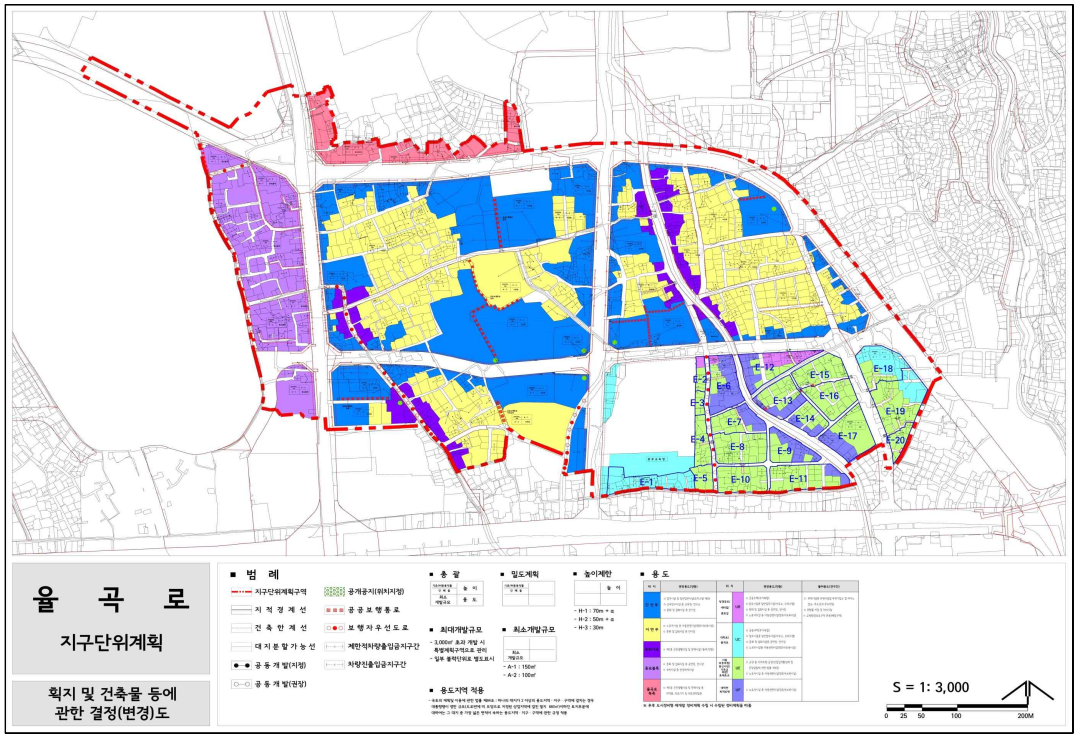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91호

도시관리계획(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37호(2020.11.0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최초 결정된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5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2025.4.23.)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 건축물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24.1.1.)됨에 따라 대형전광판 등 옥외광고물 제한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게재 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2.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3.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4. 기타사항에관한 변경 결정(변경)조서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3) 경관 및 환경친화요소에 관한 계획(변경)
      가) 옥외광고물(변경)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에 의한 기준을 적용

■ 규제사항(변경)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기정	옥외광고물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발광광고물	- 점멸 또는 화면변화 등 움직임 불가 - 직접조명방식, 조명에 직접 색상사용 불가 - 대형전광판 설치 불가	-
			창문이용	- 투시가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며,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광고	면적의 1/5 이내로 제한 - 광고물 색채는 2개 이내로 제한하며, 고채도색과 원색의 사용금지	
		정동길/덕수궁길/덕수궁돌담길에 면한 건축물	〈보전권역 적용〉 - 수량 :업소당 1개 이내 - 가로형 간판설치 : 2층 이하 - 광원노출·점멸조명 : 설치불가 - 기타 사항은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에 따름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1조 참조
		서학당길/배재학당길에 면한 건축물	〈일반권역 적용〉 - 수량 :업소당 2개 이내 - 가로형 간판설치 : 3층 이하 - 광원노출·점멸조명 : 설치불가 - 기타 사항은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에 따름		
변경	옥외광고물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발광광고물	- 점멸 또는 화면변화 등 움직임 불가 - 직접조명방식, 조명에 직접 색상사용 불가 - 대형전광판 설치 불가	단,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지정일:2024.1.1. 행정안전부장관) 지정에 따라 광화문스퀘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적용 제외
			창문이용광고	- 투시가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며,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5 이내로 제한 - 광고물 색채는 2개 이내로 제한하며, 고채도색과 원색의 사용금지	
		정동길/덕수궁길/덕수궁돌담길에 면한 건축물	〈보전권역 적용〉 - 수량 :업소당 1개 이내 - 가로형 간판설치 : 2층 이하 - 광원노출·점멸조명 : 설치불가 - 기타 사항은 '서울시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 에 따름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1조 참조
		서학당길/배재학당길에 면한 건축물	〈일반권역 적용〉 - 수량 :업소당 2개 이내 - 가로형 간판설치 : 3층 이하 - 광원노출·점멸조명 : 설치불가 - 기타 사항은 '서울시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 에 따름		

■ 권장사항(변경없음)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고
옥외광고물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유형	- 한 건물에 다수의 점포가 입점한 경우 주요 출입구에 공동의 연립형 간판의 설치를 권장 - 연립형 간판은 지주이용간판, 벽면을 활용한 공공연립간판, 연립돌출간판으로 설치하며 조화된 디자인을 도입하도록 권장	-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고
		형태	- 간판의 글자와 간판의 베이스를 분리하는 형태인 채널(문자형) 간판 권장	-
		크기	- 입체문자형일 경우 윗층과 아래층 사이 창문간 벽면 폭의 40% 이내, 최대 40cm	-
		색상	- 가급적 원색과 같은 고채도의 색은 피하고, 무채색계열과 브라운계열 색상 사용을 권장	-
		재료	- 간판의 베이스 재료를 전통적인 재료인 나무, 돌, 회반죽 등을 권장	-
		조명	- 부분조명이나 간접조명을 권장하고, 간판전체 직접조명방식은 지양하며, 직접조명방식은 사용할 경우는 문자나 도형부분에 부분적으로 사용	-

나) 야간조명(변경)

- '서울특별시 야간경관계획'을 반영하여 야간조명을 계획

■ 규제사항(변경)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기정	건축물 조명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 직접광원의 노출금지 - 조명기구 노출금지 - 원색계열의 색상사용 금지 - 과도한 색상의 변화, 반복점멸 금지 - 디지털 경관조명 설치불가 - 문화재일 경우 '공공지침 제38조 문화재 및 근대건축물 야간경관계획' 및 '서울시 야간경관계획'에 따라 연출	-
		정동길/덕수궁돌담길/덕수궁길/배재학당길/서학당길에 면한 건축물	- 건축물 표면 기준휘도 20(cd/㎡)이하 - 백색계열의 광원사용 금지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2조 참조
변경	건축물 조명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 직접광원의 노출금지 - 조명기구 노출금지 - 원색계열의 색상사용 금지 - 과도한 색상의 변화, 반복점멸 금지 - 디지털 경관조명 설치불가 - 문화재일 경우 '공공지침 제38조 문화재 및 근대건축물 야간경관계획' 및 '서울시 야간경관계획'에 따라 연출	단,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지정일:2024.1.1. 행정안전부장관) 지정에 따라 광화문스퀘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적용 제외
		정동길/덕수궁돌담길/덕	- 건축물 표면 기준휘도 20(cd/㎡)이하	민간부문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수궁길/배재학당길/서학당길에 면한 건축물	- 백색계열의 광원사용 금지	시행지침 제42조 참조

■ 권장사항(변경없음)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물 내부 조명	정동길/덕수궁돌담길/덕수궁길/배재학당길/서학당길에 면한 건축물	- 친환경 및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조명기구 사용을 권장 - 폐점시간부터 24시까지 1층 매장부의 디스플레이 공간부에 야간조명 권장 - 건축물 1층부 내부조명은 색 온도(3000K)의 광원 사용을 권장	야간조명 지정구역에 한해 규제사항으로 적용
건축물 외부 야간 경관 조명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간접조명, 라이트업 등의 조명 방법을 고려하면서 차분하고 은은한 가로분위기 연출을 권장 - 일몰시간부터 24시까지 건축물 외부에 투사하는 야간경관 조명 권장 - 옥탑부만 과도하게 강조한 조명은 지양하고 건축물의 빛의 레벨이 조화를 이루도록 권장 - 정동길/덕수궁돌담길/덕수궁길/배재학당길/서학당길에 면한 대지 중 가로에 면하여 건축물이 아닌 담장이 조성되어 있을 경우, 위의 외부야간경관 조명지침을 담장에 연출할 것을 권장	

■ 기타사항에 관한 변경 결정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비 고
옥외광고물	-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에 따라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대형전광판 설치 가능하도록 변경	-
야간조명	-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에 따라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디지털 경관 조명 설치 가능하도록 변경	-

다) 역사문화적 건축물 및 역사적 장소의 보전 · 활용(변경없음) : 게재 생략

라) 환경친화요소(변경없음) : 게재 생략

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Ⅲ.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1) 및 중구 도심정비과(☎02-3396-5782)에 비치 ·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및 서울도시공간포털(http://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93호

도시관리계획(용두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공고 제2024-1368호(2024.10.31.)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용두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결정(안)에 대하여 2025년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5.03.26.)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공고 제2025-659호(2025.05.08.)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 동대문구 용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용두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용두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용두동 33-1번지 일대	-	증) 19,484.1	19,484.1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사유
용두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용두동 33-1번지 일대	19,484.1㎡	용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9,484.1	-	19,484.1	100.0	-
주거지역	소계	19,484.1	감) 7,917.6	11,566.5	59.4	
	제2종일반주거지역	11,566.5	-	11,566.5	59.4	
	준주거지역	7,917.6	감) 7,917.6	-	-	
일반상업지역		-	증) 7,917.6	7,917.6	40.6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사유
	기정	변경		
용두동 33-1번지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7,917.6	역세권의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동시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함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1) 철도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철도	정거장 (용두역)	동대문구 용두동 47-1일대	6,607	증)494	7,101	서울시 고시 제394호 ('01.11.28)	• 일부 중복결정 - 철도(동북선 본선) : 800㎡ - 공원지하 : 1,296㎡ • 입체 결정 - 용두동33-1번지 내 : 327㎡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철도	• 용두역 3번 출입구 철도시설 결정 - 6,607㎡ → 7,101㎡ - 증) 494㎡	• 대지 내 설치되어 있는 용두역 3번 출입구에 대한 철도시설 결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내 용		변 경	최 초 결정일	비 고
변경	철도	정거장 (용두역)	동대문구 용두동 47-1일대	면적(㎡)	지상부	98	서고시제394호 ('01.11.28)	
					지하부	229		
				길이(m)		44.6		
				폭(m)		1.5 ~ 6.4		
				높이(m)		6~9.8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철도	• 정거장(용두역) 선형변경 및 면적 변경 - 면적 : 6,607㎡→7,101㎡(증 494㎡)	• 용두역과 문화시설(공연장)의 접근성 향상과 지하철 이용객들의 보행편의제공을 위해 용두역 3번 출입구 위치 일부조정 및 철도시설 결정

※ 상기 사항은 향후 건축계획 등에 따라 입체적 결정범위(면적, 길이, 폭, 높이)는 조정될 수 있음

나. 공공 · 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	공공청사 (동대문구청)	동대문구 용두동 39-9	11,532	증)34.5	11,566.5	서고1995-23호 ('95.04.08)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공공청사 (동대문구청)	• 공공청사 면적변경 - 11,532㎡ → 11,566.5㎡ - 증) 34.5㎡	• 공공청사 면적오기 정정

※ 향후 공공청사(동대문구청)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역 변경 검토

■ 건축범위 결정조서(신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비고
신설	-	60% 이하	220%이하	60m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 문화시설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	문화시설	공연장	동대문구 용두동 33-1	-	증)5,152	5,152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공간적범위 결정)

※ 5,152㎡는 수평투영면적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공간적범위)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 후	최 초 결정일	비 고
신설	-	문화 시설	동대문구 용두동 33-1	층수(층)	-	지하6층, 지하2층~지상4층	지하6층, 지하2층~지상4층	-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는 입체적 결정도 (공간적범위결정도)참조
				수평투영면적(㎡)	-	증)5,152	5,152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문화시설(공연장)의 성능수준, 설비, 세부용도 등 조성계획을 동대문구와 협의 후 건축 인 · 허가 시 확정하여, 준공 시 동대문구에 기부채납(대지지분 포함)
※ 향후 토지 감정평가 금액 및 건축계획에 따라 면적 · 층고 · 형태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사항은 향후 건축계획 등에 따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공간적 범위) 수평투영면적은 조정될 수 있음.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문화시설	• 문화시설(공연장)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층수 : 지하6층, 지하2층~지상4층 - 수평투영면적(㎡) : 5,152㎡ - 도시계획시설 연면적 : 7,629㎡	• 지역내 부족한 공공 공연장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문화중심 도시로 발돋음 하기 위해 문화시설 기부채납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문화시설의 연면적은 전용 · 공용 · 부대시설 등을 합한 면적임

3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

1. 공공기여 계획에 관한 결정

가. 공공기여계획 결정 조서

구분	용도지역		용적률		공공기여기준		
	변경전	변경 후	기준(허용)	상한	공공기여율	공공기여량	공공기여계획
용두동 33-1	준주거 지역	일반상업 지역	400%	780%	부지면적의 24.36%이상	= 7,917.6×24.58% = 1,946㎡	24.58%(1,946㎡)

※ 부지면적은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사업부지 면적임
※ 공공기여율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율임
※ 건축심의 전 공공시설 등 부지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기여 계획을 확정하여야함

■ 공공기여계획 세부내역

구 분	총 공공 기여면적	부지 제공면적	환산 부지면적	비 율	연면적			비 고 (귀속주체)
					지상	지하	전체	
공공임대주택	100㎡	100㎡	-	5.1%	1,250㎡	-	1,250㎡	서울시 (10세대)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1,846㎡	611㎡	1,235㎡	94.9%	5,274㎡	2,355㎡	7,629㎡	동대문구
계	1,946㎡	711㎡	1,235㎡	100.0%	6,524㎡	2,355㎡	8,879㎡	-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4-1-1에 따라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부지면적으로 환산함
※ 부지가액은 종후(일반상업지역) 탁상감정가격 적용하며, 향후 토지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공공건축물 등 설치비용 산정근거(부가세 제외) : 지상부는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2024)'의 문화예술회관 · 문화집회시설 공사비 적용, 지하공간은 분양가상한제지역 기본형건축비 1,024천원/㎡)적용, 무대특장비 별도 산정 적용
※ 상기 사항은 향후 건축계획(건축심의 또는 인 · 허가시)결과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내에서 계획 내용의 면적(규모) 및 비율 등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할 수 있음
※ 문화시설(공연장)의 세부 건축계획 성능수준, 설비 등 조성계획을 동대문구와 협의 후 건축 인 · 허가 시 확정하여, 준공 시 기부채납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획지에 관한 결정

가.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획지번호	획지		비고
		획지	면적(㎡)	
신설	1	동대문구 용두동 33-1	7,917.6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획지계획 수립
	2	동대문구 용두동 39-9	11,566.5	공공청사(동대문구청)

2.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

가.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불허용도		비고
신설	A	전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단독주택 - 공동주택(공공임대주택, 주거복합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방송통신시설	-
		1층 (가로활성화 저해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업소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

나. 건축물의 지정용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정용도		비고
신설	a	1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서적, 의약품, 의료기기), 휴게음식점, 제과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주민의 진료 · 치료 등을 위한 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독서실, 학원, 교습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소매시장, 상점 - 의료시설 중 병원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도서관 -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획지1만 적용
		저층부 (2~3층)		

※ 1층 지정용도는 30%이상(바닥면적 산정 시 공용면적 제외)
※ 2~3층 지정용도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 기계실, 계단 등의 공용면적 제외)의 50%이상 확보

3. 건축물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

가. 건폐율에 관한 결정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60%이하	동대문구청
일반상업지역	60%이하	용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24.07.) 적용

나. 용적률에 관한 결정

용도지역		용 적 률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기 준(허용)	상 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0% 이하	-	동대문구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400% 이하	780% 이하	용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24.07.) 적용
※ 일반상업지역 상한용적률은 용적률 적용기준[1)](의무사항) 준수시 적용
※ 향후 공공청사(동대문구청) 부지에 대한 광장조성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항목 중 녹지생태도시(개방형공간 조성), 디자인혁신(공공시설 연계 경관사업) 2가지 항목을 계획하여 조성하겠음

■ 획지1 용적률 적용기준1)(의무사항)

구 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 고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공공 기여율	• 부지면적의 24.36% 이상	• 부지면적의 24.58% • 세부내용 - 공공임대주택 5.1%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94.9%		기준 (허용) 용적률 400% 상한 용적률 78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함
건축물 용도구분	비주거 비율	• 지상 용적률 10% 이상	• 주거 : 비주거 = 81.1% : 18.9%			
		• 전체 연면적 20% 이상	• 주거 : 비주거 = 73.9% : 26.1%			
	주거용 용적률	•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2. 나목, 다목의 1) 항목 적용[2)] = 주거용적률 635%이하 (임대주택 100%, 전략용도 35%)	• 계획 632% (임대주택 100%, 전략용도 32%)			
주택건설 기준	주택 규모	• 공공주택 : 전용 85㎡이하	• 공공임대주택 - 59㎡ 계획			
		• 민간주택 : 기준없음	• 장기일반임대주택 - 59㎡, 84㎡ 계획 • 민간주택 - 84㎡, 103㎡, 150㎡계획			
		• 공공주택과 민간분양주택 상호 간에 차별화된 구조와 동선체계로 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사용상의 분리 등으로 인한 차별 및 불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혼합을 고려한 건축계획	• 사회혼합(Social Mixing)을 고려한 민간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차별없는 공급 계획			
건축물 형태	건축 계획 기준	• 각 사항 의무적 시행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친환경 건축물 - 역사문화보전(해당되는 대상지에 한함)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적용		
			• 친환경 건축물	적용		
			• 역사문화 보전	해당없음		
주민공동시설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설치 -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1.25	• 주민공동시설 1,624㎡계획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작은 도서관, 경로당 등			
공개공지 등		• 모든 용도의 건축물에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개공지등 설치면적 의무 설치 : 대지면적의 10% 이상	• 공개공지 792㎡ 설치 (10.01%)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준용
주2)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2. 나목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다목 1)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 포함)상의 중심지 육성방향에 부합하는 용도
주3) 상기 사항은 향후 건축계획(건축심의 또는 인·허가시)결과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내에서 계획 내용의 면적(규모) 및 비율 등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할 수 있음
주4) 주민공동시설은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 4 준용

다. 높이 계획에 관한 결정

구 분		최고높이(m)	비고
간선 도로변	획지 1	170 이하	용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획지 2	60 이하	동대문구청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24.07.) 적용

4. 건축물 배치 · 형태 · 외관에 관한 결정

가.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결정

구분		적용대상	적용기준	비고
신설	건축한계선	천호대로변	도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 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고
		고산자로변	도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 계획	
		고산자로28길	도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 계획	
		용두동 33-1 · 39-9 (대지경계선)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3m이격 계획	
	1층부 벽면한계선	고산자로28길	도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이격 계획	

나.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결정

구 분		계 획 내 용
형태	개구부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 :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저층부 개방형 입면조성	• 상업 및 업무용도의 건축물은 1층 전면 벽면면적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 개구부 없는 벽면의 가로변 노출 금지(이면도로 제외) • 외벽면 투시형 셔터 설치 시 1/2 이상 개방된 투시형 셔터 사용
외관	외장	• 폭 30m이상 도로에 면한 벽면에 시멘트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 페인트 마감노출을 금지
	재료	• 건축물의 외벽 골조(조립식, 무피복 골조, 컨테이너 등) 노출 금지
	색채	• 색채는 주변과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원색의 사용은 금지
	건축설비의 노출	• 폭 3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옥탑, 냉각탑 등의 건축설비는 도로변에 노출 금지
기타 사항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등 관련규정 준수
	담장 및 옹벽	• 담장 및 축대, 옹벽의 설치 금지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		• 보도형 전면공지 - 천호대로변, 고산자로변, 고산자로28길변, 용두동33-1 · 39-9번지 인접대지경계선의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공지, 벽면한계선 후퇴부분 공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고
공개공지	획지 1	• 연면적 합계가 3만㎡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이상 공개공지 설치 - 천호대로변 1개소 위치지정	
	획지 2	• 천호대로변 1개소 위치지정	
공공보행통로		• 용두동 33-1번지 대지중앙부 동남측 연결 - 폭원 6m이상, 필로티구조 높이 6m이상	

2. 교통처리 등에 관한 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신설	차량출입 불허구간	• 천호대로변, 고산자로변 전부 • 고산자로28길변 일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고

Ⅲ.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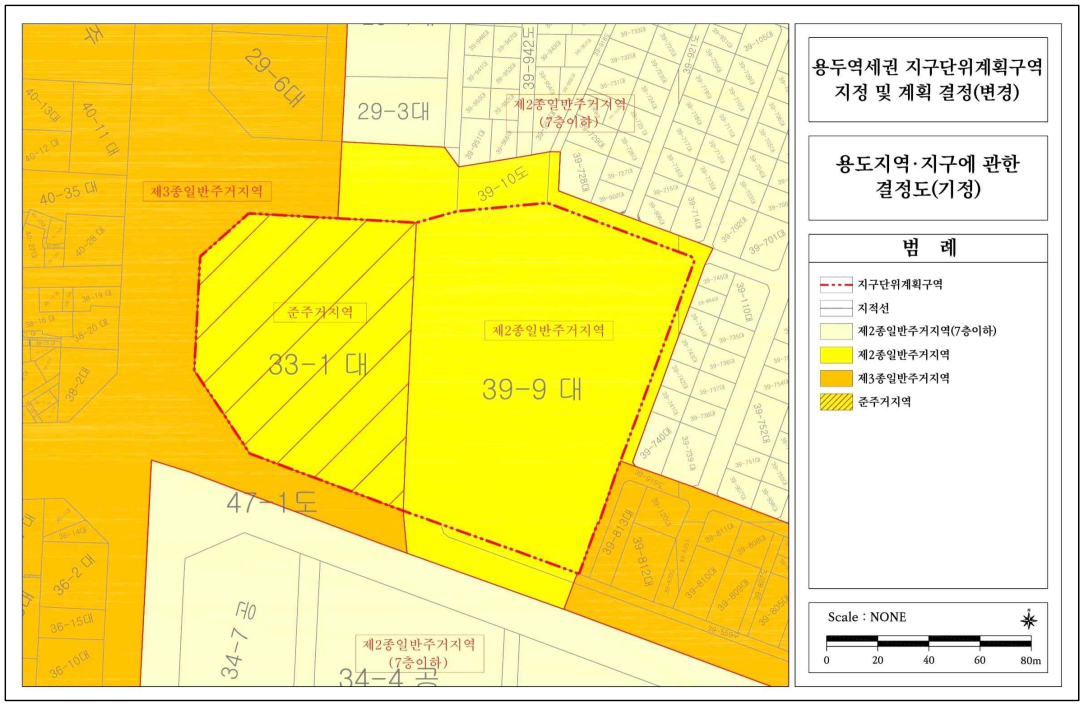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전략과(☎ 2133-4656) 및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 2127-458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및 서울도시공간포털 (http://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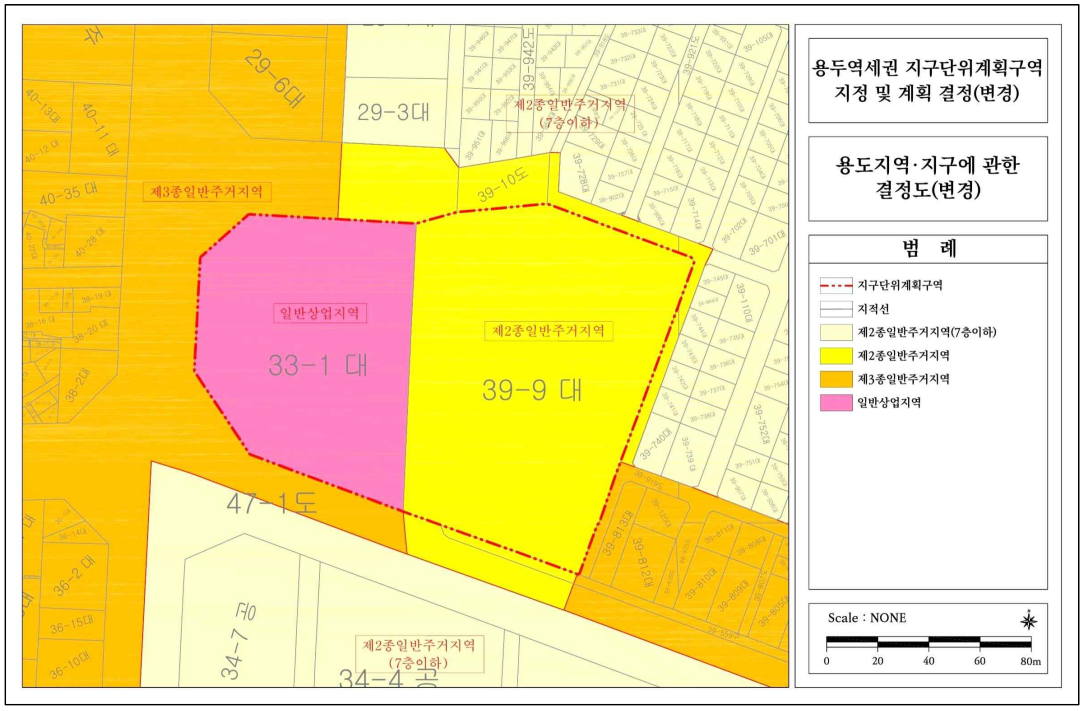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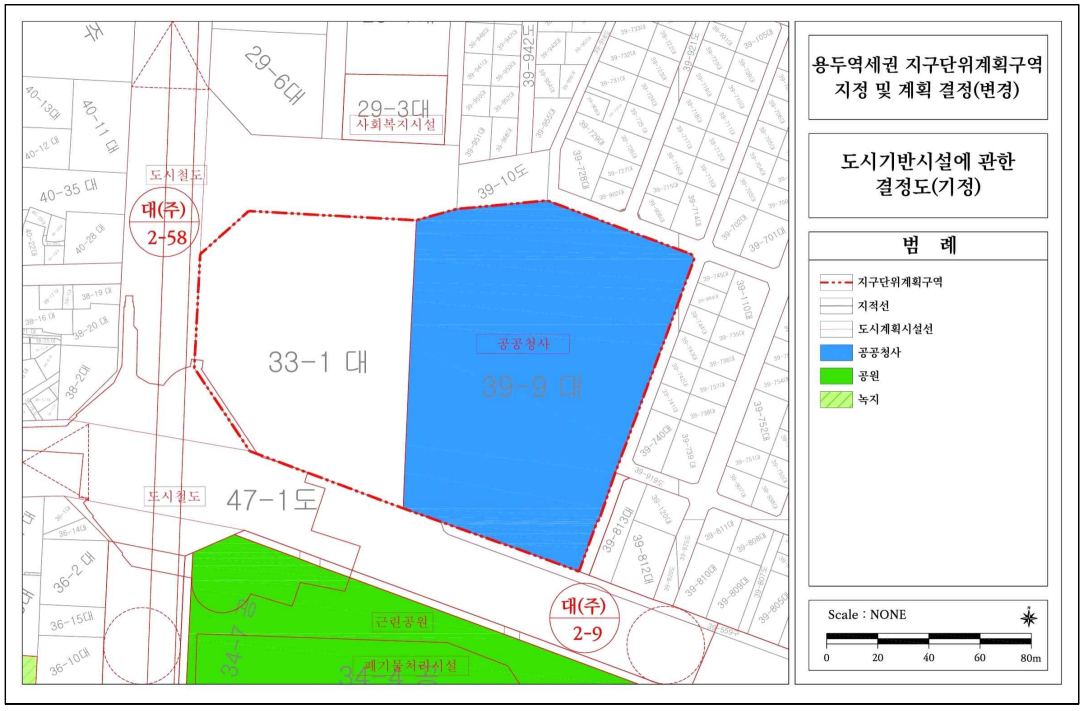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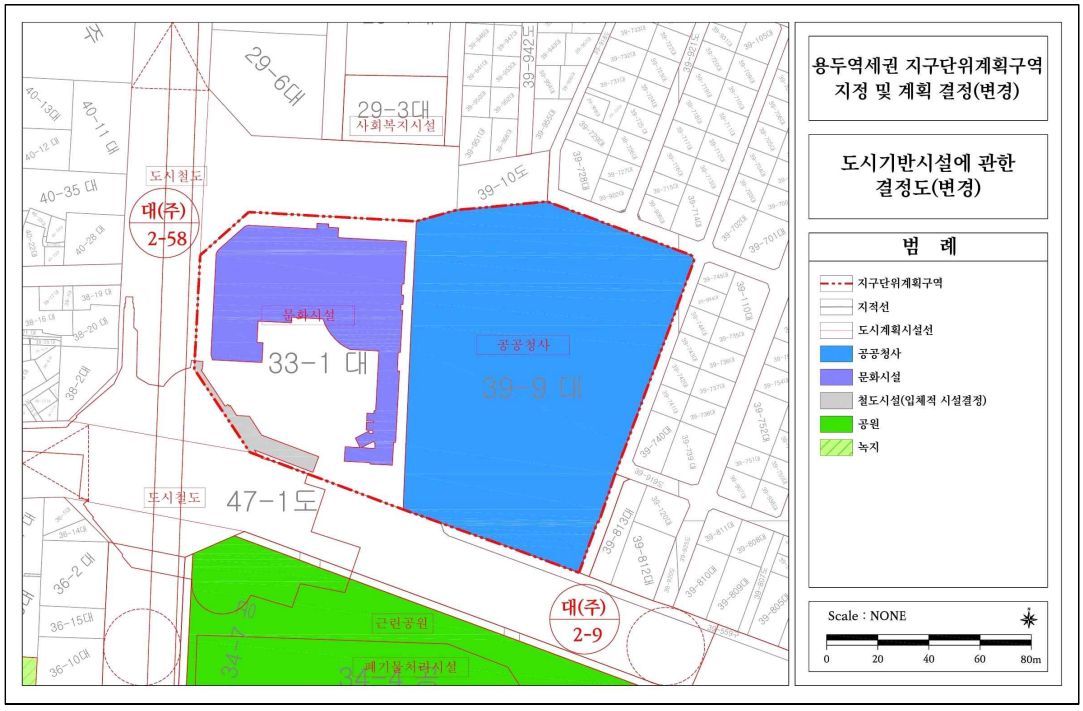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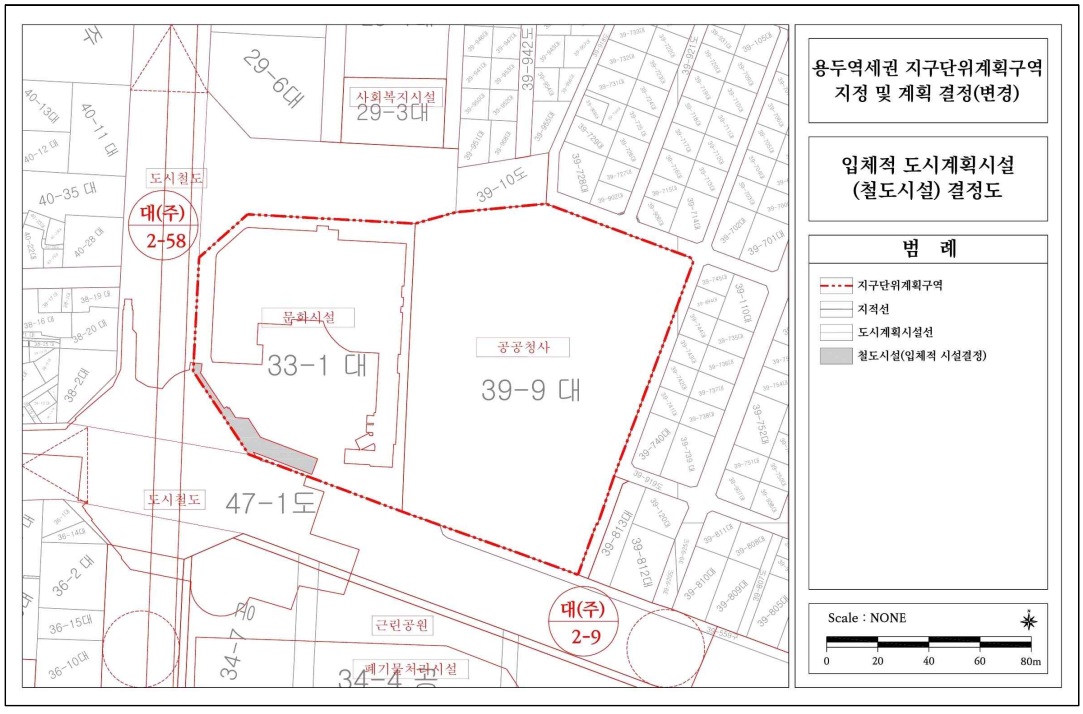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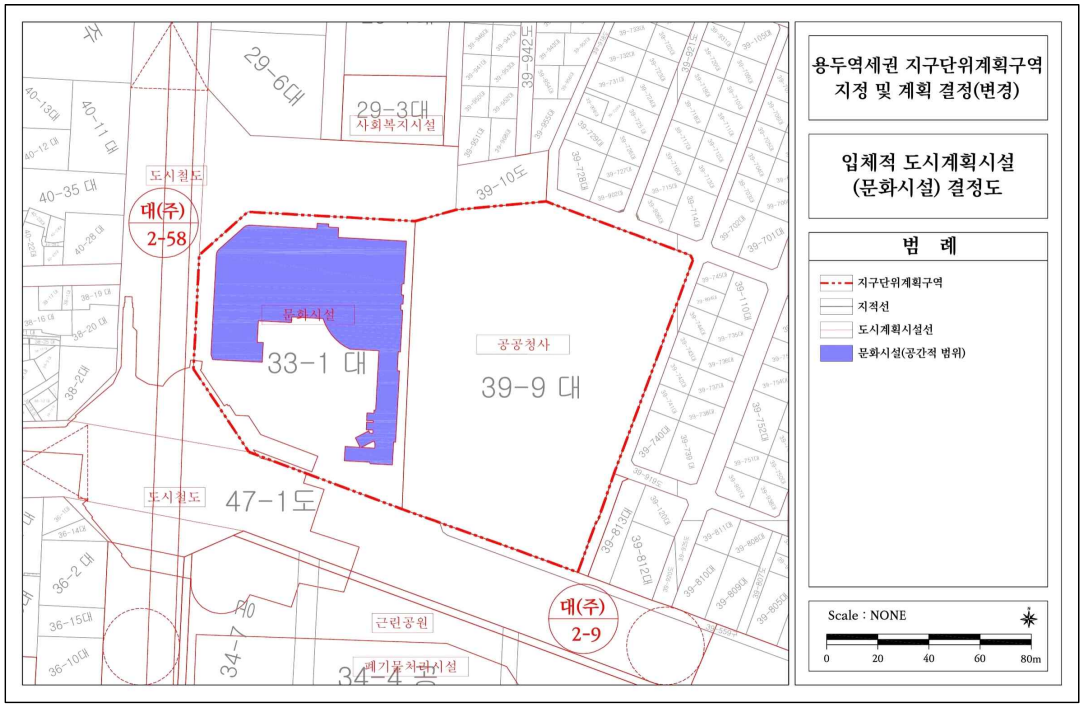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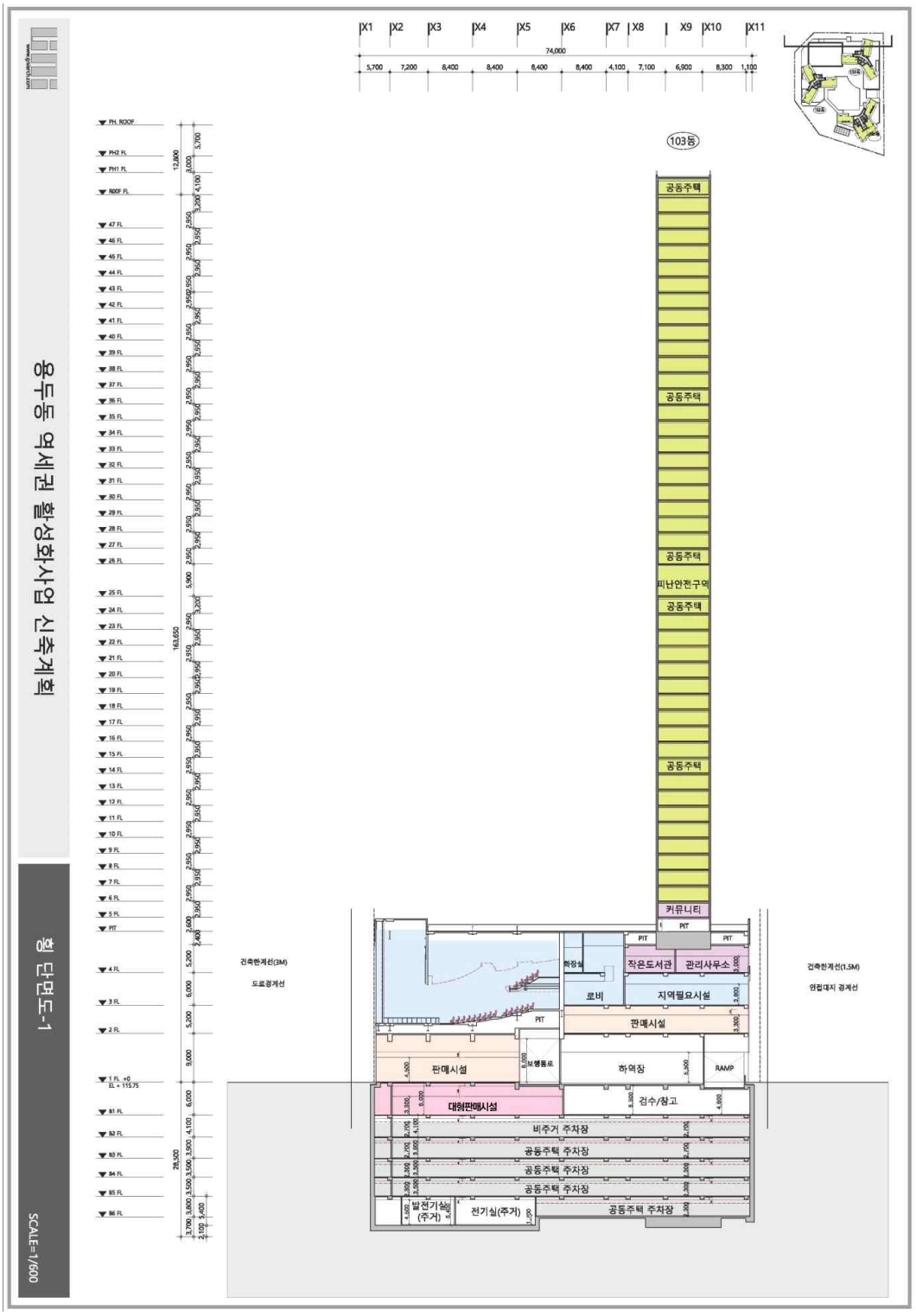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도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도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도 – 횡단면도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도 – 종단면도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도 - 층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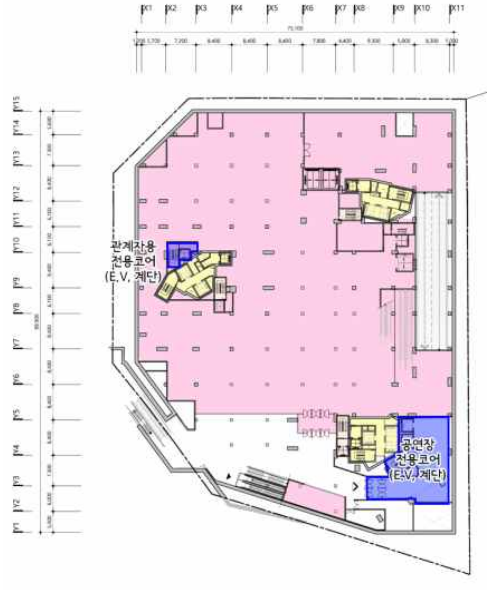
지하6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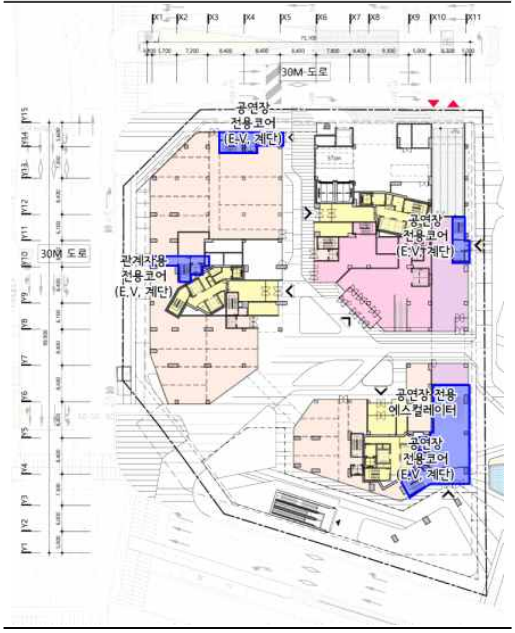
지하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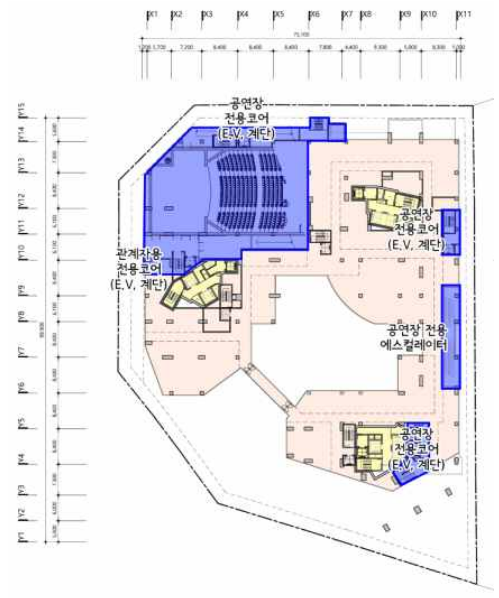
지하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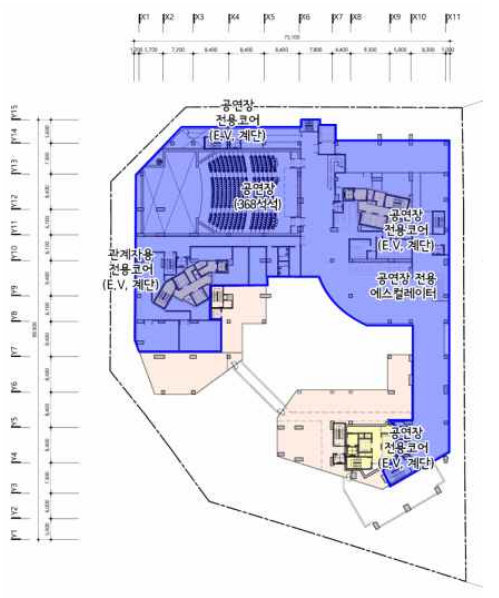
지상1층



지상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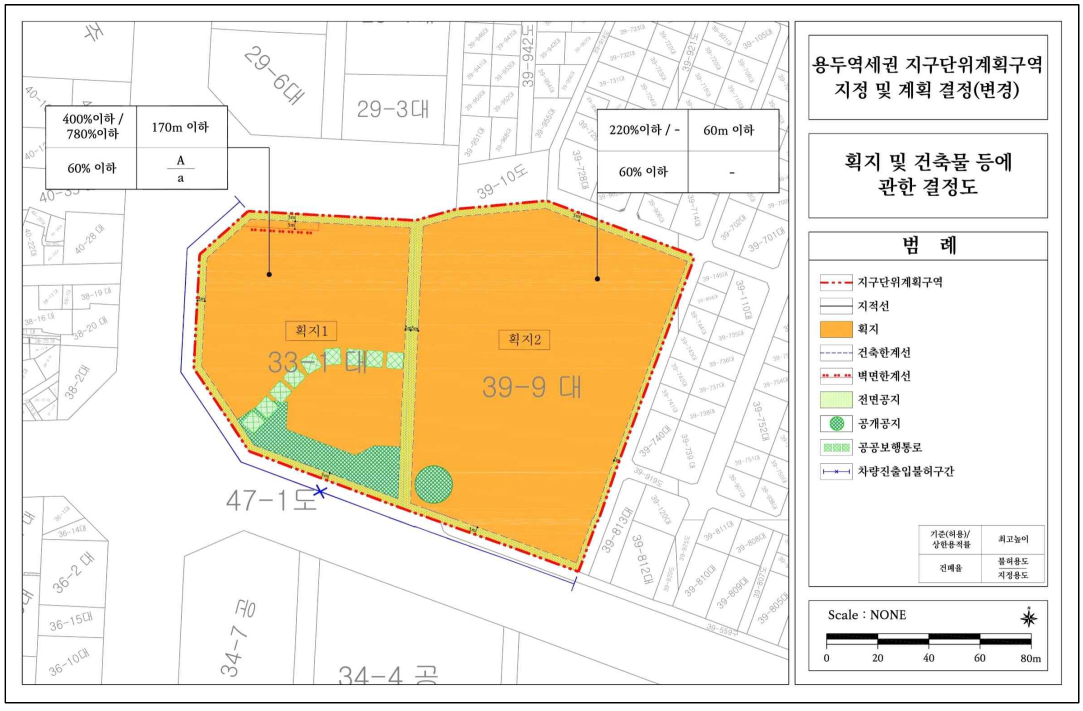
지상3층



지상4층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94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3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72호(2003. 11. 18.)로 뉴타운지구 지정, 제2006-357호(2006. 10. 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제2009-387호(2009. 10. 0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9호(2014. 7. 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2호(2017. 3. 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23호(2017. 6. 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01호(2018. 4. 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43호(2018. 8.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05호(2019. 3. 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62호(2019. 11. 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41호(2020. 6. 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63호(2021. 6. 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96호(2021. 12. 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9호(2023.2.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96호(2023.3.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54호(2023.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7호(2024.1.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27호(2024.12.1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명칭	유형	위치	면 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주거 지형	용산구 보광, 한남, 이태원 동빙고동 일대	948,171.1	감) 31.0	948,140.1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보광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변경사유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북측 도로 내 사유지 1필지 제외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년도(변경없음)
○ 기준년도 : 2007년
○ 목표연도 : 2032년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 사람과 장소 중심의 매력적인 지형 순응형 주거지로 계획하여 사람 사는 주거단지로 조성하고

남산자락의 구릉지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환경 제공

○ 남산, 한강 등 주변지역을 고려한 종합적·광역적 계획수립으로 효율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체계적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틀 마련

라.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48,171.1	감) 31.0	948,140.1	100.0	-
주택용지	소계	660,338.5	증) 6,480.7	666,819.2	70.3	-
	주상복합	168,196.7	증) 30,134.0	198,330.7	20.9	-
	공동주택	492,141.8	감) 23,653.3	468,488.5	49.4	존치아파트 포함
기반시설	소계	259,977.8	감) 6,448.4	253,529.4	26.8	
	도로	126,153.7	감) 3,055.0	123,098.7	13.0	-
	공원	48,164.2	감) 3,591.1	44,573.1	4.8	-
	녹지	2,801.0	-	2,801.0	0.3	-
	공공청사	8,766.1	증) 202.5	8,968.6	0.9	-
	사회복지시설	8,207.4	감) 4.8	8,202.6	0.9	-
	교육시설	60,930.4	-	60,930.4	6.4	신설초, 오산중·고교
	체육시설	4,955.0	-	4,955.0	0.5	-
기타	소계	27,854.8	감) 63.3	27,791.5	2.9	-
	종교시설용지	10,625.4	감) 63.3	10,562.1	1.1	종교단체 협의완료
	우체국	449.9	-	449.9	0.1	-
	근린생활용지	3,764.5	-	3,764.5	0.4	-
	기타용지	3,119.0	-	3,119.0	0.3	변전소 이전부지
	학교용지	9,896.0	-	9,896.0	1.0	존치4(보광초)

※ 변경사유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나)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 : 33,934인 / 13,130세대

구 분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2,976	증) 154	13,130	33,535	증) 399	33,934	-
재정비촉진구역	소계	12,276	증) 154	12,430	31,919	증) 399	32,318	-
	40㎡ 이하	960	증) 115	1,075	2,496	증) 299	2,795	-
	40㎡~60㎡	4,809	감) 237	4,572	12,504	감) 617	11,887	-
	60㎡~85㎡	3,761	감) 191	3,570	9,779	감) 497	9,282	-
	85㎡ 초과	2,746	증) 467	3,213	7,140	증) 1,214	8,354	-

존치관리구역	700	-	700	1,616	-	1,616	기존세대 수용

※ 변경 인구수는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세대당 2.6인을 적용함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세대당 인구 미제시)
※ 변경사유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건축계획 변경

다)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구 분	명칭	개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2	82,858.9	증) 197.7	80,801.2	-
교육시설	소 계	2	60,930.4	-	60,930.4	-
	초등학교	1	10,755.4	-	10,755.4	1개소 신설(한남3구역)
	중·고등학교	1	50,175.0	-	50,175.0	오산중·고교
공공·체육 문화시설	소 계	10	21,928.5	증) 197.7	22,126.2	-
	공공청사	6	8,766.1	증) 202.5	8,968.6	주민센터, 서울장학재단, 소방파출소
	사회복지시설	3	8,207.4	감) 4.8	8,202.6	사회복지시설 2개소 사회복지시설A 주차장 중복결정
	체육시설	1	4,955.0	-	4,955.0	-

라) 공원·녹지 및 환경보존계획(변경)

구 분	명칭	개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2	12	50,965.2	감) 3,591.1	47,374.1	-
공원시설	소 계	11	11	48,164.2	감) 3,591.1	44,573.1	-
	문화공원	3	3	17,364.9	감) 3,066.9	14,298.0	-
	어린이공원	2	2	9,150.8	감) 4,287.3	4,863.5	-
	소공원	6	6	21,648.5	증) 3,763.1	25,411.6	-
녹지시설	소 계	1	1	2,801.0	-	2,801.0	-
	연결녹지	1	1	2,801.0	-	2,801.0	-

마) 교통계획(변경)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바) 경관계획(변경)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사)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구분	구역 번호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유형
기정	촉진2	뉴타운	보광동	265	11.5	170%	-	60%	2	재개발사업	전면개발
기정	촉진3	뉴타운	한남동	686	38.639	190%	-	60%	1	재개발사업	전면개발
변경	촉진3	뉴타운	한남동	686	38.636	190%	-	60%	1	재개발사업	전면개발
기정	촉진4	뉴타운	보광동	360	16.0	190%	-	60%	2	재개발사업	전면개발
기정	촉진5	뉴타운	동빙고동	60	18.4	190%	-	60%	2	재개발사업	전면개발

※ 변경사유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북측 도로 내 사유지 1필지 제외에 따른 면적 변경

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구역명	위치	면 적(㎡)			사업의 종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48,171.1	감) 31.0	948,140.1	-	-
재정비 촉진구역	소 계(4개 구역)		844,619.9	감) 31.0	844,588.9	-	-
	한남2 재정비촉진구역	보광동 272-3번지 일대	114,580.6	-	114,580.6	재개발사업	-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6,395.5	감) 31.0	386,364.5	재개발사업	-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보광동 360번지 일대	159,936.8	-	159,936.8	재개발사업	-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	동빙고동 60번지 일대	183,707.0	-	183,707.0	재개발사업	-
존치관리 구역	소 계(4개 구역)		103,551.2	-	103,551.2	-	-
	한남1 존치관리구역	보광동 151번지 일대	58,795.0	-	58,795.0	-	오산 중고등학교, 삼성리버빌
	한남2 존치관리구역	한남동 807번지 일대	28,996.0	-	28,996.0	-	-
	한남3 존치관리구역	한남동 550번지 일대	2,961.0	-	2,961.0	-	-
	한남4 존치관리구역	이태원동 15-13번지 일대	12,799.2	-	12,799.2	-	보광 초등학교

※ 변경사유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북측 도로 내 사유지 1필지 제외에 따른 면적 변경

자)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

(1) 한남2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사업)(변경없음)

(2)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사업)(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86,395.5	감) 31.0	386,364.5	100.0	-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소 계	316,028.0	감) 415.4	315,612.6	81.7	-
		제1종일반주거지역	152,992.6	감) 32,052.9	120,939.7	31.3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01,641.9	감) 9,623.9	92,018.0	23.8	-
		제3종일반주거지역	61,393.5	증) 41,261.4	102,654.9	26.6	-
	준주거지역		70,367.5	증) 384.4	70,751.9	18.3	-

※ 변경사유 : 쾌적한 정주여건 확보, 동일 블록 내 용도지역 혼재지역 조정,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

(3) 한남4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사업)(변경없음)

(4) 한남5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사업)(변경없음)

차)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계획(변경없음)

카)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구분	구 역 명	주 된 용 도	건폐율 (%)	기준 용적률 (%)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최대 용적률 (%)	높이계획		비고
							평균층수/ 최고층수	최고높이(m)	
촉진구역	한남2 재정비촉진구역	주상복합, 주거	60이하	170	202	202	-/14	45	-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	주상복합, 주거	60이하	190	232.5	232.5	-/22	73	기정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	주상복합, 주거	60이하	190	237.0	237.0	-/22	73	변경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주상복합, 주거	60이하	190	228	228	-/23	73	-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	주상복합, 주거	60이하	190	222.3	222.3	-/23	73	-

※ 한남3,4구역 건물의 최고높이는 건축법에 따른 대지 가중평균선에서의 높이가 아닌 공동주택부분 지반층에서의 층수 기준 최고높이임(단, 구역전체에서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해발90m 이하 적용)

○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변경없음)

타)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1) 구역별 기반시설 순부담률 계획(변경)

구 역 명			구역 면적 (㎡)	기반시설면적(㎡)				시설제공 면적(㎡) (건축물등) -②	국공유지(㎡)			순부담 면적 (㎡) (①+②-③-④ -⑤)	순부담률 (%)
				합계 -①	도로	공원 녹지	기타		계획 기반 시설내 -③	기존 기반 시설내 -④	유상 매입 시설 -⑤		
합계		기정	844,619.9	204,414.6	121,565.7	50,965.2	31,883.9	18,244.6	59,396.0	60,405.7	-	102,857.5	12.2
		변경	844,588.9	202,002.6	118,510.7	47,374.1	36,118.0	19,512.6	52,448.6	60,086.4	-	108,980.2	12.9
촉진구역	한남2 재정비 촉진구역		114,580.6	30,821.7	19,008.8	5,993.6	5,819.3	4,940.0	12,302.4	11,721.1	-	11,738.2	10.2
	한남3 재정비 촉진 구역	기정	386,395.5	92,576.5	51,849.3	27,263.6	13,463.6	5,512.0	21,945.2	25,576.3	-	50,567.0	13.1
		변경	386,364.5	90,164.5	48,794.3	23,672.5	17,697.7	6,780.0	14,997.8	25,257.0	-	56,689.7	14.7
	한남4 재정비 촉진 구역		159,936.8	43,887.4	29,627.4	8,138.0	6,122.0	3,796.0	17,426.6	10,718.0	-	19,538.8	12.2
	한남5 재정비 촉진구역		183,707.0	37,129.0	21,080.2	9,570.0	6,479.0	3,996.6	7,721.8	12,390.3	-	21,013.5	11.4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일부 국·공유지를 매입(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 에 따른 '순부담' 면적 산정시 무상양여 대상에 해당하는 국공유지(계획기반시설 내, 기존기반시설내)는 기 정비기반시설인 국공유지만 해당됨[주거사업과-6457(2018.6.8.)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경미한 변경) 고시(23.3.31.),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2023.6.23.)의 무상양도 국공유지 면적(40,254.76㎡) 반영

(2) 부담주체별 비용분담계획(변경)

○ 기정

구 분	비용분담				비고
	시	구	교육청	민간	
도로	-	-	-	○	(소로3-8호선 및 소로3-9호선 현황도로 정비포함) (중로1-135호선 미조성도로 조성 및 도로정비 포함)
주차장	-	-	-	○	(한남2·3·4촉진구역 지하주차장 설치비 민간부담)
공원·녹지	-	-	-	○	-
공공공지	-	-	-	○	-
공공청사	-	-	-	○	(한남2촉진구역 부지 및 건축공사비 민간부담) (한남3촉진구역 건축공사비 민간부담) (한남4촉진구역 부지 및 건축공사비 민간부담) (한남5촉진구역 부지 및 건축공사비 민간부담)
사회복지시설	-	-	-	○	(한남2촉진구역 부지 및 건축공사비 민간부담) (한남3촉진구역 부지 및 건축공사비 민간부담) (한남4촉진구역 부지 및 건축공사비 민간부담)
학교	-	-	-	○	(한남3촉진구역 부지 및 건축공사비 민간부담)
체육시설	-	-	-	○	(한남5촉진구역 부지 및 건축공사비 민간부담)
청소년수련시설	-	-	-	○	(한남5촉진구역 부지 및 건축공사비 민간부담) (청소년 문화의집, 진로직업체험센터)
문화시설(도서관)	-	-	-	○	(한남5촉진구역 부지 및 건축공사비 민간부담)

○ 변경

구 분	비용분담				비고
	시	구	교육청	민간	
도로	-	-	-	○	(소로3-8호선 및 소로3-9호선 현황도로 정비포함) (중로1-135호선 미조성도로 조성 및 도로정비 포함)
주차장	-	-	-	○	(한남2·3·4촉진구역 지하주차장 설치비 민간부담)
공원·녹지	-	-	-	○	(한남3촉진구역 공원 내 전망대 설치 포함)
공공공지	-	-	-	○	-
공공청사	-	-	-	○	(한남2·3·4·5촉진구역 부지 및 건축공사비 부담)
사회복지시설	-	-	-	○	(한남2·3·4촉진구역 부지 및 건축공사비 부담)
학교	-	-	-	○	(한남3촉진구역 부지 및 건축공사비 민간부담)
체육시설	-	-	-	○	(한남5촉진구역 부지 및 건축공사비 민간부담)
청소년수련시설	-	-	-	○	(한남5촉진구역 부지 및 건축공사비 민간부담)

					(청소년 문화의집, 진로직업체험센터)
문화시설(도서관)	-	-	-	○	(한남5촉진구역 부지 및 건축공사비 민간부담)

파)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구 분	구역명	계획 세대수	일반주택 (세대)	임대주택(세대)					비고
				소계	전용면적 40㎡이하	전용면적 40~50㎡	전용면적 50~60㎡	전용면적 60~85㎡	
합 계		12,276	10,422	1,854	711	813	300	30	기정
		12,430	10,432	1,998	764	799	405	30	변경
촉진구역	한남2재정비 촉진구역	1,537	1,299	238	104	134	-	-	-
	한남3재정비 촉진구역	5,816	4,940	876	356	356	164	-	기정
	한남3재정비 촉진구역	5,970	4,950	1,020	416	335	269	-	변경
	한남4재정비 촉진구역	2,331	1,981	350	117	172	51	10	-
	한남5재정비 촉진구역	2,592	2,202	390	134	151	85	20	-

※ 한남3·4·5재정비촉진구역 :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가이드라인」(서울특별시, 2010..6.)에 의거하여 기준용적률 20% 상향
※ 변경사유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건축계획 변경

하)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분	추진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대상	비고
1단계	2009년	2023년	2029년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2단계	2010년	2026년	2030년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2027년	2032년	한남4,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 1.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은 촉진구역 주민의 사업추진의지 등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음
2. 대규모 철거 및 이주로 인한 전세난이 우려될 경우 구청장은 전 단계 사업의 입주시기에 맞추어 다음단계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3. 시장이 권역별 주택수급 등을 판단하여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을 요구할 경우 구청장은 시기를 조정하여야 함

거) 광고물 관리계획(변경없음)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너)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더) 친환경 건축물계획(변경없음)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러) 기타계획(변경)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머)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1) 한남2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2) 한남3재정비촉진구역(변경)

(가) 재정비촉진구역 위치 및 면적(변경)

구 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6,395.5	감) 31.0	386,364.5	-

※ 변경사유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북측 도로 내 사유지 1필지(한남동 644-26번지) 제외

(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table>
<tr><td>추정
비례율</td><td>·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X 100%
· 추정비례율
⇒ (9,843,441,918천원-4,416,212,095천원)/5,406,903,622천원 ≒ 100.376%
- 총수입 추정액 : 9조 8,434억원 수준
- 총비용 추정액 : 4조 4,162억원 수준
- 종전자산 평가액 : 5조 4,069억원 수준</td></tr>
<tr><td>개별
종전자산
추정액</td><td>·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제일감정평가법인과 삼창감정평가법인에서 수행한 감정평가 결과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td></tr>
<tr><td>추정
분담금
산출</td><td>·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종전자산 추정액X추정비례율)
<table>
<tr><th colspan="2">권리자 분양가 추정액(ⓐ)</th><th>추정 권리가액(ⓑ)</th><th>추정분담금 (ⓐ-ⓑ)</th></tr>
<tr><td>전용39㎡ 타입</td><td>7.81억원</td><td rowspan="12">개별 종전자산 평가액
X 추정비례율(100.376%)</td><td rowspan="12">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td></tr>
<tr><td>전용46㎡ 타입</td><td>9.24억원</td></tr>
<tr><td>전용51㎡ 타입</td><td>10.28억원</td></tr>
<tr><td>전용54㎡ 타입</td><td>11.00억원</td></tr>
<tr><td>전용57㎡ 타입</td><td>11.67억원</td></tr>
<tr><td>전용59㎡ 타입</td><td>12.19억원</td></tr>
<tr><td>전용84㎡ 타입</td><td>16.30억원</td></tr>
<tr><td>전용118㎡ 타입</td><td>22.21억원</td></tr>
<tr><td>전용132㎡ 타입</td><td>24.50억원</td></tr>
<tr><td>전용141㎡ 타입</td><td>25.26억원</td></tr>
<tr><td>전용150㎡ 타입</td><td>27.89억원</td></tr>
</table></td></tr>
</table>

	전용180㎡ 타입	32.04억원		
	전용230㎡ 타입	58.99억원		

(다)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86,395.5	감) 31.0	386,364.5	100.00	구역 북측 도로 내 사유지 1필지 제외
획지	소 계	287,096.9	증) 6,480.7	293,577.6	76.0	-
	공동주택	164,852.3	감) 23,653.3	141,199.0	36.5	-
	주상복합	122,244.6	증) 30,134.0	152,378.6	39.5	-
기타	소 계	6,722.1	감) 63.3	6,658.8	1.7	-
	종교시설	6,722.1	감) 63.3	6,658.8	1.7	-
정비기반시설	소 계	92,576.5	감) 6,448.4	86,128.1	22.3	-
	도 로	51,849.3	감) 3,055.0	48,794.3	12.6	도로선형 및 폭원 조정
	공 원 (주차장)	27,263.6 (4,044.1)	감) 3,591.1 (증) 7,028.3)	23,672.5 (11,072.4)	6.1	7개소 (문화공원3과 주차장 중복결정, 소공원1과 주차장 중복결정)
	교육시설	10,755.4	-	10,755.4	2.8	신설초
	공공청사	1,410.0	증) 202.5	1,612.5	0.4	-
	사회복지시설	1,298.2	감) 4.8	1,293.4	0.4	-

(라)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① 도로 (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226	23~25	보조 도로	210 (48)	한남동 524-1도 일대	한남동 618-5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17호 (2002.01.15)	한남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정	중로	2	14	15	집산 도로	500 (195)	한남동 543-8대 일대	보광동 80-2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590호 (78.11.8)	
기정	중로	2	15	15	집산 도로	532 (532)	한남동 642-17대 일대	한남동 568-237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변경	중로	2	15	15	집산 도로	400 (400)	한남동 649-17대 일대	한남동 568-237대 일대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21	18	집산 도로	161 (161)	보광동 259-4도 일대	보광동 264-88구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변경	중로	2	21	18	집산 도로	160 (160)	보광동 259-4도 일대	보광동 264-52대 일대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22	15	집산 도로	783 (311)	보광동 21-1대 일대	이태원동 20-3도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17-223호 (2017.6.29)	
기정	중로	3	1	12	집산 도로	265 (149)	이태원동 20-7대 일대	한남동 732-152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기정	중로	3	2	12	집산 도로	536 (536)	보광동 3-86대 일대	보광동 265-234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중로	3	2	12	집산 도로	484 (484)	보광동 3-86대 일대	보광동 265-204대 일대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3	12	집산 도로	306 (306)	한남동 568-177대 일대	보광동 3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변경	중로	3	3	12	집산 도로	266 (266)	한남동 568-88대 일대	보광동 3대 일대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4	12	집산 도로	742 (742)	한남동 647-39구 일대	한남동 732-191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변경	중로	3	4	12~15	집산 도로	816 (816)	한남동 618-2대 일대	한남동 732-191대 일대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84 (84)	보광동 265-916대 일대	보광동 265-694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17-223호 (2017.6.29)	
변경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15 (115)	보광동 265-916대 일대	보광동 265-204대 일대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1	4~18	특수 도로	98	보광동 248-8대 일대	보광동 245-3대 일대	보행자 전용 도로	-	서고 제2019-362호 (2019.11.7)	구역외
변경	소로	3	1	8	특수 도로	98 (86)	보광동 248-8대 일대	보광동 245-3대 일대	보행자 전용 도로	-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109 (109)	한남동 732-226대 일대	한남동 732-19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기정	소로	3	3	5~8	국지 도로	120 (92)	한남동 644-23일대	한남동 644-10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188호 (78.05.01)	한남 지구단위 계획구역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520 (520)	한남동 763-18도 일대	한남동 620-171종 일대	보행자우선도로	-	서고 제2017-223호 (2017.6.29)	
변경	소로	3	5	6	국지도로	651 (651)	한남동 763-18도 일대	한남동 3-97대 일대	보행자우선도로	-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102 (102)	한남동 568-514도 일대	보광동 1-15구 일대	일반도로	-	서고 제2017-223호 (2017.6.29)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18 (18)	한남동 732-23도 일대	한남동 732-23도 일대	보행자전용도로	-	서고 제2018-243호 (2018.8.2)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170 (108)	한남동 732-23도 일대	한남동 732-23도 일대	일반도로	-	서고 제2018-243호 (2018.8.2)	
기정	소로	3	9	4	국지도로	116 (30)	한남동 732-23도 일대	한남동 732-23도 일대	일반도로	-	서고 제2018-243호 (2018.8.2)	
변경	소로	3	9	4~6	국지도로	116 (30)	한남동 732-23도 일대	한남동 732-23도 일대	일반도로	-		주1) 입체적 도시계획 시설
신설	소로	3	10	6	특수도로	13 (13)	한남동 766-35대 일대	한남동 653-83대 일대	보행자전용도로	-		

※ ( )는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내 연장을 의미함
주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따름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15	중로 2-15	•연장변경 - 532m→400m	•법적 최대 도로 경사 12%초과로 경사 조정 •급경사지 현황도로를 활용한 진입로 계획 폐지
중로 2-21	중로 2-21	•연장변경 - 연장:161m→160m	•부정형한 도로선형 조정에 따른 연장 감소
중로 3-2	중로 3-2	•연장변경 - 536m→484m	•부정형한 도로선형 조정에 따른 연장 감소
중로 3-3	중로 3-3	•연장변경 - 306m→266m	•부정형한 도로선형 조정에 따른 연장 감소
중로 3-4	중로 3-4	•폭원·연장변경 - 폭원:12m→12~15m - 연장:742m→816m	•불필요하게 부정형한 도로선형 조정 •한남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기정 특별계획구역 지침 내 도로계획 변경 23.3.30.)으로 연계를 위한 교차로 위치 조정
소로 1-1	소로 1-1	•연장변경 - 84m→115m	•부정형한 도로선형 조정에 따른 연장 증가
소로 3-1	소로 3-1	•폭원변경 - 4~18m→8m	•2구역 경계부 부정형 보행자전용도로 정형화
소로 3-5	소로 3-5	•연장변경 - 520m→651m	•막다른 도로를 순환 가능한 도로로 조정
소로 3-9	소로 3-9	•폭원변경 - 4m→4~6m	•진입도로 확폭
소로 3-10	소로 3-10	•신설 - 폭원:6m, 연장:13m	•대사관로 방면으로 접근 가능한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② 주차장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노외주차장	한남동 732-126일대	4,044.1	증) 117.7	4,161.8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문화공원③ 지하에 중복결정
신설	3	노외주차장	한남동 647-21일대	-	증) 6,910.6	6,910.6	-	소공원① 지하에 중복결정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노외주차장	•면적변경 - 4,044.1㎡→4,161.8㎡	•도로(중로 3-4) 선형조정에 따른 면적변경
3	노외주차장	•신설 - 6,910.6㎡	•소공원① 지하주차장 신설

③ 공원 (변경)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원	문화공원	한남동 620-171일대	6,133.8	감)3,184.6	2,949.2	서고 제2017-223호 (2017.6.29)	-
변경	3	공원	소공원	한남동 568-105일대	2,576.4	증)465.3	3,041.7	서고 제2017-223호 (2017.6.29)	-
변경	3	공원	문화공원	한남동 732-126일대	4,044.1	증)117.7	4,161.8	서고 제2017-223호 (2017.6.29)	주차장② 중복결정
변경	1	공원	어린이 공원	보광동 265-122일대	1,615.9	증)391.8	2,007.7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
변경	3	공원	어린이 공원	보광동 35-13일대	7,534.9 (5,973.3)	감)4,679.1	2,855.8 (1,294.2)	서고 제2017-223호 (2017.6.29)	-
신설	1	공원	소공원	한남동 647-21일대	-	증)6,583.7	6,583.7	-	주차장③ 중복결정
변경	2	공원	소공원	한남동 766-2일대	4,643.8	감)1,009.6	3,634.2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
폐지	4	공원	소공원	한남동 561-1일대	2,276.3	감)2,276.3	-	서고 제2017-223호 (2017.6.29)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문화공원	•면적변경 - 6,133㎡→2,949.2㎡	•부정형 선형 공원을 고점형 공원으로 변경 (제천정, 부군당, 한강 전망대 조성)
3	소공원	•면적변경 - 2,576.4㎡→3,041.7㎡	•한남역 · 한강 방면 연계, 문화공원1~공공보행통로와 연계 •우사단로~한남역, 한강나들목으로 이어지는 공원축 조성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문화공원	•면적변경 - 4,044.1㎡→4,161.8㎡	•도로(중로 3-4)선형 조정에 따른 면적변경 •우사단로 상업가로와 다국적 문화 특성을 고려한 거점 공원 조성
1	어린이공원	•면적변경 - 1,615.9㎡→2,007.7㎡	•구역 중심부 어린이를 위한 놀이 휴식공간 조성
3	어린이공원	•면적변경 - 7,536.3㎡→2,857.2㎡	•4구역 경계부 공원 기능 축소에 따른 면적변경 •구역경계부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 및 단지 내~서빙고로 이어지는 연결동선 확보
1	소공원	•신설 - 6,583.7㎡	•북측 저층주거지와 연결성 확보 및 일조영향 최소화, 지형적 단차극복을 위한 공원 신설
2	소공원	•면적변경 - 4,643.8㎡→3,634.2㎡	•주변 저층주거지와 함께 공유하는 휴식공간 확보 및 종교용지 신설에 따른 면적 변경
4	소공원	•폐지	•소공원3과 통합조성

④ 공공청사 (변경)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	공공청사	주민센터	보광동 265-122일대	1,410.0	증) 202.5	1,612.5	서고 제2017-223호 (2017.6.29)	주민센터, 자치회관, 치안센터 복합화

▌ 공공청사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공공청사	•면적변경 - 1,410㎡→1,612.5㎡	•도로(중로 2-15) 선형조정에 따른 면적 변경

⑤ 학교 (변경없음)

▌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학교	초등학교	한남동 665-9일대	10,755.4	-	10,755.4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

⑥ 사회복지시설 (변경)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사회복지시설	보광동 265-999일대	1,298.2	감) 4.8	1,293.4	서고 제2017-223호 (2017.6.29)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사회복지시설	•면적변경 - 1,298.2㎡→1,293.4㎡	•도로(소로 1-1)선형 조정에 따른 면적변경

⑦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입체적 결정 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소로 3-9	도로	한남동 732-23	길이	-	증) 30m	30m	-	촉진구역 내에 한함
				폭	-	증) 6m	6m		
				높이	-	증) 지하 2m~지하 8m외	지하 2m~지하 8m외		
				면적	-	증) 203.1㎡	203.1㎡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9	도로	•도로 확폭 및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신설 - 폭원 4m→4~6m	•부정형하고 협소한 1-2BL,1-3BL의 법정 주차대수 확보를 위해 기존 도로기능은 유지하면서 지하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 (지하2m~지하 8m미만 : 사업시행자, 지하8m미만~지하2m초과 : 용산구청)

※ 입체적 결정 범위 높이의 기준은 지표면(계획지반고)으로 함
※ 입체적 결정 범위 높이는 측량 및 세부시설 설계를 통해 높이를 확정하고, 사업준공 전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변경)
※ 도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지하공간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라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임

(마)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 기정

▌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

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기정	한남3재정비 촉진구역	386,395.5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2,444	-	-	2,444	-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평균 층수	최고 층수	최고 높이
기정	한남3 재정비 촉진 구역	386,395.5	3-1-1	3,704.5	용산구 한남동 732-19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150이하	-	5층	18m
			3-1-2	3,231.4	용산구 한남동 732-3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150이하	-	5층	18m
			3-1-3	5,001.0	용산구 한남동 686-15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150이하	-	5층	18m
			3-1-4	8,889.4	용산구 한남동 653-33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150이하	-	5층	18m
			3-2-1	56,465.8	용산구 한남동 765-8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178.5이하	-	12층	39m
			3-2-2	52,217.3	용산구 보광동 265-168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154.8이하	-	5층	18m
			3-3	16,298.4	용산구 한남동 647-46번지일대	주상복합	50이하	221.8이하	-	15층	48m
			3-4-1	18,205.5	용산구 한남동 609-8번지일대	주상복합	50이하	250이하	-	15층	48m
			3-4-2	17,373.2	용산구 한남동 557-39번지일대	주상복합	50이하	250이하	-	15층	48m
			3-5	9,787.9	용산구 보광동 15-18번지일대	공동주택	50이하	250이하	-	15층	48m
			3-6	24,288.5	용산구 보광동 3-285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200이하	-	12층	39m
			3-7-1	15,958.0	용산구 보광동 251-5번지일대	주상복합	60이하	391.7이하	-	20층	67m
			3-7-2	54,409.5	용산구 보광동 11-1번지일대	주상복합	60이하	391.7이하	-	22층	73m
			3-8	1,527.7	용산구 보광동	종교시설	60이하	150이하	-	5층	18m

					265-443대일대					
			3-9	837.4	용산구 한남동 653-70대일대	종교시설	60이하	200이하	-	7층	25m
			3-10	2,598.5	용산구 한남동 568-91대일대	종교시설	60이하	200이하	-	7층	25m
			3-11	1,758.5	용산구 보광동 265-35대일대	종교시설	60이하	200이하	-	7층	25m
			공공 청사	1,410.0	용산구 보광동 265-124대일대	공공업무	60이하	200이하	-	7층	25m
			사회 복지 시설	1,298.2	용산구 보광동 265-999대일대	복지시설	60이하	150이하	-	5층	18m
			학교	10,755.4	용산구 한남동 665-9번지일대	교육시설	60이하	150이하	-	5층	18m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미만 : 60%이상 (80%이상 권장)
- 85㎡초과 20%이상 계획시 : 초과세대수 만큼의 부분임대 설치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20%이상

( ) : 부분임대

구분 (전용면적)	총세대수	분양세대	임대세대	비율(%)
40㎡미만	356	-	356	6.1
40~50㎡미만	356	-	356	6.1
50~60㎡미만	2,305	2,141	164	39.6
60~85㎡미만	1,851	1,851	-	31.9
85㎡이상	948	948	-	16.3
합 계	5,816(192)	4,940(192)	876	100.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배치, 높이 및 형태 지침도 참조

※ 주택의 규모는 사업시행인가 시 관련 법규상의 세부건축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공시설 설치와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불합리한 구역계 조정을 포함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 변경

▌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

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변경	한남3재정비 촉진구역	386,364.5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2,478	-	-	2,478	-	

※ 거주실태조사 결과 등 현황 반영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평균 층수	최고 층수	최고 높이
변경	한남3 재정비 촉진 구역	386,364.5	3-1-1	3,717.3	용산구 한남동 732-19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150이하	-	4층	18m
			3-1-2	3,163.5	용산구 한남동 732-3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150이하	-	5층	18m
			3-1-3	4,998.9	용산구 한남동 686-15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150이하	-	5층	18m
			3-1-4	8,358.1	용산구 한남동 653-33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150이하	-	5층	18m
			3-2-1	42,788.1	용산구 한남동 765-8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177.24이하	-	12층	39m
			3-2-2	40,952.8	용산구 보광동 265-168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167.65 이하	-	11층	36m
			3-3	15,134.2	용산구 한남동 647-46번지일대	주상복합	50이하	250이하	-	14층	46m
			3-4	62,463.4	용산구 한남동 609-8번지일대	주상복합	50이하	250이하	-	18층	58m
			3-5	9,428.1	용산구 보광동 15-18번지일대	공동주택	50이하	250이하	-	15층	48m
			3-6	25,241.2	용산구 보광동 3-285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200이하	-	15층	48m
			3-7-1	17,512.4	용산구 보광동	주상복합	60이하	400이하	-	17층	67m

					251-5번지일대						
			3-7-2	53,650.2	용산구 보광동 11-1번지일대	주상복합	60이하	400이하	-	22층	73m
			3-8	4,679.1	용산구 보광동 35-13번지일대	주상복합	50이하	250이하	-	12층	39m
			3-9	1,761.7	용산구 보광동 265-35대일대	종교시설	60이하	200이하	-	7층	25m
			3-10	837.4	용산구 한남동 653-70대일대	종교시설	60이하	200이하	-	7층	25m
			3-11	1,980.2	용산구 보광동 3-98대일대	종교시설	60이하	200이하	-	7층	25m
			3-12	1,650.2	용산구 보광동 265-443대일대	종교시설	60이하	150이하	-	5층	18m
			3-13	429.3	용산구 한남동 653-105대일대	종교시설	60이하	150이하	-	5층	18m
			공공 청사	1,612.5	용산구 보광동 265-122대일대	공공업무	60이하	200이하	-	7층	25m
			사회 복지 시설	1,293.4	용산구 보광동 265-999대일대	복지시설	60이하	200이하	-	7층	25m
			학교	10,755.4	용산구 한남동 665-9번지일대	교육시설	60이하	150이하	-	5층	18m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미만 : 60%이상 (80%이상 권장)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20%이상

( ) : 부분임대

구분 (전용면적)	총세대수	분양세대	임대세대	비율(%)
40㎡미만	471	55	416	7.9
40~50㎡미만	402	67	335	6.7
50~60㎡미만	2,022	1,753	269	33.9
60~85㎡미만	1,660	1,660	-	27.8
85㎡이상	1,415	1,415	-	23.7
합 계	5,970	4,950	1,020	100.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배치, 높이 및 형태 지침도 참조

※ 주택의 규모는 사업시행인가 시 관련 법규상의 세부건축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공시설 설치와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불합리한 구역계 조정을 포함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 최고높이는 해발 90m 이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3) 한남4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4) 한남5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마.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6,395.5	감) 31.0	386,364.5	

※ 변경사유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북측 도로 내 사유지 1필지 제외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86,395.5	감) 31.0	386,364.5	100.0	-
주거지역	일반 주거 지역	소 계	316,028.0	감) 415.4	315,612.6	81.7	-
		제1종일반주거지역	152,992.6	감) 32,052.9	120,939.7	31.3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01,641.9	감) 9,623.9	92,018.0	23.8	-
		제3종일반주거지역	61,393.5	증) 41,261.4	102,654.9	26.6	-
	준주거지역		70,367.5	증) 384.4	70,751.9	18.3	-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한남동 765-3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7,746.8	•건축물 층수 완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밀도는 1종 유지)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보광동 3-282 일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0,802.7	•2구역과 통합 조성하는 사회복지시설 용도지역 간 정합성 확보
	한남동 647-25 일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제3종일반주거지역	41,261.4	•공원 위치 및 형태 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 •동일 블록(주상복합용지) 내 용도지역 혼재지역 조정
	보광동 264-56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84.4	•도로선형 조정 및 블록 형태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준주거 블록간 부정형 도로 정형화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226	23~25	보조 도로	210 (48)	한남동 524-1도 일대	한남동 618-5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17호 (2002.01.15)	한남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정	중로	2	14	15	집산 도로	500 (195)	한남동 543-8대 일대	보광동 80-2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590호 (78.11.8)	
기정	중로	2	15	15	집산 도로	532 (532)	한남동 642-17대 일대	한남동 568-237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변경	중로	2	15	15	집산 도로	400 (400)	한남동 649-17대 일대	한남동 568-237대 일대	일반 도로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1	18	집산 도로	161 (161)	보광동 259-4도 일대	보광동 264-88구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변경	중로	2	21	18	집산 도로	160 (160)	보광동 259-4도 일대	보광동 264-52대 일대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22	15	집산 도로	783 (311)	보광동 21-1대 일대	이태원동 20-3도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17-223호 (2017.6.29)	
기정	중로	3	1	12	집산 도로	265 (149)	이태원동 20-7대 일대	한남동 732-152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기정	중로	3	2	12	집산 도로	536 (536)	보광동 3-86대 일대	보광동 265-234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변경	중로	3	2	12	집산 도로	484 (484)	보광동 3-86대 일대	보광동 265-204대 일대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3	12	집산 도로	306 (306)	한남동 568-177대 일대	보광동 3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변경	중로	3	3	12	집산 도로	266 (266)	한남동 568-88대 일대	보광동 3대 일대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4	12	집산 도로	742 (742)	한남동 647-39구 일대	한남동 732-191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변경	중로	3	4	12~15	집산 도로	816 (816)	한남동 618-2대 일대	한남동 732-191대 일대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84 (84)	보광동 265-916대 일대	보광동 265-694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17-223호 (2017.6.29)	
변경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15 (115)	보광동 265-916대 일대	보광동 265-204대 일대	일반 도로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	4~18	특수 도로	98	보광동 248-8대 일대	보광동 245-3대 일대	보행자 전용 도로	-	서고 제2019-362호 (2019.11.7)	구역외
변경	소로	3	1	8	특수 도로	98 (86)	보광동 248-8대 일대	보광동 245-3대 일대	보행자 전용 도로	-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109 (109)	한남동 732-226대 일대	한남동 732-19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기정	소로	3	3	5~8	국지 도로	120 (92)	한남동 644-23일대	한남동 644-10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188호 (78.05.01)	한남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520 (520)	한남동 763-18도 일대	한남동 620-171종 일대	보행자 우선 도로	-	서고 제2017-223호 (2017.6.29)	
변경	소로	3	5	6	국지 도로	651 (651)	한남동 763-18도 일대	한남동 3-97대 일대	보행자 우선 도로	-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102 (102)	한남동 568-514도 일대	보광동 1-15구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17-223호 (2017.6.29)	
기정	소로	3	7	6	국지 도로	18 (18)	한남동 732-23도 일대	한남동 732-23도 일대	보행자 전용 도로	-	서고 제2018-243호 (2018.8.2)	
기정	소로	3	8	6	국지 도로	170 (108)	한남동 732-23도 일대	한남동 732-23도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18-243호 (2018.8.2)	
기정	소로	3	9	4	국지 도로	116 (30)	한남동 732-23도 일대	한남동 732-23도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18-243호 (2018.8.2)	
변경	소로	3	9	4~6	국지 도로	116 (30)	한남동 732-23도 일대	한남동 732-23도 일대	일반 도로	-		주1) 입체적 도시계획 시설
신설	소로	3	10	6	특수 도로	13 (13)	한남동 766-35대 일대	한남동 653-83대 일대	보행자 전용 도로	-		

※ ( )는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내 연장을 의미함
주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따름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15	중로 2-15	•연장변경 - 532m→400m	•법적 최대 도로 경사 12%초과로 경사 조정 •급경사지 현황도로를 활용한 진입로 계획 폐지
중로 2-21	중로 2-21	•연장변경 - 연장:161m→160m	•부정형한 도로선형 조정에 따른 연장 감소
중로 3-2	중로 3-2	•연장변경 - 536m→484m	•부정형한 도로선형 조정에 따른 연장 감소
중로 3-3	중로 3-3	•연장변경 - 306m→266m	•부정형한 도로선형 조정에 따른 연장 감소
중로 3-4	중로 3-4	•폭원·연장변경 - 폭원:12m→12~15m - 연장:742m→816m	•불필요하게 부정형한 도로선형 조정 •한남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기정 특별계획구역 지침 내 도로계획 변경 23.3.30.)으로 연계를 위한 교차로 위치 조정
소로 1-1	소로 1-1	•연장변경 - 84m→115m	•부정형한 도로선형 조정에 따른 연장 증가
소로 3-1	소로 3-1	•폭원변경 - 4~18m→8m	•2구역 경계부 부정형 보행자전용도로 정형화
소로 3-5	소로 3-5	•연장변경 - 520m→651m	•막다른 도로를 순환 가능한 도로로 조정
소로 3-9	소로 3-9	•폭원변경 - 4m→4~6m	•진입도로 확폭
소로 3-10	소로 3-10	•신설 - 폭원:6m, 연장:13m	•대사관로 방면으로 접근 가능한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노외주차장	한남동 732-126일대	4,044.1	증) 117.7	4,161.8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문화공원③ 지하에 중복결정
신설	3	노외주차장	한남동 647-21일대	-	증) 6,910.6	6,910.6	-	소공원① 지하에 중복결정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노외주차장	•면적변경 - 4,044.1㎡→4,161.8㎡	•도로(중로 3-4) 선형조정에 따른 면적변경
3	노외주차장	•신설 - 6,910.6㎡	•소공원① 지하주차장 신설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원	문화공원	한남동 620-171일대	6,133.8	증)3,184.6	2,949.2	서고 제2017-223호 (2017.6.29)	-
변경	3	공원	문화공원	한남동 732-126일대	4,044.1	증)117.7	4,161.8	서고 제2017-223호 (2017.6.29)	주차장② 중복결정
변경	1	공원	어린이 공원	보광동 265-122일대	1,615.9	감)391.8	2,007.7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
변경	3	공원	어린이 공원	보광동 35-13일대	7,536.3 (5,973.3)	감)4,679.1	2,857.2 (1,294.2)	서고 제2017-223호 (2017.6.29)	-
신설	1	공원	소공원	한남동 647-21일대	-	증)6,583.7	6,583.7	-	주차장③ 중복결정
변경	2	공원	소공원	한남동 766-2일대	4,643.8	감)1,009.6	3,634.2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
변경	3	공원	소공원	한남동 568-105일대	2,576.4	증)465.3	3,041.7	서고 제2017-223호 (2017.6.29)	-
폐지	4	공원	소공원	한남동 561-1일대	2,276.3	감)2,276.3	-	서고 제2017-223호 (2017.6.29)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문화공원	•면적변경 - 6,133.8㎡→2,949.2㎡	•부정형 선형 공원을 거점형 공원으로 변경
3	문화공원	•면적변경 - 4,044.1㎡→4,161.8㎡	•도로(중로 3-4)선형 조정에 따른 면적변경
1	어린이공원	•면적변경 - 1,615.9㎡→2,007.7㎡	•구역 중심부 어린이를 위한 놀이 휴식공간 조성
3	어린이공원	•면적변경 - 7,536.3㎡→2,857.2㎡	•4구역 경계부 공원 기능 축소에 따른 면적 변경
1	소공원	•신설 - 6,583.7㎡	•북측 저층주거지와 연결성 확보 및 일조영향 최소화, 지형적 단차극복을 위한 공원 신설
2	소공원	•면적변경 - 4,643.8㎡→3,634.2㎡	•주변 저층주거지와 함께 공유하는 휴식공간 확보 및 종교용지 신설에 따른 면적 변경
3	소공원	•면적변경 - 2,576.4㎡→3,041.7㎡	•우사단로~한남역, 한강나들목으로 이어지는 공원축 조성
4	소공원	•폐지	•소공원③과 통합조성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	공공 청사	주민센터	보광동 265-124일대	1,410.0	증) 202.5	1,612.5	서고 제2017-223호 (2017.6.29)	주민센터, 자치회관, 치안센터 복합화

▌공공청사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공공청사	•면적변경 - 1,410㎡→1,612.5㎡	•도로(중로 2-15) 선형조정에 따른 면적 변경

▌학교 결정(변경없음)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학교	초등학교	한남동 665-9일대	10,755.4	-	10,755.4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사회복지시설	보광동 265-999일대	1,298.2	감) 4.8	1,293.4	서고 제2017-223호 (2017.6.29.)	실버케어센터

▌사회복지시설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사회복지시설	•면적변경 - 1,298.2㎡→1,293.4㎡	•도로(소로 1-1)선형 조정에 따른 면적변경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입체적 결정 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소로 3-9	도로	한남동 732-23	길이	-	증) 30m	30m	-	촉진구역 내에 한함
				폭	-	증) 6m	6m		
				높이	-	증) 지하 2m~지하8m외	지하 2m~지하8m외		
				면적	-	증) 203.1㎡	203.1㎡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9	도로	•도로 확폭 및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신설 - 폭원 4m→4~6m	•부정형하고 협소한 1-2BL. 1-3BL의 법정 주차대수 확보를 위해 기존 도로기능은 유지하면서 지하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 (지하2m~지하8m미만 : 사업시행자, 지하8m미만~지하2m초과 : 용산구청)

※ 입체적 결정 범위 높이의 기준은 지표면(계획지반고)으로 함
※ 입체적 결정 범위 높이는 측량을 통해 지하매설물(도로측구의 빗물받이 등)의 높이를 확정하고,사업준공 전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변경)
※ 도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지하공간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라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임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획지번호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획지	3-1-1	3,704.5	증) 12.8	3,717.3	
변경	획지	3-1-2	3,231.4	감) 67.9	3,163.5	
변경	획지	3-1-3	5,001.0	감) 2.1	4,998.9	
변경	획지	3-1-4	8,889.4	감) 531.3	8,358.1	
변경	획지	3-2-1	56,465.8	감) 13,677.7	42,788.1	
변경	획지	3-2-2	52,217.3	감) 11,264.5	40,952.8	
변경	획지	3-3	16,298.4	감) 1,164.2	15,134.2	
변경	획지	3-4-1	18,205.5	증) 44,257.9	62,463.4	
변경	획지	3-4-2	17,373.2	감) 17,373.2	-	
변경	획지	3-5	9,787.9	감) 359.8	9,428.1	
변경	획지	3-6	24,288.5	증) 952.7	25,241.2	
변경	획지	3-7-1	15,958.0	증) 1,554.4	17,512.4	
변경	획지	3-7-2	54,409.5	감) 759.3	53,650.2	
변경	획지	3-8	1,527.7	증) 3,151.4	4,679.1	기정 3-8획지는 3-12획지로 변경
변경	획지	3-9	837.4	증) 924.3	1,761.7	기정 3-9획지는 3-10획지로 변경
변경	획지	3-10	2,598.5	감) 1,761.1	837.4	기정 3-10획지는 3-11획지로 변경
변경	획지	3-11	1,758.5	증) 221.7	1,980.2	기정 3-11획지는 3-9획지로 변경
변경	획지	3-12	-	증) 1,650.2	1,650.2	
변경	획지	3-13	-	증) 429.3	429.3	
변경	획지	공공청사	1,410.0	증) 202.5	1,612.5	
변경	획지	사회복지시설	1,298.2	감) 4.8	1,293.4	
변경	획지	학교	10,755.4	-	10,755.4	

○ 건축물 용도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획지		건축물 용도	비 고
준주거용지	3-7-1, 3-7-2	◦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변경없음
공동주택 용지	3-1-1, 3-1-2, 3-1-3, 3-1-4	◦ 공동주택 등	
	3-2-1, 3-2-2	◦ 공동주택 등	변경없음
	3-3	◦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변경없음
	3-4	◦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3-5	◦ 공동주택 등	
	3-6, 3-8	◦ 공동주택 등	3-8획지 신설
종교 시설용지	3-9, 3-10, 3-11, 3-12, 3-13	◦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등	3-12, 3-13획지 신설
기반 시설용지	공공청사	◦ 제1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변경없음
	사회복지시설	◦ 노유자시설 등	
	학교	◦ 교육연구시설 등	

※ 건축물 용도는 재정비촉진계획 건축시설계획에서 정한 주된 용도에 따름

▌ 건폐율 계획(변경없음)

▌ 용적률 계획(변경)

■ 주택용지

구분		면적(㎡)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한남3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190% 이하	-	232.5% 이하	정비계획 용적률 232.47%
	변경	190% 이하	-	237.07% 이하	정비계획 용적률 236.51%

■ 기반시설 등 기타용지

구분		면적(㎡)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한남3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3-8	150% 이하	-	-	-
		3-9, 3-10, 3-11	200% 이하			
		공공청사	200% 이하			
		사회복지시설	150% 이하			
		학교	150% 이하			
	변경	3-9, 3-10, 3-11	200% 이하	-	-	-
		3-12, 3-13	150% 이하			
		공공청사	200% 이하			
		사회복지시설	200% 이하			
		학교	150% 이하			

▮ 높이 계획(변경)

구분	높이기준		비 고
	기정	변경	
3-1-1	최고 4층 / 18m 이하		
3-1-2	최고 5층 / 18m 이하		
3-1-3	최고 5층 / 18m 이하		
3-1-4	최고 5층 / 18m 이하		
3-2-1	최고 12층 / 39m 이하		
3-2-2	최고 5층 / 18m 이하	최고 11층 / 36m 이하	
3-3	최고 15층 / 48m 이하	최고 14층 / 46m 이하	
3-4-1	최고 15층 / 48m 이하	최고 18층 / 58m 이하	
3-5	최고 15층 / 48m 이하	최고 15층 / 48m 이하	
3-6	최고 12층 / 39m 이하	최고 15층 / 48m 이하	
3-7-1	최고 17층 / 67m 이하		
3-7-2	최고 22층 / 73m 이하		
3-8	최고 5층 / 18m 이하	최고 12층 / 39m 이하	
3-9	최고 7층 / 25m 이하		
3-10	최고 7층 / 25m 이하		
3-11	최고 7층 / 25m 이하		
3-12	-	최고 5층 / 18m 이하	
3-13	-	최고 5층 / 18m 이하	
공공청사	최고 7층 / 25m 이하		

구분	높이기준		비 고
	기정	변경	
사회복지시설	최고 5층 / 18m 이하		
학교	최고 5층 / 18m 이하		

※ 최고높이는 해발 90m 이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구분	적용위치	기정	변경	비고
건축한계선	제1종일반주거지역	1m	2m	법정 2m 후퇴 적용
	제2종일반주거지역	1~2m	3m	법정 3m 후퇴적용(공공청사, 종교시설 포함)
	제3종일반주거, 준주거지역	3m	변경없음	-
벽면한계선	지구통경축(보광로) 고층부 이격	6m	변경없음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에 따른 건축선 고층부 3m 추가 후퇴
공공보행통로	2~6BL 단지 내부	3개소	1개소(6m)	기존 분리 되어있던 보행동선을 하나의 동선으로 이어 이동 편리성 증가
	4BL 단지 내부	-	1개소(15m)	우사단로와 한강을 잇고, 통경축을 형성하는 공공보행통로 조성
	7BL 단지 내부	1개소	변경없음	보광로변 공개공지에서 진입하여 단지를 가로지르는 공공보행통로 조성

▢ 2024년 제9차(’ 24.12.2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분	심의결과	심의의견
제9차 도시계획 위원회	수정가결	〈금회 시장 수정가결 요청사항과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사항에 다음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 시장 수정가결 요청사항 이외의 경우에 한해,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사항을 반영
		- 남측 어린이공원3은 한강변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고 공원 효용성 측면을 고려한 계획 수립을 검토
		- 북측에 신설되는 소공원 및 주차장은 옹벽으로 인한 위화감을 해소하고, 지형단차를 활용하여 역동적인 공원계획을 수립
		- 7-2BL 공공보행통로는 단지 외곽 도로변에 설치하는 방안 검토
		-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는 용익물권(지역권 등) 설치 검토
		- 다음 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건축위원회(통합심의) 등 관련심의에서 적정성을 논의할 것 · 한강변 건축물 높이 조정을 통해 한강변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조성 · 도로 및 지반레벨 조정을 통해 조화로운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단지내 과도한 옹벽설치 지양 · 2-4BL내 공공보행통로 주변으로 커뮤니티시설 배치 및 조경녹지시설 보완 · 보광로변 건축물 분적 및 디자인 개선을 통해 위압감을 최소화하는 방안 검토

▢ 2025년 제4차(’ 25.4.1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분	심의결과	심의의견
제4차 도시계획 위원회	수정가결	〈재열람공고에 따른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 재열람공고(’ 25.1.31.~2.14.) 시 제기된 교육청 · 주민 의견(학교 회복) 반영코자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공공기여(순부담) · 용적률, 건축물 계획 등 변경
		- 다음 사항들을 검토 · 반영하여 통합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등 시행 ·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 남측에 밀집된 주민공동시설 분산배치 검토 · (교육청) 서울시 내 폐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근지역 학교별 통학권역, 취학률 예측 등 학교 신설 타당성(필요성) 근거 제시 필요

바.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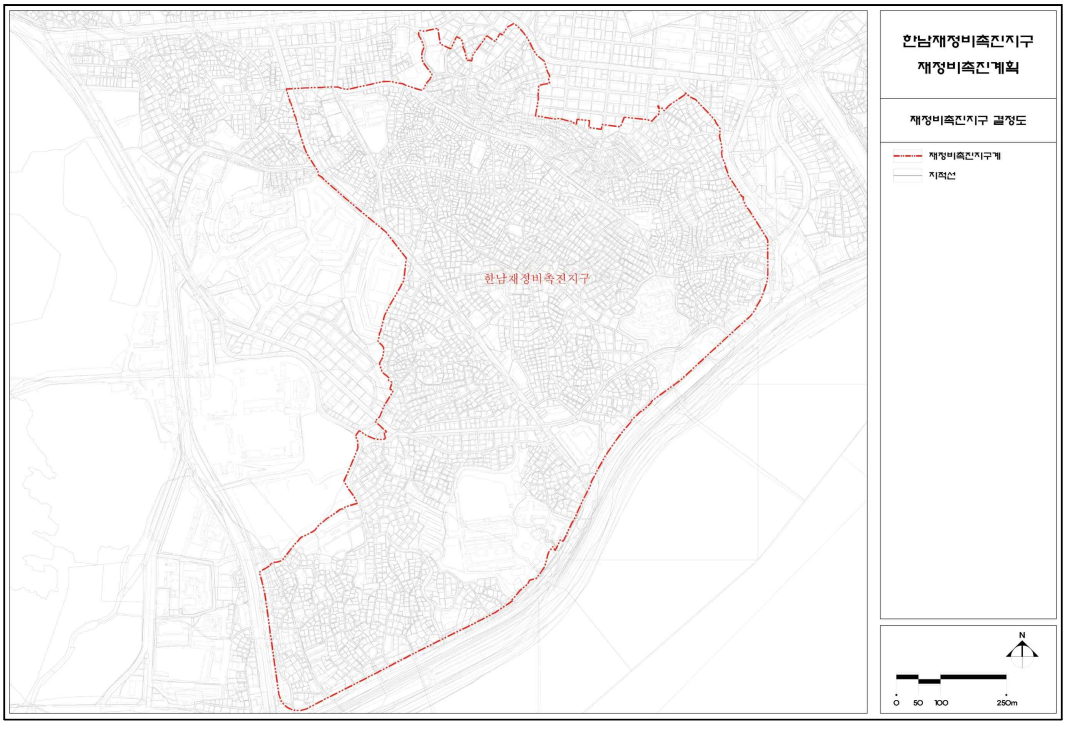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사.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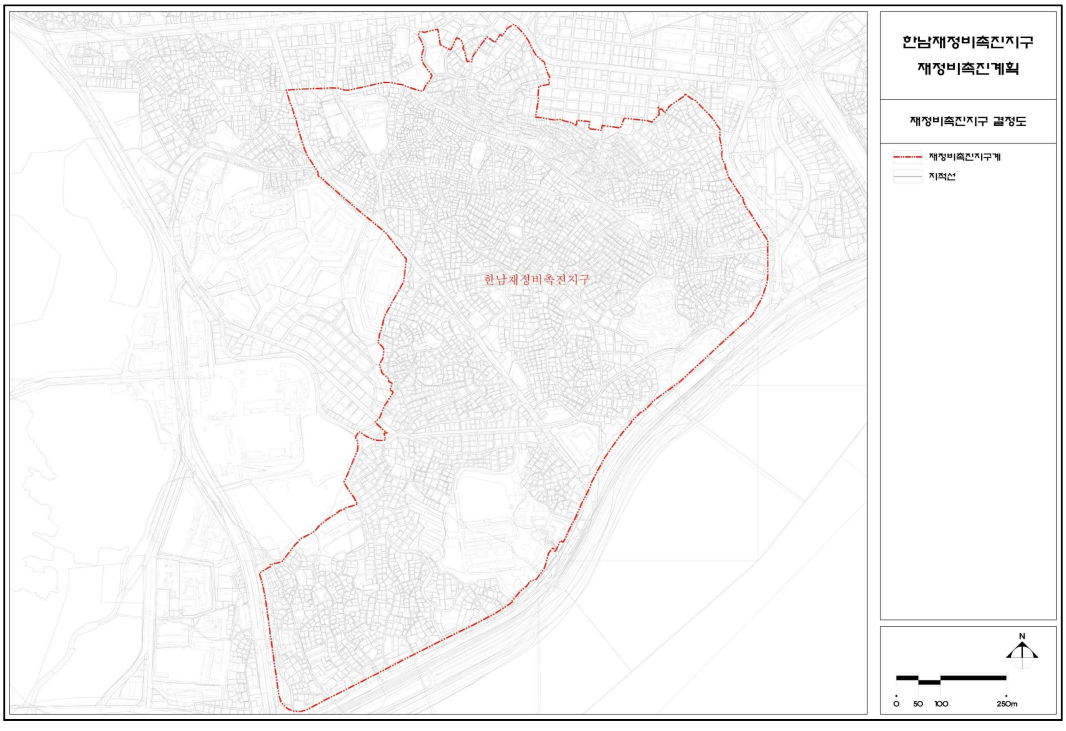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실 재정비촉진사업과 (☎02)2133-7218) 및 용산구 도시관리국 재정비사업과(☎02)2199-7442)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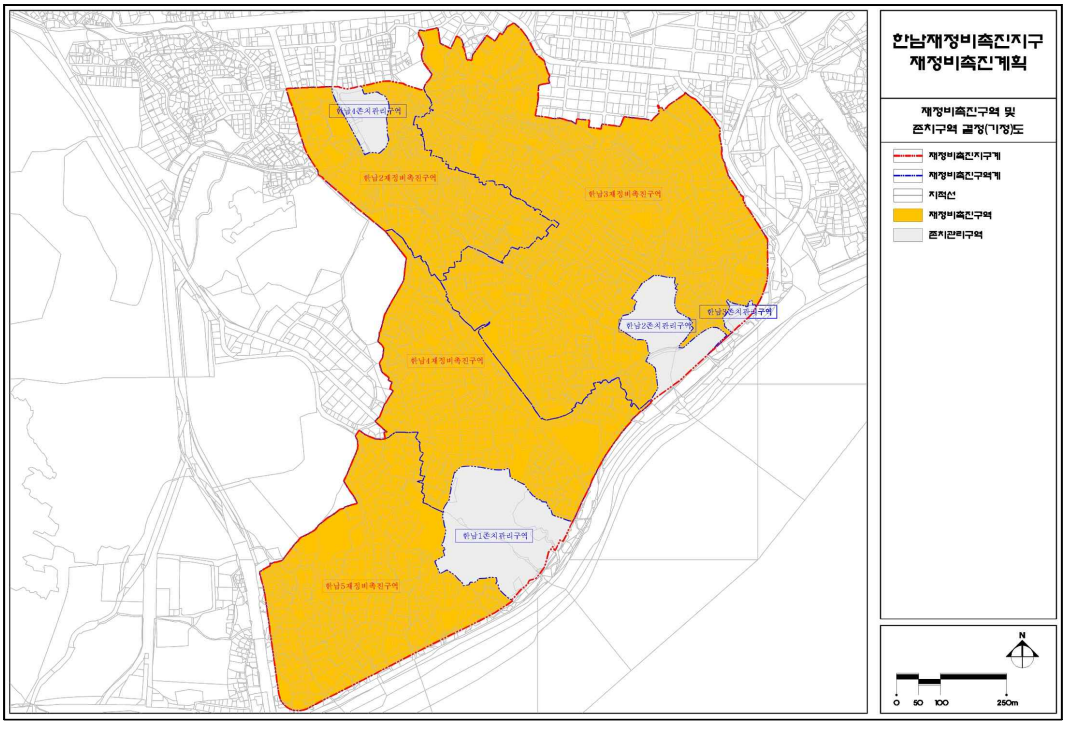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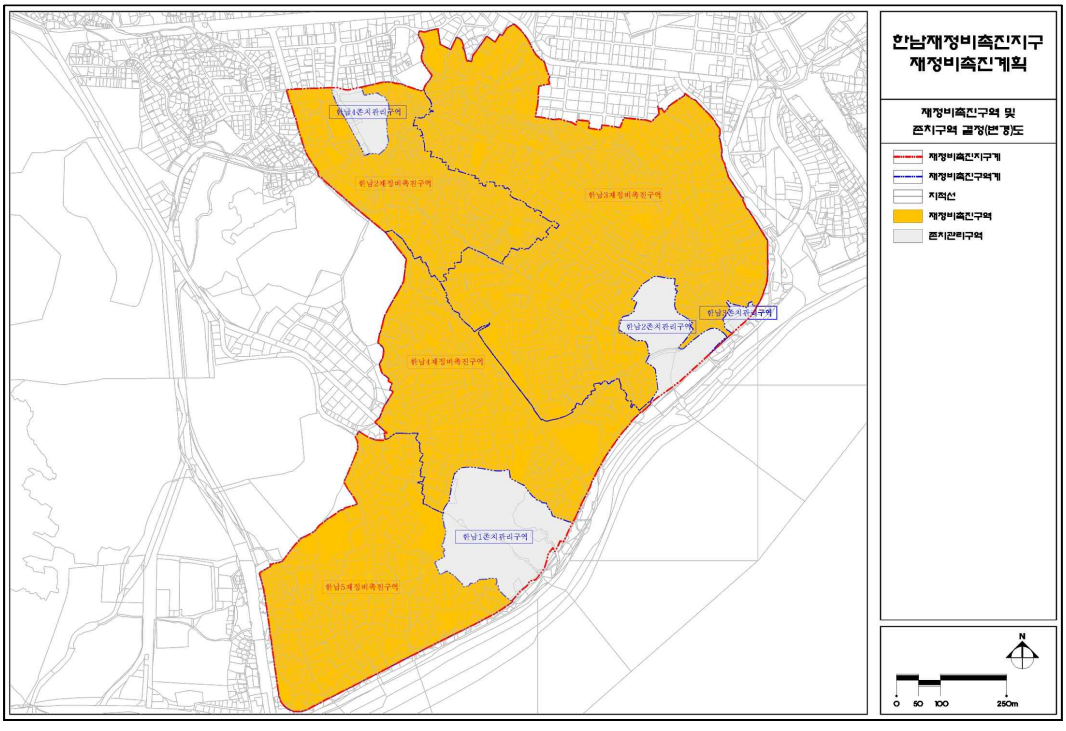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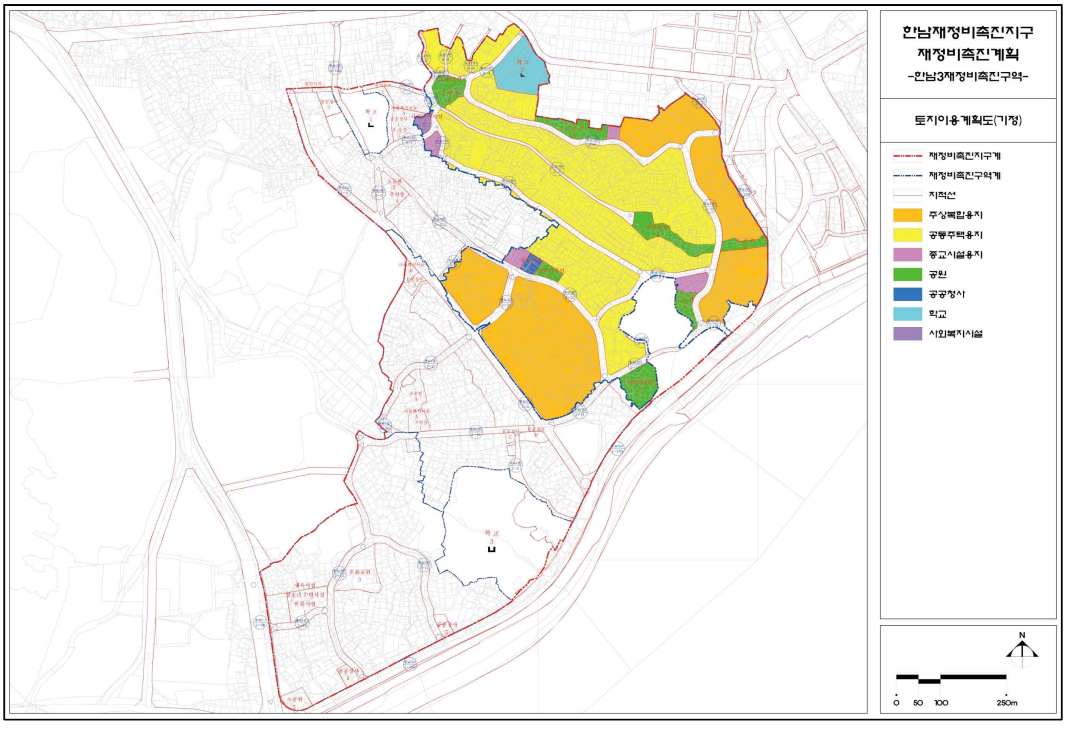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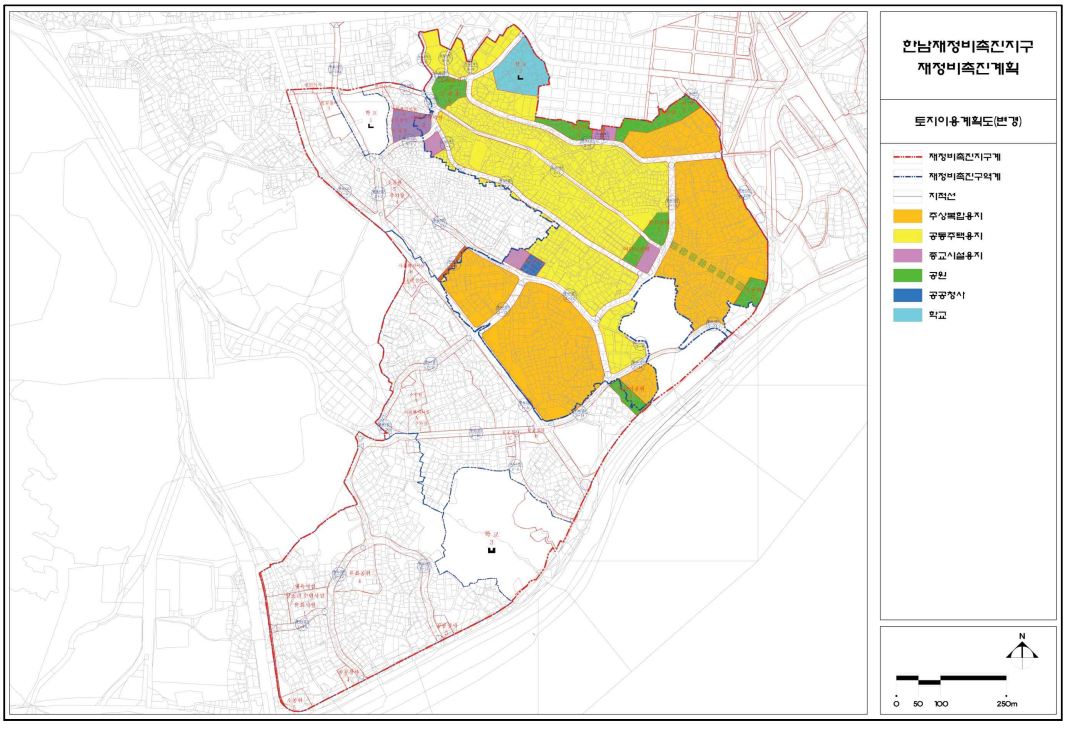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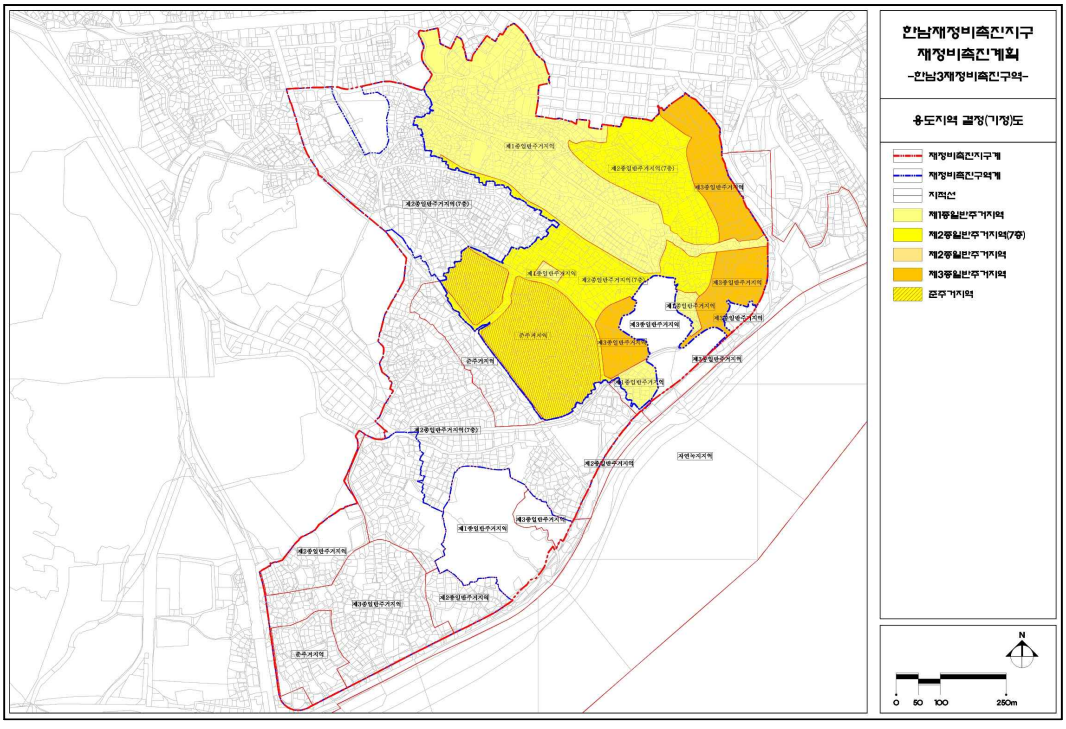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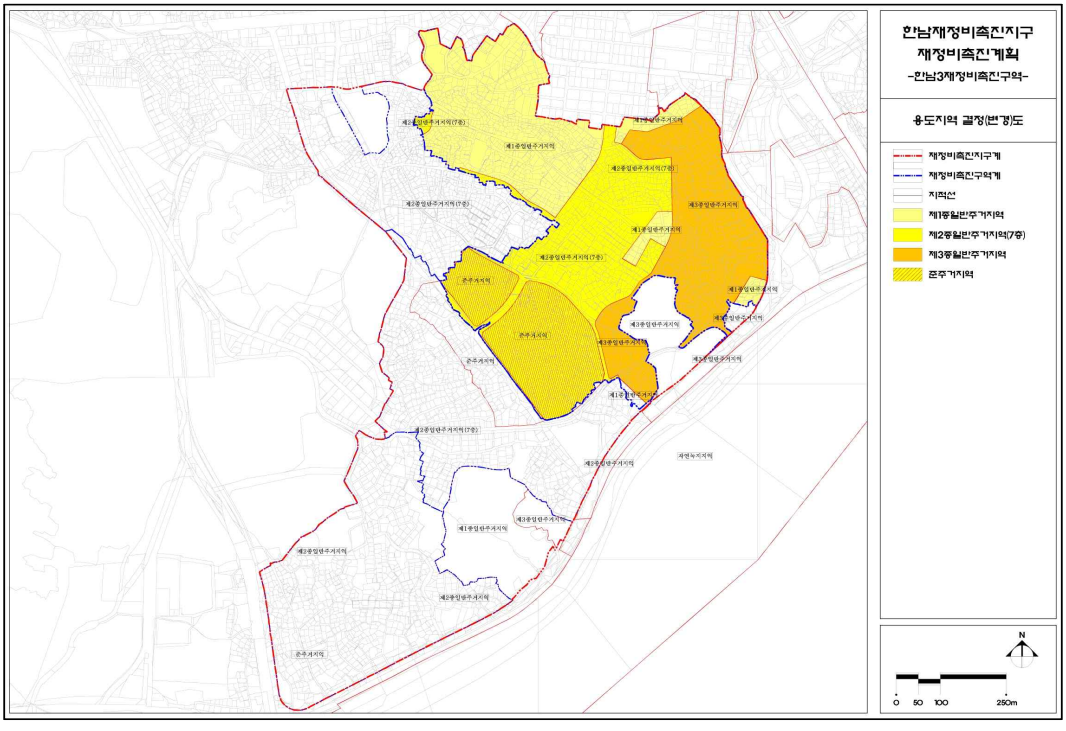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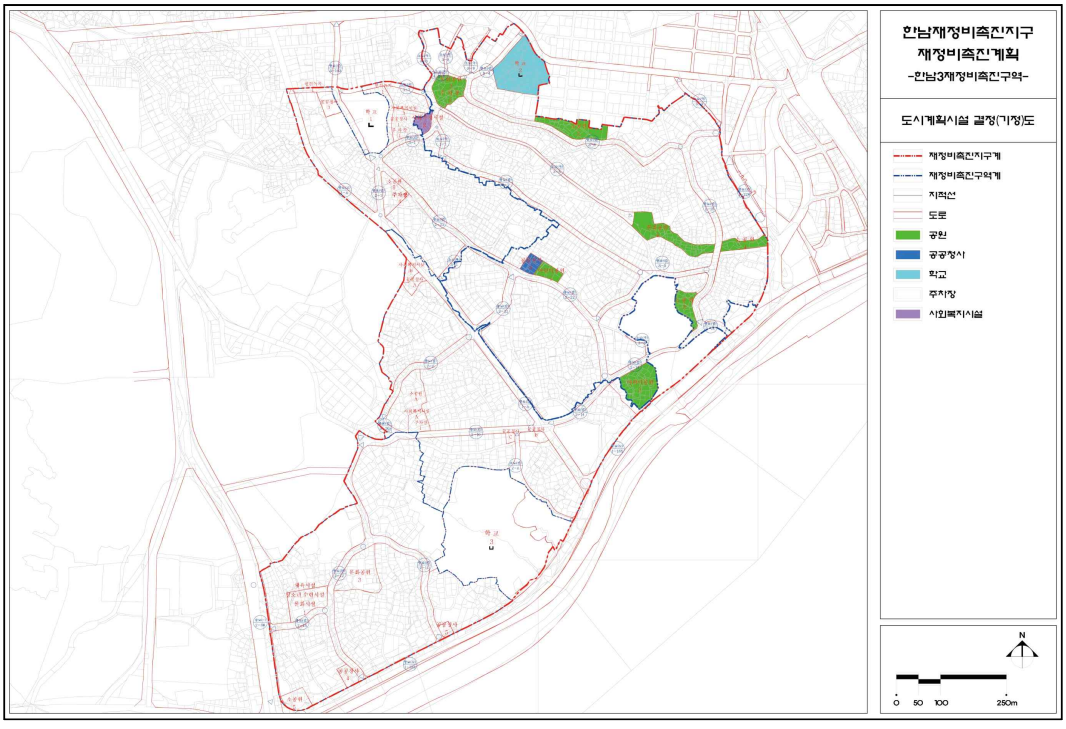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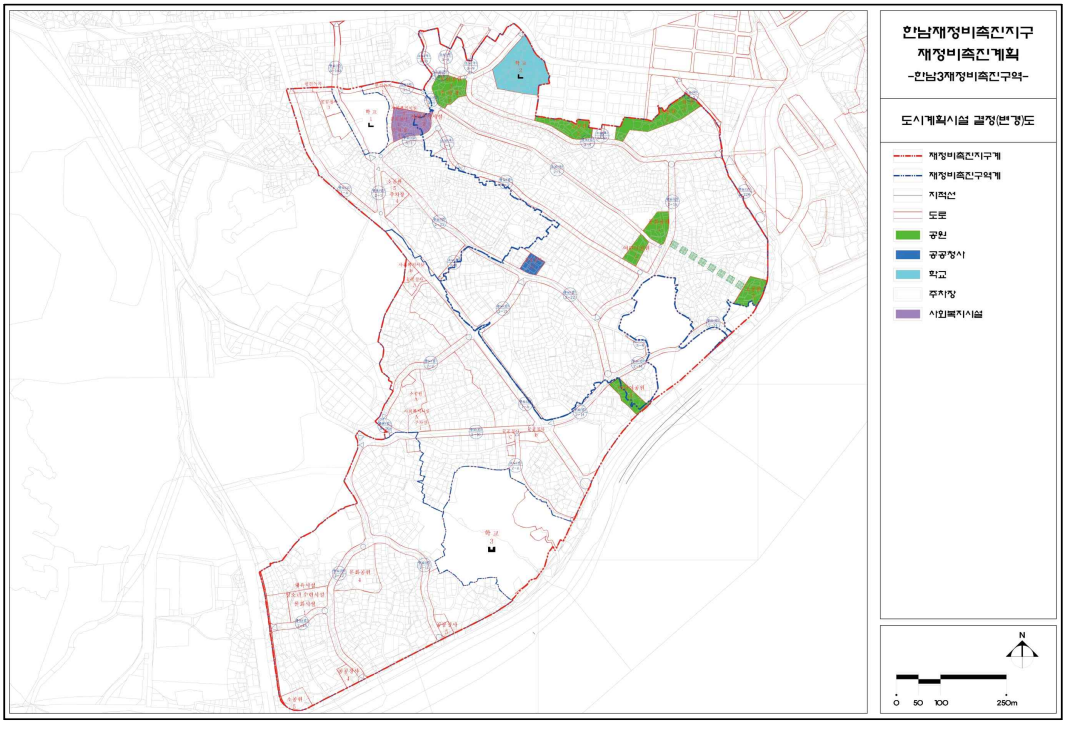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96호

남대문로5가 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01호(2010.3.18.) 『202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남대문로5가 84-1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의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남대문로5가 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남대문로5가 1구역	중구 남대문로5가 84-1번지 일원	820.5	-

■ 결정 사유서

구역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남대문로5가 1구역	• 위치: 종로구 남대문로5가 84-1번지 일원 • 면적: 820.5㎡	• 202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도심부 상징적 중심지역으로 개발방향 수립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남대문로5가 1구역을 신규 지정코자 함

3)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련 계획 : 해당없음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남대문로5가 1구역	820.5	획지	820.5	남대문로5가 84-1번지 일원	업무시설	60이하	600/660/842이하	100이하	

2. 정비계획의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합 계	820.5	100.0	
일반상업지역	820.5	100.0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해당없음

2) 토지이용계획: 신설

구 분	면 적 (㎡)	비 율 (%)	비 고
합계	820.5	100.0	
획지(대지)	820.5	100.0	

※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1) 도로: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광로	2	4	50	주간선 도로	1,500	세종로광장	서울역앞	일반 도로	-	1962.12.08	건설부고시 제177호
기정	소로	1		10	집산 도로	167	남대문로5가 260도	남대문로5가 84-15도	일반 도로	-	2011.12.01.	서울시고시 제2011-361호

※ 대상지 내 도시계획시설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근의 주요 교통시설(도로)임

※ 남대문로5가 1구역과 면한 도로 외 사항은 생략

나)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부담) 계획: 신설

(1) 정비기반시설 등의 부담 계획

구분	시행 면적 (㎡)	대지 면적 (㎡)	정비 기반시설 면적 (㎡)	계획기반 시설 내 기존 공공용지 (㎡)	대지내 폐지되는 국공유지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면적 (㎡)	순부담 면적 (㎡)	순부담률 (%)	비고
신 설	820.5	820.5	-	-	42.7	95.74	95.74	11.66	

※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면적은 토지지분 면적과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을 합한 면적임

※ 대상지 내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이 없으므로 용도 폐지되는 국공유지는 유상매입 처리

(2) 기부채납 시설 계획

구분	계획 지침	계획 내용
신설	• 순부담률: 11.66% 이상 - 공공임대 업무시설	• 기부채납 공공시설 면적: 95.74㎡ -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53.93㎡ - 토지면적(지분): 41.81㎡ •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

(3) 기부채납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조서

구분	위치	층	연면적	비고(관리청)
공공임대 업무시설	중구 남대문로5가 84-1번지 일원	지하3층 지상2층	433.26㎡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

※ 공공임대 업무시설은 토지지분 면적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로 기부채납하고, 관리청(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 및 관리함
※ 향후 토지가격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층고·형태는 조정될 수 있음
※ 세부용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

4)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정비개량 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남대문로5가 1구역	820.5	획지	820.5	남대문로5가 84-1번지 일원	9	-	-	9	-	

7)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남대문로5가 1구역	820.5	획지	820.5	남대문로5가 84-1번지 일원	업무시설	60 이하	842 이하	100 이하	-

용도에 관한 계획 — 신설

- 가로활성화용도: 저층부(건축물 1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 ※ 1층 바닥면적 합계의 2/3 이상 설치

용적률 완화에 관한 계획 — 신설

- 용적률: ①+②+③ = 842% 이하
  - ① 기준용적률: 600%
  - ② 허용용적률: 660%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60% 적용(※ 2030 기본계획 항목 적용)

구분	인센티브 항목		요건	산정방식	적용량
계획 유도	친환경 개발	신재생에너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기준 15% 추가 설치 시(신재생에너지 중 재생열 비율 10%이상 도입시)	정량 부여	20%
		재활용 건축자재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시	정량 부여	20%
	안전·방재	방재관련시설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방재와 관련된 시설 설치 시	정량 부여	20%

<table>
<tr><td></td><td></td><td>③ 상한용적률: 842% 이하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182% 적용
<table>
<tr><th>구분</th><th>인센티브 산식</th><th>적용내용</th><th>적용량</th></tr>
<tr><td>공공시설 등 부지제공</td><td>허용용적률×[(1.3×α토지)+(1.2×α건축물)]</td><td>660%×[(1.3×41.81/(820.5-41.81)+(1.2×53.94/(820.5-41.81)]</td><td>100.92%</td></tr>
<tr><td>공개공지 초과조성</td><td>허용용적률×(의무면적 초과 공개공지 면적/대지면적)×½</td><td>660%×{(86.72-82.05)/820.5}×½</td><td>1.88%</td></tr>
<tr><td>녹색건축 초과등급 인증</td><td>허용용적률×1.0×녹색건축물 인증완화 비율</td><td>660%×1.0×6%(최우수 등급)</td><td>39.6%</td></tr>
<tr><td>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초과등급 인증</td><td>허용용적률×1.0×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완화 비율</td><td>660%×1.0×6%(1++등급)</td><td>39.6%</td></tr>
</table>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25.1.)으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폐지됨에 따라 ZEB도입 또는 타 항목 인증 등급 상향 등으로 변경 필요</td><td></td></tr>
<tr><td>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td><td>신설</td><td>• 최고높이: ① + ② = 100.5m → 100m 이하 적용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적용내용</th><th>적용량</th></tr>
<tr><td>①</td><td>기준높이</td><td>90m</td><td>90m</td></tr>
<tr><td>②</td><td>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완화높이</td><td>기준높이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 90 × (95.74㎡ ÷ 820.5㎡) = 10.50m</td><td>10.5m</td></tr>
</table></td><td></td></tr>
<tr><td>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td><td>• 해당없음</td><td></td></tr>
<tr><td>공공주택 및 주거비율 완화에 대한 계획</td><td></td><td>• 해당없음</td><td></td></tr>
<tr><td>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td><td>• 건축한계선: 세종대로변 3m</td><td></td></tr>
<tr><td rowspan="2">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td><td>전면공지</td><td></td><td>• 건축한계선 후퇴구간 전면공지 조성</td><td></td></tr>
<tr><td>공개공지</td><td></td><td>• 관련법령 및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세종대로변 조성(최소폭 4.5m 이상)
- 조성면적: 86.72㎡ ※ 결정도면 참조</td><td></td></tr>
<tr><td>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td><td></td><td>• 해당없음</td><td></td></tr>
</table>

8)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등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해당하는 자	-	-

9)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1) 추정지분율: 100%

구분		금액(천원)	비고
종후 토지 및 건물평가금액 (총 사업비	계	112,951,000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액	50,804,000	
	신축건물시설 평가액	62,147,000	
대지조성비		-	
총 종전 토지 및 건물평가액		41,503,000	
총대지평가차액		9,301,000	
비용부담액(사업시행자 부담 원칙)		62,147,000	

(2) 개별분양대상자 투자금액(권리가액 상당액)

- 임의 산정의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종전 자산(토지 또는 건축물) : 41,503,000(가정)
- 개별 종전토지 또는 건물 평가액 비율 = 41,503,000 / 41,503,000 ≒ 100%
- 개별 대지평가차액 = 9,301,000 × 100% ≒ 9,301,000
-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권리가액 상당액) = 41,503,000 + 9,301,000
- 개별분양대상자 투자금액(권리가액 상당액) = 41,503,000 + 9,301,000 = 50,804,000
- 지분율 = 50,804,000 / 112,951,000 ≒ 44.98%

(3) 추정 수익률

- 추정수익률(사업시행에 따른 개별 종전자산의 수익률) : 22.41%
  - 개별 권리가액 상당액 / 개별 종전자산(토지 또는 건축물) × 100%

(4) 추정 분담금 산출

- 추정분담금(개략적인 개별 분담금) 산출방식
  - 개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

※ 토지등소유자가 분양받는 물건에 비해 토지등 소유자의 권리가액 상당액이 높을 경우 개별 분담금인 청산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사업시행자 지급), 그 반대인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청산금을 지급(사업시행자 징수)

구분		토지등소유자 분양가(추산액) (3.3㎡당,천원)	토지등 소유자 분양가 (추산액, 천원)	개별분양대상자 투자금액 (권리가액 상당액, 천원)	개별 분담금 (천원)	비고
업무시설	지상3층~20층	68,560	101,671,000	50,804,000	62,147,000	개별분담금 사업자부담
근린 생활시설	지상1층 (전용178.77㎡)	110,000	5,948,000			
	지하1층 (전용333.84㎡)	38,500	3,889,000			
	지하2층 (전용268.87㎡)	17,742	1,443,000			

10) 정비구역 및 주변 지역의 주택 수급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1)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3) 세입자 주거대책

가) 세입자 주거대책: 해당사항 없음

나) 상가 세입자 대책

(1) 현재 상가를 이용하고 있는 세입자와는 적절한 협의를 통하여 보상대책 마련 후 퇴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2조, 제65조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14) 환경성 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음

1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시경관	•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경관에 적합하도록 계획 수립 • 주요 도로변에서이 조망분석으로 주변 시가지 및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경관 유도	

환경보전	• 대지내 공지는 조경식재공간으로 조성하고 불투수 면적을 최소화 •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2023.10.30.)에 제시된 건축 유형에 따른 생태면적률 기준인 20%(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제외) 이외의 건축물 기준) 이상 확보 • 조경계획 수립시 다층구조의 식생대를 조성하여 조류를 유인하고, 소규모 비오톱을 조성하여 새로운 녹지축을 형성 • 단지내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계획하고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설계기법을 도입하여 장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토록 하며,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 조경녹지 및 가로변에는 대기오염물질의 정화능력 및 적응력이 우수한 환경정화수종을 우선 식재토록 계획 • 조경식재, 가로수식재 등을 통해 수목에 의한 흡음 및 소음원에 대한 시각적차폐 유도	
재난방지	• 사업대상지내 보행로 및 공원은 우수침투가 가능한 투수성 바닥포장을 사용하고, 내구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소재를 이용 • 지구내 자연지반을 최대화하고 표면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수침투율이 높은 자연성포장 및 투수성포장재를 사용 • 시설물 및 공원·조경녹지 지하에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며 평상시 빗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1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7) 교통 및 동선처리 계획

가) 교통처리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세종대로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주차 출입구	• 세종대로2길변 주차출입구 설치	결정도서 참조

18) 안전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

사업시기 및 예방시설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비고
착공 전	• 펜스 설치 및 유지· 관리 •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착공 ~ 공사 완료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규정 준수 안전시공 •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비 계상	
범죄예방시설	• 방범용 CCTV는 사각지대에 설치 • 식재로 인해 밀폐된 공간이 발생되지 않는 식개 계획 수립(자연 감시 고려)	

19)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20) 구역 내 옛길, 옛 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 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 고
신설	Ⓐ	남대문로5가 1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남대문로5가 84-1번지 일원	820.5	-

나.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율(%)	비 고
합 계	820.5	100.0	
일반상업지역	820.5	100.0	

다. 용도지구 결정 조서: 해당없음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가. 교통시설(도로):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광로	2	4	50	주간선 도로	1,500	세종로광장	서울역앞	일반 도로	-	1962.12.08	건설부고시 제177호
기정	소로	1		10	집산 도로	167	남대문로5가 260도	남대문로5가 84-15도	일반 도로	-	2011.12.01.	서울시고시 제2011-361호

※ 대상지 내 도시계획시설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근의 주요 교통시설(도로)임
※ 남대문로5가 1구역과 면한 도로 외 사항은 생략

3. 공공기여계획에 관한 결정

가. 건축물 기부채납(공공임대 업무시설)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 지침	계획 내용
신설	• 순부담률: 11.66% 이상 - 공공임대 업무시설	• 기부채납 공공시설 면적: 95.74㎡ -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53.93㎡ - 토지면적(지분): 41.81㎡ •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

나. 기부채납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조서

구분	위치	층	연면적	비고(관리청)
공공임대 업무시설	중구 남대문로5가 84-1번지 일원	지하3층 지상2층	433.26㎡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

※ 공공임대 업무시설은 토지지분 면적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로 기부채납하고, 관리청(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 및 관리함
※ 향후 토지가격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층고·형태는 조정될 수 있음
※ 세부용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신설	남대문로5가 1구역	획지	820.5	남대문로5가 84-1번지 일원	업무시설	60이하	600/660/842이하	100이하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1) 허용용도

구분		계획내용	비고
신설	남대문로5가 1구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허용용도외의 용도는 불허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서울 도심부 토지이용 및 지역별 주용도 반영

(2) 지정용도

구분		계획내용	비고
신설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지상 1층

※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는 1층 바닥면적 합계의 2/3 이상 설치

■ 결정 사유서

위치	결정내용	결정사유
남대문로5가 1구역	• 지정용도 신설 - 저층부(1층)의 지정용도 신설	• 숭례문~대상지~서울역 일대의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한 지정용도 도입

2) 건축물 건폐율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신설	남대문로5가 1구역	60% 이하	

3) 건축물 용적률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신설	남대문로5가 1구역	• 기준용적률: 600% • 허용용적률: 660% • 상한용적률: 842% 이하	

(1)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항 목		적용기준	적용량	비고
친환경개발	신재생에너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기준 15% 추가 설치 시 (신재생에너지 중 재생열 비율 10%이상 도입시)	20.0%	60.0% 적용
	재활용 건축자재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시	20.0%	
안전·방재	방재관련시설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방재와 관련된 시설 설치 시	20.0%	

(2)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항 목	인센티브 산식	적용내용	적용량	비고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허용용적률×[(1.3×α토지)+(1.2×α건축물)]	660%×[(1.3×41.81/(820.5-41.81)+(1.2×53.94/(820.5-41.81)]	100.92%	182.0% 적용
공개공지 초과조성	허용용적률×(의무면적 초과 공개공지 면적/대지면적)×½	660%×{(86.72-82.05)/820.5}×½	1.88%	
녹색건축 초과등급 인증	허용용적률×1.0×녹색건축물 인증 완화 비율	660%×1.0×6%(최우수 등급)	39.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초과등급 인증	허용용적률×1.0×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완화 비율	660%×1.0×6%(1++등급)	39.6%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25.1.)으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폐지됨에 따라 ZEB도입 또는 타 항목 인증 등급 상향 등으로 변경 필요

4) 건축물 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신설	남대문로5가 1구역	100m 이하	

(1) 높이 완화 사항

항 목	계획내용	적용량	비고
기준높이	90m	90m	100m 이하 적용
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	기준높이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 90 × (95.74㎡ ÷ 820.5㎡) = 10.50m	10.5m	

다. 건축물의 배치·형태에 및 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신설	남대문로5가 1구역	• 건축한계선: 세종대로변 3m	

2)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구간 전면공지 조성	
공개공지	• 관련법령 및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세종대로변 조성(최소폭 4.5m 이상) - 공개공지 계획면적: 86.72㎡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가.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신설	차량출입 불허구간	• 세종대로변	결정도서 참고
	주차 출입구	• 세종대로2길변	

Ⅲ. 2024년 제17차('24.12.1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구분	심의 결과	심의 의견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정 가결	• 공공기여 시설은 운영 시 차질이 없도록 도입 용도 및 운영계획에 대해 면밀 검토 • 건축심의시 피난계단 위치 등 설치 계획, 기계식주차장 대기 공간의 적정성 및 공개공지 효용성 제고방안 등 검토

Ⅳ. 관련도면 : 붙임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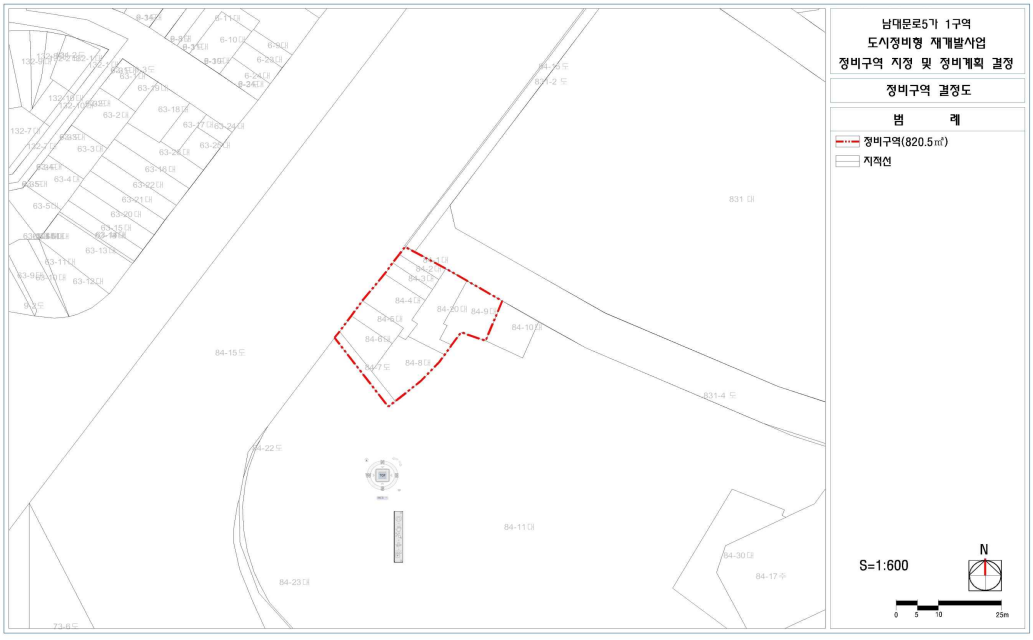
Ⅴ.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02-2133-4647), 중구 도심정비과(☎02-3396-5772)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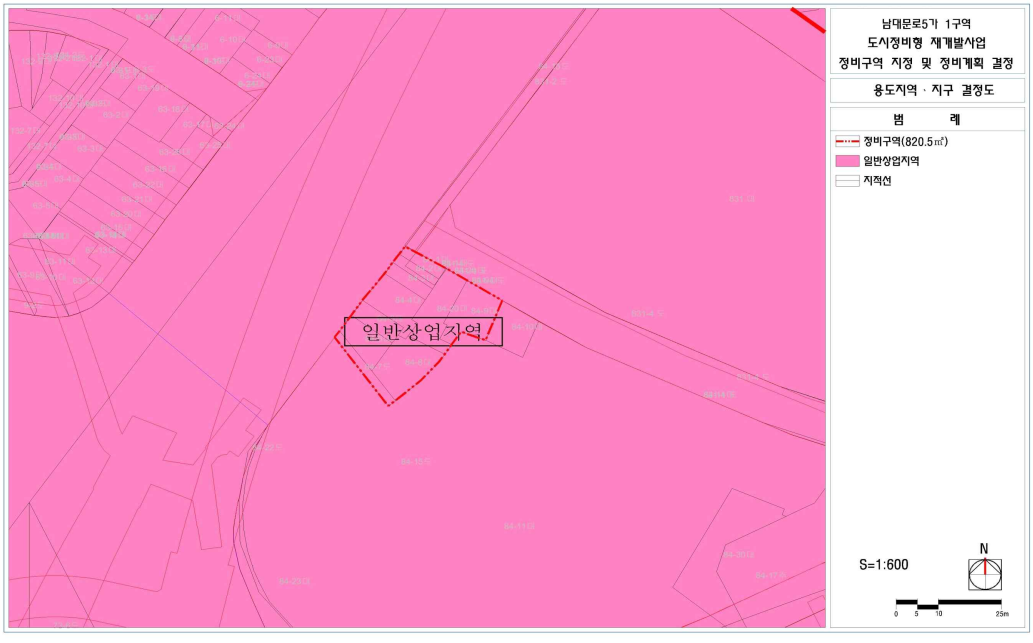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대문로5가 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 정비구역 결정도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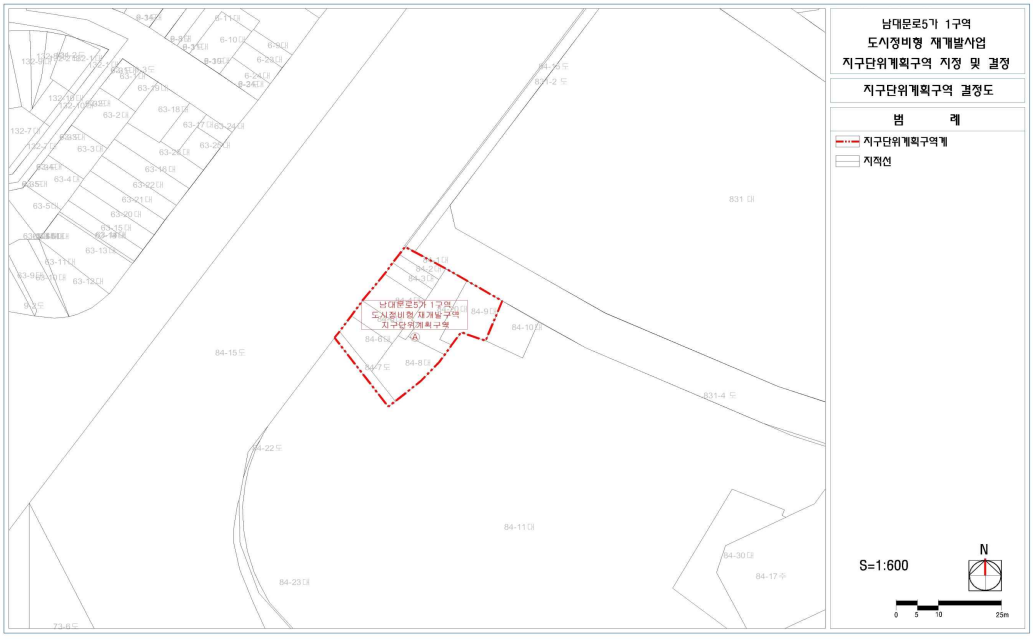


■ 정비계획 종합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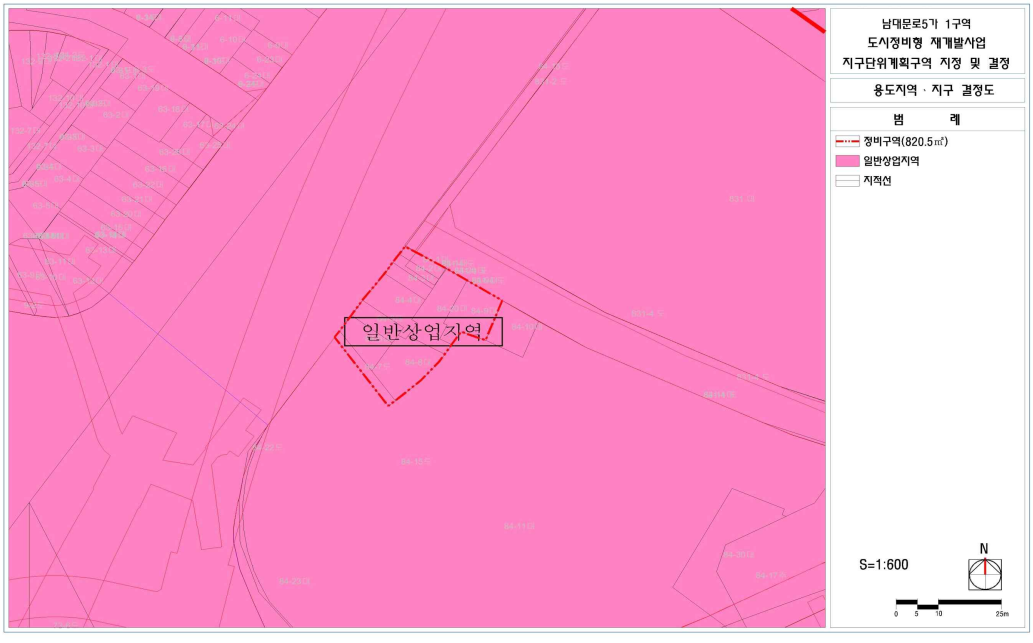


[남대문로5가 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종합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97호

구로구 오류동 108-105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247호(2024.5.16.)로 공급촉진지구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164호로 변경 결정된 구로구 오류동 108-105번지 일원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1. 지구계획의 개요 (변경없음)
2. 시행자의 성명 및 소재지 (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4.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6. 인구 · 주택 수용계획 (변경없음)
7. 교통 · 공공 · 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8.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 계획 (변경없음)
9.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변경) : [붙임]

[붙임]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나.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나. 건축물 용도·밀도 및 배치에 관한 결정 (변경)

(1)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2)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 (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400% 이하 • 상한용적률 : 500% 이하	• 기준용적률 : 400% 이하 • 상한용적률 : 500% 이하	
높이	• 94.54m 이하	• 94.55m 이하	

○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비 고
-	• 높이 : 당초 94.54m 이하 → 변경 94.55m 이하	• 청년안심주택 연면적 및 전용면적의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량 변경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4) 용적률 완화항목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다. 청년안심주택에 관한 결정 (변경)

(1)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공공기여율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15.02% (892.94㎡) - 공공임대주택 : 51세대	• 15.02% (892.73㎡) - 공공임대주택 : 51세대	모든 항목 충족
	• 3,068.5059㎡ 확보 - (공급면적 70.8016㎡ × 4세대) + (공급면적 74.5229㎡ × 26세대) + (공급면적 75.6280㎡ × 2세대) + (공급면적 77.3831㎡ × 9세대) = 3,068.5059㎡	• 2,970.7161㎡ 확보 - (공급면적 68.3985㎡ × 3세대) + (공급면적 71.9935㎡ × 26세대) + (공급면적 73.0611㎡ × 2세대) + (공급면적 74.7566㎡ × 10세대) = 2,970.7161㎡	
용도별 비율	• 주거:비주거 = 100.0% : 0.0% (용적률 기준)	• 주거:비주거 = 100.0% : 0.0% (용적률 기준)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 지하1~2층 546.7658㎡ 설치 - 대지의 형태 및 고저차에 따른 가로변 비주거 설치	- 지하1~2층 564.9575㎡ 설치 - 대지의 형태 및 고저차에 따른 가로변 비주거 설치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주택규모		• 1인 세대 : 20.8773㎡ 21.3934㎡ 21.7256㎡ 22.4318㎡ 25.6605㎡ 26.7653㎡ 27.2675㎡ 27.6580㎡ • 2인 이상 세대 : 34.8329㎡ 42.3253㎡ 44.9763㎡ 45.0533㎡ 46.3445㎡ 47.4213㎡ 47.6523㎡ 48.1245㎡ 49.2413㎡	• 1인 세대 : 20.8773㎡ 21.3934㎡ 21.7256㎡ 22.4318㎡ 25.6605㎡ 26.7653㎡ 27.2675㎡ 27.6580㎡ • 2인 이상 세대 : 34.8329㎡ 42.3253㎡ 43.3834㎡ 45.0533㎡ 46.3445㎡ 47.4213㎡ 47.6523㎡ 48.1245㎡ 49.2413㎡	모든 항목 충족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에너지효율 건축물 (건축물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 친환경건축물 (녹색건축물 그린 2등급 이상)	• 에너지효율 건축물 (건축물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 친환경건축물 (녹색건축물 그린 2등급 이상)	
주민 공동 시설	커뮤니티시설	• 지하1층 1,121.493㎡ 계획	• 지하1층 1,127.4376㎡ 계획	

※ 위 계획(안)은 향후 청년안심주택 건설사업 관련 인허가, 측량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공공기여계획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계획	세대수	계획	세대수	
기본용적률	15.02% (892.94㎡)	51세대	15.02% (892.73㎡)	51세대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상한용적률	3,068.5059㎡	41세대	2,970.7161㎡	41세대	• 기본용적률 외 증가된 용적률의 1/2(50%) 이상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
합계		92세대		92세대	-

※ 위 계획(안)은 향후 청년안심주택 건설사업 관련 인허가, 측량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3. 방재계획 (변경없음)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변경없음)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98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248호(2024.05.16.)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165호(2025.3.27.)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구로구 오류동 108-105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에 대하여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처리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의 종류 : 주택건설사업
2. 사업의 명칭 : 구로구 오류동 108-105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신축공사
3. 사업주체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대 표 자	주 소
주식회사 디디아이오에스108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정 재 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7층(역삼동,메리츠타워)

4. 사업의 시행기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9년
5.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108-105번지 외 1필지
   나. 대지면적 : 5,944.00㎡
   다. 건 폐 율 : 33.03%
   라. 용 적 률 : 499.86%
   마. 용　　도 : 공동주택(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92세대 / SH선매입 39세대 / 민간임대 454세대)
   바. 규　　모 : 1개동, 지하7층 / 지상 29층,
   (기정) 연면적 49,504.1236㎡
   (변경) 연면적 49,116.3679㎡
   사.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6. 기타사항
   가.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결정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 · 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 · 결정 전으로 환원된 것으로 봄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545호

제23회 서울특별시 복지상 수상후보자 추천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의 발전과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기여한 시민 및 단체를 발굴하여 「서울특별시 복지상」을 시상함으로써,
사랑과 실천의 나눔문화 조성을 통한 안심할 수 있는 따뜻한 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추천 바랍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시상분야 : 3개 분야(복지자원봉사자, 복지후원자, 복지종사자)

2. 시상인원 : 10명(대상 1명, 최우수상 분야별 1명, 우수상 분야별 2명)

3. 시상내용 : 상패

4. 수상대상자
가. 추천분야 : 복지자원봉사자, 복지후원자, 복지종사자

복지자원봉사자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사회에 시간과 재능을 제공해 사회 공익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복지후원자	금품 등 재정지원으로 기부와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복지종사자	복지기관 종사자로서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개인

나. 자격요건
(1)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우리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가지고 기부선행, 시민화합, 지역사회발전 등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개인 또는 단체
(2) 3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았으나 서울시 소재 시설에 종사하거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3년 이상한 자
(3)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 인정

〈 추천제외대상 〉 ※ 2025년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 정부포상 업무지침 준용

- 서울시 복지상을 수상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같은 해에 서울특별시 시민상 다른 분야의 상을 이미 수상하였거나 수상자로 확정된 자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 · 향응수수, 공금 횡령 · 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일정 기준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및 세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및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현직공무원(서울시 투자기관 임직원 포함), 시 · 구의원

※ 단, 수상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축소 선정하거나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수상후보자 추천 : 분야별 추천

나. 추천권자 및 추천방법

구분	행정기관 (자치구, 교육기관 등 관공서)	등록단체	일반시민(개인) 및 미등록단체(동호회 등)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경찰서, 교육기관 등 관공서	‣ 복지분야 비영리법인 또는 행정기관 등록 단체 ‣ 사회복지시설	‣ 개인 추천
추천 자격	‣ 해당 기관장 (○○구청장 등)	‣ 해당 단체의 장 (○○병원장, ○○협회장 등)	‣ 동일세대 구성원이 아닌 만19세 이상 30인 이상의 연서*
추천 방법	자체 공적심사의결서를 첨부한 공문제출	시 복지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복지부서 우편 또는 온라인(이메일) 접수 ※ 단체등록증 사본 제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시 복지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복지부서 우편 또는 온라인(이메일) 접수

나. 추천구비서류(①~⑨)

① 추천서1부(서식1) ②공적조서1부(서식2) ③공적요약서1부(서식3)
④ 주요 경력 및 수상기록1부(서식4)
⑤ 시민상 추천 동의서 및 체크리스트 각1부(서식5~5-1)
⑥ 공적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⑦ 공적심사 의결서 (기관 추천시 제출)
⑧ 주민등록초본(최근 4년 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
⑨ 단체일 경우 단체등록증 사본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 접수의 경우 편집가능한 ①~⑨ 전자파일 추가제출 필수(이메일, USB 등 활용 / 메일 주소 : jury1213@seoul.go.kr)

6. 접수기간 : 2025. 5. 26.(월) ~ 6. 25.(수) 18:00

7.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또는 자치구 복지 담당부서

8. 접수방법 : 방문 · 우편접수 또는 온라인(이메일) 접수
 가. 우편접수는 2025.6.25.(수) 우편소인 우편물에 한하여 접수하며, 우송 중 분실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소 :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나. 온라인 접수는 이메일 제출(jury1213@seoul.go.kr)로 ’ 25.6.25.(수)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해 접수하며, 메일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수상자발표 : 시상일 전 수상대상자에게 사전 개별통지
10. 시 상 식 : 2025. 9. 4.(목) ※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1.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추천서, 공적조서 등의 서식은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또는 각 자치구 복지담당부서에서 받으시거나,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2133-7319) 및 각 자치구 복지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제출서식 ① ~ ⑤-1 각 1부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594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신규 등록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내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영업소 소재지
1	㈜에이치에스엔지니어링	제6110000-20-2025-00014호	' 25.4.24.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01, 5층(문정동, 형수빌딩)
2	㈜웨이픽스	제6110000-20-2025-00015호	' 25.4.2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58길 40, 동재헌 3층 301호
3	㈜더블유엔이케이	제6110000-20-2025-00016호	' 25.5.1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C동 1303호(우림라이온스밸리)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608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을 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미배달)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2025.5.29. ~ 2025.6.12.(14일간)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처분사유	관련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소노이엔씨종합건설 (오주현)	건축공사업 01-38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공원로 212 , 402호 (화곡동)	보증가능금액 실효(2024.4.18.)로 영업정지 후 처분종료일(2025.3.12.)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	법 제10조 제4호	등록말소 (2025.6.18.)	법 제83조 제3호의2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05으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609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에게 2차례 송달하였으나 부재로 인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①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5. 29 ~ 2025. 6. 11.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1912195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15라길 39, A동 B02호 (방학동 ,삼성))	수도요금	2022년 1월 등 20납기	20회	518,020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예정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15라길 39, A동 B02호 (방학동 ,삼성))	안*호	770330-1****** (2회송달 부재)	서울특별시 도봉구	518,020	2025.6.11. 이후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김태석(02-3146-331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61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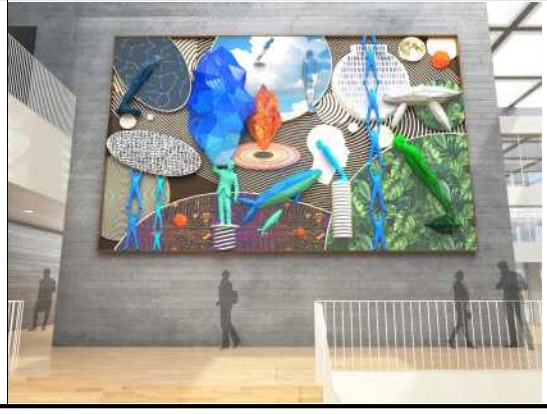
용산구 교육청 신청사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 심의 결과 공고

용산구 교육청 신청사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와 관련하여 '2025년 제5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심의안건 : 용산구 교육청 신청사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

2. 심의결과 : 당선작 2작품

심의결과	작품번호	작품명	작품 이미지	작가명
당선작 (UNIT1)	6	함께 이는 물결		김신일
당선작 (UNIT2)	6	BEYOND THE HORIZON		김지현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담당관(☎02-2133-93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612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제31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수시분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31조 및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228건)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1	02로9690	허*기	경기도 광명시	2025-02-17 11:51	구로06_개봉교후방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403-195)	미세먼지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100,000원
2	80너8701	㈜*탈싸인날으는곰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3-04 07:17	마포01_강변북로(서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122)	〃	〃
3	89다3652	정*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5-03-04 07:22	금천08_한내로(기아대교)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82-27)	〃	〃
4	77다7160	㈜*피바이오	경기도 성남시	2025-03-04 12:45	서초05_양재IC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4)	〃	〃
5	92나2379	㈜*추럴하모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3-04 13:04	강서02_개화역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35)	〃	〃
6	10구7655	정*공	광주광역시 북구	2025-03-04 13:24	양천05_서부트럭터미널(남부순환로)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738-1)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7	80너8155	㈜*앤에이치	경기도 동두천시	2025-03-04 15:47	서초06_분당내곡로(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1-2601)	〃	〃
8	94루7865	유*길	경기도 의정부시	2025-03-04 16:04	노원01_동일로(동부간선도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10-9)	〃	〃
9	80두1033	신*순	경기도 동두천시	2025-03-04 18:36	구로02_안양천로(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60-17)	〃	〃
10	52어0231	김*석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3-04 20:36	용산01_서빙고로(한남역) (서울시 용산구 주성동 62-1)	〃	〃
11	83러6237	㈜*쟌에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25-03-04 20:40	강남04_강남대로(신사역)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80)	〃	〃
12	91루9322	주식회사 애*코리아	충청남도 천안시	2025-03-05 06:26	용산03_강변북로(일산)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35)	〃	〃
13	95두9824	한*희	충청남도 천안시	2025-03-05 08:10	구로07_항동지구(서해안로) (서울시 구로구 항동 산34-10)	〃	〃
14	89다7051	㈜*니스	경기도 용인시	2025-03-05 11:15	마포01_강변북로(서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122)	〃	〃
15	94서5083	노*진	경기도 하남시	2025-03-05 14:29	강동05_상일IC(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2-2)	〃	〃
16	92러4552	김*	경기도 고양시	2025-03-05 17:14	중랑04_사가정역(사가정로)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472-44)	〃	〃
17	80누7939	㈜강*한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3-05 18:55	강동04_암사IC(양재대로)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04-1)	〃	〃
18	83러6237	㈜*쟌에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25-03-05 20:25	강남04_강남대로(신사역)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80)	〃	〃
19	99나1413	주식회사 디*덜오비밴	경기도 성남시	2025-03-06 06:08	영등포01_여의2교(제물포길)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30)	〃	〃
20	36거8967	석*건	경기도 수원시	2025-03-06 06:28	노원04_삼육대입구(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6-35)	〃	〃
21	80너8701	㈜*탈싸인날으는곰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3-06 07:02	마포01_강변북로(서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122)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22	92너4270	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3-06 08:03	용산03_강변북로(일산)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35)	〃	〃
23	01나4449	함*옥	서울특별시 중구	2025-03-06 08:26	용산02_강변북로(구리)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71-121)	〃	〃
24	41거2688	조*훈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3-06 08:52	노원01_동일로(동부간선도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10-9)	〃	〃
25	08조4101	김*민	경기도 오산시	2025-03-06 12:31	서초06_분당내곡로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1-2601)	〃	〃
26	55저7240	강*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5-03-06 14:38	송파01_송파대로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260-8)	〃	〃
27	경기93노1425	㈜*림냉기산업	경기도 안성시	2025-03-06 16:17	금천05_금천교(범안로)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003-6)	〃	〃
28	80누7939	㈜*동한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3-06 18:26	강동02_강일57단지(아리수로)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377-4)	〃	〃
29	89다3652	정*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5-03-07 06:23	금천09_석수역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01-42)	〃	〃
30	10구7655	정*공	광주광역시 북구	2025-03-07 09:54	양천01_화곡로입구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258)	〃	〃
31	92가3056	정*엔터프라이즈(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3-07 10:46	서초05_양재IC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4)	〃	〃
32	89다7051	㈜*니스	경기도 용인시	2025-03-07 14:24	마포04_양화대교북단(양화로)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1-25)	〃	〃
33	83구6331	㈜*일이엔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3-07 15:01	양천03_경인고속도로 (서울시 양천구 지양로16길 17-20)	〃	〃
34	81더7038	㈜*인석산	경상북도 울진군	2025-03-07 15:41	광진04_잠실대교북단(자양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85)	〃	〃
35	88어3409	전*우	대구광역시 달서구	2025-03-07 15:55	용산03_강변북로(일산)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35)	〃	〃
36	02도4429	주식회사 케*파크미디어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3-07 15:57	마포04_양화대교북단(양화로)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1-25)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37	80너8155	㈜*앤에이치	경기도 동두천시	2025-03-07 16:25	서초05_양재IC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4)	〃	〃
38	97두4997	주식회사 애*코리아	충청남도 천안시	2025-03-07 17:41	강남09_분당수서고속화도로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226-1)	〃	〃
39	62가4063	윤*상	충청남도 보령시	2025-03-07 20:05	강동06_천호역(천호대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54-15)	〃	〃
40	14오9217	박*철	경기도 양주시	2025-03-10 06:30	중랑02_신내IC(용마산로)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45-1)	〃	〃
41	80너8701	㈜*탈싸인날으는곰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3-10 07:23	마포01_강변북로(서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122)	〃	〃
42	서울98사7194	이*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3-10 07:37	영등포01_여의2교(제물포길)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30)	〃	〃
43	92너4270	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3-10 08:44	용산03_강변북로(일산)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35)	〃	〃
44	89다3652	정*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5-03-10 11:13	금천09_석수역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01-42)	〃	〃
45	89다7051	㈜*니스	경기도 용인시	2025-03-10 12:15	마포02_월드컵경지장(월드컵로)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405-8)	〃	〃
46	80더4242	그*포스(주)	경기도 성남시	2025-03-10 12:27	중랑02_신내IC(용마산로)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45-1)	〃	〃
47	01보6885	㈜*조인터내셔널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5-03-10 14:20	은평02_통일로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71-15)	〃	〃
48	80너8528	송*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2025-03-10 15:38	중랑02_신내IC(용마산로)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45-1)	〃	〃
49	80너8155	㈜*앤에이치	경기도 동두천시	2025-03-10 16:23	서초05_양재IC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4)	〃	〃
50	80서7783	이*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3-10 17:19	광진02_천호대로(군자교)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669)	〃	〃
51	28부5917	임*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3-10 17:38	광진02_천호대로(군자교)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669)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52	81더7038	㈜*인석산	경상북도 울진군	2025-03-10 19:37	광진02_천호대로(군자교)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669)	〃	〃
53	89다3652	정*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5-03-11 06:13	금천09_석수역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01-42)	〃	〃
54	90우6456	지*대	경기도 하남시	2025-03-11 07:05	강동06_천호역(천호대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54-15)	〃	〃
55	17라8262	(주) 태*이엔씨	부산광역시 남구	2025-03-11 08:53	강남10_대곡교후방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5-1)	〃	〃
56	07로5927	김*민	경기도 이천시	2025-03-11 12:36	중랑02_신내IC(용마산로)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45-1)	〃	〃
57	92너4270	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3-11 15:17	용산02_강변북로(구리)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71-121)	〃	〃
58	80너8155	㈜*앤에이치	경기도 동두천시	2025-03-11 16:18	서초05_양재IC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4)	〃	〃
59	89다3652	정*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5-03-12 07:37	금천08_한내로(기아대교)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82-27)	〃	〃
60	80너8701	㈜*탈싸인날으는곰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3-12 09:57	마포01_강변북로(서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122)	〃	〃
61	92너4270	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3-12 11:22	성북02_길음역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532-18)	〃	〃
62	89다7051	㈜*니스	경기도 용인시	2025-03-12 11:45	마포01_강변북로(서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122)	〃	〃
63	81더7038	㈜*인석산	경상북도 울진군	2025-03-12 11:45	광진01_동일로(군자교 지하차도)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263-1)	〃	〃
64	07나1851	㈜*석개발	충청북도 청주시	2025-03-12 12:34	노원01_동일로(동부간선도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10-9)	〃	〃
65	경기80거1582	㈜*나디앤엘	경기도 수원시	2025-03-12 13:07	용산02_강변북로(구리)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71-121)	〃	〃
66	01보6885	㈜*조인터내셔널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5-03-12 13:18	은평02_통일로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71-15)	〃	〃
67	62가4063	윤*상	충청남도 보령시	2025-03-12 13:27	강동07_서하남IC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227-7)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68	경기86마7608	김*만	경기도 안산시	2025-03-12 13:39	마포01_강변북로(서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122)	〃	〃
69	89구3994	박*봉	경기도 남양주시	2025-03-12 14:57	도봉01_도봉로시계(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378-1)	〃	〃
70	83구6331	㈜*일이엔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3-12 14:58	마포01_강변북로(서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122)	〃	〃
71	82가6549	김*배	경기도 파주시	2025-03-12 16:27	서초01_올림픽대로(공항)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15-2)	〃	〃
72	80누7939	㈜*동한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3-12 18:23	강동02_강일57단지(아리수로)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377-4)	〃	〃
73	90우6456	지*대	경기도 하남시	2025-03-13 06:22	강동06_천호역(천호대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54-15)	〃	〃
74	89다3652	정*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5-03-13 07:00	금천08_한내로(기아대교)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82-27)	〃	〃
75	94머9558	여*제	충청남도 서산시	2025-03-13 11:08	금천02_서부간선(성산/안양 양방향)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55-1)	〃	〃
76	15도2641	툰베*에너지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3-13 12:23	강동05_상일IC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2-2)	〃	〃
77	10구7655	정*공	광주광역시 북구	2025-03-13 12:46	양천01_화곡로입구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258)	〃	〃
78	08조4101	김*민	경기도 오산시	2025-03-13 14:06	강남06_테헤란로(선릉역)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11)	〃	〃
79	81더7038	㈜*인석산	경상북도 울진군	2025-03-13 14:17	광진02_천호대로(군자교)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669)	〃	〃
80	92러4552	김*	경기도 고양시	2025-03-13 17:51	중랑04_사가정역(사가정로)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472-44)	〃	〃
81	80누7939	㈜*동한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3-13 18:21	강동02_강일57단지(아리수로)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377-4)	〃	〃
82	18너3409	주식회사 교*문화신문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3-14 07:09	구로01_작동터널 (서울시 구로구 궁동 5-7)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83	서울98사7194	이*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3-14 07:16	영등포02_영등포로(오목교)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5-2)	〃	〃
84	84더4974	천*진	부산광역시 연제구	2025-03-14 07:17	금천02_서부간선도로(안양)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47-52)	〃	〃
85	39저8152	정*훈외1인(박*윤)	경상북도 칠곡군	2025-03-14 07:53	동대문01_회기역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18-19)	〃	〃
86	15도2641	툰베*에너지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3-14 08:35	강동04_암사IC(양재대로)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04-1)	〃	〃
87	인천94가5866	㈜*그라미	인천광역시 강화군	2025-03-14 10:19	강서02_개화역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35)	〃	〃
88	91나5197	한*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5-03-14 10:34	서초01_올림픽대로(공항)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15-2)	〃	〃
89	89다7051	㈜*니스	경기도 용인시	2025-03-14 11:50	마포01_강변북로(서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122)	〃	〃
90	82구8916	유*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25-03-14 13:07	관악02_남부순환로(낙성대역)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693-39)	〃	〃
91	58도5158	신*호	전라남도 여수시	2025-03-14 14:07	은평02_통일로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71-15)	〃	〃
92	80라4765	박*곤	경기도 안산시	2025-03-14 14:30	마포01_강변북로(서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122)	〃	〃
93	81어1117	㈜*통전력	경기도 가평군	2025-03-14 15:21	은평06_덕은교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275-3)	〃	〃
94	서울85가5973	홍*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3-14 16:33	광진01_동일로(군자교 지하차도)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263-1)	〃	〃
95	28부5917	임*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3-14 17:53	광진03_워커힐(아차산로)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344)	〃	〃
96	89다3652	정*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5-03-17 07:17	금천06_시흥사거리(금하로)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95-4)	〃	〃
97	18너3409	주식회사 교*문화신문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3-17 07:29	구로01_작동터널 (서울시 구로구 궁동 5-7)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98	10구7655	정*공	광주광역시 북구	2025-03-17 08:38	양천05_서부트럭터미널(남부순환로)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738-1)	〃	〃
99	90우6456	지*대	경기도 하남시	2025-03-17 11:04	강동02_강일57단지(아리수로)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377-4)	〃	〃
100	81더7038	㈜*인석산	경상북도 울진군	2025-03-17 13:42	광진01_동일로(군자교 지하차도)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263-1)	〃	〃
101	01너7564	㈜*준이엔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3-17 14:47	구로01_작동터널 (서울시 구로구 궁동 5-7)	〃	〃
102	54노6240	김*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3-17 15:13	강동05_상일IC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2-2)	〃	〃
103	80너8155	㈜*앤에이치	경기도 동두천시	2025-03-17 15:24	서초06_분당내곡로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1-2601)	〃	〃
104	83구6331	㈜*일이엔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3-17 17:04	마포04_양화대교북단(양화로)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1-25)	〃	〃
105	90우6456	지*대	경기도 하남시	2025-03-18 06:08	강동06_천호역(천호대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54-15)	〃	〃
106	89다3652	정*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5-03-18 07:39	금천08_한내로(기아대교)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82-27)	〃	〃
107	10구7655	정*공	광주광역시 북구	2025-03-18 08:19	양천01_화곡로입구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258)	〃	〃
108	80저3948	주식회사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3-18 10:41	구로04_유한공고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08-102)	〃	〃
109	15도2641	튼베*에너지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3-18 11:23	송파01_송파대로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260-8)	〃	〃
110	86서8685	권*준	충청북도 청주시	2025-03-18 12:44	강남09_분당수서고속화도로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226-1)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111	80마6148	김*렬	경기도 양평군	2025-03-18 13:01	용산03_강변북로(일산)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35)	〃	〃
112	80너8155	㈜*앤에이치	경기도 동두천시	2025-03-18 15:58	서초06_분당내곡로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1-2601)	〃	〃
113	83너3294	우*구	경상북도 봉화군	2025-03-18 15:58	서초06_분당내곡로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1-2601)	〃	〃
114	74버2037	김*주	경기도 용인시	2025-03-18 18:08	중랑01_북부간선도로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701-2)	〃	〃
115	80누7939	㈜*동한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3-18 19:00	강동04_암사IC(양재대로)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04-1)	〃	〃
116	89다3652	정*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5-03-19 06:26	금천09_석수역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01-42)	〃	〃
117	10주2973	가* 디엔씨(주)	경기도 화성시	2025-03-19 07:13	강북01_우이제3교(덕릉로) (서울시 강북구 번동 454-81)	〃	〃
118	10구7655	정*공	광주광역시 북구	2025-03-19 07:45	구로01_작동터널 (서울시 구로구 궁동 5-7)	〃	〃
119	62더3485	김*명	경기도 성남시	2025-03-19 10:43	서초07_청계산로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44-5)	〃	〃
120	94무7952	주식회사 동*환경자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2025-03-19 10:51	서초01_올림픽대로(공항)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15-2)	〃	〃
121	89다7051	㈜*니스	경기도 용인시	2025-03-19 11:00	마포01_강변북로(서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122)	〃	〃
122	36더9995	이*복	경기도 수원시	2025-03-19 11:15	용산02_강변북로(구리)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71-121)	〃	〃
123	70어2200	정*경	광주광역시 북구	2025-03-19 11:24	송파01_송파대로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260-8)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124	81더7038	㈜*인석산	경상북도 울진군	2025-03-19 13:52	광진01_동일로(군자교 지하차도)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263-1)	〃	〃
125	서울85노6671	최*열	경기도 양평군	2025-03-19 14:16	은평06_덕은교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275-3)	〃	〃
126	86나2625	강*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2025-03-19 14:30	양천05_서부트럭터미널(남부순환로)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738-1)	〃	〃
127	80너8155	㈜*앤에이치	경기도 동두천시	2025-03-19 15:12	서초05_양재IC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4)	〃	〃
128	98거9906	주식회사 씨*직텔레비전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3-19 16:21	양천05_서부트럭터미널(남부순환로)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738-1)	〃	〃
129	서울98사7194	이*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3-19 18:05	강서02_개화역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35)	〃	〃
130	80누7939	㈜*동한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3-19 18:30	강동02_강일57단지(아리수로)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377-4)	〃	〃
131	80누7939	㈜*동한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3-20 06:52	강동06_천호역(천호대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54-15)	〃	〃
132	18너3409	주식회사 교*문화신문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3-20 07:19	구로01_작동터널 (서울시 구로구 궁동 5-7)	〃	〃
133	89다3652	정*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5-03-20 07:35	금천06_시흥사거리(금하로)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95-4)	〃	〃
134	80다2257	윤*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03-20 08:22	서대문03_연희IC(연희로)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88-5)	〃	〃
135	41거2688	조*훈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3-20 08:45	노원01_동일로(동부간선도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10-9)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136	36너9895	김 *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3-20 09:43	서초07_청계산로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44-5)	〃	〃
137	10구7655	정*공	광주광역시 북구	2025-03-20 10:34	양천01_화곡로입구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258)	〃	〃
138	90노9332	김*옥	경기도 이천시	2025-03-20 12:54	강남01_올림픽대로(잠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75-2)	〃	〃
139	경기82다7013	㈜*성종합건설	경기도 안양시	2025-03-20 13:30	양천05_서부트럭터미널(남부순환로)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738-1)	〃	〃
140	81더7038	㈜*인석산	경상북도 울진군	2025-03-20 14:14	광진02_천호대로(군자교)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669)	〃	〃
141	02도4429	주식회사 케*파크미디어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3-20 17:40	금천05_금천교(범안로)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003-6)	〃	〃
142	56소8831	㈜한*청소년교육방송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3-20 20:34	구로02_안양천로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60-17)	〃	〃
143	80누7939	㈜*동한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3-21 06:52	강동06_천호역(천호대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54-15)	〃	〃
144	89다3652	정*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5-03-21 07:13	구로07_항동지구(서해안로) (서울시 구로구 항동 산34-10)	〃	〃
145	18너3409	주식회사 교*문화신문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3-21 07:15	구로01_작동터널 (서울시 구로구 궁동 5-7)	〃	〃
146	88어3409	전*우	대구광역시 달서구	2025-03-21 09:27	광진02_천호대로(군자교)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669)	〃	〃
147	53가3939	T*KE SERAFETTIN AHMET	경기도 의정부시	2025-03-21 10:17	강남08_수서IC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364-13)	〃	〃
148	81어1117	㈜*통전력	경기도 가평군	2025-03-21 11:16	마포01_강변북로(서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122)	〃	〃
149	56소8831	㈜*국청소년교육방송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3-21 11:34	양천03_경인고속도로 (서울시 양천구 지양로16길 17-20)	〃	〃
150	01나4449	함*옥	서울특별시 중구	2025-03-21 15:07	마포01_강변북로(서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122)	〃	〃
151	76너7131	성*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3-21 18:10	은평01_북한산로(입곡삼거리)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28)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152	89다3652	정*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5-03-24 07:07	금천06_시흥사거리(금하로)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95-4)	〃	〃
153	80거5739	주식회사*우이엔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3-24 07:09	용산03_강변북로(일산)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35)	〃	〃
154	34누4895	㈜*이엔	경기도 포천시	2025-03-24 12:03	중랑01_북부간선도로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701-2)	〃	〃
155	01나4449	함*옥	서울특별시 중구	2025-03-24 14:48	영등포03_서울교(경인로)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1)	〃	〃
156	08조4101	김*민	경기도 오산시	2025-03-24 16:07	서초06_분당내곡로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1-2601)	〃	〃
157	80너8155	㈜*앤에이치	경기도 동두천시	2025-03-24 16:17	서초05_양재IC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4)	〃	〃
158	80누7939	㈜*동한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3-24 16:22	강동03_고덕역(고덕로)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296)	〃	〃
159	34라9203	한*민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3-24 16:26	강동07_서하남IC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227-7)	〃	〃
160	80거5739	주식회사*우이엔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3-25 06:36	용산03_강변북로(일산)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35)	〃	〃
161	95두9824	한*희	충청남도 천안시	2025-03-25 06:39	양천03_경인고속도로 (서울시 양천구 지양로16길 17-20)	〃	〃
162	80누7939	㈜*동한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3-25 06:52	강동06_천호역(천호대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54-15)	〃	〃
163	18너3409	주식회사 교*문화신문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3-25 07:13	구로01_작동터널 (서울시 구로구 궁동 5-7)	〃	〃
164	01너7564	㈜*준이엔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3-25 09:33	구로02_안양천로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60-17)	〃	〃
165	80다2257	윤*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03-25 09:36	은평07_증산로(DMC)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251)	〃	〃
166	01보6885	㈜*조인터내셔널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5-03-25 14:09	은평02_통일로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71-15)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167	81더7038	㈜*인석산	경상북도 울진군	2025-03-25 14:17	중랑04_사가정역(사가정로)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472-44)	〃	〃
168	10주2973	가* 디엔씨(주)	경기도 화성시	2025-03-25 15:07	은평04_구기터널(진흥로)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산1-55)	〃	〃
169	89다3652	정*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5-03-25 15:10	금천09_석수역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01-42)	〃	〃
170	서울31더1215	㈜*송사	서울특별시 중구	2025-03-25 20:27	서대문03_연희IC(연희로)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88-5)	〃	〃
171	80누7939	㈜*동한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3-26 06:52	강동06_천호역(천호대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54-15)	〃	〃
172	18너3409	주식회사 교*문화신문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3-26 07:21	구로01_작동터널 (서울시 구로구 궁동 5-7)	〃	〃
173	89다3652	정*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5-03-26 07:27	금천06_시흥사거리(금하로)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95-4)	〃	〃
174	39저8152	정*훈외1인(박*윤)	경상북도 칠곡군	2025-03-26 09:31	동대문01_회기역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18-19)	〃	〃
175	93누9986	박*하	충청남도 천안시	2025-03-26 10:41	성북02_길음역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532-18)	〃	〃
176	11고9913	김*용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3-26 11:02	금천03_시흥대로(시흥IC)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996-7)	〃	〃
177	10구6089	이*웅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3-26 11:31	구로07_항동지구(서해안로) (서울시 구로구 항동 산34-10)	〃	〃
178	81더7038	㈜*인석산	경상북도 울진군	2025-03-26 11:45	광진01_동일로(군자교 지하차도)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263-1)	〃	〃
179	89다7051	㈜*니스	경기도 용인시	2025-03-26 12:38	동작02_상도터널(양녕로) (서울시 동작구 본동 126-13)	〃	〃
180	93거4153	(주) 에*스하이텍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5-03-26 14:14	강동07_서하남IC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227-7)	〃	〃
181	10주2973	가* 디엔씨(주)	경기도 화성시	2025-03-26 14:53	마포01_강변북로(서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122)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182	08조4101	김*민	경기도 오산시	2025-03-26 16:04	서초06_분당내곡로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1-2601)	〃	〃
183	92러4552	김*	경기도 고양시	2025-03-26 16:21	중랑04_사가정역(사가정로)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472-44)	〃	〃
184	89구3994	박*봉	경기도 남양주시	2025-03-26 16:38	노원01_동일로(동부간선도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10-9)	〃	〃
185	01어6825	이*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3-26 20:22	중랑04_사가정역(사가정로)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472-44)	〃	〃
186	89버7181	이*규	경기도 수원시	2025-03-27 06:59	금천06_시흥사거리(금하로)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95-4)	〃	〃
187	서울98사7194	이*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3-27 07:49	서대문01_통일로(산골고개)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164-3)	〃	〃
188	83가4427	㈜*쟌에이	경기도 평택시	2025-03-27 09:20	서초05_양재IC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4)	〃	〃
189	전남91바3003	㈜*성운수	전라남도 담양군	2025-03-27 09:30	서초05_양재IC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4)	〃	〃
190	전북80사4508	㈜*천년운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25-03-27 09:30	서대문02_모래내로(연희IC)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105-4)	〃	〃
191	81무6785	㈜*지엔터프라이즈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3-27 12:43	강동05_상일IC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2-2)	〃	〃
192	28부5917	임*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3-27 14:51	광진02_천호대로(군자교)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669)	〃	〃
193	81더7038	㈜*인석산	경상북도 울진군	2025-03-27 15:03	강동05_상일IC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2-2)	〃	〃
194	경기86마7608	김*만	경기도 안산시	2025-03-27 16:07	구로06_개봉교후방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403-195)	〃	〃
195	89구3994	박*봉	경기도 남양주시	2025-03-27 16:09	노원01_동일로(동부간선도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10-9)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196	11더7210	박*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3-27 16:52	서초05_양재IC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4)	〃	〃
197	81무6785	㈜*지엔터프라이즈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3-28 06:26	강동06_천호역(천호대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54-15)	〃	〃
198	80누7939	㈜*동한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3-28 06:52	강동06_천호역(천호대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54-15)	〃	〃
199	80거5739	주식회사*우이엔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3-28 07:07	용산03_강변북로(일산)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35)	〃	〃
200	전북86사1583	황*태(대경물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5-03-28 07:21	서초04_사당IC진출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691-6)	〃	〃
201	89다3652	정*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5-03-28 07:27	금천08_한내로(기아대교)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82-27)	〃	〃
202	인천94가5866	㈜*그라미	인천광역시 강화군	2025-03-28 09:18	강서03_벌말로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673-21)	〃	〃
203	18너3409	주식회사 교*문화신문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3-28 10:23	강남01_올림픽대로(잠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75-2)	〃	〃
204	83가4427	㈜*젼에이	경기도 평택시	2025-03-28 11:55	용산03_강변북로(일산)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35)	〃	〃
205	서울98사7194	이*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3-28 12:11	양천05_서부트럭터미널(남부순환로)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738-1)	〃	〃
206	89다7051	㈜*니스	경기도 용인시	2025-03-28 12:45	마포01_강변북로(서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122)	〃	〃
207	22라4336	강*식	전라남도 신안군	2025-03-28 14:01	관악01_난곡터널(문성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26-4)	〃	〃
208	10주2973	가* 디엔씨(주)	경기도 화성시	2025-03-28 14:26	도봉01_도봉로시계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378-1)	〃	〃
209	80어3134	전*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2025-03-28 15:05	노원01_동일로(동부간선도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10-9)		
210	81더7038	㈜*인석산	경상북도 울진군	2025-03-28 15:10	강동06_천호역(천호대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54-15)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211	01너7564	㈜*준이엔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3-28 15:19	서초01_올림픽대로(공항)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15-2)		
212	95두9824	한*희	충청남도 천안시	2025-03-28 18:05	영등포04_시흥대로(구로디지털단지역)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994-26)		
213	88머7703	우*현	경상북도 경산시	2025-03-28 18:35	용산02_강변북로(구리)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71-121)		
214	85어7234	김*현	울산광역시 울주군	2025-03-31 07:01	은평02_통일로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71-15)		
215	89다3652	정*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5-03-31 07:01	금천06_시흥사거리(금하로)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95-4)		
216	서울98사7194	이*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3-31 07:31	영등포02_영등포로(오목교)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5-2)		
217	11러5119	이*섭	경기도 용인시	2025-03-31 07:37	광진04_잠실대교북단(자양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85)		
218	92너4270	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3-31 07:50	용산03_강변북로(일산)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35)		
219	34누4895	㈜*이엔	경기도 포천시	2025-03-31 10:19	중랑01_북부간선도로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701-2)		
220	89다7051	㈜*니스	경기도 용인시	2025-03-31 12:13	영등포01_여의2교(제물포길)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30)		
221	92러4552	김*	경기도 고양시	2025-03-31 13:01	마포01_강변북로(서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122)		
222	01보6885	㈜*조인터내셔널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5-03-31 14:41	마포01_강변북로(서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122)		
223	80서7783	이*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3-31 15:31	동대문01_회기역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18-19)		
224	10주2973	가* 디엔씨(주)	경기도 화성시	2025-03-31 17:07	마포01_강변북로(서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122)		
225	82가6549	김*배	경기도 파주시	2025-03-31 17:21	용산03_강변북로(일산)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35)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226	38라1498	김*현	경기도 부천시	2025-03-31 17:29	구로07_항동지구(서해안로) (서울시 구로구 항동 산34-10)		
227	33도8616	문*일	경상북도 청도군	2025-03-31 18:23	용산03_강변북로(일산)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35)		
228	70두9198	BU* VAN VINH	경상남도 창원시	2025-03-31 19:04	마포01_강변북로(서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122)		

4. 공고 기간 :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이의신청 안내

가. 이의신청 기한 : 과태료 부과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까지

나. 본 부과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이의신청서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이의신청 제출 방법

- 우편 제출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대기정책과 (운행차관리팀)
- 모바일(문자)제출 : 이의신청서 작성 후 사진 촬영하여 업무용 휴대폰 (010-9615-3241)으로 문자 전송

6. 유의사항

가. 공고대상자는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최대 60개월까지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되며, 아울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재산에 대한 압류 등)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대기정책과 운행차관리팀(☎ 02-2133-3652, 36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이의신청서 양식 1부. 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소유자	성 명			차량번호	
	사업자번호 (법인소유차량)			생년월일 (개인소유차량)	
	주 소			휴대폰 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	부과기관	서울특별시		부과번호	외 건
	고지받은 일 자	외 건		과 태 료 금 액	원
	위반내용	계절관리제운행제한		위반일시	외 건
과 태 료 처분에 대한 불 복 사 유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제출방법 : 이의신청서 사진촬영하여 010-9615-3241로 문자 전송

※ 우편제출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시청 대기정책과(우0451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624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서를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서
2.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체납 및 압류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고객번호 (업종)	급수설비 소재지	과 목	체납기간(납기)	체납금액(원)
0□9734306 (가정용)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15길 □□ 403호 (구로동 8□)	상하수도요금	22년 4월 ~ 25년 2월	383,660원
0□1894491 (가정용)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47길 □, 602호 (구로동 47□-6□)	상하수도요금	22년 2월 ~ 25년 2월	245,040원
0□3078488 (가정용)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7다길 □□ (구로동 712-□)	상하수도요금	22년 12월 ~ 25년 2월	2,278,850원
0□3081314 (가정용)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25길 25-□□ (구로동 706-□□)	상하수도요금	22년 4월 ~ 24년 8월	444,270원

나. 압류내역

압류 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15길 □□ 403호 (구로동 8□)	허□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15길 □□ 403호 (구로동 8□)	383,660원	2025년 6월 27일
부동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47길 □, 602호 (구로동 47□-6□)	김□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47길 □, 602호 (구로동 47□-6□)	245,040원	2025년 6월 27일
부동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7다길 □□ (구로동 712-□)	김□옥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7길 69-□□	2,278,850원	2025년 6월 27일
부동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25길 25-□□ (구로동 706-□□)	전□자	경상북도 김천시 양금로 19□ ,501호	444,270원	2025년 6월 27일

4. 공고기간 : 2025. 5. 29. ~ 2025. 6. 12.(14일간)
5. 안내사항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 공고문에 대해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동 법 제27조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혹은 유선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의견제출기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기타 문의사항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02-3146-38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630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에게 2차례 송달하였으나 부재로 인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①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5. 29. ~ 2025. 6. 11.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02627382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196, 607동 202호 (하계동 ,장미)	수도요금	2022. 3월 등 19납기	19회	514,950원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73 장미아파트 제607동 제2층 제202호	이**	730626-2****** (2회송달 부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196, 607동 202호 (하계동 ,장미)	514,950원	2025 6. 11.이후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이경옥(☎02-3146-328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632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장*완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420번길 100 307동 50*호 (구래동)	위반일시: 2025-03-19 10:18 위반장소: 은평구 갈현동 544 위반내용: 차량의 높이 초과(실측값: 4.15m, 초과값: 0.15m,89주602*)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일: 2025-04-25 납기일: 2025-06-30
노*섭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2316-20 101동 180*호 (지행동)	위반일시: 2025-04-02 17:00 위반장소: 마포구 상암동 1548 위반내용: 차량의 총중량 초과(실측값: 44.45t, 초과값: 4.45t,94누625*)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25-04-25 납기일: 2025-06-30
김*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길 7* (신대방동)	위반일시: 2025-04-03 13:35 위반장소: 강서구 가양동 1471 위반내용: 차량의 높이 초과(실측값: 4.17m, 초과값: 0.17m,경기84고841*)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일: 2025-04-25 납기일: 2025-06-30

나.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박*순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281번길 16 104동 30*호 (오남읍)	위반일시: 2025-01-16 06:40 위반장소: 종로구 종로2가 20 위반내용: 차량의 폭 초과(실측값: 2.75m, 초과값: 0.25m,015가763*)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일: 2025-02-25 납기일: 2025-04-30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300-8347, 팩스번호: 02-300-8339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633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5.29.~2025.6.12.(14일간)

2. 처분사전통지 사항

연번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처분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1	㈜수종합건설 (대표 이준복)	건축 공사업 01-5297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47 3층 303호(응암동, 미주빌딩)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o 건설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 2025. 2. 3. 출자증권압류(강제집행)	영업정지	2025.6.18.(수) 10:00 건설혁신담당관 청문실	주무관 홍혜나	법 제83조 제3호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05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634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을 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미배달)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2025.5.29. ~ 2025.6.12.(14일간)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처분사유	관련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엔에스종합건설 (최규화)	건축공사업 01-3984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6길 9-14, 101호 (서교동)	2023년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하여 2025.1.9.자 영업정지(시정명령/지시불응(등록기준 적합여부 실태조사 등의 보고 불이행)) 처분 종료일인 2025.3.20.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 제5호	등록말소 (2025.6.27.)	법 제83조 제8호의2
더블유종합건설㈜ (송범석)	건축공사업 01-5034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 84 3층 (망우동, 지우빌딩)	2023년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하여 2025.1.9.자 영업정지(시정명령/지시불응(등록기준 적합여부 실태조사 등의 보고 불이행)) 처분 종료일인 2025.3.20.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 제5호	등록말소 (2025.6.27.)	법 제83조 제8호의2
㈜본 (이원용)	건축공사업 01-460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 1907호 (목동 , 대한민국예술인센터)	2023년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하여 2025.1.9.자 영업정지(시정명령/지시불응(등록기준 적합여부 실태조사 등의 보고 불이행)) 처분 종료일인 2025.3.6.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 제5호	등록말소 (2025.6.27.)	법 제83조 제8호의2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05으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635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을 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미배달)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2025.5.29. ~ 2025.6.12.(14일간)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 근거
태화종합건설㈜ (백재일)	건축공사업 01-4387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24길 20-3 , 204호(봉천동, 샤르망6차)	사업자 국세청 폐업 - 사업자등록번호:369-86-01047 - 폐업일: 2025.2.4.	등록말소 (2025.6.27.)	법 제83조 제12호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05으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636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 예고서를 소유자 주소지(주민등록주소 및 법인등기주소)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반송으로 미송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5.29. ~ 2025. 6.12.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예고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36202563	영등포구 여의서로 1**외 2필지(여의도동 *1-8)	수도 요금	2022. 2 외 36납기	37회	111,629,990원	압류예고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1**외 2필지 (여의도동 *1-8)	주식회사****스트	110111-******* (등기번호 1126806254597 폐문부재)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길 **-50, 가동	111,629,990원	2025. 6.13.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박임숙(☎02-3146-119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637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 예고서 소유자 주소지(주민등록주소 및 법인등기주소)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반송으로 미송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5.29. ~ 2025. 6.12.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예고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29603515	금천구 독산로**다길 16(독산동 9*6)	수도요금	2023. 3 외 10납기	11회	4,270,480원	압류예고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다길 16 (독산동 9*6)	성**	810205-******* (등기번호 1126804779279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1*길 1*-5(신림동)	4,270,480원	2025. 6.13.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박임숙(☎02-3146-119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638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 예고서 소유자 주소지(주민등록주소 및 법인등기주소)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반송으로 미송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5.29. ~ 2025. 6.12.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예고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24642018	영등포구 영중로**길 25(영등포동3가 *-11)	수도 요금	2023. 2 외 13납기	14회	11,358,710원	압류예고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길 25 (영등포동3가 *-11)	박*분	640903-******* (등기번호 1126804779282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길 10, 101동 **03호(영등포동*가)	11,358,710원	2025. 6.13.
		황*차	600322-******* (등기번호 1126804779283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길 10, 101동 **03호(영등포동*가)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박임숙(☎02-3146-119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639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 예고서 소유자 주소지(주민등록주소 및 법인등기주소)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반송으로 미송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5.29. ~ 2025. 6.12.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예고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23644970	송파구 위례성대로**길 15-1(방이동 1**-12)	수도 요금	2024. 2 외 5납기	6회	5,199,300원	압류예고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길 15-1 (방이동 1**-12)	손*경	820718-******* (등기번호 1126806256578수취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길 15-1(방이동)	5,199,300원	2025. 6.13.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박임숙(☎02-3146-119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644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을 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대표이사 자택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5. 29. ~ 2025. 6. 12.(14일간)
2. 처분대상 및 내용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1	남방건설 산업(주) (대표 석두균)	건축공사업 01-4313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4길 35, 301호	○ 시정명령(실태조사 관련 자료 제출) 불이행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함	법 제81조 제9호	등록말소 (2025. 6. 27.)	법 제83조 제8의2호
2	㈜옳소종합 건설 (대표 이현지)	건축공사업 01-472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36길 40, 지층	○ 시정명령(실태조사 관련 자료 제출) 불이행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함	법 제81조 제9호	등록말소 (2025. 6. 27.)	법 제83조 제8의2호
3	태혁종합 건설(주) (대표 이지혜)	건축공사업 1229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05, 201호	○ 시정명령(실태조사 관련 자료 제출) 불이행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함	법 제81조 제9호	등록말소 (2025. 6. 27.)	법 제83조 제8의2호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4	리움종합 건설(주) (대표 송제섭)	건축공사업 01-3482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28, 씨동1201호	○ 시정명령(실태조사 관련 자료 제출) 불이행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함	법 제81조 제9호	등록말소 (2025. 6. 27.)	법 제83조 제8의2호
5	㈜여강종합 건설 (대표 이광호)	건축공사업 01-49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158, 2층	○ 시정명령(실태조사 관련 자료 제출) 불이행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함	법 제81조 제9호	등록말소 (2025. 6. 27.)	법 제83조 제8의2호
6	㈜덕유종합 건설 (대표 신현)	건축공사업 01-4666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비-202호(에이치비 지니스파크)	○ 시정명령(실태조사 관련 자료 제출) 불이행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함	법 제81조 제9호	등록말소 (2025. 6. 27.)	법 제83조 제8의2호
7	㈜아모르파티 건설 (대표 홍정우)	건축공사업 01-4645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58, 포휴 2층 210호 (성수동1가)	○ 시정명령(실태조사 관련 자료 제출) 불이행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함	법 제81조 제9호	등록말소 (2025. 6. 27.)	법 제83조 제8의2호
8	㈜태진종합 건설 (대표 권혁형)	건축공사업 01-3838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6길 33, 202호 (성내동, 성광빌딩)	○ 시정명령(실태조사 관련 자료 제출) 불이행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함	법 제81조 제9호	등록말소 (2025. 6. 27.)	법 제83조 제8의2호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9	송파종합 건설(주) (대표 유성원)	건축공사업 01-439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68길 15, 1층 (거여동)	○ 시정명령(실태조사 관련 자료 제출) 불이행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함	법 제81조 제9호	등록말소 (2025. 6. 27.)	법 제83조 제8의2호
10	크리에이티브종합건설(주) (대표 김형태)	건축공사업 01-3946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4길 68, 8층 808호 (구의동, 리젠트오피스텔)	○ 시정명령(실태조사 관련 자료 제출) 불이행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함	법 제81조 제9호	등록말소 (2025. 6. 27.)	법 제83조 제8의2호
11	다우세상 건설㈜ (대표 안대희)	건축공사업 01-3642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66길 36, 5층 (가락동, 금아빌딩)	○ 시정명령(실태조사 관련 자료 제출) 불이행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함	법 제81조 제9호	등록말소 (2025. 6. 27.)	법 제83조 제8의2호
12	지산퍼스트종합건설 (주) (대표 박근석, 한경진)	건축공사업 01-499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4길 35, 301호	○ 시정명령(실태조사 관련 자료 제출) 불이행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함	법 제81조 제9호	등록말소 (2025. 6. 27.)	법 제83조 제8의2호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29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663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사전 통지(청문실시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 등으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5. 29. ~ 2025. 6. 12.(14일간)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처분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상암종합건설 (대표 김영린)	건축공사업 16-0558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래여울길 14, 2층 202호	'2024.10.28.까지 「2023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관련 자료를 건설혁신담당관 앞으로 제출할 것' 이라는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영업정지 처분 2개월 받은 후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까지도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등록말소	2025.6.27.(금) 14:00 건설혁신담당관 청문실	주무관 남은주	법 제83조 제8의2호

3.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29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664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또는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82조(과태료)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수취거절,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된 과태료 독촉고지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별첨
4. 공고기간 : 2025. 5. 29. ~ 2025. 6. 11. (14일간)
 - 과태료 납부지연에 따라 가산금 3%가 부과되었으며, 중가산금 1.2%씩(최대 75%)이 매월 부과됩니다.
 - 「지방세기본법」의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02-2133-4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철도안전법위반 과태료 2025년 5월 과태료 독촉통지 반송건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물건명	과세금액	위반일시
1	1078834254415	기타	2025-05-21 11:30	6603**-*******	권*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3-10	이동상인	150,000	2024-09-03 10:35
2	1078834254416	기타	2025-05-21 11:30	6603**-*******	권*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3-10	이동상인	150,000	2024-09-03 11:10
3	1078834254417	기타	2025-05-22 10:1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5길 15	이동상인	150,000	2024-09-03 12:00
4	1078834254419	이사불명	2025-05-15 14:05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55	이동상인	150,000	2024-09-04 10:26
5	1078834254420	기타	2025-05-21 10:25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 64	이동상인	150,000	2024-09-04 10:27
6	1078834254421	폐문부재	2025-05-20 09:30	6004**-*******	정*해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683번안길 17-21	이동상인	150,000	2024-09-04 13:30
7	1078834254424	이사불명	2025-05-15 14:05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55	이동상인	150,000	2024-09-05 10:29
8	1078834254425	기타	2025-05-21 06:59	4711**-*******	서*석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	이동상인	150,000	2024-09-06 10:40
9	1078834254427	기타	2025-05-21 10:30	4812**-*******	이*희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35 102동	이동상인	150,000	2024-09-07 10:16
10	1078834254428	기타	2025-05-21 06:59	4711**-*******	서*석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	이동상인	150,000	2024-09-07 10:45
11	1078834254433	기타	2025-05-21 11:24	6908**-*******	강*철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 43길 2-15	이동상인	150,000	2024-09-10 11:52
12	1078834254436	기타	2025-05-21 09:0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이동상인	150,000	2024-09-11 13:13
13	1078834254438	기타	2025-05-21 06:18	5312**-*******	정*호	인천 부평구 서촌로31 B동	이동상인	150,000	2024-09-11 14:30
14	1078834254439	폐문부재	2025-05-21 09:31	7201**-*******	장*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36번길 20	기부요청	150,000	2024-09-11 18:31
15	1078834254441	기타	2025-05-21 11:24	6908**-*******	강*철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 43길 2-15	이동상인	150,000	2024-09-13 10:45
16	1078834254443	기타	2025-05-21 06:59	4711**-*******	서*석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	이동상인	150,000	2024-09-13 11:24
17	1078834254445	폐문부재	2025-05-21 09:31	4210**-*******	이*연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173-4호	연설권유	150,000	2024-09-14 10:35
18	1078834254446	주소불명	2025-05-15 13:38	6202**-*******	이*실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1동84길-12	이동상인	150,000	2024-09-14 11:01
19	1078834254447	기타	2025-05-21 11:30	6603**-*******	권*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3-10	이동상인	150,000	2024-09-14 11:10
20	1078834254449	기타	2025-05-21 06:59	4711**-*******	서*석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	이동상인	150,000	2024-09-14 13:05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물건명	과세금액	위반일시
21	1078834254450	기타	2025-05-21 11:30	6603**-*******	권*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3-10	이동상인	150,000	2024-09-16 10:18
22	1078834254454	기타	2025-05-21 09:0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이동상인	150,000	2024-09-18 12:51
23	1078834254457	수취인불명	2025-05-15 10:19	4711**-*******	서*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28-5	이동상인	150,000	2024-09-20 10:50
24	1078834254459	기타	2025-05-21 09:0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이동상인	150,000	2024-09-20 11:04
25	1078834254461	기타	2025-05-21 06:59	4711**-*******	서*석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	이동상인	150,000	2024-09-21 10:18
26	1078834254462	폐문부재	2025-05-21 18:00	6404**-*******	이*중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493번지 45-15호	이동상인	150,000	2024-09-21 10:55
27	1078834254465	기타	2025-05-21 09:0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이동상인	150,000	2024-09-22 10:13
28	1078834254466	기타	2025-05-21 09:0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이동상인	150,000	2024-09-22 10:29
29	1078834254467	주소불명	2025-05-15 13:38	6202**-*******	이*실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1동84길-12	기부요청	150,000	2024-09-23 09:38
30	1078834254469	기타	2025-05-21 07:01	5307**-*******	윤*기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0길 6-15(신림동)	기부요청	150,000	2024-09-23 10:40
31	1078834254470	수취인불명	2025-05-15 10:18	4711**-*******	서*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28-5	이동상인	150,000	2024-09-23 10:57
32	1078834254472	기타	2025-05-22 10:1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5길 15	이동상인	150,000	2024-09-24 10:40
33	1078834254473	기타	2025-05-21 10:30	4812**-*******	이*희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35 102동	이동상인	150,000	2024-09-24 10:45
34	1078834254474	기타	2025-05-21 09:0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이동상인	150,000	2024-09-24 12:45
35	1078834254476	폐문부재	2025-05-20 09:30	8011**-*******	임*재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47	이동상인	150,000	2024-09-25 14:50
36	1078834254477	이사불명	2025-05-15 14:05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55	이동상인	150,000	2024-09-26 10:56
37	1078834254480	기타	2025-05-21 06:15	6306**-*******	장*길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 3길 60-3(사당동)	철도종사자지시위반	3,000,000	2024-09-30 11:09
38	1078834254481	기타	2025-05-21 06:59	4711**-*******	서*석	사울시 중구 청구로 71	이동상인	150,000	2024-10-01 09:51
39	1078834254483	기타	2025-05-21 06:18	5312**-*******	정*호	인천 부평구 서촌로31 B동	이동상인	150,000	2024-10-02 13:39
40	1078834254484	기타	2025-05-21 10:30	4812**-*******	이*희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35 102동	이동상인	150,000	2024-10-04 11:42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물건명	과세금액	위반일시
41	1078834254485	기타	2025-05-21 06:18	5312**-*******	정*호	인천 부평구 서촌로31 B동	이동상인	150,000	2024-10-07 13:43
42	1078834254487	기타	2025-05-21 11:30	6603**-*******	권*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3-10	이동상인	150,000	2024-10-09 10:33
43	1078834254490	기타	2025-05-21 06:59	4711**-*******	서*석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	이동상인	150,000	2024-10-15 13:30
44	1078834254491	기타	2025-05-21 06:59	4711**-*******	서*석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	이동상인	150,000	2024-10-16 11:08
45	1078834254493	기타	2025-05-21 06:59	4711**-*******	서*석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	이동상인	150,000	2024-10-23 10:39
46	1078834254494	기타	2025-05-21 06:59	4711**-*******	서*석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	이동상인	150,000	2024-10-24 10:52
47	1078834254496	기타	2025-05-21 10:30	4812**-*******	이*희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35 102동	이동상인	150,000	2024-10-26 10:52
48	1078834254497	기타	2025-05-21 06:59	4711**-*******	서*석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	이동상인	150,000	2024-10-30 11:17
49	1078834254498	기타	2025-05-21 06:59	4711**-*******	서*석	사울시 중구 청구로 71	이동상인	150,000	2024-10-31 13:52
50	1078834254503	기타	2025-05-21 11:30	6603**-*******	권*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3-10	이동상인	150,000	2024-11-09 11:50
51	1078834254504	기타	2025-05-21 11:30	6603**-*******	권*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3-10	이동상인	150,000	2024-11-11 11:06
52	1078834254505	기타	2025-05-21 06:59	4711**-*******	서*석	서울 중구 청구로 71, 부광유통 지하1층	이동상인	150,000	2024-11-12 13:30
53	1078834254506	기타	2025-05-21 11:30	6603**-*******	권*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3-10	이동상인	150,000	2024-11-14 12:25
54	1078834254507	기타	2025-05-21 11:30	6603**-*******	권*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3-10	이동상인	150,000	2024-11-15 10:57
55	1078834254508	기타	2025-05-21 11:30	6603**-*******	권*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3-10	이동상인	150,000	2024-11-18 12:13
56	1078834254509	기타	2025-05-21 11:30	6603**-*******	권*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3-10	이동상인	150,000	2024-11-19 11:20
57	1078834254510	기타	2025-05-21 06:59	4711**-*******	서*석	서울 중구 청구로 71, 부광유통 지하1층	이동상인	150,000	2024-11-27 13:34
58	1078834254515	기타	2025-05-21 06:59	4711**-*******	서*석	서울시 중구 청구로71(신당동)	이동상인	150,000	2024-12-13 14:00
59	1078834254517	폐문부재	2025-05-20 09:30	8011**-*******	임*재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47	이동상인	150,000	2024-12-23 10:51
60	1078834254518	기타	2025-05-21 10:30	4812**-*******	이*희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35 102동	이동상인	150,000	2024-12-23 11:32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667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진술)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김○원 등 355명
4. 공고기간 : 2025. 5. 29. ~ 2025. 6. 12.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5. 5. 29. ~ 2025. 6. 12.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와 함께 인터넷(http://cartax.seoul.go.kr)또는 서울특별시 교통지도단속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경(50%)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4층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570~79 팩스번호 : 02-2133-4904
   ※ 서울시 교통위반단속조회(http://cartax.seoul.go.kr)에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 대상 및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1부.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	126호36**	김*원	경기도 김포시	2025-03-31 18:59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	94소05**	김*민	경기도 안산시	2025-03-25 18:5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	101호26**	김*문	서울특별시	2025-04-01 09:1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	24러31**	백*호	서울특별시	2025-04-22 11:10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5	76라09**	강*원	경기도 부천시	2025-04-22 14:00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60000
6	92주71**	백*건*주*회*	서울특별시	2025-04-22 14:18	영등포구 샛강역 1번출구 앞	50000
7	97구01**	(*)*진*통	경기도 하남시	2025-04-22 09:27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8	301거56**	김*삼	경기도 시흥시	2025-04-22 18:37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9	82가93**	이*관	서울특별시	2025-04-23 12:55	잠실3사거리~잠실새내역	50000
10	340러60**	이*섭	충청남도 아산시	2025-04-23 18:19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11	87소83**	허*자	서울특별시	2025-04-23 08:27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12	71보77**	나*미	경기도 용인시	2025-04-23 09:21	양재동 양재IC 하행	60000
13	63더26**	나*례	서울특별시	2025-04-23 18:0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4	경기36나89**	이*승	경기도 김포시	2025-04-23 08:4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5	46구38**	송*숙	경기도 의정부시	2025-04-23 08:10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16	303보43**	이*정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23 18:5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7	154저12**	조*익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2025-04-23 15:30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8	서울38아41**	선*용식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23 20:01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9	서울31자27**	황*옥	서울특별시	2025-04-23 09:49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20	827버38**	서*길	인천광역시	2025-04-24 17:4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1	156저78**	임*선	인천광역시	2025-04-24 15:19	장지동 장지역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22	27더02**	양*길	서울특별시	2025-04-24 13:01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23	283마16**	K*M*U*Y*N	경기도 용인시	2025-04-25 14:4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4	154호90**	이*훈	경기도 의정부시	2025-04-13 16:22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25	11보86**	이*암	서울특별시	2025-04-24 14:58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6	15누25**	백*희	서울특별시	2025-04-24 17:36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7	58저09**	이*승	인천광역시	2025-04-24 10:3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8	87우69**	백*수	서울특별시	2025-04-24 17:52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29	11로93**	이*현	서울특별시	2025-04-24 17:31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0	77어28**	박*진	경기도 시흥시	2025-04-24 12:48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31	344노99**	이*숙	경기도 부천시	2025-04-24 20:27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2	169호34**	조*환	경기도 군포시	2025-04-13 14:50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3	243루76**	이*호	서울특별시	2025-04-22 13:1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4	서울85자84**	박*금	서울특별시	2025-04-20 20:20	번동 혜모로 아파트 건너편	50000
35	60조45**	조*수	서울특별시	2025-04-20 20:12	번동 혜모로 아파트 건너편	50000
36	91누46**	한*수	서울특별시	2025-04-24 07:06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37	43저86**	W*N*A*M*N*	서울특별시	2025-04-25 07:07	석수IC~기아대교앞교차로	50000
38	194하42**	이*	서울특별시	2025-04-15 23:26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39	134우13**	김*준	경기도 시흥시	2025-04-22 09:42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0	17모42**	윤*숙	서울특별시	2025-04-24 17:35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41	185주75**	신*식	서울특별시	2025-04-23 18:34	은천삼거리~서울대입구역	50000
42	05누20**	동*노*법*	서울특별시	2025-04-23 09:16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43	20너25**	오*선	서울특별시	2025-04-25 19:5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44	서울서대문자78**	이*원	서울특별시	2025-04-23 17:44	종로5가역~흥인지문교차로	40000
45	220하56**	최*훈	경기도 부천시	2025-04-03 20:28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46	경기92바90**	김*일	경기도 광주시	2025-04-24 07:11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47	08머50**	양*부	서울특별시	2025-04-27 12:09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48	305주25**	S*E*F*N*H*	서울특별시	2025-04-25 18:46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49	경기87사22**	박*환	경기도 고양시	2025-04-24 15:20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영등포역	50000
50	60주03**	박*진	경기도 의정부시	2025-04-25 20:38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51	159로20**	주*회*유*한	경기도 수원시	2025-04-01 13:5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52	179거89**	이*영	인천광역시	2025-04-10 18:50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53	336다49**	홍*의	서울특별시	2025-04-24 18:40	상계14-16단지교차로~마들역	50000
54	서울32사67**	심*식	서울특별시	2025-04-25 11:07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영등포역	50000
55	341수72**	이*순	서울특별시	2025-04-27 17:38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56	94노43**	박*민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25 09:34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57	339다73**	이*수	경기도 부천시	2025-04-25 09:04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58	62머49**	김*헌	경기도 고양시	2025-04-22 14:25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59	50누27**	김*연	경기도 김포시	2025-04-22 09:37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60	03가96**	탁*훈	서울특별시	2025-04-23 10:24	종합운동장사거리~잠실새내역	50000
61	59라75**	이*열	경기도 의정부시	2025-04-23 08:50	육사야구장~화랑대사거리	50000
62	23하59**	(*)*서*앤*스	경기도 김포시	2025-04-01 20:09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63	64모85**	최*남	서울특별시	2025-04-25 10:44	천호대교	50000
64	59라29**	예*에*에*(*)	경기도 광주시	2025-04-26 16:04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65	327조67**	안*미	충청남도 아산시	2025-04-24 08:11	내곡IC~염곡IC	50000
66	205보93**	L*Y*N*F*N	경기도 부천시	2025-04-26 13:13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67	257거31**	(*)*씨*탈	경기도 화성시	2025-04-26 14:5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68	91소26**	대*공*주*회*	서울특별시	2025-04-26 15:53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69	63수79**	박*선	서울특별시	2025-04-25 08:0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70	274다81**	신*이*티*주*	서울특별시	2025-04-23 08:05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71	182우78**	심*범	광주광역시	2025-04-23 07:30	대치역~도곡역	50000
72	138마82**	오*화	인천광역시	2025-04-23 17:5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73	356우12**	G*O*U*	경기도 수원시	2025-04-25 10:0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74	서울32아14**	최*일	서울특별시	2025-04-25 15:28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75	58거32**	이*호	서울특별시	2025-04-25 12:37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50000
76	96저09**	주*회*에*엠*설	경기도 평택시	2025-04-25 09:59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77	379소24**	김*진	경기도 화성시	2025-04-27 10:13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78	165호97**	(*)*버*컴*니	서울특별시	2025-04-17 08:1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79	93소03**	안*덕	서울특별시	2025-04-25 18:1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80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2025-04-27 10:56	양재동 양재IC 하행	60000
81	43저22**	박*화	서울특별시	2025-04-27 17:5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82	243보94**	최*열	대전광역시	2025-04-27 13:32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83	341수72**	이*순	서울특별시	2025-04-27 17:36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84	03두46**	서*원	경기도 파주시	2025-04-27 09:09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85	서울31바48**	정*환	서울특별시	2025-04-25 20:17	영등포구 샛강역 1번출구 앞	50000
86	251두37**	김*길	대구광역시	2025-04-27 16:35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87	89저63**	(*)*린*월*	경기도 용인시	2025-04-27 19:59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88	대전85사66**	성*용	대전광역시	2025-04-25 11:32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60000
89	57머35**	이*미	서울특별시	2025-04-21 17:05	월계2교교차로~북서울꿈의숲동문교차로	50000
90	서울31바60**	이*철	서울특별시	2025-04-22 08:51	육사야구장~화랑대사거리	50000
91	서울32사69**	박*권	서울특별시	2025-04-22 13:01	종합운동장교차로~종합운동장역	50000
92	308고47**	이*원	서울특별시	2025-04-23 07:43	국립현충원교차로~흑석역	50000
93	190허96**	강*희	경기도 구리시	2025-04-17 09:2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94	355버45**	이*완	경기도 수원시	2025-04-26 13:14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95	135고64**	임*자	서울특별시	2025-04-25 08:29	영등포역교차로~영등포로터리	50000
96	223허37**	영*한*온*인*회	경상북도 경주시	2025-04-20 17:14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97	125호62**	황*욱	경기도 안양시	2025-04-19 23:05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98	221호83**	강*동	서울특별시	2025-04-19 13:56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99	221하25**	주*회*비*얼*위*	서울특별시	2025-04-08 20:0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00	서울31자31**	강*식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23 09:49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101	177허12**	최*정	경기도 하남시	2025-04-21 11:0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02	194하54**	(*)*운*얼*이*스	서울특별시	2025-04-21 14:5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03	175하40**	홍*민	서울특별시	2025-04-21 11:52	잠실3사거리~잠실새내역	50000
104	140호85**	박*숙	서울특별시	2025-03-31 07:28	몽촌토성역~잠실역	50000
105	61우87**	채*묵	서울특별시	2025-04-22 07:50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06	185무56**	(*)*이*테*	경기도 안양시	2025-04-22 08:5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07	232우94**	백*준	경기도 군포시	2025-04-22 10:53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08	125호26**	주*회*비*프*토*빌*티	경기도 화성시	2025-04-22 14:28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09	348구29**	최*중	서울특별시	2025-04-22 17:13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110	54오38**	서*재	인천광역시	2025-04-22 11:5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11	95부41**	변*근	서울특별시	2025-04-22 10:51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12	257거31**	(*)*씨*탈	경기도 화성시	2025-04-26 14:53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13	216가10**	임*심	경기도 성남시	2025-04-25 18:27	영천동 영천시장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114	109하71**	김*량	경기도 광명시	2025-04-07 13:5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15	서울31아74**	강*풍	서울특별시	2025-04-24 15:28	갤러리아백화점 ~ 성수대교남단교차로	50000
116	283마16**	K*M*U*Y*N	경기도 용인시	2025-04-25 16:15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117	177호18**	주*회*써*츠	서울특별시	2025-04-18 17:06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18	160마10**	이*혜	인천광역시	2025-03-26 14:39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19	149허54**	권*도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17 17:46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120	04보55**	최*호	서울특별시	2025-04-22 16:07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121	116하58**	황*민	충청남도 당진시	2025-04-08 15:11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122	16두56**	이*정	서울특별시	2025-04-24 18:09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123	55보35**	김*숙	인천광역시	2025-04-11 01:29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24	157하82**	유*	인천광역시	2025-04-15 18:20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25	25호93**	B*C*R*O*D*P*T*I*K*A*E*H*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5-04-21 12:07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26	15서80**	문*학	서울특별시	2025-04-27 18:44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27	322주17**	이*우	전라남도 장성군	2025-04-23 09:44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28	815서45**	이*호	인천광역시	2025-04-23 15:0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29	157하82**	유*	인천광역시	2025-04-17 18:20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30	165노52**	이*연	서울특별시	2025-04-17 10:50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9-2 (여의도동)	50000
131	143호32**	동*소*이*지*주*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18 08:53	서울 노원구 화랑로 822 (공릉동)	50000
132	177호17**	이*이*프*주*회*	인천광역시	2025-04-22 08:08	잠실새내역교차로~종합운동장사거리	50000
133	397너11**	성*용	서울특별시	2025-04-23 09:58	영등포역교차로~영등포로터리	50000
134	191루26**	유*회*동*세*법*	서울특별시	2025-04-23 08:44	아현역~이대역	50000
135	60구03**	A*D*M*N*O*O*A*I*B*K*B*U*O*F*R*G*I	경기도 성남시	2025-04-25 13:2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36	242가51**	(*)*강*엔*	서울특별시	2025-03-26 13:0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37	49나71**	주*회*피*스*홀*스	경기도 화성시	2025-04-22 07:5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38	서울85자19**	송*윤	서울특별시	2025-04-22 14:3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39	48주51**	김*선	서울특별시	2025-04-22 18:49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40	81두54**	윤*수	경기도 시흥시	2025-04-23 13:38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141	819저67**	이*생	서울특별시	2025-04-23 20:12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42	67부59**	김*지	인천광역시	2025-04-24 19:18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43	61우87**	채*묵	서울특별시	2025-04-22 07:52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144	54너86**	조*심	서울특별시	2025-04-22 07:12	영등포역	50000
145	135소50**	이*호	서울특별시	2025-04-22 18:29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21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50000
146	238로10**	P*K*L*D*M*R	경기도 안산시	2025-04-23 10:14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47	184버94**	주*회*에*티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23 09:11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148	37도03**	김*미	서울특별시	2025-04-23 09:5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49	50수88**	범*산*개*주*회*	전라남도 해남군	2025-04-23 20:4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50	226라38**	김*수	서울특별시	2025-04-24 17:2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51	197보94**	나*학	서울특별시	2025-04-24 15:33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52	160구23**	(*)*엠	경기도 부천시	2025-04-24 18:4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53	서울31아64**	김*세	경기도 용인시	2025-04-23 19:46	영등포구 신송빌딩 앞	50000
154	35로85**	김*수	울산광역시	2025-04-25 19:2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55	312서82**	박*윤	서울특별시	2025-04-23 19:5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56	05가04**	김*호	서울특별시	2025-04-23 17:43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57	04노18**	김*솜	서울특별시	2025-04-23 19:2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58	서울83사40**	서*옥	서울특별시	2025-04-24 09:42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59	60더02**	이*의	서울특별시	2025-04-24 18:3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60	137라87**	심*정	서울특별시	2025-04-24 11:16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61	85나74**	노*호	서울특별시	2025-04-25 07:54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162	224마73**	유*민	서울특별시	2025-04-24 20:0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63	54로04**	H*N*Y*N*H*O	경기도 안산시	2025-04-25 19:30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64	서울32사91**	정*준	경기도 의왕시	2025-04-25 16:27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65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2025-04-27 10:54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166	143거33**	주*희*알*에*(*.*.*)	경기도 용인시	2025-04-22 11:26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67	49구03**	송*율	서울특별시	2025-04-23 16:3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68	06모89**	임*규	인천광역시	2025-04-23 20:18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69	49머48**	강*지	서울특별시	2025-04-23 10:5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70	810노80**	(*)*타*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22 20:42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171	66도21**	성*선	서울특별시	2025-04-24 09:36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172	69보02**	지*곤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24 17:58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173	경기37바57**	손*래	경기도 부천시	2025-04-24 19:5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74	241거41**	윤*현	인천광역시	2025-04-23 20:51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175	390어79**	이*아	대전광역시	2025-04-25 09:46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76	서울31자63**	김*헌	서울특별시	2025-04-25 11:0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77	93나09**	김*철	경기도 오산시	2025-04-25 15:0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78	43구46**	최*진	세종특별자치시	2025-04-26 09:55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내방향)	50000
179	10저86**	전*균	경기도 고양시	2025-04-25 08:3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80	42두97**	(*)*엔*	서울특별시	2025-04-25 19:38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81	122모47**	성*영	경기도 안양시	2025-04-25 19:39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82	73무73**	L*A*E*S*Y	경기도 안산시	2025-04-25 17:1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60000
183	43가06**	(*)*란*	경기도 용인시	2025-04-25 20:2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84	355버45**	이*완	경기도 수원시	2025-04-26 13:13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85	서울83자17**	최*정	서울특별시	2025-04-23 14:21	이수역사거리방향	50000
186	서울31사16**	정*열	서울특별시	2025-04-25 14:29	영등포구 신송빌딩 앞	50000
187	178버22**	주*회*삼*티*프*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25 09:46	군자역~아차산역삼거리	50000
188	347노42**	이*우	서울특별시	2025-04-27 10:15	광나루역~아차산역사거리 방면	50000
189	190어90**	전*영	경상북도 구미시	2025-04-24 18:0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90	경기72아79**	(*)*남*속*광	경기도 평택시	2025-04-24 19:01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60000
191	379라77**	박*찬	광주광역시	2025-04-25 18:0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92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2025-04-27 17:27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193	12수42**	장*우	서울특별시	2025-04-25 08:28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194	03우57**	조*형	서울특별시	2025-04-25 18:0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95	332조42**	김*중	경기도 성남시	2025-04-25 22:4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96	71호30**	(*)*로*금*렌*카	경상북도 포항시	2025-04-25 17:49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60000
197	25버39**	기*이	경기도 김포시	2025-04-25 20:18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98	159루52**	정*호	인천광역시	2025-04-26 16:56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99	35버06**	이*영	인천광역시	2025-04-25 09:36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00	서울31사36**	김*선	서울특별시	2025-04-27 00:56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50000
201	서울31자22**	한*근	서울특별시	2025-04-24 18:28	한양아파트앞사거리~성수대교남단교차로	50000
202	83보06**	김*주	서울특별시	2025-04-23 08:4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03	82마99**	상*환*주*회*	서울특별시	2025-04-25 09:4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204	165하67**	박*성	경기도 양주시	2025-04-16 09:46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05	서울91자12**	고*호	서울특별시	2025-04-22 08:13	반포역~고속터미널교차로	50000
206	251마57**	백*일	서울특별시	2025-04-22 08:09	길음역교차로~미아사거리	50000
207	24우02**	(*)*알*스*베*트*트	서울특별시	2025-04-22 09:50	봉천중앙시장앞	50000
208	171모32**	김*남	서울특별시	2025-04-23 06:06	영등포역교차로~영등포로터리	50000
209	316버69**	김*란	서울특별시	2025-04-23 08:51	육사야구장~화랑대사거리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10	365머64**	김*훈	서울특별시	2025-04-25 21:35	영등포역	50000
211	164누82**	인*분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2025-04-25 18:0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12	경기79사38**	하*한*속*광*주*	경기도 여주시	2025-04-27 18:12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60000
213	228나28**	주*하	인천광역시	2025-04-27 12:10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214	175하15**	푸*솔*광*주*	인천광역시	2025-04-25 15:42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215	서울31아15**	한*진	서울특별시	2025-04-25 20:3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216	11누66**	해*토*주*회*	서울특별시	2025-04-26 12:00	방학역~도봉역	50000
217	서울32아20**	김*근	서울특별시	2025-04-24 11:56	잠실새내역~잠실운동장사거리	50000
218	247오29**	주*회*아*론	서울특별시	2025-04-24 11:55	잠실3사거리~잠실새내역	50000
219	48라35**	김*민	서울특별시	2025-04-24 09:52	대치역~도곡역	50000
220	47러03**	황*진	경기도 포천시	2025-04-22 11:0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21	서울91자78**	정*철	서울특별시	2025-04-22 14:24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222	63어76**	이*호	서울특별시	2025-04-24 08:27	영등포시장교차로~영등포로터리	50000
223	802수13**	조*호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24 08:42	올림픽공원교차로~송파구청교차로	50000
224	서울31바34**	박*훈	서울특별시	2025-04-24 10:19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225	101하67**	이*준	경기도 광주시	2025-03-12 17:07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26	서울32아26**	임*건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25 20:47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227	32버08**	박*영	서울특별시	2025-04-22 17:38	브라운스톤관악아파트101동앞	50000
228	서울32사56**	이*섭	경기도 성남시	2025-04-24 19:1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29	156호44**	김*주	인천광역시	2025-04-04 08:3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30	190호18**	(*)*아*	서울특별시	2025-04-16 08:0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31	191허55**	최*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5-04-16 11:01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32	61보21**	강*석	서울특별시	2025-04-16 19:04	길음역교차로~길음교교차로	50000
233	03누55**	김*은	경기도 이천시	2025-04-22 16:00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34	134우13**	김*준	경기도 시흥시	2025-04-22 09:46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35	185무56**	(*)*이*테*	경기도 안양시	2025-04-22 08:51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36	164소17**	이*철	경기도 고양시	2025-04-16 09:52	동산육교~구파발사거리	50000
237	296고63**	김*기	서울특별시	2025-04-17 10:34	아차산역 사거리	50000
238	서울32바88**	강*조	경기도 김포시	2025-04-16 08:51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239	91루16**	안*복	경기도 성남시	2025-04-24 07:33	내곡ic~염곡ic	50000
240	서울32바28**	정*영	경기도 구리시	2025-03-27 08:35	내곡ic~염곡ic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41	10소39**	김*완	경기도 광명시	2025-04-24 07:59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242	197보94**	나*학	서울특별시	2025-04-24 15:3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43	224수80**	한*아	경기도 의정부시	2025-04-22 08:41	용화여고~노원역	50000
244	258모13**	안*복	서울특별시	2025-04-23 08:43	용화여고~노원역	50000
245	41라16**	K*A*T*U*I*	경기도 평택시	2025-04-24 08:5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46	222저29**	하*숙	경기도 수원시	2025-04-24 19:24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47	서울32사30**	송*빈	인천광역시	2025-04-25 16:57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48	26마01**	박*범	경기도 안양시	2025-04-22 07:14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49	38너41**	주*회*신*	인천광역시	2025-04-24 07:31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250	55구75**	J*N*I*G*U*	서울특별시	2025-04-16 17:50	구로교~대림사거리	50000
251	85우60**	주*원	서울특별시	2025-04-16 17:50	구로교~대림사거리	50000
252	100버69**	J*N*O*G*A*	서울특별시	2025-04-16 17:50	구로교~대림사거리	50000
253	84오61**	김*호	서울특별시	2025-04-18 08:37	화랑대사거리~육사야구장	50000
254	87두77**	홍*헌	경기도 구리시	2025-04-18 08:37	화랑대사거리~육사야구장	50000
255	46부84**	H*N*S*I*U*N	경기도 김포시	2025-04-07 17:26	연신내역~구산역	50000
256	101하79**	주*회*한*렌*카	경기도 고양시	2025-04-24 17:4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57	163누11**	김*진	서울특별시	2025-04-24 09:19	태릉~서울여대	50000
258	310더88**	김*민	인천광역시	2025-04-25 11:10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259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2025-04-25 10:51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260	183저37**	김*민	서울특별시	2025-04-22 07:29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61	805노25**	주*회*농*산*유*	경기도 구리시	2025-04-22 09:30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262	303보43**	이*정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22 15:39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63	43보19**	김*기	서울특별시	2025-04-22 08:26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264	281머23**	오*경	서울특별시	2025-04-23 17:39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265	23두57**	최*환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23 07:55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266	95수87**	주*회*옥*포*	서울특별시	2025-04-23 12:06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50000
267	04고95**	이*임	서울특별시	2025-04-23 18:56	개화동 영산PVC 상사	50000
268	338누82**	주*회*파*스*	서울특별시	2025-04-22 08:33	금천소방서~말미사거리	50000
269	142호25**	김*용	서울특별시	2025-04-09 15:4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70	197호61**	(*)*엘*프*	경기도 과천시	2025-04-17 18:23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71	서울32아43**	김*담	서울특별시	2025-04-24 20:59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72	경기81바47**	이*관	경기도 성남시	2025-04-18 07:28	삼성교~강남경찰서교차로	50000
273	서울56다90**	위*량	서울특별시	2025-04-21 08:46	올림픽대교남단교차로~올림픽회관교차로	50000
274	59다26**	이*관	경기도 의정부시	2025-04-17 16:49	도봉산역교차로~도봉역사거리	50000
275	190허27**	조*재	서울특별시	2025-04-17 10:49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여의도동)	50000
276	84고53**	권*택	경기도 안양시	2025-04-22 07:49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277	15다40**	신*희	경기도 김포시	2025-04-22 09:06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78	28노37**	이*년	서울특별시	2025-04-22 18:14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79	96저09**	주*회*에*엠*설	경기도 평택시	2025-04-22 08:51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80	48나19**	홍*영	서울특별시	2025-04-22 18:0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281	58노39**	성*선	서울특별시	2025-04-22 17:52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282	364마24**	민*정	서울특별시	2025-04-23 19:5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83	215노85**	황*철	경기도 김포시	2025-04-23 17:39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284	58수80**	김*관	경기도 용인시	2025-04-23 17:2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85	134마67**	박*백	인천광역시	2025-04-23 08:30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86	56두18**	최*석	경기도 안양시	2025-04-24 08:24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287	06나14**	김*수	서울특별시	2025-04-24 22:01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288	서울32바89**	우*욱	경기도 의정부시	2025-04-24 18:3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289	283마16**	K*M*U*Y*N	경기도 용인시	2025-04-25 16:13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90	243보94**	최*열	대전광역시	2025-04-27 13:33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91	341수72**	이*순	서울특별시	2025-04-27 17:37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92	801머88**	신*범	서울특별시	2025-04-26 07:28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50000
293	143서19**	노*인	서울특별시	2025-04-25 16:43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94	800노65**	주*회*룸*비*딜*버*	서울특별시	2025-04-22 08:1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95	서울31사56**	박*문	서울특별시	2025-04-22 12:5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96	395소81**	김*영	경기도 의정부시	2025-04-22 18:0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97	222러46**	이*창	서울특별시	2025-04-24 16:4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98	서울32바64**	박*상	서울특별시	2025-04-24 20:3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99	20오65**	태*일	서울특별시	2025-04-25 08:24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300	48가65**	임*일	서울특별시	2025-03-04 07:44	영등포시장교차로~영등포교차로	50000
301	815서45**	이*호	인천광역시	2025-04-23 15:04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02	경기90아60**	윤*식	경기도 의정부시	2025-04-24 18:1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303	40부57**	김*희	서울특별시	2025-04-24 18:03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304	169호79**	푸*솔*광*주*	인천광역시	2025-04-24 20:40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305	107저61**	최*수	서울특별시	2025-04-25 16:2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06	41고15**	이*재	경기도 성남시	2025-04-25 09:08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307	230가65**	김*열	서울특별시	2025-04-24 18:52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308	31루02**	이*운	경기도 부천시	2025-04-24 08:13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09	812부21**	김*순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24 09:46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10	45수93**	신*선	경기도 하남시	2025-04-24 09:0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11	371도30**	김*환	서울특별시	2025-04-24 17:4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12	215어15**	윤*희	경기도 성남시	2025-04-24 19:4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13	228주84**	주*회*엔*미*	경기도 광주시	2025-04-25 17:14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314	16라05**	김*애	경기도 안양시	2025-04-25 16:07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315	254누90**	이*배	서울특별시	2025-04-25 16:46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316	서울35바32**	도*운	서울특별시	2025-04-25 12:19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317	102너52**	주*회*훈*터*인*트	인천광역시	2025-04-26 22:39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318	101호68**	엠*티*퍼*	서울특별시	2025-04-14 08:02	내곡ic~염곡ic	50000
319	174소98**	주*회*소*트*들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14 08:51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320	125호26**	주*회*비*프*토*빌*티	경기도 화성시	2025-04-22 14:2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21	11거65**	박*	경기도 구리시	2025-04-22 16:43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322	92로61**	비*컨*턴*주*회*	경기도 성남시	2025-04-25 20:0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23	154호90**	이*훈	경기도 의정부시	2025-04-13 16:21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24	328라20**	이*순	경기도 용인시	2025-04-24 12:18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25	40노33**	주*회*지*프*씨	서울특별시	2025-04-24 17:5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26	84주08**	최*구	서울특별시	2025-04-24 15:35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50000
327	283마16**	K*M*U*Y*N	경기도 용인시	2025-04-25 16:1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28	322루58**	유*라	경기도 파주시	2025-04-25 14:5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29	81로35**	송*하	서울특별시	2025-04-25 18:45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330	122부33**	위*현	서울특별시	2025-04-25 09:04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331	33오85**	김*준	서울특별시	2025-04-25 09:36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32	233호65**	(*)*이*퍼*	경기도 김포시	2025-04-15 19:11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33	64머83**	김*호	경기도 가평군	2025-04-24 12:5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34	164누98**	윤*선	충청남도 서천군	2025-04-24 15:15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335	70두14**	정*무	충청북도 제천시	2025-04-27 19:09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336	815로41**	현*철	경기도 양평군	2025-04-25 17:1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37	32너83**	주*호*베*데*레	경기도 의정부시	2025-04-25 18:3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38	경기35바26**	(*)*진*수	경기도 안양시	2025-04-25 20:2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39	821두93**	(*)*눔*	경기도 시흥시	2025-04-25 09:23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340	163하78**	우*선	인천광역시	2025-03-31 12:11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341	193허92**	엔*주*회*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14 18:05	삼육에코팜~삼육대	50000
342	145호74**	임*주	경기도 과천시	2025-04-21 19:5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43	109호22**	이*은	경기도 시흥시	2025-04-21 15:36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344	125호26**	주*회*비*프*토*빌*티	경기도 화성시	2025-04-22 14:27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45	04두38**	서*영	서울특별시	2025-04-22 20:27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46	70버53**	윤*노	서울특별시	2025-04-22 08:23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60000
347	228거39**	정*섭	경기도 포천시	2025-04-22 09:19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348	56두18**	최*석	경기도 안양시	2025-04-23 08:27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349	30수93**	최*석	서울특별시	2025-04-23 09:4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50	241거56**	이*희	인천광역시	2025-04-25 20:49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351	42도21**	랜*마*건*주*회*	경기도 성남시	2025-04-25 14:26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352	42도21**	랜*마*건*주*회*	경기도 성남시	2025-04-25 14:2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53	05라22**	이*진	서울특별시	2025-04-23 19:35	영등포역교차로~영등포로터리	50000
354	209노76**	주*회*디	서울특별시	2025-04-22 11:4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355	29더80**	신*섭	경기도 용인시	2025-04-23 15:55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의견제출서 제출 안내

- 귀하의 차량이 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단속되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통지하며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요의견제출 대상(**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준거**)

구 분	증 빙 서 류
범죄의 예방 ·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기관장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공사계약서, 기관장 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 진료확인서(의료기관 발행)
화재 · 수해 ·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기관장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 · 하차를 돕는 경우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 가능한 증빙서류

- 의견제출서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을 심의하여 결과를 별도 통보하여드립니다.
- 의견제출서는 앞면의 우편물 발송기관 주소 또는 팩스로 발송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팩스 제출 시 수신여부 확인)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https://cartax.seoul.go.kr)를 통해서 방문 없이 의견제출서를 바로 작성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의견제출 항목은 증빙서류의 적정여부 및 관련 법에 의한 운전자 의무(조치)사항 이행여부도 심의대상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3급), 미성년자는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과태료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 감경대상인 경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 감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견제출서 작성 서식(예시)

의 견 제 출 서

차 량 번 호	위 반 일 시	위 반 장 소
○○가○○○○	○○○○년 ○○월 ○○일 ○○시 ○○분	○○로 ○○길 ○○주변 ○○○○앞

- 제출의견 기재 : (단속된 사안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 제출자 성명 : ○○○ - 제출자 주소 : ○○시 ○○구 ○○로 ○○, **상세주소 입력** - 제출자 전화번호 :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안내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면 앞면에 기재된 입금계좌 또는 은행 창구·ATM기, 이택스(https://etax.seoul.go.kr)에서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해당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기한 경과시 첫달에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1개월마다 1.2%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된 과태료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 종	이 륜 자 동 차	승 용 자 동 차	승 합 자 동 차
과태료	40,000원	50,000원	60,000원
체납시 최대 과태료	70,000원	87,500원	105,000원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임대자동차 운행자정보 제출 안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임대한 자동차의 운행자 정보를 과태료 부과기관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문서24(https://docu.gdoc.go.kr)를 통해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차량임대계약서 사본, 기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면허증 사본 등)
- 의견진술 기한까지 자동차 운행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668호

서울특별시 박물관 신규등록 공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박물관 등록 사항

등록번호	등록유형	명 칭	설립자	대표자	소 재 지	등록일
서울-사립12-2025-01호	제1종 전문박물관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	한국기독교 역사문화재단	한국기독교 역사문화재단	서울시 은평구 진관1로 94	2025.5.29.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66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8-72호(1998.3.7.)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최초 결정 및 제2023-160호(2023.05.04.)로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71호(2024.08.01.), 제2025-116호(2025.03.06.)로 실시계획 작성 고시된「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제9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열람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바랍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계로98-1(광운대역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사업(중로1-391호선, 소로1-14호선)
다. 사업시행 규모(변경없음)
○ 도로신설 및 도로정비(왕복2차로), L=1,180m, B=8.0~14.5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 명 : 서울특별시장 (사무수임자 : 노원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변경없음)
○ 착수일 : 실시계획 작성 고시일
○ 준공 예정일 : 2026.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변경)붙임참조
사. 열람일시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02- 2133-8084)
노원구청 토목과(☏02- 2116-4141)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내용	
1	-	월계동	85-12	철	420	420	1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				
2	-	월계동	416-3	도	60	60	1	노원구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무상
3	-	월계동	372-7	대	1	1	1/4	이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1/2	정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1/4	이00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원미동지점)	근저당권	
4	-	월계동	85-10	철	1,514	1,514	1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				
5	-	월계동	370-5	답	119	119	1/4	이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1/2	정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1/4	이00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원미동지점)	근저당권	
6	-	월계동	366-10	잡	531	531	1/4	이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1/2	정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 사업명 :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내용	
							1/4	이00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원미동지점)	근저당권	
7	-	월계동	365-4	도	49	49	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무상
8	-	월계동	365-5		77	77							
9	당초	월계동	366-9	대	4	4	1/4	강00	경기도 안산시 이동				
							1/4	민00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1/4	조00	경기도 안산시 사동				
							1/4	곽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경	월계동	366-9	대	4	4	1	이00 외 121명	- 붙임 참고 -				집합건물
10	-	월계동	366-5	도	301	301	1	노원구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무상
11	-	월계동	366-1	잡	110	110	1/8	민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한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280, 7층 (수서동,로즈데일빌딩)	근저당권	

□ 사업명 :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내용	
							1/8	홍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16	김00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1/8	김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8	이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1/16	노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1/8	장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1/16	노0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				
							1/16	김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80	강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7/80	윤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12	-	월계동	366-2	도	374	374	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무상

□ 사업명 :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내용	
13	-	월계동	363-1	도	162	162	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내사 6동				무상
14	-	월계동	367-8	도	51	51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무상
15	-	월계동	367-4	도	52	52	1	김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로				
16	-	월계동	산108-19	임	262	262	1	노원구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무상
17	-	월계동	367-9	창	491	491	1/8	민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한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280, 7층 (수서동,로즈데일빌딩)	근저당권	
							1/8	홍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16	김00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1/8	김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8	이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1/16	노00	서울특별시용산구 이촌로				

□ 사업명 :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내용	
							1/8	장00	서울특별시 강남구				
							1/16	노00	서울특별시 은평구				
							1/16	김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80	강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7/80	윤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18	-	월계동	367-2	도	56	56	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무상
19	-	월계동	367-11	창	50	50	1/8	민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한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280, 7층 (수서동,로즈데일빌딩)	근저당권	
							1/8	홍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16	김00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1				
							1/8	김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8	이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 사업명 :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내용	
							1/16	노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1/8	장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10길				
							1/16	노0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				
							1/16	김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33길				
							3/80	강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7/80	윤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20	-	월계동	367-10	철	3	3	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21	-	월계동	357	철	228	228	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22	-	월계동	357-3	도	1,909	1,909	1	노원구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무상
23	-	월계동	358-4	철	48	48	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24	-	월계동	산108-20	임	27	27	1	노원구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무상

□ 사업명 :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내용	
25	-	월계동	359-6	잡	2	2	1	한국전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26	-	월계동	358-2	철	398	398	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27	-	월계동	359-7	잡	23	23	1	한국전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28	-	월계동	359-2	도	165	165	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29	-	월계동	358-3	철	121	121	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0	-	월계동	358-5	철	151	151	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1	-	월계동	298-19	도	73	73	1	김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32	-	월계동	298-21	도	3	3	1	김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33	-	월계동	298-20	도	129	129	1	김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34	-	월계동	298-16	도	227	227	1	김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 사업명 :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내용	
35	-	월계동	산108-31	임	84	84	1	한국전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36	-	월계동	산108-11	도	694	694	1	노원구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무상
37	-	월계동	298-27	도	26	26	1	노원구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무상
38	-	월계동	298-26	대	17	17	1	노원구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무상
39	-	월계동	298-25	대	36	36	1	노원구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무상
40	-	월계동	627-8	전	3	3	2/16	하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45가길				
							2/16	홍0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13나길	성북세무서 서울시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압류	
							12/16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무상
41	-	월계동	627-10		6	6	2/16	하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45가길				

□ 사업명 :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내용	
							3/16	하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2라길				
							3/16	하00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정자골1길				
							3/16	하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1길				
							3/16	하00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3로				
							2/16	홍0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13나길	성북세무서 서울시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압류	
42	-	월계동	626-20	잡	11	11	1	신영교통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43	-	월계동	627-2	전	5	5	2/16	하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45가길				
							3/16	하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2라길				
							3/16	하00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정자골1길				
							3/16	하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1길				
							3/16	하00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3로				

□ 사업명 :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내용	
							2/16	홍0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13나길	성북세무서 서울시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압류	
44	-	월계동	627-7		5	5	2/16	하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45가길				
							2/16	홍0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13나길	성북세무서 서울시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압류	
							12/16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무상
45	-	월계동	295-39	전	57	57	1	노원구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무상
46	-	월계동	627-9	전	9	9	2/16	하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45가길				
							3/16	하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2라길				
							3/16	하00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정자골1길				
							3/16	하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1길				
							3/16	하00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3로				

□ 사업명 :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내용	
							2/16	홍0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13나길	성북세무서 서울시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압류	
47	-	월계동	산108-30	임	1,768	54	1	박00외 599명	- 붙임 참고 -				영축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시행 필지
48	-	월계동	627	전	10	10	2/16	하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45가길				
							3/16	하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2라길				
							3/16	하00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정자골1길				
							3/16	하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1길				
							3/16	하00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3로				
							2/16	홍0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13나길	성북세무서 서울시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압류	
49	-	월계동	627-4		133	133	2/16	하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45가길				
							2/16	홍0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13나길	성북세무서 서울시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압류	
							12/16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무상

□ 사업명 :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내용	
50	-	월계동	627-5		1	1	2/16	하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45가길				
							3/16	하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2라길				
							3/16	하00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정자골1길				
							3/16	하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1길				
							3/16	하00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3로				
							2/16	홍0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13나길	성북세무서 서울시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압류	
51	-	월계동	627-6		1	1	2/16	하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45가길				
							3/16	하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2라길				
							3/16	하00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정자골1길				
							3/16	하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1길				
							3/16	하00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3로				
							2/16	홍0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13나길	성북세무서 서울시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압류	
52	-	월계동	295-38	도	28	28	1	노원구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무상

□ 사업명 :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내용	
53	-	월계동	295-26	도	536	536	1	노원구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무상
54	-	월계동	626-5	도	658	658	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무상
55	-	월계동	295-9	전	334	334	1	노원구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무상
56	-	월계동	295-28	도	133	133	1	노원구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무상
57	-	월계동	298-24	도	868	868	1	노원구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무상
58	-	월계동	620-7	도	15	15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무상
59	-	월계동	259-7	철	16	16	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0	-	월계동	383-64	도	820	820	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무상
61	-	월계동	380-3	도	149	149	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무상
62	-	월계동	392-165	도	195	195	1	노원구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무상

□ 사업명 :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내용	
63	-	월계동	374-4	도	18	18	1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무상
64	-	월계동	산108-28	임	799	14	1	장00외 589명	- 붙임 참고 -				영축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시행 필지
65	-	월계동	298-28	도	7	7	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671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 공시송달(공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하여 독촉 및 압류 예고장을 발송하였고,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에 대한 공시송달(공고)
2. 근　　거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제1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4. 체납자 제재 안내
   가. 당사자는 본 통지를 받은 날(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내지 55조에 규정에 따라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체납액이 500만원(감치 1,000만원)이상이면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문의 전화 : 02-2290-6438~9, 6179 (서울시설공단)
5. 인터넷 납부 : https://etax.seoul.go.kr ※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 가능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2부.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1	남산3호터널	2024-11-01 08:57:34	146하9550	주식회사 신***카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45번길
2	남산3호터널	2024-11-04 10:17:19	254나9385	이*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3	남산3호터널	2024-11-05 09:27:22	334라4587	전*제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4	남산3호터널	2024-11-01 13:03:34	174버2274	주식회사 모******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로
5	남산1호터널	2024-11-01 13:28:40	233보4665	조*석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평동로9길
6	남산1호터널	2024-11-01 13:32:39	68다6656	엄*양외1(정*남)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길
7	남산3호터널	2024-11-01 15:09:11	55마9852	(주)에***스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8	남산1호터널	2024-11-01 16:25:04	58마7386	김*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31길
9	남산1호터널	2024-11-01 16:35:35	230소5804	G*****N I***A D*******E JR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10	남산1호터널	2024-11-01 17:32:32	18수4730	하*우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다락골길
11	남산3호터널	2024-11-01 17:37:14	30어2016	김*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24길
12	남산1호터널	2024-11-19 20:24:02	47구7487	(주)디******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28길
13	남산1호터널	2024-11-01 18:23:22	34저3812	(주)더*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14	남산1호터널	2024-11-01 18:46:40	43주2444	김*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12나길
15	남산1호터널	2024-11-01 18:53:18	48부8500	조*형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197번길
16	남산1호터널	2024-11-01 18:59:45	07너0330	강*억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12길
17	남산1호터널	2024-11-01 19:01:34	50가3738	이*민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용봉로
18	남산1호터널	2024-11-19 19:00:20	14주9772	이*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746번길
19	남산3호터널	2024-11-01 19:48:11	196러6993	최*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14길
20	남산1호터널	2024-11-01 19:58:47	264보1978	(주)비****엠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
21	남산1호터널	2024-11-01 20:09:27	22루6336	N**Y P**N D*O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하슬라로232번길
22	남산3호터널	2024-11-04 07:07:27	05나4715	이*민	인천광역시 서구 천마로13번길
23	남산1호터널	2024-11-04 08:19:19	47도4269	최*일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3길
24	남산1호터널	2024-11-07 09:29:17	65조1138	최*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6길
25	남산1호터널	2024-11-04 08:56:59	43모6879	대*주식회사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대하길1길
26	남산1호터널	2024-11-04 09:14:19	22모1068	주식회사 디*****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7	남산3호터널	2024-11-04 09:36:09	57서9334	황*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28	남산1호터널	2024-11-04 09:36:49	57고9059	김*우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길
29	남산3호터널	2024-11-04 10:04:23	19도3476	최*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포방터2길
30	남산3호터널	2024-11-01 10:57:33	254나9385	이*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31	남산1호터널	2024-11-04 11:17:23	125하2088	카*트주식회사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30번길
32	남산1호터널	2024-11-04 12:42:55	150모2479	강*율	경기도 의왕시 백운중앙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33	남산3호터널	2024-11-04 12:44:21	57고5959	오*섭	경기도 군포시 당정역로76번길
34	남산1호터널	2024-11-04 14:48:21	145모2418	허*성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26길
35	남산1호터널	2024-11-04 16:16:19	174마8265	손*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179번길
36	남산1호터널	2024-11-04 18:03:33	57가4916	김*용	대구광역시 남구 관문시장5길
37	남산1호터널	2024-11-04 19:20:13	50마3629	휴*스(주)	경기도 파주시 재두루미길
38	남산3호터널	2024-11-04 19:20:37	56두9594	K*****V I********N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2길
39	남산3호터널	2024-11-04 19:48:26	115나9568	문*민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17길
40	남산1호터널	2024-11-04 19:55:29	03루1766	김*수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41	남산3호터널	2024-11-04 20:13:12	56라2192	삼**업(주)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138번길
42	남산1호터널	2024-11-04 20:54:12	134무1449	김*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43	남산1호터널	2024-11-11 15:33:06	36누4401	임*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357번길
44	남산1호터널	2024-11-05 08:03:52	27고0813	홍*모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44길
45	남산3호터널	2024-11-05 08:40:35	31마8687	삼**엠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3로30번길
46	남산1호터널	2024-11-06 09:40:22	65조1138	최*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6길
47	남산1호터널	2024-11-05 09:21:38	308거4889	(주)탑**씨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48	남산3호터널	2024-11-01 12:06:03	334라4587	전*제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49	남산1호터널	2024-11-05 09:36:08	68오1878	(주)유*****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71길
50	남산1호터널	2024-11-05 10:09:00	333어1412	주식회사 필****스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1	남산1호터널	2024-11-05 10:15:17	142고6351	P**E J***S A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52	남산1호터널	2024-11-05 11:28:57	50가8277	이***스 주식회사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53	남산1호터널	2024-11-05 13:03:01	178모4030	박*준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54	남산1호터널	2024-11-05 13:28:47	178버7970	안*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5길
55	남산3호터널	2024-11-05 13:35:01	199부9386	강*숙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3길
56	남산3호터널	2024-11-05 14:01:43	138가1092	김*혁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2길
57	남산1호터널	2024-11-05 16:39:33	02호1235	(주)국***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8	남산3호터널	2024-11-05 18:23:21	115무9596	화**업(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9	남산3호터널	2024-11-05 19:18:34	59오2362	양*선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13바길
60	남산3호터널	2024-11-05 19:22:53	09소0469	주식회사 센**탈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1길
61	남산3호터널	2024-11-05 19:40:45	127서6748	강*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62	남산1호터널	2024-11-05 20:57:12	01노2480	주식회사 가**룹	경기도 광주시 문형산길
63	남산1호터널	2024-11-06 07:21:17	191버2930	장*덕	경기도 하남시 위례대로
64	남산3호터널	2024-11-06 09:18:36	285고1499	G**********C E***R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65	남산3호터널	2024-11-06 09:37:08	52나4660	방*희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축령산로182번길
66	남산1호터널	2024-11-05 08:45:32	65조1138	최*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6길
67	남산1호터널	2024-11-06 09:42:46	209소5184	이*림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68	남산3호터널	2024-11-06 12:01:56	231부6913	주식회사 티******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9	남산1호터널	2024-11-06 13:12:36	57노9399	포***설(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해안로
70	남산1호터널	2024-11-06 14:44:30	149루4217	(주)트********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71	남산3호터널	2024-11-06 15:05:25	01저7545	권*숙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2길
72	남산1호터널	2024-11-12 14:28:34	36더9763	주식회사 케**션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73	남산3호터널	2024-11-06 15:14:50	174서4196	신*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8길
74	남산1호터널	2024-11-06 16:56:56	207너2052	왕*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39길
75	남산3호터널	2024-11-06 17:04:02	20우3029	장*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76	남산1호터널	2024-11-06 17:10:40	103소8249	코****즈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7	남산1호터널	2024-11-06 17:12:50	64오2414	조*호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로
78	남산1호터널	2024-11-06 17:24:27	172수3203	곽*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로5길
79	남산1호터널	2024-11-06 17:36:28	153누8229	손*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80	남산1호터널	2024-11-06 18:06:09	40무9352	풍*삼	경기도 파주시 송학길
81	남산1호터널	2024-11-06 18:18:19	153머9690	신*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82	남산1호터널	2024-11-06 18:33:28	02고5150	김*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83	남산3호터널	2024-11-06 19:03:25	03두0601	(주)재****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84	남산1호터널	2024-11-06 19:13:39	59너7559	주식회사 봉*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길
85	남산1호터널	2024-11-06 20:50:21	16가2460	주식회사 배*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86	남산3호터널	2024-11-06 20:53:08	47누0796	박*기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화합로691번길
87	남산1호터널	2024-11-07 08:59:29	114너9359	주식회사 오*****학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88	남산3호터널	2024-11-07 09:06:02	107라1238	한****험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89	남산1호터널	2024-11-04 08:48:11	65조1138	최*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6길
90	남산1호터널	2024-11-07 09:30:16	221소3216	박*양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91	남산3호터널	2024-11-13 10:32:35	156머4193	알******딩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
92	남산1호터널	2024-11-07 10:52:22	68머2724	연**장(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해로
93	남산1호터널	2024-11-07 11:16:09	15나1664	C*****V K******D E******T U**I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하마전1길
94	남산1호터널	2024-11-07 11:43:35	352가4985	D***G N**C H*	경기도 평택시 서정북로
95	남산1호터널	2024-11-07 12:20:58	33보0789	조*정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23번길
96	남산1호터널	2024-11-07 13:10:41	133고1547	(주)에***솔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97	남산1호터널	2024-11-07 14:35:04	106로1058	임*희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98	남산1호터널	2024-11-07 15:01:25	32누0733	박*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99	남산1호터널	2024-11-07 16:02:25	37마0338	주식회사 보*******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100	남산1호터널	2024-11-07 18:04:56	45서9674	이*근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0길
101	남산3호터널	2024-11-07 18:06:12	47로4289	(주)광**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102	남산1호터널	2024-11-07 18:18:57	67로6288	오*임	전라남도 목포시 죽선로
103	남산3호터널	2024-11-07 19:00:30	68주7028	이*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04	남산3호터널	2024-11-07 19:19:54	55더9049	농***법인**주식회사	울산광역시 남구 팔등로
105	남산3호터널	2024-11-07 19:46:16	221어1608	이*권	대전광역시 동구 한남로7번길
106	남산1호터널	2024-11-21 19:36:43	16모1378	K*M L****Y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343번길
107	남산1호터널	2024-11-07 20:09:38	47머2118	윤*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남로6번길
108	남산3호터널	2024-11-07 20:22:15	199수4042	김*성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109	남산3호터널	2024-11-07 20:31:40	22보0388	김*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75가길
110	남산3호터널	2024-11-07 20:36:43	05수3609	고*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111	남산1호터널	2024-11-08 08:11:03	31루3650	한*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74길
112	남산3호터널	2024-11-08 09:38:22	42두6731	양*진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35번길
113	남산1호터널	2024-11-08 10:58:50	60모6919	김*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14	남산3호터널	2024-11-08 11:35:54	67나7841	이*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130번길
115	남산1호터널	2024-11-08 12:35:45	153부3506	(주)신***씨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30번길
116	남산3호터널	2024-11-08 12:35:54	16소5874	J*N XING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단원로
117	남산3호터널	2024-11-08 13:20:18	333저9941	(주)꾸*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18	남산1호터널	2024-11-08 15:10:38	372러1145	W*N Y*****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54길
119	남산1호터널	2024-11-08 17:22:49	11가2149	(주)무***프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0	남산1호터널	2024-11-08 17:55:10	381저7684	A******I A******H M******D G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121	남산3호터널	2024-11-14 18:03:06	47구7487	(주)디******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28길
122	남산1호터널	2024-11-12 20:37:24	192더2519	주식회사 세***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3	남산1호터널	2024-11-11 07:24:17	33나4471	허*훈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3길
124	남산3호터널	2024-11-11 08:08:04	10보9386	이*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교동로118번길
125	남산1호터널	2024-11-11 09:55:57	45두5360	김*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산운로
126	남산3호터널	2024-11-11 09:59:13	51머7935	주식회사 조*****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다길
127	남산3호터널	2024-11-11 11:58:34	146하9721	주식회사 신***카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45번길
128	남산1호터널	2024-11-11 13:43:25	55부0207	와*****씨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129	남산3호터널	2024-11-11 13:57:20	01수2503	(주)메*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130	남산1호터널	2024-11-11 14:06:23	37모3358	정*영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
131	남산3호터널	2024-11-11 15:00:20	09너1731	구*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2	남산1호터널	2024-11-05 07:03:28	36누4401	임*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357번길
133	남산1호터널	2024-11-13 15:03:52	168조6085	원***벌(주)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석평로165번길
134	남산1호터널	2024-11-11 17:31:38	54어0646	김*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266번길
135	남산3호터널	2024-11-11 18:31:10	47구7487	(주)디******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28길
136	남산3호터널	2024-11-11 18:50:16	01서6724	이*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2로
137	남산1호터널	2024-11-11 19:30:01	55오0794	(주)이****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38	남산1호터널	2024-11-12 10:12:20	13우9125	문*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03길
139	남산1호터널	2024-11-12 10:24:40	58노1841	(주)지*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0	남산1호터널	2024-11-12 11:01:11	330소6503	장*미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141	남산3호터널	2024-11-12 11:29:36	367가3990	(주)에*****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42	남산1호터널	2024-11-12 11:31:01	69도6048	A*********V A*****R R*********H	경상남도 김해시 함박로31번길
143	남산1호터널	2024-11-12 12:16:20	287무7040	A*******G C*****S T***I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348번길
144	남산3호터널	2024-11-12 13:55:22	252저4387	이*욱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20번길
145	남산1호터널	2024-11-06 15:05:52	36더9763	주식회사 케**션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146	남산1호터널	2024-11-12 15:55:32	166구2231	C******R D***D S***T JR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147	남산1호터널	2024-11-12 16:47:33	154오1512	주식회사 서****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
148	남산1호터널	2024-11-12 17:47:22	65수0855	신*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149	남산1호터널	2024-11-18 19:09:28	14주9772	이*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746번길
150	남산1호터널	2024-11-08 20:32:08	192더2519	주식회사 세***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51	남산1호터널	2024-11-13 09:52:39	117호1158	유한회사 찬****카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52	남산3호터널	2024-11-07 10:28:06	156머4193	알******딩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
153	남산1호터널	2024-11-13 11:05:49	60러3727	전*경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154	남산3호터널	2024-11-13 11:19:48	17루4280	선*완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영광로3길
155	남산3호터널	2024-11-13 12:59:47	51머7818	주식회사 프*다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7길
156	남산3호터널	2024-11-13 13:11:48	28다4913	연*진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서대구일로4길
157	남산1호터널	2024-11-13 13:20:42	303고7159	백*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50안길
158	남산3호터널	2024-11-13 13:39:54	13어3809	(주)더****룹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팽성송화로
159	남산3호터널	2024-11-13 13:50:58	50구2572	주식회사 드****토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160	남산3호터널	2024-11-13 14:20:21	14너2633	주식회사 상****스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405번길
161	남산3호터널	2024-11-13 14:30:06	175수9084	안*훈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62	남산1호터널	2024-11-11 17:19:28	168조6085	원***벌(주)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석평로165번길
163	남산1호터널	2024-11-13 15:27:16	10무9252	정*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9길
164	남산1호터널	2024-11-13 15:43:52	180무6312	권*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65	남산1호터널	2024-11-13 16:47:04	46모1983	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9길
166	남산1호터널	2024-11-13 17:31:59	01가5896	김*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55번길
167	남산1호터널	2024-11-13 19:26:55	257어5443	이*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57길
168	남산1호터널	2024-11-13 20:40:44	55부0543	주식회사 블**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69	남산1호터널	2024-11-13 20:55:52	27러0941	이*연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70	남산1호터널	2024-11-14 07:22:46	57러4780	조*현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71	남산1호터널	2024-11-14 08:00:07	168어5759	백*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로201번길
172	남산3호터널	2024-11-14 09:11:25	271수8007	(주)하**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94번길
173	남산3호터널	2024-11-14 09:47:31	109호1839	초****카(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로7번길
174	남산3호터널	2024-11-14 10:43:38	159버1353	최*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175	남산1호터널	2024-11-14 11:01:04	142호2437	차*차(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76	남산3호터널	2024-11-14 12:25:10	146두1566	S*N W*I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177	남산1호터널	2024-11-14 12:44:47	154하9885	(주)제****카	경기도 군포시 삼성로8번길
178	남산1호터널	2024-11-14 12:50:17	133하6127	주식회사 휴*****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179	남산1호터널	2024-11-15 10:50:24	05라8850	유한회사 에****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
180	남산3호터널	2024-11-14 14:41:16	08조4233	H*N M*****N J***T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181	남산3호터널	2024-11-14 16:17:47	64거6922	M******D K***L N****E B*N M**D R***I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북중리12길
182	남산1호터널	2024-11-14 17:09:16	16부1944	김*호	경기도 여주시 여흥로4번길
183	남산1호터널	2024-11-20 20:16:20	49노0433	허*민	경기도 의정부시 발곡로31번길
184	남산3호터널	2024-11-14 17:54:54	247나5397	주식회사 마**워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죽당로76번길
185	남산3호터널	2024-11-08 18:40:34	47구7487	(주)디******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28길
186	남산1호터널	2024-11-14 19:43:52	17조5530	이*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길
187	남산1호터널	2024-11-14 20:44:11	29러2851	주식회사 아**칸 트**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산남로154번길
188	남산1호터널	2024-11-15 07:30:24	242머1605	김*열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새내죽길
189	남산1호터널	2024-11-15 08:03:32	15조5971	U**********E M**********E A***A	충청북도 충주시 연못6길
190	남산1호터널	2024-11-14 12:50:18	05라8850	유한회사 에****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191	남산3호터널	2024-11-15 11:18:09	03조0218	(주)한**법 정***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92	남산1호터널	2024-11-15 11:34:46	163러3687	(주)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석성로820번길
193	남산3호터널	2024-11-15 11:55:26	23루3228	정*진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28번길
194	남산1호터널	2024-11-15 11:56:13	27조4075	수**발 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195	남산3호터널	2024-11-15 14:23:45	09다7891	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10나길
196	남산1호터널	2024-11-15 14:44:37	194소3498	차*훈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로20길
197	남산1호터널	2024-11-15 15:54:33	12구4524	아***인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198	남산1호터널	2024-11-15 16:09:21	56너0227	윤*숙	경기도 의정부시 문화로
199	남산1호터널	2024-11-15 16:09:24	33고9826	유*원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200	남산1호터널	2024-11-15 16:42:50	17누1631	최*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곡로56번길
201	남산3호터널	2024-11-15 16:49:49	06거6678	최*진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현로
202	남산1호터널	2024-11-15 17:00:55	18머9989	제갈*열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7길
203	남산3호터널	2024-11-15 17:03:05	67로2708	성*복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309번길
204	남산1호터널	2024-11-15 17:51:26	42조4983	이*자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205	남산3호터널	2024-11-15 18:13:32	110어3123	주식회사 알***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206	남산1호터널	2024-11-15 19:11:16	14주9772	이*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746번길
207	남산1호터널	2024-11-15 19:16:49	142호1028	주식회사 터****카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59길
208	남산3호터널	2024-11-15 19:45:12	14노3607	문*우	경기도 시흥시 동서로
209	남산1호터널	2024-11-22 19:39:54	37마3919	김*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9길
210	남산3호터널	2024-11-15 20:21:07	17가4175	주식회사 라**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211	남산1호터널	2024-11-18 08:03:57	54로0559	전*철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12	남산3호터널	2024-11-19 08:04:40	119무3821	하*오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
213	남산3호터널	2024-11-18 08:35:32	23버7537	(주)대**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214	남산3호터널	2024-11-18 10:24:29	245다3237	이*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현내시장길
215	남산1호터널	2024-11-18 10:29:27	129루6848	정*훈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236번길
216	남산1호터널	2024-11-18 10:33:36	64소5262	주식회사 케******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49길
217	남산1호터널	2024-11-18 12:42:25	63오5812	제*******딩 주식회사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마산길
218	남산1호터널	2024-11-18 13:30:25	14머4020	유한회사 일*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
219	남산3호터널	2024-11-18 13:41:48	04우0307	다******개(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220	남산1호터널	2024-11-18 14:10:02	277서1785	J*N J***A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3길
221	남산1호터널	2024-11-18 14:30:48	03러5070	임*디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62길
222	남산3호터널	2024-11-18 14:47:07	25수5835	A****V K****N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안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223	남산1호터널	2024-11-18 14:47:41	185조9282	전*라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224	남산1호터널	2024-11-18 15:37:45	68소8212	주식회사 동***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부흥로
225	남산1호터널	2024-11-18 16:04:44	217로3616	(주)유******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26	남산1호터널	2024-11-18 17:29:41	213어3919	주식회사 지***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227	남산1호터널	2024-11-18 18:01:25	324부5961	홍*민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6길
228	남산1호터널	2024-11-12 19:06:03	14주9772	이*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746번길
229	남산1호터널	2024-11-18 19:21:55	15거5146	이*휘	경기도 화성시 영통로50번길
230	남산1호터널	2024-11-18 19:35:25	178모6421	나*현	경기도 광주시 머루숯길
231	남산3호터널	2024-11-18 20:18:32	256더4885	손*준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만수로441번길
232	남산3호터널	2024-11-18 08:10:28	119무3821	하*오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
233	남산3호터널	2024-11-19 09:39:22	36저2201	이*선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대동로
234	남산1호터널	2024-11-19 12:39:58	12서2805	임*현	경기도 과천시 곱돌머리길
235	남산1호터널	2024-11-19 13:27:47	338거6455	(주)동****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236	남산1호터널	2024-11-19 13:51:50	64조4971	주식회사 솔***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37	남산1호터널	2024-11-21 16:46:38	37거5892	L* JUNJIE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238	남산3호터널	2024-11-19 16:18:38	64노0349	한*복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로
239	남산3호터널	2024-11-19 17:18:59	112주4294	유*준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240	남산1호터널	2024-11-19 18:27:01	57구7578	주식회사 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서로63길
241	남산1호터널	2024-11-19 18:31:07	21부2766	고*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242	남산3호터널	2024-11-19 18:34:47	103보4391	송*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지미길
243	남산1호터널	2024-11-19 18:46:59	245도1671	재*법인 선*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윤보선길
244	남산1호터널	2024-11-01 19:03:05	14주9772	이*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746번길
245	남산1호터널	2024-11-19 19:16:41	02라3895	김*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56길
246	남산1호터널	2024-11-19 19:32:28	148어6528	조****엠 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247	남산3호터널	2024-11-01 18:11:16	47구7487	(주)디******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28길
248	남산3호터널	2024-11-20 07:44:40	101하6714	주식회사 휴*****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49	남산1호터널	2024-11-20 07:58:45	55조4009	권*민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매봉산길
250	남산1호터널	2024-11-20 09:22:31	27서7065	김*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251	남산1호터널	2024-11-20 11:36:31	275다3220	최*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0길
252	남산3호터널	2024-11-20 11:49:16	19루6078	김*식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253	남산1호터널	2024-11-20 14:58:52	257버9230	주식회사 엠****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00길
254	남산1호터널	2024-11-20 16:27:52	37로8840	농****인 인***연 주식회사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이인정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255	남산3호터널	2024-11-20 16:43:26	59소7340	M****M I***N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매화로2길
256	남산1호터널	2024-11-20 16:46:12	14우4996	주식회사 풍**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257	남산1호터널	2024-11-20 17:01:42	47오2286	최*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32길
258	남산1호터널	2024-11-20 17:23:32	146호1011	세**탈(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59	남산1호터널	2024-11-20 18:33:51	43보3533	이*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은길
260	남산1호터널	2024-11-20 19:50:21	39보1629	황*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261	남산1호터널	2024-11-14 17:35:25	49노0433	허*민	경기도 의정부시 발곡로31번길
262	남산1호터널	2024-11-20 20:21:38	161가5193	주식회사 컨********비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63	남산1호터널	2024-11-21 09:21:18	165허5330	(주) 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미길
264	남산1호터널	2024-11-29 07:50:46	32러0891	윤*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근길
265	남산1호터널	2024-11-21 11:03:42	110하2107	휴**카 주식회사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명륜로120번길
266	남산3호터널	2024-11-21 12:51:34	06다2855	이*열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110길
267	남산3호터널	2024-11-21 13:12:37	194호4853	주식회사 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미길
268	남산1호터널	2024-11-21 14:59:55	12더4747	주식회사 호***합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으뜸길
269	남산3호터널	2024-11-21 15:10:16	193소6711	Q**N X*****E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270	남산1호터널	2024-11-21 15:14:06	108머3817	권*창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271	남산1호터널	2024-11-19 14:24:50	37거5892	L* J****E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272	남산3호터널	2024-11-21 17:43:10	251러9247	정*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73	남산1호터널	2024-11-21 17:44:39	268너3502	주식회사 명*****링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4로
274	남산3호터널	2024-11-21 19:25:56	51마9335	김*진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100번길
275	남산3호터널	2024-11-21 19:26:20	100가2456	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276	남산1호터널	2024-11-07 19:51:39	16모1378	K*M L****Y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343번길
277	남산1호터널	2024-11-21 19:40:40	26저8439	국****화(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101번길
278	남산1호터널	2024-11-21 20:05:26	150러6993	김*욱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신평7길
279	남산3호터널	2024-11-21 20:19:53	133하6293	주식회사 휴*****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80	남산1호터널	2024-11-21 20:37:28	43소9202	김*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281	남산1호터널	2024-11-22 10:23:30	49라0707	선***스(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35번길
282	남산1호터널	2024-11-22 11:14:50	135루1002	강*창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조상골길
283	남산1호터널	2024-11-22 11:24:34	34고4777	김*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00가길
284	남산1호터널	2024-11-22 12:46:47	19거1782	주식회사 스*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곡현로480번길
285	남산1호터널	2024-11-22 13:37:41	35수0530	최*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86	남산1호터널	2024-11-22 15:06:31	25로0992	L*E J****N J***L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287	남산1호터널	2024-11-22 16:37:16	226보1168	이*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로
288	남산1호터널	2024-11-22 16:59:11	316구7846	(주)목******드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289	남산3호터널	2024-11-26 08:51:34	30도6948	김*준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25길
290	남산3호터널	2024-11-22 18:21:06	334노5874	윤*웅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31길
291	남산3호터널	2024-11-22 18:26:03	69주7796	B**O Z**O P****A T*****A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3길
292	남산3호터널	2024-11-22 18:51:37	264오9484	하*룡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293	남산3호터널	2024-11-22 19:20:04	149허8717	주식회사 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미길
294	남산1호터널	2024-11-15 19:47:17	37마3919	김*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9길
295	남산1호터널	2024-11-22 19:41:11	117조1167	SEO J**H**K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28길
296	남산3호터널	2024-11-22 19:50:35	32조3453	김*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20가길
297	남산1호터널	2024-11-25 10:40:38	233노9194	조*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59길
298	남산1호터널	2024-11-25 10:50:36	186머8272	L* A****Y S********H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로54번길
299	남산3호터널	2024-11-25 11:15:40	153저5227	S****I J****N E***S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300	남산3호터널	2024-11-25 11:50:36	105거9747	장*진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161번길
301	남산1호터널	2024-11-25 12:20:52	47거6288	세**업 주식회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302	남산3호터널	2024-11-25 12:32:40	352저5280	오*철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5길
303	남산1호터널	2024-11-25 12:41:18	392저4311	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림말길
304	남산1호터널	2024-11-25 12:46:53	23더4364	주식회사 원******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05	남산3호터널	2024-11-25 12:49:56	116하4786	주식회사 설**카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로
306	남산1호터널	2024-11-25 13:02:29	46도9001	유*선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성산1길
307	남산3호터널	2024-11-25 13:35:00	157조1964	양*서	경기도 의왕시 새롬길
308	남산1호터널	2024-11-25 14:29:33	64다0855	조*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164번길
309	남산1호터널	2024-11-25 16:58:43	57다8430	홍*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예원로
310	남산1호터널	2024-11-25 17:08:09	61서8681	김*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10길
311	남산3호터널	2024-11-25 18:34:38	66거4395	주식회사 디*****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12	남산1호터널	2024-11-25 19:20:33	18두0956	이*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의장로
313	남산3호터널	2024-11-25 20:27:59	63너0487	신*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314	남산1호터널	2024-11-25 20:51:32	348구8633	J*N X*****N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61나길
315	남산1호터널	2024-11-26 07:16:44	194서2672	주식회사 브**넷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72길
316	남산3호터널	2024-11-26 08:03:07	69구0257	김*민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11길
317	남산3호터널	2024-11-22 17:06:05	30도6948	김*준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25길
318	남산1호터널	2024-11-26 09:52:32	06가1550	주식회사 건*******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7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319	남산1호터널	2024-11-26 11:14:28	09조0741	은*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0	남산1호터널	2024-11-26 12:41:21	213서1905	서*수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15번길
321	남산3호터널	2024-11-26 13:26:35	144머3264	오*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1로
322	남산1호터널	2024-11-26 14:28:28	155어2458	안*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323	남산1호터널	2024-11-26 15:54:02	153저4556	성*원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0길
324	남산1호터널	2024-11-26 16:22:14	328수2342	구*석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2길
325	남산3호터널	2024-11-26 16:29:33	02서8698	C****N C*****N E****D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326	남산1호터널	2024-11-26 16:53:13	102러4592	주식회사 지**업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로8길
327	남산3호터널	2024-11-27 09:34:36	45머8093	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39길
328	남산3호터널	2024-11-27 10:21:19	05보9100	(주)에******트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삼성로
329	남산1호터널	2024-11-27 11:06:08	35부5711	장*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윗용상1길
330	남산1호터널	2024-11-27 12:28:43	350거3146	조*호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331	남산3호터널	2024-11-27 12:44:08	151우8778	양*심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50나길
332	남산3호터널	2024-11-27 14:11:50	58구9656	임*범	경기도 시흥시 인선길
333	남산1호터널	2024-11-27 15:49:35	25노7430	(주)프**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6길
334	남산1호터널	2024-11-27 18:47:30	59우6639	김*재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길
335	남산1호터널	2024-11-28 07:48:03	59너2671	N****N V*N A*H T***N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로
336	남산1호터널	2024-11-28 08:23:58	46머6241	주식회사 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337	남산1호터널	2024-11-28 10:51:23	53소3357	(주)상*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38	남산3호터널	2024-11-28 11:16:43	283로9947	(주)제***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39	남산3호터널	2024-11-28 13:06:01	176가3387	옥*옥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85번길
340	남산1호터널	2024-11-28 13:14:49	27도2888	최 *숙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487번길
341	남산3호터널	2024-11-28 14:25:01	156소3389	김*준	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342	남산3호터널	2024-11-28 19:10:36	25서2812	윤*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산로213번길
343	남산1호터널	2024-11-28 20:03:10	64우1146	A*******I A********Z A*****A S***D H*M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344	남산1호터널	2024-11-28 20:30:05	40조8665	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11가길
345	남산3호터널	2024-11-28 20:44:38	222다1829	강*****션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245번길
346	남산1호터널	2024-11-21 09:32:19	32러0891	윤*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근길
347	남산3호터널	2024-11-29 08:11:32	273너1161	문*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348	남산1호터널	2024-11-29 10:20:07	08부2374	주식회사 등**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6로
349	남산1호터널	2024-11-29 10:30:15	65주9911	M*****O, C*******N J**E P****N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350	남산1호터널	2024-11-29 11:05:21	181마7534	최*협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351	남산1호터널	2024-11-29 11:28:09	54노5659	백*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819번길
352	남산3호터널	2024-11-29 12:15:00	50구0556	차*환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192번길
353	남산1호터널	2024-11-29 12:43:47	61도4872	(주)더****셋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54	남산3호터널	2024-11-29 12:44:15	57머7433	주식회사 두***징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3안길
355	남산1호터널	2024-11-29 12:46:29	09나4313	유*식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356	남산1호터널	2024-11-29 13:04:01	225더5000	주식회사 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357	남산1호터널	2024-11-29 13:29:28	55나6337	유*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332번길
358	남산3호터널	2024-11-29 14:35:14	196보4538	주식회사 더*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359	남산3호터널	2024-11-29 15:19:04	166거2511	박*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60	남산1호터널	2024-11-29 15:29:55	10모2042	박*성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361	남산3호터널	2024-11-29 16:33:21	124저2938	이*형	경기도 파주시 재두루미길
362	남산1호터널	2024-11-29 17:44:23	11도2341	(주)중********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363	남산1호터널	2024-11-29 18:35:44	63도9347	박*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6길
364	남산1호터널	2024-11-29 19:02:25	27무1018	P*****L O*******N J*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365	남산1호터널	2024-11-29 19:15:59	25수5857	(주)태***컴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66	남산1호터널	2024-11-29 20:18:28	08거3076	주식회사 엘***퀸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51길
367	남산1호터널	2024-11-29 20:35:53	28보7830	최*후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부흥로
368	남산1호터널	2024-11-29 20:58:00	286구2174	박*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	남산3호터널	2024-06-11 14:39:49	101하9776	10,300	고*정	경남 김해시 번화
2	남산3호터널	2024-06-11 18:58:52	101하9776	10,300	고*정	경남 김해시 번화
3	남산3호터널	2024-06-26 19:03:27	15허8401	10,300	함*준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4	남산1호터널	2024-07-05 12:32:48	153허2621	10,300	정*준	충남 태안군 안면읍 중신로
5	남산3호터널	2024-07-11 15:53:29	236무7803	10,300	이****이 주식회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로
6	남산3호터널	2024-07-12 10:35:20	236무7803	10,300	이*씨엔아이 주식회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로
7	남산1호터널	2024-07-16 07:14:21	149하7493	10,300	박*문(뷰***스)	경기도 평택시 용죽
8	남산1호터널	2024-07-18 18:22:56	56하1539	10,300	강*배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백옥대로
9	남산3호터널	2024-07-23 13:17:27	133하8867	10,300	D*A A***U SALAM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
10	남산1호터널	2024-08-01 20:20:32	134도3150	10,300	유*회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1	남산1호터널	2024-08-06 16:09:00	156호2219	10,300	장*란	서울 중구 다산로
12	남산1호터널	2024-08-12 10:19:33	129버4681	10,300	전*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13	남산1호터널	2024-08-13 11:05:08	140하8113	10,300	신*철(블***팅)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4	남산1호터널	2024-08-19 18:17:58	116하2133	10,300	오*현	전북 임실군 관촌면 사선
15	남산1호터널	2024-08-20 16:50:35	101하8853	10,300	홍*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6	남산1호터널	2024-08-20 20:10:10	116하2133	10,300	오*현	전북 임실군 관촌면 사선
17	남산1호터널	2024-08-21 08:10:54	101호2158	10,300	김*수	서울 관악구 서림길
18	남산3호터널	2024-08-22 10:56:04	165호2289	10,300	㈜*인드아웃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19	남산1호터널	2024-08-27 11:42:31	101하6174	10,300	박*철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0	남산1호터널	2024-09-02 10:47:40	01하1006	10,300	이*호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21	남산1호터널	2024-09-02 12:11:46	172하1107	10,300	최*용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22	남산1호터널	2024-09-02 13:17:54	174하7825	10,300	주*회사 코***씨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3	남산1호터널	2024-09-02 14:02:54	01하1006	10,300	이*호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24	남산3호터널	2024-09-03 12:11:58	324더6451	10,300	박*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원천로
25	남산1호터널	2024-09-03 12:27:07	174하7383	10,300	주*회사 삼*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26	남산3호터널	2024-09-03 15:07:57	390거9684	10,300	실*스(김영화)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27	남산1호터널	2024-09-03 19:53:03	52호0653	10,300	한*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8	남산1호터널	2024-09-04 10:29:41	01하1006	10,300	이*호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29	남산1호터널	2024-09-04 11:25:55	222허3074	10,300	주*회사 노**드	서울 강남구 삼성로
30	남산1호터널	2024-09-04 11:55:14	280서1732	10,300	조*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31	남산1호터널	2024-09-04 14:39:45	333수4703	10,300	최*	서울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32	남산3호터널	2024-09-04 20:11:30	157하3423	10,300	최*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33	남산1호터널	2024-09-04 20:18:31	172호5081	10,300	김*호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34	남산1호터널	2024-09-05 10:28:30	276저6080	10,300	정*상사(장우정)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5	남산3호터널	2024-09-05 13:11:26	175하6047	10,300	사*나	경기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36	남산1호터널	2024-09-05 14:15:15	181보7868	10,300	주*회사 헤****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7	남산1호터널	2024-09-05 14:22:34	142호1509	10,300	육*본부	충남 계룡시 계룡대로
38	남산1호터널	2024-09-05 16:08:38	174호6899	10,300	김*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39	남산1호터널	2024-09-05 16:36:43	137더6658	10,300	손*선	서울 종로구 평창
40	남산1호터널	2024-09-05 18:15:37	329머8077	10,300	주*회사 *잔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41	남산3호터널	2024-09-05 18:16:01	286모8723	10,300	김*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42	남산1호터널	2024-09-05 18:45:10	138더3277	10,300	㈜*믹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	남산1호터널	2024-09-05 19:40:49	49호5622	10,300	최*원	강남구 도산대로
44	남산1호터널	2024-09-06 11:30:07	149호6247	10,300	이*희	충북 충주시 예성로
45	남산1호터널	2024-09-06 13:06:14	165호9714	10,300	무*온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46	남산3호터널	2024-09-06 20:05:48	175호7128	10,300	송*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47	남산1호터널	2024-09-09 09:37:23	69하0219	10,300	이*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48	남산1호터널	2024-09-09 10:03:06	174하7383	10,300	주*회사 삼*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49	남산1호터널	2024-09-09 10:53:41	149호9083	10,300	최*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로
50	남산1호터널	2024-09-09 11:40:02	171하5349	10,300	J*N DEHU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
51	남산3호터널	2024-09-09 12:56:35	69호8894	10,300	김*형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52	남산1호터널	2024-09-09 14:47:10	117주7667	10,300	㈜*드화스닝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53	남산1호터널	2024-09-09 14:59:34	04주1961	10,300	원*인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산남로
54	남산3호터널	2024-09-09 18:32:33	358머8762	10,300	권*광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55	남산1호터널	2024-09-09 19:06:52	333로9098	10,300	㈜*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56	남산1호터널	2024-09-09 20:57:01	125호4279	10,300	최*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7	남산3호터널	2024-09-10 18:59:06	177호5786	10,300	박*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8	남산1호터널	2024-09-11 08:25:46	195호2147	10,300	㈜*풍문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59	남산1호터널	2024-09-11 11:14:29	101허5157	10,300	김*진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60	남산1호터널	2024-09-11 12:27:00	140호4220	10,300	최*비	경기 평택시 탄현로
61	남산1호터널	2024-09-11 14:21:05	174수2354	10,300	정*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62	남산1호터널	2024-09-11 15:50:01	145허5169	5,150	비*****컴㈜	울 송파구 법원로
63	남산3호터널	2024-09-11 16:03:54	157호9414	10,300	서*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4	남산1호터널	2024-09-11 16:50:11	174하9433	10,300	윤*민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65	남산1호터널	2024-09-11 18:07:19	163하6807	10,300	신*일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66	남산1호터널	2024-09-11 19:35:51	195하2264	10,300	좌*우	서울 마포구 독막로
67	남산3호터널	2024-09-11 19:38:29	199하2639	10,300	주*회사 비****씨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68	남산3호터널	2024-09-12 08:49:50	154하9881	10,300	최*진	용산구 한강대로
69	남산1호터널	2024-09-12 10:13:22	180더7471	10,300	이*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70	남산1호터널	2024-09-12 11:21:11	302로3442	10,300	힐*건설㈜	대전광역시 동구 달기장
71	남산1호터널	2024-09-12 14:57:03	157허2299	10,300	박*훈	충청남도 공주시 백미고을길
72	남산1호터널	2024-09-12 15:24:49	41고2453	10,300	㈜*웰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
73	남산1호터널	2024-09-12 15:48:34	20호8675	10,300	황*필	경기도 양주시 삼숭로
74	남산3호터널	2024-09-12 18:52:20	101하8860	10,300	박*현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75	남산1호터널	2024-09-12 19:01:38	101하6496	10,300	K*AN Y******Y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안
76	남산1호터널	2024-09-12 19:48:22	52호0653	10,300	한*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7	남산1호터널	2024-09-13 12:29:14	125호2287	10,300	양*립	서울 논현동
78	남산3호터널	2024-09-13 17:07:51	175허6421	10,300	㈜*웰엠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79	남산1호터널	2024-09-13 18:10:54	144어3231	10,300	원*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80	남산3호터널	2024-09-13 18:52:10	314마8174	10,300	윤*원	경기 광주시 경충대로
81	남산1호터널	2024-09-13 19:43:42	108나1212	10,300	㈜*안정보통신	경기 군포시 당산로
82	남산3호터널	2024-09-19 10:47:37	370오1364	10,300	㈜****이평생교육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83	남산3호터널	2024-09-19 11:44:45	169호3407	10,300	김*한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함영로
84	남산3호터널	2024-09-19 12:27:15	220하5003	10,300	주*회사 엠**티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85	남산1호터널	2024-09-19 18:35:21	122호2739	10,300	정*윤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86	남산3호터널	2024-09-20 07:26:08	167호6831	10,300	김*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로
87	남산3호터널	2024-09-20 08:28:50	154하9881	10,300	최*진	용산구 한강대로
88	남산1호터널	2024-09-20 10:04:47	157하3822	10,300	김*형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89	남산3호터널	2024-09-20 10:20:14	388마2444	10,300	김*환	서울시 관악구 복은
90	남산1호터널	2024-09-20 10:27:53	157호5832	10,300	정*원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문학로
91	남산3호터널	2024-09-20 12:07:22	165호9095	10,300	해* 발산 본점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
92	남산3호터널	2024-09-20 12:19:05	162소8251	10,300	중*페이퍼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93	남산1호터널	2024-09-20 13:27:17	20호8675	10,300	황*필	경기도 양주시 삼숭로
94	남산3호터널	2024-09-20 15:28:22	338가1683	10,300	고*원	경기 의정부시 서부로
95	남산3호터널	2024-09-20 16:11:09	110하8870	10,300	류*열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
96	남산1호터널	2024-09-20 16:23:28	116허7216	10,300	김*학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97	남산1호터널	2024-09-20 17:46:16	196하8964	10,300	신*아종합건설 주식회사	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98	남산3호터널	2024-09-20 18:04:44	109호3006	10,300	김*로	서울 금천구 독산로
99	남산1호터널	2024-09-20 19:03:00	195호8465	10,300	김*연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
100	남산3호터널	2024-09-20 19:50:41	184가2548	10,300	주*회사 아****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101	남산1호터널	2024-09-20 20:20:38	194하9991	5,150	주*회사 고***드(고*현)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102	남산3호터널	2024-09-23 14:46:17	179하3329	10,300	김*혁	서울 강동구 길동
103	남산1호터널	2024-09-23 17:37:39	101하8853	10,300	홍*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04	남산3호터널	2024-09-23 19:21:42	109호7351	10,300	이*영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05	남산1호터널	2024-09-24 17:12:14	141서3558	10,300	주*회사 로*******소	서울 강남구 광평로
106	남산1호터널	2024-09-24 18:52:07	195호8465	10,300	김*연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
107	남산3호터널	2024-09-25 10:17:57	142호2706	10,300	나*숙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8	남산3호터널	2024-09-25 13:20:48	149하6173	10,300	주*회사 다****씨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9	남산1호터널	2024-09-25 15:54:31	137모8880	10,300	㈜*이이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110	남산1호터널	2024-09-25 16:49:43	101하8853	10,300	홍*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1	남산3호터널	2024-09-26 09:03:33	196호7227	10,300	채*병	경기 오산시 한신대
112	남산1호터널	2024-09-26 11:25:29	193허4931	10,300	㈜*니온랩	서울 서초구 동산로
113	남산3호터널	2024-09-26 14:30:34	195하4280	10,300	주*회사 현산홀딩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	남산1호터널	2024-09-26 17:05:01	167하2701	10,300	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15	남산1호터널	2024-09-27 11:27:08	07호5326	10,300	김*현	부산 사하구 다래낙조
116	남산1호터널	2024-09-27 12:17:16	54호0137	10,300	최*화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117	남산1호터널	2024-09-30 10:24:35	172하6790	10,300	김*섭	안산시 상록구 이화로
118	남산3호터널	2024-09-30 16:32:05	196호5414	10,300	목*정	서울시 종로구 비봉
119	남산3호터널	2024-09-30 17:55:24	142호1419	10,300	신*남	서울 종로구 송월
120	남산1호터널	2024-09-30 19:27:47	181보7868	10,300	주*회사 헤****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1	남산1호터널	2024-09-30 20:12:15	172하9899	10,300	㈜*그엠	서울 강남구 논현로
122	남산1호터널	2024-10-02 10:01:04	157호4935	10,300	㈜*이엘공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
123	남산3호터널	2024-10-02 10:10:57	145허5169	5,150	비*이앤파워컴㈜	울 송파구 법원로
124	남산1호터널	2024-10-02 11:20:35	179하3817	10,300	임*식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
125	남산1호터널	2024-10-02 12:25:19	193허4931	10,300	㈜*니온랩	서울 서초구 동산로
126	남산1호터널	2024-10-02 14:29:01	181보7868	10,300	주*회사 헤****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남산3호터널	2024-10-02 17:59:36	345더8039	10,300	신*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
128	남산3호터널	2024-10-02 19:29:43	179호1989	10,300	박*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29	남산3호터널	2024-10-04 07:55:38	180허7888	10,300	티********아㈜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0	남산1호터널	2024-10-04 10:10:42	157하3822	10,300	김*형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131	남산1호터널	2024-10-04 10:17:48	104하9984	10,300	㈜*토********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32	남산1호터널	2024-10-04 11:44:03	220하5371	10,300	홍*일(에****드)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133	남산1호터널	2024-10-04 13:36:01	179호1835	10,300	박*우	대전 동구 용전동
134	남산1호터널	2024-10-04 14:08:03	146하4901	10,300	진*희	용인시 수지구 이종무로
135	남산3호터널	2024-10-04 15:53:49	345더8039	10,300	신*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
136	남산3호터널	2024-10-04 16:15:28	142호2557	10,300	백*조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
137	남산3호터널	2024-10-04 17:21:06	140오7950	10,300	박*구	울산시 남구 산업로
138	남산1호터널	2024-10-04 18:44:30	165허6696	10,300	엄*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139	남산3호터널	2024-10-04 19:06:56	196하6985	10,300	군*글로벌	서울 중구 장춘단로
140	남산3호터널	2024-10-04 19:09:20	111서7692	10,300	김*현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141	남산1호터널	2024-10-07 09:24:01	195호5206	10,300	차*익	평택시 합정동
142	남산1호터널	2024-10-07 09:57:08	194너5485	10,300	㈜*이치트레이딩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43	남산1호터널	2024-10-07 14:37:43	195하7440	10,300	김*미	경기도 시흥시 목감남서로
144	남산3호터널	2024-10-07 15:09:44	174더4051	10,300	㈜*****에듀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45	남산1호터널	2024-10-08 08:51:35	149하7844	5,150	㈜*****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46	남산3호터널	2024-10-08 11:15:54	108조3323	10,300	㈜******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7	남산3호터널	2024-10-10 13:21:05	165호9714	10,300	무*온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148	남산1호터널	2024-10-10 13:54:33	195호5410	10,300	주*회사 모***츠	인천 계양구 선주로
149	남산1호터널	2024-10-10 15:48:33	165하6643	10,300	㈜*앤엠	경기 하남시 조정대로
150	남산3호터널	2024-10-10 16:20:01	30너6360	10,300	강*란	서울 종로구 백석동길
151	남산1호터널	2024-10-10 18:44:15	52호0653	10,300	한*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남산3호터널	2024-10-10 20:28:25	169호3490	10,300	박*수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
153	남산3호터널	2024-10-11 08:04:54	175허6041	10,300	프*메이드	서울 강북구 삼양로
154	남산1호터널	2024-10-11 14:51:13	195하5299	10,300	박*용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5	남산1호터널	2024-10-11 15:20:45	151보6193	10,300	㈜*에프아이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정로
156	남산1호터널	2024-10-11 19:02:03	115호2586	10,300	김*태	서울 은평구 응암로
157	남산1호터널	2024-10-14 08:12:14	180하5681	10,300	주*회사 케*티	서울시 종로구 종로
158	남산1호터널	2024-10-14 15:59:48	159허1231	10,300	이*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해포길
159	남산1호터널	2024-10-14 16:28:22	154호2649	10,300	조*민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160	남산1호터널	2024-10-14 16:43:04	168루3538	10,300	주*회사 제*******션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61	남산1호터널	2024-10-14 18:28:20	115호2586	10,300	김*태	서울 은평구 응암로
162	남산1호터널	2024-10-14 20:20:04	156하8680	10,300	J*N X****N	경기 시흥시 정왕천로
163	남산3호터널	2024-10-14 20:46:22	142호5099	10,300	C*OU CHENG ***N	서울시 성동구 마장로
164	남산3호터널	2024-10-15 09:58:43	149하2203	10,300	김*훈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65	남산1호터널	2024-10-15 12:35:57	168루3538	10,300	주*회사 제*******션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
166	남산1호터널	2024-10-15 15:05:13	126호1745	10,300	주*회사 굿******니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167	남산1호터널	2024-10-15 15:58:03	195호9947	10,300	권*수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168	남산1호터널	2024-10-15 16:58:34	133하6653	10,300	권*미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9	남산1호터널	2024-10-15 20:28:11	309우2085	10,300	장*환	서울 관악구 인헌
170	남산3호터널	2024-10-15 20:59:00	195보7081	10,300	박*생	서울 종로구 사직로
171	남산1호터널	2024-10-16 07:52:14	197하1341	5,150	한*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72	남산1호터널	2024-10-16 18:50:42	146하1393	10,300	주*중	인천 계양구 효성동
173	남산1호터널	2024-10-16 19:47:01	245오4638	10,300	최*숙	경기 파주시 운정로
174	남산1호터널	2024-10-16 19:55:53	239어1488	10,300	백*인	대구시 달서구 상화북로
175	남산3호터널	2024-10-16 20:11:29	140하2940	10,300	김*환	서울 동작구 만양로
176	남산1호터널	2024-10-16 20:27:11	197하8506	10,300	한*식	서울시 강북구 오패산로
177	남산3호터널	2024-10-16 20:43:53	171하4774	10,300	이*야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178	남산3호터널	2024-10-17 12:49:10	305러6819	10,300	박*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중앙로
179	남산3호터널	2024-10-17 17:02:12	140소5012	10,300	최*나	서울 중구 동호로
180	남산3호터널	2024-10-17 17:19:44	50노4489	10,300	이*한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181	남산3호터널	2024-10-17 19:45:28	101하8860	10,300	박*현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82	남산1호터널	2024-10-18 10:20:41	169하5447	10,300	C*OI SOOK HEE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83	남산1호터널	2024-10-18 17:06:45	156하6258	5,150	김*비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84	남산1호터널	2024-10-18 17:37:40	157하8794	10,300	김*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로
185	남산3호터널	2024-10-18 19:21:57	178허7897	10,300	주*회사 케*티	서울 종로구 종로
186	남산3호터널	2024-10-18 19:29:03	106호3991	10,300	명*욱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187	남산1호터널	2024-10-18 19:37:45	195저4500	10,300	케********션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88	남산1호터널	2024-10-18 20:13:06	199하4769	10,300	홍*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189	남산3호터널	2024-10-21 11:44:07	116서6870	10,300	채*우	경기도 시흥시 배곧
190	남산1호터널	2024-10-21 12:01:13	121하1533	10,300	김*수	경주시 외동읍 산업로
191	남산1호터널	2024-10-21 12:52:21	177호6092	10,300	강*남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192	남산3호터널	2024-10-21 13:31:49	192하1865	10,300	인********아㈜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93	남산1호터널	2024-10-21 14:52:22	181보7868	10,300	주*회사 헤****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94	남산1호터널	2024-10-21 19:14:13	197하8506	10,300	한*식	서울시 강북구 오패산로
195	남산3호터널	2024-10-21 19:33:16	157호6060	10,300	임*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196	남산3호터널	2024-10-21 20:11:05	376로5168	10,300	㈜*앙디자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97	남산1호터널	2024-10-22 12:42:47	224도2244	10,300	박*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순환로
198	남산1호터널	2024-10-22 13:11:48	315다7307	10,300	최*교	강원 강릉시 화부산로
199	남산1호터널	2024-10-22 14:21:15	370모6316	10,300	한*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0	남산3호터널	2024-10-22 19:29:29	180하5678	10,300	주*회사 케*티	서울 종로구 종로
201	남산1호터널	2024-10-23 14:53:47	125호2654	10,300	김*운	서울 광진구 중곡동
202	남산1호터널	2024-10-23 15:49:07	174하5342	10,300	통*방폭전기 주식회사	경기도 광주시 매자리길
203	남산3호터널	2024-10-23 19:06:07	156호1957	10,300	김*진	경기 남양주시 외부읍 고래산로
204	남산3호터널	2024-10-24 08:45:47	195호5206	10,300	차*익	평택시 합정동
205	남산1호터널	2024-10-24 11:40:37	175하8921	10,300	롯*카드㈜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206	남산1호터널	2024-10-24 18:54:47	156허1035	10,300	김*성	경기도 김포시 북변로
207	남산3호터널	2024-10-24 19:16:26	172허3051	10,300	노*호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208	남산1호터널	2024-10-24 20:18:23	274부1057	10,300	㈜******커피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09	남산3호터널	2024-10-24 20:30:34	174하9773	10,300	서*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0	남산1호터널	2024-10-25 12:14:57	194호6228	10,300	에**********스 주식회사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명학산단로
211	남산1호터널	2024-10-25 13:21:12	195호6456	10,300	박*우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길
212	남산3호터널	2024-10-25 15:26:19	223서3578	10,300	현*아	서울 용산구 이촌로
213	남산3호터널	2024-10-25 19:53:25	110하9017	10,300	박*진	경기 오산시 문시로
214	남산3호터널	2024-10-25 20:06:23	140하7757	10,300	박*	서울 구로구 개봉로
215	남산3호터널	2024-10-28 09:34:58	106호2991	10,300	박*주	서울 송파구 초성로
216	남산3호터널	2024-10-28 11:18:11	157호9540	10,300	김*환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17	남산1호터널	2024-10-28 13:24:13	174하7627	10,300	김*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218	남산1호터널	2024-10-28 13:26:34	101하8853	10,300	홍*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219	남산1호터널	2024-10-28 13:42:34	171하1397	10,300	㈜*울테크	경기도 김포시 학의동로
220	남산1호터널	2024-10-28 19:19:52	36하1381	10,300	박*영	수원시 장안구 금당로
221	남산1호터널	2024-10-29 08:05:11	157하8542	10,300	전*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22	남산1호터널	2024-10-29 09:52:41	268노9928	10,300	토****씨㈜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
223	남산3호터널	2024-10-29 12:31:09	09고3692	10,300	에*****스㈜	경기 평택시 현덕면 원덕목길
224	남산3호터널	2024-10-29 12:40:25	282보5286	10,300	농*회사법인㈜범**업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밤고개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225	남산3호터널	2024-10-29 13:43:42	175하4792	10,300	하*****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26	남산3호터널	2024-10-29 15:23:40	156호7517	10,300	김*수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227	남산3호터널	2024-10-29 17:36:37	197하8506	10,300	한*식	서울시 강북구 오패산로
228	남산3호터널	2024-10-29 19:46:16	199하2869	10,300	유*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229	남산1호터널	2024-10-29 20:51:23	396오2169	10,300	박*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230	남산3호터널	2024-10-30 14:34:26	140하8113	10,300	신*철(블루마케팅)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231	남산1호터널	2024-10-30 15:15:56	195호9947	10,300	권*수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232	남산1호터널	2024-10-30 15:34:40	171호5222	10,300	양*원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233	남산3호터널	2024-10-30 16:05:00	110서7437	10,300	㈜*로트론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34	남산3호터널	2024-10-30 19:07:23	49하2125	5,150	이*란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235	남산1호터널	2024-10-31 09:51:36	208머4800	10,300	석*애	서울 서초구 서리풀
236	남산1호터널	2024-10-31 12:42:46	243소1687	10,300	김*호	서울 광진구 군자로
237	남산3호터널	2024-10-31 14:52:27	199하8682	10,300	이*훈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238	남산1호터널	2024-10-31 17:12:05	145허8128	10,300	이*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연화길
239	남산1호터널	2024-10-31 18:48:11	157하8913	10,300	주*회사 디*****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240	남산1호터널	2024-10-31 19:22:46	66하6600	10,300	주*회사 소샘	서울 강서구 강서로
241	남산1호터널	2024-10-31 20:19:02	197하8506	10,300	한*식	서울시 강북구 오패산로
242	남산1호터널	2024-10-31 20:38:03	125호7260	10,300	송*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243	남산1호터널	2024-11-01 13:14:24	194하8471	10,300	송*현	서울 강남구 개포로
244	남산1호터널	2024-11-01 14:00:38	159허1231	10,300	이*민(오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해포길
245	남산1호터널	2024-11-01 14:13:49	143하2119	10,300	주*회사 아**쿨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로
246	남산1호터널	2024-11-01 19:19:56	224도2244	10,300	박*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순환로
247	남산1호터널	2024-11-01 20:44:10	49호2308	10,300	이*식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248	남산3호터널	2024-11-04 08:03:02	149하5306	10,300	김*규	경기 남양주시 가운로
249	남산3호터널	2024-11-04 11:58:40	192하1865	10,300	인*******아㈜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250	남산1호터널	2024-11-04 13:53:30	388고3021	10,300	김*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251	남산1호터널	2024-11-04 13:59:33	157허2299	10,300	박*훈	충청남도 공주시 백미고을길
252	남산3호터널	2024-11-04 14:41:43	109허7494	10,300	최*택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애니골길
253	남산1호터널	2024-11-04 15:27:37	37허6947	10,300	정*호	경기 파주시 파주읍 교육길
254	남산1호터널	2024-11-04 16:08:30	167허5704	10,300	㈜*쿠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죽양대로
255	남산3호터널	2024-11-05 07:04:12	165호5897	10,300	차*걸	서울 동작구 사당로
256	남산3호터널	2024-11-05 11:34:25	156하7723	10,300	최*기	광주 서구 상무대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257	남산1호터널	2024-11-05 15:14:11	10하1238	10,300	예*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옘티브이
258	남산1호터널	2024-11-05 20:24:14	101하8853	10,300	홍*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259	남산1호터널	2024-11-06 08:55:21	180하7347	10,300	㈜*스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60	남산3호터널	2024-11-06 11:50:56	332러6847	10,300	김*자	경기도 의왕시 덕장로
261	남산1호터널	2024-11-06 13:20:32	101호4400	10,300	김*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62	남산1호터널	2024-11-06 17:28:48	133하2671	10,300	이*열	오산시 청학로
263	남산3호터널	2024-11-06 18:38:33	50노4489	10,300	이*한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64	남산3호터널	2024-11-06 19:08:19	169하6588	10,300	Z*ETPISSOV Y*******T	인천 연수구 송도동
265	남산1호터널	2024-11-06 19:21:00	169호2226	10,300	주*회사 세****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6	남산3호터널	2024-11-06 20:44:52	199하8670	10,300	㈜*신유통	경상북도 경산시 성암로
267	남산1호터널	2024-11-07 08:52:01	119모9730	10,300	㈜*선다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68	남산3호터널	2024-11-07 12:31:04	171하4751	10,300	김*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269	남산3호터널	2024-11-07 14:57:05	198허4811	10,300	나*스신용정보㈜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270	남산3호터널	2024-11-07 17:06:28	174하7383	10,300	주*회사 삼*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271	남산1호터널	2024-11-08 11:10:23	234나3697	10,300	김*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272	남산1호터널	2024-11-08 11:23:57	169하9933	10,300	신*투자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73	남산1호터널	2024-11-08 13:05:09	168루3538	10,300	주*회사 제*******션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
274	남산3호터널	2024-11-08 13:37:02	224호1342	10,300	주*회사 뉴****스	서울시 중구 퇴계로
275	남산1호터널	2024-11-08 15:17:56	126호4218	10,300	김*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
276	남산3호터널	2024-11-08 16:23:32	102수5711	10,300	농*회사법인 주식회사 *산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277	남산1호터널	2024-11-08 17:53:56	169허1564	10,300	㈜*원철강	경기 김포시 대곶면 송마로
278	남산1호터널	2024-11-08 17:54:38	167호8974	10,300	이*영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279	남산1호터널	2024-11-08 20:39:03	167호5179	10,300	송*임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
280	남산1호터널	2024-11-08 20:42:20	199하1538	10,300	주*회사 한디앤씨	경기도 화성시
281	남산1호터널	2024-11-11 09:28:51	149하2330	10,300	김*정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282	남산3호터널	2024-11-11 10:15:30	174하7383	10,300	주*회사 삼*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283	남산1호터널	2024-11-11 12:36:16	179하3848	10,300	박*성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부용로
284	남산1호터널	2024-11-11 12:59:04	220하1080	10,300	김*성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285	남산1호터널	2024-11-11 13:04:58	101하8853	10,300	홍*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286	남산1호터널	2024-11-11 14:00:22	197하6508	5,150	신*디지털(홍은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287	남산1호터널	2024-11-11 17:34:28	109하1423	10,300	박*호	경기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
288	남산3호터널	2024-11-11 19:26:04	199하6530	10,300	홍*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289	남산1호터널	2024-11-11 20:42:05	199호1199	10,300	박*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90	남산1호터널	2024-11-11 20:49:36	166호2600	10,300	씨*이제일제당㈜	서울 중구 동호로
291	남산1호터널	2024-11-12 07:06:24	224호6911	10,300	이*재(와이엔제이건설)	경기도 광주시 마루들길
292	남산3호터널	2024-11-12 13:00:36	163호6432	10,300	로*앤컴㈜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93	남산1호터널	2024-11-12 13:04:47	101하8853	10,300	홍*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294	남산1호터널	2024-11-12 16:19:03	151보6193	10,300	㈜*에프아이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정로
295	남산1호터널	2024-11-12 20:44:45	199호2656	10,300	하*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96	남산1호터널	2024-11-13 08:44:33	169호2207	10,300	㈜*가이엔씨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297	남산1호터널	2024-11-13 10:38:14	187서6096	10,300	김*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98	남산1호터널	2024-11-13 13:08:39	230우4583	10,300	한*오션㈜	경남 거제시 거제대로
299	남산1호터널	2024-11-13 16:48:26	126하3075	10,300	주*회사 강**기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300	남산3호터널	2024-11-14 13:23:01	101호2767	10,300	김*희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해로
301	남산3호터널	2024-11-14 16:13:10	167호2721	10,300	최*성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302	남산1호터널	2024-11-14 16:16:45	159조7636	10,300	㈜*스****씨	경기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303	남산1호터널	2024-11-14 16:49:28	106호5520	10,300	정*임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304	남산3호터널	2024-11-14 20:02:02	197하8657	10,300	L* Z******N	경기 시흥시 죽율로
305	남산3호터널	2024-11-14 20:48:10	157허6904	10,300	이*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6	남산1호터널	2024-11-15 07:06:04	234거5685	10,300	주*회사 노바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307	남산3호터널	2024-11-15 10:44:00	157하3822	10,300	김*형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308	남산1호터널	2024-11-15 17:04:11	199하2780	10,300	주*회사 메*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09	남산3호터널	2024-11-15 19:26:58	149하4797	10,300	유*용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310	남산1호터널	2024-11-15 19:37:43	251오7846	10,300	㈜*라***씨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11	남산1호터널	2024-11-15 20:14:47	398보3587	10,300	㈜*앨리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312	남산1호터널	2024-11-18 13:53:18	101하8853	10,300	홍*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313	남산1호터널	2024-11-19 13:24:59	101하8853	10,300	홍*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314	남산1호터널	2024-11-20 20:29:49	101하8853	10,300	홍*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315	남산1호터널	2024-11-22 09:40:11	101하8853	10,300	홍*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316	남산1호터널	2024-11-25 07:14:33	101하8853	10,300	홍*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317	남산1호터널	2024-11-27 09:07:28	169하2942	10,300	삼*회계법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672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업무정지) 재개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제3항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집행정지 기각결정으로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재개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2025년 5월 29일

□ 행정처분 재개 내용

업 체 명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효력재개 사유
주식회사 청인씨앤에스	정 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제1항제2호	업무정지 ' 25.05.17.~' 25.08.16. *기 정지기간 88일 제외	집행정지 기각결정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685호

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4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주식매각 공개목록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공직유관단체(기관장)	황보연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단위 : 주)				
본인	TCC스틸	114	매각	3,123	2025-01-03	토스증권(주)
	에코프로머티	60		4,644	2024-12-19	
	켄코아에어로 스페이스	22		220	2024-12-19	
	에코프로비엠	70		847	2024-12-19	
	에코프로	200		13,700	2024-12-19	
	한국항공우주	100		5,570	2024-12-30	
	강원랜드	300		5,094	2024-12-19	
	아시아나항공	400		4,004	2024-12-19	
	HMM	312		5,640	2024-12-19	
	삼성중공업	500		5,615	2024-12-19	
	POSCO홀딩스	30		7,920	2024-12-19	
	포스코퓨처엠	50		7,865	2024-12-19	
	엔켐	80		10,188	2025-01-03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단위 : 주)				
본인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450	매각	4,468	2024-12-18	토스증권(주)
	비올	400		3,260	2024-12-18	
	비올	300		2,373	2025-01-03	
	제이앤티씨	150		2,887	2024-12-23	
	중앙첨단소재	500		4,370	2024-12-26	
	중앙첨단소재	450		3,825	2024-12-18	
배우자	에코프로	83	매각	4,955	2024-12-30	DB금융투자
	SK이노베이션	19		2,190	2024-12-30	
	제이앤티씨	190		3,477	2025-01-03	
	비올	98		759	2024-12-30	
	윤성에프앤씨	16		588	2024-12-30	
	중앙첨단소재	210		1,680	2025-01-03	NH투자증권
	이엠텍	130		3,516	2024-12-20	
	하이소닉	360		864	2024-12-30	
	서진시스템	121		3,127	2025-01-03	
	인텔리안테크	24		909	2024-12-30	
	에코프로비엠	27		2,913	2025-01-03	
	덴티스	100		614	2024-12-20	
	지놈앤컴퍼니	399		1,073	2024-12-30	
	덕산테코피아	66		1,877	2025-01-03	
	디이엔티	188		956	2024-12-30	DB금융투자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26		709	2024-12-19	
	POSCO홀딩스	18		4,653	2024-12-30	
	코스모신소재	33		1,777	2024-12-30	
	신성에스티	58		1,832	2024-12-20	
	덕산테코피아	10		284	2025-01-03	
	삼천당제약	25		2,942	2024-12-24	
	삼천당제약	26		3,879	2025-01-03	
	삼천당제약	34		4,003	2024-12-24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단위 : 주)				
배우자	삼천당제약	25	매각	3,737	2024-12-26	DB금융투자
	젬백스	430		5,865	2025-01-03	
	지놈앤컴퍼니	101		269	2024-12-24	NH투자증권
	하이소닉	100		332	2024-12-24	
	바이오플러스	380		2,743	2024-12-18	DB금융투자
	비에이치아이	120		1,726	2024-12-18	NH투자증권
	엔캠	13		1,719	2024-12-20	
장남	삼천당제약	52	매각	7,815	2024-12-27	키움증권
	이엠텍	66		1,765	2024-12-20	
	바이오플러스	455		3,417	2024-12-30	
	하이소닉	400		1,012	2024-12-30	
	옵투스제약	209		1,444	2024-12-27	
	제이앤티씨	130		2,423	2025-01-03	
	덴티스	65		399	2024-12-19	
	덕산테코피아	80		2,360	2025-01-03	
	퀀타매트릭스	117		665	2024-12-30	
	현대힘스	210		2,814	2025-01-03	
	젬백스	100		1,361	2025-01-03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130		1,943	2025-01-03	
	삼천당제약	5		591	2024-12-24	
	삼천당제약	32		4,712	2025-01-02	
	엔캠	11		1,398	2024-12-30	
	에스와이스틸텍	200		1,476	2025-01-02	
	젬백스	160		2,289	2025-01-03	
	TIGER2차전지소재Fn	120		478	2024-12-3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686호

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4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주식매각 공개목록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실장	지방관리관	한병용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단위 : 주)				
본인	삼성전자	210	매각	11,781	2025-04-29	미래에셋증권
	삼성전기	35		4,263	2025-04-29	
	삼성전자우	210		9,817	2025-04-29	

서울특별시의회

[공 고]

◈ 서울특별시의회공고 제2025-274호

주식매각신고사항 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및 제5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식매각공개목록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시의원	의회의원	유정인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유정인	진양산업	305	매각	2,821	2025-01-09	하나증권
유정인	진양산업	2,100	매각	19,183	2025-01-10	하나증권
유정인	진양산업	1,300	매각	11,879	2025-01-20	하나증권
유정인	진양산업	11,600	매각	125,384	2025-02-04	하나증권
유정인	진양산업	4,550	매각	49,626	2025-02-06	하나증권
유정인	진양산업	6,153	매각	67,867	2025-02-07	하나증권
유정인	진양산업	980	매각	9,844	2025-02-26	하나증권
유정인	진양산업	550	매각	5,610	2025-02-27	하나증권
유정인	진양산업	1,375	매각	14,081	2025-02-28	하나증권
유정인	진양산업	200	매각	1,768	2025-03-07	하나증권
유정인	진양산업	150	매각	1,326	2025-03-10	하나증권

유정인	진양산업	1,050	매각	9,222	2025-03-20	하나증권
유정인	진양산업	3,000	매각	21,825	2025-03-27	하나증권
유정인	진양산업	4,500	매각	33,538	2025-03-28	하나증권
유정인	진양산업	24,469	매각	182,269	2025-03-31	하나증권
유정인	효성오앤비	2,500	매각	18,250	2025-01-07	하나증권
유정인	효성오앤비	62	매각	442	2025-01-08	하나증권
유정인	효성오앤비	2,049	매각	13,908	2025-01-10	하나증권
유정인	효성오앤비	11,750	매각	79,324	2025-01-13	하나증권
유정인	효성오앤비	8,737	매각	65,780	2025-01-20	하나증권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시의원	의회의원	황유정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황유정	콘텐트리중앙	300	매각	3,240	2024-10-23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황유정	콘텐트리중앙	200	매각	2,090	2024-10-24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황유정	콘텐트리중앙	500	매각	5,065	2025-02-24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황유정	콘텐트리중앙	300	매각	2,952	2025-02-25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황유정	콘텐트리중앙	200	매각	2,004	2025-02-27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황유정	콘텐트리중앙	300	매각	3,087	2025-02-27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황유정	콘텐트리중앙	200	매각	2,030	2025-03-04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황유정	하이브	30	매각	4,893	2024-08-07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황유정	하이브	20	매각	3,472	2024-08-07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황유정	하이브	30	매각	5,601	2024-09-03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황유정	하이브	50	매각	8,280	2024-09-10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황유정	하이브	49	매각	8,055	2024-09-12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황유정	하이브	1	매각	164	2024-09-12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황유정	SM C&C	33,000	매각	47,223	2025-04-29	최민지
황유정	엔씨소프트	207	매각	30,366	2025-04-29	최민지
황유정	엔씨소프트	408	매각	60,955	2025-05-12	최민지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25-6호

2025년 수시 재산변동사항 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수시 재산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 퇴직(2025.2.14.)

소속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직위	(전)의원		성명	신예진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234,820	574,100	114,820	694,100	
본인	아파트(전세 (임차)권)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건물 61.47㎡	100,000	0	0	100,000	변동사항 없음

본인	아파트(분양권)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건물 0.00㎡ (건물 84.00㎡ 감소)	114,820	0	114,820 (574,100)	0	분양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본인	아파트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건물 84.00㎡ 중 42.00㎡ (건물 총면적 84.00㎡ 증가, 지분면적 42.00㎡ 증가)	0	287,050 (287,050)	0	287,050	공동명의(증여인)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배우자	상가(전세 (임차)권)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건물 39.00㎡	20,000	0	0	20,000	변동사항 없음
배우자	아파트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건물 84.00㎡ 중 42.00㎡ (건물 총면적 84.00㎡ 증가, 지분면적 42.00㎡ 증가)	0	287,050 (287,050)	0	287,050	공동명의(수증인)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소계)			**31,050**	**0**	**8,449**	**22,601**	
배우자	자동차	2016년식 RAY 밴 배기량(998cc)	3,930	0	3,579	351	가액감소
배우자	자동차	2010년식 YF쏘나타 2.0 배기량(2,000cc)	3,070	0	880	2,190	가액감소
배우자	자동차	2014년식 RAY 밴 배기량(998cc)	2,420	0	330	2,090	가액감소
배우자	자동차	2013년식 그랜져 HG 배기량(2,999cc)	9,160	0	1,880	7,280	가액감소
배우자	자동차	2016년식 Q50 2.2d 배기량(2,143cc)	12,470	0	1,780	10,690	가액감소
▶ 예금(소계)			**307,220**	**55,162**	**101,729**	**260,653**	

본인		(주)KEB하나은행 2(285 감소), 미래에셋생명보험 11,838(921 증가), 미래에셋증권 2,296(2,118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400(300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86(6 증가), 신한은행 22(622 감소), 하나증권 9,189(9,189 증가), 한화손해보험 580(140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263(263 증가)	12,746	12,939	909	24,776	본인 개인소득 증가, 배우자 아파트 분양금 잔금 납입 및 대출금 상환, 보험 신규 가입
배우자		(주)KB손해보험 1,136(245 증가), (주)KEB하나은행 2,212(1,829 증가), KB증권 88,907(38,111 감소), NH투자증권 3,945(25,947 감소), 미래에셋증권 95,000(3,607 감소), 삼성증권 0(3,144 감소), 새마을금고중앙회 10,522(10,128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00, 신한라이프생명보험 34,002, 우리은행 53(10 증가)	294,474	42,223	100,820	235,877	
▶ 증권(소계)			**85,530**	**3,187**	**88,711**	**6**	
본인	상장주식	버넥트 2주	18	0	12	6	주식매도로 인한 감소
배우자	상장주식	셀트리온 0주(424주 감소), 에이엘티 0주(3주 감소), 와이랩 0주(1주 감소)	85,512	3,187	88,699	0	
▶ 채권(소계)			**425,000**	**0**	**0**	**425,000**	
배우자		사인간채권	425,000	0	0	425,000	변동사항 없음
▶ 채무(소계)			**274,820**	**500,000**	**224,820**	**550,000**	

본인	금융채무	신한은행 0(114,820 감소), 우리은행 0(80,000 감소)	194,820	0	194,820	0	신한은행 아파트중도금 대출 상환, 우리은행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 상환
본인	건물임대채무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임대보증금 증가	0	50,000	0	50,000	임대차 계약채무
배우자	금융채무	(주)KEB하나은행 0(30,000 감소), 우리은행 450,000(400,000 증가)	80,000	400,000	30,000	450,000	하나은행 대출 채무 완납, 우리은행 아파트 주택도시기금대출 신규 개시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임대보증금 증가	0	50,000	0	50,000	임대차 계약채무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부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808,800	132,449	88,889	852,360	증감액: 43,560천원 (가액변동: -8,461천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5-193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이유
   가. 2025. 7. 1. 개정 예정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5. 7. 1.자 조직개편과 관련한 지방공무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나. 2025. 5. 15. 개정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다. 일반직공무원 정·현원 불일치를 해소 및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에 따라 정원 일부 조정
   라. 그 밖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반직·특정직공무원의 단위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

2. 주요내용
   가. 일반직공무원 단위기관별 정원 조정
   ○ 본청(직속기관 포함)
   : 5급 (감)2명, 6급 (감)4명, 7급 (감)28명, 8급 (감)12명, 계 (감)46명
   ○ 교육지원청
   : 5급 (증)6명, 6급 (증)44명, 7급 (증)46명, 계 (증)96명
   ○ 각급학교
   : 8급 (감)18명, 계 (감)18명

   나. 일반직공무원 직렬별·직급별 정원 조정
   ○ 5급: 교육행정 5급 (증)4명, 계 (증)4명
   ○ 6급: 교육행정 6급 (증)42명, 전산 6급 (증)5명, 녹지 6급 (감)1명, 보건 6급 (감)2명, 시

설 6급 (감)1명, 시설관리 6급 (감)1명, 운전 6급 (감)1명, 사무운영 6급 (감)2명, 교육행정·보건·식품위생 6급 (증)1명, 계 (증)40명

○ 7급: 교육행정 7급 (증)21명, 전산 7급 (증)2명, 공업 7급 (감)1명, 녹지 7급 (감)1명, 보건 7급 (감)1명, 시설 7급 (감)3명, 시설관리 7급 (감)1명, 사무운영 7급 (감)1명, 교육행정·사서 7급 (증)3명, 보건·식품위생 7급 (감)2명, 교육행정·보건·식품위생 7급 (증)2명, 계 (증)18명

○ 8급: 교육행정 8급 (감)17명, 전산 8급 (감)2명, 사서 8급 (감)1명, 공업 8급 (감)1명, 보건 8급 (감)1명, 시설 8급 (감)1명, 시설관리 8급 (감)6명, 운전 8급 (감)1명, 계 (감)30명

다. 특정직공무원 정원 조정

○ 본청(직속기관 포함): 장학사·교육연구사 (감) 3명

○ 교육지원청: 장학관·교육연구관 (증) 4명, 장학사·교육연구사 (증) 18명

3.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방법

○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서울시교육청 10층 행정관리담당관(우 03178)

○ 이메일: jeunsan@sen.go.kr(※ 전화문의: 02-2282-8644)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7,927	6	1,794	1,490	4,637
정무직	정무직 계		1	–	1	–	–
	교육감		1	–	1	–	–
일반직	일반직 계		7,157	6	1,515	1,153	4,483
	2 · 3급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	1	–	–
	3급	부이사관	9	–	9	–	–
	3 · 4급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	3	–	–
	4급	소계	44	–	33	11	–
		서기관	39	–	29	10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	–	4	1	–
	4 · 5급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	7	–	7	–	–
	5급	소계	343	1	150	61	131
		교육행정	252	1	87	47	117
		행정	6	–	6	–	–
		사서	31	–	31	–	–
		보건	1	–	1	–	–
		교육행정 또는 행정	10	–	4	–	6
		교육행정 또는 사서	6	–	6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8	–	3	3	2
		교육행정 또는 시설	2	–	2	–	–
		공업 또는 시설	20	–	9	11	–
		교육행정 · 공업 또는 시설	6	–	–	–	6
		교육행정 · 보건 또는 식품위생	1	–	1	–	–
	6급	소계	2,050	5	525	333	1,187
		교육행정	1,325	5	231	204	885
		전산	58	–	31	27	–
		사서	130	–	119	11	–
		공업	14	–	12	–	2
		녹지	–	–	–	–	–
		보건	17	–	7	10	–
		식품위생	6	–	4	–	2
		간호	5	–	5	–	–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시설	41	-	18	23	-
		방송통신	1	-	1	-	-
		시설관리	304	-	42	11	251
		운전	4	-	2	-	2
		통신운영	1	-	1	-	-
		전기운영	10	-	4	-	6
일반직	6급	열관리운영	21	-	11	-	10
		사무운영	59	-	22	12	25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3	-	3	-	-
		교육행정 또는 전산	-	-	-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1	-	-	-	1
		방호 또는 시설관리	3	-	3	-	-
		공업 또는 시설	30	-	4	26	-
		보건 또는 식품위생	3	-	3	-	-
		교육행정 · 공업 또는 시설	3	-	-	-	3
		교육행정 · 보건 또는 식품위생	11	-	2	9	-
	7급	소계	2,710	-	558	515	1,637
		교육행정	1,741	-	235	367	1,139
		전산	62	-	45	17	-
		사서	173	-	173	-	-
		공업	20	-	8	12	-
		녹지	-	-	-	-	-
		보건	30	-	16	14	-
		간호	5	-	5	-	-
		시설	45	-	18	27	-
		시설관리	513	-	21	15	477
		운전	12	-	3	6	3
		통신운영	1	-	1	-	-
		전기운영	-	-	-	-	-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71	-	20	33	18
		교육행정 또는 사서	3	-	3	-	-
		교육행정 또는 시설	1	-	1	-	-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1	-	1	-	-
		공업 또는 시설	18	-	3	15	-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보건 또는 식품위생	–	–	–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4	–	2	2	–
		교육행정 · 보건 또는 식품위생	10	–	3	7	–
	8급	소계	1,969	–	219	222	1,528
		교육행정	1,255	–	60	118	1,077
		전산	22	–	11	11	–
		사서	84	–	84	–	–
		공업	13	–	1	12	–
		보건	21	–	4	17	–
		시설	49	–	7	42	–
		시설관리	496	–	43	6	447
		운전	10	–	1	5	4
		전기운영	–	–	–	–	–
일반직	8급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1	–	1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1	–	1	–	–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5	–	5	–	–
		공업 또는 시설	11	–	–	11	–
		보건 또는 간호	1	–	1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	–	–	–	–
	9급	소계	–	–	–	–	–
		시설관리	–	–	–	–	–
		운전	–	–	–	–	–
		전기운영	–	–	–	–	–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	–	–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	–	–	–	–
	전문 경력관	소계	7	–	7	–	–
		가군	1	–	1	–	–
		비상계획관	1	–	1	–	–
		나군	2	–	2	–	–
		교육영상물제작PD	1	–	1	–	–
		평생교육사	–	–	–	–	–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학생수련지도사	1	-	1	-	-
		다군	4	-	4	-	-
		속기사	-	-	-	-	-
		학생수련지도사	4	-	4	-	-
	연구사	소계	14	-	3	11	-
		학예연구	1	-	1	-	-
		기록연구	13	-	2	11	-
별정직	별정직 계		8	-	8	-	-
	4급 상당(비서)		1	-	1	-	-
	5급 상당(비서)		4	-	4	-	-
	6급 상당(비서)		3	-	3	-	-
특정직	특정직 계		761	-	270	337	154
	장학관·교육연구관	소계	129	-	69	60	-
		3급 상당	17	-	6	11	-
		4급 상당	34	-	23	11	-
		5급 상당	78	-	40	38	-
	장학사·교육연구사		632	-	201	277	154

신 · 구 대비표

현 행

【별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 관련)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7,876	6	1,843	1,372	4,655
정무직	정무직 계		1	-	1	-	-
	교육감		1	-	1	-	-
일반직	일반직 계		7,125	6	1,561	1,057	4,501
	2·3급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	1	-	-
	3급	부이사관	9	-	9	-	-
	3·4급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	3	-	-
	4급	소계	44	-	33	11	-
		서기관	39	-	29	10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	-	4	1	-
	4·5급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	7	-	7	-	-
	5급	소계	339	1	152	55	131
		교육행정	248	1	89	41	117
		행정	6	-	6	-	-
		사서	31	-	31	-	-
		보건	1	-	1	-	-
		교육행정 또는 행정	10	-	4	-	6
		교육행정 또는 사서	6	-	6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8	-	3	3	2
		교육행정 또는 시설	2	-	2	-	-
		공업 또는 시설	20	-	9	11	-
		교육행정 · 공업 또는 시설	6	-	-	-	6
		교육행정 · 보건 또는 식품위생	1	-	1	-	-
	6급	소계	2,010	5	529	289	1,187
		교육행정	1,283	5	229	165	884
		전산	53	-	31	22	-
		사서	130	-	119	11	-
		공업	14	-	12	-	2
		녹지	1	-	1	-	-
		보건	19	-	9	10	-
		식품위생	6	-	4	-	2

개 정 안

【별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 관련)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7,927	6	1,794	1,490	4,637
정무직	정무직 계		1	-	1	-	-
	교육감		1	-	1	-	-
일반직	일반직 계		7,157	6	1,515	1,153	4,483
	2·3급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	1	-	-
	3급	부이사관	9	-	9	-	-
	3·4급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	3	-	-
	4급	소계	44	-	33	11	-
		서기관	39	-	29	10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	-	4	1	-
	4·5급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	7	-	7	-	-
	5급	소계	343	1	150	61	131
		교육행정	252	1	87	47	117
		행정	6	-	6	-	-
		사서	31	-	31	-	-
		보건	1	-	1	-	-
		교육행정 또는 행정	10	-	4	-	6
		교육행정 또는 사서	6	-	6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8	-	3	3	2
		교육행정 또는 시설	2	-	2	-	-
		공업 또는 시설	20	-	9	11	-
		교육행정 · 공업 또는 시설	6	-	-	-	6
		교육행정 · 보건 또는 식품위생	1	-	1	-	-
	6급	소계	2,050	5	525	333	1,187
		교육행정	1,325	5	231	204	885
		전산	58	-	31	27	-
		사서	130	-	119	11	-
		공업	14	-	12	-	2
		녹지	-	-	-	-	-
		보건	17	-	7	10	-
		식품위생	6	-	4	-	2

현 행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일반직		간호	5	-	5	-	-
		시설	42	-	19	23	-
		방송통신	1	-	1	-	-
		시설관리	305	-	43	11	251
		운전	5	-	2	-	3
		통신운영	1	-	1	-	-
		전기운영	10	-	4	-	6
		열관리운영	21	-	11	-	10
		사무운영	61	-	24	12	25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3	-	3	-	-
		교육행정 또는 전산	-	-	-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1	-	-	-	1
		방호 또는 시설관리	3	-	3	-	-
		공업 또는 시설	30	-	4	26	-
		보건 또는 식품위생	3	-	3	-	-
		교육행정·공업 또는 시설	3	-	-	-	3
		교육행정·보건 또는 식품위생	10	-	1	9	-
	7급	소계	2,692	-	586	469	1,637
		교육행정	1,720	-	257	325	1,138
		전산	60	-	49	11	-
		사서	173	-	173	-	-
		공업	21	-	9	12	-
		녹지	1	-	1	-	-
		보건	31	-	17	14	-
		간호	5	-	5	-	-
		시설	48	-	19	29	-
		시설관리	514	-	21	15	478
		운전	12	-	3	6	3
		통신운영	1	-	1	-	-
		전기운영	-	-	-	-	-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72	-	21	33	18
		교육행정 또는 사서	-	-	-	-	-
		교육행정 또는 시설	1	-	1	-	-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1	-	1	-	-
		공업 또는 시설	18	-	3	15	-

개 정 안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일반직		간호	5	-	5	-	-
		시설	41	-	18	23	-
		방송통신	1	-	1	-	-
		시설관리	304	-	42	11	251
		운전	4	-	2	-	2
		통신운영	1	-	1	-	-
		전기운영	10	-	4	-	6
		열관리운영	21	-	11	-	10
		사무운영	59	-	22	12	25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3	-	3	-	-
		교육행정 또는 전산	-	-	-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1	-	-	-	1
		방호 또는 시설관리	3	-	3	-	-
		공업 또는 시설	30	-	4	26	-
		보건 또는 식품위생	3	-	3	-	-
		교육행정·공업 또는 시설	3	-	-	-	3
		교육행정·보건 또는 식품위생	11	-	2	9	-
	7급	소계	2,710	-	558	515	1,637
		교육행정	1,741	-	235	367	1,139
		전산	62	-	45	17	-
		사서	173	-	173	-	-
		공업	20	-	8	12	-
		녹지	-	-	-	-	-
		보건	30	-	16	14	-
		간호	5	-	5	-	-
		시설	45	-	18	27	-
		시설관리	513	-	21	15	477
		운전	12	-	3	6	3
		통신운영	1	-	1	-	-
		전기운영	-	-	-	-	-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71	-	20	33	18
		교육행정 또는 사서	3	-	3	-	-
		교육행정 또는 시설	1	-	1	-	-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1	-	1	-	-
		공업 또는 시설	18	-	3	15	-

현 행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일반직		보건 또는 식품위생	2	-	2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4	-	2	2	-
		교육행정·보건 또는 식품위생	8	-	1	7	-
	8급	소계	1,999	-	231	222	1,546
		교육행정	1,272	-	66	118	1,088
		전산	24	-	13	11	-
		사서	85	-	85	-	-
		공업	14	-	2	12	-
		보건	22	-	5	17	-
		시설	50	-	8	42	-
		시설관리	502	-	43	6	453
		운전	11	-	1	5	5
		전기운영	-	-	-	-	-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1	-	1	-	-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5	-	5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1	-	1	-	-
		공업 또는 시설	11	-	-	11	-
		보건 또는 간호	1	-	1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	-	-	-	-
	9급	소계	-	-	-	-	-
		시설관리	-	-	-	-	-
		운전	-	-	-	-	-
		전기운영	-	-	-	-	-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	-	-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	-	-	-	-
	전문경력관	소계	7	-	7	-	-
		가군	1	-	1	-	-
		비상계획관	1	-	1	-	-
		나군	2	-	2	-	-
		교육영상물 제작PD	1	-	1	-	-
		평생교육사	-	-	-	-	-
		학생수련지도사	1	-	1	-	-
		다군	4	-	4	-	-

개 정 안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일반직		보건 또는 식품위생	-	-	-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4	-	2	2	-
		교육행정·보건 또는 식품위생	10	-	3	7	-
	8급	소계	1,969	-	219	222	1,528
		교육행정	1,255	-	60	118	1,077
		전산	22	-	11	11	-
		사서	84	-	84	-	-
		공업	13	-	1	12	-
		보건	21	-	4	17	-
		시설	49	-	7	42	-
		시설관리	496	-	43	6	447
		운전	10	-	1	5	4
		전기운영	-	-	-	-	-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1	-	1	-	-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5	-	5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1	-	1	-	-
		공업 또는 시설	11	-	-	11	-
		보건 또는 간호	1	-	1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	-	-	-	-
	9급	소계	-	-	-	-	-
		시설관리	-	-	-	-	-
		운전	-	-	-	-	-
		전기운영	-	-	-	-	-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	-	-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	-	-	-	-
	전문경력관	소계	7	-	7	-	-
		가군	1	-	1	-	-
		비상계획관	1	-	1	-	-
		나군	2	-	2	-	-
		교육영상물 제작PD	1	-	1	-	-
		평생교육사	-	-	-	-	-
		학생수련지도사	1	-	1	-	-
		다군	4	-	4	-	-

현 행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속기사	-	-	-	-	-
		학생수련지도사	4	-	4	-	-
	연구사	소계	14	-	3	11	-
		학예연구	1	-	1	-	-
		기록연구	13	-	2	11	-
별정직	별정직 계		8	-	8	-	-
	4급상당(비서)		1	-	1	-	-
	5급상당(비서)		4	-	4	-	-
	6급상당(비서)		3	-	3	-	-
특정직	특정직 계		742	-	273	315	154
	장학관·교육연구관	소계	125	-	69	56	-
		3급 상당	17	-	6	11	-
		4급 상당	34	-	23	11	-
		5급 상당	74	-	40	34	-
	장학사·교육연구사		617	-	204	259	154

개 정 안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속기사	-	-	-	-	-
		학생수련지도사	4	-	4	-	-
	연구사	소계	14	-	3	11	-
		학예연구	1	-	1	-	-
		기록연구	13	-	2	11	-
별정직	별정직 계		8	-	8	-	-
	4급상당(비서)		1	-	1	-	-
	5급상당(비서)		4	-	4	-	-
	6급상당(비서)		3	-	3	-	-
특정직	특정직 계		761	-	270	337	154
	장학관·교육연구관	소계	129	-	69	60	-
		3급 상당	17	-	6	11	-
		4급 상당	34	-	23	11	-
		5급 상당	78	-	40	38	-
	장학사·교육연구사		632	-	201	277	15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성 명: (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개정안	수정요구안	사 유
제2조(직급별정원) ① [별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제2조(직급별정원) ① [별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 –

2025년 월 일

구 고 시

◈ 성동구고시 제2025-8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232호(1977.12.1.)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철도)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성 동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1. 철도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철도 (성수역)	도시철도	성수동2가1동 300-4 앞	8,908	건설부고시 제232호 (1977.12.1)	-
변경	철도 (성수역)	도시철도	성수동2가1동 300-4 앞	7,796.3	건설부고시 제232호 (1977.12.1)	·면적 착오정정 및 성수역 출입구 2개소 설치

나. 변경사유

구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면적착오정정 - 8,908㎡ → 7,636.5㎡ (면적감소 1,271.5㎡) · 금회 면적증가 - 7,636.5㎡ → 7,796.3㎡ (면적증가 159.8㎡) · 최종변경면적 - 8,908㎡ → 7,796.3㎡ (면적감소 1,111.7㎡)	·지하철 2호선 성수역의 역사 현황측량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면적 산정 착오를 정정하고 출입구의 혼잡도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역사 출입시설을 추가 설치하고자 함

2. 결정도 및 지형도 : 별첨
   ※ 게재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주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계획과(☎ 2286 -5561)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및 서울도시공간포털(http://urban.seoul.go.kr)에 게시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동대문구고시 제2025-87호

도시관리계획[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25호(2018.07.19.)로 결정(변경)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실효되었기에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동 대 문 구 청 장

Ⅰ. 동대문구 장안동 459-1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

1. 실효일자 : 2023. 7. 20.(고시일 : 2025. 5. 29.)
2.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실효된 지구단위계획 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25호(2018.07.19.) 결정(변경)된 장안동 459-1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

Ⅱ. 도시관리계획(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1,900.2	-	1,900.2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증)1,900.2	1,900.2	100.0	
준주거지역	1,900.2	감)1,900.2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결정사유
	기 정	변 경		
동대문구 장안동 459-1 일원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900.2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5년 이내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실효됨에 따라 용도지역 환원

2.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획지번호	면적(㎡)		위 치	비 고
기정	3	1,900.2	1,036.4	동대문구 장안동 459-1	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25호)
			863.8	동대문구 장안동 459-6	
변경	폐지				

○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획지번호	면적(㎡)		위 치	비 고
3	1,900.2	1,036.4	동대문구 장안동 459-1	역세권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실효됨에 따라 획지 폐지 및 환원
		863.8	동대문구 장안동 45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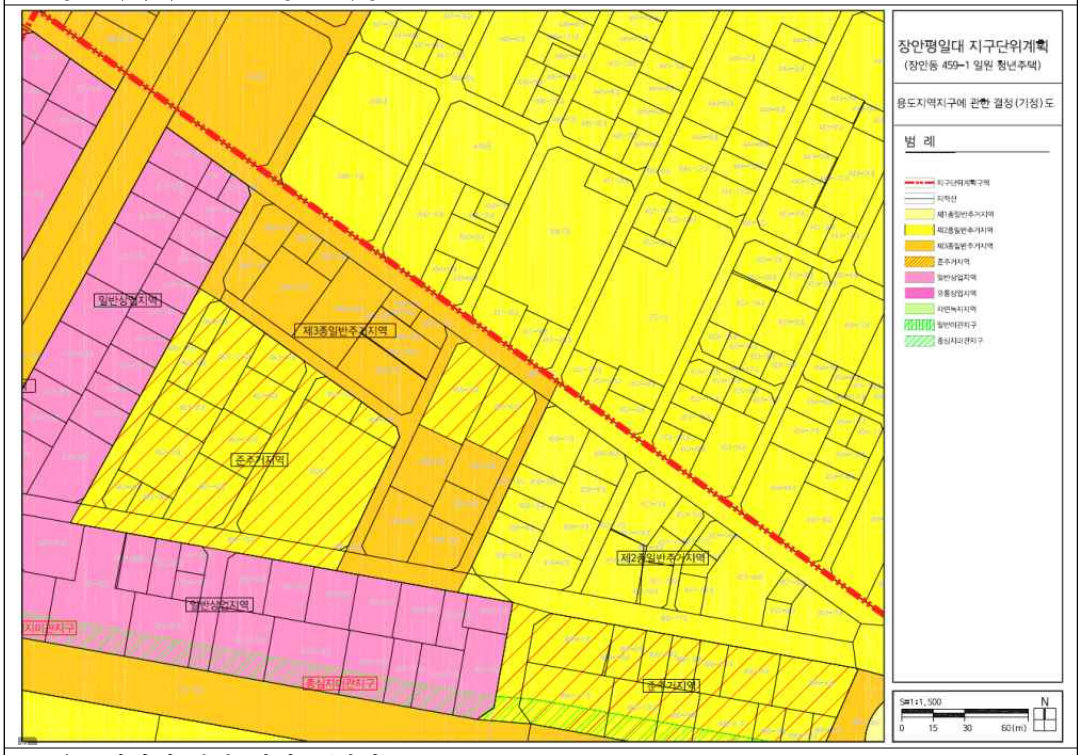
4. 기타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은 기결정된 도시관리계획(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을 따름

Ⅲ. 관련도면 :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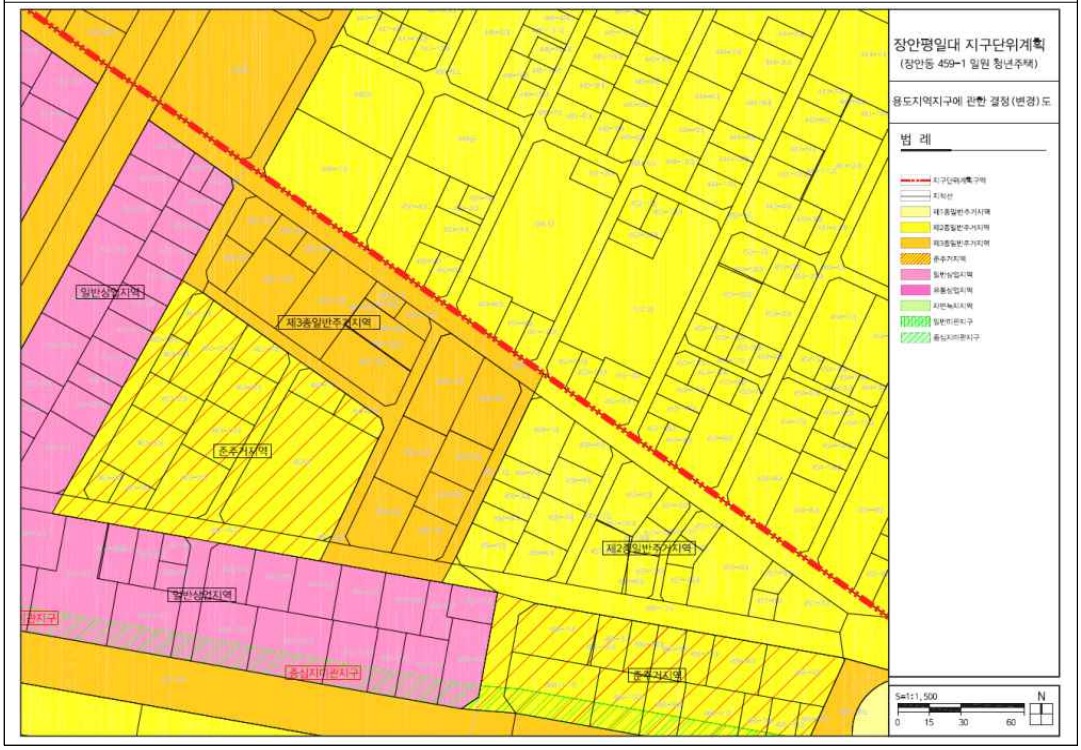
※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Ⅳ.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02-2127-49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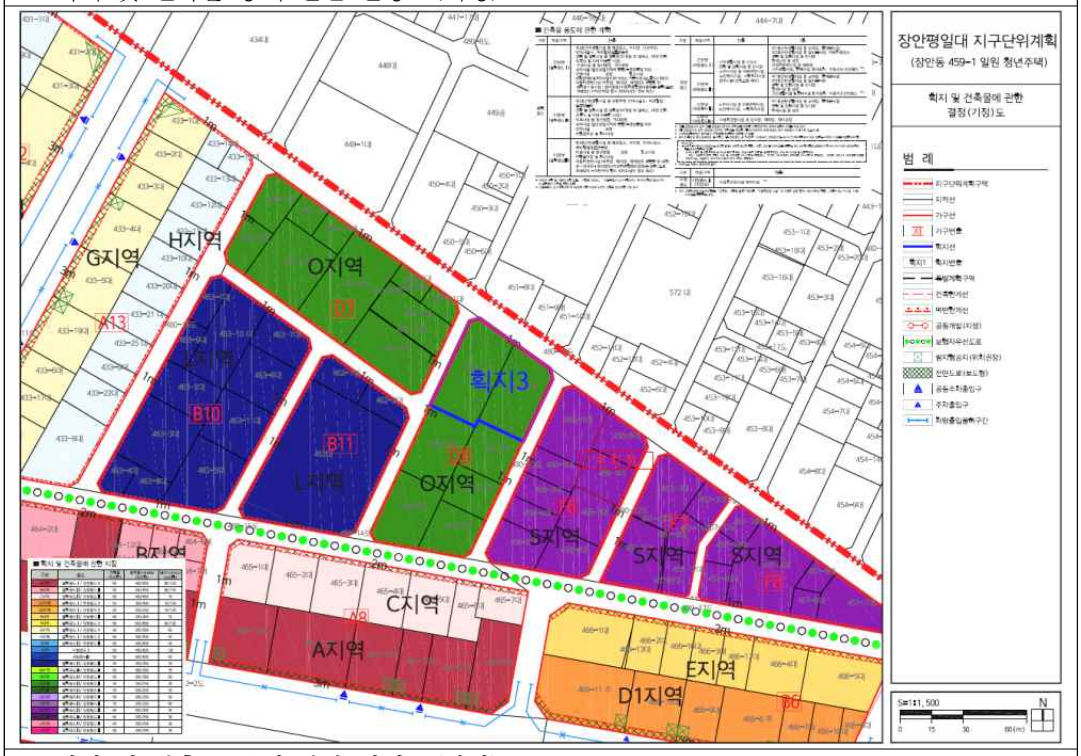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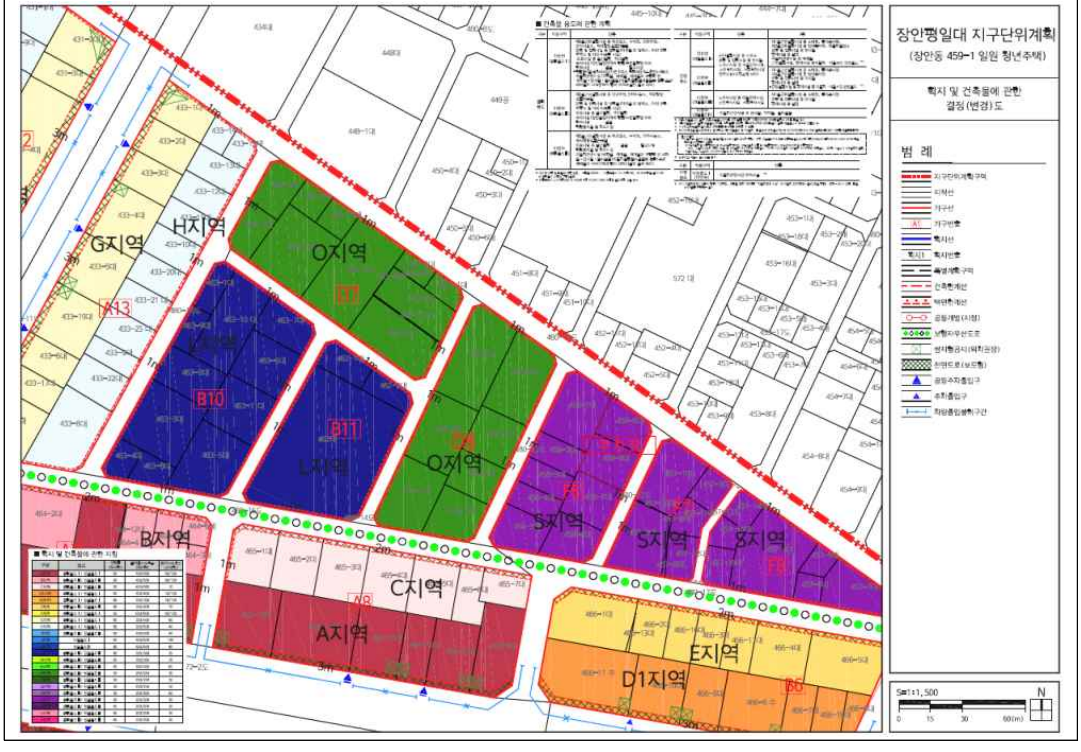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변경)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 동대문구고시 제2025-88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1971-158호(1971.03.26.)로 최초 결정, 건설부 고시 제1972-534호(1972.12.23.)로 변경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6호(2003.03.03.)로 변경 결정된 지하철 1호선 제기동정거장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동 대 문 구 청 장

1. 결정사유
지하철 1호선 제기동정거장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관련 지하철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하여 도시철도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 시키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1)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조서
가.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 1호선 제기동정거장)	동대문구 용두동 및 제기동	3,600	증179.4	3,779.4	1971.03.26. (건고시 제158호)	도로 (중복결정) 143.2㎡

나. 철도 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철 도	· 면적 : 3,600㎡ → 3,799.4㎡ (증 179.4㎡)	·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2)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1	29~35	보조간선도로	1,400	신설동 제1호 광장	제기동	일반도로	-	36.12.26. (총고722)	
변경	대로	1	1	29~35	보조간선도로	1,400	신설동 제1호 광장	제기동	일반도로	-	36.12.26. (총고722)	철도(중복결정) 143.2㎡

나. 도로 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도로	· 1호선 제기동역 도시계획시설(철도)과 중복결정	·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3)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입체시설명	위 치	입체적 결정 규모				최초결정일	비 고
			폭(m)	길이(m)	높이(m)	면적(㎡)		
기정	도시철도 (지하철 1호선 제기동정거장)	동대문구 제기동 892-72번지 일부 (지하구간)	11.2~18	54.2	지하 0~30	879.3	03.03.03. (서고시 제2003-36호)	·높이는 현재 지반고 기준임 ·지상 영구 공작물 설치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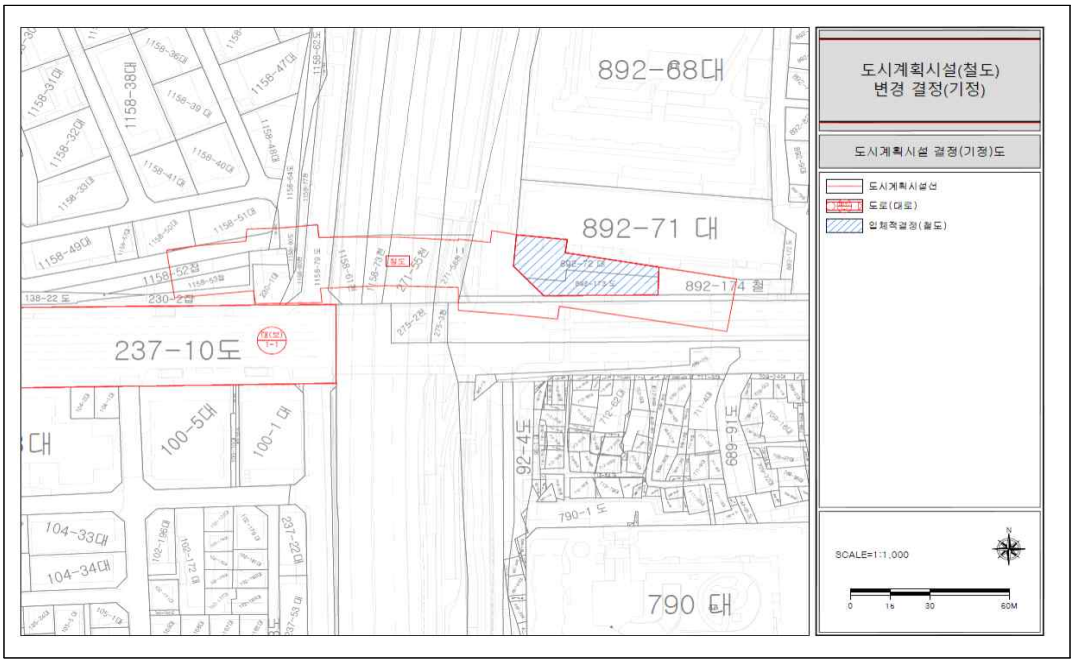
3. 지형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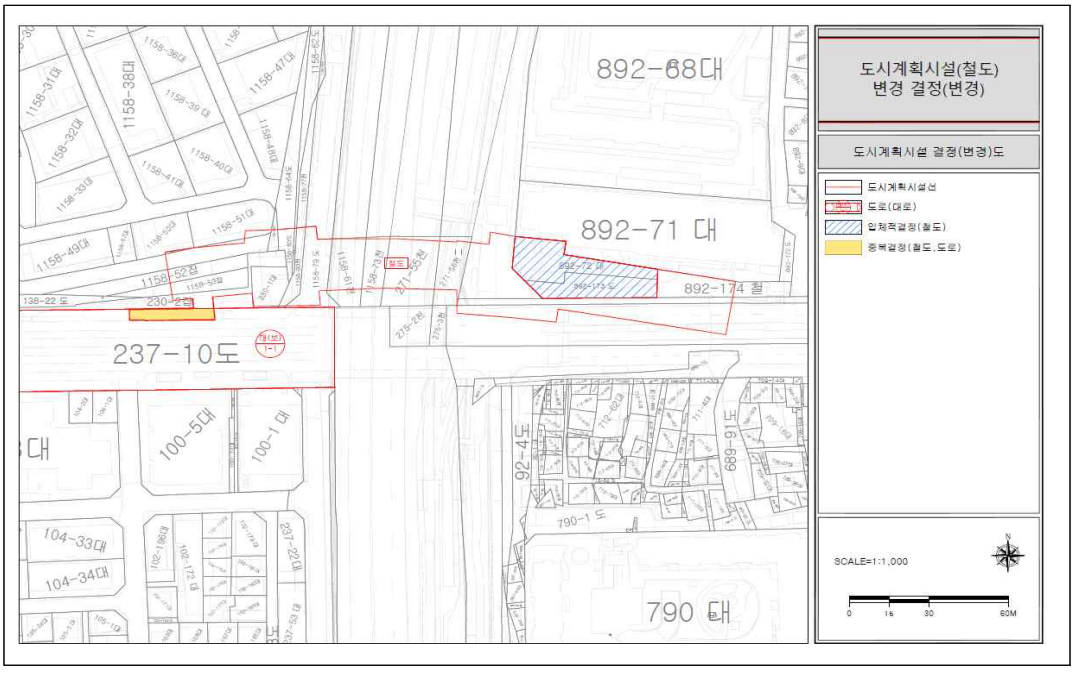
4. 열람장소 :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2127-4396)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공간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도



◈ 성북구고시 제2025-80호

도시관리계획(성북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3호(2013.11.28.)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66호(2023.08.25.)로 결정고시된 성북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본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도시계획과(☏ 2241-268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29일
성 북 구 청 장

가. 변경 취지 :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주민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안에 의거 필지분할 및 공동개발을 지정하는 사항임

나. 도시관리계획(성북동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 필지분할 및 공동개발 지정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정주환경관리구역 03	성북동 295-8	18	성북동 295-8-①	1	성북동 295-6과 공동개발 지정
			성북동 295-8-②	17	

※ 면적은 지적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도

변경 전	변경 후
	

◈ 노원구고시 제2025-4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78-387호(1978.8.3.)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78-673호(1978.12.21.)로 지적승인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0-271호(2020.6.25.)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91호(2023.11.16.)로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83호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공고 제2024-1760호(2025.10.17.)호로 열람공고를 시행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미래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5월 29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변경)
- 기 정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411-34 ~ 월계동 157-10
- 변 경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8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다. 사업의 명칭(변경)
- 기 정 : 광운로12길~마들로1길간 동서연결도로 개설
- 변 경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83호선) 조성 공사

라. 사업의 규모(변경)
- 기 정 : 도로개설 B=20~22m, L=455m
- 변 경 :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결정	중로	1	83	20~22	집산 도로	1,800 (455)	월계동 (중1-182)	공릉동 (중2-124)	일반도로	서고제387호 (78.8.3.)	• 중복결정 - 유통업무설비 2,579㎡
시행	중로	1	83	20~22	집산 도로	1,800 (455)	월계동 (중1-182)	공릉동 (중2-124)	일반도로	-	-

마.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 기 정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변 경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대표자: 정경구)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 정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5년간

– 변 경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6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착수일로부터 38개월 이내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변경)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	편입(m)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계				178,329	9,664.2					
1	월계동	411-77	도로	31	9.5	노원구				
2	월계동	403-1	도로	4,252	315.0	서울특별시				
3	월계동	419-7	도로	62	62.0	서울특별시				
4	월계동	산154	임야	125	125.0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			
5	월계동	411-34	대	951	951.0	국(기획재정부)				
6	월계동	411-85	임야	354	308.4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			
7	월계동	411-43	도로	2,800	259.5	서울특별시				
8	월계동	412-1	철도	4,216	474.7	국(국토교통부)				
9	월계동	85	철도	87,033	1,274.5	국(국토교통부)				
10	월계동	163-3	구거	98	97.5	노원구				
11	월계동	163-2	철도	1,250	4.2	노원구				
12	월계동	162-7	철도	195	195.0	국(국토교통부)				
13	월계동	154	철도	4,660	58.1	국(국토교통부)				
14	월계동	159-1	철도	1,120	1,120.0	국(국토교통부)				
15	월계동	106-20	철도	11,680	14.1	국(국토교통부)				
16	월계동	158-1	답	409	409.0	국(국토교통부)				
17	월계동	158-2	답	2,495	27.6	국(국토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	편입(m)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8	월계동	158	답	1,655	13.5	국(국토교통부)				
19	월계동	154-8	철도	3,506	3.2	국(국토교통부)				
20	월계동	157-10	철도	293	293.0	국(국토교통부)				
21	월계동	106-17	철도	7,316	142.1	국(국토교통부)				
22	월계동	152-6	도로	3,191	3,106.1	서울특별시				
23	월계동	106-3	철도	40,637	401.2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			36634.1/40637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			4002.9/40637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
- 관리청: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미래도시과(☏ 2116-0649)로 문의 바랍니다.

◈ 은평구고시 제2025-4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이 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1977.7.14.)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 은평구 고시 제7호(1993.3.27.)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서울시 고시 제128호(1996.5.15.)로 공원조성계획이 최초 고시되었고, 서울시 고시 제2021-323호(2021.7.8.)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신사근린공원에 대하여

2. 서울시 은평구 고시 제2019-101호(2019.8.8.)로 최초 인가되고, 은평구 고시 제2023-64호(2023.6.8.)로 최종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신사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은평구 공고 제2025-787호(2025.4.24.)로 실시계획 열람공고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은평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공원녹지과, ☎ 351-80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9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98-54 등 5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 신사근린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주요내용
  ○ 당　초 : 토지보상 8,366㎡(신사동 98-54 등 5필지)
  ○ 변　경 : 토지보상 8,028.3㎡(신사동 98-54 등 5필지) (감 337.7㎡)
라. 사업시행자
  1) 성　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마.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 2025.12.31.까지
바. 고시방법 : 은평구 홈페이지 및 서울시보에 게재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
  : 별첨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사 업 명 : 신사근린공원 조성

○사업시행자 : 은평구청장

연번	변경전									변경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재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권리	
1	신사동 98-54	잡종지	448	448	사회복지법인 *과**	경기도 수원시 **구 **동 119-3				신사동 98-54	잡종지	448	448	서울특별시					
2	신사동 98-52	잡종지	270	270	사회복지 법인 *과**	경기도 수원시 **구 **동 119-3				신사동 98-52	잡종지	270	270	서울특별시					
3	신사동 98-4	잡종지	8,362	5,647	사회복지 법인 *과**	경기도 수원시 **구 **동 119-3				신사동 98-65	잡종지	5,647	5,647	서울특별시					
4	신사동 산80-5	임야	3,611	992	김*진	미합중국 ****주 ***시 엔셀리아도로 7191				신사동 산80-69	임야	992	992	서울특별시					
					김*보	미합중국 ****주 *******시 케어리대로 7730													
					김*윤	미합중국 뉴욕주 **시 레**뷰 9													
					김*혜	미합중국 *****주 ***시 ***커티지로 북쪽 365													
					박*우	서울 ***구 **동 413-87													
					한*욱	서울 **구 ***로3길 34-7													

연번	변경전												변경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재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권리	
					장*올	성남시 **구 **동 92 **아파트 **4-1302													
5	신사동 산80-4	임야	7,670	1,007	국 (관리청 산림청)					신사동 산80-68	임야	1,007	671.3	서울특별시					국유지 지분 335.7㎡ 감
					이*옥	서울 **구 ***동 456 **아파트 **-605													
					이*진	서울 중구 **동 842 ***** 112-****													

◈ 은평구고시 제2025-975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이 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1977.7.14.)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2호(1995.1.20.)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서울시 고시 제103호(2004.4.10.)로 공원조성계획이 최초 고시되었고, 서울시 고시 제2024-24호(2024.1.11.)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서오릉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 서울시 은평구 고시 제2019-100호(2019.8.8.)로 최초 인가되고, 은평구 고시 제2023-67호(2023.6.8.)로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서오릉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시행하고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서오릉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4. 관계도서는 은평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되었으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본 열람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공원녹지과, ☎351-80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9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281-237 등 7필지
나.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 서오릉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주요내용 : 토지보상 13,723㎡(갈현동 281-237 등 7필지)
라. 사업시행자
  1) 성　　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 2025.12.31.
바. 공고방법 : 은평구 홈페이지 및 서울시보에 게재
사. 열람장소 : 은평구청 공원녹지과(☎02-351-8003)
아.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 별첨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사 업 명 : 서오릉도시자연공원 조성

○사업시행자 : 은평구청장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동	번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		동	번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소유권이외권리
1	갈현동	281-237	대지	2	2	권*돈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 건영아파트 104동 ****호	주식회사 ****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지점)	근저당권	1	갈현동	281-237	대지	2	2	서울 특별시				
						김*주	서울 은평구 갈현동 ***-215 대양연립 라에이 ***호	주식회사 ****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지점)	근저당권											
						이*선	서울 은평구 갈현동 ***-215 대양연립 에이동 하층 *호	주식회사 ****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 (**지점)	근저당권											
						이*선	서울 은평구 갈현동 ***-18	주식회사 ****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 (**지점)	근저당권											
						전*열	서울 은평구 갈현동 ***-215 대양연립 에이동 ***호	주식회사 ****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지점)	근저당권											
						박*규	서울 은평구 갈현로37길 59, ****호(**아파트)	주식회사 ****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지점)	근저당권											
						김*식	서울 성북구 동선동2가 ***	주식회사 ****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지점)	근저당권											
						곽*수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37길 ***, B동 ***호(갈현동, **아파트)	주식회사 ****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 (**지점)	근저당권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동	번지			
	이*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번길 30, 901동 ****호(신원당마을)		주식회사 **** 은행		근저당권																
	김*영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37길 **, ***호		주식회사 ****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지점)	근저당권																
	이*준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37길 **, 204호(갈현동, **아파트)																				
	김*중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37길**3, **호(갈현동, **아파트)		주식회사 ****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점)	근저당권																
	박*수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37길 59, B동 ***호(갈현동, **아파트)		주식회사 ****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지점)	근저당권																
	정*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33, 110동 ***호(**아파트)		주식회사 ****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지점)	근저당권																
	김*기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137가길 **, ***호(대조동)		주식회사 ****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지점)	근저당권																

변경 후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권리	
1	갈현동	281-237	대지	2	2	서울특별시					

변경 전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권리				
1	갈현동	281-237	대지	2	2	정*조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215 **아파트 B동 ***호	주식회사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점)	근저당권				
						이*길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215 **아파트 B동 ***호	주식회사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점)	근저당권				
						신*우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길 57, A동 **호	주식회사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점)	근저당권				
						이*준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37길 63, C동 4**호(갈현동, **아파트)	주식회사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점)	근저당권				
						남*희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15길 **-1, 3층 ***호(*동)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		압류				
								서울특별시 은평구		압류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류				
								국 처분청 서울특별시 은평구 (맑은도시과)		압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압류				
								주식회사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점)	근저당권				
								주식회사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점)	지상권		토지의 전부		

변경 전															변경 후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권리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권리	
2	갈현동	281-214	도로	724	9	**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동 **-3						2	갈현동	281-241	도로	9	9	서울특별시					
3	갈현동	산51-1	임야	10,810	437	박*현	서울 **구 관악로 1, *** **동 621호		고양시 ****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번길 **-2	근저당권		3	갈현동	산51-4	임야	437	437	서울특별시					
									고양시 ****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번길 **-2	지상권													
4	갈현동	산49-32	임야	42	42	김*욱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 101동 601호(가양동, **아파트)						4	갈현동	산49-32	임야	42	42	서울특별시					
5	갈현동	산92-4	임야	5,012	5,012	이*드륜*인	서울 노원구 공릉2동 109 **아파트 ***-***		서울특별시 **구		압류		5	갈현동	산92-4	임야	5,012	5,012	서울특별시					
						이*인	미국 ****주 95124 산호세시 *** 세페리탄 드라이브		서울특별시 **구		압류													
6	갈현동	228-100	대지	4,110	4,110	학교법인 **학원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능동)						6	갈현동	228-100	대지	4,110	4,110	서울특별시					
7	갈현동	228-61	대지	4,111	4,111	학교법인 **학원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능동)						7	갈현동	228-61	대지	4,111	4,111	서울특별시					

물 건 조 서

○사업명 : 서오릉도시자연공원 조성

변경 전							변경 후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갈현동 228-100	테니스 코트	테니스장 시설물	1식	학교법인 **학원	서울 광진구 ***대로 ***(*동)	1	갈현동 228-100	테니스 코트	테니스장 시설물	1식	서울특별시	
2	갈현동 228-61	테니스 코트,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1식	학교법인 **학원	서울 광진구 ***대로 ***(*동)	2	갈현동 228-61	테니스 코트,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1식	서울특별시	

◈ 강서구고시 제2025-50호

도시관리계획(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85호(2012.10.25.)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38호(2022.03.31.) 결정되고, 강서구고시 제2023-110호(2023.11.16.), 강서구고시 제2024-70호(2024.08.22.)로 경미한 결정(변경)된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강 서 구 청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택지예정좌표 측량 성과에 따른 면적 오차 정정과 녹지축 조성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조경, 조경시설물, 벤치, 식재 등을 설치하여 휴식공간 기능을 도입하고자 대지 내 공지인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서구 가양동 92-1번지 일대	112,587	증)521.2	113,108.2	2012.10.25. 서고 제2012-285호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	강서구 가양동 92-1번지 일대	• 지구단위계획구역 - 변경 : 증)521.2㎡	•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택지예정좌표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112,587	증)521.2	113,108.2	100.0	1970.10.26. 건고 638호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	강서구 가양동 92-1번지 일대	준공업 지역	112,587㎡ → 113,108.2㎡ (증 521.2㎡)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택지예정좌표 측량 성과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시설보호지구 : 변경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보호 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공항)	신월,공항,마곡, 화곡,가양,신정	57,931,000 (112,587)	1977.4.22 서고 120호	( )는 구역내
변경	보호 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공항)	신월,공항,마곡, 화곡,가양,신정	57,931,000 (113,108.2)	1977.4.22 서고 120호	( )는 구역내

■ 용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구	변경사유
-	신월,공항,마곡, 화곡,가양,신정	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항)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택지예정좌표 측량 성과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 변경

1) 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41	30~34.5	주간선 도로	6,500 (185)	양화교(광16) 마곡동 52-10	개화동시계 마곡동 25-7	일반 도로	1971.4.7. 건고 198호	양천로
기정	중로	1	A	20	국지 도로	270	가양동 92-9	가양동 47-1	일반 도로	2012.10.25. 서고 285호	-
기정	중로	3	503	12	국지 도로	506 (315)	가양동 89-22	가양동 26-23	일반 도로	1976.2.20. 서고 35호	탑산길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170 (53)	가양동 146-27	가양동 154-6	일반 도로	1977.3.29. 서고 86호	-
기정	소로	3	6	6~8	국지 도로	270 (140)	가양동 134-2	가양동 145-1	일반 도로	1976.9.3. 서고 211호	-
기정	소로	3	A	6	국지 도로	90	가양동 151-4	가양동 145-3	일반 도로	2022.3.31. 서고 138호	-

※ ( )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2)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주차장	가양동 146-5일대	4,077	증)4.3	4,081.3	2022.3.31. 서고 138호	중복결정 지상: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주차장	• 면적 변경 - 면적: 4,077㎡ → 4,081.3㎡ (증 4.3㎡)	•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택지예정좌표 측량 성과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

■ 주차장 건축범위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층	면적(㎡)	비고(관리청)
기정	주차장	가양동 146-5일대	지하1층 ~ 지하5층	부지면적: 4,077㎡ 연 면 적: 8,901.5㎡	-
변경	주차장	가양동 146-5일대	지하1층 ~ 지하5층	부지면적: 4,081.3㎡ 연 면 적: 8,901.5㎡	(강서구)

※ 기부채납되는 공공시설 등에 대한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검증, 향후 토지가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규모, 위치 등 변경 가능
※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검증 등에 관한 사항은 '기부채납 공공시설 설치비용 검증 가이드라인' (도시계획과-8893호, 2021. 7. 5)을 적용함

나. 공간시설 : 변경

1) 공원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원	어린이공원	가양동 146-5일대	4,077	증)4.3	4,081.3	2012.10.25. 서고 285호	중복결정 지상: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어린이공원	• 면적변경 - 면적: 4,077㎡ → 4,081.3㎡ (증 4.3㎡)	•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택지예정좌표 측량 성과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획지번호	면적(㎡)			위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산업부지	B1	20,494	감)4.6	20,489.4	가양동 100-1 일대	산업부지	
	B2	27,983	감)79.4	27,903.6	가양동 92-1 일대	산업부지	
	B3	45,206	감)75.2	45,130.8	가양동 63-1 일대	산업부지	
기반시설	공원	4,077	증)4.3	4,081.3	가양동 146-5 일대	어린이공원	조성후 기부 채납
	도로	14,827	증)676.1	15,503.1	구역내	-	
	주차장	(4,077)	증)4.3	(4,081.3)	가양동 146-5 일대	공영주차장 어린이공원 지하 중복결정	

※ 세부 면적은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 )는 지하 중복결정

■ 변경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획지면적 변경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택지예정좌표 측량 성과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

2. 건축물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 기정

구분		산업부지		비고
용도	허용 용도	B1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제외) • 판매시설 • 의료시설 (격리병원 제외) • 노유자시설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 (옥외골프연습장제외)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 제외) • 방송통신시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 colspan="2">산업부지</th><th>비고</th></tr>
<tr><td rowspan="4"></td><td rowspan="2"></td><td>B2,
B3</td><td>• 산업 및 준산업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공장주1) / 방송통신시설
• 산업지원시설주2)
-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제외)
- 판매시설
-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노유자시설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 (옥외골프연습장제외)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폐차장, 검사장, 정비 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 제외)
• 주1)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 (건축물 연면적 30% 이내에서 설치)
단, 기숙사,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주2) 산업지원시설은 건축물 연면적 30% 이내에서 설치</td><td></td></tr>
<tr><td>1층
권장용도</td><td colspan="2">• 노유자시설, 공공업무시설</td><td></td></tr>
<tr><td>불허
용도</td><td colspan="2">• 허용용도 외의 시설</td><td></td></tr>
<tr><td rowspan="2">밀도
관련</td><td>건폐율</td><td colspan="2">• 60% 미만</td><td>조례
60%이하</td></tr>
<tr><td>용적률</td><td colspan="2">•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적용
<table><tr><th>기준</th><th>허용</th><th>상한</th></tr><tr><td>300%</td><td>400%</td><td>-</td></tr></table>※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3×가중치×a토지+0.7×a건축물)</td><td></td></tr>
<tr><td colspan="2">건축물
형태 및 색채</td><td colspan="2">•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도로와 단차없이 조성
• 부득이하게 단차설치를 해야할 경우 15cm이하 및 경사로 설치
• 경사로는 보도와 어울리게 설치
• 난간의 형태 및 재료에 따라 입면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td><td></td></tr>
</table>

구분		산업부지	비고
		• 건축물의 주요 색채로 원색(고채도)계열 사용을 지양 • 외벽면의 외장,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유지 •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 및 「서울시 상징색 적용 가이드라인」 준용	
지하철 연결통로		• 지하철역 연결통로 조성시 보행공간의 폭은 10m이상으로 계획	
차량진출입제한		• 양천로에서 차량진출입 제한 • 공개공지변 차량진출입 제한	
대지내 공지	건축 한계선	• 주거지 및 학교 연접부: 10m • 양천로 연접부: 5m • 도로변: 3m, 6m • 기타: 3m • ※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에 「건축법」 제59조에 따른 연결통로 설치가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내 연결통로 조성지침 · 위치: 중로1-A호선변 (B1-B3간, B2-B3간) 2개소, 획지 B1-B2간 1개소 · 규모: 폭원 5m 이내, 높이 8m 이내 ※ 지상으로부터 7m 이상에 설치 · 용도: 보행통로 및 휴게공간으로 조성	결정도 참조
	공개 공지	• 한보아파트 출입구 인접부 • 양천로 및 중로1-A변 • 중로1-375변 • 어린이공원 인접부	결정도 참조
	전면공지	• 주거지 및 학교 연접부: 10m • 양천로 연접부: 5m • 도로변: 3m, 6m • 기타: 3m • 전면공지는 보도확장형으로 보도와 일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며, 단차는 최소화하고 가로지장물로 인한 보행불편이 없도록 조성 • 소로 3-6호변 전면공지는 차도확장형 및 보도확장형으로 조성하며,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고, 인접보도에 보행불편이 없도록 보행안전을 고려하여 조성 • 주거지와 학교연접부 등 지형단차가 발생하는 전면공지 구간은 보도와 조경, 조경시설물,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보도+조경형으로 조성하여 지형단차를 완화	결정도 참조

구분	산업부지	비고
높이	• 건축물의 높이 - B1, B2: 48m 이하 - B3: 54m 이하 ※ 「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 고도제한 적용 (수평표면 : 해발57.86m미만, 원추표면 : 해발57.86 ~ 해발112.86m 미만)	수평표면 및 원추표면 적용

■ 변경

구분		산업부지		비고
용도	허용 용도	B1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제외) • 판매시설 • 의료시설 (격리병원 제외) • 노유자시설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 (옥외골프연습장제외)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 제외) • 방송통신시설	
		B2, B3	• 산업 및 준산업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공장주1) / 방송통신시설 • 산업지원시설주2) -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제외) - 판매시설 -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노유자시설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 (옥외골프연습장제외)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폐차장, 검사장, 정비 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 제외) • 주1)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 (건축물 연면적 30% 이내에서 설치)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산업부지</th><th>비고</th></tr>
<tr><td></td><td></td><td>단, 기숙사,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주2) 산업지원시설은 건축물 연면적 30% 이내에서 설치</td><td></td></tr>
<tr><td></td><td>1층
권장용도</td><td>• 노유자시설, 공공업무시설</td><td></td></tr>
<tr><td></td><td>불허
용도</td><td>• 허용용도 외의 시설</td><td></td></tr>
<tr><td rowspan="2">밀도
관련</td><td>건폐율</td><td>• 60% 미만</td><td>조례
60%이하</td></tr>
<tr><td>용적률</td><td>•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적용
<table><tr><th>기준</th><th>허용</th><th>상한</th></tr><tr><td>300%</td><td>400%</td><td>-</td></tr></table>•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3×가중치×a토지+0.7×a건축물)</td><td></td></tr>
<tr><td colspan="2">건축물
형태 및 색채</td><td>•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도로와 단차없이 조성
• 부득이하게 단차설치를 해야할 경우 15cm이하 및 경사로 설치
• 경사로는 보도와 어울리게 설치
• 난간의 형태 및 재료에 따라 입면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
• 건축물의 주요 색채로 원색(고채도)계열 사용을 지양
• 외벽면의 외장,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유지
•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 및 「서울시 상징색 적용 가이드라인」 준용</td><td></td></tr>
<tr><td colspan="2">지하철 연결통로</td><td>• 지하철역 연결통로 조성시 보행공간의 폭은 10m이상으로 계획</td><td></td></tr>
<tr><td colspan="2">차량진출입제한</td><td>• 양천로에서 차량진출입 제한
• 공개공지변 차량진출입 제한</td><td></td></tr>
<tr><td>대지내
공지</td><td>건축
한계선</td><td>• 주거지 및 학교 연접부: 10m
• 양천로 연접부: 5m
• 도로변: 3m, 6m
• 기타: 3m
• ※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에 「건축법」 제59조에 따른 연결통로 설치가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내 연결통로 조성지침
· 위치: 중로1-A호선변 (B1-B3간, B2-B3간) 2개소, 획지 B1-B2간 1개소
· 규모: 폭원 5m 이내, 높이 8m 이내
※ 지상으로부터 7m 이상에 설치
· 용도: 보행통로 및 휴게공간으로 조성</td><td>결정도
참조</td></tr>
</table>

구분		산업부지	비고
	공개공지	• 한보아파트 출입구 인접부 • 양천로 및 중로1-A변 • 중로1-375변 • 어린이공원 인접부	결정도 참조
	전면공지	• 주거지 및 학교 연접부: 10m • 양천로 연접부: 5m • 도로변: 3m, 6m • 기타: 3m • 전면공지는 보도확장형으로 보도와 일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며, 단차는 최소화하고 가로지장물로 인한 보행불편이 없도록 조성 • 소로 3-6호변 전면공지는 차도확장형 및 보도확장형으로 조성하며,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고, 인접보도에 보행불편이 없도록 보행안전을 고려하여 조성 • 주거지와 학교연접부 등 지형단차가 발생하는 전면공지 구간은 보도와 조경, 조경시설물,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보도+조경형으로 조성하여 지형단차를 완화 • 산업부지 B1과 B2사이에 조성되는 전면공지 구간은 조경, 조경시설물, 벤치, 식재 등을 설치하여 휴식공간 기능을 도입하는 휴식공간형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성	결정도 참조
높이		• 건축물의 높이 - B1, B2: 48m 이하 - B3: 54m 이하 ※「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 고도제한 적용 (수평표면 : 해발57.86m미만, 원추표면 : 해발57.86 ~ 해발112.86m 미만)	수평표면 및 원추표면 적용

■ 변경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산업부지 B1,B2 경계부 전면공지 조성방법 변경 (조성방법 내용 추가)	도심에서 머물며 즐기는 도시숲과 자연과 문화를 잇는 녹지축을 조성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조경, 조경시설물, 벤치, 식재 등을 설치하여 휴식공간 기능을 도입하는 휴식공간형으로 조성방법 변경

나.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 변경없음

1) 산업부지

- 중점 인센티브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계획하고 계획유도 인센티브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70 이내로 계획
- 중점 인센티브는 획지 별 2개의 항목이 해당하도록 계획
- 전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획지 별 가급적 5개 내외로 계획함

<table>
<tr><th colspan="2">항목</th><th>세분</th><th>완화기준</th><th>비고</th></tr>
<tr><td rowspan="2">중점</td><td rowspan="2">대지내 공지</td><td>공개공지</td><td>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a</td><td>- 필로티구조: a=0.5
- 개방형구조: a=1.0</td></tr>
<tr><td>건축한계선</td><td>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1</td><td>-</td></tr>
<tr><td rowspan="7">계획유도</td><td>건축물 용도</td><td>1층 권장용도</td><td>기준용적률×(1층권장용도면적/1층바닥면적)×0.5</td><td>-</td></tr>
<tr><td>건축물 개방</td><td>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td><td>기준용적률×(제공면적/연면적)×1</td><td>- 도서관, 미술관 등 강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td></tr>
<tr><td rowspan="5">친환경</td><td>빗물 이용시설</td><td>기준용적률×0.06</td><td>- 빗물저류탱크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설계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 설치</td></tr>
<tr><td>옥상 녹화</td><td>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1</td><td>-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30%까지만 허용</td></tr>
<tr><td>저공해 자동차</td><td>기준용적률×0.1</td><td>- 전체 주차면수의 5%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전체 주차면수의 1%이상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시</td></tr>
<tr><td>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물</td><td>
<table>
<tr><th>건축물 에너지효율인증등급 \ 녹색건축인증 등급</th><th>최우수 (그린1등급)</th><th>우수 (그린2등급)</th></tr>
<tr><td>1+등급</td><td>기준용적률×0.03</td><td>기준용적률×0.02</td></tr>
<tr><td>1등급</td><td>기준용적률×0.02</td><td>기준용적률×0.01</td></tr>
</table>
</td><td>-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 상 의무사항을 초과하여 인증된 경우</td></tr>
<tr><td>제로에너지 건축물</td><td>
<table>
<tr><th>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th><th>인센티브량</th></tr>
<tr><td>ZEB1 에너지 자립률이 100%이상인 건축물</td><td>기준용적률×0.050</td></tr>
<tr><td>ZEB2 에너지 자립률이 80%이상~100%미만인 건축물</td><td>기준용적률×0.046</td></tr>
<tr><td>ZEB3 에너지 자립률이 60%이상~80%미만인 건축물</td><td>기준용적률×0.043</td></tr>
<tr><td>ZEB4 에너지 자립률이 40%이상~60%미만인 건축물</td><td>기준용적률×0.040</td></tr>
<tr><td>ZEB5 에너지 자립률이 20%이상~40%미만인 건축물</td><td>기준용적률×0.036</td></tr>
</table>
</td><td>-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 상 의무사항을 초과하여 인증된 경우</td></tr>
</table>

4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5 가양동 CJ공장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가양동 CJ공장부지 특별계획구역	강서구 가양동 92-1번지 일대	112,587	증)521.2	113,108.2	-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변경내용	결 정 사 유
-	강서구 가양동 92-1번지 일대	• 지구단위계획구역 - 변경: 증)521.2㎡	•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택지예정좌표 측량 성과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112,587	증)521.2	113,108.2	100.0	1970.10.26. 건고 638호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 지역	면적(㎡)	변경사유
-	강서구 가양동 92-1번지 일대	준공업 지역	• 112,587㎡→113,108.2㎡ (증 521.2㎡)	•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택지예정좌표 측량 성과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시설보호지구 : 변경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보호 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공항)	신월,공항,마곡, 화곡,가양,신정	57,931,000 (112,587)	1977.4.22 서고 120호	( )는 구역내
변경	보호 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공항)	신월,공항,마곡, 화곡,가양,신정	57,931,000 (113,108.2)	1977.4.22 서고 120호	( )는 구역내

■ 용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구	변경사유
-	신월,공항,마곡, 화곡,가양,신정	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항)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택지예정좌표 측량 성과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1) 교통시설 : 변경

가) 도로 : 변경없음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41	30~34.5	주간선 도로	6,500 (185)	양화교(광16) 마곡동 52-10	개화동시계 마곡동 25-7	일반 도로	1971.4.7. 건고 198호	양천로
기정	중로	1	A	20	국지 도로	270	가양동 92-9	가양동 47-1	일반 도로	2012.10.25. 서고 285호	-
기정	중로	3	503	12	국지 도로	506 (315)	가양동 89-22	가양동 26-23	일반 도로	1976.2.20. 서고 35호	탑산길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170 (53)	가양동 146-27	가양동 154-6	일반 도로	1977.3.29. 서고 86호	-
기정	소로	3	6	6~8	국지 도로	270 (140)	가양동 134-2	가양동 145-1	일반 도로	1976.9.3. 서고 211호	-
기정	소로	3	A	6	국지 도로	90	가양동 151-4	가양동 145-3	일반 도로	2022.3.31. 서고 138호	-

※ ( )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나) 주차장 : 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주차장	가양동 146-5일대	4,077	증)4.3	4,081.3	2022.3.31. 서고 138호	중복결정 지상: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주차장	• 면적 변경 - 면적: 4,077㎡ → 4,081.3㎡ (증 4.3㎡)	•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택지예정좌표 측량 성과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

• 주차장 건축범위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층	면적(㎡)	비고(관리청)
기정	주차장	가양동 146-5일대	지하1층 ~ 지하5층	부지면적: 4,077㎡ 연 면 적: 8,901.5㎡	-
변경	주차장	가양동 146-5일대	지하1층 ~ 지하5층	부지면적: 4,081.3㎡ 연 면 적: 8,901.5㎡	(강서구)

※ 기부채납되는 공공시설 등에 대한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검증, 향후 토지가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규모, 위치 등 변경 가능
※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검증 등에 관한 사항은 '기부채납 공공시설 설치비용 검증 가이드라인' (도시계획과-8893호, 2021. 7. 5)을 적용함

2) 공간시설 : 변경

가) 공원 : 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원	어린이 공원	가양동 146-5일대	4,077	증)4.3	4,081.3	2012.10.25. 서고 285호	중복결정 지상: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어린이공원	• 면적변경 - 면적: 4,077㎡ → 4,081.3㎡ (증 4.3㎡)	•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택지예정좌표 측량 성과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획지번호	면적(㎡)			위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산업부지	B1	20,494	감)4.6	20,489.4	가양동 100-1 일대	산업부지	
	B2	27,983	감)79.4	27,903.6	가양동 92-1 일대	산업부지	
	B3	45,206	감)75.2	45,130.8	가양동 63-1 일대	산업부지	
기반시설	공원	4,077	증)4.3	4,081.3	가양동 146-5 일대	어린이공원	조성후 기부 채납
	도로	14,827	증)676.1	15,503.1	구역내	-	
	주차장	(4,077)	증)4.3	(4,081.3)	가양동 146-5 일대	공영주차장 어린이공원 지하 중복결정	

※ 세부 면적은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 )는 지하 중복결정

• 변경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획지면적 변경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택지예정좌표 측량 성과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

나. 건축물에 관한 계획 : 변경

1) 건축물의 용도 : 변경없음

■ 산업부지

구 분	계획기준		세부개발계획
허용용도	B1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제외) • 판매시설 • 의료시설 (격리병원 제외)	좌동

구 분	계획기준		세부개발계획
		• 노유자시설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 (옥외골프연습장제외)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 제외) • 방송통신시설	
	B2, B3	• 산업 및 준산업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공장주1) / 방송통신시설 • 산업지원시설주2) -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제외) - 판매시설 -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노유자시설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 (옥외골프연습장제외)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폐차장, 검사장, 정비 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 제외) • 주1)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 (건축물 연면적 30% 이내에서 설치) 단, 기숙사,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주2) 산업지원시설은 건축물 연면적 30% 이내에서 설치	좌동
1층 권장용도	• 노유자시설, 공공업무시설		좌동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시설		좌동

2) 건축물의 밀도 : 변경없음

가) 건폐율

■ 산업부지

구 분	계획기준	세부개발계획
건폐율	60% 이하	좌동

나) 용적률

<table>
<tr><th>구 분</th><th>계획기준</th><th>세부개발계획</th></tr>
<tr><td>용적률</td><td>•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적용
<table><tr><th>기준</th><th>허용</th><th>상한</th></tr><tr><td>300%</td><td>400%</td><td>-</td></tr></table>※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3×가중치×a토지+0.7×a건축물)</td><td>•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적용
<table><tr><th>기준</th><th>허용</th><th>상한</th></tr><tr><td>300%</td><td>400%</td><td>473%</td></tr></table>※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3×가중치×a토지+0.7×a건축물)</td></tr>
</table>

다) 높이

구 분	계획기준	세부개발계획
높이	• 건축물의 높이 - B1, B2: 48m이하 - B3: 54m이하 ※「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 고도제한 적용 (수평표면 : 해발57.86m미만, 원추표면 : 해발57.86 ~해발112.86m 미만)	좌동

라) 건축물 형태 및 색채

구 분	계획기준	세부개발계획
형태 및 색채	•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도로와 단차없이 조성 • 부득이하게 단차설치를 해야할 경우 15cm이하 및 경사로 설치 • 경사로는 보도와 어울리게 설치 • 난간의 형태 및 재료에 따라 입면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 • 건축물의 주요 색채로 원색(고채도)계열 사용을 지양 • 외벽면의 외장,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유지 •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 및 「서울시 상징색 적용 가이드라인」 준용	좌동

다.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

1) 지하철 연결통로 : 변경없음

구 분	계획기준	세부개발계획
지하철 연결통로	지하철역 연결통로 조성시 보행공간의 폭은 10m 이상으로 계획	좌동

2) 차량진출입제한 : 변경없음

구 분	계획기준	세부개발계획
차량진출입 제한	• 양천로에서 차량진출입 제한 • 공개공지변 차량진출입 제한	좌동

3) 대지 내 공지 : 변경

구 분	계획기준	세부개발계획
건축한계선	• 주거지 및 학교 연접부: 10m • 양천로 연접부: 5m • 도로변: 3m, 6m • 기타: 3m ※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에 「건축법」 제59조에 따른 연결통로 설치가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내 연결통로 조성지침 · 위치: 중로1-A호선변 (B1-B3간, B2-B3간) 2개소, 획지 B1-B2간 1개소 · 규모: 폭원 5m 이내, 높이 8m 이내 ※ 지상으로부터 7m 이상에 설치 · 용도: 보행통로 및 휴게공간으로 조성	좌동
공개공지	• 한보아파트 출입구 인접부 • 양천로 및 중로 1-A변 • 중로1-375변 • 어린이공원 인접부	- 양천로, 중로1-A변 보행자의 편의·휴식기능 제공을 위한 공개공지 조성 - 인접학교와의 오픈스페이스 연계를 위하여 지정된 위치에 공개공지 조성 - 필로티형 공개공지의 유효 높이는 6m 이상 확보 - 가로와 연계될 수 있는 시설(휴게시설 등) 배치

구 분	계획기준	세부개발계획
전면공지	• 주거지 및 학교 연접부: 10m • 양천로 연접부: 5m • 도로변: 3m, 6m • 기타: 3m • 전면공지는 보도확장형으로 보도와 일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며, 단차는 최소화하고 가로지장물로 인한 보행불편이 없도록 조성 • 소로 3-6호변 전면공지는 차도확장형 및 보도확장형으로 조성하며,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고, 인접보도에 보행불편이 없도록 보행안전을 고려하여 조성 • 주거지와 학교연접부 등 지형단차가 발생하는 전면공지 구간은 보도와 조경, 조경시설물,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보도+조경형으로 조성하여 지형단차를 완화 • 산업부지 B1과 B2사이에 조성되는 전면공지 구간은 조경, 조경시설물, 벤치, 식재 등을 설치하여 휴식공간 기능을 도입하는 휴식공간형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성	좌동

• 변경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산업부지 B1,B2 경계부 전면공지 조성방법 변경 (조성방법 내용 추가)	도심에서 머물며 즐기는 도시숲과 자연과 문화를 잇는 녹지축을 조성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조경, 조경시설물, 벤치, 식재 등을 설치하여 휴식공간 기능을 도입하는 휴식공간형으로 조성방법 변경

4) 공공시설 부담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공공시설등 계획

■ 기정

구 분	계획기준	세부개발계획
공공시설등 조성 및 제공	• 순부담률 10%이상 기부채납	• 순부담률 13.20%이상 • 순부담계획: 13.20% - 공원(토지): 3,469.0㎡(3.28%) - 도로(토지): 8,724.0㎡(8.24%) - 주차장(환산면적): 1,529.3㎡(1.44%) - 어린이집(토지지분+환산면적): 255.5㎡(0.24%) → 순부담전체: 13,977.8㎡(13.20%)

■ 변경

구 분	계획기준	세부개발계획
공공시설등 조성 및 제공	• 순부담률 10%이상 기부채납	• 순부담률 13.20%이상 • 순부담계획: 13.90% - 공원(토지): 3,473.3㎡(3.26%) - 도로(토지): 9,400.1㎡(8.84%) - 주차장(환산면적): 1,529.3㎡(1.44%) - 어린이집(토지지분+환산면적): 384.7㎡(0.36%) → 순부담전체: 14,787.4㎡(13.90%)

나) 공공기여 내용

■ 기정

구 분	위치	층	면적	비고
공원	-	-	3,469.0㎡(토지)	
도로	-	-	8,724.0㎡(토지)	
주차장	가양동 146-5 일원	지하1~지하5층	8,901.5㎡ (연면적)	• 시설용도: 주차장(공용주차장) - 건축연면적: 8,901.5㎡ - 환산부지: 1,529.3㎡ • 공원 중복결정
어린이집	가양동 92-1 일원	지상1층	625.8㎡ (연면적)	• 시설용도: 국·공립어린이집 - 건축연면적: 625.8㎡ - 환산부지: 168.0㎡ - 토지지분: 87.5㎡

■ 변경

구 분	위치	층	면적	비고
공원	-	-	3,473.3㎡(토지)	
도로	-	-	9,400.1㎡(토지)	
주차장	가양동 146-5 일원	지하1~지하5층	8,901.5㎡ (연면적)	• 시설용도: 주차장(공용주차장) - 건축연면적: 8,901.5㎡ - 환산부지: 1,529.3㎡ • 공원 중복결정

구 분	위치	층	면적	비고
어린이집	가양동 92-1 일원	지상1층	967.1㎡ (연면적)	• 시설용도: 국·공립어린이집 - 건축연면적: 967.1㎡ - 환산부지: 252.3㎡ - 토지지분: 132.4㎡

※ 주차장(공영주차장),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별 면적을 기준으로 향후 건축계획 등에 따라 면적·층고·형태 변경시 협의하여 조정함
※ 공공시설 등의 위치, 성능수준, 설비 등은 서울시·강서구 인수자(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건축허가 시 확정함
※ 기부채납되는 공공시설 등에 대한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검증, 향후 토지가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규모, 위치 등 변경될 수 있음
※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검증 등에 관한 사항은 '기부채납 공공시설 설치비용 검증 가이드라인' (도시계획과-8893호, 2021. 7. 5)을 적용함

다) 공공시설 설치계획

■ 기정

구 분		내용	비고
공원	토지면적	4,077㎡	-
	국공유지면적	608㎡	-
	순부담면적	3,469㎡	토지면적 - 국공유지면적 = 4,077㎡ - 608㎡ = 3,469㎡
도로	토지면적	14,827㎡	-
	국공유지면적	6,103㎡	-
	순부담면적	8,724㎡	토지면적 - 국공유지면적 = 14,827㎡ - 6,103㎡ = 8,724㎡
주차장	연면적	8,901.5㎡	-
	공사비	1,911,818원/㎡	2020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적용 - 공영주차장(5,000㎡초과) 단위공사비 2,103,000(원/㎡)의 부가세제외금액 1,911,818(원/㎡) 적용
	설치비용	17,018,047,927원	공사비(부가세제외) X 연면적 = 1,911,818(원/㎡) X 8,901.5㎡ = 17,018,047,927원
	부지가액	11,128,000원/㎡	2021년 01월 기준공시지가 가중평균 2배 적용 (5,564,000원/㎡ X 2 = 11,128,000원/㎡)
	환산부지면적	1,529.3㎡	공사비(부가세제외) X 연면적 ÷ 부지가액 = 1,911,818(원/㎡) X 8,901.5㎡ ÷ 11,128,000(원/㎡) = 1,529.3㎡
	순부담면적	1,529.3㎡	-
어린이집	연면적	625.8㎡	-

구 분		내용	비고
	공사비	2,987,273원/㎡	2020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적용 - 어린이집(500~800㎡) 단위공사비 3,286,000(원/㎡)의 부가세제외금액 2,987,273(원/㎡) 적용
	설치비용	1,869,435,443원	공사비(부가세제외) X 연면적 = 2,987,273(원/㎡) X 625.8㎡ = 1,869,435,443원
	부지가액	11,128,000원/㎡	2021년 01월 기준공시지가 가중평균 2배 적용 (5,564,000원/㎡ X 2 = 11,128,000원/㎡)
	환산부지면적	168.0㎡	공사비(부가세제외) X 연면적 ÷ 부지가액 = 2,987,273(원/㎡) X 625.8㎡ ÷ 11,128,000(원/㎡) = 168.0㎡
	대지지분	87.5㎡	어린이집연면적 ÷ B2블록총연면적 X B2블록대지면적 = 625.8㎡ ÷ 200,107.8㎡ X 27,983.0㎡ = 87.5㎡
	순부담면적	255.5㎡	환산부지면적 + 대지지분 = 168.0㎡ + 87.5㎡ = 255.5㎡
순부담합계		13,977.8㎡	-

■ 변경

구 분		내용	비고
공원	토지면적	4,081.3㎡	-
	국공유지면적	608㎡	-
	순부담면적	3,473.3㎡	토지면적 - 국공유지면적 = 4,081.3㎡ - 608㎡ = 3,473.3㎡
도로	토지면적	15,503.1㎡	-
	국공유지면적	6,103㎡	-
	순부담면적	9,400.1㎡	토지면적 - 국공유지면적 = 15,503.1㎡ - 6,103㎡ = 9,400.1㎡
주차장	연면적	8,901.5㎡	-
	공사비	1,911,818원/㎡	2020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적용 - 공영주차장(5,000㎡초과) 단위공사비 2,103,000(원/㎡)의 부가세제외금액 1,911,818(원/㎡) 적용
	설치비용	17,018,047,927원	공사비(부가세제외) X 연면적 = 1,911,818(원/㎡) X 8,901.5㎡ = 17,018,047,927원

구 분		내용	비고
	부지가액	11,128,000원/㎡	2021년 01월 기준공시지가 가중평균 2배 적용 (5,564,000원/㎡ X 2 = 11,128,000원/㎡)
	환산부지면적	1,529.3㎡	공사비(부가세제외) X 연면적 ÷ 부지가액 = 1,911,818(원/㎡) X 8,901.5㎡ ÷ 11,128,000(원/㎡) = 1,529.3㎡
	순부담면적	1,529.3㎡	-
어린이집	연면적	967.1㎡	-
	공사비	2,902,727원/㎡	2020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적용 - 어린이집(800㎡~1,000㎡ 신축)) 단위공사비 3,193,000(원/㎡)의 부가세제외금액 2,902,727(원/㎡) 적용
	설치비용	2,807,227,282원	공사비(부가세제외) X 연면적 = 2,902,727(원/㎡) X 967.1㎡ = 2,807,227,282원
	부지가액	11,128,000원/㎡	2021년 01월 기준공시지가 가중평균 2배 적용 (5,564,000원/㎡ X 2 = 11,128,000원/㎡)
	환산부지면적	252.3㎡	공사비(부가세제외) X 연면적 ÷ 부지가액 = 2,902,727(원/㎡) X 967.1㎡ ÷ 11,128,000(원/㎡) = 252.3㎡
	대지지분	132.4㎡	어린이집연면적 ÷ B2블록총연면적 X B2블록대지면적 = 967.1㎡ ÷ 203,847.18㎡ X 27,903.6㎡ = 132.4㎡
	순부담면적	384.7㎡	환산부지면적 + 대지지분 = 252.3㎡ + 132.4㎡ = 384.7㎡
순부담합계		14,787.4㎡	-

Ⅲ. 관계도면: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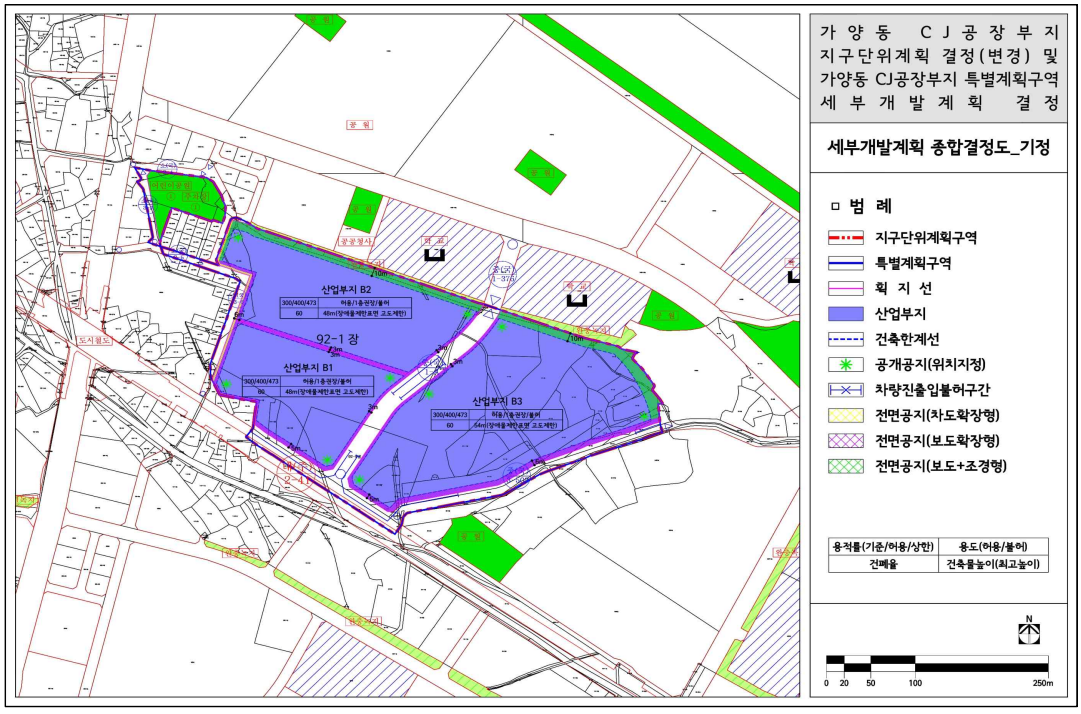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Ⅴ.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강서구청 도시계획과(☎2600-1737)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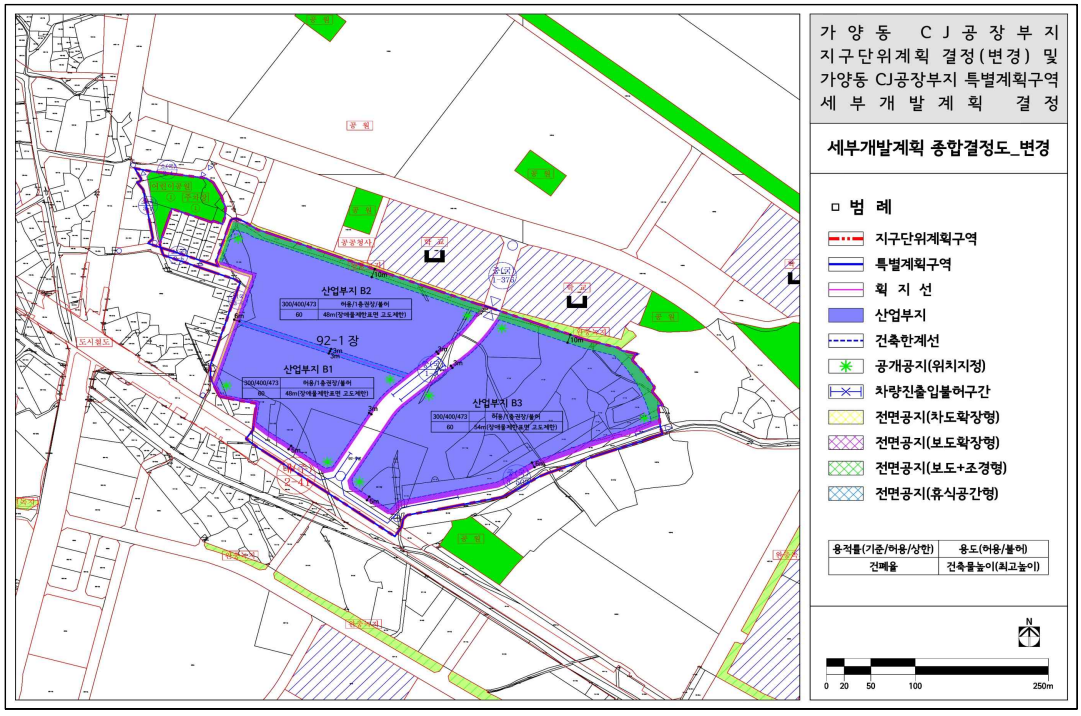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종합결정도 도면

– 기정



– 변경



◈ 강서구고시 제2025-51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강서도서관)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476-3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강서도서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1476-3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도로,녹지) 사업
2) 명칭 : 강서도서관 가양분관건립 리모델링공사

다. 사업시행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내 용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대지면적	6,685.10㎡	-	6,685.10㎡	
연 면 적	3,763.38	증) 889.51㎡	4,652.89㎡	(지상:4,505.77㎡, 지하:147.12㎡)
건축면적	1,596.87	증) 205.97㎡	1,802.84㎡	
건 폐 율	23.89%	2.08%	26.97%	법정: 30%
용 적 률	56.30%	11.1%	67.40%	법정: 120%
층 수	지상4층	지하1층/지상4층	지하1층/지상4층	법정: 5층이하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2)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3길 1015(하월곡동)

마. 사업기간
1)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 2025년 8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공부	금회사업		
문화시설	가양동	1476-3	학교용지	6,685.1	6,685.1	서울특별시(교육감)	
도로	가양동	1477-2	도로	6,091.1	217.0	서울특별시	진출입로 확보
녹지(완충녹지)	가양동	1476-2	공원	1,548.6	96.8	서울특별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일부구간 폐지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건축과(☎02-2600-6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고시 제2025-96호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3-147호(2023.10.19.)로 사업계획승인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4-113호(2024.08.21.)로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한 우리 구 신길동 413-8번지 일원 “신풍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또한,「주택법」제19조에 의해 의제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영 등 포 구 청 장

1. 사업의 명칭 : 신풍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변경없음)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변경없음)
① 가. 성명: 신길5동지역주택조합(대표: 장세웅)
나.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224, 2층
② 가. 성명: (주)포스코이앤씨(대표: 전중선)
나.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변경)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13-8번지 일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13-8번지 일원	변경없음
대지면적	62,685㎡	62,481.1㎡	변경
건축규모	지하3층/지상13층~35층, 16개동 2,030세대, 연면적 310,053.6841㎡, 용적률 299.59%	지하3층/지상12층~35층, 16개동 2,054세대, 연면적 309,717.7162㎡, 용적률 299.54%	변경

4. 사업시행기간(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 2028.06.30.까지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 2029.12.31.까지

5.「주택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변경)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의 결정 - [붙임] 참조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라. 「주택법」제19조 규정에 의한 기타 의제 처리사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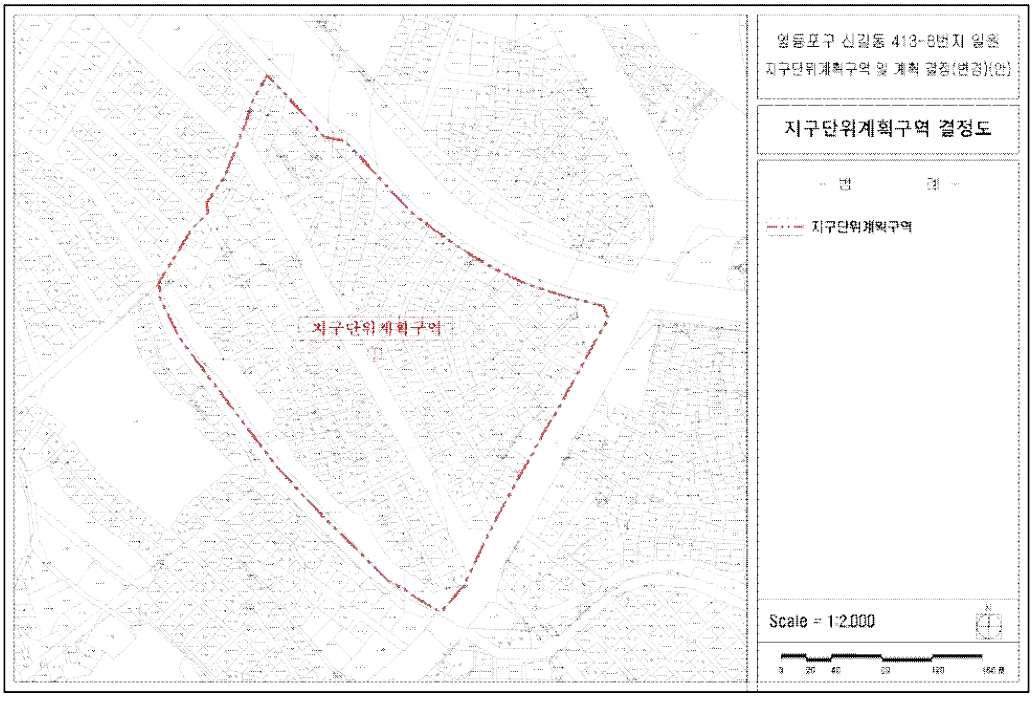
[붙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	신길동 413-8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413-8번지 일대	75,541.4.	-	75,541.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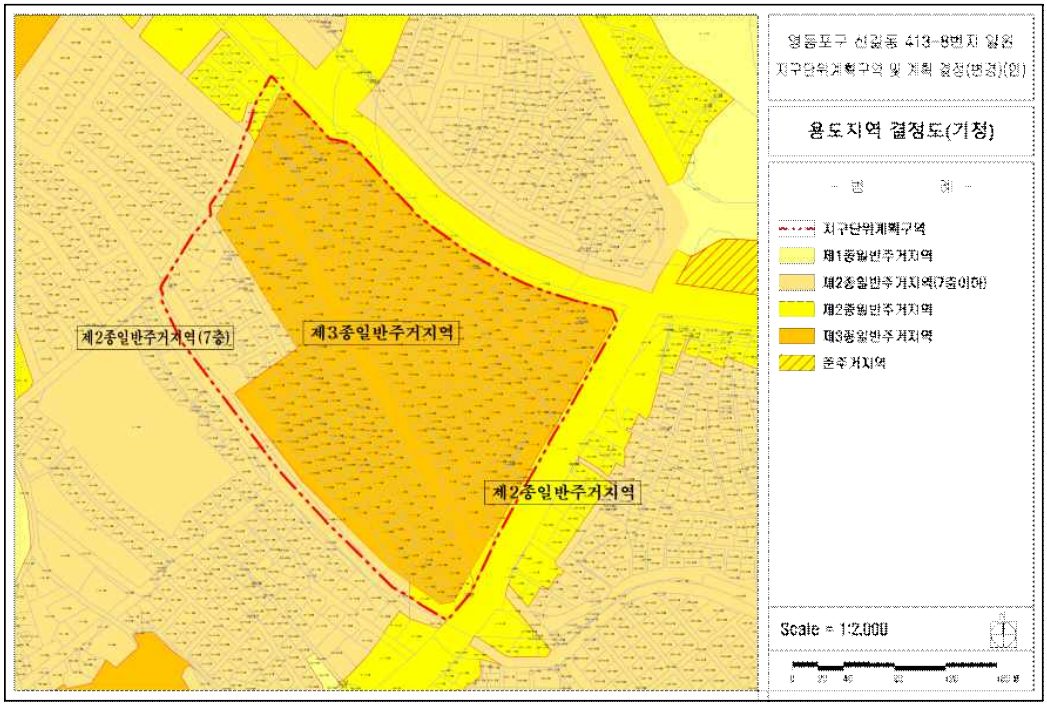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감	변경		
합 계		75,541.4	-	75,541.4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0,954.7	증)202.9	11,157.6	14.8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1.7	-	1,901.7	2.5	
	제3종일반주거지역	62,685.0	감)202.9	62,482.1	8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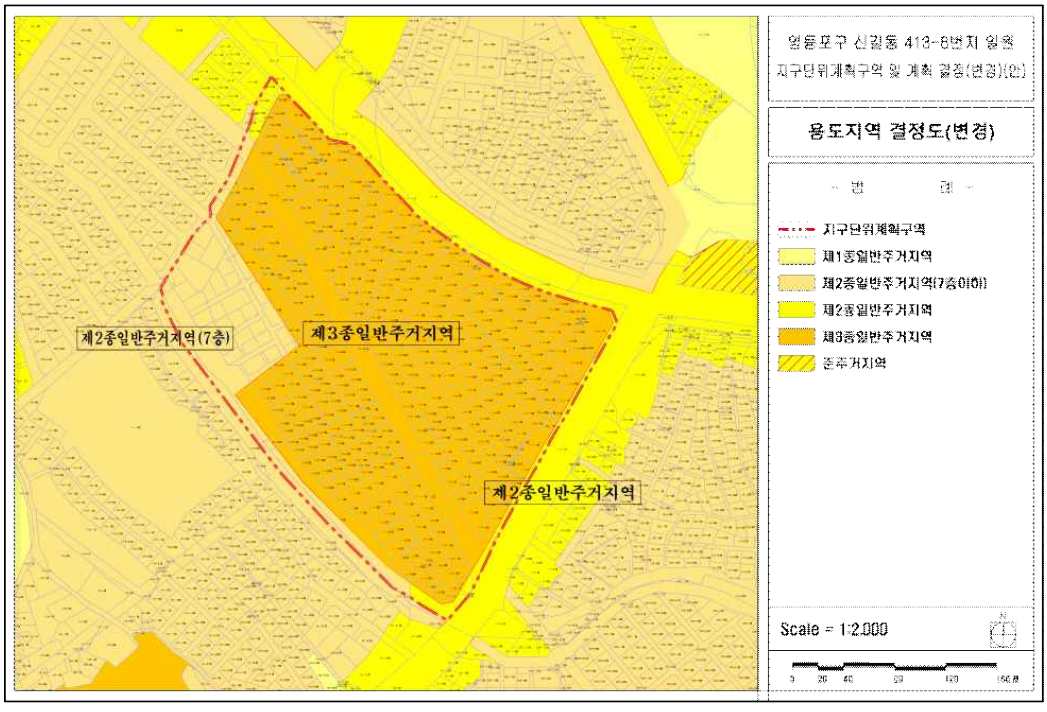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결 정 사 유
			기정	변경	
①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413-8번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0,954.7	11,157.6	•공원 실시계획인가 협의의견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1.7	1,901.7	
		제3종일반주거지역	62,685.0	62,482.1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 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m)								
기 정	대로	2	-	20~29 (29)	보 조 간선도로	2,896 (338)	신도림역입구	신길광장 공원앞	일반 도로	-	-	-
기 정	대로	3	1	25~28	보 조 간선도로	226	신길동 414-10	신길동 431-36	일반 도로	-	건설부177 62.12.8	-
기 정	중로	1	1	17	집산도로	346	신길동 440-50	신길동 410-144	일반 도로	-	-	-
기 정	중로	2	2	12.5	집산도로	180	신길동 410-141	신길동 385-3	일반 도로	-	-	-
변 경	중로	2	2	12.5~ 14.5	집산도로	180	신길동 410-141	신길동 385-3	일반 도로	-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2-2	중로2-2	일부구간 도로 확폭 - 폭 12.5m → 12.5m~14.5m	• 공원 실시계획인가 협의의견 반영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함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	주차장	신길동 408-9번지 일대	5,892.6	-	5,892.6	2021.12.16 (서고 제2021-699호)	어린이공원과 중복결정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주차장	주차장 선형 변경	• 중복 결정된 어린이공원 실시계획인가 협의의견 반영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함 - 어린이공원 선형변경사항 반영

2) 공간시설

가) 공 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	공원	어린이 공원	신길동 408-9번지 일대	6,091.0	증) 72.0	6,163.0	2021.12.16 (서고 제2021-699호)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어린이 공원	어린이공원 변경 - 면적 : 6,091.0㎡→ 6,163.0㎡	• 공원 실시계획인가 협의의견 반영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함. - 공원 선형변경 및 세대수 증가에 따른 공원면적 추가 확보

3) 공공 · 문화체육시설

가)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	사회복지시설	신길동 409-22번지 일대	661.0	-	661.0	2021.12.16 (서고 제2021-699호)	

■ 건축물의 범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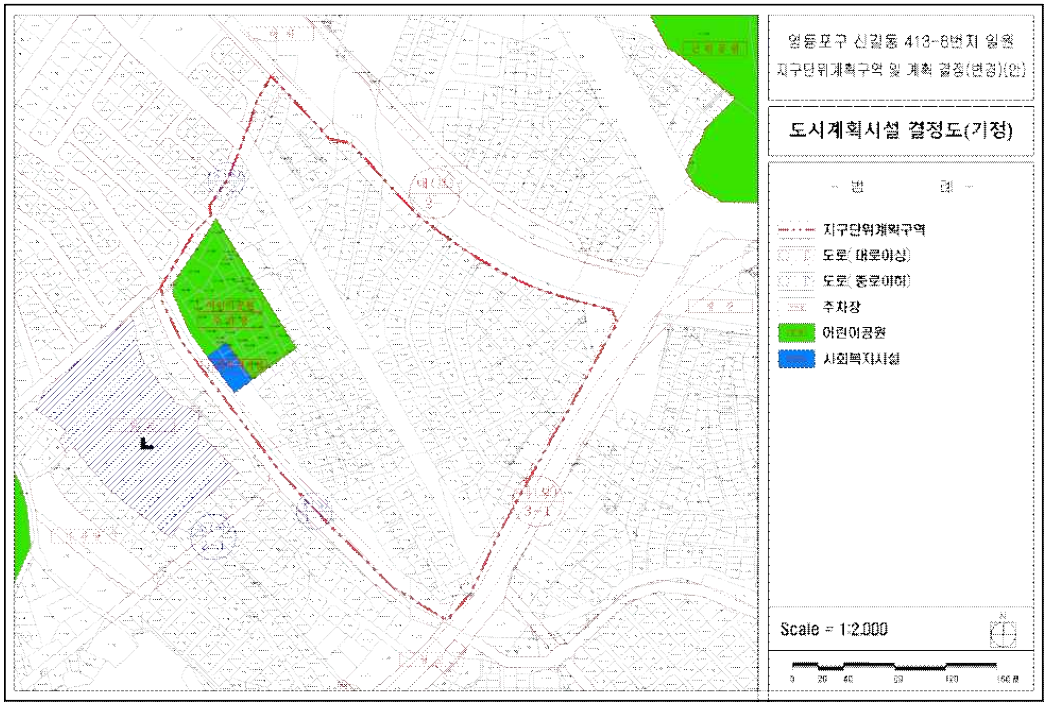
구 분	건축물의 용도	위 치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비 고
기정	사회복지시설	신길동 409-22번지 일대	60%	200%	5층 이하	

※ 사회복지시설 :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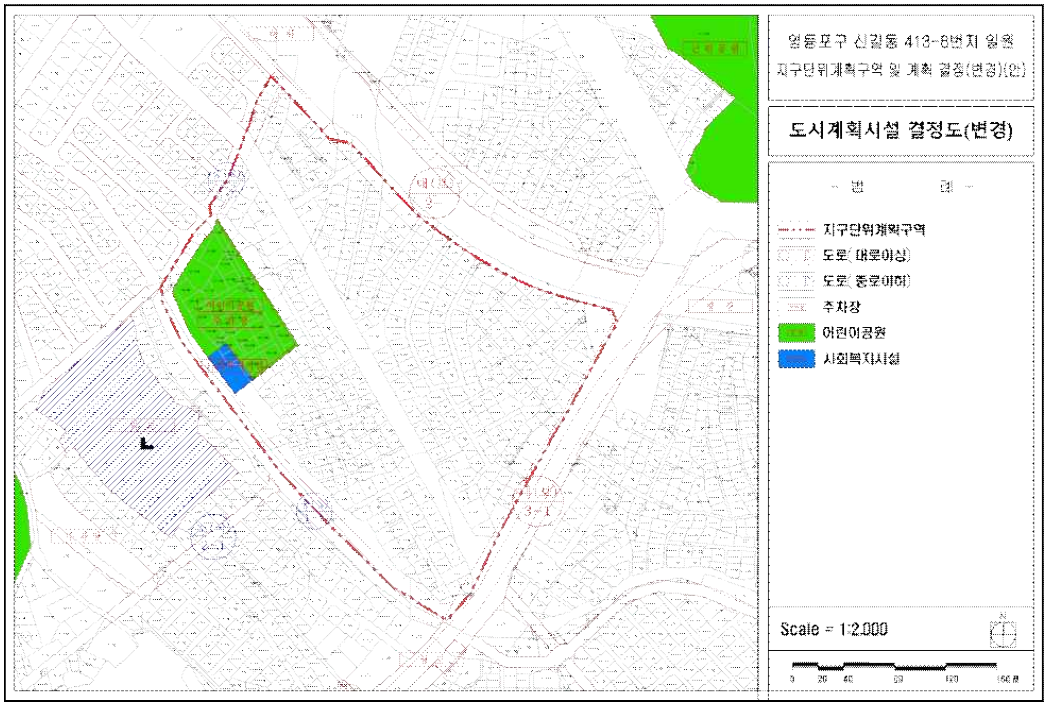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선형 변경	• 공원 실시계획인가 협의의견 반영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함.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기정)도]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도]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1) 획지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	영등포구 신길동 413-8번지 일대	62,685.0	감)202.9	62,482.1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용지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건축물 허용용도 결정 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허용용도 (U)	기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공공임대주택 포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부대·복리시설 •노유자시설중 아동복지시설 ※ 상기외 시설은 불허	

2)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건폐율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50%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적용

나) 용적률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	•200%이하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허용용적률	•270%이하	
	상한용적률	•300%이하	

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기 정

구 분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계획내용	비 고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계획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차별 또는 이용상 불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혼합(social mixing)을 반드시 계획	•전용면적 60㎡ 이하 : 270세대 - 51㎡ : 142세대 - 59㎡ : 123세대 - 59㎡ : 5세대	적 용
서울형 주거 환경 정책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적 용
	커뮤니티 지원시설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3% (최소 450㎡) 이상 ※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 3-3(5)에 따라 기부채납 후 커뮤니티 지원시설 면적기준 1/2로 완화하여 적용	•지상층공동주택연면적: 185,396.91㎡ •법정 커뮤니티면적 - 185,396.91㎡ x 3% = 5,561.91㎡ •확보면적 : 5,564.13㎡ = 3,335.28㎡ + 1,580.86㎡ + 647.99㎡ - 사회복지시설(기부채납) : 1,667.64㎡ •인정면적 3,335.28㎡ - 스마트실버센터(기부채납) : 790.43㎡ •인정면적 1,580.86㎡ - 청년공유오피스(조합운영) : 647.99㎡	적 용
	친환경건축물	환경 성능부문	•녹색건축물설계기준에 따른 녹색건축인증	㉮ 등급	2가지 이상 상향 단계 적용
		에너지 성능부문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 등급	
		에너지 관리부문	•에너지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 등급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예상에너지사용량)×100	㉮ 등급	
	역사문화보전		•사업대상지에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 및 등록문화재 또는 역사생활 문화유산이 포함된 경우 보전계획을 준수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해당없음	-
대지안의 공지			•대규모단지 개발로 인해 보행 단절을 고려한 공공보행통로(생활공유가로) 설치	• 공공보행통로 2개소 설치 - 폭원 : 15m - 남북방향, 동서방향 2개소 설치	적용

※ 계획내용은 향후 건축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변 경

구 분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계획내용	비 고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계획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차별 또는 이용상 불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혼합(social mixing)을 반드시 계획	•전용면적 60㎡ 이하 : 265세대 - 51㎡ : 142세대 - 59㎡ : 123세대 •전용면적 75㎡ 이하 : 5세대 - 74㎡ : 5세대	적 용
서울형 주거 환경 정책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적 용
	커뮤니티 지원시설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3% (최소 450㎡) 이상 ※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 3-3(5)에 따라 기부채납 후 커뮤니티 지원시설 면적기준 1/2로 완화하여 적용	•지상층공동주택연면적: 184,737.6774㎡ •법정 커뮤니티면적 - 184,737.6774㎡ x 3% = 5,542.1303㎡ •확보면적 : 5,550.4190㎡ = 3,298.94㎡ + 1,628.7354㎡ + 622.7436㎡ - 사회복지시설(기부채납) : 1,649.47㎡ •인정면적 3,298.94㎡ - 스마트실버센터(기부채납) : 814.3677㎡ •인정면적 1,628.7354㎡ - 청년공유오피스(조합운영) : 622.7436㎡	적 용
	친환경건축물	환경 성능부문	•녹색건축물설계기준에 따른 녹색건축인증	㉮ 등급	2가지 이상 상향 단계 적용
		에너지 성능부문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 등급	
		에너지 관리부문	•에너지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 등급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예상에너지사용량)×100	㉮ 등급	
	역사문화보전		•사업대상지에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 및 등록문화재 또는 역사생활 문화유산이 포함된 경우 보전계획을 준수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해당없음	-
대지안의 공지			•대규모단지 개발로 인해 보행 단절을 고려한 공공보행통로(생활공유가로) 설치	• 공공보행통로 2개소 설치 - 폭원 : 15m - 남북방향, 동서방향 2개소 설치	적용

※ 계획내용은 향후 건축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②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 기 정

구 분			공공기여 부담률		비 고
			면적(㎡)	비율(%)	
구역면적			75,541.4	100.0	-
공공기여	소 계		14,064.9	18.6	-
	공 원		6,091.0	8.1	
	주 차 장 (공원과 중복결정)	환산부지면적	1,869.5	2.4	
	도 로		6,104.4	8.1	

※ 용도지역 변경(62,685.0㎡)에 따른 공공기여 의무비율17.1%(10,719.1㎡)이상으로 확보
- 총공공기여량 19,424.5㎡중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5,359.6㎡은 상한용적률 미적용

■ 변 경

구 분			공공기여 부담률		비 고
			면적(㎡)	비율(%)	
구역면적			75,541.4	100.0	-
공공기여	소 계		14,267.8	18.9	-
	공 원		6,163.0	8.2	
	주 차 장 (공원과 중복결정)	환산부지면적	1.869.5	2.5	
	도 로		6,235.3	8.3	

※ 용도지역 변경(62,482.1㎡)에 따른 공공기여 의무비율17.06%(10,660.08㎡)이상으로 확보
- 총공공기여량 21,559.6㎡중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7,291.7609㎡은 상한용적률 미적용

다) 높이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높 이	•108m이하 (최고 35층 이하)	피로티 포함

3)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배 치 및 형 태	건축한계선	•대방천로변, 도림로변: 3m •서측도로변: 2.5m •남측도로변 : 1m
	공공보행통로	•주변지역과의 보행연계를 위하여 계획 •일반인에게 24시간 개방되는 보행공간으로 조성 - 2개소 설치(폭원15m이상) - 공공보행통로내에 자전거 통로(폭원3.5m이상) 설치

다.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 대지내공지 및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전 면 공 지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 1~3m의 건축한계선으로 확보	
차량불허구간	•간선도로변 원활한 차량소통 도모 및 차량진출입으로 인한 보행공간 단절 최소화 - 대방천로, 도림로변 차량 출입 불허	

2)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 총 270세대(전용면적 51㎡ : 142세대, 전용면적 59㎡ : 123세대, 전용면적 59㎡ : 5세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제2절 공공주택 계획 3-2-1. 적용
변 경	• 총 270세대(전용면적 51㎡ : 142세대, 전용면적 59㎡ : 123세대, 전용면적 74㎡ : 5세대)	

3) 공공기여계획

■ 기 정

구 분	항 목	공공기여		비 고
		면적(㎡)	비율(%)	
토 지	공 원	6,091.0	8.1	
	도 로	6,104.4	8.1	
	공공임대주택	5,359.6	7.1	패키지 허용용적률
건축물	주 차 장	1,869.5	2.4	
합 계		19,424.5	25.7	-

※ 용도지역 변경(62,685.0㎡)에 따른 공공기여 17.1%(10,719.1㎡)이상으로 확보하여 공공기여 의무 비율 확보
- 총공공기여 : 19,424.5㎡ (기반시설 14,064.9㎡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5,359.56㎡)

■ 변 경

구 분	항 목	공공기여		비 고
		면적(㎡)	비율(%)	
토 지	공 원	6,163.0	8.2	
	도 로	6,235.3	8.3	
	공공임대주택	7,291.8	9.7	패키지 허용용적률
건축물	주 차 장	1,869.5	2.5	
합 계		21,559.6	28.5	-

※ 용도지역 변경(62,482.1㎡)에 따른 공공기여 17.06%(10,660.08㎡)이상으로 확보하여 공공기여 의무 비율 확보
- 총공공기여 : 21,559.6㎡ (기반시설 14,267.8㎡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7,291.7609㎡)

4) 커뮤니티 지원시설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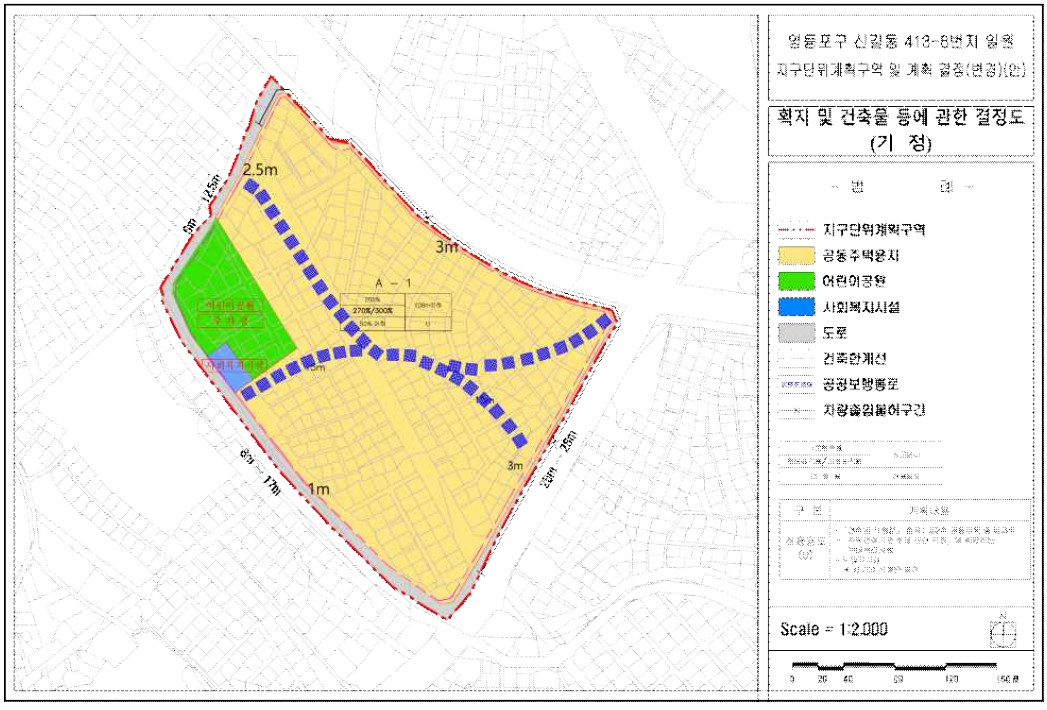
■ 기 정

구 분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계 획 내 용	비 고
커뮤니티 지원시설	•300세대 이상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이 3% (최소450㎡)이상 •기부채납할 경우 1/2로 완화적용 가능	•기준 :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185,396.91㎡) x 3% = 5,561.91㎡ •확보인정면적 : 5,564.13㎡ = 사회복지시설 3,335.28㎡ + 스마트실버센터 1,580.86㎡ + 청년공유오피스 647.99㎡ •설치면적 : 3,106.06㎡ = 사회복지시설 1,667.64㎡ + 스마트실버센터 790.43㎡ + 청년공유오피스 647.99㎡ ① 사회복지시설(기부채납) : 1,667.64㎡ · 인정면적 3,335.28㎡ ② 스마트실버센터(기부채납) : 790.43㎡ · 인정면적 1,580.86㎡ ③ 청년공유오피스(조합운영) : 647.9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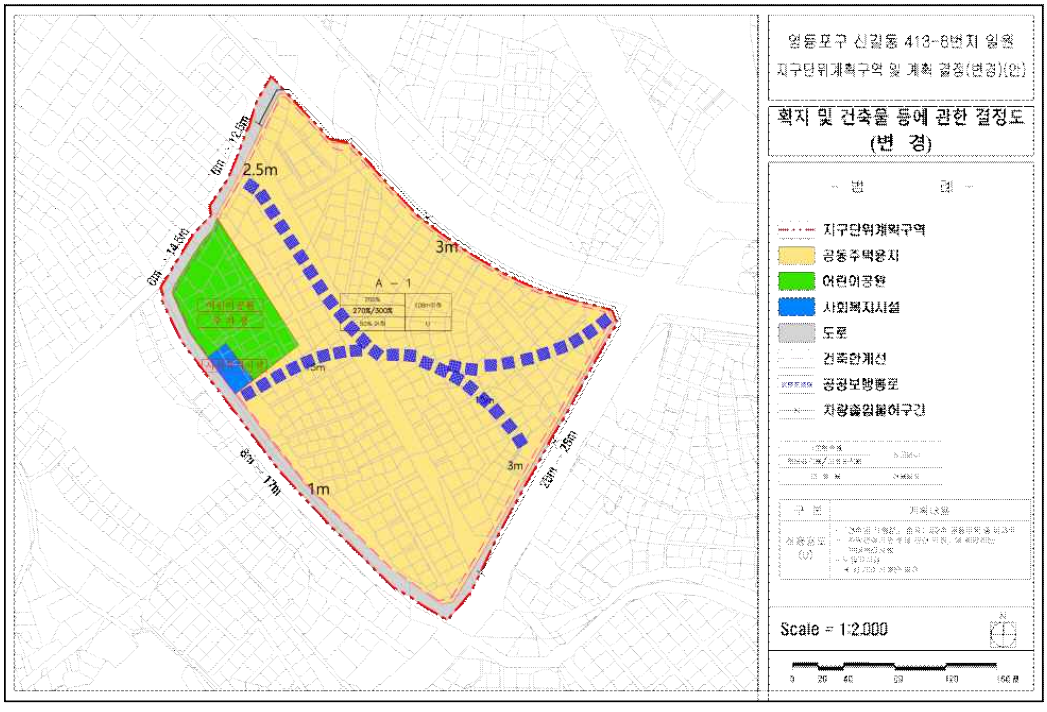
■ 변 경

구 분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계 획 내 용	비 고
커뮤니티 지원시설	•300세대 이상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이 3% (최소450㎡)이상 •기부채납할 경우 1/2로 완화적용 가능	•기준 :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184,737.6774㎡) x 3% = 5,542.1303㎡ •확보인정면적 : 5,550.4190㎡ = 사회복지시설 3,298.94㎡ + 스마트실버센터 1,628.7354㎡ + 청년공유오피스 622.7436㎡ •설치면적 : 3,086.5813㎡ = 사회복지시설 1,649.47㎡ + 스마트실버센터 814.3677㎡ + 청년공유오피스 622.7436㎡ ① 사회복지시설(기부채납) : 1,649.47㎡ · 인정면적 3,298.94㎡ ② 스마트실버센터(기부채납) : 814.3677㎡ · 인정면적 1,628.7354㎡ ③ 청년공유오피스(조합운영) : 622.7436㎡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4. 경미한 변경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1)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및 「서울 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의 규정을 따른다.
- 향후 관련지침 및 제정·법령 또는 변경될 경우 제정·법령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적용함.

2)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 계획의 변경 사항
- 공공기여 계획
  -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이 변경되는 사항

◈ 영등포구고시 제2025-9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실효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70-32호(1970.7.25.)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고, 영등포구고시 제2020-107호(2020.6.4.)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된 『대림동 1092-54~ 1021-9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실효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림동 1092-54~1021-9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사업의 명칭 : 대림동 1092-54~1021-9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폭 6m, 연장 24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영등포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마. 사업의 기간 : 실시계획 인가고시일로부터 5년
바. 실효일자 : 2025. 6. 4.
사. 실효사유 : 사업기간 경과에 따른 효력 상실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별첨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3 영등포구청장

■ 사업의 명칭 : 대림동 1092-54 ~ 1021-9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 권리종류 및 내용			비 고
					성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1	대림동 1092-54	대	109	109	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				
2	대림동 1093-5	잡	645	293	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도림동 ****-*				분할토지
3	대림동 1094-3	잡	66	66	서**	경기도 성남시 단대동 ***-***				
					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번길 **				
					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도림동 ****				
					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				
4	대림동 1025-93	대	112	112	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				
5	대림동 1025-47	잡	234	234	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				분할토지
6	대림동1025-1	답	565	24	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대방동 ***-*				
7	대림동 1023-14	도	79	79	주식회사 제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 권리종류 및 내용			비 고
					성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8	대림동 1027-4	답	116	116	김**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9길 ***				
					윤**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9길 ***				
					최**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71길 *				
					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36길 ***				
					최**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9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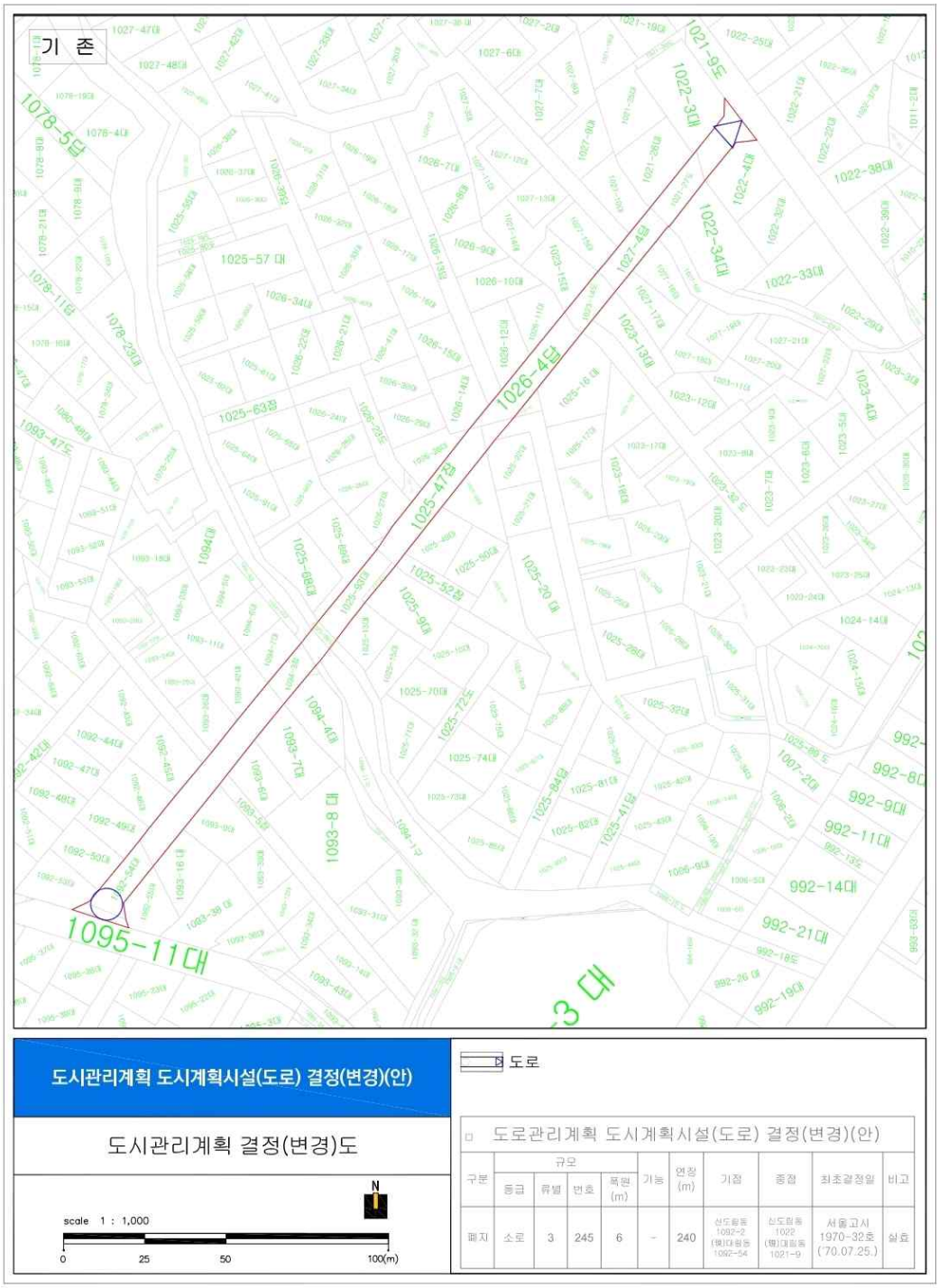
물 건 조 서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3 영등포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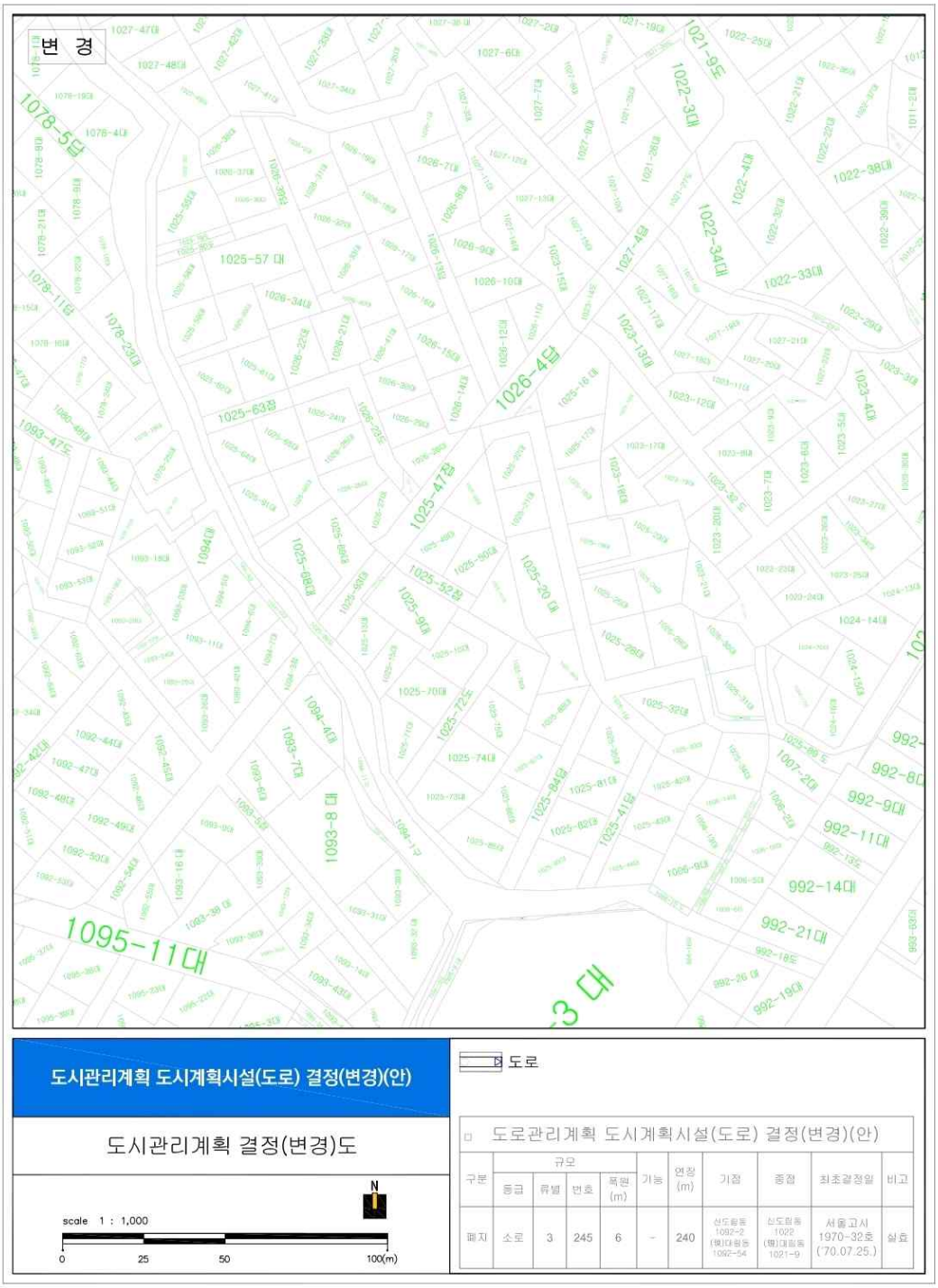
■ 사업의 명칭 : 대림동 1092-54 ~ 1021-9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권리종류및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1	대림동1093-26	가설건축물(1층)	철재구조물	5	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	근저당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위반 건축물
2	대림동1093-42	담장 및 대문		1식	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길**-**				
3	대림동 1094-7	담장 및 대문		1식	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	근저당	관악농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951 (대림지소)	
		계단		2						
		화장실		1						
		베란다(2층)	샷시	2						
		점포(1층)	연와조 슬라브	1						
4	대림동 1025-13	점포(1층)	벽돌조 슬래브	10	남**	서울특별시 대림동 ****-**				
		주택(2층)		12						

□ 지형도면(기정)


기 존
1095-11대
1026-4답
1025-47답
1022-34대
1022-3대
1021-9도
1078-5답
1025-57 대
1025-63장
1025-52장
1025-20 대
1093-8 대
992-14대
992-21대
992-11대
992-9대
992-8대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N
scale 1 : 1,000
0 25 50 100(m)
□ 도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m) | 기점 | 종점 | 최초결정일 | 비고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폐지 | 소로 | 3 | 245 | 6 | - | 240 | 신도림동 1092-2 (현)대림동 1092-54 | 신도림동 1022 (현)대림동 1021-9 | 서울고시 1970-32호 ('70.07.25.) | 실효

□ 지형도면(변경)


변 경
1078-5답
1025-57 대
1026-4답
1025-47답
1025-20 대
1095-11대
1093-8 대
1095-3 대
992-14대
992-21대
992-9대
992-11대
992-8대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N
scale 1 : 1,000
0
25
50
100(m)
□ 도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구분
규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최초결정일
비고
폐지
소로
3
245
6
-
240
신도림동 1092-2 (랲)대림동 1092-54
신도림동 1022 (랲)대림동 1021-9
서울고시 1970-32호 ('70.07.25.)
실효

◈ 영등포구고시 제2025-9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실효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69-3호(1969.1.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고, 영등포구고시 제2020-118호(2020.6.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된 『신길동 3988~4055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실효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월 5월 29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신길동 3988~4055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사업의 명칭 : 신길동 3988~4055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폭 6m, 연장 20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영등포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마. 사업의 기간 : 실시계획 인가고시일로부터 5년
바. 실효일자 : 2025. 6. 18.
사. 실효사유 : 사업기간 경과에 따른 효력 상실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별첨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3 영등포구청장

■ 사업의 명칭 : 신길동 3988~4055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외 권리종류 및 내용			비 고
					성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1	신길동 3980-9	도	681	218	박*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511-*				
					곽**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주				
					박**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길 *				
					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				
					박**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23가길 **				
2	신길동 3989	답	56	17	박*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511-*				
					곽**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주				
					박**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길 *				
					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				
					박**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23가길 **				
3	신길동 4002	답	235	192	학교법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2가 **-*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 권리종류 및 내용			비 고
					성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4	신길동 4019	답	93	93	권**	강원도 강릉시 화부산로***번길 **, ***동 ***호 (교동)				
5	신길동 4038	도	83	83	임**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방동 ***				
6	신길동 4087	답	149	149	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				
7	신길동 4123	도	926	438	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				분할토지
8	신길동 4054	대	182	182	김**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방동 ***-*	가등기	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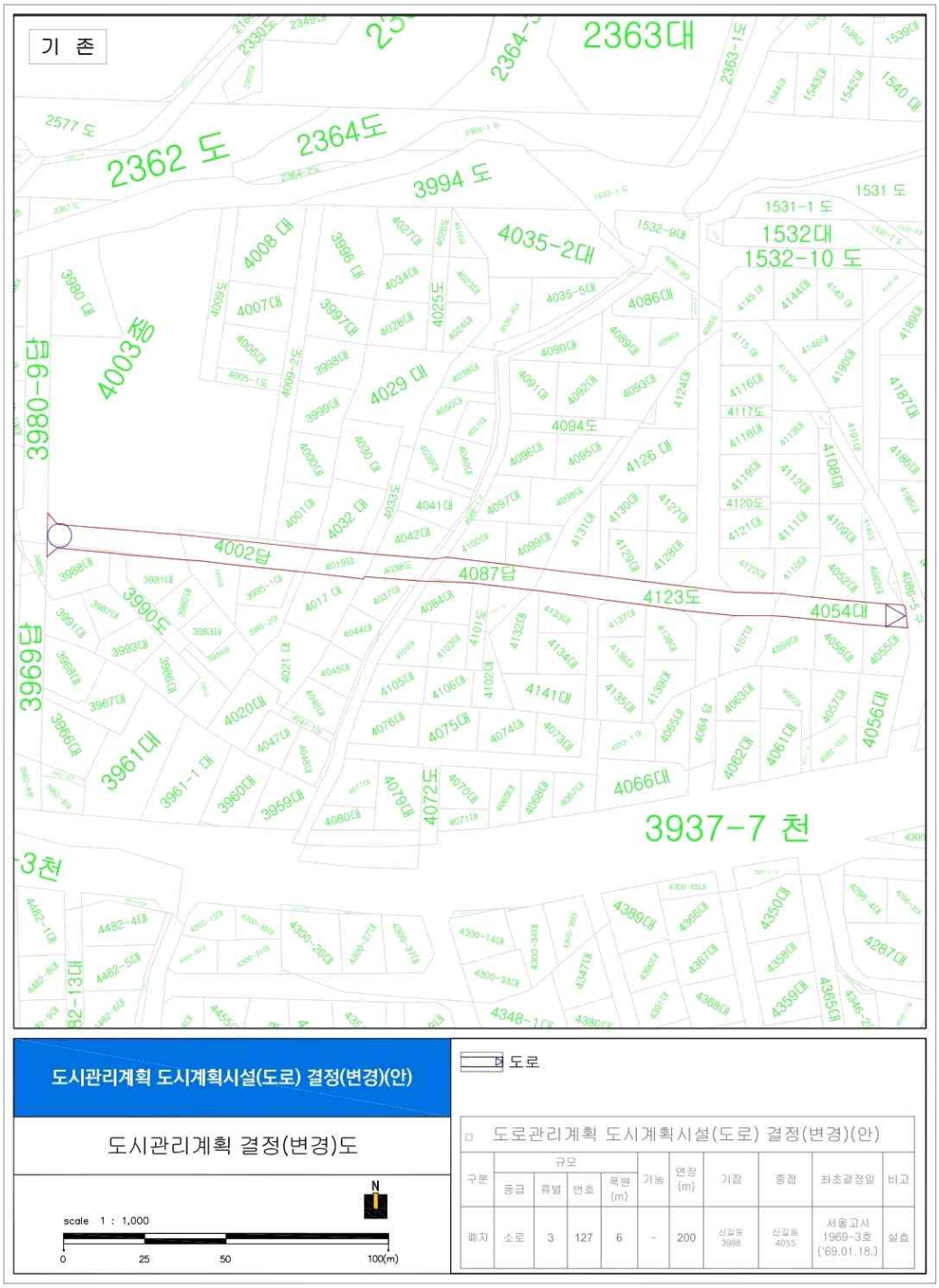
물 건 조 서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3 영등포구청장

■ 사업의 명칭 : 신길동 3988~4055간 도로개설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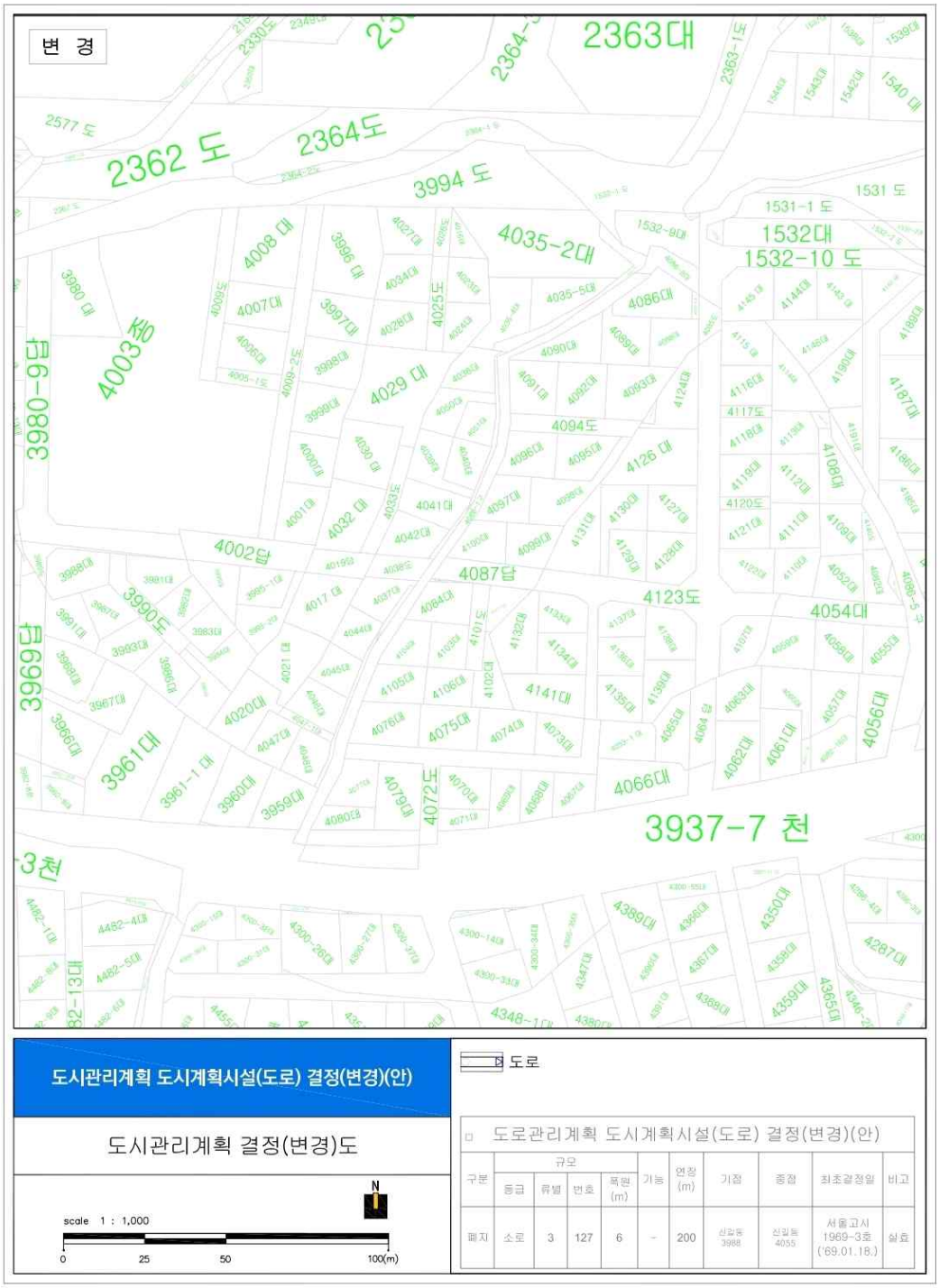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권리종류및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1	신길동 3995-1	대문		1식	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풍로12나길 22(신길동)				
2	신길동 4133	담		1식	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197				
3	신길동 4137	대문, 담장		1식	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천로 149(신길동)	근저당	신길6동새마을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086	
4	신길동 4138	대문, 담장		1식	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138				
5	신길동 4082	대문, 담장		1식	김**	인천시 동구 만석동 9-316				

□ 지형도면(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3	127	6	-	200	신길동 3988	신길동 4055	서울고시 1969-3호 ('69.01.18.)	실효

□ 지형도면(변경)


변 경
2363대
2364도
2362 도
3994 도
1531 도
1531-1 도
1532대
1532-10 도
4035-2대
4008 대
4007대
3996 대
3997대
3980 대
4003 垈
4029 대
4094도
4126 대
4087답
4123도
4054대
4002답
3990도
3961대
3961-1 대
4020대
4141대
4066대
3937-7 천
3980-9답
3999답
4072대
4025도
4032 대
4041대
4056대
4086-5 구
4287대
4389대
4350대
4365대
4348-1대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cale 1 : 1,000
0
25
50
100(m)
N
도로
□ 도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구분
규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최초결정일
비고
폐지
소로
3
127
6
-
200
신길동 3988
신길동 4055
서울고시 1969-3호 ('69.01.18.)
실효

◈ 영등포구고시 제2025-10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실효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70-32호(1970.7.25.)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고, 영등포구고시 제2020-104호(2020.6.4.)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된 『대림동 807-4~804-36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실효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림동 807-4~804-36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사업의 명칭 : 대림동 807-4~804-36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폭 6m, 연장 165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영등포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마. 사업의 기간 : 실시계획 인가고시일로부터 5년
바. 실효일자 : 2025. 6. 4.
사. 실효사유 : 사업기간 경과에 따른 효력 상실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별첨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3 영등포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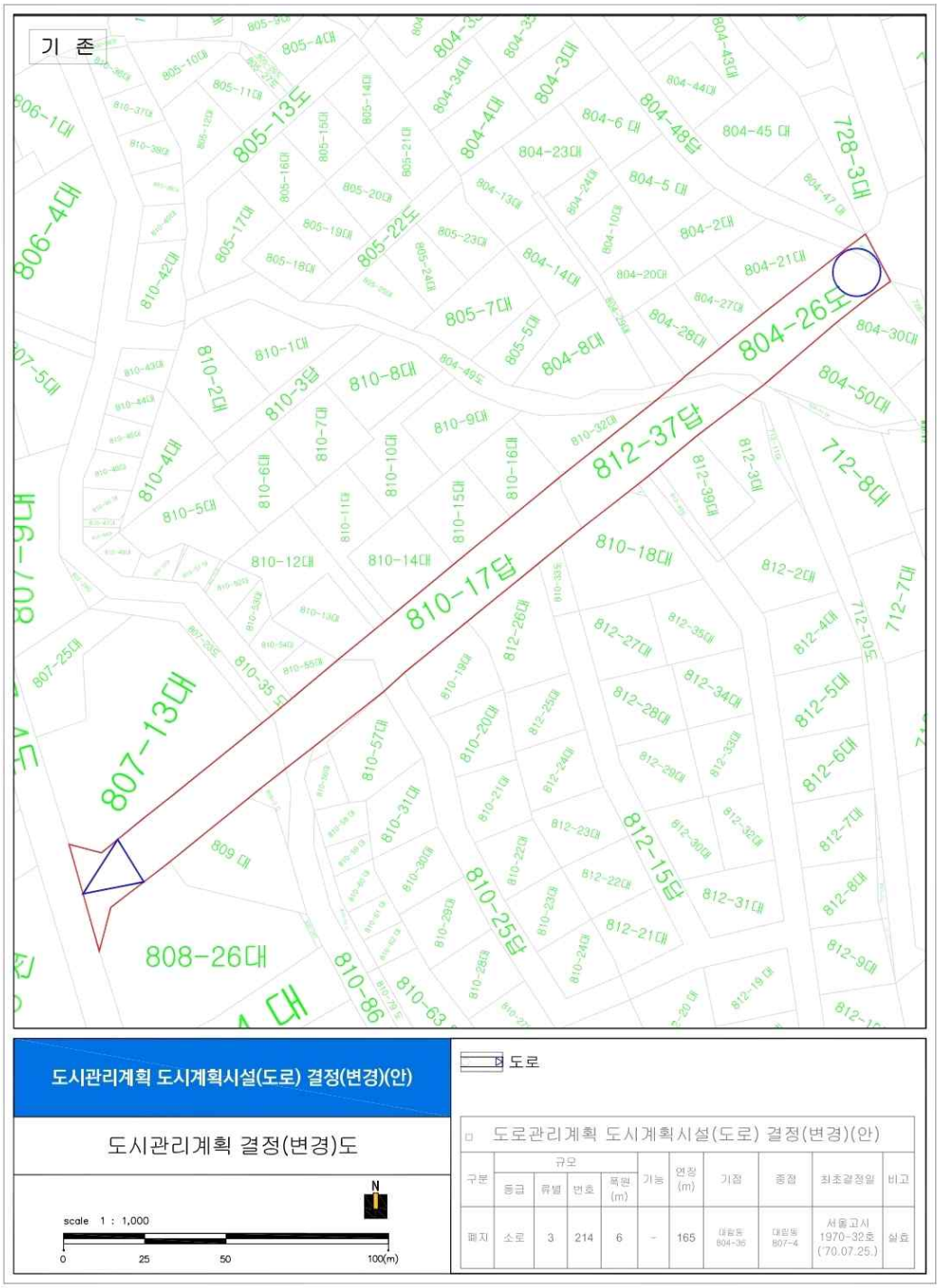
■ 사업의 명칭 : 대림동 807-4 ~ 804-36 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외 권리종류 및 내용			비 고
					성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1	대림동 810-17	답	350	350	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도림동 ***-**				
2	대림동 812-37	답	251	251	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진산로***				
					김**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번길 *				
					이**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로 **				
					이**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로**				
					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길 **				
3	대림동 804-36	답	17	17	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상도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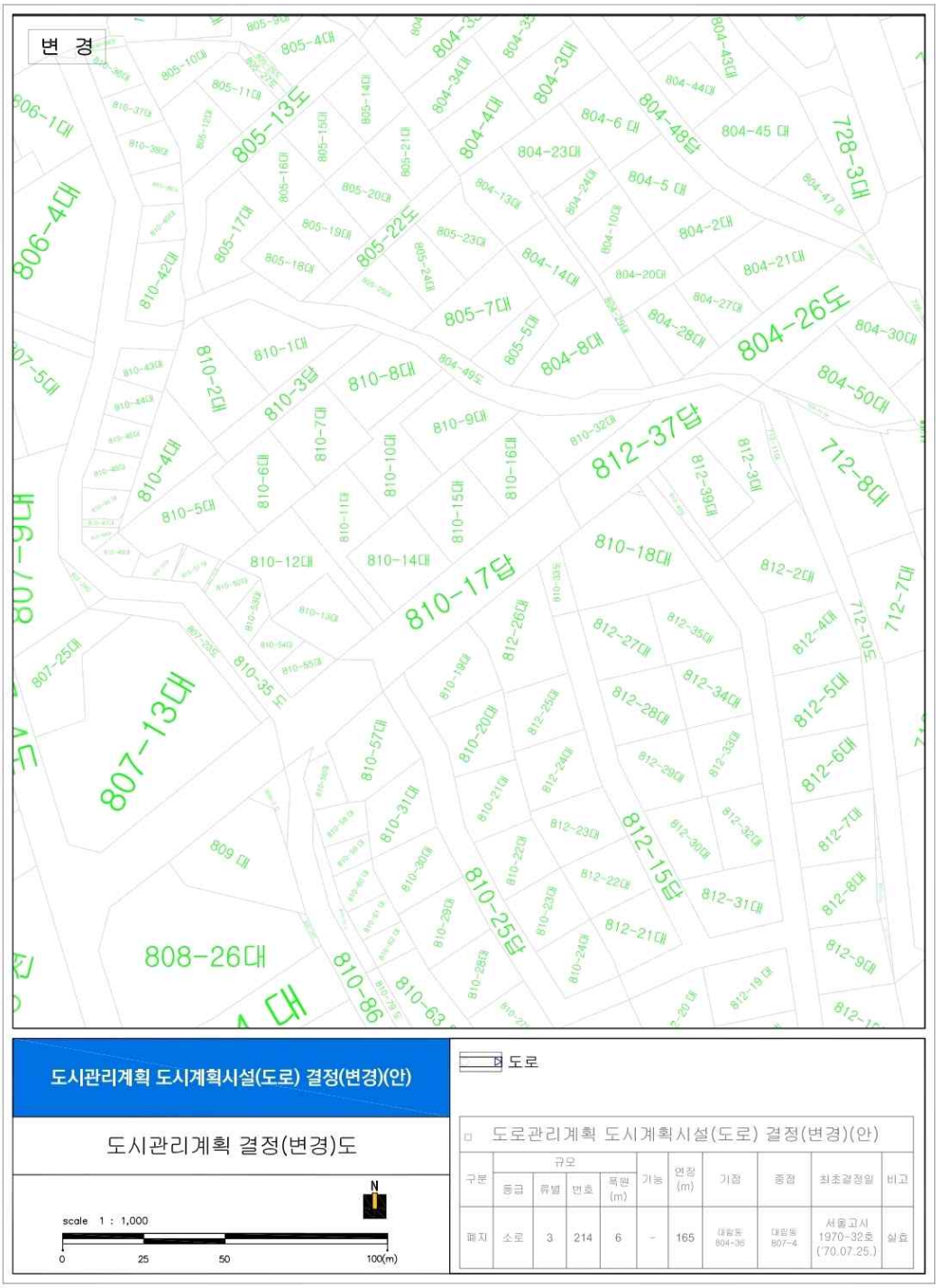
물 건 조 서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권리종류및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1	대림동 810-55	점포(1층)		4	미상					무허가

□ 지형도면(기정)


기 존
805-13도
804-26도
812-37답
810-17답
807-13대
812-15답
810-25답
806-4대
808-26대
809 대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cale 1 : 1,000
0
25
50
100(m)
N
도로
□ 도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구분
규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최초결정일
비고
폐지
소로
3
214
6
-
165
대림동 804-36
대림동 807-4
서울고시 1970-32호 ('70.07.25.)
실효

□ 지형도면(변경)


변 경
805-13도
806-4대
805-22도
804-4대
804-3대
804-48답
804-45 대
728-3대
804-23대
804-6 대
804-5 대
804-2대
804-21대
804-26도
804-30대
804-50대
805-7대
805-5대
804-8대
804-14대
804-13대
805-17대
805-16대
805-15대
805-14대
805-21대
805-20대
805-19대
805-18대
805-23대
805-24대
804-10대
804-20대
804-27대
804-28대
810-42대
810-1대
810-2대
810-3답
810-8대
810-7대
810-10대
810-9대
810-16대
810-15대
810-4대
810-5대
810-6대
810-11대
810-12대
810-14대
812-37답
812-3대
812-39대
712-8대
712-7대
712-10도
810-18대
812-2대
812-4대
812-5대
812-6대
812-7대
812-8대
812-9대
810-17답
812-26대
812-27대
812-35대
812-28대
812-34대
812-29대
812-33대
812-24대
812-23대
812-22대
812-30대
812-32대
812-15답
812-31대
812-21대
810-25답
810-57대
810-31대
810-30대
810-29대
810-28대
810-20대
810-21대
810-22대
810-23대
810-24대
807-9대
807-25대
807-13대
810-35 대
809 대
808-26대
810-86
810-63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N
scale 1 : 1,000
0
25
50
100(m)
□ 도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구분
규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최초결정일
비고
폐지
소로
3
214
6
-
165
대림동 804-36
대림동 807-4
서울고시 1970-32호 ('70.07.25.)
실효

◈ 영등포구고시 제2025-10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실효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70-32호(1970.7.25.)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고, 영등포구고시 제2020-103호(2020.6.4.)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된 『대림동 1058-32~ 1082-14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실효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림동 1058-32~1082-14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사업의 명칭 : 대림동 1058-32~1082-14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폭 6m, 연장 35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영등포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마. 사업의 기간 : 실시계획 인가고시일로부터 5년
바. 실효일자 : 2025. 6. 4.
사. 실효사유 : 사업기간 경과에 따른 효력 상실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별첨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3 영등포구청장

■ 사업의 명칭 : 대림동 1058-32 ~ 1082-14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외 권리종류 및 내용			비 고
					성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1	대림동1058-51	잡	21	21	전** 외 2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				
2	대림동1057-89	답	6	6	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도림동 ***-*				
3	대림동1058-4	도	370	370	강**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				
4	대림동1058-46	대	13	13	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				
5	대림동1058-8	잡	231	72	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	압류	영등포구		
6	대림동 1058-16	도	40	40	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				
7	대림동1068-15	답	638	638	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				
					김**	경기도 광주시 새말길 ***				
					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5길 **				
					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				
					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9길 *				
					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				
					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				
					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100-**				
					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 권리종류 및 내용			비 고
					성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김**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45길 7-**				
					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2길 **				
					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2길 **				
					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				
					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2길 **				
					정**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로8번길 4-*				
8	대림동1067-7	답	93	91	김**	서울특별시 관악구 상도동 ***-**				
9	대림동1066-65	대	65	28	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37가길 *				
10	대림동1066-67	도	43	43	유한회사무빈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고송로 **				
11	대림동1066-126	잡	307	307	정**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1로 **				
					박**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남로 **				
					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남로 **				
12	대림동1066-105	잡	694	14	홍**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대방동 ***-**				
13	대림동1066-111	잡	40	40	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 ***				
14	대림동1066-112	대	36	36	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 ***				
15	대림동1066-113	대	36	36	박**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고송로 **				
16	대림동1066-114	잡	26	26	유한회사무*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고송로 **				
17	대림동1083-4	도	221	221	알****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사우스 패서디나 마렝고애비뉴****				
					제*****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토런스 나딘 서클 유닛에이*****				
					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30길 **				
					최**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7번지의 **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 권리종류 및 내용			비 고
					성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신**	미합중국 텍사스주 산안토니오시 쿠레브라길 *****				
18	대림동1081-2	도	155	155	알****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사우스 패서디나 마렝고애비뉴****				
					제*****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토런스 나딘 서클 유닛에이*****				
					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30길 **				
					최**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7번지의 **				
					신**	미합중국 텍사스주 산안토니오시 쿠레브라길 *****				
19	대림동1082-14	잡	99	99	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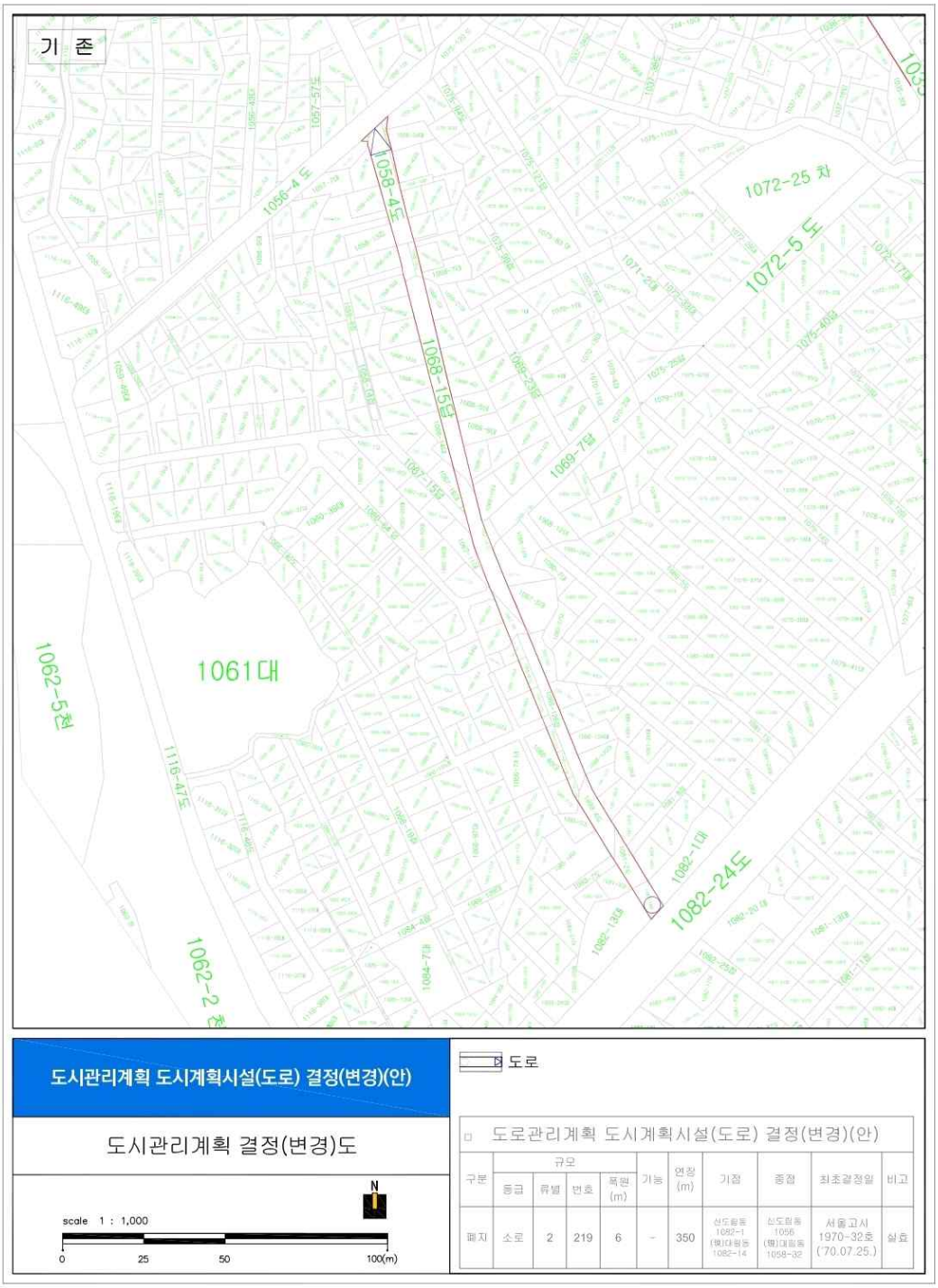
물 건 조 서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3 영등포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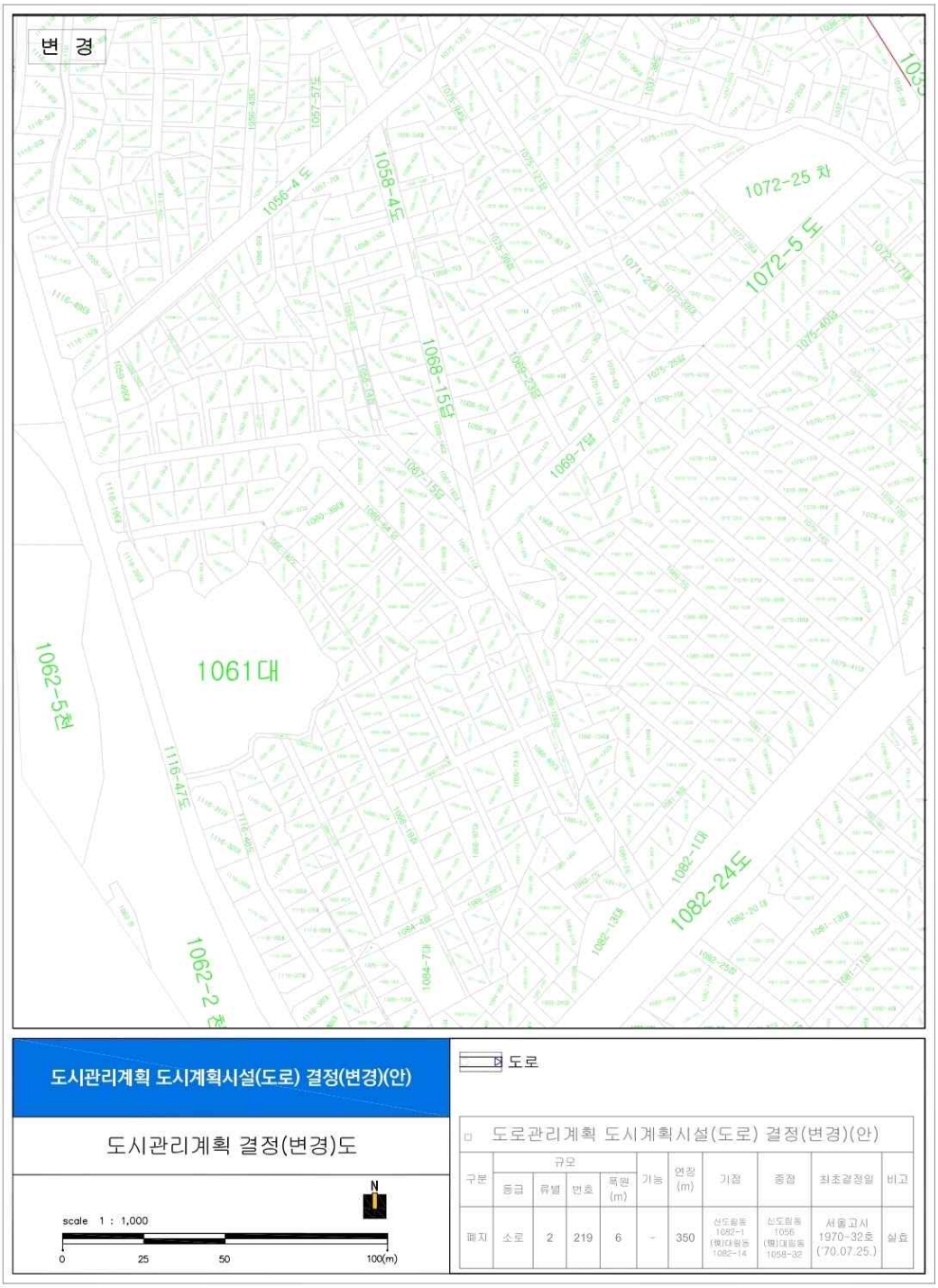
■ 사업의 명칭 : 대림동 1058-32 ~ 1082-14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권리종류및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1	대림동1067-11	점포(1층)	연와조 평옥개	3	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길**(대림동)	근저당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20(태평로2가)	
		점포(2층)		3						
		계단		1						

□ 지형도면(기정)


기 존
1058-4도
1072-25 차
1072-5 도
1068-15도
1069-7답
1061대
1062-5천
1116-47도
1062-2 천
1082-1대
1082-24도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cale 1 : 1,000
0
25
50
100(m)
N
도로
□ 도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구분
규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최초결정일
비고
폐지
소로
2
219
6
-
350
서울고시 1970-32호 ('70.07.25.)
실효

□ 지형도면(변경)


변 경
1056-4도
1058-4도
1072-25 차
1072-5 도
1068-15답
1069-7답
1071-2답
1087-15답
1061대
1062-5천
1116-47도
1062-2 천
1082-1대
1082-24도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N
scale 1 : 1,000
0
25
50
100(m)
도로
□ 도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구분
규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최초결정일
비고
폐지
소로
2
219
6
-
350
서울고시 1970-32호 ('70.07.25.)
실효

◈ 관악구고시 제2025-6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관악구고시 제2020-91호(2020.6.4.)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신림동 209-2)」에 대하여,
2.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99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위치 : 관악구 신림동 209-2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명　칭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신림동 209-2)
  3)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및 공원조성 등
  4) 면　적 : 231㎡, 건축물 등
다.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기간 변경내용
  - 기정 : 2020. 6. 4. ~ 2025. 6. 3.
  - 변경 : 2020. 6. 4. ~ 2027.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참조
사. 공고방법 : 서울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신림동 20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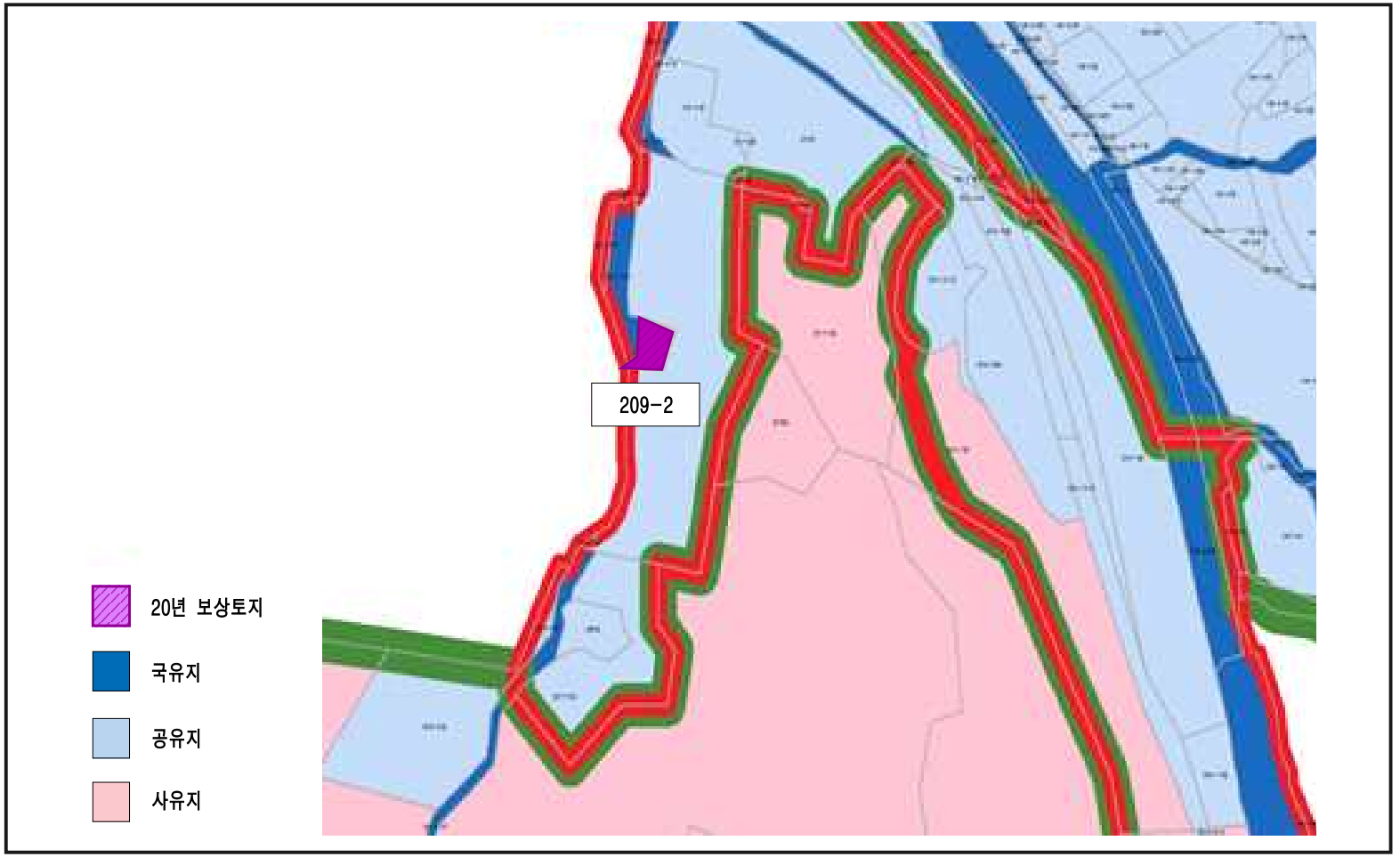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성명	공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1필지		231	231	서울특별시	단독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	신림동 209-2	임야	231	231							
	건물 1동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또는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신림동 209-2	건축물	철근 콘크리트조	125.36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기타 지장물 일체								

보상토지 용지도

○ 사 업 명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신림동 209-2)



◈ 서초구고시 제2025-8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0-67호(2020.4.23.)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0-115호, 116호, 121호(2020.6.11.)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서초구 고시 제2023-68호(2023.5.18.)로 실시계획 변경고시, 서초구 공고 제2025-987호(2025.05.0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된 「방배동 1344-5 ~ 1489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변경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5.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하나, 주소지 불분명 등으로 인한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고시로 갈음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초 구 청 장

가. 방배동 1344-5 ~ 1489 도로개설공사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344-5 ~ 1489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사업의 명칭 : 방배동 1344-5 ~ 1489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1	소로	3	47	6	국지도로	230	서초구 방배동 1344-5	서초구 방배동 1489	일반도로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서초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변경 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 변경 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7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1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도로과(☎02-2155-6973)로 문의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사업의 명칭 : 방배동 1344-5~1489 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연변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구	동	지번		지적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권리	
1	서초	방배	1344-10	도로	954.2	954.2		서초구					
2	서초	방배	2983	도로	185	89.5		국 (국토교통부)					
3	서초	방배	1556-1	도로	33	22.9		서초구					
4	서초	방배	1655	도로	86	86		서초구					
5	서초	방배	1555	도로	17	17		정**	서울시 관악구 사당동 *-***				
6	서초	방배	1652	도로	93	93	1/3	김**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				
							2/3	서초구					
7	서초	방배	1643	도로	53	53	1	서초구					
8	서초	방배	1489	도로	96	96	13/96	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동 ***호				
							3/96	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일동로 ***, **동 ***호				
							1/12	박**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호				
							1/12	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길 **,***호				
							1/6	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길**,***동 ***호				
							1/2	주식회사 ****	경기도 파주시 아동로 *,*층-***				

구 공 고

◈ 강북구공고 제2025-747호

도시공원(오동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사용계약 체결 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의거 오동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에 대하여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강 북 구 청 장

1.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내역

공 원 명	위 치(소재지)	지 목	면 적(㎡)	비 고
오동도시자연공원구역	강북구 번동 산27-43	임야	326	
	강북구 번동 산27-113	임야	641	

2. 부지사용 계약일 : 2025. 5. 13.
3. 부지사용 계약기간 : 2023. 5. 13. ~ 2028. 5. 12.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공원녹지과 공원기획팀(☎901-6925)으로 문의 바랍니다.

◈ 강북구공고 제2025-780호

도시관리계획[수유 · 번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강북구공고 제2025-346호(2025. 3. 7.)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5-489(2025. 4. 3.)로 재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수유 · 번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5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수유 · 번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9일
강 북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2025. 5. 29. ~ 6. 11. (공고일부터 14일 간)
나. 열람장소 : 강북구청 6층 신청사건립추진단(☎02-901-6356)
다.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요내용
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수유 · 번동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북구 수유동 192번지 일대 및 번동 416번지 일대	436,100	-	436,100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54호 (1997.01.06.)	-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 생략(열람도서 참조)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생략(열람도서 참조)
2.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건축물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생략(열람도서 참조)
4. 건축물 배치 · 형태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생략(열람도서 참조)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강북구 수유동 192-59 일대	9,485.6	-	9,485.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42호 (2022.8.11.)	-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변경)

1)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변경)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변경)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구역명		•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 변경없음	
구역면적		• 9485.6㎡ (공공청사 면적 8,443.0㎡)		• 변경없음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 일반상업지역	
기반시설		-		• 도로(변경2개소, 신설2개소) 및 공공청사 중복결정, 공간적 범위 결정	
용도	공공청사	• 구청사, 구의회, 보건소, 주민센터		• 변경없음	
	공공용도	• 청년지원센터, 생활문화센터 (구민청)	청사 외 용적률의 50% 이상	• 청년지원센터, 생활문화센터 (구민청) 등	청사 외 용적률의 50% 이상
건폐율		• 60% 이하		• 변경없음	
용적률		• 기준/허용 : 600%/800% 이하 - 공공청사 및 부대시설은 기준용적률 600% 이내 조성		• 변경없음	
높이		• 블록 1 : 80m 이하 / 블록 2 : 100m 이하		• 100m 이하 - 단, 소로 3-라 연접부는 주변지역을 고려하여 80m이하로 계획	
건축물 배치 및 형태		• 연접지역 고려 건축물 이격 배치 및 3층 이하 저층 배치 (10m 이내) • 이용자 편의 고려 블록1, 2 건축물 간 입체 통로 조성		• 건축한계선 : 한천로139길 및 한천로변 3m, 신설도로변 2m • 벽면한계선 : 한천로139가길변 2m	
대지내 공지	대지내조경 권장구간	-		• 구청사 이면부 연접지역 폭 11m - 조성시 조경공간 50% 이상 (대지내조경 식재기준 부합)	
	공개공지	• 한천로139길변 결절부 공개공지 조성		• 한천로139길 및 한천로변 결절부 공개공지 조성	
	공중연결통로	-		• 도로의 중복결정 상부 통경구간 계획을 위하여 공중연결통로 구간 설정 - H : 10m 이상	
기타		• 폐지되는 주차장 면수(45대)이상 부설주차장 추가확보 • 개발 규모를 고려한 한천로 확폭 및 이면도로 확보 계획수립 • 공공청사 외 용도는 세부개발 계획수립 시 공공청사 공간적 범위 결정 - 세부개발 계획에 따라 도로 신설 및 변경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중복결정 범위 변경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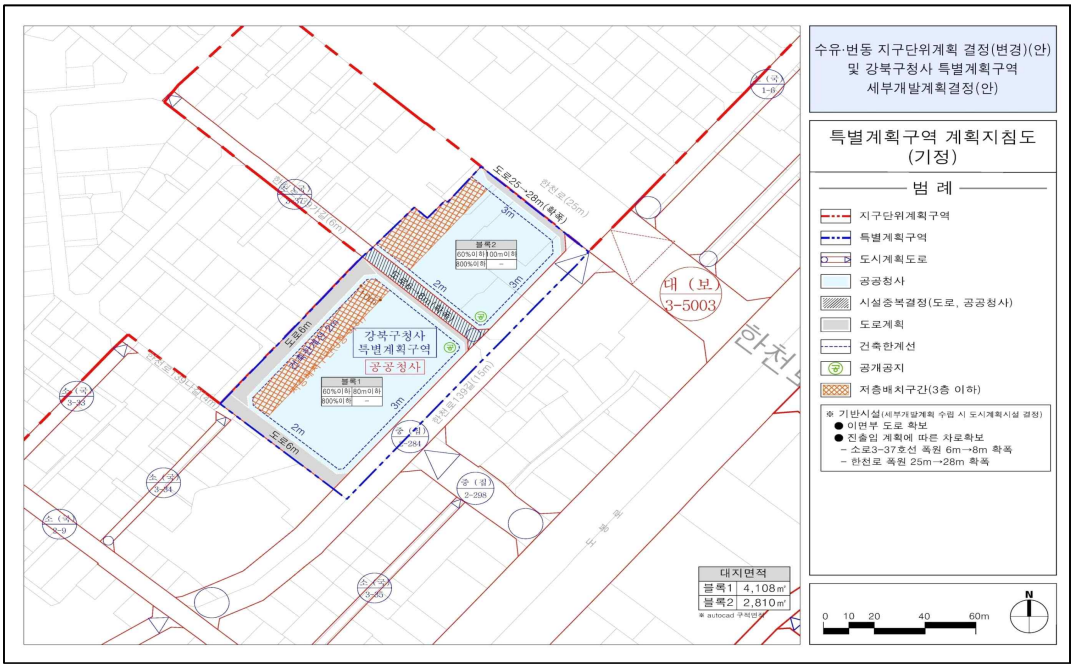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사유서

구분	결정(변경)사유	
용도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 변경	
기반시설	• 도로 및 공공청사 변경 사항 반영	
용도	• 공공용도(돌봄센터, 북라운지, 운동시설, 전망대 등) 계획 수립	
높이	• 복합공공청사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블록을 통합하고 이에 따른 높이계획 수립	
건축물 배치 및 형태	• 공공청사부지 내 주민에게 개방된 휴식 및 쉼터를 조성토록 하고자 함 • 복합공공청사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블록을 통합하고 이에 따른 배치계획 수립	
대지 내 공지	대지내 조경 권장구간	• 연접지역 고려한 건축배치 및 구청사 이용자 휴식 및 쉼터 제공을 위한 조경공간 권장
	공개공지	• 공공청사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블록을 통합하고 이에 따른 공개공지 위치 조정
	공중 연결통로	• 한천로 139가길 상부 통경구간 계획 및 효율적인 동선체계 구축을 위한 공중연결통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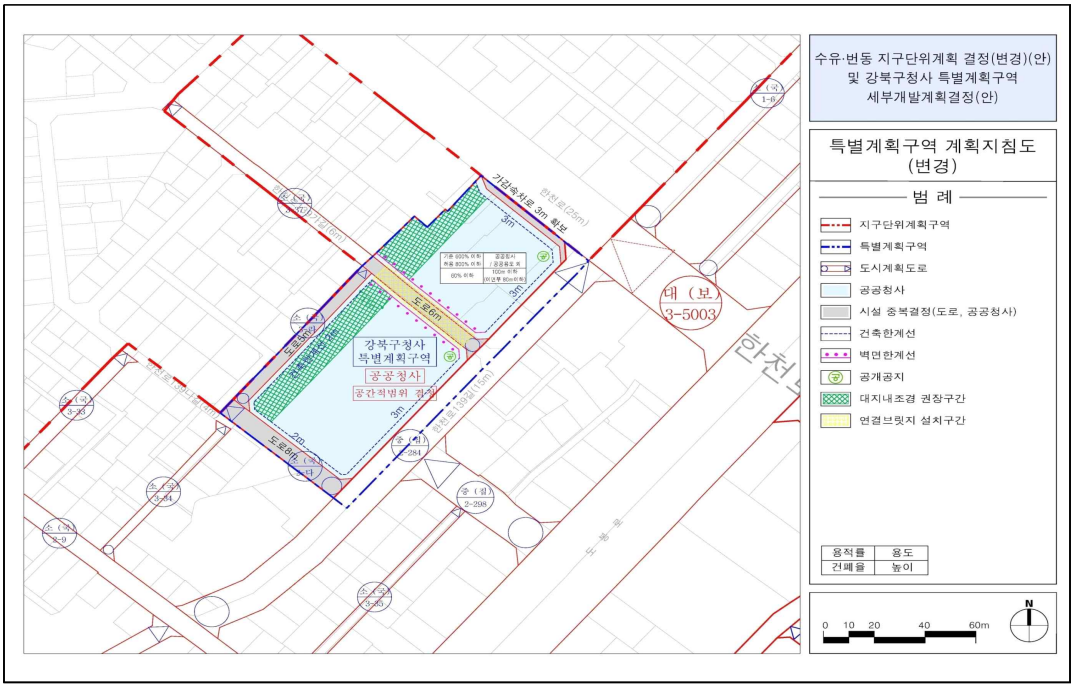
6. 인센티브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도(기정)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도(변경)



Ⅱ.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강북구 수유동 192-59 일대	9,485.6	-	9,485.6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9,485.6	-	9,485.6	100.0	-
주거지역	소계	9,485.6	감) 9,485.6	-	0.0	-
	준주거지역	9,485.6	감) 9,485.6	-	0.0	-
상업지역	소계	-	증) 9,485.6	9,485.6	100.0	-
	일반상업지역	-	증) 9,485.6	9,485.6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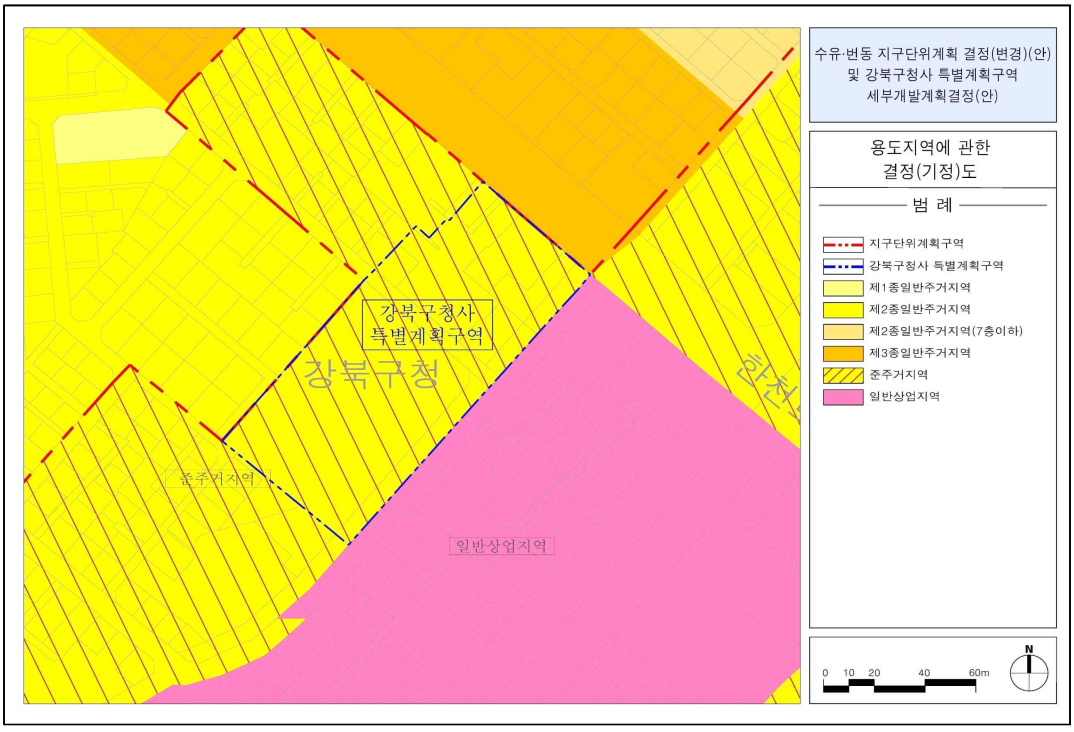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강북구 수유동 192-59 일대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9,485.6㎡	•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라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용도지역 변경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증) 9,48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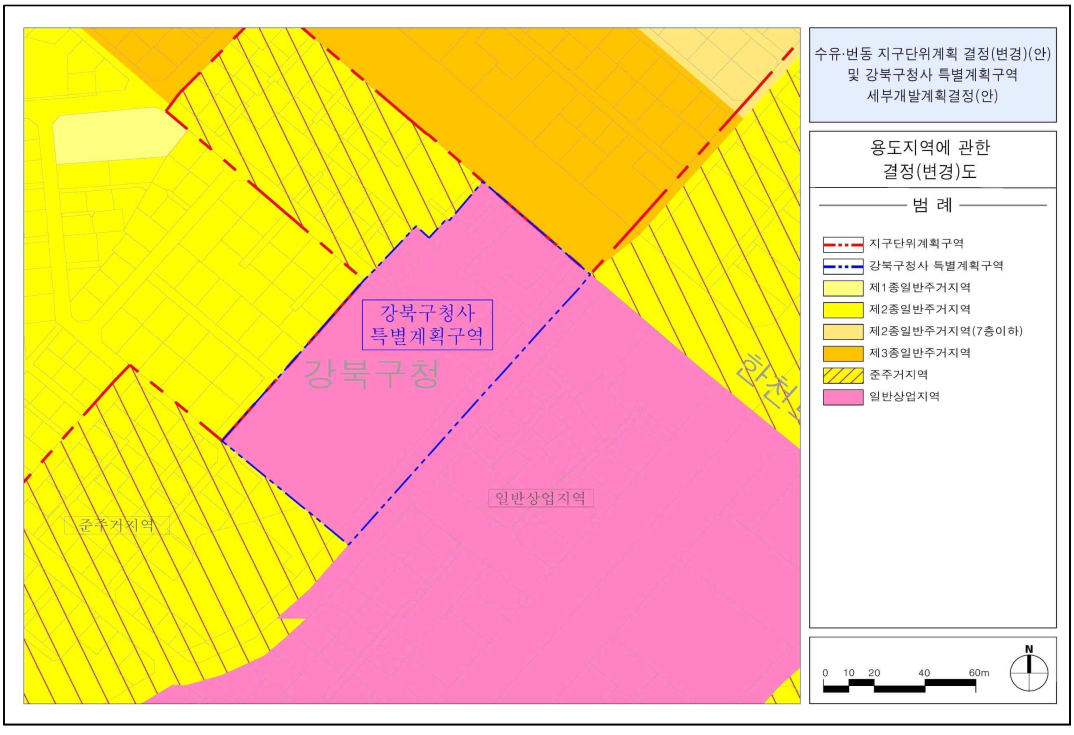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해당없음)

(이 하 여 백)

▌특별계획구역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기정)도



▌특별계획구역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결정(변경)조서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284	15	집산도로	226	수유3동 192-104	수유3동 190-82	일반	-	-	-
변경	중로	2	284	15	집산도로	226	수유3동 192-104	수유3동 190-82	일반	-	-	선형변경, 중복결정 (A=141.9㎡)
기정	소로	3	37	6	국지도로	163	수유3동 192-59	수유3동 192-19	일반	-	-	-
변경	소로	3	37	6	국지도로	163	수유3동 192-59	수유3동 192-19	일반	-	-	수직적 중복결정 (A=366.6㎡, H=10m이하)
신설	소로	2	다	8	국지도로	59	수유동 192-59	수유동 192-77	일반	-	-	중복결정 (A=477.4㎡)
신설	소로	3	라	5	국지도로	78	수유동 192-59	수유동 192-95	일반	-	-	중복결정 (A=399.5㎡)

※ 상기 도로는 특별계획구역 내 도로로서 그 외 변경사항 없음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중로 2-284	중로 2-284	• 가각부 가감속 차로 선형변경 • 중복결정(공공청사) - A=141.9㎡	•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진출입체계에 따른 가감속차로 선형 변경 • 일부 구간 공공청사 중복결정
소로 3-37	소로 3-37	• 수직적 중복결정(공공청사) - A=366.6㎡, H=10m이하	• 공공청사 시설과의 중복구간에 대하여 수직적 중복결정 (범위 설정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 관리
-	소로 2-다	• 도로 신설 - 연장(L) : 59m, 폭(B): 8m • 중복결정(공공청사) - A=477.4㎡	•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진출입체계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공공청사 중복결정
-	소로 3-라	• 도로 신설 - 연장(L) : 78m, 폭(B): 5m • 중복결정(공공청사) - A=399.5㎡	•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진출입체계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공공청사 중복결정

2) 주차장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1) 공원 : 변경없음

2) 공공공지 : 변경없음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	공공청사	구청사	강북구 수유동 192-59 일대	8,443	-	8,44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42호 (2022.08.11.)	중복결정(도로), 공간적범위 결정

■ 건축규모 건축물 범위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60% 이하	기준 : 600% 이하 / 허용 : 800% 이하	100m 이하	기준용적률 : 공공청사 및 부대시설 / 허용용적률 : 공공용도

※ 용적률 적용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은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공공청사 외 시설에 대한 공간적 범위 결정은 복합청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입용도 등에 따라 결정

■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 조서 : 신설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공간적 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청사	강북구 수유동 192-59 일대	면적(㎡)	-	- 공공청사 • 비도시계획시설(지하 1층 일부, 지상 3층 일부, 지상 6층 일부, 지상 12층~17층 일부, 옥상 1층 일부)을 제외한 모든구간 비도시계획시설 (공공용도) • 지하 1층 일부 (1,600㎡이하) 지상 3층 일부 (800㎡이하) 지상 6층 일부 (1,200㎡이하) 지상 12층 일부 (1,200㎡이하) 지상 13층 일부 (1,200㎡이하) 지상 14층 일부 (1,200㎡이하) 지상 15층 일부 (1,400㎡이하) 지상 16층 일부 (2,030㎡이하) 지상 17층 일부 (470㎡이하) 옥상 1층 일부 (300㎡이하)	- 공공청사 • 비도시계획시설(지하 1층 일부, 지상 3층 일부, 지상 6층 일부, 지상 12층~17층 일부, 옥상 1층 일부)을 제외한 모든구간 비도시계획시설 (공공용도) • 지하 1층 일부 (1,600㎡이하) 지상 3층 일부 (800㎡이하) 지상 6층 일부 (1,200㎡이하) 지상 12층 일부 (1,200㎡이하) 지상 13층 일부 (1,200㎡이하) 지상 14층 일부 (1,200㎡이하) 지상 15층 일부 (1,400㎡이하) 지상 16층 일부 (2,030㎡이하) 지상 17층 일부 (470㎡이하) 옥상 1층 일부 (300㎡이하)	-	-
				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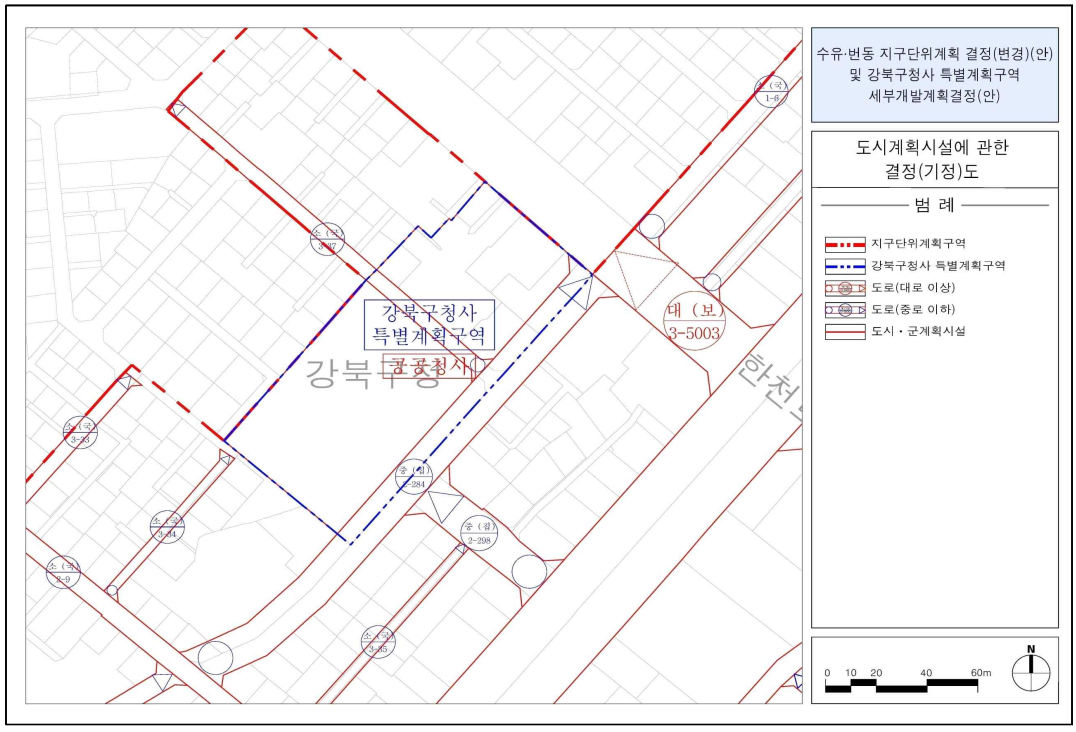
■ 공공청사 내 비도시계획시설 건축물 용도계획 : 신설

구분		계획내용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공공용도	- 구민청, 청년센터, 돌봄센터, 북라운지, 운동시설, 전망대 등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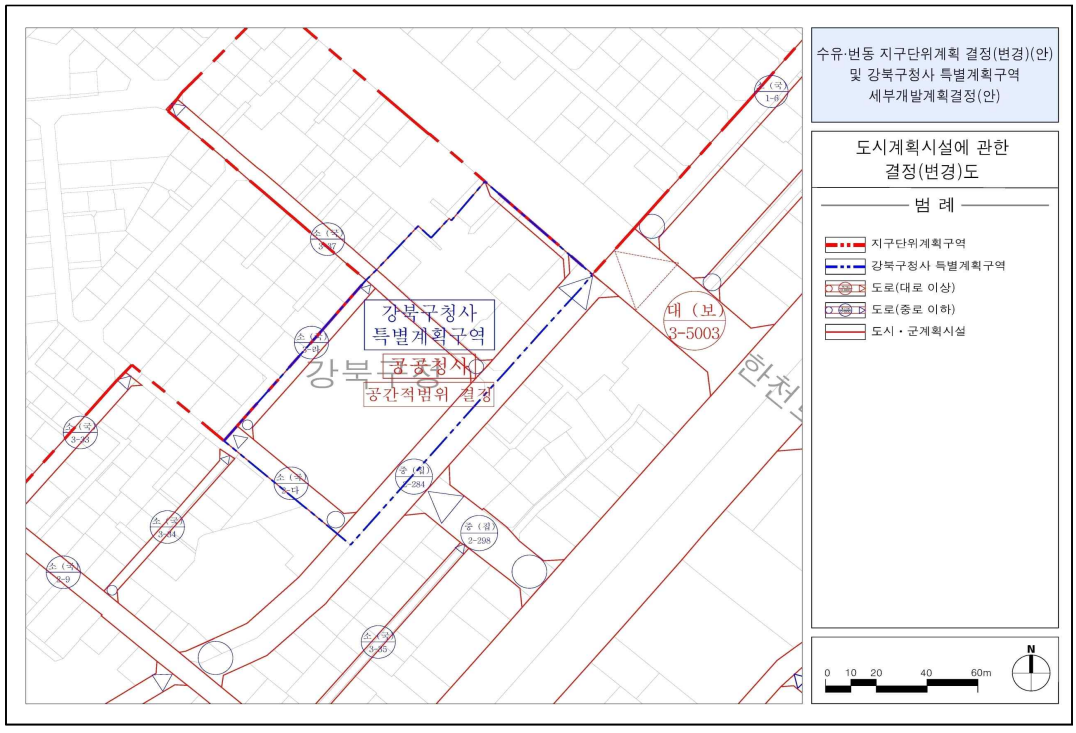
■ 공공청사 변경사유서

도면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공공 청사	• 중복결정(도로) • 공간적 범위 결정	• 교통계획에 따른 도로조성을 통해 공공청사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 도모 • 도시계획시설 공간적범위 결정을 통해 공공청사 외 비도시계획시설(공공용도)을 복합하여 지역내 필요한 생활서비스 시설 도입 및 지구중심 기능 강화

▌특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특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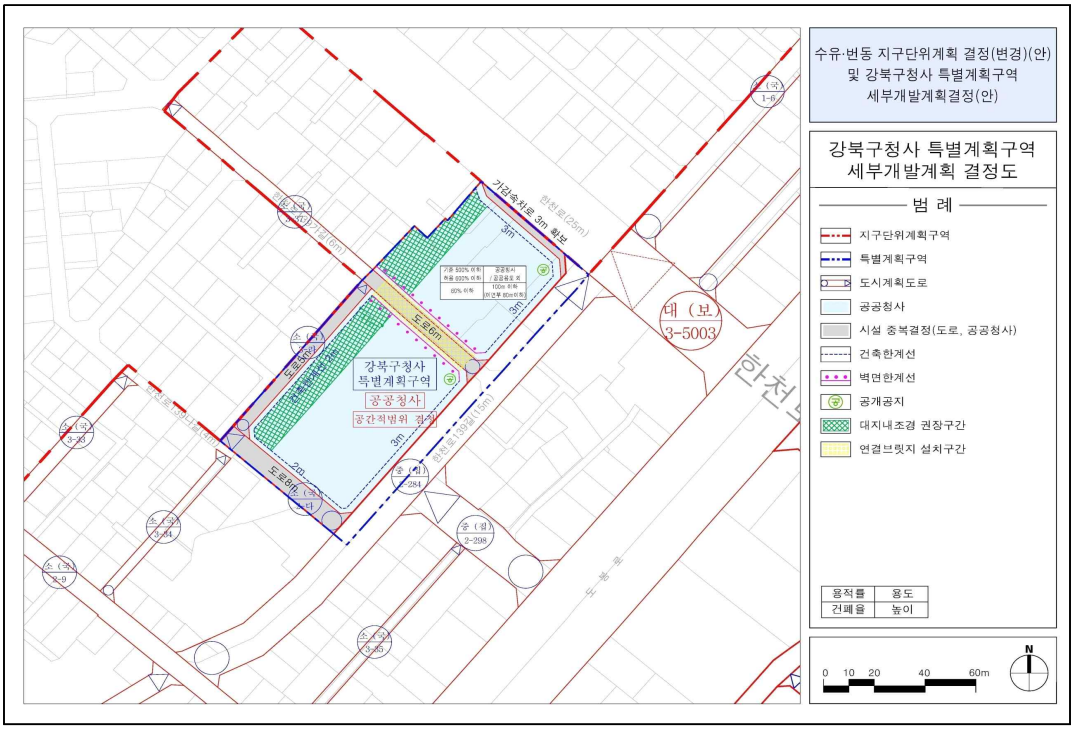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열람도서 참조)

4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구분		세부개발계획(안)	비고
구역명		•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
구역면적		• 9,485.6㎡ (공공청사 면적 8,443.0㎡)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기반시설		• 도로(변경2개소, 신설2개소) 및 공공청사 중복결정, 공간적 범위 결정	
용도	공공청사	• 구청사, 구의회, 보건소, 주민센터	-
	공공용도	• 청년지원센터, 생활문화센터(구민청) 등	청사 외 용적률의 50% 이상
건폐율		• 60% 이하	계획 건폐율: 58.40%
용적률		• 기준/허용 : 500%/600% 이하 - 기준 : 공공청사 및 부대시설 - 허용 : 공공용도	계획 용적률: 556.10%
높이		• 100m 이하 - 단, 소로 3-라 연접부는 주변지역을 고려하여 80m이하로 계획	계획 높이: 85.0m (소로 연접부 80.0m)
건축물 배치 및 형태		• 건축한계선 : 한천로139길 및 한천로변 3m, 신설도로변 2m • 벽면한계선 : 한천로139가길변 2m	-
대지내 공지	대지내 조경 권장구간	• 구청사 이면부 연접지역 폭 11m - 조성시 조경공간 50% 이상 (대지내조경 식재기준 부합)	-
	공개공지	• 한천로139길 및 한천로변 결절부 공개공지 조성	-
	공중 연결통로	• 도로의 중복결정 상부 통경구간 계획을 위하여 공중연결통로 구간 설정 - H : 10m 이상	-
기타		• 폐지되는 주차장 면수(45대)이상 부설주차장 추가확보 • 개발 규모를 고려한 한천로 확폭 및 이면도로 확보 계획수립 • 공공청사 외 용도는 세부개발 계획수립 시 공공청사 공간적 범위 결정 - 세부개발 계획에 따라 도로 신설 및 변경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중복결정 범위 변경	-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도



Ⅲ.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 생략(열람도서 참조)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마. 기타사항

– 세부내용, 도면 등의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강북소개→강북소식→고시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 본 열람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신청사건립추진단(☎02-901-63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봉구공고 제2025-833호

도시관리계획(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01호(2005.12.22.)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86호(2007.8.23.)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도봉구고시 제2010-17호(2010.6.3)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87호(2010.12.30.)로 결정(변경)된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9일
도 봉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도봉구청 도시계획과(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12층)
다.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봉구 도봉동 626번지 일대	168,700	증) 5,756.2	174,456.2	서울시고시 제2005-401호 (2005.12.22.)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
4)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
라. 관계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마. 기타사항
1)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 에서도 확인 및 의견제출 가능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도시계획과(☎02-2091-35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포구공고 제2025-89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1998-98호(1998.12.3.)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된 망원동 57-33 ~ 57-207간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0-83호(2020.06.25.)로 실시계획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2-12호(2022.02.03.)로 실시계획(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2-235호(2022.12.22.)로 실시계획(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3-230호(2023.12.21.)로 실시계획(변경) 고시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4-166호(2024.12.19.)로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대흥동 261-3~338-5 외 6개소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과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5조 및 제9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 서류 열람을 공고 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과(☎02-3153-975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실시계획(변경)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9일
마 포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마포구 도로개선과(☎02-3153-9754)
다. 사업시행지(변경 없음)
라.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마. 사업규모(변경)
1) 공사개요

연번		사 업 명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도시계획사항	사업기간
1	기정	성산동 632-1 ~ 서교동 247-199 도로개설공사	성산동 632-1 ~서교동 247-199간	도로개설 폭 = 8m 연장= 83m	서울시제73호 (76.4.25.) 도시계획시설결정	인가일로부터 2025. 12. 31.
	변경	성산동 632-1 ~ 서교동 247-199 도로개설공사	성산동 632-1 ~서교동 247-199간	도로개설 폭 = 8m 연장= 83m	서울시제73호 (76.4.25.) 도시계획시설결정	인가일로부터 2027. 6. 24.
2	기정	상수동 356-14 ~ 272-2 도로개설공사	상수동 356-14 ~ 275-2간	도로개설 폭 = 12~15m 연장= 102m	건설부제177호 (62.12.8.) 도시계획시설결정	인가일로부터 2025. 12. 31.
	변경	상수동 356-14 ~ 272-2 도로개설공사	상수동 356-14 ~ 275-2간	도로개설 폭 = 12~15m 연장= 102m	건설부제177호 (62.12.8.) 도시계획시설결정	인가일로부터 2027. 6. 24.

연번		사 업 명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도시계획사항	사업기간
3	기정	대흥동 261-3 ~ 338-5 도로개설공사	대흥동 261-3 ~ 338-5간	도로개설 폭 = 8m 연장= 309m	건설부제768호 (64.1.24.) 도시계획시설결정	인가일로부터 2025. 12. 31.
	변경	대흥동 261-3 ~ 338-5 도로개설공사	대흥동 261-3 ~ 338-5간	도로개설 폭 = 8m 연장= 309m	건설부제768호 (64.1.24.) 도시계획시설결정	인가일로부터 2027. 6. 24.
4	기정	염리동 154-31 ~ 73-4 도로개설공사	염리동 154-31 ~ 73-4간	도로개설 폭 = 8m 연장= 346m	건설부제186호 (62.12.20.) 도시계획시설결정	인가일로부터 2025. 12. 31.
	변경	염리동 154-31 ~ 73-4 도로개설공사	염리동 154-31 ~ 73-4간	도로개설 폭 = 8m 연장= 346m	건설부제186호 (62.12.20.) 도시계획시설결정	인가일로부터 2027. 6. 24.
5	기정	망원동 242-6 ~ 458-1 도로개설공사	망원동 213-24 ~ 458-1간	도로개설 폭 = 12m 연장= 258m	서울시제47호 (74.4.20.) 도시계획시설결정	인가일로부터 2025. 12. 31.
	변경	망원동 242-6 ~ 458-1 도로개설공사	망원동 213-24 ~ 458-1간	도로개설 폭 = 12m 연장= 258m	서울시제47호 (74.4.20.) 도시계획시설결정	인가일로부터 2027. 6. 24.
6	기정	상수동 318 ~ 서교동 365 도로개설공사	상수동 318-6 ~ 창전동 2-144간	도로개설 폭 = 10~45m 연장 =1,980m	건설부제8호 (76.1.21.) 도시계획시설결정	인가일로부터 2025. 12. 31.
	변경	상수동 318 ~ 서교동 365 도로개설공사	상수동 318-6 ~ 창전동 2-144간	도로개설 폭 = 10~45m 연장 =1,980m	건설부제8호 (76.1.21.) 도시계획시설결정	인가일로부터 2027. 6. 24.
7	기정	망원동 57-33 ~ 57-207 도로개설공사	망원동 57-33 ~ 57-207간	도로개설 폭 = 5~7m 연장= 430m	마포구제98호 (98.11.24.) 도시계획시설결정	인가일로부터 2025. 12. 31.
	변경	망원동 57-33 ~ 57-207 도로개설공사	망원동 57-33 ~ 57-207간	도로개설 폭 = 5~7m 연장= 522m	마포구제98호 (98.11.24.) 도시계획시설결정	인가일로부터 2027. 6. 24.

※ 참고사항 : 실시계획에서 망원동 57-33 ~ 57-207 도로개설공사는 망원동 57-433 ~ 57-448 도시계획시설(도로)를 포함한 구간임(지형도면 참조)

바.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사.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변경 전) 2020. 6. 25. ~ 2025. 12. 31. → (변경 후) 2020. 6. 25. ~ 2027. 6. 24.

아. 실시계획 변경사유

- 망원동 57-33 ~ 57-207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미반영된 망원동 57-433 ~ 57-448 도시계획시설(도로) 연장(+92m) 반영
- 망원동 57-328, -329 도로 경계(도로 폭) 변경
- 사업기간 변경(연장)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별첨

차. 도시관리계획 결정

1) 교통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도시계획사항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	5~7	국지도로	430	망원동 57-33	망원동 57-207	일반 도로	마포구제98호 (98.11.24.) 도시계획시설결정	-
변경	소로	3	-	5~7	국지도로	522	망원동 57-33	망원동 57-207	일반 도로	마포구제98호 (98.11.24.) 도시계획시설결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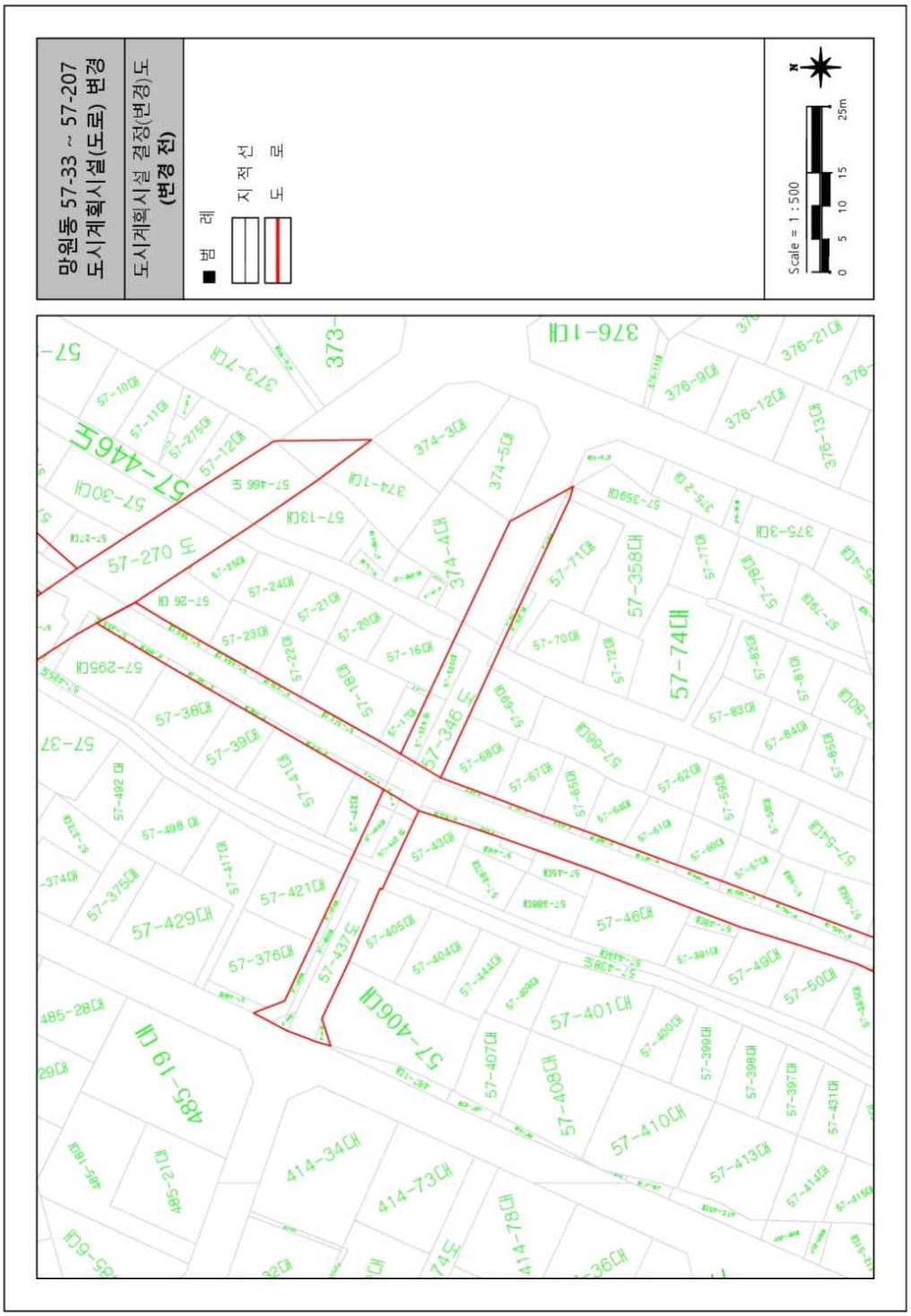
카. 결정 변경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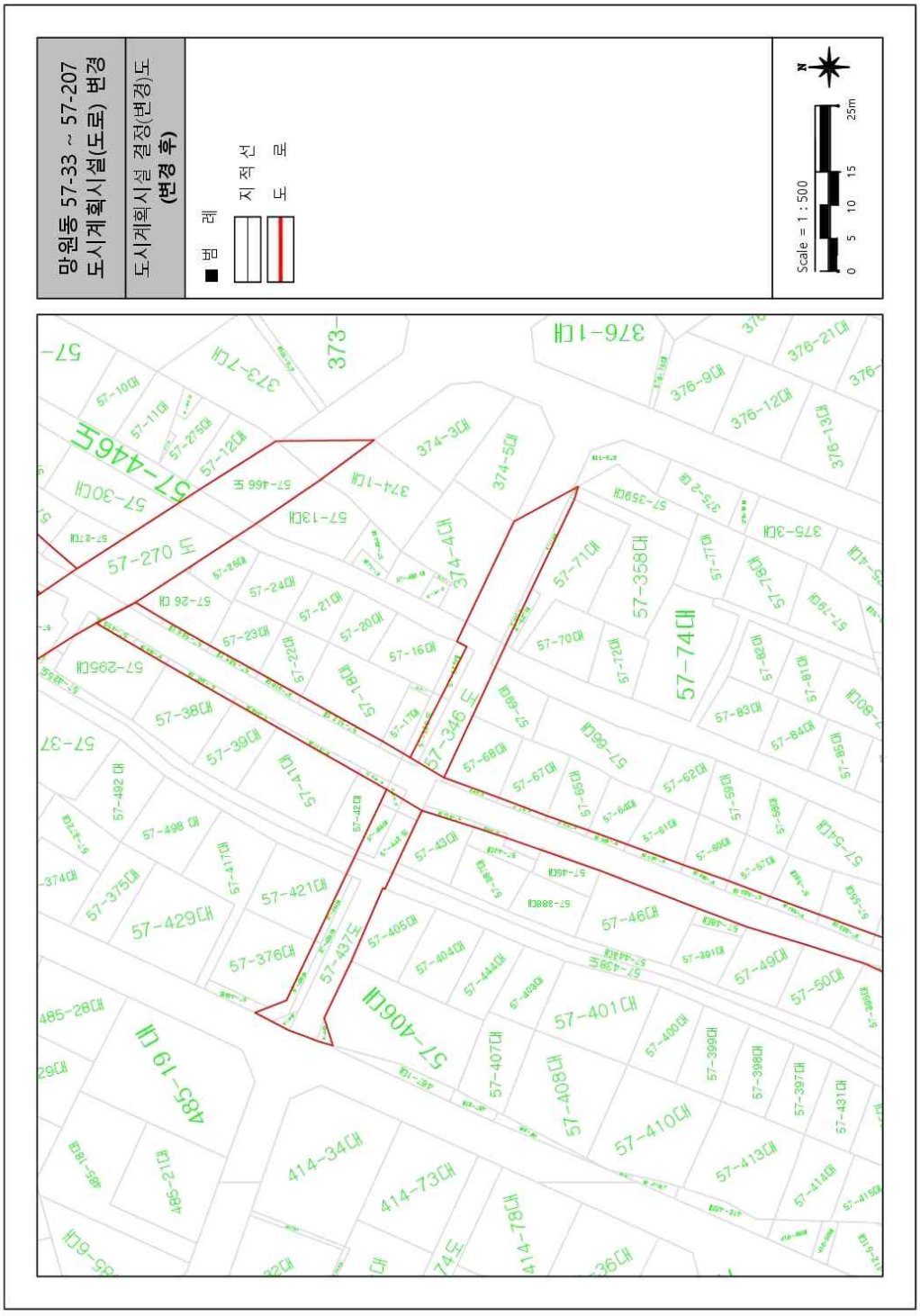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소로3류	오기 정정 및 도로 경계(폭) 변경 (경미한 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연장 및 규모 변경(오기) · 망원동 57-328,-329 도시계획시설(도로) 경계(도로폭) 변경(지형도면 참조)	

타. 지형도면의 작성(변경) : 별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도로개선과, ☎02-3153-9754)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물건 등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고시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의 보상면적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첨 1. 지형도면 1부.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각 1부. 끝.


망원동 57-33 ~ 57-207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변경 전)
범 례
지 적 선
도 로
N
Scale = 1:500
0 5 10 15 25m
57-74대
57-358대
57-401대
57-406도
57-346도
57-270 나
57-446 도
376-1대
485-19 대
414-34대
414-73대
414-78대


망원동 57-33 ~ 57-207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변경 후)
범 례
지 적 선
도 로
N
Scale = 1 : 500
0 5 10 15 25m
57-74대
57-358대
57-346 도
57-270 도
57-406대
57-401대
57-408대
57-410대
57-429대
57-421대
57-376대
57-437도
57-417대
57-375대
57-407대
57-404대
57-405대
57-444대
57-403대
57-400대
57-399대
57-398대
57-397대
57-431대
57-413대
57-414대
57-415대
57-416대
57-417대
57-418대
57-419대
57-420대
57-422대
57-423대
57-424대
57-425대
57-426대
57-427대
57-428대
57-430대
57-432대
57-433대
57-434대
57-435대
57-436대
57-438대
57-439대
57-440대
57-441대
57-442대
57-443대
57-445대
57-446대
57-447대
57-448대
57-449대
57-450대
57-451대
57-452대
57-453대
57-454대
57-455대
57-456대
57-457대
57-458대
57-459대
57-460대
57-461대
57-462대
57-463대
57-464대
57-465대
57-466대
57-467대
57-468대
57-469대
57-470대
57-471대
57-472대
57-473대
57-474대
57-475대
57-476대
57-477대
57-478대
57-479대
57-480대
57-481대
57-482대
57-483대
57-484대
57-485대
57-486대
57-487대
57-488대
57-489대
57-490대
57-491대
57-492대
57-493대
57-494대
57-495대
57-496대
57-497대
57-498대
57-499대
57-500대
57-501대
57-502대
57-503대
57-504대
57-505대
57-506대
57-507대
57-508대
57-509대
57-510대
57-511대
57-512대
57-513대
57-514대
57-515대
57-516대
57-517대
57-518대
57-519대
57-520대
57-521대
57-522대
57-523대
57-524대
57-525대
57-526대
57-527대
57-528대
57-529대
57-530대
57-531대
57-532대
57-533대
57-534대
57-535대
57-536대
57-537대
57-538대
57-539대
57-540대
57-541대
57-542대
57-543대
57-544대
57-545대
57-546대
57-547대
57-548대
57-549대
57-550대
57-551대
57-552대
57-553대
57-554대
57-555대
57-556대
57-557대
57-558대
57-559대
57-560대
57-561대
57-562대
57-563대
57-564대
57-565대
57-566대
57-567대
57-568대
57-569대
57-570대
57-571대
57-572대
57-573대
57-574대
57-575대
57-576대
57-577대
57-578대
57-579대
57-580대
57-581대
57-582대
57-583대
57-584대
57-585대
57-586대
57-587대
57-588대
57-589대
57-590대
57-591대
57-592대
57-593대
57-594대
57-595대
57-596대
57-597대
57-598대
57-599대
57-600대
57-601대
57-602대
57-603대
57-604대
57-605대
57-606대
57-607대
57-608대
57-609대
57-610대
57-611대
57-612대
57-613대
57-614대
57-615대
57-616대
57-617대
57-618대
57-619대
57-620대
57-621대
57-622대
57-623대
57-624대
57-625대
57-626대
57-627대
57-628대
57-629대
57-630대
57-631대
57-632대
57-633대
57-634대
57-635대
57-636대
57-637대
57-638대
57-639대
57-640대
57-641대
57-642대
57-643대
57-644대
57-645대
57-646대
57-647대
57-648대
57-649대
57-650대
57-651대
57-652대
57-653대
57-654대
57-655대
57-656대
57-657대
57-658대
57-659대
57-660대
57-661대
57-662대
57-663대
57-664대
57-665대
57-666대
57-667대
57-668대
57-669대
57-670대
57-671대
57-672대
57-673대
57-674대
57-675대
57-676대
57-677대
57-678대
57-679대
57-680대
57-681대
57-682대
57-683대
57-684대
57-685대
57-686대
57-687대
57-688대
57-689대
57-690대
57-691대
57-692대
57-693대
57-694대
57-695대
57-696대
57-697대
57-698대
57-699대
57-700대
57-701대
57-702대
57-703대
57-704대
57-705대
57-706대
57-707대
57-708대
57-709대
57-710대
57-711대
57-712대
57-713대
57-714대
57-715대
57-716대
57-717대
57-718대
57-719대
57-720대
57-721대
57-722대
57-723대
57-724대
57-725대
57-726대
57-727대
57-728대
57-729대
57-730대
57-731대
57-732대
57-733대
57-734대
57-735대
57-736대
57-737대
57-738대
57-739대
57-740대
57-741대
57-742대
57-743대
57-744대
57-745대
57-746대
57-747대
57-748대
57-749대
57-750대
57-751대
57-752대
57-753대
57-754대
57-755대
57-756대
57-757대
57-758대
57-759대
57-760대
57-761대
57-762대
57-763대
57-764대
57-765대
57-766대
57-767대
57-768대
57-769대
57-770대
57-771대
57-772대
57-773대
57-774대
57-775대
57-776대
57-777대
57-778대
57-779대
57-780대
57-781대
57-782대
57-783대
57-784대
57-785대
57-786대
57-787대
57-788대
57-789대
57-790대
57-791대
57-792대
57-793대
57-794대
57-795대
57-796대
57-797대
57-798대
57-799대
57-800대
57-801대
57-802대
57-803대
57-804대
57-805대
57-806대
57-807대
57-808대
57-809대
57-810대
57-811대
57-812대
57-813대
57-814대
57-815대
57-816대
57-817대
57-818대
57-819대
57-820대
57-821대
57-822대
57-823대
57-824대
57-825대
57-826대
57-827대
57-828대
57-829대
57-830대
57-831대
57-832대
57-833대
57-834대
57-835대
57-836대
57-837대
57-838대
57-839대
57-840대
57-841대
57-842대
57-843대
57-844대
57-845대
57-846대
57-847대
57-848대
57-849대
57-850대
57-851대
57-852대
57-853대
57-854대
57-855대
57-856대
57-857대
57-858대
57-859대
57-860대
57-861대
57-862대
57-863대
57-864대
57-865대
57-866대
57-867대
57-868대
57-869대
57-870대
57-871대
57-872대
57-873대
57-874대
57-875대
57-876대
57-877대
57-878대
57-879대
57-880대
57-881대
57-882대
57-883대
57-884대
57-885대
57-886대
57-887대
57-888대
57-889대
57-890대
57-891대
57-892대
57-893대
57-894대
57-895대
57-896대
57-897대
57-898대
57-899대
57-900대
57-901대
57-902대
57-903대
57-904대
57-905대
57-906대
57-907대
57-908대
57-909대
57-910대
57-911대
57-912대
57-913대
57-914대
57-915대
57-916대
57-917대
57-918대
57-919대
57-920대
57-921대
57-922대
57-923대
57-924대
57-925대
57-926대
57-927대
57-928대
57-929대
57-930대
57-931대
57-932대
57-933대
57-934대
57-935대
57-936대
57-937대
57-938대
57-939대
57-940대
57-941대
57-942대
57-943대
57-944대
57-945대
57-946대
57-947대
57-948대
57-949대
57-950대
57-951대
57-952대
57-953대
57-954대
57-955대
57-956대
57-957대
57-958대
57-959대
57-960대
57-961대
57-962대
57-963대
57-964대
57-965대
57-966대
57-967대
57-968대
57-969대
57-970대
57-971대
57-972대
57-973대
57-974대
57-975대
57-976대
57-977대
57-978대
57-979대
57-980대
57-981대
57-982대
57-983대
57-984대
57-985대
57-986대
57-987대
57-988대
57-989대
57-990대
57-991대
57-992대
57-993대
57-994대
57-995대
57-996대
57-997대
57-998대
57-999대
57-1000대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 망원동 57-33 ~ 207 도로개설공사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기정	망원동 57-328	대	20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	-	-	-	-
	변경	망원동 57-328	대	20	9						
2	기정	망원동 57-329	도	23	23	국 (기획재정부)	-	-	-	-	-
	변경	망원동 57-329	도	23	11						

<물 건 조 서>

○ 사 업 명 : 망원동 57-33 ~ 207 도로개설공사

2	기정	망원동 57-328	건물	연와조 (지층)	6	㎡	주택, 근린생활 시설	김*심 (1/2) 박*우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길 **(망원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로 ***, ***동 ****호 (구산동, 부평자이아파트)	-	-	-	-
			건물	연와조 (1층)	6	㎡							
			건물	연와조 (2층)	6	㎡							
			가건물 (창고)	연와조 (1층)	1	㎡							
			대문	-	1	식							
			수도계량기	-	1	식							
	변경	망원동 57-328	건물	연와조 (지층)	-	㎡	주택, 근린생활 시설	김*심 (1/2) 박*우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길 **(망원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로 ***, ***동 ****호 (구산동, 부평자이아파트)	-	-	-	-
			건물	연와조 (1층)	-	㎡							
			건물	연와조 (2층)	-	㎡							
			가건물 (창고)	연와조 (1층)	-	㎡							
			대문	-	-	식							
			수도계량기	-	1	식							

<물 건 조 서>

○ 사 업 명 : 망원동 57-33 ~ 207 도로개설공사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층수	편입수량	단위	주용도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지분)	주 소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기정	망원동 57-329	대문	-	1	식	주택	이*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	-	-	-	기존 무허가
			건물	세멘조 (1층)	20	㎡	주택						
	변경	망원동 57-329	대문	-	1	식	주택	이*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	-	-	-	기존 무허가
			건물	세멘조 (1층)	10	㎡	주택						

◈ 마포구공고 제2025-93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1998-98호(1998.12.3.)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된 망원동 57-33 ~ 57-207간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0-83호(2020.06.25.)로 실시계획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2-12호(2022.02.03.)로 실시계획(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2-235호(2022.12.22.)로 실시계획(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3-230호(2023.12.21.)로 실시계획(변경) 고시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4-166호(2024.12.19.)로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대흥동 261-3~338-5 외 6개소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과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5조 및 제9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 서류 열람을 공고 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과(☎02-3153-975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실시계획(변경)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9일
마 포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마포구 도로개선과(☎02-3153-9754)
다. 사업시행지(변경 없음)
라.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마. 사업규모(변경)
1) 공사개요

연번		사 업 명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도시계획사항	사업기간
1	기정	성산동 632-1 ~ 서교동 247-199 도로개설공사	성산동 632-1 ~서교동 247-199간	도로개설 폭 = 8m 연장= 83m	서울시제73호 (76.4.25.) 도시계획시설결정	인가일로부터 2025. 12. 31.
	변경	성산동 632-1 ~ 서교동 247-199 도로개설공사	성산동 632-1 ~서교동 247-199간	도로개설 폭 = 8m 연장= 83m	서울시제73호 (76.4.25.) 도시계획시설결정	인가일로부터 2027. 6. 24.
2	기정	상수동 356-14 ~ 272-2 도로개설공사	상수동 356-14 ~ 275-2간	도로개설 폭 = 12~15m 연장= 102m	건설부제177호 (62.12.8.) 도시계획시설결정	인가일로부터 2025. 12. 31.
	변경	상수동 356-14 ~ 272-2 도로개설공사	상수동 356-14 ~ 275-2간	도로개설 폭 = 12~15m 연장= 102m	건설부제177호 (62.12.8.) 도시계획시설결정	인가일로부터 2027. 6. 24.

연번		사 업 명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도시계획사항	사업기간
3	기정	대흥동 261-3 ~ 338-5 도로개설공사	대흥동 261-3 ~ 338-5간	도로개설 폭 = 8m 연장= 309m	건설부제768호 (64.1.24.) 도시계획시설결정	인가일로부터 2025. 12. 31.
	변경	대흥동 261-3 ~ 338-5 도로개설공사	대흥동 261-3 ~ 338-5간	도로개설 폭 = 8m 연장= 309m	건설부제768호 (64.1.24.) 도시계획시설결정	인가일로부터 2027. 6. 24.
4	기정	염리동 154-31 ~ 73-4 도로개설공사	염리동 154-31 ~ 73-4간	도로개설 폭 = 8m 연장= 346m	건설부제186호 (62.12.20.) 도시계획시설결정	인가일로부터 2025. 12. 31.
	변경	염리동 154-31 ~ 73-4 도로개설공사	염리동 154-31 ~ 73-4간	도로개설 폭 = 8m 연장= 346m	건설부제186호 (62.12.20.) 도시계획시설결정	인가일로부터 2027. 6. 24.
5	기정	망원동 242-6 ~ 458-1 도로개설공사	망원동 213-24 ~ 458-1간	도로개설 폭 = 12m 연장= 258m	서울시제47호 (74.4.20.) 도시계획시설결정	인가일로부터 2025. 12. 31.
	변경	망원동 242-6 ~ 458-1 도로개설공사	망원동 213-24 ~ 458-1간	도로개설 폭 = 12m 연장= 258m	서울시제47호 (74.4.20.) 도시계획시설결정	인가일로부터 2027. 6. 24.
6	기정	상수동 318 ~ 서교동 365 도로개설공사	상수동 318-6 ~ 창전동 2-144간	도로개설 폭 = 10~45m 연장 =1,980m	건설부제8호 (76.1.21.) 도시계획시설결정	인가일로부터 2025. 12. 31.
	변경	상수동 318 ~ 서교동 365 도로개설공사	상수동 318-6 ~ 창전동 2-144간	도로개설 폭 = 10~45m 연장 =1,980m	건설부제8호 (76.1.21.) 도시계획시설결정	인가일로부터 2027. 6. 24.
7	기정	망원동 57-33 ~ 57-207 도로개설공사	망원동 57-33 ~ 57-207간	도로개설 폭 = 5~7m 연장= 430m	마포구제98호 (98.11.24.) 도시계획시설결정	인가일로부터 2025. 12. 31.
	변경	망원동 57-33 ~ 57-207 도로개설공사	망원동 57-33 ~ 57-207간	도로개설 폭 = 5~7m 연장= 522m	마포구제98호 (98.11.24.) 도시계획시설결정	인가일로부터 2027. 6. 24.

※ 참고사항 : 실시계획에서 망원동 57-33 ~ 57-207 도로개설공사는 망원동 57-433 ~ 57-448 도시계획시설(도로)를 포함한 구간임(지형도면 참조)

바.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사.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변경 전) 2020. 6. 25. ~ 2025. 12. 31. → (변경 후) 2020. 6. 25. ~ 2027. 6. 24.

아. 실시계획 변경사유

- 망원동 57-33 ~ 57-207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미반영된 망원동 57-433 ~ 57-448 도시계획시설(도로) 연장(+92m) 반영
- 망원동 57-328, -329 도로 경계(도로 폭) 변경
- 사업기간 변경(연장)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별첨

차. 도시관리계획 결정

1) 교통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도시계획사항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	5~7	국지도로	430	망원동 57-33	망원동 57-207	일반 도로	마포구제98호 (98.11.24.) 도시계획시설결정	-
변경	소로	3	-	5~7	국지도로	522	망원동 57-33	망원동 57-207	일반 도로	마포구제98호 (98.11.24.) 도시계획시설결정	-

카. 결정 변경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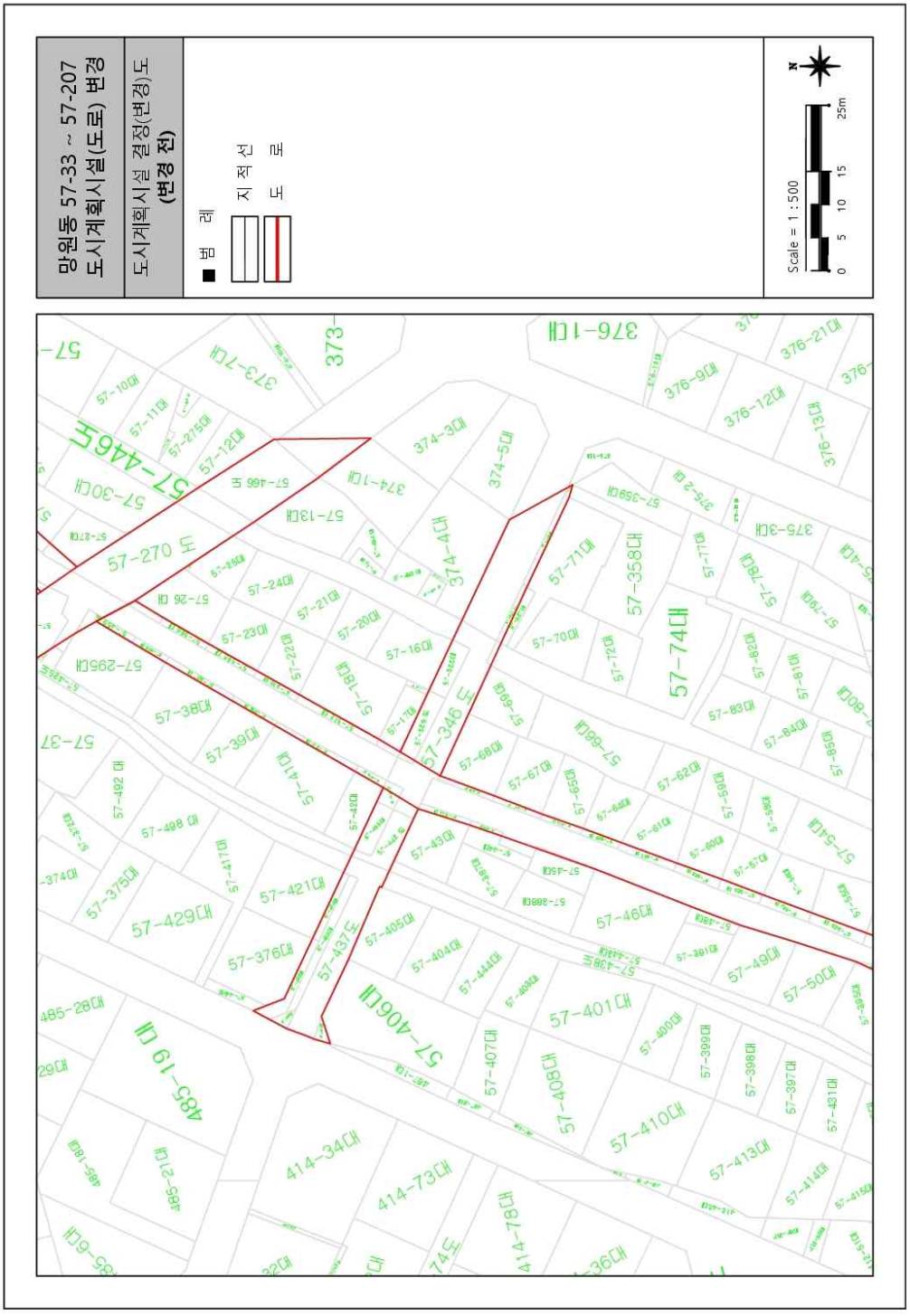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소로3류	오기 정정 및 도로 경계(폭) 변경 (경미한 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연장 및 규모 변경(오기) · 망원동 57-328,-329 도시계획시설(도로) 경계(도로폭) 변경(지형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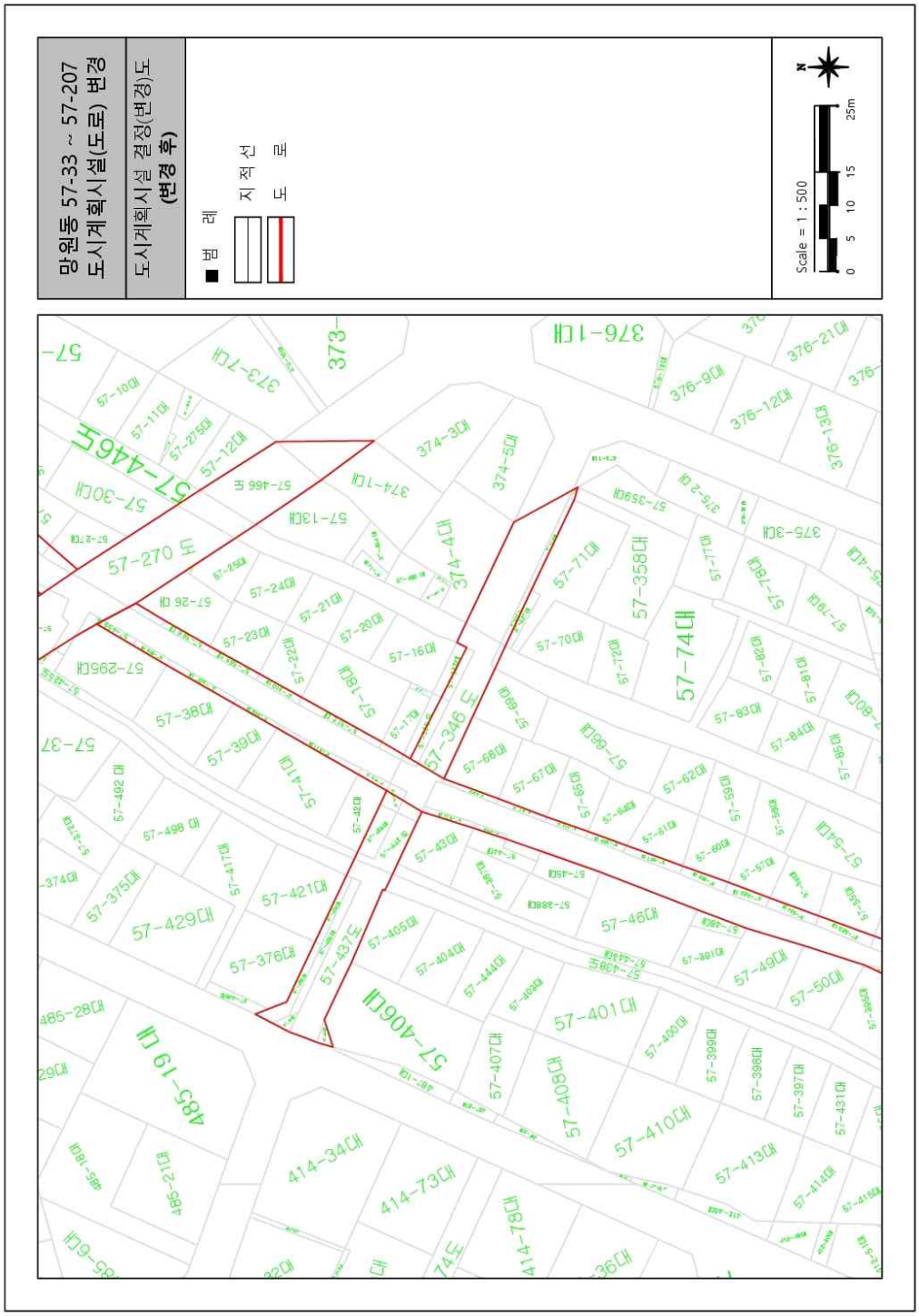
타. 지형도면의 작성(변경) : 별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도로개선과, ☎02-3153-9754)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물건 등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고시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의 보상면적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첨 1. 지형도면 1부.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각 1부. 끝.


망원동 57-33 ~ 57-207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변경 전)
범 례
지 적 선
도 로
N
Scale = 1:500
0 5 10 15 25m
57-74대
57-358대
57-346도
57-406대
57-270도
57-437도
57-429대
57-401대
57-410대
57-408대
57-74도
485-19대
414-34대
414-73대
414-78대
374-4대
376-1대


망원동 57-33 ~ 57-207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변경 후)
범 례
지 적 선
도 로
N
Scale = 1 : 500
0 5 10 15 25m
57-74대
57-358대
57-346 도
57-437도
57-406대
57-401대
57-429대
57-376대
57-421대
57-375대
57-270 도
57-446도
57-30대
57-295대
57-38대
57-39대
57-41대
57-492 대
57-498 대
57-374대
485-19 대
485-28대
414-34대
414-73대
414-78대
376-1대
376-9대
376-12대
376-13대
376-21대
373-7대
374-3대
374-5대
374-4대
374-1대
57-13대
57-24대
57-21대
57-20대
57-16대
57-18대
57-23대
57-26 대
57-71대
57-70대
57-72대
57-68대
57-67대
57-66대
57-69대
57-62대
57-59대
57-54대
57-43대
57-46대
57-49대
57-50대
57-405대
57-404대
57-444대
57-407대
57-408대
57-410대
57-400대
57-399대
57-398대
57-397대
57-431대
57-413대
57-414대
57-82대
57-81대
57-83대
57-84대
57-85대
57-80대
375-3대
375-2대
375-4대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 망원동 57-33 ~ 207 도로개설공사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기정	망원동 57-328	대	20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	-	-	-	-
	변경	망원동 57-328	대	20	9						
2	기정	망원동 57-329	도	23	23	국 (기획재정부)	-	-	-	-	-
	변경	망원동 57-329	도	23	11						

<물 건 조 서>

○ 사 업 명 : 망원동 57-33 ~ 207 도로개설공사

2	기정	망원동 57-328	건물	연와조 (지층)	6	㎡	주택, 근린생활 시설	김*심 (1/2) 박*우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길 **(망원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로 ***, ***동 ****호 (구산동, 부평자이아파트)	-	-	-	-
			건물	연와조 (1층)	6	㎡							
			건물	연와조 (2층)	6	㎡							
			가건물 (창고)	연와조 (1층)	1	㎡							
			대문	-	1	식							
			수도계량기	-	1	식							
	변경	망원동 57-328	건물	연와조 (지층)	-	㎡	주택, 근린생활 시설	김*심 (1/2) 박*우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길 **(망원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로 ***, ***동 ****호 (구산동, 부평자이아파트)	-	-	-	-
			건물	연와조 (1층)	-	㎡							
			건물	연와조 (2층)	-	㎡							
			가건물 (창고)	연와조 (1층)	-	㎡							
			대문	-	-	식							
			수도계량기	-	1	식							

<물 건 조 서>

○ 사 업 명 : 망원동 57-33 ~ 207 도로개설공사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층수	편입수량	단위	주용도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지분)	주 소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기정	망원동 57-329	대문	-	1	식	주택	이*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	-	-	-	기존 무허가
			건물	세멘조 (1층)	20	㎡	주택						
	변경	망원동 57-329	대문	-	1	식	주택	이*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	-	-	-	기존 무허가
			건물	세멘조 (1층)	10	㎡	주택						

◈ 양천구공고 제2025-1044호

도시관리계획[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71호(2007.03.22.)로 결정 고시된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9일
양 천 구 청 장

1. 열람기간 : 열람공고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양천구청 6층 도시계획과(☎2620-3517)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라.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1)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4. 의견제출 : 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로 서면(별도서식 없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도시계획과(☎2620-351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양천구공고 제2025-1045호

도시관리계획[신월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72호(2007. 3. 22.)로 결정 고시된 '신월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5월 29일
양 천 구 청 장

1. 열람 기간 : 열람공고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 장소 : 양천구청 6층 도시계획과(☎2620-3519)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
   라.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1)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4. 의견제출 : 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열람 장소로 서면(별도 서식 없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도시계획과(☎2620-351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강서구공고 제2025-1044호

도시관리계획(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1. 강서구 공고 제2024-391호(2024.2.22.)로 지구단위계획(안)을 재열람 공고한 「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3.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강서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9일
강 서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2025. 5. 30. ~ 6. 12.(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02-2600-1737)

다. 열람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신설)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서구 화곡동 980-16번지 일대	-	증) 74,862.5	74,862.5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조서: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라. 열람도서 : 게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 진행(업무추진) 중에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고시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22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케이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서초구 반포동 649-1	3㎡	이동통신 서비스용 분산폴 1본 설치	2025.5.3. ~ 2025.6.22.	2025. 5.1.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22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엘지유플러스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2	서초구 반포동 647, 649-1, 115-5	14㎡	이동통신 서비스용 분산폴 2대 및 이동기지국 설치	2025.4.30. ~ 2025.6.24.	2025. 5.1.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22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SK텔레콤㈜	서울시 중구 을지로65(을지로2가) 수도권 Infra본부	서초구 반포동 647, 649-1, 115-5	85㎡	이동통신 서비스용 분산풀 2개 및 이동기지국 1대 설치	2025.5.12. ~ 2025.5.31.	2025. 5.1.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22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미래한강본부 (자연성회복과)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마포구 상암동 495-72 일대 외 9개소	37,885㎡	한강숲 조성 (수목식재)	2025.5.7. ~ 2025.12.31.	2025. 5.7.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22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미래한강본부 (한강문화관광과)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반포한강공원 분수사무실 옆	235㎡	차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운영 물품 보관을 위한 시설물 설치	2025.5.7. ~ 2025.6.23.	2025. 5.7.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23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미래한강본부 (기반시설과)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여의도동 84, 84-9	1,200㎡	물빛광장(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탈의실, 그늘막) 설치	2025.5.10. ~ 2025.9.15.	2025. 5.9.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23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강남구 압구정동 386~잠원동 121-8(한남대교 남단 하부(EP21~EP25), (WP13~WP15)	6,050㎡	한남대교 남단 하부 낙하물 방지망 설치를 위한 차량 및 장비출입	2025.05.15. ~ 2025.8.31.	2025. 5.14.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23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광진구 자양동 112	370㎡	자전거스테이션 설치를 위한 이동식 화장실(3개동) 이전 설치 공사	2025.5.14. ~ 2025.5.30.	2025. 5.13.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23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미래한강본부 (치수과)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행주대교 남단 강서야적장	39㎡	2025년 한강 준설공사를 위한 근로자 휴게실 및 가설창고 설치	2025.5.15. ~ 2026.2.27.	2025. 5.15.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23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미래한강본부 (기전설비과)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영등포구 한강남자전거길 1593	208.13㎡	한강공원 취약지역 CCTV 설치(여의도) 관련 자재창고 및 근로자 휴게실	2025.5.21. ~ 2025.6.30.	2025. 5.19.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23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케이티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74 KT 방배빌딩 강동엔지니어링부	자양역2번 출구 배달존 옆, 수변무대 서쪽	16㎡	이동통신 서비스용 이동기지국 및 분산폴 설치	(기존) 2025.4.10. ~ 2025.5.26. (연장) 2025.4.10. ~ 2025.6.16.	2025. 5.20.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23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SK텔레콤㈜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678 SKT 중랑면목 성수품질개선팀	자양역2번 출구 배달존 옆, 수변무대 서쪽	30㎡	이동통신 서비스용 이동기지국 및 분산폴 설치	(기존) 2025.4.10. ~ 2025.5.26. (연장) 2025.4.10. ~ 2025.6.23.	2025. 5.20.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23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운항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현대요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6가 451	잠실대교 ~ 행주대교	마리나선박 1척 (19톤, 84.1㎡)	마리나 선박 대여업	2025.5.15~ 2026.12.31	2025. 5.22.

◈ 미래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5-23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더스텔라 (대표자) / ㈜굿윌마리나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05번기 48, 5층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427-6번지 일대	수상 6,435㎡ 둔치 1,400㎡	대체건조 유선장 및 인테리어 공사 등	2025. 5. 29. ~ 2025. 6.30.	2025.5.23.

기 타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5-191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
 -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10길 13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727-106번지 등 3필지
 - 면 적: 9.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유량계 및 전선관

5. 점용기간: 당초 2022.10.25.~2025.6.30. / 변경 2025.7.1.~2030.6.30.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5-194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월 5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양천구청장
 - 주 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117-3 외 10필지
 - 면 적: 8,81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안양천 양천 파크골프장
 - 내 역: 파크골프장 1개소, 휀스 420m, 파고라(6x3x2) 3개소, 창고(3x3x2) 1개소

5. 점용기간: 당초 2024.9.13.~2025.4.30. / 변경 2025.5.1.~2026.4.30.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5-196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영등포구청장
 -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당산동3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화동 4-1번지 외 4필지
 - 면 적: 7,689.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 내 역: -

5. 점용기간: 당초 2020.6.2.~2025.6.30. / 변경 2025.7.1.~2030.6.30.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5-197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영등포구청장
 -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당산동3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화동 10-4번지 외 3필지
 - 면 적: 9,00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테니스장 조성
 - 내 역: -

5. 점용기간: 당초 2020.6.8.~2025.6.30. / 변경 2025.7.1.~2030.6.30.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5-200호

하천점용(일시) 허가 고시

하천법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일시)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셀파이엔씨㈜ (☎ 070-4700-4171)
 -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25, 3층(문정동, 어은회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화동 1-27
 - 면 적: 48㎡(8.0m×3.0m×2공)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지반조사-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
 - 내 역: 시추조사 2공(굴착깊이 10m, 굴착지름 76mm 이내)

5. 점용기간: 2025.05.23. ~ 2025.06.30. (기간 중 개소당 2일)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5-201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일시)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중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중랑구청장
 - 주 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359, 중랑구 면목동 1031-36
 - 면 적: (일시) 4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지반조사
 - 내 역: 지반조사 2개공

5. 점용기간: 2025.5.23 ~ 2025.6.30.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55 문의 : ☎120